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

최효미·김나영·조미라·김태우·장경희·김병철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

저 자 최효미, 김나영, 조미라, 김태우, 장경희, 김병철

연구진
연구책임자 최 효 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나 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조 미 라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태 우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장 경 희 (신성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자 김 병 철 (중국인민대학교 교수)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4-17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

발행일 2025년 2월
발행인 황옥경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디자인여백플러스 02) 2672-1535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 979-11-6865-101-2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지출 실태와 정부 지원금 수혜 여부,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및 육아시간 지원 제도 활용 등을 면밀하게 고찰하고 있는 기초 통계 자료로, 지난 2018년에 1차년도 조사를 필두로 2024년까지 총 7개년도에 걸친 자료가 수집되었다. 2024년 올해 연구에서는 II기 2차년도(‘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조사의 수행과 2023년까지 구축된 자료를 활용한 심층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이자 연구 방법인 ‘KICCE 소비실태조사’는 패널 조사 자료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매해 신생아(당해년도 상반기 및 전년도 하반기 출생아) 표본 가구를 추가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으로 영유아기 전 연령에 걸친 현황을 해마다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기존(패널) 표본 가구 조사 실패로 인한 표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매해 대체 표본을 구축하여 표본 마모를 보완하고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표본 구축 방식에 따라, 2024년에는 2018년 조사 원 표본 가구 수(1,648가구) 대비 173가구가 많은 1,821가구가 조사되었다.

한편, 2024년 연구에서는 기 구축 자료를 활용한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활용 실태,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등 기초 분석 자료뿐 아니라, 무자녀 가구와 영유아 가구의 소비 행태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2023년 도입된 부모급여 정책의 효과성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풍부하게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의 질 제고를 위해 따끔한 충고와 자문을 아끼지 않은 전문가, 까다롭고 민감한 설문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주신 패널 응답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방대한 분량의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주신 연구진에게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24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황 옥 경



일러두기

□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는 ‘KICCE 소비실태조사’ II기 2차년도에 속하는 연구로, 2027년까지 5개년 연속과제로 진행될 예정인 연속과제임.

- ‘KICCE 소비실태조사’ I기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연속과제로 수행되었으며, 2023년부터 ‘KICCE 소비실태조사’ II기 연구가 5개년 연속과제로 수행 중임.
- 연구과제명이 매년 변동함에 따르는 혼선을 줄이고 사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차수의 구분은 ‘KICCE 소비실태조사’ I기와 II기를 망라하여 조사 뒤에는 조사년도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매년 수행되었던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연구 과제명은 다음과 같음.

연구 기수	조사 차수	조사 년도	연구과제명	조사명
I기	1차	2018년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
	2차	2019년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II)	KICCE 소비실태조사_2019
	3차	2020년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 (III)	KICCE 소비실태조사_2020
	4차	2021년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 (IV)	KICCE 소비실태조사_2021
	5차	2022년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 (V)	KICCE 소비실태조사_2022
II기	6차	2023년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II)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7차	2024년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주 : I기 연구는 ‘KICCE 소비실태조사’를 총괄한 연구과제명을 기준으로 정리.



목차

요약	1
----	---

Part I 서론 및 연구 배경

I. 서론	35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7
2. 연구 내용	42
3. 연구 방법	45
4. 보고서 구성 및 연구 추진 과정	48
5. 연구 범위 및 용어 정의	50
II. 연구 배경	55
1. 한국의 저출생 현황 및 대응 정책	57
2. 중국의 저출생 현황 및 대응 정책	75
3. 일본의 저출생 현황 및 대응 정책	84
4. 소결 및 시사점	101

Part II.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조사 개요

III.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개요	107
1. 조사 설계	109
2. 설문지 구성과 변화	120
3. 조사 결과	136

PartⅢ. 데이터 분석

Ⅲ-1. KICCE 소비실태조사(2018-2023)를 활용한 기초 분석

IV. 영유아 가구의 가계 경제와 양육비용 실태	143
1.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 및 소득	145
2.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실태	160
3. 소결	171
V.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및 지원 요구	173
1. 영유아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175
2. 가정 내 돌봄 및 부모지원서비스 이용 행태	198
3. 육아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	214
4. 소결	225
VI. 저출생 대응 및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	
임산부, 무자녀, 영유아 가구 비교	229
1. 육아시간 지원 정책 활용 현황 및 개선 요구	231
2. 주거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정책적 요구	252
3. 출산 의향 및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의견	262
4. 소결	290

PartⅢ. 데이터 분석

Ⅲ-2. 심층 분석

VII. 영유아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소비실태 비교	297
1. 분석 목적	299
2. 분석 자료	301
3. 무자녀 가구와 영유아 가구의 소비지출 비교	303
4. 성인의 소비지출 결정 요인	328
5. 무자녀 가구의 예상 양육비용과 출산 의향과의 관계	331
6. 소결	333

VIII. 부모급여 지원이 양육비용 및 서비스 선택에 미친 영향	337
1. 분석 목적	339
2. 분석 자료	341
3. 부모급여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친 요인	347
4. 부모급여 수급이 아동 당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	350
5. 소결	354

PartIV 결론 및 제언

IX. 결론 및 제언	359
1.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정책	361
2. 아동 권리 보장에 초점을 둔 비용 지원 체계 정비	367
3. 육아시간 지원 제도 확대	378
4. 저출생 대응 정책의 실효성 제고	383

참고문헌	391
-------------	------------



표 목차

〈표 I-2-1〉 2024년 주요 연구 내용	44
〈표 I-3-1〉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현황	46
〈표 I-3-2〉 중국 출장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47
〈표 I-3-3〉 일본 출장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계획 안)	48
〈표 I-5-1〉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양육비용’ 용어 정의	50
〈표 I-5-2〉 영유아기 육아서비스 범주 (2023년 기준)	52
〈표 II-1-1〉 총 인구 수 및 영유아 인구 (2008~2023년)	59
〈표 II-1-2〉 연령별 영유아 수 (2008~2023년)	60
〈표 II-1-3〉 시도별 및 연령별 영유아 수 (2023년)	61
〈표 II-1-4〉 시도별 및 총 인구 수 대비 영유아 비중 (2023년)	62
〈표 II-1-5〉 한국 저출산 기본계획의 틀	63
〈표 II-1-6〉 한국 육아지원 정책의 주요 변화	66
〈표 II-1-5〉 부모급여의 법적근거: 아동수당법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	68
〈표 II-1-6〉 부모급여의 지원(2023, 2024년)	69
〈표 II-1-7〉 가정양육수당의 지원(2023, 2024년)	70
〈표 II-1-8〉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2023, 2024년)	71
〈표 II-1-9〉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2023,2024년)	72
〈표 II-1-10〉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3+3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급여 비교	73
〈표 II-2-1〉 중국 연령별 인구 수 : 2014~2023년	75
〈표 II-3-1〉 결혼·임신·출산·아동양육의 각 단계별 저출생 대책	90
〈표 II-3-2〉 영유아 교육,보육 무상화 정책의 내용	94
〈표 II-3-3〉 일본의 아동수당	95
〈표 III-1-1〉 연차별 조사 대상 연령(막내 자녀 연령 기준)	112
〈표 III-1-2〉 읍면지역 영유아 현황 : 도농복합시 제외 (2024년, 도단위 집계)	113
〈표 III-1-3〉 권역별 읍면지역 영유아 현황 : 도농복합시 제외 (2024년)	114
〈표 III-1-4〉 권역별 부스터표본 목표 표본 수(2024년)	115
〈표 III-1-5〉 KICCE 소비실태조사 조사 방법 변화	117

〈표 Ⅲ-1-6〉 ‘KICCE 소비실태조사’ 데이터 구성	119
〈표 Ⅲ-2-1〉 본조사 설문 의 개요 (1~7차년도)	121
〈표 Ⅲ-2-2〉 KICCE 소비실태조사 주요 설문 변경 내용 및 사유 (2019~2024년)124	
〈표 Ⅲ-2-3〉 가구용 설문 비교 (1~7차년도) :	
가구 특성 및 가계경제·양육비	127
〈표 Ⅲ-2-4〉 가구용 설문 비교 (1~7차년도) :	
육아서비스 이용 및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131
〈표 Ⅲ-2-5〉 아동용 설문 비교 (1~7차년도) : 영유아	134
〈표 Ⅲ-3-1〉 KICCE 소비실태조사(2018~2024년) 표본 가구수 및 추적률	137
〈표 Ⅲ-3-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본조사 가구 표본 : 막내자녀 연령별 ..	138
〈표 Ⅲ-3-3〉 소비실태조사(2018~2023년) 영유아 연령별 표본	
(아동용 설문 조사 표본 기준)	139
〈표 Ⅲ-3-4〉 권역별 부스터표본 조사 표본 수(2024년)	140
〈표 Ⅳ-1-1〉 가구 특성별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변화	
(2018~2023년, 영유아 가구)	146
〈표 Ⅳ-1-2〉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및 비목별 비중/가구지출 총액	
(2023년, 명목비용, 영유아 가구 표본)	146
〈표 Ⅳ-1-3〉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및 비목별 비중 변화:	
양육비용과 비목 일치 시(2018~2023년, 명목비용, 영유아 가구) ..	148
〈표 Ⅳ-1-4〉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2018~2023년, 영유아 가구표본)	149
〈표 Ⅳ-1-5〉 가구특성별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	
(2023년, 영유아 가구표본)	150
〈표 Ⅳ-1-6〉 가구특성별 KICCE 소비실태조사 월평균 총 가구소득 변화	
(2018~2023년)	150
〈표 Ⅳ-1-7〉 가구특성별 KICCE 소비실태조사 월평균 총 가구소득 변화	
(2018~2023년, 명목비용)	151
〈표 Ⅳ-1-8〉 가구특성별 세목별 월평균 가구소득(2023년): 명목비용	152
〈표 Ⅳ-1-9〉 양육관련 정부지원금 수급률(2023년): 2022년 이후 출생아	153
〈표 Ⅳ-1-10〉 양육관련 정부지원금 수급률(2023년): 2021년 이전 출생아	153
〈표 Ⅳ-1-11〉 양육관련 정부지원금 수급률(2023년)	
- 아동수당, 출산 장려금, 육아 휴직급여	153
〈표 Ⅳ-1-12〉 양육관련 공적 지원금 수급 비중의 변화(2018~2023년)	154
〈표 Ⅳ-1-13〉 양육관련 공적 지원금 수급 금액(2018~2023년, 월평균, 명목비용) ..	154

〈표 IV-1-14〉 부모급여 활용처: 1+2순위(2023년)	155
〈표 IV-1-15〉 첫만남이용권 활용처: 1+2순위(2023년)	156
〈표 IV-1-16〉 현금성 지원금 양육비용 부담 경감 도움정도(2023년)	157
〈표 IV-1-17〉 세제혜택 수혜여부(2019~2023년)	159
〈표 IV-1-18〉 세제혜택 구체적 지원금액 인지 비율(2019~2023년)	159
〈표 IV-2-1〉 월평균 가구당 양육비용 변화(2018~2023년): 영유아 가구	160
〈표 IV-2-2〉 비목별 월평균 가구당 양육비용 변화(2018~2023년, 명목비용): 영유아 가구	161
〈표 IV-2-3〉 가구소득 대비 가구당 양육비용 비중 변화 (2018~2023년, 명목비용)	162
〈표 IV-2-4〉 비목별 가구 생활비 대비 가구당 양육비용 비중 (2018~2023년, 명목비용)	163
〈표 IV-2-5〉 월평균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2018~2023년)	164
〈표 IV-2-6〉 자녀 연령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2018~2023년, 월평균, 명목비 용)	164
〈표 IV-2-7〉 생활비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 변화(2018~2023년, 명목비용)	165
〈표 IV-2-8〉 비목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2018~2023년, 명목비용)	166
〈표 IV-2-9〉 가구특성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2018~2023년, 명목비용)	168
〈표 IV-2-10〉 가구특성별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 변화(2019~ 2023년, 명목비용)	169
〈표 IV-2-11〉 가구특성별 가구생활비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 변화(2019~ 2023년, 명목비용)	170
〈표 V-1-1〉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2018~2023년)	175
〈표 V-1-2〉 가구특성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2023년)	176
〈표 V-1-3〉 가구특성별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설립 유형 (2023년)	177
〈표 V-1-4〉 가구특성별 유아가 이용하는 유치원 설립 유형 (2023년)	178
〈표 V-1-5〉 영유아가 이용하는 반일제 이상 학원 유형 (2023년)	179
〈표 V-1-6〉 이용 기관별 영유아의 특별활동 이용 비중 및 이용자 수 (2018~2023년)	179
〈표 V-1-7〉 이용 기관별 영유아의 특별활동 이용 과목 수 (2018~2023년)	180
〈표 V-1-8〉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주당 평균 이용 시간 (2018~2023년)	180

〈표 V-1-9〉 가구특성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하루 평균 이용시간 (2023년)	181
〈표 V-1-10〉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시간의 충분성 정도 (2023년)	182
〈표 V-1-11〉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을 늘리고 싶은 주당 평균 시간 (2023년)	183
〈표 V-1-12〉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을 줄이고 싶은 주당 평균 시간 (2023년)	183
〈표 V-1-13〉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월평균 이용 비용 (명목비용, 2018~2023년)	184
〈표 V-1-14〉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만족도 (2018~2023년)	185
〈표 V-1-15〉 연도별 시간제 교육 이용 (2018~2023년)	186
〈표 V-1-16〉 영유아의 시간제 교육 유형별 이용 과목 (2023년)	187
〈표 V-1-17〉 영유아의 문화센터 이용기관 (2023년)	187
〈표 V-1-18〉 영유아의 문화센터 이용 과목 (2023년)	187
〈표 V-1-19〉 연도별 영유아의 시간제 교육 주당 이용 시간 (2018~2023년)	188
〈표 V-1-20〉 영유아의 시간제 교육 유형별 주당 이용시간 (2023년)	189
〈표 V-1-21〉 연도별 영유아의 시간제 교육 월평균 이용비용 (명목비용, 2018~2023년)	189
〈표 V-1-22〉 시간제 교육 서비스 만족도 (2018~2023년)	190
〈표 V-1-23〉 비대면 기타 사교육 서비스 이용시 개선 필요 사항 (2023년)	191
〈표 V-1-24〉 사교육 비용 부담정도 (2023년)	191
〈표 V-1-25〉 사교육 부담에도 이용하는 이유 (2020~2023년)	192
〈표 V-1-26〉 영유아의 기타서비스 이용 현황 (2018~2023년)	193
〈표 V-1-27〉 기타서비스 유형별 만족도 (2018~2023년)	194
〈표 V-1-28〉 시간제 일시보육 범주별 만족도 (2022~2023년)	195
〈표 V-1-29〉 키즈카페 이용 이유 (2018~2023년)	195
〈표 V-1-30〉 키즈카페 이용하지 않는 이유 (2021~2023년)	196
〈표 V-1-31〉 비정기 체험활동 이용 이유 (2022~2023년)	197
〈표 V-1-32〉 비정기 체험활동 이용하지 않는 이유 (2022~2023년)	197
〈표 V-1-33〉 가구특성별 비정기 체험활동 이용하지 않는 이유 (2023년)	198
〈표 V-2-1〉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2019~2023년, 중복응답)	199
〈표 V-2-2〉 개별돌봄서비스 동시 돌봄 자녀수, 이용시간, 이용비용 (명목비용, 2019~2023년)	200
〈표 V-2-3〉 민간도우미 구인 경로 : 민간육아도우미 이용 가정 (2022~2023년)	200
〈표 V-2-4〉 가정 내 양육 및 부모직접돌봄 시간 변화 (2021~2023년)	201

〈표 V-2-5〉 가구특성별 가정 내 양육 및 부모직접돌봄 시간 (2023년)	201
〈표 V-2-6〉 영유아 자녀 미디어 이용시간 변화 (2021~2023년)	202
〈표 V-2-7〉 가구특성별 자녀 미디어 이용시간 (2023년)	203
〈표 V-2-8〉 가정 내 부모직접돌봄 시간의 부담 정도 변화 (2021~2023년)	203
〈표 V-2-9〉 가구특성별 가정 내 부모직접돌봄 시간의 부담 정도 (2023년)	204
〈표 V-2-10〉 가정 내 부모직접돌봄 시간의 부담이유 (2021~2023년, 순위별) ·	205
〈표 V-2-11〉 가구특성별 가정 내 양육 부담 이유 (2023년, 1순위)	205
〈표 V-2-12〉 가구특성별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자기기 사용 (TV, PC, 전자기기 등) 허용 여부 (2022~2023년)	206
〈표 V-2-13〉 가구특성별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이용여부 (2021~2023년)	207
〈표 V-2-14〉 장난감/도서 대여 이용 빈도 (2021~2023년)	207
〈표 V-2-15〉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제공기관, 이용비용 및 만족도 (2021년~2023년)	208
〈표 V-2-16〉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이용여부 및 횟수 (2021~2023년)	209
〈표 V-2-17〉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비용 및 만족도 (2021~2023년)	209
〈표 V-2-18〉 장난감, 도서 대여 및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정책 방향 (2021~2023년, 1+2순위)	210
〈표 V-2-19〉 부모 지원 서비스별 이용 여부 및 이용횟수 (2021~2023년)	210
〈표 V-2-20〉 부모 지원 서비스별 제공기관 (2021~2023년)	211
〈표 V-2-21〉 부모 지원 서비스별 내용 분야 (2021~2023년, 1+2순위)	212
〈표 V-2-22〉 부모 지원 서비스의 비대면 서비스 여부, 유료여부 및 만족도 (2021~2023년)	213
〈표 V-2-23〉 부모 지원 서비스 개선 필요사항(2021~2023년, 1+2순위)	213
〈표 V-3-1〉 어린이집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가 아닌 어린이집 이용 자녀에 대한 실제 원하는 양육형태 (2018~2023년)	214
〈표 V-3-2〉 어린이집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가 아닌 어린이집 이용 자녀를 실제 원하는 양육형태로 양육하지 않는 이유 (2018~2023년)	215
〈표 V-3-3〉 유치원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가 아닌 유치원 이용자녀에 대한 실제 원하는 양육형태 (2018~2023년)	215
〈표 V-3-4〉 유치원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가 아닌 유치원 이용자녀를 원하는 양육형태로 양육하지 않는 이유 (2018~2023년)	216
〈표 V-3-5〉 정부 지원 부족 부분 변화 (2018~2023년)	217

〈표 V-3-6〉 가구특성별 정부 지원 부족 부분 (2023년)	218
〈표 V-3-7〉 기관보육·교육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18~2023년)	219
〈표 V-3-8〉 개별돌봄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18~2023년)	219
〈표 V-3-9〉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18~2023년)	220
〈표 V-3-10〉 부모의 돌봄 시간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18~2023년)	220
〈표 V-3-11〉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18~2023년)	221
〈표 V-3-12〉 양육물품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18~2023년)	222
〈표 V-3-13〉 가구특성별 육아지원 부족한 시기 (2023년)	222
〈표 V-3-14〉 시기별 부족한 육아지원 범주 (2022~2023년)	223
〈표 V-3-15〉 비용 지원 정책 수혜여부 및 만족도 (2023년)	224
〈표 VI-1-1〉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이용 경험 : 영유아 가구 및 임산부 가구	232
〈표 VI-1-2〉 부모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 경험 (2021~2023년) : 영유아 가구	232
〈표 VI-1-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종 근로한 시간(2023년: 주당) : 영유아 가구 및 임산부 가구	233
〈표 VI-1-4〉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도움정도 : 영유아 가구 및 임산부 가구	233
〈표 VI-1-5〉 출산휴가를 이용하지 않은/않으려는 주된 이유 : 영유아 가구 및 임산부 가구	234
〈표 VI-1-6〉 육아휴직을 이용하지 않은/않으려는 주된 이유 : 영유아 가구 및 임산부 가구	235
〈표 VI-1-7〉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지 않은/않으려는 주된 이유 : 영유아 가구 및 임산부 가구	236
〈표 VI-1-8〉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이용 경험: 영유아 가구	237
〈표 VI-1-9〉 부모의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 경험 (2021~2023년) : 영유아 가구	237
〈표 VI-1-10〉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종 근로한 시간(2023년: 주당) : 영유아 가구	238
〈표 VI-1-11〉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움정도 : 영유아 가구	238
〈표 VI-1-12〉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 : 영유아 가구	239

〈표 VI-1-13〉 근로시간 단축 지원, 육아 휴직, 자녀돌봄 휴가 제도 유무 :	
영유아 가구 및 임산부 가구	240
〈표 VI-1-14〉 근로시간 단축 지원, 육아 휴직, 자녀돌봄 휴가 제도 이용	
경험/이용 계획 유무 : 영유아 가구 및 임산부 가구	240
〈표 VI-1-15〉 근로시간 단축 지원 단축 시간 : 영유아 가구 및 임산부 가구	241
〈표 VI-1-16〉 근로시간 단축 지원, 육아 휴직, 자녀돌봄 휴가 제도 도움정도	241
〈표 VI-1-17〉 유연근무제도 이용 경험 :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242
〈표 VI-1-18〉 부모의 유연근무제도 이용 경험(2021~2023년) : 영유아 가구	243
〈표 VI-1-19〉 유연근무제도 도움정도 :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243
〈표 VI-1-20〉 재택근무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 :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244
〈표 VI-1-21〉 시차출퇴근을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 :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245
〈표 VI-1-22〉 선택적 근무시간제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 :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246
〈표 VI-1-23〉 원격근무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 :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246
〈표 VI-1-24〉 근로시간 단축근무제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 :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247
〈표 VI-1-25〉 탄력적 근무제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 :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247
〈표 VI-1-26〉 기타 유형(재량근무 등)을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 :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248
〈표 VI-1-27〉 개선이 필요한 육아 시간 지원 정책 : 영유아 가구 및 임산부 가구	249
〈표 VI-1-28〉 가족돌봄휴직/휴가 개선방향 : 영유아 가구 및 임산부 가구	249
〈표 VI-1-29〉 육아휴직 개선방향 : 영유아 가구 및 임산부 가구	250
〈표 VI-1-3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선방향 : 영유아 가구 및 임산부 가구	250
〈표 VI-1-31〉 출산휴가 개선방향 : 영유아 가구 및 임산부 가구	251
〈표 VI-1-32〉 유연근무 개선방향 : 영유아 가구 및 임산부 가구	252
〈표 VI-2-1〉 거주 주택 종류 :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252
〈표 VI-2-2〉 가구의 거주 형태 :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253

〈표 VI-2-3〉 가구의 거주 비용 :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253
〈표 VI-2-4〉 주택의 주거비 부담 정도 :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254
〈표 VI-2-5〉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기 집이 있어야 한다' 해당 의견 동의 정도 : 영유아 가구(2018, 2023년),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254
〈표 VI-2-6〉 자녀양육과 거주지 선택 관련성 : 영유아 가구(2018, 2023년) 및 임산부 가구	255
〈표 VI-2-7〉 향후 5년 이내 자녀 양육을 위한 이사 의향 : 영유아 가구(2018, 2023년),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256
〈표 VI-2-8〉 자녀 양육 시 좋은 주거지가 갖춰야 할 주요 조건 : 영유아 가구(2018, 2023년),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257
〈표 VI-2-9〉 인지하고 있는 신혼부부 및 영유아 가구 주거 지원 정책(중복응답) :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258
〈표 VI-2-10〉 주거 지원 정책 신청 경험 여부 :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259
〈표 VI-2-11〉 인지하고 있는 신혼부부 및 영유아 가구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정책 (중복응답) :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259
〈표 VI-2-12〉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정책 신청 경험 여부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260
〈표 VI-2-13〉 정부의 신혼부부 및 영유아 가구 대상 주거 지원 정책 신혼부부의 출산결정 도움 정도 :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260
〈표 VI-2-14〉 신혼부부 및 영유아 가구 대상 주거 지원 정책이 저출산 대책으로 실효성이 없는 이유 :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261
〈표 VI-3-1〉 임산부 가구 부모 자녀 출산 후 근로형태 및 소득 변화 여부	262
〈표 VI-3-2〉 출산 후 자녀 양육 시 양육비용 마련 계획 :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출산의향이 있는 경우	263
〈표 VI-3-3〉 자녀 출산 계획으로 인해 현재 소비지출 현황(원하는 만큼 못하고 있는가) :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출산의향이 있는 경우	263
〈표 VI-3-4〉 현재 소비 지출을 원하는 만큼 하고 있는지 여부 : 무자녀 가구 출산의향이 없는 경우	264
〈표 VI-3-5〉 자녀 출산 후 줄여야 할 소비 지출 금액 정도 :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264
〈표 VI-3-6〉 무자녀 가구의 향후 10년 내 월평균 소득 증가 전망 : 무자녀 가구	265

〈표 VI-3-7〉 무자녀 가구의 첫 자녀 출산 후 월평균 소득 변화 전망 :	
무자녀 가구 출산의향이 있는 경우	265
〈표 VI-3-8〉 무자녀 가구의 첫 자녀 출산 후 월평균 소득 변화 이유 :	
무자녀 가구 출산의향이 있는 경우	266
〈표 VI-3-9〉 무자녀 가구의 첫 자녀 출산 후 예상 월평균 소득 감소 정도 :	
무자녀 가구 출산의향이 있는 경우	266
〈표 VI-3-10〉 무자녀 가구의 결혼 전과 후 출산 의향 비교 :	
무자녀 가구 출산의향이 없는 경우	267
〈표 VI-3-11〉 무자녀 가구의 출산의향이 없는 이유(순위별) :	
무자녀 가구 출산의향이 없는 경우	267
〈표 VI-3-12〉 무자녀 가구의 출산의향이 없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출산 의향 :	
무자녀 가구 출산의향이 없는 경우	268
〈표 VI-3-13〉 무자녀 가구의 자녀 출산 후 생활 변화 양상 : 무자녀 가구	268
〈표 VI-3-14〉 무자녀 가구의 아이 1명을 출산·양육 위한 가구소득(세후) 수준 :	
무자녀 가구	269
〈표 VI-3-15〉 자녀를 임신한 이유 및 출산 희망 이유 :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출산의향이 있는 경우	270
〈표 VI-3-16〉 임산부 가구 결혼 전 자녀 계획 여부 및 계획 자녀 수 : 임산부 가구	270
〈표 VI-3-17〉 계획 자녀수 :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출산의향이 있는 경우 ..	271
〈표 VI-3-18〉 2명 이상 출산 희망 이유 :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출산의향이 있는 경우	271
〈표 VI-3-19〉 무자녀 가구 첫 자녀 결혼 후 출산 시기 계획:	
무자녀 가구 출산의향이 있는 경우	272
〈표 VI-3-20〉 무자녀 가구 결혼 이전과 이후 출산 희망시기 계획 변동 여부 :	
무자녀 가구 출산의향이 있는 경우	272
〈표 VI-3-21〉 무자녀 가구 출산시기를 계획한 주된 이유 :	
무자녀 가구 출산의향이 있는 경우	273
〈표 VI-3-22〉 임산부 가구 임신 계획 시기 실천 여부 : 임산부 가구	273
〈표 VI-3-23〉 임산부 가구 계획보다 늦은 임신 이유 : 임산부 가구	274
〈표 VI-3-24〉 임산부 가구 병원 이용 계획: 산전 진찰 병원 : 임산부 가구	274
〈표 VI-3-25〉 임산부 가구 임신 계획: 분만 방식 : 임산부 가구	274
〈표 VI-3-26〉 임산부 가구 임신 계획: 예상 의료비용 : 임산부 가구	275
〈표 VI-3-27〉 임산부 가구 산후조리 방식(중복응답) : 임산부 가구	275

〈표 VI-3-28〉 가구 특성별 양육비용 충분성에 대한 태도 변화 (2018~2023년) :	
영유아 가구	276
〈표 VI-3-29〉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 변화 (2018~2023년) : 영유아 가구 ...	277
〈표 VI-3-30〉 가구 특성별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 (2023년) :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출산 의향 있는 경우	278
〈표 VI-3-31〉 양육비용 부담 증가 등 상황에서 우선적 지출 축소 항목	279
〈표 VI-3-32〉 자녀 양육 시 책임 소재	280
〈표 VI-3-33〉 자녀 양육 시 경제적 지원 시기	280
〈표 VI-3-34〉 무자녀 가구 해당 문구에 동의 정도	281
〈표 VI-3-35〉 가구특성별 육아지원 부족한 시기 : 영유아 가구 및 임산부 가구 ...	281
〈표 VI-3-36〉 시기별 부족한 육아지원 범주 영유아 가구 및 임산부 가구	282
〈표 VI-3-37〉 출산 및 양육 시 우선 시행 정부 지원 정책 :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283
〈표 VI-3-38〉 육아지원정책별 인지 여부 :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284
〈표 VI-3-39〉 육아지원정책 필요성 인식 정도 :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286
〈표 VI-3-40〉 정부의 육아지원정책 충분함 정도 :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	287
〈표 VI-3-41〉 임산부 가구 정부의 육아지원정책 충분함 정도 : 임산부 가구	287
〈표 VI-3-42〉 삶의 만족도 :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288
〈표 VI-3-43〉 시기별 사회경제적 위치 :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	289
〈표 VII-2-1〉 영유아 가구 및 무자녀 가구 특성 (기초 통계량)	302
〈표 VII-3-1〉 월평균 생활비 지출액 및 비목별 비중 비교(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304
〈표 VII-3-2〉 월평균 금융상품에 대한 지출 및 이전 지출 (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307
〈표 VII-3-3〉 주택 소유 여부 및 주택 가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308
〈표 VII-3-4〉 가구특성별 월평균 생활비 지출액 비교(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309
〈표 VII-3-5〉 비목별 월평균 생활비 지출액비교(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vs 무자녀 가구	311
〈표 VII-3-6〉 가구특성별 식비 지출액 비교(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vs 무자녀 가구	312
〈표 VII-3-7〉 가구특성별 주거관리비 지출액 비교(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313

〈표 VII-3-8〉 가구특성별 기기/집기 지출액 비교(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314
〈표 VII-3-9〉 가구특성별 피복비 지출액 비교(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315
〈표 VII-3-10〉 가구특성별 보건의료비 지출액 비교(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317
〈표 VII-3-11〉 가구특성별 교육보육비 지출액 비교(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318
〈표 VII-3-12〉 가구특성별 여가문화생활비 지출액 비교(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319
〈표 VII-3-13〉 가구특성별 교통비 지출액 비교(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321
〈표 VII-3-14〉 가구특성별 통신비 지출액 비교(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322
〈표 VII-3-15〉 가구특성별 개인유지비 지출액 비교(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323
〈표 VII-3-16〉 가구특성별 보험 지출액 비교(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324
〈표 VII-3-17〉 가구특성별 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지출액 비교(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325
〈표 VII-3-18〉 가구특성별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지출액 비교(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326
〈표 VII-3-19〉 자녀 1명을 키우는데 필요한 양육비용 (월평균 예상액) :	
영유아 vs 무자녀 가구	327
〈표 VII-3-20〉 자녀 1명을 키우는데 필요한 양육비용 (월평균 예상액) :	
무자녀 가구 출산 의향별	328
〈표 VII-4-1〉 성인의 소비지출(총액) 결정 요인, OLS	329
〈표 VII-4-2〉 성인의 비목별 소비지출(총액) 결정 요인 : pooling 표본 기준, OLS ..	330
〈표 VII-5-1〉 영유아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예상 양육비용 결정 요인 : OLS	331
〈표 VII-5-2〉 무자녀 가구의 출산 의향별 예상 양육비용 결정 요인 : OLS	332
〈표 VII-5-3〉 예상 양육비용이 무자녀 가구의 출산 의향에 미친 영향 : 로짓 분석 ..	333
〈표 VIII-1-1〉 영유아 대상 주요 비용 지원 제도의 변화	340
〈표 VIII-1-2〉 영아수당 및 부모 급여 지원 내용	341

〈표 Ⅷ-2-1〉 2023년 4월 기준 출생연도별 수급 급여 종류	343
〈표 Ⅶ-2-2〉 응답 가구 특성 (기초 통계량)	344
〈표 Ⅶ-2-3〉 아동 특성 및 급여 수급(기초 통계량)	345
〈표 Ⅶ-2-4〉 월평균 양육비용 및 비목별 비중 비교(2023년, 명목비용)	346
〈표 Ⅷ-3-1〉 현금 급여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친 요인 : logit	348
〈표 Ⅷ-3-2〉 부모 급여 종류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 : logit, 2022~2023년생 ..	349
〈표 Ⅷ-4-1〉 부모급여 수급이 아동 당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 : 전체, OLS	351
〈표 Ⅶ-4-2〉 부모급여 수급이 비목별 아동 당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 : 전체, OLS ·	353
〈표 Ⅸ-1-1〉 소비자물가지수 대표 품목 : 육아물품 및 서비스	363



그림 목차

[그림 Ⅰ-2-1] KICCE 소비실태조사(Ⅱ기 조사) 연차별 추진 계획(안)	45
[그림 Ⅰ-4-1] 2024년 보고서 구성 및 연구 추진 과정	49
[그림 Ⅱ-1-1] 한국의 합계출산율 및 혼인율(아내) 변화 : 1993~2023년	58
[그림 Ⅱ-1-2] 영유아 수 및 영유아 인구 비중의 변화 (2008~2023년)	60
[그림 Ⅱ-2-1] 중국 전체 인구수 및 인구 자연증가율의 변화 : 2004~2023년 ..	76
[그림 Ⅱ-2-2] 중국 합계출산율의 변화 : 1950~2020년	76
[그림 Ⅱ-2-3] 중국 출생아 수의 변화 : 2011~2023년	77
[그림 Ⅱ-2-4] 중국 연도별 초혼연령 변화: 1980~2020년	78
[그림 Ⅱ-2-5] 중국 출생연도별 여성인구 규모 : 2020년	79
[그림 Ⅱ-3-1] 일본 연간 출생아동 수 추이	86
[그림 Ⅱ-3-2] 총인구 추이 및 연령별 인구구성	86
[그림 Ⅱ-3-3] 출산·육아응원교부금 급여진행절차	96
[그림 Ⅱ-3-4] 자녀양육지원 패스포트 사업 내용	99
[그림 Ⅲ-1-1]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표본 구성	110
[그림 Ⅲ-1-2]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 추적 및 추가 방식	111
[그림 Ⅲ-1-3]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조사 수행 절차	116
[그림 Ⅲ-3-1] KICCE 소비실태조사(2018~2024년) 표본 가구 수 및 추적률 ..	137
[그림 V-1-1]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2018~2023년)	176
[그림 Ⅶ-3-1] 월평균 생활비 지출액 분포 (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305
[그림 Ⅶ-3-2] 성인의 월평균 생활비 지출액 분포 (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성인 vs 무자녀 가구	306
[그림 Ⅸ-2-1] 아동 급여 지원 체계 정비 방안 (변경 전·후 비교)	376

1. 서론

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이 연구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연속과제로 진행 예정인 제Ⅱ기 ‘KICCE 소비실태조사’의 2차년도 연구로,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의 수행과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3’ 자료를 활용한 분석을 주요 연구 내용으로 함.
-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영유아 가구의 가계 경제 및 소비실태,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등을 파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통계자료로써,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7년에 걸친 방대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임.
 -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영유아 가구의 가계 경제 및 양육비용, 정부지원금 수혜 현황,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의 변화,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조사해왔으며, 매해 새롭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설문을 추가 구성하는 등 정책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 통계자료를 꾸준히 구축함.
 - ‘KICCE 소비실태조사’는 2024년 현재 시점에서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실태를 비목 수준에서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초 통계자료임.
 -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는 2018년 1차년도 조사 당시 0세(2018년 상반기 출생아)였던 조사 표본이 영유아기 마지막 년도인 6세¹⁾가 되는 해로, 출생코호트를 기준으로 영유아기 전 연령에 대한 조사 결과가 구축 완료되기 시작하는 첫해임.
 -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의 부스터 표본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임.
-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3’ 자료를 활용한 분석은 크게 기초 분석과 심층 분석으로 구분됨.
 -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및 소비실태, 육아서비스 활용 실태 및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시계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초 분석 통계자료를 제공함.

1) 생활연령(1월1일생 기준 만나이) 기준.

- 심층 분석은 2023년 부스터 표본 조사로 실시된 무자녀 가구의 소비실태와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를 비교 연구하며, 2023년 제도가 도입된 부모급여의 효과성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구성됨. 이를 통해 저출생 대응 정책 및 아동 급여 지원 체계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코자 함.

나. 연구 내용

- 2024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은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의 조사 수행과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3’ 자료를 활용한 분석으로 구성됨.
 -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3’ 자료를 활용한 분석은 다시 기초 분석과 주제별 심층 분석으로 구분됨.
 - 2024년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설문 및 연구 내용
연구 배경		동북아 지역 저출생 현황 및 영유아 가구 대상 육아지원 정책 비교 - 한국, 중국, 일본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	본조사 (연속조사)	조사개요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조사 - 추적(패널) 조사, 대체 표본, 신생아 신규 표본 구축 - 가구 특성 및 아동 특성 파악
		가계 경제 및 양육비용 영유아 가구 비용 지원 현황 - 영유아 관련 각종 지원금 수급 현황 영유아 가구 가계 소비 지출 및 양육비용 - 가구당 양육비용,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 가구 소비지출 현황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영유아기 육아서비스 이용 형태 및 정책적 요구 -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실태 -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실태 -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실태(가구용 설문) - 육아서비스 지원 요구
	2024년 시의성 설문	지역 사회 육아 환경 및 정책적 지원 필요
부스터표본 (부가조사)	본조사 표본 이외 추가 표집	농어촌 거주 영유아 가구 - 기본 설문은 본조사 설문과 동일 ※ 2024년 부스터 표본은 표본의 보강(분석을 위한 적정 관측치 확보)에 초점이 있으며, 설문 문항은 본조사 표본과 동일
이전차수 자료 활용	기초 분석	영유아 가구의 가계 경제 및 양육비용 실태 (시계열 분석 중심) - 생활비 지출 총액 및 주요 지수 - 영유아 양육비용 실태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및 지원 요구 (시계열 분석 중심)

구분	주요 설문 및 연구 내용
	- 영유아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변화 - 가정 내 돌봄 및 부모지원서비스 이용 행태 - 육아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 저출생 대응 및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 임신부, 무자녀, 영유아 가구 비교 - 육아시간 지원 정책 활용 현황 및 개선 요구 - 주거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정책적 요구 - 출산 의향 및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의견
주제별 심층 분석	영유아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소비실태 비교 - 2023년 본조사 및 부스터 표본(무자녀 가구)을 활용한 비교 연구 부모급여 지원이 양육비용 및 서비스 선택에 미친 영향 - 영유아 가구의 부모급여의 양육부담 경감 효과, 가정 양육 비중 변화 등을 고찰

주: 기초 분석 및 주제별 심층 분석은 기 구축 자료(2018년~2023년)를 활용한 분석임.

다.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설문 문항 작성과 심층 분석 등을 위해 관련 선행 연구 및 문헌 자료를 검토.

□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조사

-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조사는 이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이자 연구 방법임.

-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는 본조사(영유아 가구)와 부스터 표본으로 구분됨. 2024년 부스터 표본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임.

□ 2차 통계자료 및 기 구축 자료를 활용한 분석

- 기 구축이 완료된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총 6개년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초 분석 및 심층 분석을 수행함.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 연구의 방향 설정, 조사 설계, 설문 문항 수정 및 보완, 연구 결과의 타당성 검토, 정책 방안 도출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총 11회에 걸쳐 실시함.

□ 국외 출장을 통한 해외 사례 연구

- 한국과 마찬가지로 최근 심각한 저출생 현상으로 저출생 대응 정책이 확대, 강화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을 방문하여, 영유아 가구의 양육부담과 아동급여(비용 지원) 정책 및 저출생 대응 정책의 현황을 파악함.

- 중국 출장은 베이징(북경)을 중심으로 6월 10일~6월 13일(3박4일), 일본 출장은 도쿄(동경)를 중심으로 6월 25일~6월 28일(3박4일)에 진행됨.

라. 연구 범위 및 용어 정의

□ 양육비용 산출 기준 및 조작적 정의

-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양육비용은 크게 가구당 양육비용과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으로 구분됨.

- 양육비용에 포함되는 비목은 식비(외식비 포함), 기기/집기,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교통비, 통신비, 개인유지비(생필품 포함), (어린이)보험 총 10개 비목(세목포함 16개)임.

□ 기준 값의 실질 비용에서 명목 비용으로의 변경

- 2024년 연구부터는 명목비용을 기준 설정 값으로 함.

□ 육아서비스 범주 및 분류

-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육아서비스는 크게 반일제 이상 기관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이 있으며, 학원 등 총 8개 항목의 시간제 교육 서비스, 일시보육 등 총 3개의 기타 육아서비스, 가구용 설문에서 조사하는 개별돌봄서비스, 출산 휴가와 유연근무제도 등 육아시간 지원 서비스 5종, 부모 직접 돌봄 및 부모지원서비스 등으로 구성됨.

□ 무자녀 가구의 정의

-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의 무자녀 가구는 혼인지속기간이나 출산 계획 등과 무관하게 조사 시점 당시에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으며, 기혼 유배우자이면서 여성(배우자 혹은 본인)의 연령이 20~45세인 경우로 제한을 두어,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시점 기준 아이가 없는 가구로 정의함.

□ 농어촌 지역의 정의

-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연구에서 농어촌 지역이란,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속하는 지역을 의미하며, 도농복합지역을 제외한 순수한 농어촌 지역만을 부스터표본의 표집 대상 지역으로 삼음.

2. 연구 배경

가. 한국의 저출생 현황 및 대응 정책

□ 한국의 저출생 및 영유아 인구 현황

-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93년 1.654명이었으나, 3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에는 0.778명으로 심각하게 낮은 수준을 보임.
- 2000년~2015년 사이에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면서도 2~3년 간격으로 반등하는 해가 있었으나, 2015년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일 뿐 아니라, 감소폭이 매우 큰 특징을 보임.
- 시도별 영유아 수는 경기도가 60만8,742명(29.9%)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 31만8,405명(15.7%)으로, 45.6%의 영유아가 서울,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다른 시도 지역의 경우 10%이하의 낮은 비중을 보이며, 영유아 가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확인할 수 있음.

□ 한국의 저출생 대응 육아지원 정책 변화와 주요 내용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1차 기본계획부터 지속적으로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제도의 틀은 유지되는 형태를 띠고 있음.
- 저출산 기본계획은 보육 및 돌봄 지원 정책을 기초로, 가족 정책, 일가정 양립지원을 포괄하고 있으며, 보다 넓게는 일자리 지원과 청년층 지원, 주거 지원까지를 아우르는 지원 정책임.
- 저출산 기본계획은 초기에는 보육 정책과 임신·출산 지원 정책 위주의 제도 설계 방향을 가졌으나, 점차 아동 급여 지원 정책으로 확장되었으며, 최근에는 주거 지원과 육아 시간 등의 정책이 좀 더 강조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음.

□ 최근 한국의 육아지원 정책 동향

- 2023년과 2024년의 육아지원 정책이 가장 큰 변화는 부모급여의 도입과 가정양육수당의 대상범위 축소, 영유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금의 상향, 육아 시간 지원 정책의 확대 및 강화 등을 들 수 있음.

나. 중국의 저출생 현황 및 대응 정책

□ 중국의 저출생 및 관련 현황

- 중국 통계청 인구자료에 의하며 2023년 중국 전체 인구는 14억 967만 명이 며 이중 0~14세 인구는 2억 3063만 명으로 16.36%를 차지함.
- 중국의 출산율은 1950년에 5.81명에서 인구 제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 된 1980년에는 2.24명으로 낮아졌으며 2010년에는 1.63명까지 떨어졌으 며, 2020년 인구조사 결과 1.3명으로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저출생 대응 육아지원 정책 변화와 주요 내용

- 중국은 최근까지도 인구 억제정책을 실시하였으나, 급격한 저출산 현상으로 2013년에는 부모 모두가 한 자녀인 경우에는 두 자녀까지 출산을 허용하였 으며, 2016년부터는 제한 없이 모든 부부가 두 자녀를 출산하도록 인구제한 정책을 완화함.
- 중국의 개혁개방 전 계획경제 하에서 중국의 육아 정책은 단위(單位)를 중심 으로 시행되어 옴.
- 중국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영유아 가구의 상당수가 도시지역에 거주 하고 있는 상황이나, 현재 공적인 육아 지원이 부족한 데에다 후커우(戶口制 度, Hukou) 제도 등으로 배제되는 경우도 많아 영유아의 돌봄의 가족 책임 비중은 매우 높은 상황임.

□ 최근 중국의 육아지원 정책 동향

- 저출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중국의 공적시스템은 여러 부처로 분리되어 관리 되는 상황으로, 지원 대상 중 빈곤 및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는 민정부에서 담당하며 의료와 0~3세 영유아 대상 보육은 위생부에서 담당함.
- 4세 이후부터 취학 시기의 교육과 돌봄을 담당하는 주체는 교육부이며 지역 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9년(7~15세)의 의무교육 기간을 포함하여 안정적 으로 운영 제공되는 편임.
- 임신·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생육보험은 근로자의 휴가 사용과도 관련되 어 있어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도 지원함.

다. 일본의 저출생 현황 및 대응 정책

□ 일본의 저출생 및 영유아 인구 현황

-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989년에 1.57명까지 떨어져 일본정부는 저출생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으며, 2022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26명임.
- 2022년 기준 출생아동 수는 77만750명으로 나타남.

□ 일본의 저출생 대응 육아지원 정책 변화와 주요 내용

- 일본은 1989년 합계출생율 1.57명 쇼크를 계기로 5년, 10년을 주기로 다양한 대응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1990년~2004년 엔젤플랜과 신엔젤플랜을 통한 보육서비스 확충 정책이 실시되었으며, 2005년~2014년에는 청년층 자립 및 경제적 지원을 중시한 저출생 대응정책을 추진함.
- 2015년~2019년에는 결혼·임신·출산·아동양육 단계별 빈틈없는 지원을 강조한 저출생사회대책대강을 발표하였으며, 2016년~2025년에는 1억 총 활약플랜을 발표하여 수행 중임.
- 최근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한 고심 끝에 2023년 아동가정청을 설립하고, '아동미래전략' 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 최근 일본의 육아지원 정책 동향

- 최근 주요 육아지원 정책으로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 보편적 아동수당 정책 도입 및 연령 상향(18세까지) 조정, 출산육아일시금 제도 도입, 출산·육아응원교부금, 추산수당금, 육아휴업급부금 등의 제도를 운영 중이며,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영유아 의료비 조성 제도, 출산축하금, 자녀양육지원 패스포트 제도 등이 운영 중임.
- 육아시간 지원 정책으로 자녀 간호휴가 제도, 유연근무제 확대 강화 등이 추진 중임.

3.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조사 개요

가. 조사 설계

□ 표본 추적 및 구축

-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조사 표본은 크게 본조사 표본과 부스터 표본으로 구분됨.
 - 본조사 표본은 막내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를 표본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 응답 표본 가구를 추적 조사한 패널표본과 전년도 응답 표본 가구 중 추적에 실패한 표본을 대체하여 추가 표집되는 대체 표본, 전년도 하반기 출생아 및 당해연도 상반기 출생아를 신규 표집하여 추가한 신생아 표본으로 구성됨.
 - 부스터 표본은 특정 시점에만 별도 표본을 구성하여 횡단적으로 조사하는 자료로, 2024년에는 농어촌 지역(도농복합시 제외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 160가구(목표 표본 수)를 부스터 표본으로 추가 구축함.

□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조사 대상(표본)은 본조사와 부스터 표본(농어촌 영유아 가구 추가 표본)으로 구분되지만, 조사 설문은 기존의 본조사 설문을 수정, 보강하는 형태로 수행됨.

- 이에 따라 표본의 종류와 무관하게 조사 수행 절차는 기존의 본조사 수행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됨.

□ 조사도구는 종이설문(PAPI)이며, 조사 방식은 대면 면접조사임.

- 단, 설문의 유치 혹은 전화 조사 등 비대면 조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함.

□ 기존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조사 시기는 매년 5월 중순부터 8월 중순이었으나, 2024년 조사부터는 조사 기간을 7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로 조정함.

- 조사 시작 시점을 7월로 변경함에 따라 7월 도입 예정 정책을 포괄하는 형태로 설문 개발이 가능해지게 되었으며, 가중치 산출 및 데이터 클리닝을 완료한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표본 설계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자료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설문 구성과 변화

- 2024년 조사에서도 가구 및 부모, 자녀 특성에 관한 설문은 대부분 유지하였으며, 소비실태를 파악하는 가구의 소득과 지출도 기본적으로 유지함.
- 2024년(7차년도)에는 농어촌 가구를 부스터 표본으로 조사함에 따라 별도의 설문지를 만들지 않고 기존 설문에 일부 문항을 추가하는 형태로 조사함.
 - 단, 농어촌 가구와 기존 가구를 비교할 수 있는 문항과 농어촌에 특화된 설문을 일부 추가함.
- 그 외에는 조사 기간이 5~8월에서 7~10월로 미뤄짐에 따라 일부 문항의 기준 기간이 조정되었으며, 지자체 및 직장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문항 등이 추가됨.

다. 조사 결과

- ‘KICCE 소비실태조사’의 표본추적률은 2019년(75.4%)를 제외하고는 80%이상의 표본 추적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4년 87.0%의 표본추적률을 보임.
 - ‘KICCE 소비실태조사’의 표본추적률은 1차년도 표본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전년도 표본에 대한 추적 조사 성공률을 의미함.
 - 2024년의 추적 대상 표본의 수는 1,567가구이며, 신생아표본(2023년 하반기 출생아 및 2024년 상반기 출생아) 254가구를 더하여, 총 1,821가구를 조사함.
 - 추적에 성공한 조사표본은 1,568가구 중 1,364가구이며, 203가구가 조사됨.
 -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일반적인 가구패널 조사와는 달리 조사 표본이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아동 설문 조사 표본은 2024년 2,434명으로, 전년 대비 12명이 증가함.
 - 2024년 부스터표본은 최종 162가구가 조사되었음.

4. 영유아 가구의 가계 경제와 양육비용 실태

가.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 및 소득

- 영유아 가구의 특성별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은 명목비용 기준 1차년도(2018년) 311만9천원에서 2차년도(2019년) 328만원으로 증가했다가, 3차년도(2020년) 322만5천원으로 소폭 감소함. 이후 6차년도(2023년)까지는 377만5천원 수준으로 점차 증가함.
 - 엔젤지수 : 1차년도(2018년) 26.5에서 2차년도(2019년) 26.1로 소폭 하락했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시점인 3차년도(2020년)에 30.0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후 4차년도(2021년)부터 28%대 수준을 유지함.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슈바베지수 :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2032년 기준 8.2임.
 - 엔젤지수 : 1차년도(2018년)에 29.1, 2차년도(2019년)도부터 5차년도(2022년)까지는 전반적으로 26.5~27.2 사이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6차년도(2023년) 29.0으로 높게 나타남.
-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명목비용 기준 2018년 462만9천원에서 2020년 526만4천원까지 증가하다가 2021년 522만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3년에는 560만1천원 수준으로 다시 증가함.
 - 단, 최근의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인해 코로나19 이후 실질소득이 감소한 현상이 포착됨.
- 2023년도에 영유아 가구들의 공적이전소득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누리과정을 지원받은 아동은 61.4%, 보육료지원을 받은 아동은 33.8%, 가정양육수당 4.8%, 부모급여를 받은 아동은 0~1세 중 93.7%로 나타남.
 - 부모급여 활용처를 보면 대부분 ① 식비(외식비 포함), ⑥ 개인유지비(목욕/세탁 용품, 이미용 서비스, 기저귀, 화장품, 화장지 등)인 것으로 나타남.
 - 첫만남이용권 활용처도 대체로 부모급여와 마찬가지로 ① 식비(출생자녀 분유, 이유식비, 식재료 구입비 등)와 ⑥ 개인유지비(출생자녀 용·산모용 목욕/세탁 용품, 이미용 서비스, 기저귀, 영유아용 로션, 물티슈, 화장지 등)에 활용되며, 그 다음으로 ⑦ 산후조리비(산후조리원, 사후도우미 이용)등에 사용한다고 응답됨.

- 2019~2023년 세제혜택 수혜여부를 보면 자녀 기본 공제 수혜는 2021년 79.0%에서 2023년 74.0%까지 떨어짐. 자녀 장려금은 2023년에는 8.3%가 수급하였으며, 자녀 교육비소득공제 또한 수급율이 꾸준히 하락하였으나 2023년에는 30.3%로 증가함.
 - 자녀 장려금과 자녀교육비 소득공제는 가구소득 및 가구특성에 따라 세제 지원 대상이 결정되는 항목으로,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 내 저소득 가구의 비중이 감소하는 현상의 영향으로 이해됨.
 - 반면, 자녀 기본 소득공제는 해당 아동이 있으면 공제가 적용되는 사항인데, 이 비중이 낮아진다는 점은 세제 혜택에 대한 영유아 가구의 인지가 낮아지는 것의 영향으로 추측됨.

나.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실태

- 영유아 가구의 가구당 양육비용(실질비용)은 2023년 135만4천원으로, 2022년 127만3천원에 비해 크게 증가함.
 - 전년 대비 감소한 해는 2020년(118만원)과 2022년(127만3천원)으로,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교육/보육비 감소가 주요 원인이며, 2022년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음.
 - 월평균 가구당 양육비용 중 가장 지출액이 큰 비목은 ‘교육/보육비’로, 2023년 기준 월 평균 45만7천원을 지출함.
- 영유아 가구의 가구소득 대비 가구당 양육비용의 비중은 1차년도(2018년) 27.3%에서 6차년도(2023년) 28.8%로 다소 증가함.
-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명목비용) 변화를 살펴보면, 1차년도(2018년) 65만9천원에서 3차년도(2020년) 61만원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6차년도(2023년) 80만7천원으로 크게 증가함.
 - 자녀의 연령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를 보면 대체로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양육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생활비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 변화를 보면 2018년 20.8%에서 2020년 18.9%까지 하락했다가 2023년 21.3%까지 상승함.
 -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의 비중변화를 살펴보면, 2018년 15.8%에서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육/보육비가 감소한 것에 기인하여 12.7%까지 하락함. 이후 2021년 14.3%, 2022년 14.2%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15.6%로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됨.

5.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및 지원 요구

가. 영유아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 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2018년 51.1%에서 2023년 50.0%로 소폭 감소했고, 동 기간 유치원 이용 비율 역시 27.7%에서 27.0%로 소폭 감소함.
- 반면에 반일제이상 기관 미이용 비중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7.6%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점차 예년 수준으로 복귀하는 경향을 보임.
- 다만, 2022년과 2023년 반일제 이상 기관 미이용자 비중이 2021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는 양상이 발견되는데, 이는 2022년 영아수당의 도입과 2023년 부모급여 도입의 영향으로 사료됨.
- 이용 기관별로 영유아의 특별활동 이용 비중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3차년도(2020년)의 42.4%를 제외하면, 1차년도(2018년) 65.1%에서 6차년도(2023년) 73.9%로 꾸준히 증가함.
-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은 1차년도(2018년)부터 3차년도(2020년)까지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4차년도(2021년)부터 증가함.
-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주당 평균 이용 시간은 코로나19 확산 초기로 보육·교육기관 휴원 조치 및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어린이집은 35시간 내외, 유치원은 34시간 내외, 반일제 이상 학원은 30시간 내외인 것으로 조사됨.
- 2023년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하루 평균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7.1시간으로 나타났고, 반일제 이상 학원 등의 경우 6.1시간으로 나타남.
-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월평균 이용비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1차년도(2018년) 6만6천원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6차년도(2023년)에는 7만6천원이었음.
- 유치원의 경우 1차년도(2018년) 14만2천원부터 6차년도(2023년)까지 등락을 반복하지만, 2023년 13만3천원으로 1차년도보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됨.
- 반일제이상 학원 등의 경우 1차년도(2018년) 52만2천원에서 6차년도(2023년) 125만1천원까지 증가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비용이 큰 변동이 없었던 것에 비해 매우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시간제 교육

- 연도별 시간제 교육 이용을 살펴보면, 단시간 학원은 1차년도(2018년) 15.5%에서 6차년도(2023년) 23.1%까지 증가함.
- 방문형 학습지와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의 경우 1차년도(2018년)부터 4차년도(2021년)까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며 12%~15%대의 이용율을 보임.
- 문화센터는 2023년 기준 10.4%였으며,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과 비방문형 교구활동 교육은 2023년 기준 3.9%였으며,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이용률도 3.2%의 이용률을 보임.
- 시간제 교육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중은 59.3%임.
- 2023년도 영유아의 시간제 교육 유형별 이용 과목을 살펴보면, 단시간 학원의 경우 체육(62.3%), 미술(34.9%) 등 주로 예체능 과목을 이용하였으며, 방문형 학습지의 경우에는 한글(41.7%), 수학 및 과학(31.9%) 등이 많음.
-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의 경우 수학 및 과학이 31.9%로 가장 많았고 종합교과가 17.5%로 그 다음으로 많으며, 비방문형 학습지, 교구 활동교육의 경우 영어와 한글(23.9%), 수학 및 과학(23.8%)을 많이 이용함.
- 2023년 기준 시간제 교육 주당 이용 시간을 살펴보면, 단시간 학원은 4.2시간, 방문형 학습지 0.6시간, 방문형 교구활동 0.8시간, 비방문 학습지 및 교구활동 1.3시간, 개인 및 그룹지도 2.2시간, 문화센터 1.2시간,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1.8시간, EBS 등 교육관련 방송 시청이 1.8시간이었음.
- 시간제 교육 월평균 이용비용을 살펴보면, 단시간 학원 이용비용이 1차년도(2018년) 13만4천원이었으며, 6차년도(2023년) 19만7천원까지 증가함.
- 방문형 학습지의 경우 증감을 반복했으나 5차년도(2022년) 이후부터 9만원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방문 학습지 및 교구활동은 6차년도(2023년) 기준 11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함.
- 2023년 기준 개인 및 그룹지도 이용비용은 20만5천원으로, 다른 서비스에 비해 가장 높은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전년 대비로는 소폭 감소한 수치임.
- 문화센터 이용비용은 2023년 기준 월평균 6만원,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이용비용은 12만5천원이었음.

□ 기타 서비스

- 시간제 일시보육의 경우 이용 비중이 1차년도(2018) 1.9%에서 2차년도(2019년) 0.8%로 감소하는 등 6차년도(2023년)까지 2% 이내에서 증감을 반복함.
- 시간제 일시보육 월평균 비용은 1차년도(2018년)부터 5차년도(2022년)까지 7만원 아래를 유지하다가 6차년도(2023년)에 13만6천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됨. 단, 이용자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됨.
- 키즈카페의 경우 이용 비중이 1차년도(2018년) 66.7%, 2차년도(2019년) 57.7%로 높았으나, 3차년도(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4.7%로 급감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며 6차년도(2023년)에는 이용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55.2%에 달함.
- 월평균 이용 횟수는 1차년도(2018년)부터 5차년도(2022년) 1.5~2.0회를 유지하다가 6차년도(2023년)에는 3.0회로 증가했으며, 이용비용은 1만원 내외로 그다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됨.
- 비정기 체험활동을 하는 경우는 2023년 19.1%였으며, 이용 횟수는 월평균 2.6회기량이고, 회당 이용 시간은 2.3시간, 월평균 이용비용은 2만3천원임.

나. 가정 내 돌봄 및 부모지원서비스 이용 행태

□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행태

-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를 살펴보면, 조부모가 개별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서, 2023년 기준 67.2%임.
-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의 경우 2차년도(2019년) 17.9%에서 3차년도(2020년) 4.9%로 급감 후 6차년도(2023년)에 32.8%로 크게 증가함.
- 민간 육아도우미의 경우 3차년도(2020년) 3.5%와 4차년도(2021년) 6.5%를 제외하면 매년 8.4~8.7% 수준을 유지.
-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은 3차년도(2020년) 11.9%에서 6차년도(2023년) 7.5%까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개별돌봄서비스 주당 평균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의 경우 3차년도(2020년)부터 5차년도(2022년)까지 감소하다가 6차년도(2023년)에 32.4시간으로 전년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함.

- 민간 육아도우미와 조부모 돌봄의 경우 2차년도(2019년) 각각 28.8시간, 27.4시간에서 6차년도(2023년) 각각 16.3시간, 18.9시간으로 매년 감소.
- 개별돌봄서비스 월평균 이용비용은 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의 비용이 매년 가장 높았으나, 2차년도(2019년) 81만7천원에서 6차년도(2023년) 52만8천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가정 내 부모 직접 돌봄

- 하루 평균 가정 내 양육 시간을 살펴보면, 대체로 평일에는 8시간 내외였으며, 주말의 경우 13시간 내외임.
- 가정 내 양육 시간의 대부분은 부모가 직접 돌보는 시간으로, 2023년 기준 부모 직접 돌봄 시간은 평일 7.82시간, 주말 12.84시간임.
- 영유아 자녀의 미디어 이용시간은 2023년 기준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여, 평일 1.16시간, 주말 1.78시간인 것으로 조사됨.
- 2023년 기준 장난감 대여 서비스는 8.9%, 도서 대여는 18.1%가 이용하여, 전년에 비해 증가함.
- 장난감 대여 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가장 많았고, 도서 대여의 경우에는 공공시설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
-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10.2%로 높은 편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 6.0%까지 감소함.

□ 부모 지원 서비스

- 부모교육의 경우 이용경험이 2021년 7.7%에서 2023년 14.7%까지 매년 증가하였으나, 이용 횟수는 감소함.
- 부모상담의 경우 이용경험이 2021년 11.4%에서 2023년 21.3%까지 매년 증가했고, 이용횟수는 1.4회를 유지함.
- 육아멘토의 경우 이용경험은 3개년 모두 1.0% 이하로 가장 낮았지만 이용 횟수는 2.1회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부모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살펴보면,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을 통한 경우가 가장 많음.
- 부모교육 서비스 내용은 양육방법에 대한 것이 가장 많았고, 부모상담과 육아멘토의 경우에는 영유아 성장발달 정보에 관한 것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다. 육아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가 아닌 경우 실제로 희망하는 양육형태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유치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가 아닌 경우 실제 원하는 양육형태로 양육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모든 조사기간에 걸쳐 '일을 하고 있어서'라는 이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유치원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가 아닌 경우 실제로 희망하는 양육형태는 부모 직접 돌봄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음.
- 정부 지원 부족 부분을 살펴보면, 양육수당 등 현금 지원에서 부족함을 느끼다고 응답한 비율은 1차년도(2018년) 이후 계속해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 육아 지원이 부족한 시기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10.9%가 임신·출산 시기에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32.4%가 영아기(출생~24개월 이하), 56.7%가 유아기(24개월~초등학교 입학 전)라고 응답함.

6. 저출생 대응 및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 임신부, 무자녀, 영유아 가구 비교

가. 육아시간 지원 정책 활용 현황 및 개선 요구

- 출산 및 육아휴직 등(영유아 가구, 임신부 가구)
 - 임신부 가구 부의 응답을 보면 출산휴가를 계획한 경우가 56.0%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육아휴직은 3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4.3%로 나타난 반면, 영유아 가구의 2023년 이용경험 비중을 보면 출산휴가는 10.1%, 육아휴직은 4.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로 나타남.
 - 하지만 영유아 가구 부모의 휴가·휴직 이용경험을 중단적으로 살펴보면, 이용율이 증가했다는 것이 확인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결과 30~33시간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부가 모보다 최종 근무시간이 다소 긴 가운데 영유아 가구보다는 임신부 가구의 근로시간이 더 짧은 것을 알 수 있음.

-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긴 하나, 다음으로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다거나 직장상사와 동료의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가족돌봄제도(영유아 가구)

- 영유아 가구 대상 2023년 기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한 부는 0.5%, 모는 0.8%임. 가족돌봄휴가의 이용 경험 비중은 가족돌봄휴직보다는 높아서 부는 3.4%, 모는 5.1%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코로나19 영향이 있었던 2020년(4차년도)에 이용 비중이 다소 높았으며, 가족돌봄휴가는 최근으로 올수록 이용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종 근로한 시간(2023년 주당)은 부의 경우 29.5시간, 모는 28.8시간으로 모가 1시간 정도 부모보다 짧음.

□ 직장 지원 제도(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 법정 제도 외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영유아 가구 부모의 경우 각각 12.9%, 16.5%로 나타남. 임산부 가구의 부모의 응답 비중은 각각 22.2%, 32.7%로 영유아 가구에 비해 10%p 이상 높음.
- 법정 제도 외 회사에서 지원하는 육아시간 지원 제도 중 근로시간 단축 활용 경험은 영유아 가구 부는 8.6%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데 비해 모의 경우는 32.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육아휴직의 경우 영유아 가구 부모 각각 2.4%, 24.5%가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자녀돌봄 휴가의 경우 영유아 가구 부모 각각 8.3%, 14.4%가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임산부 가구 부모에게 이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부모 모두 공통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지원의 경우 60~70%, 육아 휴직과 자녀돌봄 휴가의 경우 80~90%가 이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여 영유아 가구의 이용경험에 비교할 때 높은 수치를 보임.

□ 유연근무제도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

-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도의 이용 경험에 대해 2023년 조사 자료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재택근무제의 이용 경험 비중이 가장 높고 이어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로제,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탄력적 근무제 순으로 나타남.

- 모든 제도에서 영유아 가구보다는 임신부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이용 경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부 보다는 모의 이용 비중이 높음.
- 영유아 가구 부모의 유연근무제도 이용 경험을 4~6차년도 자료를 통해 종단적으로 살펴보면, 재택근무의 경우 4차년도와 5차년도에는 10% 이상의 이용 비중을 보이다가 6차년도에는 부모 각각 7.3%, 9.7%로 낮아짐.
- 원격근무의 경우도 4차년도에 비해 6차년도 이용 비중이 낮은 경향을 보임.
- 한편, 시차출퇴근제와 선택근로제는 4차년도와 6차년도를 비교했을 때 이용 비중이 낮아지지 않은 특성을 보임.

□ 개선이 필요한 육아 시간 지원 정책

- 1+2순위 조사 결과, 영유아 가구의 경우 가족돌봄휴직/휴가가 53.6%로 가장 높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6.5%, 육아휴직 46.4%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임신부 가구는 육아휴직이 66.9%로 가장 높았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3.5%, 가족돌봄휴직/휴가가 40.6%로 나타남.
- 가족돌봄휴직/휴가의 개선방향을 조사한 결과(1+2순위), ‘휴가/휴직 사용 일수, 사용 시간의 연장’이 영유아와 임신부 가구 모두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육아휴직의 개선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1+2순위)를 보면, 영유아 가구와 임신부 가구 모두 ‘비용 지원의 확대(급여 대체율 등)’가 각각 52.0% 65.4%로 높게 나타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1+2순위)를 보면, ‘자격 해당자의 제도사용 의무화(정부가 강제)’가 약 50%의 응답 비중을 차지해 가장 높음.
- 출산휴가의 개선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1+2순위)를 보면, ‘비용 지원의 확대(급여 대체율 등)’와 ‘휴가/휴직 사용 일수, 사용 시간의 연장’이 영유아와 임신부 가구 모두에서 50% 가량의 응답 비중을 보여 높게 나타남.
- 유연근무의 개선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1+2순위) ‘자격 해당자의 제도사용 의무화(정부가 강제)’가 50% 가량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나. 주거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정책적 요구

-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기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영유아 가구는 3.3점으로 나타났으며, 임신부 가구 3.2점, 무자녀 가구는 3.1점으로 영유아 가구가 가장 높고 임신부, 무자녀 순으로 나타남.

- 영유아 가구의 경우 2018년도의 점수와 비교해 보면 2018년 3.1점에서 3.3점으로 다소 높아진 것으로 확인됨.
- 거주지에 살게 된 계기가 자녀의 출산 혹은 양육과 관련되어 있는지 영유아 가구와 임산부 가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유아 가구의 40.0%, 임산부 가구의 48.3%가 관련되어 있다고 응답함.
 - 거주지 선택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영유아 가구의 경우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가 35.2%로 가장 높았으며, 임산부 가구의 경우도 영유아 가구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아이를 돌봐줄 친인척(혹은 아이돌보미)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의 응답 비중이 영유아 가구에 비해 높았음.
- 향후 5년 이내에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이사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영유아 가구의 44.4%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임산부 가구는 68.4%, 무자녀 가구는 56.8%가 의사가 있다고 응답함.
 - 이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이사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영유아 가구의 경우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가 35.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아이를 키우기에 적당한 규모(협소하지 않은) 집에 살기 위해서' 21.7%,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유해시설이 적거나, 자연친화적, 공원/놀이시설이 가까워서)' 21.4% 순으로 분석됨.
-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주거지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영유아, 임산부, 무자녀 가구 모두 공통적으로 '주거지역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유해시설이 없거나, 범죄율이 낮은 지역 등)'이 30% 이상으로 가장 높음.
 - 그 다음의 응답 항목은 차이를 보여 영유아 가구와 임산부 가구의 경우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환경이 좋은 곳'이 높게 나타난 반면 무자녀 가구는 '아동 관련 인프라가 많은 곳(공연장, 문화센터, 도서관, 종합병원, 소아과 등)'이 높게 나타남.
-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제도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영유아 가구와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단, 장기전세주택,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인지도는 영유아 가구는 40% 이상인데 반해 임산부 가구와 무자녀 가구는 20% 이하의 낮은 인지도를 보임.

- 신청 경험은 전반적으로 영유아 가구에 비해 임신부 및 무자녀 가구의 경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60% 이상의 인지도를 보여, 주거 지원 정책에 비해 좀 더 높은 인지도를 보임.
 -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정책 신청 경험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신청 경험 비중이 30% 정도로 높았으며, 주거 지원 정책에 비해 높은 경험율을 보임.
- 정부의 신혼부부 및 영유아 가구 대상 주거 지원 정책이 신혼부부의 출산결정 도움 정도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조사한 결과, 1+2순위 기준 '지원 대상 조건이 까다로워, 자격 조건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 항목의 응답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음.

다. 출산 의향 및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의견

- 자녀 출산 후 양육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조사한 결과, 임신부, 무자녀 가구 공통적으로 '생활비를 줄여서 해결할 계획임'의 응답 비중이 약 60%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기존에 저축해 둔 돈을 씀(보험 해지 포함)'이 약 20%로 높게 나타남.
- 자녀가 생긴다면 가구의 소비 지출을 얼마나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임신부 가구는 '현재 가구 소비 지출 총액의 20% 미만' 항목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무자녀 가구는 '현재 가구 소비 지출 총액의 20% 이상 40% 미만' 항목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음.
 - 특히 무자녀 가구 중 출산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들은 다른 가구들에 비해 '현재 가구 소비 지출 총액의 40% 이상 60% 미만' 항목과 '현재 가구 소비 지출 총액의 60% 이상' 항목의 응답 비중이 높음.
 - 즉, 임신부 가구에 비해 무자녀가구 특히, 출산 의향이 없는 무자녀 가구들은 자녀 출산 후 줄여야 할 소비 지출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자녀 출산 의향이 있는 무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첫 자녀 출산 후 월평균 소득 변화 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높고 외벌이 가구는 변동이 없거나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높음.
 - 첫 자녀 출산 후 월평균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 무자녀 가구(출산 의향이 있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 감소 이유는 '부모 중 한 명이 일을 그만 둘 예정이어서'가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휴직 예정이어서' 26.4%,

‘부모 중 한명 이상 현재 직장에서의 근로시간을 줄일 예정이어서’ 20.3% 순임.

□ 무자녀 가구 중 출산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에 한해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1+2+3순위)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서’가 60.8%로 가장 높았으며, ‘육아 및 자녀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가 51.4%로 다음을 차지함.

- 이어 ‘개인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서’ 32.4%, ‘소득이 적어서’ 28.8%, ‘자녀를 돌볼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24.2%, ‘일자리가 불안정해서(실업, 비정규직, 일용직 등의 고용불안정)’ 20.1% 순임.

□ 무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아이 1명을 출산하여 양육하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세후)이 최소한 어느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월 600만원이상 되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월 평균 500~600만원 미만, 월 평균 400~500만원 미만 순임.

□ 임신부 가구에 자녀를 임신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서’가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그냥 생겨서’ 20.7%,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보람 등 심리적인 만족 때문에/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보람’ 14.7% 순으로 응답함.

- 무자녀 가구에 출산을 희망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의 응답 비중이 33.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보람 등 심리적인 만족 때문에/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보람’이 28.4%로 높음.

□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영유아 자녀 양육과정 중 가장 부담되는 비목에 대해 모든 해에서 교육/보육비의 비중이 32.5%~5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식비가 15.5%~28.7% 순임.

- 임신부 가구, 무자녀 가구(출산 의향이 있는 경우)의 경우에도 교육보육비와 식비가 부담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됨.

□ 임신부와 무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출산 및 양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비용지원(보육료, 유아학비지원, 부모급여 등)’, ‘육아기 부모의 근로시간단축 또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근무’의 응답 비중(1+2순위)이 40~50% 전후로 높게 나타남.

- 삶의 만족도는 대체로 3점대 이상으로 보통수준을 보임.
 - 영유아 가구의 삶의 만족도가 임신부, 무자녀 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편으로 가구의 경제적 수준, 주거환경, 가족관계, 자녀돌봄, 사회적 친분관계, 자아성취, 전반적 생활만족도 모두 높았음.
 - 단, 여가생활 항목에서는 무자녀 가구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음.

7. 영유아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소비실태 비교

가. 분석 목적 및 분석 자료

-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가 직면하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가중되는지를 유추해보고, 양육비용에 대한 무자녀 가구와 임신부 가구의 인식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무자녀 가구의 출산 지연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코자 함.
-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의 본조사(영유아 가구)와 부스터표본 중 무자녀 가구 조사 원자료임.
 -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의 본조사(영유아 가구) 응답자 수는 1,773가구이며, 무자녀 가구는 817가구임.

나. 무자녀 가구와 영유아 가구의 소비지출 비교

-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지출액은 377만5천원으로, 무자녀 가구 355만원에 비해 22만5천원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액 중에서 자녀에게 소요된 양육비용을 제외하고 성인 가구원의 생활비 지출액을 산출해 본 결과, 월평균 226만9천원으로 무자녀 가구에 비해 128만1천원이 적음.
 - 비목별로는 영유아 가구 전체 비목별 생활비 대비 무자녀 가구들은 식비 총액은 더 적게 지출하였으나, 외식비 지출 비용은 많았으며, 주거/관리비와 기기/집기, 피복비, 보건/의료비, 여가문화생활비, 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이용비,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이용비 등이 높음.
- 영유아 가구의 전체 생활비와 무자녀 가구의 생활비 지출액 분포를 살펴보면, 무자녀 가구의 경우 왼쪽으로 살짝 편포되어 있으나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가진

형태의 분포를 보이는데 반해, 영유아 가구는 정규분포에 근접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무자녀 가구들의 생활비 지출 패턴이 영유아 가구에 비해 상당히 이질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함.
 - 영유아 가구의 성인에 대한 지출액은 높게 솟은 정규 분포와 거의 일치하는 형태의 분포를 보이며, 오른쪽으로 짧은 꼬리를 가지고 있음. 이는 영유아 가구의 성인에 대한 지출액은 가구 특성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집단 내에서 매우 동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영유아 가구들은 자녀가 초등학교 시기 월평균 양육비용을 85만4천원,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141만6천원이 들 것으로 생각한 반면, 무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시기에는 145만1천원,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210만1천원이 들 것 같다고 응답하여, 영유아 가구에 비해 약 1.5배이상 양육비용이 더 들 것이라고 응답함.
- 무자녀 가구들은 영유아기 양육비용에 대해서도 실제 양육비용 지출액인 영아기 71만6천원, 유아기 89만6천원보다 각 19만1천원, 17만4천원이 높은 90만7천원과 107만원이라고 응답함.
 - 영유아 가구와 무자녀 가구 사이에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예상액은 실제로 큰 차이를 보이며, 무자녀 가구들이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다소 과장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다. 성인의 소비지출 결정 요인

- 영유아 가구 뿐 아니라 무자녀 가구의 성인의 소비지출액에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소득임.
- 이 외에 영유아 가구의 경우 부연령이 많을수록 성인의 소비지출액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수 값이 0.008에 불과하여 그 차이가 큰 수치는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음.
 - 총 가구원수의 경우 영유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성인의 소비지출액이 줄어드는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됨. 이는 자녀 양육비용 부담이 커짐에 따라 성인의 소비지출액이 감소하는 현상을 잘 보여줌.
 - 무자녀 가구 여부는 매우 유의미한 양수로, 무자녀 가구의 성인들은 영유아 가구의 성인에 비해 소비지출액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높은 현상이 발견됨.

- 비목별 성인의 소비지출액을 종속변수로 하는 경우에도 가구소득만이 유일하게 일관될 뿐 아니라 모든 비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였음.
 - 무자녀 가구 여부는 대부분의 비목에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이 발견되긴 하나, 교통비와 통신비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음수였으며, 보험료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 가구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무자녀 가구의 성인들은 영유아 가구 성인에 비해 대부분의 비목에서의 소비지출액이 컸으나, 교통비와 통신비의 경우에는 오히려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때, 비목별 추정 결과에서 무자녀 가구 여부 변수의 계수값이 컸던 비목은 여가문화생활비와 기기/집기 구매비용으로, 영유아 가구의 성인들은 무자녀 가구 성인에 비해 개인의 취미활동 및 문화적 생활에 좀 더 제약이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음.

라. 무자녀 가구의 예상 양육비용과 출산 의향과의 관계

- 영유아 가구와 무자녀 가구가 ‘아동의 연령대별로 예상하는 양육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성인의 소비지출에서와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이 모든 경우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무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각 시기별 예상 양육비용이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다소 유의도가 낮은 특성을 보임.
 - 전체 표본(pooling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무자녀 가구여부는 중고등학교기 뿐 아니라 초등학교기에도 유의미한 양수로, 영유아 가구에 비해 무자녀 가구가 가구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예상 양육비용을 높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음.
- 무자녀 가구 중에서 출산 의향에 따라 예상 양육비용이 체계적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출산 의향은 예상 양육비용에 전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예상 양육비용이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로짓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모든 아동 연령구간의 예상 양육비용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즉, 무자녀 가구의 양육비용에 대한 예상액은 전반적으로 출산 의향과는 무관한 경향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자녀 가구들이 양육비용을 실제 혹은 영유아 가구의 예상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생각하는 경향성에 기인한 것으로, 양육비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출산 의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무자녀 가구들은 전반적으로 양육비용을 높게 생각하여 출산으로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포기되었음을 반증하고 있음.

8. 부모급여 지원이 양육비용 및 서비스 선택에 미친 영향

가. 분석 목적

- 2023년 양육비용 부담 완화 및 영아기 집중 투자의 맥락에서 부모급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24년 이를 더욱 강화 확대됨.
 - 한국은 아동 대상 급여 제도의 도입이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은 편으로, 2018년 9월 아동수당이 도입되면서 아동 급여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19년부터 소득 기준 적용이 사라짐에 따라 보편 지원의 틀을 갖추게 됨.
 - 부모급여의 지원 대상은 1세(23개월)이하 영아이긴 하나, 2023년도에 도입 당시 2022년생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도록 하는 기준에 따라, 실제 2021년생 중 월령이 23개월 이하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을 활용하여, 영유아 가구가 보육료가 아닌 현금 급여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나아가 현금 급여의 증가가 실제 지원 대상 아동의 양육비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나. 분석 자료

-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의 본조사(영유아 가구) 자료 중 2021년생부터 2023년생까지의 자료임.
 - 부모급여 및 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의 월별 수급 여부를 가구 설문에서 아동 별로 조사가 된 문항으로, 해당 자료는 아동 단위로 자료를 변환한 것임.
 -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아동 관련 주요 급여 수급 여부를 월별로 조사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데이터가 수집된 마지막 월인 2023년 4월 기준 수급 여부를 기준으로 분석함.

- 분석에 활용된 관측치는 786명으로, 부모급여 수급 대상인 2022년 이후 출생아가 443명, 부모급여 비수급가구인 2021년생이 343명임.

다. 부모급여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친 요인

□ 현금 급여 수급자란, 0세 부모급여(현금), 1세 부모급여(현금), 가정양육수당 수급자를 지칭함.

- 현금 급여 수급 여부는 가정 양육을 선택하는 확률을 대리하고 있는 변수.

□ 전체 분석 대상 기준 현금 급여 수급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맞벌이 가구 여부와 가구소득, 중소도시 거주여부, 아동의 월령 등임.

-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에 비해 가정양육 확률이 낮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정양육 확률도 10% 유의수준에 낮은 것으로 분석됨.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오히려 현금 급여를 수급(가정양육)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월령이 높을수록 가정 양육 확률이 낮음.

- 분석 대상을 부모급여 지원 대상인 2022년생 이후만을 남겨서 동일한 분석을 실시한 경우, 맞벌이 여부와 아동의 월령만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 외에 다른 가구 특성과 아동 특성은 기관 선택 여부에 그다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한 발견이라 볼 수 있음.

- 부모급여 지원 대상이 아닌 2021년생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약간 다른 경향성이 발견됨.

- 2021년생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에 비해 실제 수급액(지원금)이 많긴 하나 현금 급여는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임.
- 가구소득, 모연령, 중소도시 거주 여부, 아동의 월령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으며, 부모급여 지원 대상들과는 달리 맞벌이 여부에 따른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음.

□ 2022년생 이후 출생아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부모급여의 종류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한 결과, 아동의 월령이 높을수록 0세 부모급여(현금)을 선택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 0세 부모급여 지원 대상의 경우 어떤 형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금액이 전혀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는 급여 종류 선택에 있어 일정한 패턴이 발견되지 않고 자유로운 선택이 이뤄지고 있음.
- 반면, 1세 부모급여(현금)을 선택 확률에는 맞벌이 가구 여부, 부의 학력(대학원 이상), 중소도시 거주여부, 아동의 월령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1세 부모급여(바우처)의 경우에는 맞벌이 여부, 중소도시 거주여부, 아동의 월령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라. 부모급여 수급이 아동 당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

- 부모급여 수급이 아동 당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맞벌이 가구 여부, 가구소득, 총 가구원 수, 부모 학력, 아동 월령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결과는 아동 양육비용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분석 결과임.
- 현금 급여의 효과와 관련된 변수는 현금 급여 수급 여부를 투입한 모형1, 현금 급여 수금액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형2, 급여 종류를 구분하여 투입한 모형3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분석 결과, 부모급여 지원은 아동 당 양육비용에는 그다지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현금 급여를 지원받은 경우와 어린이집 이용자(보육료 지원)의 경우 아동 당 양육비용은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금 급여액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형2에서도 유의미한 효과를 발견되지 않음.
 - 다만, 급여 종류를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형3에서 0세 부모급여(현금)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발견됨.
 - 즉, 2023년 도입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은 0세 아동(2022년 5월생~ 2023년 4월생) 중 전액 현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른 급여를 지원받은 경우에 비해 아동 당 양육비용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종속변수를 비목별 아동 당 양육비용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식비의 경우에는 0세 부모급여(현금), 1세 부모급여(현금), 1세 부모급여(바우처)인 경우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발견됨.

- 기기/집기의 경우 1세 부모급여(바우처)를 지급하는 경우 음의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었으며, 피복비의 경우에는 0-1세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가 다른 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개인유지비(기저귀, 목욕용품, 이발 비용 등을 포함)의 경우 0세 부모급여(현금), 0세 부모급여(현금+바우처), 1세 부모급여(바우처)를 지급하는 경우 10% 유의수준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양육비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문화생활비, 통신비, 보험료 등은 급여 종류에 따른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음.

9. 결론 및 제언

가.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정책

□ 필수 육아용품에 대한 물가 관리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소비자물가의 급격한 상승의 영향으로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음.
-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 육아 필수재 및 필수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물가 관리가 필요.
-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육아용품에 대한 물가 조절이 어려운 경우, 저소득 가구 등 취약 가구에 대해서는 육아 필수재(예 : 분유, 기저귀 등)를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영유아 가구가 아동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
 - 일시적이고 긴급하게 지원이 요구되는 집단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 아동 급여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일정 정도의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

□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과후 과정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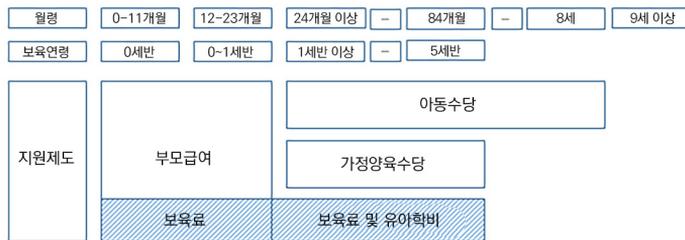
- 교육부가 2023년 6월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상당 부분이 현재 이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상황으로, 이러한 사교육 경감 대책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영유아기 과도한 사교육 이용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놀이 중심의 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 이용을 줄여가는 방향으로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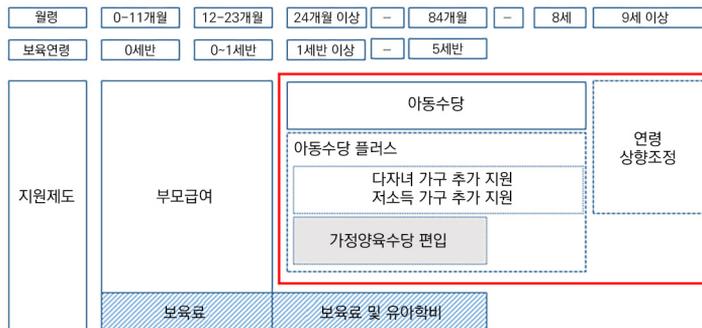
나. 아동 권리 보장에 초점을 둔 비용 지원 체계 정비

- 가정양육수당의 아동수당으로의 편입, 아동 당 투입 비용을 고려한 아동수당 플러스 제도 신설,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 검토 등을 제언함.
 - 아동 급여 지원 체계 정비 필요와 관련된 이 연구의 결과를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변경 전>



<변경 후>



□ 유보통합을 고려한 비용 지원 체계 정비 및 운영시간 보장

- 기존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어린이집의 이용비용(소비자 부담분)이 상승하지 않을 수 있는 비용 지원 체계의 구축.
- 유치원의 경우에도 기존보다는 긴 시간 돌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체계 마련.
-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적정 수준의 비용 지원 체계의 수립이 요구됨.

다. 육아시간 지원 제도 확대

□ 유연근무제 확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유연근로의 확장은 영유아 가구의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무자녀 가구의 시간 활용에 대한 장벽을 완화하여 출산 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제도 확장 노력이 필요함.

□ 기업 참여 활성화를 통한 육아시간 지원 제도 확장

- 애초 제도 활용이 어려운 집단에게는 정책 강화의 영향이 체감되지 않는 상황임.
- 육아시간 지원 제도의 강화와 확대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 혹은 사용을 제고 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사용을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임.
- 현재 추진 중인 육아시간 지원 제도의 보장 범위 확대, 강화와 함께 육아휴직 등을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법제 검토, 일본과 같이 부모를 넘어선 가족(조부모)의 육아시간 지원 제도 도입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직 함.
- 육아휴직 제도 활용율이 높은 기업 등에 대한 세제(법인세) 혜택을 도입하는 방안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라. 저출생 대응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주거 지원 정책 실효성 제고

- 최근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의 강화는 저출생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무자녀 가구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정책적 변화라 사료됨.

- 다만, 현재 정부가 제시한 수준이 실질적으로 무자녀 가구의 출산 의향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의 변화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여짐.
- 영유아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구매 가격이나 자격 조건 등에 대한 요구가 높긴 하나,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의 특성이 뚜렷하여 일반적인 양적 확대만으로는 정책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됨.
 - 영유아 가구는 아동을 키우기에 안전하고 교육여건이 좋은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정부의 주거 지원 대책에서 신규 분양 등 양적 확대 뿐 아니라, 거주지 내 아이를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 조성 과 교육 여건 및 보육 인프라 등을 함께 확충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과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영유아 가구 부모의 문화적 삶 보장을 위한 지원 신설

- 아동 혹은 아동의 가구를 지원하는 일반적인 육아 지원 방안과는 약간의 괴리감이 있긴 하나, 영유아 가구의 부모가 일반적인 성인이 즐기는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즉 영유아 가구의 부모에 대한 문화적 지원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 무자녀 가구의 출산의향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 발굴

- 무자녀 가구의 출산 의향을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양육비용 과도한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인식 개선 혹은 정책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육아시간 지원 정책의 강화와 영유아 가구의 부모에 대한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은 간접적으로나마 무자녀 가구로 하여금 자유로운 시간 사용 및 개인 생활이 불가능할 것이 심리적 장벽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최근 무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는 무자녀 가구의 출산 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여러 가지 제약과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가구의 삶의 만족도가 임신부 가구나 무자녀 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다는 점은 향후 저출생 지원 대책의 방향성 설정과 지원 방안 모색 시 깊이 숙고하여 참고해 볼 만한 지점이라 사료됨.

Part I

서론 및 연구 배경

I

서론

- 0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02 연구 내용
- 03 연구 방법
- 04 보고서 구성 및 연구 추진 과정
- 05 연구 범위 및 용어 정의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연속과제로 진행 예정인 제Ⅱ기 ‘KICCE 소비실태조사’의 2차년도 연구로,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의 수행과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3’ 자료를 활용한 분석을 주요 연구 내용으로 한다.

가.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의 조사 목적 및 필요성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영유아 가구의 가계 경제 및 소비실태,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등을 파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통계자료로써,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6년에 걸친 방대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다(최효미 외, 2023).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영유아 가구의 가계 경제 및 양육비용, 정부지원금 수혜 현황,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의 변화,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조사해왔으며, 매해 새롭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설문을 추가 구성하는 등 정책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 통계자료를 꾸준히 구축해왔다. ‘KICCE 소비실태조사’는 2024년 현재 시점에서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실태를 비목 수준에서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초 통계자료이다. 또, 2023년부터 시작된 Ⅱ기 조사는 부스터 표본 조사를 통해 기존의 ‘KICCE 소비실태조사’가 가진 표본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연구에 활용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올해 조사인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는 두 가지 지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는 7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로, 2018년 1차년도 조사 당시 0세(2018년 상반기 출생아)였던 조사 표본이 영유아기 마지막 년도인 6세²⁾가 되는 해이다. 즉, 출생코호트를 기준으로 영유아기 전 연령에 대한 조사 결과가 구축 완료되기 시작하는 첫해라는 점에서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는 의미가 있다.

2) 생활연령(1월1일생 기준 만나이) 기준.

둘째, 농어촌 지역에 거주 영유아 가구를 부스터 표본으로 추가 표집하여 조사함으로써, 지역 사회 육아 환경 혹은 취약 지역에 대한 연구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읍면지역 거주자 표본 수가 많지 않아, 지역 특성에 따른 차이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KICCE 소비실태조사’는 1차년도 표집 당시 지역 규모별 아동수를 감안하여 표집을 실시하였으며(최효미 외, 2018: 83~85), 1차년도 조사구가 확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표집 조사구에 변화는 없었다. ‘KICCE 소비실태조사’는 기본적인 조사의 구조가 이전년도 응답 가구에 대한 추적 조사(패널 조사)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당해연도 추적 조사 대상 가구에 대한 조사가 실패한 경우 대체 표본을 추가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때 대체 표본은 기존 조사의 표본 특성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조사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1차년도 조사구 내에서 발굴하여 대체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최효미 외, 2023: 87). 따라서, 이사 등의 이유로 표집 조사구를 벗어났으나 추적 조사에 성공한 일부 표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표본이 1차년도 표집 조사구에 속한 상태이다.

그러나, 7년의 기간이 지나면서 조사구(지역)의 특성이 상당 부분 변화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조사 표본이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를 여전히 잘 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젊은 세대의 수도권 집중 현상, 지역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한 심각한 수준의 인력 유출 등으로 실제 농어촌 지역의 육아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 대한 각별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은설 외(2023: 75~98)에 따르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들은 의료시설의 부족, 긴급/일시 돌봄/연장 보육 서비스의 부족, 정보 공유의 어려움, 모의 독박육아와 소외감, 육아물품 구매의 불편함, 교육 및 문화시설의 낮은 접근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임신·출산 인프라에 초점을 맞춘 연구인 이재희 외(2022: 159)도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영아(24개월 이하) 가구들은 지역 내 임신·출산 인프라 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 이재희 외(2022: 165)는 지역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의료시설 및 임신·출산 관련 인프라 뿐 아니라,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인프라, 방과후 돌봄 관련 인프라, 생활 및 문화 인프라, 교육 및 학습 환경에 대한 평가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현상이 발견된다고 하였다.

통상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영유아 가구의 가구소득 수준도 낮은 특징을 보인다(최효미 외, 2023: 128). 전반적인 육아 인프라의 양적 충분성이 확보되지 못하는데다, 접근성 또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가구소득 수준도 낮은 농어촌 지역 영유아 가구들은 양육비용 부담의 가중 혹은 자녀에 대한 투입의 감소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농어촌 지역은 지역 내 생산 가능 인구 및 영유아 수와 지역 총생산의 규모가 작아, 육아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재정적 여력 자체가 크지 않은 고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농어촌 지역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실제 가계 지출 및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등을 보다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근거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런데, 기존의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읍면 지역 거주 영유아 가구 수는 2023년 조사 기준 231가구로, 전체 표본 1,773 가구의 13.0%에 불과하다(최효미 외, 2023: 122~123). 이러한 비중은 지역규모별 영유아 인구 분포를 반영한 표본의 수 이기는 하나, 읍면 지역 거주 영유아 가구의 다양한 가구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즉, 지역규모에 따른 표본 대표성은 일정 정도 충족하는 표본 수이지만, 지역규모별로 또 다른 가구 특성을 추가하게 되면(예: 읍면지역 거주 영유아 가구 중 맞벌이 여부) 분석 자료가 현저히 줄어들어 심층적인 분석을 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읍면 지역 거주자에 대한 추가 표본(부스터 표본)을 구축하여,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에게 실질적으로 양육비용 부담을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 보다 다각적 차원에서 농어촌 영유아 가구의 정책적 지원 요구를 조사할 필요성이 크다 하겠다.³⁾

나. 기초 분석 및 심층 분석 주제 선정 사유와 연구 필요성

심각한 수준의 저출생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영유아 가구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9월 아동수당의 도입 이후 영유아를 직접적 수급 대상으로 하는 아동급여는 가장 대표적인 저출생 대응 정책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아동수당은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며

3) 단, 'KICCE 소비실태조사'의 부스터 표본은 횡단 조사로, 한 해에 국한하여 조사되며 추적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확장되어 왔으나(최효미 외, 2023: 202), 2022년에는 현금 지원의 방향이 영아기 집중 투자 기조로 전환되면서 영아수당이 도입되었고(보건복지부, 2022: 3~7), 2023년에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편입 확대되면서 영아에 대한 현금 지원이 크게 확대되었다(보건복지부, 2023b: 3~7). 또, 2024년에는 부모급여의 지원금 수준이 크게 확대되기에 이르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 1. 12)⁴⁾. 이에 더하여 2022년생부터는 생후 12개월 이내에 사용 가능한 첫만남 이용권 지원이 이뤄지면서, 현금성 지원이 영아기에 집중된 경향이 강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실제 아동급여를 포함한 비용 지원의 일차적인 정책 목표는 출산 장려 혹은 출산 지원이라기보다는 양육비용 부담의 경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것에 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지원의 법적 근거인 아동수당법 제 1 조⁵⁾는 아동수당의 지원 목적으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아동수당 지원의 근거는 한국 뿐 아니라 다수의 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정책 목표라 볼 수 있다. 아동급여의 정책 효과성에 관한 국외의 연구들에 따르면, 다수의 연구가 아동급여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가구의 소비 지출 양태와 빈곤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효과를 주요 측정 지표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Blow et al., 2005; Edmonds, 2002; Jones et al., 2019; Kooreman, 2000; Raschke, 2012; Raschke, 2015).

한국은 아동급여 제도의 도입이 비교적 최근에서야 이뤄졌는데 저출생 현상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없이 지속적으로 악화일로에 놓이게 되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채 이뤄지기도 전에 일단 현금성 지원 제도를 크게 확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정책의 효과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효과성 검증을 위한 충분한 자료의 축적이 이뤄지지 못했던 것 또한 정책 효과성 검증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영유아 가구의 소비 지출과 양육비용에 대한 비교적 상세하고 방대한 정보를 상당 기간 동안 축적해 온 자료로, 영유아기 현금성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지난해 연구였던 2023년에는

4) 지원 대상은 2023년과 동일하게 만2세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함.

5) 아동수당법,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455호, 2023. 6. 13., 일부개정].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수당이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 연구인 2024년에는 2023년에 제도가 도입되어 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부모 급여(영아수당 포함)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한편, 아동급여 효과성 분석과 별개로 현금성 비용 지원이 집중되어 있는 영유아 가구의 소비 지출 행태에 관한 면밀한 관찰을 보다 다각적인 차원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조사 대상은 영유아 가구이기 때문에, 그 간 ‘KICCE 소비실태조사’를 활용한 소비 실태 분석은 영유아 가구의 소비 양태의 변화는 잘 반영하고 있으나, 영유아 가구의 소비 양태가 다른 비교 집단과는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는 고찰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에서는 부스터 표본으로 무자녀 가구와 임신부 가구를 선정하여, 이들 가구의 소비 실태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최효미 외, 2023). 올해 연구에서는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를 활용하여 영유아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소비실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영유아 가구가 직면하는 양육비용 부담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유추해보고자 한다. 또, 양육비용에 대한 무자녀 가구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 실질적으로 가계 경제적 측면에서 어떠한 요인이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2023년 부스터표본 및 본조사를 통해 조사된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한 요구와 의견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저출생 대응 및 영유아 가구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023년에 실시된 저출생 대응 및 육아지원 정책(양육비용 경감, 육아서비스 지원, 육아시간 지원, 주거 지원 등)에 대한 선호 및 의견 조사는 부스터표본인 임신부 가구와 무자녀 가구, 그리고 본조사 표본인 영유아 가구 설문과 공통 설문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들 가구 특성에 따라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선호, 개선 요구 등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고찰하고, 향후 저출생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육아지원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한국과 마찬가지로 최근 저출생 현상의 심화로 인해 육아지원 정책이 크게 확장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저출생 대응 정책 현황과 비용 지원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도 탐색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가. 2024년 연구 내용⁶⁾

2024년 연구는 크게 ‘KICCE 소비실태조사’ II기 2차시(전체 기준 7차년도)에 해당하는 조사와 기 구축이 완료된 ‘KICCE 소비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연구로 구분된다. 기 구축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은 다시 기초 분석과 심층 분석으로 구분된다.

먼저, 이 연구는 기존의 영유아 가구 대상의 본조사(가구용 설문 및 아동용 설문)를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연구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영유아 가구의 양육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안정적으로 축적하고자 한다. 한편, 2024년에는 본조사와 함께 놓여촌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를 부스터 표본으로 추가 구축하여, 지역 사회 육아 환경에 대한 보다 풍부한 정보를 수집코자 한다.

한편, 기초 분석은 2018년 이후로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측정되고 있는 지표(주요 가계 지출 관련 지표,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활용 실태)에 대한 시계열 분석과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시의성 있게 추가된 주요 설문에 대한 분석으로 구성된다. 또한, 2023년 조사에서 대폭 추가 혹은 보강되었던 설문은 유연근무 등을 포함하는 육아 시간 지원 정책 활용 실태 및 개선 요구, 부모 급여 도입에 따른 정부 지원금 수급 현황, 주거 환경 및 영유아 가구 대상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2023년 부스터 표본이었던 무자녀 가구와 임산부 가구에 질문한 출산 의향 및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는 보고서의 IV장~VI장에 해당한다.

심층 분석은 사회적 환경 변화 및 정책적 요구를 고려하여, 이 연구와 연관성이 높은 주제를 몇가지 선정하여 수행한다. 2024년 심층 분석의 주제는 총 2가지로, 첫째 2023년 부스터 표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무자녀 가구의 소비실태와 영유아 가구(본조사)의 소비실태에 관한 비교 분석 연구이다. 이를 통해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가 직면하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가중되는지를 고찰하고, 영유아 가구의 가계 지출의 조정 과정 등을 살펴봄으로써,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6) 연속과제 성격상 최효미 외(2023)의 내용과 유사 중복되는 부분이 많음에 주의.

둘째, 2023년 도입된 부모급여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난해 연구인 2023년 연구에서는 ‘KICCE 소비실태조사_2019~2022’를 활용하여 대표적 아동급여인 아동수당의 정책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올해 연구에서는 지난해 연구와의 연장선상에서 2023년 도입된 부모급여와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영아수당과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함께 최근 도입된 한국의 대표적인 아동급여(혹은 비용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심층 분석을 통해 영유아 집중 투자 정책의 효과를 점검해 보았다.

한편, 2024년 연구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조사 설계 및 데이터 분석(기초분석, 심층분석)에 앞서, 동북아 지역(한국, 중국, 일본)의 저출생 현황 및 영유아 가구 대상 육아지원 정책의 동향을 고찰해보고, 이를 통한 시사점 도출한다는 점이다.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육아시간 지원 포함) 활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함으로써, 영유아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효과적인 저출생 대응 정책을 발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조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사회문화적 배경이 유사한 중국과 일본의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통해, 영유아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육아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재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적 시사점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숙고해보아, 영유아 가구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표 I-2-1〉 2024년 주요 연구 내용

구분		주요 설문 및 연구 내용
연구 배경		동북아 지역 저출생 현황 및 영유아 가구 대상 육아지원 정책 비교 - 한국, 중국, 일본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	본조사 (연속조사)	조사개요 -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조사 - 추적(패널) 조사, 대체 표본, 신생아 신규 표본 구축 - 가구 특성 및 아동 특성 파악
		가계 경제 및 양육비용 - 영유아 가구 비용 지원 현황 - 영유아 관련 각종 지원금 수급 현황 영유아 가구 가계 소비 지출 및 양육비용 - 가구당 양육비용,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 가구 소비지출 현황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 영유아기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및 정책적 요구 -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실태 -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실태 -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실태(가구용 설문) - 육아서비스 지원 요구
		2024년 시의성 설문 - 지역 사회 육아 환경 및 정책적 지원 필요
	부스터 표본 (부가조사)	본조사 표본 이외 추가 표집 - 농어촌 거주 영유아 가구 - 기본 설문은 본조사 설문과 동일 ※ 2024년 부스터 표본은 표본의 보강(분석을 위한 적정 관측치 확보)에 초점이 있으며, 설문 문항은 본조사 표본과 동일
이전차수 자료 활용	기초 분석	영유아 가구의 가계 경제 및 양육비용 실태 (시계열 분석 중심) - 생활비 지출 총액 및 주요 지수 - 영유아 양육비용 실태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및 지원 요구 (시계열 분석 중심) - 영유아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변화 - 가정 내 돌봄 및 부모지원서비스 이용 행태 - 육아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 저출생 대응 및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 임신부, 무자녀, 영유아 가구 비교 - 육아시간 지원 정책 활용 현황 및 개선 요구 - 주거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정책적 요구 - 출산 의향 및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의견
	주제별 심층 분석	영유아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소비실태 비교 - 2023년 본조사 및 부스터 표본(무자녀 가구)을 활용한 비교 연구 부모급여 지원이 양육비용 및 서비스 선택에 미친 영향 - 영유아 가구의 부모급여의 양육부담 경감 효과, 가정 양육 비중 변화 등을 고찰

주: 기초 분석 및 주제별 심층 분석은 기 구축 자료(2018년~2023년)를 활용한 분석임.

나. ‘KICCE 소비실태조사’ II기(2023년~2027년) 연구 추진 계획

2023년 II기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5년 동안 수행될 예정인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연차별 조사 대상과 및 주요 조사 내용은 [그림 I-2-1]을 참조하기 바란다. 매해 추적조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본조사와 달리 횡단 조사로 실시되는 부스터 표본은 2023년에는 무자녀 가구와 임신부 가구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2024년에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그림 I-2-1] KICCE 소비실태조사(II기 조사) 연차별 추진 계획(안)

연차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대상 및 표본 : 영유아 가구 (추적 표본, 대체 표본, 신생아 표본으로 구성됨) - 설문 종류 : 가구용 설문(가구당 1종), 아동용 설문 (아동 당 1종) - 주요 설문 내용 (반복 조사) 가구 특성 변화, 육아 가구 생활비 등 지출 실태, 비목별 양육비용 지출 현황, 정부 지원금 수혜 현황,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기관보육/교육, 사교육 포함) (시의성 조사) 육아 지원 정책 변화에 인지 및 선호, 정책 지원 요구 및 제도 개선 방안 				
부스터 표본	무자녀 가구, 임신부 가구	농어촌 거주 영유아 가구	저소득 가구	환아/장애아가 구	한부모 가구

주: 연차별 상황에 따라 2025년 이후 연구의 주제와 조사 표본은 변경될 수 있음.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설문 문항 작성과 심층 분석 등을 위해 관련 선행 연구 및 문헌 자료를 검토하였다. 올해 연구에서는 특히 부스터표본 구축과 관련하여 지역별 인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유관 통계와 농어촌 거주 영유아 가구에 대한 육아 지원 정책 등에 관한 선행연구 등을 면밀히 고찰하였다. 또, 심층 분석 주제와 연관하여 영유아 가구 대상 아동 급여(비용 지원 정책)와 저출생 대응 정책의 변천 과정 등을 문헌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일본과 중국의 저출생 대응 정책과 양육 부담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나.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조사는 이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이자 연구 방법이다. 앞서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는 본조사와 부스터표본에 대한 조사로 구분된다. 본조사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의 표본에 대한 추적조사(영유아 가구 한정)와 신생아표본(2023년 상반기 출생아 및 2022년 하반기 출생아) 구축으로 이뤄지며, 추적조사에 실패한 경우 유사한 특성을 가진 대체표본 가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최효미 외, 2023). 2024년 부스터표본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로,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설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III장 1절에 제시하였다.

다. 2차 통계자료 및 기 구축 자료를 활용한 분석

기 구축이 완료된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총 6개년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초 분석 및 심층 분석을 수행하였다. 2024년에 수행 예정인 기초 분석 및 심층 분석의 주요 내용은 앞서 연구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편, 조사 분석 과정에서 국내 행정통계 및 승인통계 등 다른 자료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여 실시하여, 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였다.

라.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연구의 방향 설정, 조사 설계, 설문 문항 수정 및 보완, 연구 결과의 타당성 검토, 정책 방안 도출 등 연구 수행 과정 전반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표 I-3-1〉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현황

회차	일시	참석자	주요 자문 내용
1회	3. 12	육아 정책 1인	연구 방향 설정 (착수보고)
2회	3. 27	조사 분야 4인	조사결과 정리 및 data 품질관리 관련 논의
3회	4. 11	육아 정책 4인	2024 부스터 표본(농어촌 거주 영유아) 관련 표집 및 설문 검토
4회	4. 22	유아교육, 사회복지, 경제 등 3인	조사업체 선정 및 조사설계 관련 자문
5회	5. 13	조사 분야 4인	조사 설계 및 부스터 표본(농어촌 거주 영유아 가구) 구축 계획 논의

회차	일시	참석자	주요 자문 내용
6회	5. 16	육아정책 분야 4인, 유아교육 1인, 조사 분야 1인	2024 조사 설계 및 농어촌 지역 조사구 확정 관련 논의
7회	6. 14	조사 분야 2인	2024년 설문 수정 검토 및 실사 추진 계획 점검
8회	6. 18	육아정책 분야 1인, 사회복지 분야 2인	중간보고
9회	7. 5	육아정책 분야 1인	연구추진 및 내용 점검
10회	9. 25	조사 분야 3인	조사결과 재산출 및 오류 확인
11회	10. 22	육아정책 분야 1인, 사회복지 분야 1인	최종보고

마. 국외 출장을 통한 해외 사례 연구

한국과 마찬가지로 최근 심각한 저출생 현상으로 저출생 대응 정책이 확대, 강화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을 방문하여, 육아지원 및 저출생 대응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일본과 중국은 자료에 대한 엄격한 관리 및 영문 자료의 부족으로 최근의 정책 기조 변화를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부처 관계자, 연구기관 및 연구자를 섭외하여 최근의 육아 지원 및 저출생 대응 정책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특히 이번 국외 출장은 추후 연구 협력체인 동북아 포럼(가칭) 개최를 위한 사전 탐색적 성격을 갖는다.⁷⁾

중국 출장은 베이징(북경) 지역을 중심으로 6월 10일~6월 13일(3박4일)에 진행되었다. 주로 인구 정책 및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 연구자와 연구기관을 방문하였으며, 중국의 양육비용 조사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해 고찰하였다. 중국 출장에서 이뤄진 전문가 회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3-2〉 중국 출장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일시	참석자	주요 내용
6. 11	사회정책, 사회통계 분야 교수 및 연구자 3인	중국 저출생 대응 정책 현황 및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육아서비스 지원 정책
6. 11	공공정책, 사회복지 분야 교수 4인	중국의 육아지원 정책 현황, 특히 사회보험 측면에서의 정책 검토
6. 12	저출생 및 육아지원 분야	저출생 현황 및 대응 관련 연구 동향,

7) '저출생 대응 및 육아 지원 분야 동북아(한중일) 포럼'은 영유아 가구에 대한 육아 지원 및 저출생 대응 전략과 관련하여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실시함. 단, 동북아 포럼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상황으로, 차년도 연구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동북아 포럼 계획 자체가 전면 취소되거나, 다른 연구 사업에서 이어받아 수행될 수 있음.

일시	참석자	주요 내용
	연구기관 전문가 5인 (한중 상호 발표 형태의 세미나)	중국 육아비용 조사(2019, 2022년 조사) 연구 결과 공유, 한국 양육비용 (KICCE 소비실태조사) 연구 결과 공유
6. 12	사회정책, 사회통계 분야 교수 1인	중국의 인구 및 가구 구조 변화, 영유아 가구의 정책적 요구 및 관련 육아지원 정책
6. 13	공공정책, 사회서비스 분야 전문가 1인	중국 아동, 육아정책, 관련 사회서비스 정책 개관 및 주요 특징

일본 출장은 도쿄(동경) 지역을 중심으로 6월 25일~6월 28일(3박4일)에 진행되었다. 일본 출장은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 연구자 및 연구기관 뿐 아니라 정책을 직접 실행하는 정부 부처를 방문하여, 최근의 정책 동향 파악 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및 정책 추진 체계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일본 출장에서 이뤄진 전문가 회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3-3〉 일본 출장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계획 안)

일시	참석자	주요 내용
6. 25	정부 조직 및 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전문가 1인	일본 카나가와현(요코하마시 사례 포함) 지역 맞춤형 지원 및 일본의 손자녀 돌봄 수당 정책 현황 등
6. 26	양육비용 관련 전문가 1인	일본의 저출생 대응 정책 및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현황 및 육아 서비스 활용 실태
6. 26	보육비용 관련 전문가 2인	일본의 무상보육 정책 도입 과정 및 정책 효과성, 영유아 가구의 정책 선호 등
6. 27	보육분야 교수 1인 현장 전문가 1인	영유아 가구의 무상보육 이후 서비스 이용 행태 변화, 유치원 및 보 육소 관리체계 일원화가 서비스 이용비용에 미친 영향 등 논의
6. 27	아동가정청 담당자 2인	일본 저출생 정책 추진 현황과 방향 개요, 아동수당, 무상보육 등 비용 지원 정책의 변화 중심 소개 및 정책 설계 시 대국민 조사 결과 공유 등 육아지원 정책 부문 중앙정부-지자체 역할 분담 및 전달체계 관련 논의
6. 28	도쿄도청 담당자 6인	지자체(도쿄도)의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저출생 대응 및 양육부담 경감 정책 중심) 논의 도쿄도 특화 사업 설계 시 주요 고려사항 및 관련 조사 결과 공유 등

4. 보고서 구성 및 연구 추진 과정

주요 연구 내용별 연구 방법과 보고서 구성을 매칭한 형태로 2024년 연구의 추진 과정을 간략히 도식화 하면 [그림 I-4-1]과 같다.

[그림 I-4-1] 2024년 보고서 구성 및 연구 추진 과정

구분	주요 연구 내용	연구 방법	보고서 구성
연구배경	- 동북아(한,중,일) 지역 저출생 현황 및 영유아 가구 대상 육아 지원 정책 비교	- 문헌 연구 - 해외 출장(중국, 일본)	(II장) 연구 배경
KICCE 소비실태 조사 _2024	-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조사 설계 - 설문문의 구성과 변화 - 실사 결과 및 응답자 특성	- 문헌 연구 - 전문가 자문 회의 및 정책연구 실무협의	(III장) KICCE 소비실태 조사_2024 개요
기초 분석	-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 변화 (생활비 지출 및 주요 가계 지표 지수) - 영유아 양육비용 변화	- KICCE 소비실태조사 (2018~2023) 자료 분석 : 시계열 중심	(IV장) 영유아 가구의 가계 경제와 양육비용 실태
	- 영유아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변화 - 가정 내 돌봄 및 부모지원서비스 이용 행태 - 육아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	- KICCE 소비실태조사 (2018~2023) 자료 분석 : 시계열 중심	(V장)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및 지원요구
	- 저출생 대응 정책 및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 KICCE 소비실태조사 _2023 조사 결과 분석 : 본조사 + 부스터표본(임산부, 무자녀 가구) 조사	(VI장) - 저출생 대응 및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 임산부, 무자녀, 영유아 가구 비교
심층 분석	- 영유아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소비실태 비교 연구	- KICCE 소비실태조사 _2023 조사 결과 분석 : 본조사 + 부스터표본 (무자녀 가구) 조사	(VII장) 영유아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소비실태 비교
	- 부모급여(영아수당 포함) 효과성 분석	-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 분석 : 본조사(영유아 가구)	(VIII장) 부모급여 지원이 양육비용 및 서비스 선택에 미친 영향

주: VI장과 VII장의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 협의회가 공통 사항으로, 지면 관계상 생략.

5. 연구 범위 및 용어 정의

가. 양육비용 산출 기준 및 조작적 정의

‘KICCE 소비실태조사’가 매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산출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가 양육비용이다.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양육비용은 크게 가구당 양육비용과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으로 구분된다(최효미 외, 2023: 35~37). 그 사이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양육비용은 용어 정의가 차수별로 약간씩 변경되어 혼선이 있어왔으나, 2023년 연구에서 이를 가구당 양육비용과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으로 구분하기로 정리함에 따라, 올해 연구에서도 이러한 용어 정의를 그대로 준용하였다. 한편, 양육비용에 포함되는 비목은 식비(외식비 포함), 기기/집기,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교통비, 통신비, 개인유지비(생필품 포함), (어린이)보험 총 10개 비목(세목포함 16개)이다(최효미 외, 2023: 35~37).

〈표 1-5-1〉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양육비용’ 용어 정의

2022년 이전 연구		2023년 이후 연구	조작적 정의
총 양육비용	⇒	가구당 양육비용	가구 내 모든 자녀(초등 이상 자녀 포함)에게 소요된 전체 양육비용 *자녀별 양육비용의 합산액
영유아 양육비용	⇒	(삭제)	가구 내 모든 영유아 자녀에게 소요된 양육비용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영유아 자녀별로 해당 영유아 자녀 한명을 양육하기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
(신설)	⇒	자녀별 양육비용 (별도로 산출 안함)	가구 내 각 자녀별로 해당 자녀(자녀 연령 무관)를 양육하기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

주: 자녀별 양육비용은 가구당 양육비용 산출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로, 별도로 산출 결과를 보고하지는 않음.

자료: 최효미 외(2023).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II). 육아정책연구소. 〈표 1-4-2〉 인용.

나. 기준 값의 실질 비용에서 명목 비용으로의 변경

이전년도 연구에서 ‘KICCE 소비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조사되는 일체의 비용, 즉 가구 생활비 지출 및 양육비용 등은 매년 5월~7월 소비자물가(2020년=100기준) 평균값을 반영하여, 실질비용으로 환산한 값을 기본 설정 값으로 사용하였다(최효미 외, 2023: 37).

이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간의 자료 구축에 따른 비용 상승의 영향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실질비용으로의 환산을 위해 사용되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변동될 때마다⁸⁾, 이전년도 자료의 산출 값을 모두 수정하여야 함에 따라 업무가 가중될 뿐 아니라, 전년도 보고서와 달라진 수치로 인해 불필요한 혼선과 오해가 가중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

무엇보다 실질비용보다 명목비용이 직관적으로 이해되기 쉬운 비용이라는 점과 정부 지원금이 명목비용을 기준으로 지원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고서의 기준 설정 값을 실질비용이 아닌 명목비용으로 하는 것이 보다 유용하다는 의견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올해 연구인 2024년 연구부터는 명목비용을 기준 설정 값으로 하였다. 이로 인해 올해 연구에서는 전년도 조사 결과 값을 다시 명목비용으로 복원하여 재산출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쳤으나, 추후 명목비용은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과 무관하게 동일한 산출 값을 갖게 될 것이므로, 독자들이 양육비용의 변화와 정책 효과 등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부 주요 산출 지표의 시계열 결과값의 경우에는 명목비용과 함께 실질비용을 병기하여, 소비자물가 변동에 따른 양육비용의 실질적인 변화 양태를 관찰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다. 육아서비스 범주 및 분류

‘KICCE 소비실태조사’에서 조사하는 육아서비스의 범주는 <표 I-5-2>와 같으며, 이러한 범주는 2023년에 정의한 육아서비스 범주와 동일하다.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육아서비스는 크게 반일제 이상 기관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이 있으며, 학원 등 총 8개 항목의 시간제 교육서비스, 일시보육 등 총 3개의 기타 육아서비스, 가구용 설문에서 조사하는 개별돌봄서비스, 출산 휴가와 유연근무제도 등 육아시간 지원 서비스 5종, 부모 직접 돌봄 및 부모지원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각 서비스별로 이용율, 이용시간, 이용비용, 일부 서비스의 경우 만족도 등의 방대한 내용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8)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통상 5년을 기준으로 기준 시점의 변동으로 크게 개편되는데, 최근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2022년 기준) 개편에 따라, 2023년 12월부터 소비자물가지수가 변동된다고 발표함 (통계청 보도자료(2023. 12. 19), 202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결과).

〈표 I-5-2〉 영유아기 육아서비스 범주 (2023년 기준)

구분	육아서비스 종류	설문종류
반일제 이상 기관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④ 반일제이상 기타 기관(유아스포츠타, YMCA 등)	아동용
(시간제) 교육 서비스	① 문화센터, ② 학원, ③ 방문형 학습지, ④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 ⑤ 비방문 학습지, 교구활동교육 ⑥ 개인 및 그룹지도, ⑦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⑧ EBS 등 교육 관련 방송 시청	아동용
기타 육아서비스	① 일시보육, ② 키즈카페, ③ 비정기 체험활동	아동용
개별돌봄서비스	①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여성가족부 및 기타 공공기관 지원), ② 민간육아도우미(학습시터, 놀이시터 포함), ③ 조부모, ④ 조부모 이외 친인척 돌봄	가구용
육아시간 지원서비스	① 출산휴가, ② 육아휴직,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④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⑤ 유연근무제도 활용	가구용
부모직접돌봄 및 부모지원서비스	① 부모 직접 돌봄, ② 미디어 활용시간, ③ 육아물품 대여서비스(장난감, 도서 대여 등), ④ 육아물품 제공서비스(교재/교구 꾸러미 등), ⑤ 양육지원_부모지원 서비스(부모교육, 부모상담, 육아멘토 등)	가구용

주: 육아서비스 종류 및 범주는 조사 차수에 따라 약간씩 변동되었으며, 특히 2019년~2021년 조사에는 초등 돌봄 관련 육아서비스가 대거 포함되어 있었음.

자료: 최효미 외(2023).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II). 육아정책연구소. 〈표 I-4-3〉 인용.

라. 무자녀 가구의 정의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의 부스터 표본으로, 올해 연구에서 심층 분석을 실시하는 무자녀 가구의 정의는 지난해 연구의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여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무자녀 가구의 정의에 대해서는 지난 해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실사 이전에 검토가 이뤄진 바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지난해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대한 정의를 올해 다시 재정의할 필요성은 낮다고 사료된다⁹⁾.

단, 올해 보고서만을 참조하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무자녀의 기준을 간략히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출산의 완결성 혹은 무자녀 상태의 영속성을 무자녀와 유자녀 가구를 구분 짓는 주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9) 연구 윤리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다시 제시하는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최효미 외(2023). I장 4절 가항(pp.33~35)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이에 따라 여성의 가임연령(강유진, 2020; 계봉오·김두섭 2015; OECD Family Database¹⁰⁾ 등), 혼인기간(계봉오 외, 2022; 박시내 외, 2020; 이수현, 2012 등), 출산 의향(강유진, 2020; 이수현, 2012; 최인희 외, 2015 등) 등을 무자녀 가구 정의 시 고려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의 무자녀 가구는 혼인지속기간이나 출산 계획 등과 무관하게 조사 시점 당시에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으며, 기혼 유배우자이면서 여성(배우자 혹은 본인)의 연령이 20~45세인 경우로 제한을 두어,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시점 기준 아이가 없는 가구로 정의된다(최효미 외, 2023: 35). 이러한 기준은 무자녀 가구에 관한 선행연구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정의이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마. 농어촌 지역의 정의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연구에서 농어촌 지역이란,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속하는 지역을 의미하며, 도농복합지역을 제외한 순수한 농어촌 지역만을 부스터표본의 표집 대상 지역으로 삼았다.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최초 표집 시 17개 시도에서 조사구를 지정하고, 표집된 조사구 내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표본을 구축하였다(최효미 외, 2018: 83~85). 이후 대체 표본 및 신생아 표본을 신규로 구축해야하는 상황에서도 최초 표집 단위(조사구)는 크게 변동되지 않고 이전 조사구를 최대한 유지하는 형태로 표본 구축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전체 표본의 수가 1,700 가구 내외로 많지 않기 때문에 17개 시도별 표본의 대표성의 확보는 어려웠으며, 지역 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별 표본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표본을 구축하였다.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의 부스터 표본도 기존의 표본 구축 방식을 준용하여 실시되므로, ‘농어촌 지역’은 행정구역상의 읍면지역을 지칭한다. 단, 조사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에서 지정한 읍면지역의 상당수가 2024년 기준 도농복합지역에 속하여 읍면지역의 특성을 정확히 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10) OECD Family Database, Fertility indicators, SF.2.5 Childlessness, https://www.oecd.org/els/family/SF_2-5-Childlessness.pdf (인출일: 2023. 3. 2.).

이에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의 부스터 표본의 표집 지역은 도농복합지역을 제외한 순수한 농어촌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의 부스터 표본의 표집 지역은 기존의 조사구와는 다른 읍면지역(별도의 조사구)를 지정하여 진행하였다. 이는 기존 조사구와 다른 조사구를 추가 표집함으로써 읍면 지역 내에서도 보다 다양한 지역의 특성이 표본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 지역의 특수한 상황이 잘 포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최근 심각한 저출생으로 인해 기존 조사구 내에서는 신규 추가 표본의 구축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였다.¹²⁾

이때 도농복합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조사구)의 경우에는 영유아 가구가 극히 드물어 표집 조사구 내 조사 대상 표본(영유아 가구)이 아예 없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번 2024년 조사에서 부스터표본의 목표 표본 수는 160가구로, 결과적으로 본조사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조사구(읍면 단위)를 표집하고 조사구 내 영유아 가구를 발굴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 부스터표본의 조사구는 군단위로 지정하되, 군내 도농복합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에서만 표집이 이뤄지도록 조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표집 방법과 목표 표본에 대해서는 III장 1절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11) 2023년 본조사(영유아 가구) 표본 중 읍면지역 거주 표본에서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 순수 농어촌인 읍면지역의 응답자는 20개 남짓에 불과함.

12)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영유아의 절대적 숫자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으로 기존 조사구 내에서 이미 포화상태의 표집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II

연구 배경

- 01 한국의 저출생 현황 및 대응 정책
- 02 중국의 저출생 현황 및 대응 정책
- 03 일본의 저출생 현황 및 대응 정책
- 04 소결 및 시사점

II. 연구 배경

이 장에서는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연구 범위에 포괄되는 저출생 대응 및 육아지원 정책 현황을 고찰하였다. 기존에는 이 과제가 연속과제인 점을 감안하여 전년도 조사 이후 변화된 주요 정책 동향을 중심으로 제도 현황을 보고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도 한국의 경우 최근의 정책 현황은 설문 문항에 새롭게 추가되거나 강화된 정책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다만, 2024년 연구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부 발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4. 6. 19¹³) 등으로, 저출생 정책의 변화와 동향에 대한 검토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 뿐 아니라 인접한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저출생 현황 및 영유아 가구 대상 육아지원 정책 동향을 함께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 장에 포함된 중국과 일본의 정책 현황 및 자료는 외부공동연구진이 작성한 원고와 연구진이 참여하여 실시한 국외 출장(중국 6.10~6.13, 일본 6.25~6.28)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외부공동연구진이 작성한 원고는 보고서의 가독성 등을 고려하여 본문에는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활용하였으며, 전문은 보론으로 제시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1. 한국의 저출생 현황 및 대응 정책

가. 한국의 저출생 및 영유아 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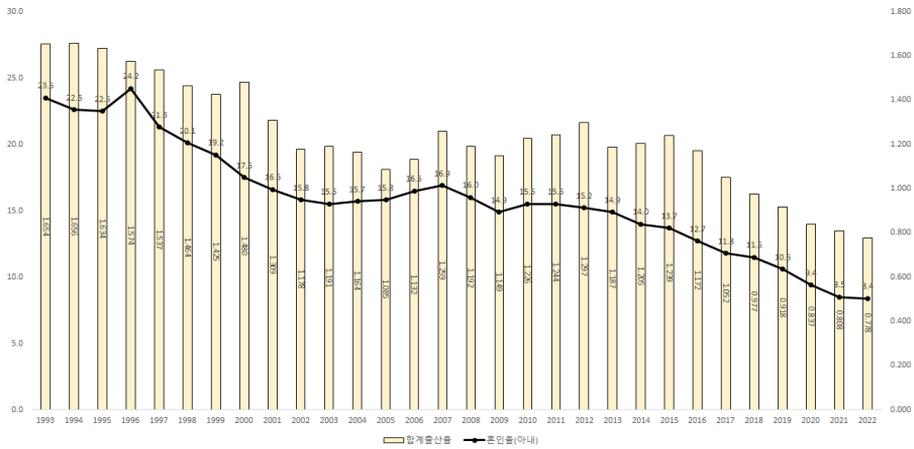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93년 1.654명이었으나, 3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에는 0.778명으로 심각하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2000년~2015년 사이에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면서도 2~3년 간격으로 반등하는 해가 있었으나, 2015년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일 뿐 아니라, 감소폭이 매우 큰 특징을 보인다.

1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2024. 6. 19.).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대 핵심분야 총력 지원 + 사회인식 변화 노력 강화.

특히 무상보육·유아교육 정책 도입 시기인 2012년에는 합계출산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현상이 포착되었으나, 아동수당이 도입된 2018년을 전후하여서는 합계출산율 추세의 변화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사료된다.

한편, 합계출산율의 감소와 함께 혼인율(아내) 또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분명하게 관찰된다. 1993년 혼인율은 23.5%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2023년에는 8.4%까지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혼인율(아내)은 1996년에 크게 반등하였으며, 2003~2007년 사이에는 다소 증가세로 돌아서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2010년에 소폭 상승한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합계출산율과 혼인율(아내)의 변화 추세를 함께 살펴보면, 이들의 추세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흐름으로 변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최근 합계출산율의 하락이 혼인율(아내) 하락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림 II-1-1] 한국의 합계출산율 및 혼인율(아내) 변화 : 1993~2023년



주: 혼인율은 남편과 아내가 각각 발표되는데, 본고는 편이상 아내의 혼인율만을 제시함.

자료: 1)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23, 2024.06.11, 시도/일반혼인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34&conn_path=l2 (인출일: 2024. 5. 29).

2)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22, 2024.06.11, 시도/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1&conn_path=l2 (인출일: 2024. 5. 29).

이하에서는 한국의 영유아 인구 현황을 통해 저출생 현상을 고찰해보았다.

2008년 총 인구 수는 4,954만367명이었으며, 이 중 영유아(0~6세) 인구는 327만7,632명으로, 총 인구 중 6.6%가 영유아였다. 총 인구수는 평균 수명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19년까지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 2020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유아 수는 무상보육 도입 전후인 2011~2013년 소폭 상승하는 듯 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2023년 203만3,033명까지 급격히 감소하였다.

〈표 II-1-1〉 총 인구 수 및 영유아 인구 (2008~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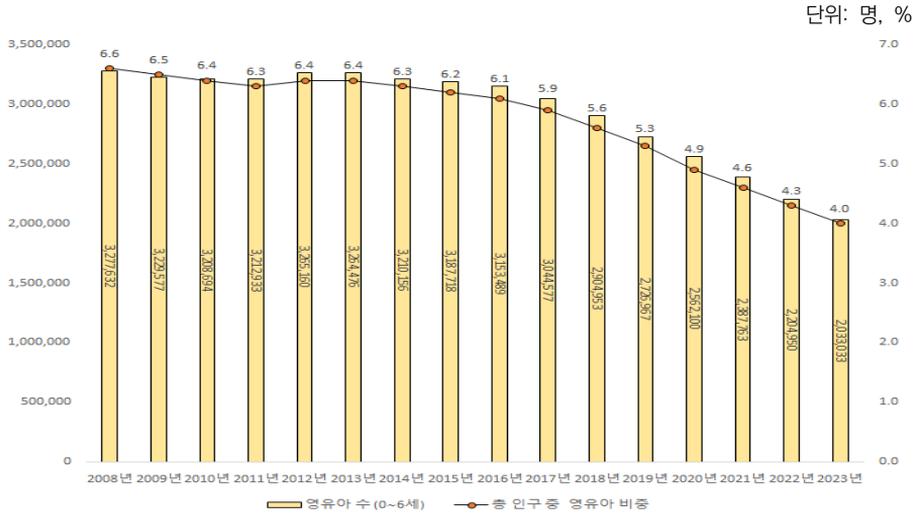
단위: 명, %

연도	총 인구 수	영유아 수 (0~6세)	총 인구 중 영유아 비중
2008년	49,540,367	3,277,632	6.6
2009년	49,773,145	3,229,577	6.5
2010년	50,515,666	3,208,694	6.4
2011년	50,734,284	3,212,933	6.3
2012년	50,948,272	3,265,160	6.4
2013년	51,141,463	3,264,476	6.4
2014년	51,327,916	3,210,156	6.3
2015년	51,529,338	3,187,718	6.2
2016년	51,696,216	3,153,489	6.1
2017년	51,778,544	3,044,577	5.9
2018년	51,826,059	2,904,953	5.6
2019년	51,849,861	2,726,967	5.3
2020년	51,829,023	2,562,100	4.9
2021년	51,638,809	2,387,763	4.6
2022년	51,439,038	2,204,950	4.3
2023년	51,325,329	2,033,033	4.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24.05, 2024.06.11, 행정구역(시군구)별 주민등록세대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B3&vw_cd=MT_ZTITLE&list_id=A_7&scr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인출일: 2024. 5. 28.).

이와 같은 급격한 감소 현상은 그림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한 상황으로, 총 인구에서 영유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6.6%에서 2023년 4.0%까지 감소하였다.

[그림 II-1-2] 영유아 수 및 영유아 인구 비중의 변화 (2008~2023년)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24.05, 2024.06.11, 행정구역(시군구)별 주민등록세대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B3&vw_cd=MT_ZTITLE&list_id=A_7&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인출일: 2024. 5. 28.).

각 연령별 영유아 수를 살펴보면, 해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0세아들의 수가 적음을 알 수 있다. 0세아의 수는 2008년 44만4,421명에서 2023년 22만 5,958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6세아는 34만4,740명, 5세 33만3,705명, 4세 30만9,282명, 3세 27만9,134명, 2세 26만6,619명, 1세 25만3,595명, 0세 22만5,058명으로 해마다 출생아가 크게 감소하는 현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표 II-1-2> 연령별 영유아 수 (2008~2023년)

단위: 명.

연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2008년	444,421	491,498	446,884	434,320	472,935	492,914	494,660
2009년	42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473,112	493,040
2010년	448,516	443,963	465,564	493,452	448,200	435,281	473,718
2011년	451,579	470,224	445,437	466,807	494,388	448,774	435,724
2012년	464,374	472,275	470,956	446,256	467,432	494,810	449,057
2013년	421,465	486,655	474,098	472,047	447,055	467,935	495,221
2014년	419,833	438,778	488,030	474,932	472,731	447,531	468,321
2015년	424,563	437,994	439,989	488,716	475,519	473,120	447,817

연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2016년	393,674	441,720	439,207	440,530	489,140	475,817	473,401
2017년	345,786	409,814	442,943	439,700	440,872	489,401	476,061
2018년	317,685	361,625	411,225	443,586	440,123	441,105	489,604
2019년	295,132	330,970	362,900	412,018	444,102	440,483	441,362
2020년	265,087	304,651	331,606	363,250	412,429	444,367	440,710
2021년	253,946	274,633	306,120	332,157	363,613	412,739	444,555
2022년	244,250	264,788	277,529	307,975	333,048	364,198	413,162
2023년	225,958	253,595	266,619	279,134	309,282	333,705	364,74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24.05. 2024.06.11, 행정구역(시군구)별 주민등록세대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B3&vw_cd=MT_ZTITLE&list_id=A_7&scrl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인출일: 2024. 5. 28.).

시도별 영유아 수는 경기도가 60만8,742명(29.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 31만8,405명(15.7%)으로, 45.6%의 영유아가 서울,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다른 시도 지역의 경우 10% 이하의 낮은 비중을 보이며, 영유아 가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1-3〉 시도별 및 연령별 영유아 수 (2023년)

단위: 명, %

시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계	비중
전국	225,958	253,595	266,619	279,134	309,282	333,705	364,740	2,033,033	100.0
서울	37,771	41,087	43,013	43,637	47,506	50,291	55,100	318,405	15.7
부산	12,620	14,371	15,046	15,703	17,620	19,562	21,787	116,709	5.7
대구	9,288	10,675	11,476	12,056	14,092	15,212	17,059	89,858	4.4
인천	13,892	15,920	16,423	17,286	19,232	20,398	21,797	124,948	6.1
광주	6,065	7,459	8,038	8,120	9,234	10,017	11,144	60,077	3.0
대전	7,161	7,920	7,984	7,917	8,749	9,354	10,571	59,656	2.9
울산	4,959	5,392	6,090	6,450	7,252	7,898	8,836	46,877	2.3
세종	2,639	3,184	3,612	3,664	4,124	4,504	4,939	26,666	1.3
경기	68,030	77,729	80,214	83,766	92,309	99,339	107,355	608,742	29.9
강원	6,637	7,442	7,592	8,135	8,740	8,897	9,546	56,989	2.8
충북	7,487	7,638	8,380	8,741	9,331	10,693	11,335	63,605	3.1
충남	9,312	10,541	11,393	12,336	13,531	14,526	15,932	87,571	4.3
전북	6,478	7,165	7,677	8,390	9,239	10,278	11,487	60,714	3.0
전남	7,663	7,997	8,542	9,237	10,254	10,704	11,496	65,893	3.2
경북	9,967	11,247	11,752	12,603	13,950	15,422	16,593	91,534	4.5
경남	12,805	14,184	15,477	16,889	19,275	21,374	23,952	123,956	6.1
제주	3,184	3,644	3,910	4,204	4,844	5,236	5,811	30,833	1.5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24.05. 2024.06.11, 행정구역(시군구)별 주민등록세대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B3&vw_cd=MT_ZTITLE&list_id=A_7&scrl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인출일: 2024. 5. 28.).

그런데, 시도별 총 인구 수 대비 0~6세 영유아 수 비중을 살펴보면, 실제 영유아 수는 가장 적은 세종시가 6.9%로 가장 높았다. 다른 시도의 경우 대체로 3.4%~4.6% 사이의 비중을 보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앞서 <표 II-1-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과 경기 지역의 영유아 수가 많은 현상은 이들 지역의 출산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총 인구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에 기인함을 반증한다.

<표 II-1-4> 시도별 및 총 인구 수 대비 영유아 비중 (2023년)

단위: 명, %

시도	총 인구 수	0-6세 영유아 수	총 인구 중 영유아 비중
전국	51,325,329	2,033,033	4.0
서울	9,386,034	318,405	3.4
부산	3,293,362	116,709	3.5
대구	2,374,960	89,858	3.8
인천	2,997,410	124,948	4.2
광주	1,419,237	60,077	4.2
대전	1,442,216	59,656	4.1
울산	1,103,661	46,877	4.2
세종	386,525	26,666	6.9
경기	13,630,821	608,742	4.5
강원	1,527,807	56,989	3.7
충북	1,593,469	63,605	4.0
충남	2,130,119	87,571	4.1
전북	1,754,757	60,714	3.5
전남	1,804,217	65,893	3.7
경북	2,554,324	91,534	3.6
경남	3,251,158	123,956	3.8
제주	675,252	30,833	4.6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24.05, 2024.06.11, 행정구역(시군구)별 주민등록세대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B3&vw_cd=MT_ZTITLE&list_id=A_7&scr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인출일: 2024. 5. 28.).

나. 한국의 저출생 대응 육아지원 정책 변화와 주요 내용

한국의 저출생 대응 정책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규정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매 5년 주기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5년이 되기 전 중간 시기에 증보판 혹은 보완판 등의 정책 개선안이 발표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1차 기본계획부터 지속적으로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제도의 틀은 유지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저출산 기본계획은 보육 및 돌봄 지원 정책을 기조로,

가족 정책, 일가정 양립지원을 포괄하고 있으며, 보다 넓게는 일자리 지원과 청년층 지원, 주거 지원까지를 아우르는 지원 정책이다. 즉, 지난 20여년의 저출산 정책은 특정 분야에 국한하여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심화, 발전해 왔으며,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제도가 확장되고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다만, 각 시기별로 좀 더 강조되고 우선되는 정책에 있어서는 부침을 거듭하며 지속적인 변화,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 기본계획은 초기에는 보육 정책과 임신·출산 지원 정책 위주의 제도 설계 방향을 가졌으나, 점차 아동 급여 지원 정책으로 확장되었으며, 최근에는 주거 지원과 육아 시간 등의 정책이 좀 더 강조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표 II-1-5〉 한국 저출산 기본계획의 틀

구분	주요 지원 정책
결혼	- 결혼, 출산 환경 조성 -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
출산, 의료	-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 영유아 건강검진, 영양플러스 등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필수예방접종 등 · 난임 지원 등
보육(돌봄)	- 보육·교육비 지원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 사교육비 경감 대책 - 육아지원 시설 확충(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직장 보육시설 확충) -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시설 지원) -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시간연장형, 아이돌보미 등)
주거 지원	- 신혼부부 보증자리 마련 지원 -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 주택자금 대출 혜택
가족 정책(취약)	- 미혼모, 미혼부 지원 - 입양가정 지원 - 빈곤 아동 보호 및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 모성 보호 강화(산전후 휴가 급여, 육아휴직 제도 등) -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등)
아동 급여 지원	- 아동 수당 지원 - 영아수당, 부모급여 지원

자료: 1) 대한민국 정부(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0년도 중앙부처 시행 계획.
2) 대한민국 정부(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새로마지플랜 2015.
3) 보건복지부(2013).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4) 대한민국 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브릿지플랜 2020.
5) 대한민국 정부(2019. 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본.
6) 대한민국 정부(2020).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2024. 6. 19.).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대 핵심분야 총력 지원 + 사회인식 변화 노력 강화.

좀 더 구체적으로 각 시기별 저출산 기본계획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은 부처별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아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보건복지부 주관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의 도입,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등과 같은 보육 정책과 교육과학기술부의 3~5세 유아학비 지원 등과 같은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체계의 구축과 강화를 꼽을 수 있다(대한민국 정부, 2006).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의 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 확대 등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대한민국 정부, 2006). 그런데, 이 시기 지원 정책은 저소득 가구 혹은 맞벌이 가구와 같이 돌봄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은 일명 ‘새로마지 플랜 2015’으로 불리우는 정책으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한 정책의 확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 방향이 강조되는 시기로, 제1차 기본계획과 비교하여 맞벌이 가정 등 일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와 일·가정 양립 등 종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10: 22). 그런데, 특기할만한 점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가장 강조하고 있으나, 이 시기에 무상보육·유아교육 제도가 도입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보육, 유아교육 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급증하고 보편적 육아지원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장되었다는 점이다(보건복지부, 2013).

한편, 일명 ‘브릿지 플랜 2020’으로 불리우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의 시기에는 청년에 대한 지원과 임신·출산 지원이 강조된 시기이다. 이와 함께 이 시기에는 기존의 보편적 보육·유아교육 지원의 체계 위에 맞춤형 돌봄 및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와 같이 다양한 육아지원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이 기획되어 추진되었다(대한민국 정부, 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기존의 저출산 정책에서 벗어난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조로, 정책의 목표가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로 변화했다는 점이다.

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의 시기는 저출생 현상이 급격하게 심화된 시기로, 정부는 2019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본(2017. 5 ~ 2022. 5¹⁴⁾)을 발표하였다(대한민국 정부, 2019. 2.).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본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의 추진을 강조한 시기로, 특히 삶의 질 개선, 성 평등 확립에 방점을 두어 제도가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육아시간 지원 강화,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 문화 조성,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일·주거·교육) 조성이 추진 과제로 제시되었다(대한민국 정부, 2019. 2.).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수당 제도가 이 시기 도입되어 추진되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은 결혼, 출산, 육아 지원을 넘어선 사회 구조적 문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을 통한 저출생 위기 극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여진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은 노동시장 격차와 교육에서의 경쟁 심화, 결혼·출산의 장벽으로서의 주거비 부담, 성차별적 노동시장 및 일·가정 양립 문화 등 좀 더 거시적 차원의 정책 방안의 모색을 담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을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아동의 권리 보장을 주요 아젠다로 채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은 아동의 권리 보장을 측면에서 영아수당의 도입, 아동수당 제도 확대 개편, 출생통보제 도입, 아동의 놀이권 보장 등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20: 75~82). 또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이 시행 중인 현재는 지속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 현상이 완화되지 않는 것에 급박한 위기 대응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시기라 볼 수 있다. 특히 인구 정책적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른 지역 소멸 등의 문제가 크게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지역별 저출생 대응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저출생 대응 전략¹⁵⁾에 따르면, 크게 3대 분야(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 정책) 15개 핵심 과제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24. 6. 19.). 이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급여 최대 상한 인상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과 지원금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과 청구기한 및 분할횟수 확대,

14)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본은 3차 기본계획(2016~2020)과 4차 기본계획(2021~2025) 사이에 문재인 정부(2017.5~2022.5) 국정과제(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수행과 관련된 보완판이라 볼 수 있음(대한민국 정부, 2019. 2: 6)

1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24. 6. 19.)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출산 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 도입, 가족돌봄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 등의 시간단위 사용 활성화가 제안되었으며, 교육·돌봄 지원으로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 틈새돌봄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 외국인 가사관리사 활성화 등 가정돌봄 확충,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으로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기준 사실상 한시 폐지,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공급, 신규 출산가구 분양주택 청약 요건 완화,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난임 시술 대폭 지원 계획 등이 발표되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24. 6. 19.).

〈표 II-1-6〉 한국 육아지원 정책의 주요 변화

구분	주요 특징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 (2006~2010)	- 기본계획의 틀 확정 - 보육 정책의 확대 강화 · 돌봄 취약 계층(저소득 가구, 맞벌이 가구) 지원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 (2011~2015)	- 맞벌이 가정 지원 강화 및 일가정 양육지원 강화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 전 계층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지원 포함) - (가정) 양육수당 도입 및 확대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 (2016~2020)	- 청년에 대한 지원과 임신·출산 지원이 강조 - 맞춤형 돌봄 및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 패러다임의 전환 논의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 수정본 (2017.5 ~2022.5,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	- 패러다임 전환 · 삶의 질 제고, 성 평등 확립 - 주요 추진 과제 ·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 육아시간 지원 강화 ·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 문화 조성 ·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일·주거·교육) 조성 · 아동 수당 정책 도입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 (2021~2025)	- 거시적 차원의 정책 방안 모색 · 노동시장 격차, 교육에서의 경쟁 심화, 결혼·출산의 장벽으로서의 주거비 부담, 성차별적 노동시장 및 일·가정 양립 문화 등 - 아동 권리 보장 강조 · 영아기 집중 투자(영아수당 및 부모급여 도입) · 아동수당 제도 확대 개편 · 출생통보제 도입 · 아동의 놀이권 보장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 일·가정 양립 지원

구분	주요 특징
대책 (2024. 6.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급여 최대 상한 인상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과 지원금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과 청구기한 및 분할횟수 확대, 출산 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 도입, 가족돌봄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 등의 시간단위 사용 활성화 - 교육·돌봄 지원 ·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 틈새돌봄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 외국인 가사관리사 활성화 등 가정돌봄 확충,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 ·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사실상 한시 폐지,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공급, 신규 출산가구 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난임 시술 대폭 지원 계획

자료: 1) 대한민국 정부(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0년도 중앙부처 시행 계획.
 2) 대한민국 정부(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새로마지플랜 2015.
 3) 보건복지부(2013).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4) 대한민국 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브릿지플랜 2020.
 5) 대한민국 정부(2019. 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본.
 6) 대한민국 정부(2020).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2024. 6. 19.).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대 핵심분야 총력 지원 + 사회인식 변화 노력 강화.

다. 최근 한국의 육아지원 정책 동향

이 항에서는 KICCE 소비실태조사에 반영되는 육아정책 중 조사대상 기간 내 (2023.7.1.~2024.6.30.) 변화가 큰 정책 중심으로 비용 지원 정책과 육아시간 지원 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¹⁶⁾.

1) 영유아 가구 비용 지원 정책 동향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부모급여가 크게 확대되었고 이와 연동해 가정양육수당은 축소되었다. 유아보육료·유아학비는 대체로 상향되고 특히, 유보통합 추진계획에 따라 5세부터 추가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 그리고 유아보육료·유아학비 지원에 대해 서술하였다. 변화된 비용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며 대상 및 적용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기존 보고서에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간략히 서술하였다.

16) 제시되어 있는 정책 현황은 2024년 설문 개발 당시(6월) 기준으로, 이는 향후 데이터 분석 시 기준이 되는 정책의 현황을 연계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종료시(12월) 이내 정책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업데이트 하지 않음.

가) 부모급여의 확대와 가정양육수당의 대상범위 축소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아동수당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보편급여로서 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로 규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2024b: 3).

〈표 II-1-7〉 부모급여의 법적근거: 아동수당법(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

구분	내 용
아동수당법 제1조, 제4조, 제10조	제1조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①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10조 ⑤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또는 「아이돌봄지원법」 제21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1세 미만의 아동: 매월 100만원 2.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 매월 50만원

자료: 아동수당법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455호, 2023. 6. 13., 일부개정]

특히 부모급여는 제도시행년인 2023년에 비해 2024년에는 급여수준이 크게 상향되어, 2023년에는 만 0세 1인당 월 70만원, 1세 1인당 월 35만원이 지급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0세 1인당 월 100만원, 1세 1인당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2세 생일의 전월까지 최대 24개월간 지원되며, 가정양육 시에는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으로 지급되고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되는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으로 지급된다. 이때 바우처 지원 금액이 부모급여 지원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이 현금으로 지원되는 방식을 취한다(보건복지부, 2024b: 4).

따라서 2024년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의 경우는 1인당 월 보육료 전액이 바우처로 제공되고 월 부모급여 차액 46만원을 현금으로 받게 되며, 1세의 경우는 1인당 월 보육료 전액이 바우처로 제공되고 부모급여 차액인 2만5천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또한,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에는 정부지원금 전액이 바우처로 지원되나, 만약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보건복지부, 2024b: 6~7).

〈표 II-1-8〉 부모급여의 지원(2023, 2024년)

구분		시설 미이용	시설 이용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23년	0세 (0-11개월)	(현금) 70만원	(바우처) 51만4천원+ (현금) 18만6천원	(바우처) 전액
	1세 (12-23개월)	(현금) 35만원	(바우처) 51만4천원	(바우처) 전액
24년	0세 (0-11개월)	(현금) 100만원	(바우처) 54만원+ (현금) 46만원	(바우처) 전액
	1세 (12-23개월)	(현금) 50만원	0세반 이용자 (바우처) 54만원	(바우처) 전액

주: 부모급여는 자녀 월령을 기준으로 지원되나 어린이집 (부모)보육료(=바우처)는 연령반을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1세 중 어린이집 0세반 이용자와 1세반 이용자는 지원액이 상이함. 2023년의 경우에는 해당 월령 이내이더라도 2022년생 이후 출생아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1세 중 0세반 이용자만 지원 대상에 해당하였음.
 자료: 1) 보건복지부(2023b).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p.4
 2) 보건복지부(2024b). 2024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p.7를 통합하여 재구성.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 하는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이다(보건복지부, 2024a: 358). 가정양육수당은 2024년 부모급여가 도입·확대됨에 따라 0~23개월의 아동에게는 부모급여가 지원되고 24개월 이상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대상범위가 축소되었다(보건복지부, 2024a: 358).

결과적으로 2024년의 일반 양육수당의 경우 24개월부터 86개월 미만까지 대상 연령대 동일하게 10만원이 지원되며, 농어촌 양육수당은 24개월 이상 35개월까지는 15만6천원, 36개월 이상 47개월까지는 12만9천원,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까지는 10만원이 지급된다. 장애아동에게는 4개월 이상 35개월까지는 20만원 나머지 연령대에는 10만원이 제공된다(보건복지부, 2024a: 358).

〈표 II-1-9〉 가정양육수당의 지원(2023, 2024년)

단위: 원

구분		일반가정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23년	0개월 이상 ~ 11개월	20만원	20만원	20만원
	12개월 이상 ~ 23개월	15만원	17만 7천원	
	24개월 이상 ~ 35개월	10만원	15만 6천원	
	36개월 이상 ~ 47개월		12만 9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24년	24개월 이상 ~ 35개월	10만원	15만 6천원	20만원
	36개월 이상 ~ 47개월		12만 9천원	10만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2023a),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p.366; 보건복지부(2024a),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358를 통합하여 재구성.

나) 영유아보육료·유아학비 지원금 상향¹⁷⁾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에게 바우처로 제공되어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시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24a: 330). 현재의 보육지원 체계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보육시간과 보육대상에 따라 지원되는 보육료가 구분되어 있다(이정원 외, 2022: 32).

2024년의 보육료는 기본 보육료를 비롯해 장애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 등 전반적으로 상향되었다. 단, 3~5세 누리과정의 보육료는 28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했으나, 5세의 경우 유보통합 추진계획에 따라 학부모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지원금이 추가되어(5만원추가) 2024년 3월부터 33만원으로 상향되었다(교육부, 2024. 2: 1~218).

2024년 기준 보육료 지원금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 보육료 지원액은 0세반 월54만원, 1세반 47만5천원, 2세반 39만4천원이며, 누리과정에 속한 3~5세반은 월 28만원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24a: 337). 단, 5세반은 2024년 3월부터 5만원이 추가 지원된다(교육부, 2024. 2: 1~219). 야간12시간 보육료(19:30~익일07:30)와 다문화 보육료는 기본 보육료에 준해 지원되며, 장애아 보육료는 58만7천원, 주간과 야간을 동시에 이용하게 되는 24시간 보육료로는 0세반 81만원, 3~5세는 42만원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24a: 345~357).

17) 본고에서는 영유아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중심으로 정책을 검토하였으며, 기관 지원 보육료 등은 논외로 함.

18) 교육부(2024. 2.). 2024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5세 추가지원 포함).

19) 교육부(2024. 2.). 2024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5세 추가지원 포함).

야간연장(19:30~24:00)시 지원되는 보육료는 지원액수가 전년도와 동일하여 연장되는 시간에 따라 시간당 일반아동 4천원, 장애아동 5천원이 지원된다. 지원한도액은 각각 24만원, 30만원이다(보건복지부, 2024a: 355).

〈표 II-1-10〉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2023, 2024년)

단위: 원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4세반 (누리과정)	5세반 (누리과정)	
23년	기본보육료 (=야간12시간, 다문화)	514,000	452,000	375,000	280,000	280,000	
	장애아보육료	559,000					
	24시간보육료	771,000	678,000	562,500	420,000	420,000	
	야간연장시 시간당 보육료 (19:30~24:00)	일반아동		1시간당 4천원	지원한도액: 월 24만원 (60시간)		
	장애아동		1시간당 5천원	지원한도액: 월 30만원 (60시간)			
24년	기본보육료 (=야간12시간, 다문화)	540,000원	475,000	394,000	280,000	280,000	280,000
	장애아보육료	587,000					
	24시간 보육료	810,000원	712,500원	591,000원	420,000원		
	야간연장시 시간당 보육료 (19:30~24:00)	일반아동		1시간당 4천원	지원한도액: 월 24만원 (60시간)		
	장애아동		1시간당 5천원	지원한도액: 월 30만원 (60시간)			

주: 1) 월 기준임.

2) 2024년 3월 이후 5세반은 '24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 외 추가로 5만원을 지원²⁰⁾하기로 하였으나, 어린이집 이용자의 경우 기존에도 부모 부담 보육료(차액보육료 포함)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부모가 받는 보육료 지원금의 상황 조정은 없음. 해당 추가지원금은 어린이집 이용자의 경우 부모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해당하므로, 여기에서는 제외함.

자료: 1) 보건복지부(2023a).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p.346, 363~365

2) 보건복지부(2024a).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337, 355~357를 통합하여 재구성.

유치원 유아학비의 경우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보육료와 동일하게 28만원이 지원된다(교육부, 2024. 2: 121). 방과후 과정비는 7만원이 지원되며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의 학비지원이 추가된다(교육부, 2024. 2: 222).

20) 교육부(2024. 2.). 2024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5세 추가지원 포함), p.2 (<https://www.gov.kr/portal/gvrnReport/view/H2402000001063160?policyType=G00302&Mcode=11219>. 2024.6.4. 인출)

21) 교육부(2024. 2.). 2024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5세 추가지원 포함).

22) 교육부(2024. 2.). 2024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5세 추가지원 포함).

유치원의 유아학비 등의 지원액은 2023년과 2024년 동일하나, 5세의 경우는 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유보통합 추진계획에 따른 단계적 추가지원의 일환으로 5만원의 지원금이 추가되어 33만원이 지원된다(교육부, 2024. 2: 1~2²³).

〈표 II-1-11〉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2023,2024년)

단위: 원

구분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3~4세반 (누리과정)	5세반 (누리과정)		3~4세반 (누리과정)	5세반 (누리과정)	
23년	적용시기	('23.1~'12)			('23.1~'12)		
	유아학비	100,000			280,000		
	방과후 과정비	50,000			70,000		
	저소득층 학비지원	없음			최대 200,000원		
24년	적용시기	('24.1~'12)	('24.1~'2)	('24.3~'12)	('24.1~'12)	('24.1~'2)	('24.3~'12)
	유아학비	100,000	100,000	150,000	280,000	280,000	330,000
	방과후 과정비	50,000			70,000		
	저소득층 학비지원	없음			최대 200,000원		

주: 1) 월 기준임.
 2) 2024년 3월 이후 5세반은 '24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 외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5만원)을 반영함.
 자료: 교육부(2023). 2023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p.1; 교육부(2024. 2.). 2024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5세 추가지원 포함), p.1~2를 통합하여 재구성.

2) 육아시간 지원 정책 동향

육아시간 지원과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이후 육아휴직 제도를 비롯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지원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등 각종 휴가제도의 기간 확대 및 분할방식 정비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꾀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23: 8; 고용노동부, 2024a). 2023년 제도개선 발표 이후 2024년 현재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는 제도는 육아휴직 제도이다. 다른 제도개선과 변경의 사항들은 2024년 하반기 이후부터의 시행을 잠정적으로 제시하는 단계이며²⁴, 2024년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조사기간(2023.7.1~2024.6.30)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육아휴직 제도의 변경사항(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23) 교육부(2024. 2.). 2024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5세 추가지원 포함).

24) 고용노동부(2024a). 2024년 확대·신설 추진 중인 모성보호 제도. https://www.moel.go.kr/local/cheongju/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40101329 (인출일: 2024. 6. 4.).

‘육아휴직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규정되며(고용노동부, 2024b: 2),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전 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소득 대체의 성격으로 제공되는 급여이다(고용노동부, 2023: 166~167).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되 급여의 상한(150만원)과 하한(70만원) 기준을 두어 제한적으로 제공되고(고용노동부, 2023: 174~176),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에 지급하여 휴직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꾀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고용노동부, 2023: 180).

이때 육아휴직 급여는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례제도를 두어서 규정된 급여보다 높은 급여를 지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례제도의 하나로 2024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이는 2022년도에 시행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2023년도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개선한 것으로 직접 양육 요구가 높은 초기 영아기 부모의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II-1-12〉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3+3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급여 비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3+3 부모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																		
1번째 육아 휴직자	1~3 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월1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임금 100% - 부부가 공통으로 휴직한 기간에 따라 급여의 상한액을 단계별로 상향하여 지원 ※ 급여의 월 상한액 <table border="1"> <tr><td>1개월</td><td>200만원</td></tr> <tr><td>2개월</td><td>250만원</td></tr> <tr><td>3개월</td><td>300만원</td></tr> </table>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임금 100% - 부부가 공통으로 휴직한 기간에 따라 급여의 상한액을 단계별로 상향하여 지원 ※ 급여의 월 상한액 <table border="1"> <tr><td>1개월</td><td>200만원</td></tr> <tr><td>2개월</td><td>250만원</td></tr> <tr><td>3개월</td><td>300만원</td></tr> <tr><td>4개월</td><td>350만원</td></tr> <tr><td>5개월</td><td>400만원</td></tr> <tr><td>6개월</td><td>450만원</td></tr> </table>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4~6 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	•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	•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																			
7~12 개월																						
2번째 육아	1~3 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250만원)	• 통상임금 100%	• 통상임금 100%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3+3 부모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																		
휴직자			- 부부가 공통으로 휴직한 기간에 따라 급여의 상한액을 단계별로 상향하여 지원 ※ 급여의 월 상한액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td>1개월</td><td>200만원</td></tr> <tr><td>2개월</td><td>250만원</td></tr> <tr><td>3개월</td><td>300만원</td></tr> </table>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 부부가 공통으로 휴직한 기간에 따라 급여의 상한액을 단계별로 상향하여 지원 ※ 급여의 월 상한액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td>1개월</td><td>200만원</td></tr> <tr><td>2개월</td><td>250만원</td></tr> <tr><td>3개월</td><td>300만원</td></tr> <tr><td>4개월</td><td>350만원</td></tr> <tr><td>5개월</td><td>400만원</td></tr> <tr><td>6개월</td><td>450만원</td></tr> </table>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50% (상한 월120만원, 하한 월70만원)	•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																				
7~12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																			

자료: 박은정 외 (2022).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통합적 제도 구축 연구, p. 44의 <표 II-2-3>에 '6+6 부모육아휴직' 추가하여 재구성.

그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II-1-10>과 같다. 2022년에 시행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때에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는 원래의 80%보다 높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상한액도 250만원까지 지급하였다(고용노동부, 2023: 186~186). 한편, 2023년의 '3+3 부모육아휴직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급여 상한액은 부부가 공동으로 휴직한 기간에 따라 200~300만원으로 적용하여 급여수준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보다 높였다(고용노동부, 2023: 182~183). 2024년부터 시행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18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을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상향된 급여를 지급하는 기간도 기존의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즉,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하며 이때의 상한기준은 월 최대 200~450만원으로 책정되었다(고용노동부, 2024b: 2).

이처럼 2024년의 6+6 부모육아휴직제도는 2023년의 3+3 부모육아휴직제도에 비해 부모 공동휴직 기간에 대한 상향된 급여를 제공하는 기간 자체를 확대한 것에 더해 공동휴직 기간에 따른 급여상한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 지원을 강화하였다.

2. 중국의 저출생 현황 및 대응 정책

가. 중국의 저출생 및 관련 현황

중국 통계청 인구자료에 의하며 2023년 중국 전체 인구는 14억 967만 명이며 이 중 0~14세 인구는 2억 3,063만 명으로 16.36%를 차지한다. 이러한 중국의 0~14세 인구비율은 2014년 이후 10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중국은 여전히 14억이 넘는 인구 대국이나 2022년 출생율과 사망률의 차이로 산출되는 인구 자연증가율이 -0.60%를 기록하여 중국이 공식적으로 인구축소 시기에 진입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²⁵⁾.

출산율과 출생아 수 자료로 중국의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저출생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1950년부터 최근 2020년의 장기간 자료로 출산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중국의 출산율은 1950년에 5.81명에서 인구 제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980년에는 2.24명으로 낮아졌으며 2010년에는 1.63명까지 떨어진 것이 확인된다. 중국의 인구정책이 출산 제한에서 출산 장려로 변화한 이후인 2010년대 중반 중국 출산율은 반등하기도 했으나 2020년 인구조사 결과 1.3명으로까지 떨어져 중국 건국 최초 1.5명대 미만의 출산율을 보인 것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표 II-2-1〉 중국 연령별 인구 수 : 2014~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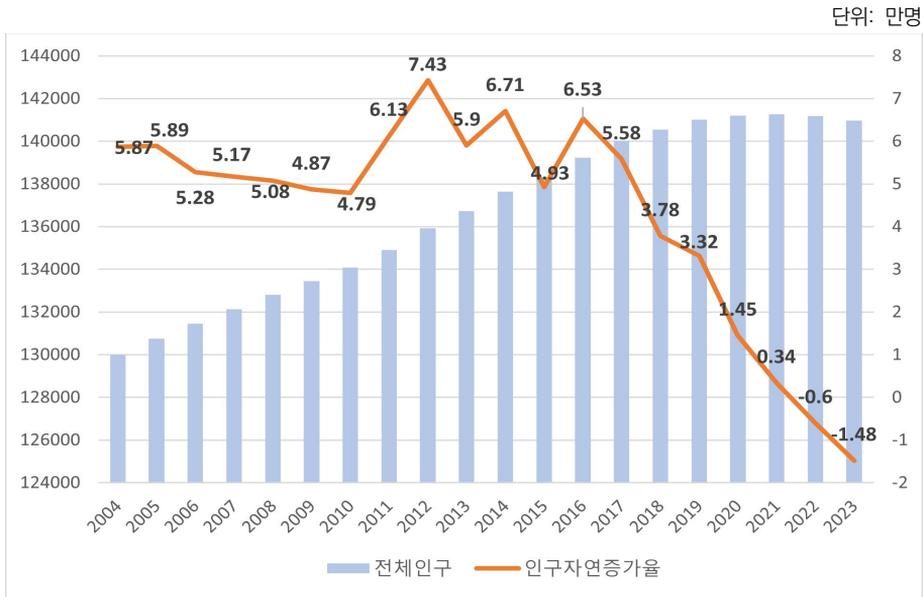
단위: 만명, %

연령 구분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전체	140,967	141,175	141,260	141,212	141,008	140,541	140,011	139,232	138,326	137,646
0~14세	23,063	23,908	24,678	25,277	23,689	23,751	23,522	23,252	22,824	22,712
비중	16.36	16.94	17.47	17.90	16.80	16.90	16.80	16.70	16.50	16.50
15~64세	96,228	96,289	96,526	96,871	99,552	100,065	100,528	100,943	100,978	101,032
비중	68.26	68.21	68.33	68.60	70.60	71.20	71.80	72.50	73.00	73.40
65세 이상	21,676	20,978	20,056	19,064	17,767	16,724	15,961	15,037	14,524	13,902
비중	15.38	14.86	14.20	13.50	12.60	11.90	11.40	10.80	10.50	10.10

자료: 중국통계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https://data.stats.gov.cn/english/easyquery.htm?cn=C01> (인출일: 2024. 9. 25.).

25) 중국통계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https://data.stats.gov.cn/english/easyquery.htm?cn=C01> (인출일: 2024. 9. 25.).

[그림 II-2-1] 중국 전체 인구수 및 인구 자연증가율의 변화 : 2004~2023년



주: 인구자연증가율(Natural Growth Rate)은 1000명당 자연증감한 인구 수로 '1000명당 출생률-1000명당 사망률'로 산출
 자료: 중국통계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https://data.stats.gov.cn/english/easyquery.htm?cn=C01> (인출일: 2024. 9. 25.).

[그림 II-2-2] 중국 합계출산율의 변화 : 1950~2020년



주: 杨胜慧 (2024). 中国的低生育水平及影响因素. CPDRC-KICCE 공동세미나(2024.6.12.) 발표자료. 中国人口与发展研究中心. p.2 발췌
 자료: 중국 국가통계청(国家统计局)

출산율에 이어 2011~2023년의 중국 출생아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출생아 수는 2011년대 초반 1,600~1,700만 명대에서 2010년대 중반까지는 지속 또는 일정 부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10년대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낮아져 2022년부터는 천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2023년에는 중국의 출생아 수는 902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I-2-3] 중국 출생아 수의 변화 : 2011~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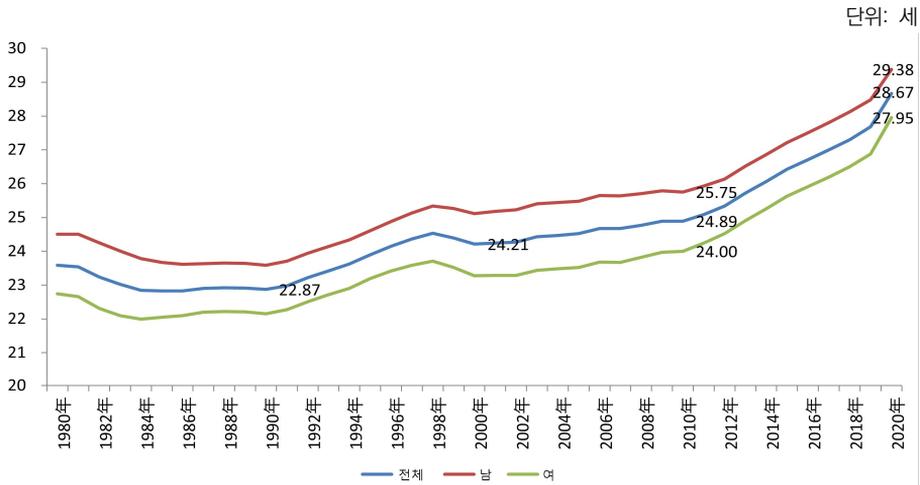
단위: 만명



주: 史毅 (2024), 中国托育服务发展现状、问题与挑战 CPDRC-KICCE 공동세미나(2024.6.12.) 발표자료. 中国人口与发展研究中心. p.2 발췌
 자료: 중국 국가통계청(国家统计局)

중국 저출생의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혼인연령의 상승과 가임기 여성인구의 규모 축소가 주로 언급된다(杨胜慧, 2024: 6). 1980년부터 2020년 중국의 초혼 연령 변화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나 1990년에 결혼한 사람들의 평균 초혼 연령은 22.87세였는데 비해 2000년에는 24.89세로 10년 동안 2세 상승했고 2020년에는 28.67세로 2010년보다 4세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중국인들의 혼인 지연에 대해 杨胜慧 (2024)는 중국 여성들의 교육 기간 증가,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 증가 그리고 도시화의 가속과 일생활의 양립의 어려움으로 인한 양육부담이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2022년 중국인구개발연구센터의 보고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 연령은 각각 평균 27.0세와 25.0세인데 비해 기혼 응답자 중 남성의 25.4%, 여성의 20.0%가 이상적인 결혼 연령 이후에 결혼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인들의 혼인 지연이 자발적인 원인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구성의 부담 등 비자발적이고 외부적인 요인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26).

[그림 II-2-4] 중국 연도별 초혼연령 변화: 1980~2020년



주: 杨胜慧 (2024). 中国的低生育水平及影响因素. CPDRC-KICCE 공동세미나(2024.6.12.) 발표자료. 中国人口与发展研究中心. p.7 발췌
 자료: 2020년 중국인구조사연감(中国人口普查年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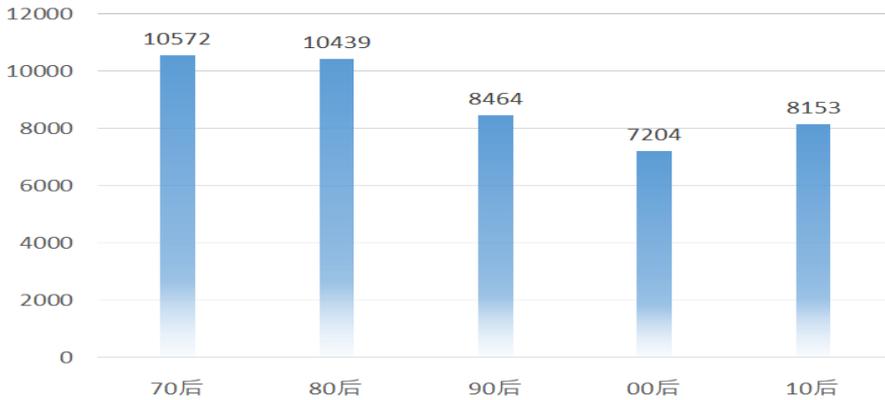
혼인의 지연과 함께 가임기 여성인구 수의 감소 또한 중국 저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杨胜慧, 2024: 9). 중국은 1978년부터 한자녀 정책을 펴왔기에 현재 가임기인 1970~90년대, 2000년대 초반 출생 여성들의 규모가 적은 특징이 있다. 2020년 기준으로 70년대와 80년대생 여성은 각각 1억명 이상이나 90년대생 여성은 8천만 명대이며, 2000년대생 여성은 7천만 명대까지 낮아진다. 한자녀 정책을 폐지한 이후 출생한 2010년대생 여성은 8천만 명대로 증가하였으나 큰 폭으로 규모가 커지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⁷⁾.

26) 杨胜慧 (2024). 中国的低生育水平及影响因素. CPDRC-KICCE 공동세미나(2024.6.12.) 발표자료. 中国人口与发展研究中心. p.6

27) 杨胜慧 (2024). 中国的低生育水平及影响因素. CPDRC-KICCE 공동세미나(2024.6.12.) 발표자료. 中国人口与发展研究中心. p.9

[그림 II-2-5] 중국 출생연도별 여성인구 규모 : 2020년

단위: 만명



주: 杨胜慧 (2024). 中国的低生育水平及影响因素. CPDRC-KICCE 공동세미나(2024.6.12.) 발표자료. 中国人口与发展研究中心. p.9 발췌
 자료: 2020년 중국인구조사연감(中国人口普查年鉴)

이상 중국의 저출생 관련 인구 현황을 요약해 보면 중국은 여전히 14억 명이 넘는 인구를 소유한 대국이지만 2020년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건국 이래 최초 1.5명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부터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 자연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중국 저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초혼 연령의 상승과 1978년 이후 강력하게 추진된 한자녀 정책으로 가임이 여성 인구 규모가 크게 축소된 상태라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나. 중국의 저출생 대응 육아지원 정책 변화와 주요 내용

중국의 인구 정책(计划生育政策)은 1978년 한자녀 정책을 실시한 이후 인구 변화에 따라 다른 대응을 해왔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정책과 함께 급속한 인구증가가 경제발전에 제한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강력한 인구 증가 억제정책을 시행하였다. 즉, ‘한자녀 정책’의 시행으로,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부부가 한 자녀만 가지도록 하는 규제하였으며, 위반시 벌금 등 처벌규정이 있어 대부분의 가정에 강력하게 적용되면서 인구 억제정책을 펴왔다.²⁸⁾

28) 농어촌의 경우 첫째아가 여자인 경우 둘째까지 허용하거나 일부 소수민족의 경우 두자녀이상을 허용하는 등의 예외가 적용되었다.

중국의 한자녀 정책은 30년간 지속되어 인구 증가를 성공적으로 억제하였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우려가 제기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에는 부모 모두가 한 자녀인 경우에는 두 자녀까지 출산을 허용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제한 없이 모든 부부가 두 자녀를 출산하도록 인구제한 정책을 완화하였다. 이러한 정책변화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중반 출산율이 잠시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자 2021년부터는 세 자녀 출산까지 허용하고 각종 출산지원 정책을 펴는 등 저출생에 대응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인구정책의 기초를 바꾸었다²⁹⁾.

중국의 개혁개방 전 계획경제 하에서 중국의 육아 정책은 단위(單位)를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다. 단위는 종신고용과 제반의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틀로서 영유아의 보육·교육도 담당하였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를 지원하는 보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은 계획경제 체제의 일부로서 사회주의 경제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영역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고 보고된다(姚建平, 2023: 103~104).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시장화, 개인화로의 정책 방향에 따라 기업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보육기관은 단위 복지에서 분리되었고 1990년대에 기관, 기업이나 공공 기관이 운영하던 다수의 유치원과 보육원 등은 폐쇄되거나 시장에 매각되었다. 1989년 보육 시설의 90% 이상이 국가와 기업에 의해 제공되었으나 2010년에는 29.5%에 불과했으며(史毅, 2024: 4), 2005년 교육부 교육 통계 보고서 2호에 따르면, 불과 5년 만에 2000년보다 집단 보육 기관이 56,668개 줄어들어 70%나 급감하였다(姚建平, 2023: 103~104). 이 과정에서 사립 보육기관들이 새로이 설립되었지만 불충분하며 대부분의 가정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비용이 들어 문제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姚建平, 2023: 103~104).

중국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어³⁰⁾ 영유아가구의 상당수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나 서술한 바와 같이 현재 공적인 육아 지원이 부족한 데에다 후커우(戶口制度, Hukou) 제도 등으로 배제되는 경우도 많아³¹⁾ 영유아의 돌봄의 가족 책임 비중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29) 중국 정부, 정책 및 규정의 해석_중국 인구 정책의 진화에 대한 '연대기', https://www.gov.cn/zhengce/2015-02/09/content_2816919.htm (인출일: 2024. 9. 28.).

30) 중국의 도시지역은 개혁개방 이후 영유아가구의 양육에 대한 개인 비중이 높아진 것과 동시에 경제개방의 여파로 도시화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2020년 제7차 인구조사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중국 도시에 거주하는 중국 인구는 전체의 63.89%로 2010년 대비 14.21% 증가하였으며 유동인구 규모는 2010년에 비해 1억 5천만 명이 증가한 3억 8천만 명으로 확인된다(중국 정부, 第七次全国人口普查主要数据情况, https://www.gov.cn/xinwen/2021-05/11/content_5605760.htm 인출일: 2024. 9. 30.).

31) 후커우 제도는 일종의 호적제도로 한 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특정 지역에 등록되는데 단순한 등록에 그치는

특히 중국 0~3세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은 부족하여 이 시기 조부모 돌봄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다. 최근 중국 영유아 가구의 주류 육아 모델은 '4+2+1/2'로 일컬어진다(蔡泽昊, 2024: 2). 이는 조부모 4명, 부모 2명의 공동 육아를 의미한다. 즉 중국 영유아 가구의 부모는 한자녀 정책 하에 태어난 세대로 외동 자녀들이 결혼하여 각각 두 명씩의 조부모를 두어 네 명의 조부모와 이들이 함께 한 명의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중국에는 약 1,800만 명의 이주 노인이 있으며, 이들 중 절반가량인 43%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이주한 것으로 보고된다(蔡泽昊, 2024: 3). 확대가족을 통한 영유아 돌봄은 정서적 안정과 가족 협력이라는 장점을 갖지만 세대 간 육아관의 충돌 및 갈등을 비롯해 도시로 이주한 조부모들의 적응과 통합의 문제, 이주한 조부모들의 의료, 공공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등이 제기된다(谢琼, 2024: 5). 중국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높은 편이며 한국에서 뚜렷이 보이는 육아기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현상은 두드러지지 않는다³²⁾. 이러한 상황에서 다자녀 출산시 육아부담 증가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의존한 가족 모델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학계 및 사회정책 분야에서 조부모 돌봄에 의존한 가족협력 모델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³³⁾.

다. 최근 중국의 육아지원 정책 동향

현재 저출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중국의 공적시스템은 여러 부처로 분리되어 관리되는 상황이다. 지원 대상 중 빈곤 및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는 민정부에서 담당하며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자원과 서비스(교육, 의료, 주택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형식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육아 지원도 거주지역의 후커우를 받은 등록 주민에게만 제공되는 것들이 많아 도시로 이주한 경우 도시지역의 후커우를 받기 어려워 후커우 없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는 각종 육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후커우 제도는 계획경제 하 노동력 수급과 이동을 조정하는 제도였으며 현재는 도시와 농촌간 이동을 제한하고 격차를 야기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에도 일부 또는 임시적인 완화 조치만을 보여와 도시로의 이주가 활성화된 후에도 도시 내 이중노동시장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이우태, 2021: 234~235). 현대 중국 도시 청년의 결혼과 비혼 의식과 양상에 대해 문화인류학적 입장에서 연구한 이용철(2019)은 중국 결혼시장에서 안정된 직장, 원만한 성격, 대도시 후커우 소지를 프로필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혀 대도시 후커우가 선호되는 결혼상대자의 조건으로 인식됨을 보여 준다(이용철, 2019: 158)

32) 2023년 기준 중국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45.1%이다(세계은행,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L.TLF.TOTL.FE.ZS?locations=CN> (인출일: 2024. 10. 5.)).

33) 중앙민족대학교 사회학부 교수 杨菊华(Yang, Juhua)와의 인터뷰(2024. 6. 12.)

의료와 0~3세 영유아 대상 보육은 위생부에서 담당한다. 한편, 4세 이후부터 취학 시기의 교육과 돌봄을 담당하는 주체는 교육부이며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9년(7~15세)의 의무교육 기간을 포함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제공되는 편이다³⁴⁾. 임신·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생육보험은 근로자의 휴가 사용과도 관련되어 있어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도 지원한다.

여성 근로자 대상 출산 및 임신 지원과 출산휴가 급여를 제공하는 생육보험과 진료 및 의약품을 지원하는 건강보험은³⁵⁾ 그간 분리 운영되다가 2019년 12월부터 통합관리 되었으며, 여성 대상 임신 출산과 관련된 의료와 휴가 지원은 최근 저출생의 심화로 강화되는 추세이다(史毅, 2024: 6). 대표적으로 시안(西安) 지방은³⁶⁾ 2023년 7월 2급 이하 지정 의료기관의 병원에서 출산하는 경우 출산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을 폐지했으며, 고위험 임신으로 3차 병원에서 출산해야 하는 경우 직장 건강보험 피보험자는 비용의 88%, 주민 건강보험 피보험자는 비용의 60%를 환급하도록 지원을 확대하였다. 특히 과거에는 분만 비용만 환급되었으나 조정을 통해 분만 뿐 아니라 외래진료, 입원비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환급된다. 이외에도 외래 산전 검진에 대한 일회성 보조금을 1,000위안에서 2,500위안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생육보험에서 제공되는 출산휴가 급여(생육수당, 生育津贴)는 기본적으로 98일간 지급되지만 대부분의 지방에서 158일 이상으로 연장해 제공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의 지방에서는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된다(谢琼, 2024: 6)³⁷⁾.

영유아 대상 보육·교육의 경우 4세 이후는 교육부 관할로 공공시스템에 의해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편이나, 0~3세에 대한 육아지원은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적절하게 공급되지 않아 출산 의욕을 낮추는 큰 요인으로 평가된다(姚建平, 2024: 60). 관련해 중국 정부는 2019년 3세 미만 영유아 돌봄서비스 발전 촉진을 위한 지침(关于促进3岁以下婴幼儿照护服务发展的指导意见)을 통해 보육기관의 설립기준 및 운영실무 강령,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조치를 비롯해 영유아 돌봄서비스 시범도시 운영 등을 제안한 바 있다(史毅, 2024: 3).

34) 북경사범대학교 교수 谢琼(Xie, Qiong)와의 인터뷰(2024. 6. 11.)

35) 중국의 사회보험은 중앙정부와 31개 주에서 공동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보험료 등에서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36) 시안시 의료보장국, 시안시 재정국, 산모 의료보장 혜택 관련 정책 최적화 및 조정에 관한 회람 발행(西安市医疗保障局 西安市财政局发布《关于优化调整生育医疗保障待遇有关政策的通知》)(2023. 7. 24.).

37) 중국의 경우 출산휴가 이후 제공되는 육아휴직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5~20일로 짧게 제공되는 편이다(谢琼, 2024: 6).

이는 1)국공립 및 사립시설의 확충, 2)사립 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 및 질 제고 향상, 3)가정식 보육의 확대 등으로 구체화 된다³⁸⁾.

국공립 시설 확충과 관련해 0~3세 대상의 보육시설 확대 뿐 아니라 기존 4~6세 대상 유치원의 이용대상 연령 확대로 배제되었던 연령대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용 가능한 시설 수가 적고 후쿠우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 많아 한계가 있다(姚建平, 2023: 102).

사립 시설 관련하여 2019년 이후 3년 동안 중국에서는 민간 및 단위³⁹⁾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의 비중이 전체 4.0%에서 15.0%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다. 하지만 이 역시 상당 부분 0~3세 대상 시설의 신규 설치보다는 기존의 4세 이상이 이용하는 사립 유치원이 대상 연령을 확대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된다(史毅, 2024: 14). 보육 시설의 사립화에 대해 姚建平(2023)는 국가(과거 단위)가 주 공급자였던 공보육 제도가 체제 변화를 겪으면서 정부가 육아 및 돌봄 책임을 가정에 전가하고 본래의 복지적 성격을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공립 시설을 모델로 삼고 공립과 사립, 공식 교육과 비공식 교육을 결합한 발전 패턴을 제안하기도 하였다(姚建平, 2023: 99~100).

가정식 보육은 가정에서 전업주부 또는 고용된 보육교사 등이 자신의 자녀 외에 유료로 다른 아이들을 돌보는 새로운 방식의 육아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⁴⁰⁾. 2019년 베이징, 광둥성 등의 주거지역에서 산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20년 이후 중국 정부는 이러한 가정보육센터를 촉진할 것을 명시하고 규제 및 관리 대책(《国务院办公厅关于促进养老托育服务健康发展的意见》(国办发〔2020〕52号)을 제시하기도 했다(姚建平, 2023: 98).

이러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2022년 말 기준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기관은 총 3,624,000개소로 인구 1,000명당 2.57개소이며, 대상 연령대 영유아 수의 6%만이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史毅, 2024: 6). 기관 수 자체가 적은 데에다 이용 시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매우 높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38) 중앙민족대학교 사회학부 교수 杨菊华(Yang, Juhua)와의 인터뷰(2024. 6. 12.)

39) 단위에서 제공하는 보육(单位托幼)은 개혁개방 이후 대다수 폐기되었으나 중국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단위 보육이 정부와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개설을 장려하며 부활하기도 했다(姚建平, 2023: 101). 시장화된 경제체제에서 운영되는 한국의 직장어린이집과 비슷한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40) 최근 중국의 가정식 보육은 새로운 모델로도 설명되지만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단위 보육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1983년부터 베이징시 각급의 여성연맹에서 가정보육센터를 설립해 16,000개까지 확대하고 등록률을 34.4%까지 확보했었던 모델에서 뿌리를 찾기도 한다(姚建平, 2023: 102).

베이징의 평균 보육 비용은 1인당 가처분 소득의 89%, 광저우의 경우 1인당 가처분 소득의 54%에 달한다(史毅, 2024: 12). 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은 대체로 20~30명 정원 규모이나 절반 정도만 정원을 채우고 있으며 운영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낮은 편으로 기관 이용자가 비이용자에 비해 후속 출산 의향이 낮게 나타난 조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의 전문가들은 기관 이용 부모들의 경우 워낙 자부담이 커 육아 부담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출산 의향이 떨어졌을 거라 해석하기도 한다(史毅, 2024: 16~17).

3. 일본의 저출생 현황 및 대응 정책⁴¹⁾

가. 일본의 저출생 및 영유아 인구 현황

1) 일본의 출생 및 인구 현황

일본의 출생 아동 수는 1920년 이후 매년 200만명 전후로 나타나다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3년동안(1947년~1949년) 제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매년 268만명이 출생하여 평균 합계출산율이 4.32명으로 나타났다(厚生労働省⁴²⁾). 그러나 1950년 이후로 출생 아동 수는 계속 하락하여 1966년에는 평균 합계출산율이 1.58명까지 떨어졌다(厚生労働省⁴³⁾). 1971년~1974년 4년간 제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평균 합계출산율이 2.14명으로 평균 출생아동 수 200만명 대로 회복하다 다시 하락하여 1989년에는 1966년보다 낮은 1.57명까지 떨어져 일본정부는 저출생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内閣府⁴⁴⁾). 2022년 현재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26명이며 출생아동 수는 77만750명으로 나타났다(厚生労働省⁴⁵⁾).

41) 본 절의 내용은 본 연구의 외부 공동연구진이 작성한 원고 내용과 국외 출장을 통해 수집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으며, 해당 원고의 원문은 보론에 추가하였음.

42)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人口動態総覧の年次推移(인구동태통계월보연계개황), <https://www.mhlw.go.jp/toukei/saikin/hw/jinkou/geppo/nengai22/dl/h1.pdf> (인출일: 2024. 3. 26.).

43)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人口動態総覧の年次推移(인구동태통계월보연계개황), <https://www.mhlw.go.jp/toukei/saikin/hw/jinkou/geppo/nengai22/dl/h1.pdf> (인출일: 2024. 3. 26.).

44) 内閣府(내각부), 少子化社会対策白書(소자화사회대책백서),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2772297/www8.cao.go.jp/shoushi/shoushika/whitepaper/measures/w-2022/r04pdfhonpen/pdf/s1-2.pdf> (인출일: 2024. 3. 27.).

45)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人口動態総覧(인구동태총람), https://www.mhlw.go.jp/toukei/saikin/hw/jinkou/kakutei22/dl/03_h1.pdf (인출일: 2024. 3. 26.).

합계출산율의 저하로 인해 일본의 총인구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고도경제성장기였던 1967년에 처음 총인구 1억명을 넘어선 후(内閣府⁴⁶), 1980년부터 1억 2,000만명 수준을 유지하다 2008년 1억 2,808명을 최고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24년 1월 현재 일본의 총인구는 1억 2,414만3천명으로 나타났다(総務省統計局⁴⁷).

저출생 문제는 인구수의 감소뿐만 아니라 인구구성의 불균형을 야기함으로써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적 문제 및 복지비용 증가 등을 초래했다. [그림 II-3-2]에서처럼 저출생으로 인해 0~14세 유소년 및 15~64세 경제활동가능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65세 이상의 노령층 비율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0~14세 유소년 인구 비율 11.9%, 15~64세 경제활동인구 비율 59.5%, 65세 이상 인구는 28.6%였다(内閣府⁴⁸). 이에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출생을 반동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2023년 6월 각료회의에서 “아동미래전략”을 의결하였다.

한편, 국외 출장을 통한 면담 과정에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에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하여, 지역간 인구 불균형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도청의 육아지원 정책은 한국이나 중국과 마찬가지로 합계출산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데 반해 출생아 수는 많은 특징이 있어, 도시형 육아지원 정책에 초점을 두고 촘촘한 육아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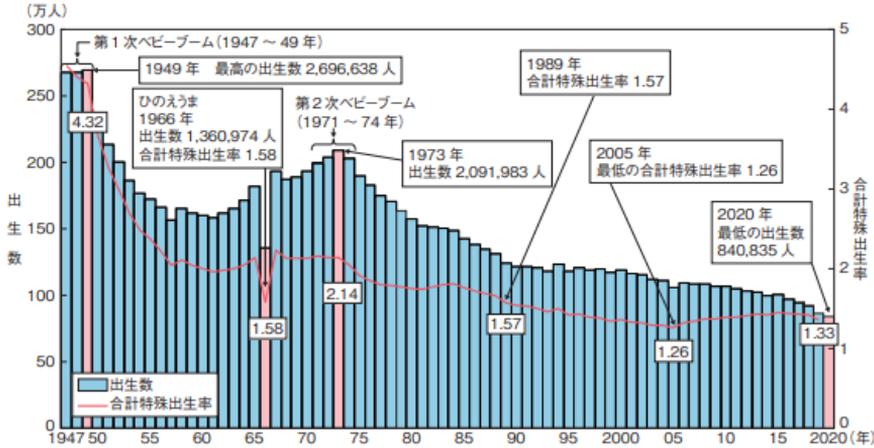
그런데, 일본의 인구 구성의 시계열적 추세 변화를 기준으로 저출생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한국과 중국 등에 비하면 일본은 비교적 완만한 저출생 현상을 보이는 국가로 평가될 수 있다.

46) 内閣府(내각부), 総人口(총인구),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special/future/sentaku/s2_1.html (인출일: 2024. 7. 14.).

47) 総務省統計局(총무성 통계국), 人口推計2024年(令和6年)1月確定値、2024年(令和6年)6月概算値, <https://www.stat.go.jp/data/jinsui/new.html> (인출일: 2024. 7.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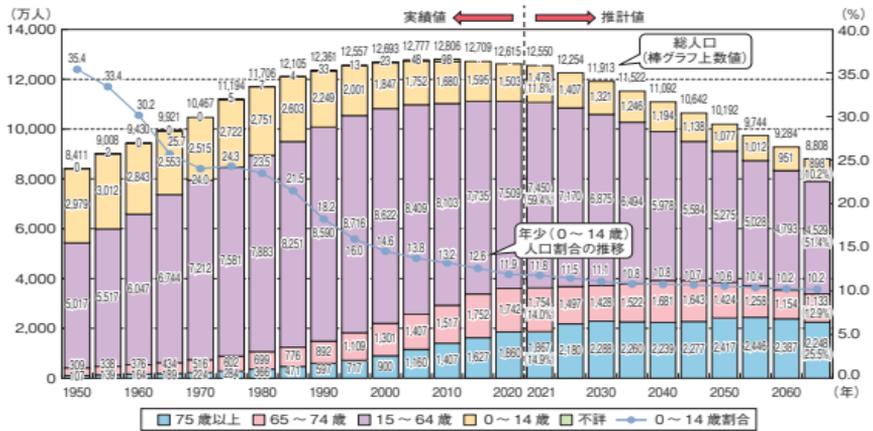
48) 内閣府(내각부), 少子化社会対策白書(소자화사회대책백서),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2772297/www8.cao.go.jp/shoushi/shoushika/whitepaper/measures/w-2022/r04pdfhonpen/pdf/s1-1.pdf> (인출일: 2024. 3. 26.).

[그림 II-3-1] 일본 연간 출생아동 수 추이



자료: 内閣府(내각부), 少子化社会対策白書(소자화사회대책백서),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2772297/www8.cao.go.jp/shoushi/shoushika/whitepaper/measures/w-2022/r04pdfhonpen/pdf/s1-2.pdf> (인출일: 2024. 3. 27.).

[그림 II-3-2] 총인구 추이 및 연령별 인구구성



자료: 内閣府(내각부), 少子化社会対策白書(소자화사회대책백서),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2772297/www8.cao.go.jp/shoushi/shoushika/whitepaper/measures/w-2022/r04pdfhonpen/pdf/s1-1.pdf> (인출일: 2024. 3. 26.).

2) 일본의 양육비용

일본에서도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이 출생율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⁴⁹⁾에 따르면 한 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2002년부터 20년간 일관되게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요인으로 응답하였다.

아동미래재단(こども未来財団, 2002) 조사결과 임신·출산비 50만3,663엔, 0세 아동 양육비 50만6,007엔, 1세 46만4,774엔, 2세 51만4,481엔, 3세 51만6,308엔, 4세 62만0,316엔, 5세 65만9,349엔, 6세 63만4,241엔으로 0~6세 아동의 총 양육비용은 4,419,130엔이 소요된다고 발표하였다⁵⁰⁾. 내각부(内閣府, 2009)에서도 아동미래재단과 유사한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 0~6세 중 보육소 및 유치원 등에 다니지 않는 경우 연간 평균 84만3,225엔, 취원 아동은 121만6,547엔이 소요된다고 발표하였다. 양육비용의 비목별로 살펴보면, 0~6세 영유아는 보육소 및 유치원 등에 지출하는 교육·보육비용이 가장 컸으며, 의료비는 전 연령대⁵¹⁾에서 낮게 파악되었다. 이는 1980년대부터 의료비 경감을 위한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 2021)에서도 유치원부터 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의 학교 및 과외비를 합산한 교육비를 공·사립별로 조사하였다. 2021년 기준 연간 교육비는 공립유치원 16만5,126엔(학교교육비 6만1,156엔+급식비 1만3,415엔, 학교 외 활동비 9만555엔), 사립유치원 30만8,909엔(학교교육비 13만4,835엔+급식비 2만9,917엔, 학교 외 활동비 14만4,157엔)으로 나타났다. 베넷세 교육종합연구소(ベネッセ教育総合研究所, 2022)는 1995년부터 5년 간격으로 미취학 영유아의 특기교육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1995년에 비해 2022년 특기교육 수강 영유아의 비율이 평균 13%p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9)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https://www.ipss.go.jp/ps-doukou/j/doukou16/JNFS16gaiyo.pdf> (인출일: 2024. 3. 27.).

50) 임신·출산비용 세부항목은 임신비용으로 임신부 용품, 임신 중 운동, 학습용품, 태교용품, 강좌참여 비용, 임신출산전후 교통비 등이며, 출산비용에는 정기검진, 분만비 등이 포함됨. 0세~6세 까지의 양육비 항목 내역은 a.육아비(식비, 보건, 의료비), b. 아동용품비(의류, 장난감, 문구비), c. 유치원, 보육관련 비용, d.과외비 등의 교육비. e. 용돈, f. 생일 등 행사비용, g.저축, 보험비 등임.

51) 해당조사에서는 0~6세 영유아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양육비용도 조사하여 발표하였으며, 여기서 언급하는 전 연령대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포함하는 의미임.

그리고 2022년 기준 특기교육별 순위는 수영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월 1회 정기적으로 가정으로 교재가 배달되는 통신교육, 체조, 영어회화 등의 어학교실 순으로 나타났다⁵²⁾. 1인당 특기교육 월 평균비용은 6,295엔이었으며, 세부적으로 1,000엔 미만인 31.3%, 1,000~5,000엔 미만 27.9%를 포함하여 월 1만엔 미만으로 지출하는 비율이 78.6%로 나타났다.

나. 일본의 저출생 대응 육아지원 정책 변화와 주요 내용

일본은 1989년 합계출산율 1.57명 쇼크를 계기로 5년, 10년을 주기로 다양한 대응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보육시설 확충에서 점차 일-가정 양립 및 아동을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 조성의 방향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1) 엔젤플랜⁵³⁾과 신엔젤플랜⁵⁴⁾을 통한 보육서비스 확충정책(1990년~2004년)

1994년 정부는 “앞으로의 아동양육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 방향(엔젤플랜)”에서 아동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환경정비, ② 영아보육 등 보육서비스 확충, ③ 신생아 방문지도, 영유아 건강검진 등 아동양육에 편리한 환경 조성, ④ 양질의 임대주택 보급 등 아동·가족 생활에 편리한 환경조성, ⑤ 경쟁지향적 교육환경 개선, ⑥ 경제적 부담 경감, ⑦ 전업주부의 육아불안 해소를 위한 지역아동양육 지원센터 설치 등 7가지 시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후속 조치로 시행된 긴급보육대책 5개년 사업(1995년~1999년)에서는 여성 근로자 증가에 대응하여 보육서비스 확충을 목표로 진행하여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나, 대기 아동 해소 및 출생률 증가에는 미치지 못했다. 신엔젤플랜⁵⁵⁾(2000년~2004년)에서는 성역할 분업을 전제로 한 직장

52) 1995년부터 5년 간격으로 시행되었으나, 2000년은 코로나로 인해 2022년에 행해졌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는 통신교육을 가장 많이 하였으나, 2010년부터 수영을 가장 많이 하고 있음.

53) 社会福祉法人 阳光福祉会(사회복지법인 양광복지회), エンゼルプラン(엔젤플랜), <https://sunshine.ed.jp/%E3%82%A8%E3%83%B3%E3%82%BC%E3%83%AB%E3%83%97%E3%83%A9%E3%83%B3/> (인출일: 2024. 7. 17.).

54) 社会福祉法人 阳光福祉会(사회복지법인 양광복지회), 新エンゼルプラン(신엔젤플랜), <https://sunshine.ed.jp/%E6%96%B0%E3%82%A8%E3%83%B3%E3%82%BC%E3%83%AB%E3%83%97%E3%83%A9%E3%83%B3%E3%81%AB%E3%81%A4%E3%81%84%E3%81%A6/> (인출일: 2014. 7. 17.).

55) 정부는 엔젤플랜을 수정하여 1999년에 “저출생 대책 기본방침”을 각의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실시계획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저출생 대책의 구체적 실시계획에 대하여” (일명, 신엔젤플랜)을 실시하였다.

우선의 기업풍토 및 근로방식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되었으나, 실제 추진된 정책의 내용은 보육서비스, 모자의료체계 및 지역교육환경과 관련한 내용들이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1997년 주 40시간 근로시간제의 시행 및 2001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육아휴업소득대체율이 40%로 인상(守泉 理惠, 2014. 4.)되는 성과가 있었다.

2) 청년층 자립 및 경제적 지원을 중시한 저출생 대응정책(2005년~2014년)

저출생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본은 2003년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과 저출생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여 자녀양육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 사업주의 환경정비⁵⁶⁾ 및 저출생 장기로드맵인 저출생사회대책대강 작성 의무화를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영유아양육응원플랜(子ども・子育て応援プラン, 厚生労働省⁵⁷⁾)(2005년~2009년) 및 아동·영유아양육비전(子ども・子育てビジョン, 文部科学省⁵⁸⁾)(2010년~2014년)이 시행되었다.

아동영유아양육응원플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4가지 중점과제⁵⁹⁾를 중심으로 28개의 세부과제를 도출한 후, 세부과제별로 실시할 137개의 구체적 시책과 함께 5년 후 목표치까지 전망하였다. 아동영유아양육응원플랜은 엔젤플랜 및 신엔젤플랜의 시책을 계승하면서도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과 지역사회 변모로 인한 육아불안 등을 저출산 유발의 요인임을 추가로 적시하고 구체적 시책으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저출생의 주요 원인인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에 대해 세부과제로 도출하지 않고 세제 검토로만 남겨두는 등 소극적 대응에만 머무른 한계가 있었다.

56)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의 제5,7, 8,9조에서 주무대신은 “ 차세대육성종합대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지침 작성”, “시정촌 및 도도부현은”지역에서의 아동양육, 일-가정 양립지원 등과 관련한 계획작성”, 사업주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환경정비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였다.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도 제2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모두에게 아동양육을 위한 환경정비의 책임을 명시함.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제7조는 “정부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저출산 대응의 지침이 되는 시책의 대강을 작성하여야만 한다”라고 규정함.

57)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子ども・子育て応援プラン(아동·영유아양육 응원플랜), <https://www.mhlw.go.jp/houdou/2004/12/h1224-4c.html> (인출일: 2024. 4. 16.).

58) 文部科学省(문부과학성), 子ども・子育てビジョン(아동·영유아양육비전), https://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2/siryou/_icsFiles/afiedfile/2010/03/16/1290947_2_2.pdf (인출일: 2024. 7. 17.).

59) 중점과제1: 청년세대의 아동의 건전한 성장(세부과제: 청년층 취업지원충실, 장학금지원내실화 등 4개), 중점과제2: 일-가정양립지원과 근로방식 재검토(세부과제: 육아휴업제도 등 6개), 중점과제3: 생명의 소중함과 가정의 역할에 대한 이해(세부과제: 영유아와 함께하는 기회확대 등 3개), 중점과제4: 함께하는 아동양육과 연대(세부과제: 취학전 보육, 교육 충실 등 15개)

저출생 대응정책의 지속적 추진에도 여성근로자의 증가로 인한 대기아동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임이 계속 제기되었다⁶⁰⁾. 이에 정부는, 아동영유아양육지원플랜의 구체적 시책과 함께 아동수당, 고교교육 무상화 등의 경제적 지원과 보육제도 개편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아동영유아양육비전을 시행하였다. 이에 1972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아동수당대상자의 연령 및 지원기준, 금액 등이 일부 개선⁶¹⁾되고 가정적 보육사업, 소규모 보육사업, 인정어린이원,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 설치 등으로 대기아동도 점차 감소하였다.

3) 결혼·임신·출산·아동양육 단계별 빈틈없는 지원을 강조한 저출생사회대책대강(2015년~2019년) 및 1억 총 활약플랜(2016년~2025년)

저출생사회대책대강(少子化社会対策大綱)(内閣府⁶²⁾)은 5개의 중점과제별로 시행할 구체적 시책⁶³⁾과 함께 지역, 기업 등을 포함한 사회전체가 결혼·임신·출산·아동양육의 각 단계별로 다음 표와 같은 시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것을 명시하였다.

〈표 II-3-1〉 결혼·임신·출산·아동양육의 각 단계별 저출생 대책

생애주기별	세부내용
결혼	인생설계를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컨설팅 결혼, 양육에 대한 정보제공
임신·출산	자녀양육포괄지원센터 정비 출산휴가중 경제적 부담경감·출산수당, 사회보험료면제 등

60) 総務省(총무성). 少子化対策に関する政策評価書(저출생대책정책평가서), https://www.soumu.go.jp/menunews/s-news/daijinkanbou/040720_3_h.pdf (인출일: 2024. 7. 14.);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2006) 第13回出生動向基本調査 結婚と出産に関する全国調査夫婦調査について(제13회출생동향기본조사, 결혼과 출산에 관한 전국조사부부조사에 대하여), <https://www.ipss.go.jp/ps-doukou/j/doukou13/point13.asp> (인출일: 2024. 4. 10.).

61) 2010년 4월 아동수당은 소득제한 없이 중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월 1만3,000엔을 지급함. 그러나 재원조달문제로 동년 10월부터는, 연령 및 출생순위별로 차등을 두어, 3세 미만아동 1만5,000엔, 3세 이상~초등학생으로 첫째 또는 둘째아동은 1만엔, 세 번째 아동 1만5,000엔, 중학생은 1만엔 지급함.

62) 内閣府(내각부), 少子化社会対策大綱(저출생사회대책대강), <https://www.mhlw.go.jp/file/05-Shingikai-11901000-Koyoukintoujidoukateikyoku-Soumuka/0000081807.pdf> (인출일: 2024. 4. 16.).

63) 5개의 중점과제로는 1. 영유아양육지원시책 충실화(보육서비스 양적, 질적 확충, 방과 후 보육문제해결 등), 2. 청년세대의 결혼출산희망실현을 위한 환경 정비(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촉진, 결혼 아동양육자금 교육자금 일괄증여에 따른 비과제 조치 등 경제적 지원 등), 3. 다자녀가정에 대한 배려(아동수당, 유아교육 보육료 무상화, 보육소 및 공영주택 우선입소 등), 4. 근로방식개선(장시간노동억제, 육아휴직 촉진, 남성의 가사육아의식개척, 유연근무제 등), 5.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 강화(지역 선진사례지원 발굴, 세대간 교류지원 등).

생애주기별	세부내용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금지: 기업에 대한 지도강화 주산기의료체계확보 충실:산부인과 의사확보, 불임전문 상담센터정비 및 불임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아동양육기	경제적 부담완화: 아동수당,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단계적 실시 고교생 학습비 지원 3세대 동거, 근거리 거주 촉진, 소아 의료 충실 건강, 안전, 안심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 장애아동, 빈곤아동 등 다양한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지원
교육	임신, 출산관련 의학적, 과학적 지식교육(학교, 사회교육기관)
직업	정규직화 촉진, 처우개선 아동양육가정, 직업인 등 지역에서 활약하는 다양한 롤모델 제시

그리고 정책이 종료되는 2019년 말에 달성해야 할 수치까지 구체적으로 제시⁶⁴⁾하였다. 특히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이 저출생으로 연결되고 있으므로 2015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년간 양친, 조부모가 자녀, 손자에게 1,000만엔을 한도로 증여하는 경우 비과세하는 “결혼, 자녀양육자금, 교육자금의 일괄증여에 따른 비과세조치”를 명시하고 시행하였다.

2016년에는 향후 50년 후에도 1억 명 인구 규모를 유지하고 모든 국민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 1.8명이 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10년간의 출생율 향상 로드맵 “일본 1억 총 활약플랜”을 발표하였다. “일본 1억 총 활약플랜”은 출생율 향상을 위해 12개의 대응과제별 세부내용과 목표치⁶⁵⁾도 함께 명시하였다.

64) 예를 들면 아동양육가정포괄지원센터를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설치, 영유아가정방문사업 전체 시정촌 실시, 출생아동 1만명당 신생아집중치료관리실을 전체 시도부현에서 25~30병상 확보, 남성 육아휴직취득율 13%, 6세 미만아동 남성의 육아가사참여시간 1일 2시간 30분, 주60시간 이상 근로자 비율 5%등임. 뿐만 아니라 결혼·임신·아동양육에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사업으로 도로, 주택, 여객기차 차량 등의 배리어프리 비율도 명시함.

65) 12개의 대응과제는 1.청년층 고용안정,처우개선, 2.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 3. 결혼지원충실, 4. 임신·출산·육아불안해소, 5. 3세대 동거, 근거리주거환경개선, 6.다양한 보육서비스 정비, 7. 보육인재확보, 8. 근로방식개혁, 9. 여성활약추진, 10.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원, 11. 교육기회저해요소 극복, 12. 양육이 곤란한 가족·아동에 대한 배려이며, 목표치는 대응과제별(청년층 고용안정, 처우개선) 세부내용별(25세~34세 청년층 비정규직 비율 2020년까지 절반수준으로 경감 등)로 설정됨.

4) 아동미래전략 각료회의(2023. 12)⁶⁶⁾

최근 일본 또한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한 고심 끝에 2023년 아동가정청을 설립하고, '아동미래전략' 정책을 발표하였다(아동가정청, 2024). '아동미래전략'은 크게 아동을 가진 세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양육환경 구성을 위한 서비스지원 그리고 일하는 방식에 대한 일·가정 양립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경제적 지원으로는 대표적으로 아동수당, 출산응원지원급부금 그리고 대학생 장학금(학자금 대출 포함)이 있으며, 서비스 지원 부문은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되는 기존의 0~2세 보육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외벌이 가구에 대해서도 월 10시간까지 육아가구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였다. 추가로 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세 6:1에서 5:1, 2세 6:1에서 5:1, 4~5세는 30:1에서 25:1로 낮추는 조치를 취하였다(단, 3세는 15:1을 유지). 한편,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는 육아휴직, 텔레워크 도입 노력 의무, 시간단축근무 도입, 휴가 방식 마련 등의 대책이 포함되었다. 각 제도별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 '다'항에 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한편, 국외 출장 과정에서 정부 부처 관계자 뿐 아니라 전문가들은 일본의 저출생 대응 정책은 아동 권익 보호 등 아동을 중심으로 한 지원 체계 구축이 핵심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보육서비스의 지원도 양육가구의 양육부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도 아동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방치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 좀 더 방점을 두어 제도 설계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출생을 자체를 정책의 목표로 두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사회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분위기라는 점을 언급하며, 아동 정책이라는 맥락에서 저출생 정책을 해석하고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보육 정책 및 아동 정책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상황으로, 보편적 서비스 형태의 지원 필요성에 공감대가 낮은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맞벌이 가구가 급증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맞벌이 가구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보육서비스의 확충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66) 관련 내용은 국외 출장으로 일본 가정청과 도쿄도청을 방문하여 실시한 면담 내용과 아동가정청(2024) 全国こども政策関係部局長会議 자료와 부처(아동가정청, 도쿄도청) 내부자료 등을 포괄적으로 인용함.

육아시간 지원의 강화 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 의견이었다. 이때 특징적인 점은 육아시간 지원 정책에 있어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으로 제도가 최근 크게 확장되는 추세라는 점이었다. 이와 같이 일본이 기업들이 육아가구를 위한 지원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우수한 청년 인력의 유치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업 문화의 확산과 정착이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이라는 입장으로, 청년층 일자리 상황이 한국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러한 문화 확산에 일조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최근 일본의 육아지원 정책 동향

1) 영유아 가구 비용 지원 정책 동향

가)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

유치원 및 보육소 등의 교육·보육료가 자녀양육에 있어 부담감으로 작용한다는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⁶⁷⁾ 및 내각부(内閣府)⁶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본은 2006년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을 시작하였다. 10여년간의 논의를 통해 2019년 10월부터 0~2세 저소득층과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의 <표 II-3-2>와 같다.

가정양육이 불가능한 저소득가정의 0~2세 영유아는 월 4만2,000엔의 범위 내에서 보육료 지출 없이 보육소 및 인정어린이원 등의 법정보육시설과 인증보육소 및 베이비호텔 등의 인가 외 보육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다(こども家庭庁⁶⁹⁾). 3~5세 유아는 가정양육 가능 여부에 따라 월 3만7,000엔, 2만5,700엔의 범위 내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다만, 급식비, 통원차량비, 견학, 소풍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호자 부담을 유지하고 있다(こども家庭庁⁷⁰⁾).

67)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21世紀出生児童縦断調査結果概要(21세기 출생아동종단조사 결과개요) <https://www.mhlw.go.jp/toukei/saikin/hw/syusseiji/05/kekka3.html> (인출일: 2024. 5. 29.).

68) 内閣府(내각부), 「少子化社会対策に関する子育て女性の意識調査」の概要(저출생사회대책관련 자녀양육여성 의 의식조사개요), https://www.gender.go.jp/kaigi/danjo_kaigi/siryoo/pdf/ka20-2.pdf (인출일: 2024. 5. 29.).

69) こども家庭庁(아동가정청), 幼児教育・保育の無償化概要(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개요),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8a55e619-4b0a-4ab2-b385-45aeb296b425/d2817ebc/20230929_policies_kokoseido_mushouka_about_01.pdf (인출일: 2024. 5. 28.).

〈표 II-3-2〉 영유아 교육,보육 무상화 정책의 내용

<p>1. 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에 해당하는 모든 아동(1호 인정, 2호 인정) ● 0-2세 아동: 주민세 비과세 세대(연봉 약 250만엔 미만)의 아동으로서 가정에서 보호자가 보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호 인정) <p>2. 대상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소 · 인정어린이원 · 유치원 ● 지역형 보육 ● 인가 외 보육시설(베이비호텔, 인증보육소, 베이비시터, 인가외의 사업소내 보육·거택방문, 기업 주도형 보육사업 등) ● 아동 · 영유아 양육지원사업: 일시보육, 병원보육, 패밀리 서포터 센터 ● 장애아동 통원시설 <p>3. 무상화 금액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료 전액 무료: 보육소, 인정어린이원, 공립 유치원 및 아동 · 영유아 양육지원신제도 적용 사업유치원, 지역형 보육, 인가 외의 기업주도형 보육사업, 인증보육소, 장애아동 통원시설 ● 아동·영유아 양육지원신제도 적용제외 사업유치원, 인가 외 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3-5세의 1호 인정 아동: 유치원 상한액 25,700엔 ㄴ. 3-5세의 2호 인정아동 : 보육소 상한액 37,000엔 ㄷ. 0-2세의 3호 인정아동으로서 주민세 비과세 세대 아동: 보육소 상한액 42,000엔 <p>4. 무상화 제외 항목(실비징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비(주식비, 부식비), 통원차량비, 행사비(견학, 소풍 등) 단, 연간 수입 360만 엔 미만 가구의 아동 및 모든 세대의 3번째 아동의 급식비는 면제

주: こども家庭庁(아동가정청),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저자가 작성하였음.
 자료: こども家庭庁(아동가정청), 幼児教育・保育の無償化概要(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8a55e619-4b0a-4ab2-b385-45aeb296b425/d2817ebc/20230929_policies_kokoseido_mushouka_about_01.pdf (인출일: 2024. 5. 28.).

나) 아동수당

일본의 아동수당은 1971년 아동수당법 제정 후, 1972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3년 “아동미래전략(子ども未来戦略)”에 따라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가구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아동수당의 소득제한을 없애고, 연령을 18세까지 상향하는 개선방안 아래 〈표 II-3-3〉와 같이 발표되어 시행하고 있다. 0~3세 미만의 첫 번째, 두 번째 아동은 월 1만5,000엔, 3세부터 ~ 고등학생까지는 1만엔, 세 번째 이후 아동은 0세~고등학생까지 월 3만엔을 지급한다(こども家庭庁⁷¹⁾).

70) こども家庭庁(아동가정청), 幼児教育・保育の無償化概要(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개요),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8a55e619-4b0a-4ab2-b385-45aeb296b425/d2817ebc/20230929_policies_kokoseido_mushouka_about_01.pdf (인출일: 2024. 5. 28.).

71) こども家庭庁(아동가정청), こども未来戦略(아동미래전략),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

〈표 II-3-3〉 일본의 아동수당

구분	1인당 월지급액	개선방안	
3세 미만	15,000엔	15,000엔	3번째 자녀부터: 30,000엔
3세부터~초등학생	10,000엔(세번째 자녀일 경우: 15,000엔)	10,000엔	
중학생	10,000엔		
고등학생	없음		
연수입960만엔~1200만 엔 세대	특례급부로 5,000엔	소득제한 없이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위와 같이 지급	
1,200만엔 이상세대	아동수당 급부 제외		

자료: とも家庭庁(아동가정청), とも未来戦略(아동미래전략),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fb115de8-988b-40d4-8f67-b82321a39daf/b6cc7c9e/20231222_resources_kodomo-mirai_02.pdf (인출일: 2024. 7. 11.).

다) 출산육아일시금

출산은 질병, 사고로 인한 상처 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분만비용 및 입원비 등은 전액 본인부담이 되어 부담액이 크다. 이에 출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가입하고 있는 공적의료보험(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공제조합)의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출산을 하였을 경우,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되며(厚生労働省⁷²⁾), 2023년 4월부터 일시금으로 50만엔이 지불(厚生労働省⁷³⁾)되고 있다. “아동미래전략(子ども未来戦略)”에서는 2026년을 목표로 정상 분만에도 건강보험을 도입하고,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라) 출산·육아응원교부금

핵가족화의 진행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연결망이 희박한 현대사회에서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고립감 및 불안감을 가지는 가정이 많다. 이에 0~2세 저연령 아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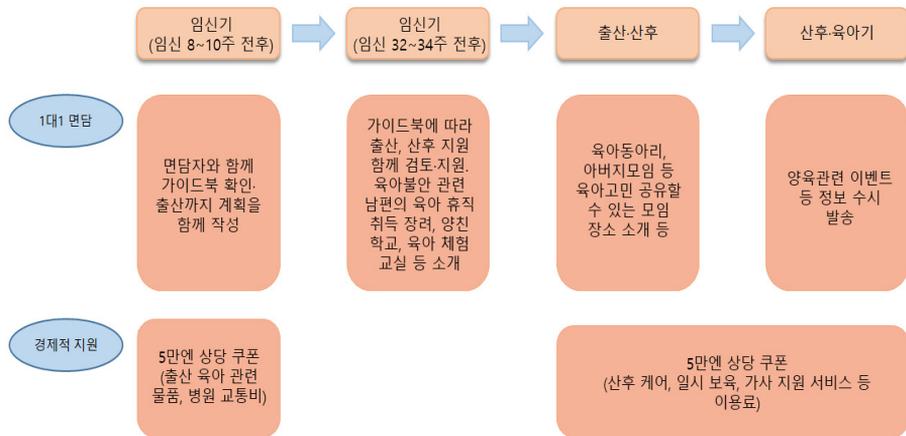
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fb115de8-988b-40d4-8f67-b82321a39daf/b6cc7c9e/20231222_resources_kodomo-mirai_02.pdf (인출일: 2024. 7. 11.).

72)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出産育児一時金等の医療機関等への直接支払制度「実施要綱」(출산육아일시금등의 의료기관직접지불제도 실시요강) <https://www.mhlw.go.jp/content/12400000/001093053.pdf> (인출일: 2024. 7. 11.).

73)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出産育児一時金の支給額・支払方法について(출산육아일시금지급액, 지급방법에 대하여),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iryuhoken/shussan/index.html (인출일: 2024. 7. 16.).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임신기부터 출산·육아기까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1대1 상담과 함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육아불안을 해소하고자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그림 II-3-3]과 같다(厚生労働省⁷⁴).

[그림 II-3-3] 출산·육아응원교부금 급여진행절차



주: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出産・子育て応援交付金の概要について(출산·육아응원교부금에 대하여)를 토대로 저자 작성.

자료: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出産・子育て応援交付金の概要について(출산·육아응원교부금에 대하여), <https://www.mhlw.go.jp/content/11908000/001035057.pdf> (인출일: 2024. 7. 16.).

임산부는 거주지 시정촌에 설치되어 있는 자녀양육포괄지원센터⁷⁵)에서 임신부터 출산·양육기까지 단계별로 1대1 상담을 통해 출산 및 육아 관련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한다. 경제적 지원으로는 임신초기 및 출산기를 전후하여 5만엔씩 쿠폰을 교부받아 출산 및 육아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厚生労働省⁷⁶).

74)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出産・子育て応援交付金の概要について(출산·육아응원교부금에 대하여), <https://www.mhlw.go.jp/content/11908000/001035057.pdf> (인출일: 2024. 7. 16.).

75)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의 육아불안이 저 출생의 요인이라는 지적이 엔젤플랜에서부터 제기되어, 이를 위해 1994년부터 보육소에 지역아동양육지원센터가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2015년 저출생 사회대책대강에서는 아동양육포괄지원센터로 개명하고 전국적 설치계획을 명시함.

76)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出産・子育て応援交付金の概要について(출산·육아응원교부금에 대하여), <https://www.mhlw.go.jp/content/11908000/001035057.pdf> (인출일: 2024. 7. 16.).

마) 출산수당금

출산 전·후 일정기간 동안 휴업을 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수당으로 우리나라의 출산휴가 수당과 유사하다. 노동기준법에서는 산전사후 휴업기간 중 급여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출산휴가 중 급여 지불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다. 출산수당금은 출산 전 42일(쌍둥이는 98일)부터 출산 후 56일까지의 범위 내에서, 휴업으로 인해 급여를 지불받지 못한 여성이 대상이며, 일일 지급액은 과거 12개월간 평균보수월액을 30일로 나눈 금액의 3분의 2이다(全国健康保険協会⁷⁷⁾). 다만, 출산수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성이 건강보험의 가입자 본인이어야 한다.

바) 육아휴업급부금

육아휴업급부금은 출생아동이 1세가 될 때까지(부모가 함께 육아휴업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 2개월까지) 신청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다. 육아휴업급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기간 중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은 면제되며 급부액은 다음과 같다(厚生労働省⁷⁸⁾). 그리고 출산 후 180일까지의 월 상한지급액은 2024년 기준 315,369엔이며, 180일 이후 상한액은 235,350엔이다. 1991년 육아휴업법 제정 이후 취득자는 계속 증가하여 2021년 현재 여성 취득자는 95.1%, 남성 취득자는 14.0%로 나타났다.

육아휴업 시작~180일까지 : 휴업시작시점 임금일액⁷⁹⁾*지급일수*67%
 육아180일 이후~: 휴업시작시점 임금일액*지급일수*50%

저출생의 심화와 함께 2021년 일본 정부는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산후 아빠 육아휴직 급여금(출생시육아휴업급부금)”을 창설하였다. 여성의 산후휴업기간 중 남성이 육아휴업과는 별도로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자녀 출생 후 8주간 이내에 4주간까지

77) 全国健康保険協会(전국건강보험협회) 홈페이지, <https://www.kyoukaikenpo.or.jp/g3/sb3290/r148/> (인출일: 2024. 7. 14.).

78)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育児休業給付の内容と支給申請手続(육아휴업급부내용과 지급신청절차), <https://www.mhlw.go.jp/content/11600000/001276629.pdf> (인출일: 2024. 8. 23.).

79) 육아휴업시작 전 6개월간 지급된 총액을 180일로 나누어서 나온 금액으로, 일액 상한액은 15,690엔, 하한액은 2,869엔이다.

취득 가능하며,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취득할 수 있다. 급부금은 육아휴직 급부금 계산식과 동일하나, 휴업기간일수 상한선이 28일이다. 따라서 아파육아휴직급부금의 상한액은 29만4,344엔이다(1만5,690엔×28일×67% = 29만4,344엔). “아동미래 전략(子ども未来戦略)”에서 출생 후 일정 기간 내 양친의 육아휴직취득촉진을 위해 급부율을 8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사) 영유아 의료비 조성제도(지방자치단체)

일본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취학 전 영유아의 의료비 본인부담 비율은 20% 수준이다(東洋經濟 보도자료⁸⁰).

영유아 의료비 조성제도는 아동에 대한 의료비 본인 부담분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보조하는 사업으로, 1961년 이와테현 사와우라무라(沢内村)에서 1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大阪医療福祉専門学校⁸¹)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⁸²에 의하면, 전국의 모든 시구정촌이 영유아 의료비조성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87%의 시구정촌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시구정촌은 외래의 경우 65%(1,136곳), 입원의 경우에는 70%(1,222곳)로 조사되었다(厚生労働省⁸³).

의료비를 세금으로 지원함으로써 과잉진료가 유발되고, 이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높아진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중앙정부는 현재까지 초등학교 이상 아동에게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삭감해 왔으나, 이를 폐지하겠다고 “아동미래전략(子ども未来戦略)”에서 발표하였으나, 구체적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80) 東洋經濟(동양경제) 보도자료, 子どもの医療費 助成が過熱しすぎの問題点(아동의료비조성가열경쟁이 초래하는 문제점), <https://toyokeizai.net/articles/-/266769> (인출일: 2024. 6. 30.).

81) 大阪医療福祉専門学校(오사카의료복지전문학교), 各地方自治体における乳幼児医療費助成制度の比較と課題(지방자치체별 영유아의료비 조성제도 비교·과제), <https://www.ocmw.ac.jp/contents/sotuken/archives/sotuken/12932> (인출일: 2024. 6. 30.).

82)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令和3年度「乳幼児等に係る医療費の援助についての調査」について(2021년도 영유아 등에 관한 의료비 원조에 관한 조사에 관하여), https://www.mhlw.go.jp/stf/newpage_28023.htm (인출일: 2024. 6. 20.).

83)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令和3年度「乳幼児等に係る医療費の援助についての調査」について(2021년도 영유아 등에 관한 의료비 원조에 관한 조사에 관하여), https://www.mhlw.go.jp/stf/newpage_28023.htm (인출일: 2024. 6.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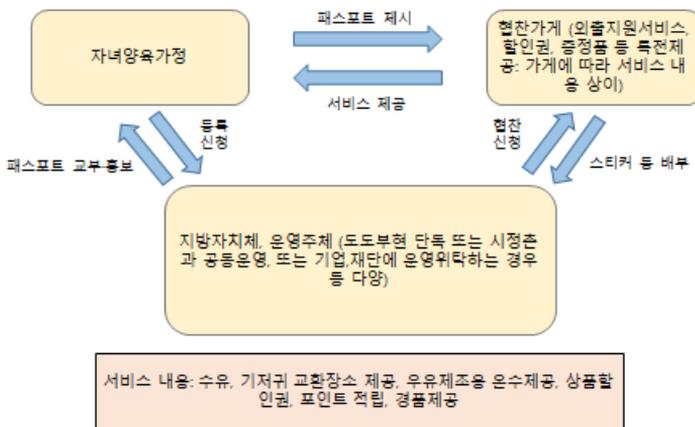
아) 출산축하금(지방자치단체)

저출생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출산축하금을 독자적으로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다양하나, 첫째 아동부터 둘째 아동에게는 5만엔부터 30만엔 수준이며, 세 번째 이후 출생아동에게는 25만엔에서 50만엔, 4번째 아동에게는 100만엔을 지급하는 곳도 있으며, 현금이 아닌 쿠폰으로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다⁸⁴⁾.

자) 자녀양육지원 패스포트(지방자치단체)

자녀양육에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가계가 연계하여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다양한 종류의 할인, 우대서비스 및 외출 원조 등을 하는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 단독 사업으로 각지에서 실시되었으나, 2016년 4월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후, 2016년 10월부터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용방법은 아래의 [그림 II-3-4]와 같다.

[그림 II-3-4] 자녀양육지원 패스포트 사업 내용



자료: とも家庭庁(아동가정청), 子育て支援パスポート事業の概要(자녀양육패스포트지원사업 개요), <https://www.cfa.go.jp/policies/kosodatechien/passport/gaiyou> (인출일: 2024. 7. 14.).

84) ともミライ(오키나와현 야에야마군 타케토미정) 홈페이지, <https://www.kodomo-mirai.okinawa.spport/detail/28141> (인출일: 2024. 7. 14.); 秩父市(사이타마현 지치부시) 홈페이지, <https://www.city.ychichibu.lg.jp/9829.html> (인출일: 2024. 7. 14.); 豊後高田市(오이타현 분고타카다시) 홈페이지, <https://www.city.bungotakada.oita.jp/site/kosodate-kyoiku/2383.html> (인출일: 2024. 7. 14.); 横手市(아키타현 요코테시) 홈페이지, <https://www.city.yokote.lg.jp/kosodate/1001157/1001320/1001322/1003362.html> (인출일: 2024. 7. 14.).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패스पोर्ट를 발행하면, 개별 가정은 이를 가게 및 기업 등에 제시하여 다양한 서비스(수유, 기저귀 교환장소 제공, 우유제조용 온수제공, 상품할인권, 포인트 적립, 경품 등)를 제공 받는 사업이다(こども家庭庁⁸⁵⁾).

이와 유사한 제도로 도쿄도청은 임신부에게 육아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면담 과정에서 강조하였는데, 이는 한국의 첫만남 이용권과 매우 흡사한 형태의 지원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2) 육아시간 지원 정책 동향

가) 자녀 간호휴가제도

“육아휴업·간병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 간병 노동자 복지에 관한 법률⁸⁶⁾(약칭: 육아·간병휴가법) 제 16조의 2항, 3항에서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는 노동자는 1년에 5일의 범위 내(아동이 2명인 경우 10일)에서, 부상, 질병, 예방접종으로 인해 아동을 간호하여야 할 경우 사업주에게 간호휴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녀간병휴가제도는 정규직 및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취득 가능하며, 하루단위, 반일단위, 시간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노동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유급의 연차휴가와와는 달리 휴가 중 급여에 대한 명시가 없어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다.

2021년도 조사(厚生労働省⁸⁷⁾)에 의하면, 자녀 간호휴가제도 규정이 있는 사업소 비율은 65.7%이며, 이 중 30명 이상 사업체는 83.9%였다. 규모별로는 500명이상 기업체가 95.5%, 100명~499명 93.3%, 30명~99명 80.9%, 5명~29명 60.3%로 큰 규모의 사업체 일수록 규정이 있었다. 임금은 유급 27.5%, 일부유급 7.4%, 무급 65.2%로 무급으로 휴가제도를 운영하는 비율이 높았다.

85) こども家庭庁(아동가정청), 子育て支援パスポート事業の概要(자녀양육패스पोर्ट지원사업 개요), <https://www.cfa.go.jp/policies/kosodateshien/passport/gaiyou> (인출일: 2024. 7. 14.).

86)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육아휴업·간병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 간병 노동자 복지에 관한 법률),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03AC0000000076_20240531_506AC0000000042 (인출일: 2024. 7. 16.).

87)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雇用均等基本調査(고용균등기본조사), <https://www.mhlw.go.jp/toukei/list/dl/71-r03/03.pdf> (인출일: 2024. 7. 16.).

2023년 “아동미래전략(子ども未来戦略)”에서는, 간병휴가 대상자 아동의 연령 확대 및 휴가취득사유를 질병 뿐만 아니라 입학식 참가, 전염병 등으로 인한 학교 폐쇄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는 일정기간 정해진 시간 범위 내에서 노동자가 매일매일 업무시작 및 종료시간, 노동시간을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생활과 업무와의 조화를 꾀하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이다(厚生労働省⁸⁸⁾). 일본은 1987년 노동기준법 개정으로 1988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⁸⁹⁾.

“아동미래전략(子ども未来戦略)”(2023)에서는 일-가정 양립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보호자의 욕구에 따라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단시간 근무 중 선택할 수 있는 제도 검토를 명시한 후, 기업이 시행할 수 있도록 2024년에는 법률을 개정하였다.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2022b)에 의하면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비율은 8.2%⁹⁰⁾, 이용 노동자 수는 10%이며, 종업원수 1,000명 이상의 대기업 시행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소결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한·중·일 3국의 저출생 현황과 최근의 저출생 대응 및 육아지원 정책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중·일 3국의 상황을 간략히 비교 정리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일 3국은 모두 최근 심각한 수준의 저출생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3국 모두 저출생 대응 정책 및 육아지원 정책이 크게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저출생 대응 정책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시작한 국가로,

88)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フレックスタイム制のわかりやすい解説&導入の手引き(이해하기 쉬운 유연근무제 해설 및 도입절차), <https://www.mhlw.go.jp/content/001140964.pdf> (인출일: 2024. 7. 16.).

89) 일본위키백과. 유연근무제, <https://ja.wikipedia.org/wiki/%E3%83%95%E3%83%AC%E3%83%83%E3%82%AF%E3%82%B9%E3%82%BF%E3%82%A4%E3%83%A0%E5%88%B6> (인출일: 2024. 7. 16.).

90) 8.2%에 해당하는 기업을 규모별로 보면, 종업원 수 1,000명이상 기업 31.2%, 300명~999명 17.0%, 100~299명 기업 8.8%, 30명~99명 기업6.6%로, 대기업일수록 시행율이 높음.

최근 들어서는 저출생 현상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은 2015년까지도 한자녀 정책 등을 시행하며 인구 억제 정책을 시행하던 국가로, 인구 확장 정책으로의 전환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련 제도의 정비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여진다.

둘째, 한·중·일 3국 모두 공통적으로 수도권 혹은 도시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 소멸 등 지역 간 인구 불균형 현상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성화되어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녀 양육 및 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영유아 가구의 요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는 지역별로 매우 상이한 상황으로, 국토의 면적이 넓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어 있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에 비해 지자체의 자체적 사업을 통한 지원이 보다 광범위하고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한·중·일 3국의 저출생 대응 정책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비교적 유사한 제도와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국가별로 좀 더 강조하여 추진하는 정책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각국이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을 비교해보자면, 한국의 경우에는 양육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어 제도와 정책이 설계된 부분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3년부터 전면적인 무상 보육·교육 정책이 실시되었으며, 최근 아동 급여(아동수당, 부모 급여 등) 정책이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 2024년에 들어서는 이에 더하여 주거 지원과 육아 시간 지원을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반해 중국의 경우에는 급여 등의 비용 지원은 모두 지자체 단위에서 실시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아동 급여 제도는 도입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도입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문가 면담 결과 나타났다. 최근 중국의 저출생 대응은 임신, 출산, 아동 건강 등 의료 지원의 확대, 강화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보여진다. 중국의 이와 같은 정책 기조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최소한의 생계 보장 및 교육은 애초에 국가가 일률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라는 정치적 기조에 기반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일본의 저출생 대응 및 육아 지원은 아동의 권리 보호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사각지대 혹은 정책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방식의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아동수당의 포괄범위(지원 연령 등)가 한국에 비해 훨씬 폭넓은 특징이 있는데, 이는 아동기 전체에 걸친 최소한의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비용 지원이라는 측면에서의 제도 설계라 볼 수 있다.

넷째, 영유아 대상의 보육·교육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은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과 무상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일본은 아동이 돌봄 사각에 놓여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원에 초점이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의 이용자를 맞벌이 가구 등으로 제한적인 특징이 있으며, 최근 가정 내 양육을 하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로 인해 아이가 방치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외벌이 가구에 대해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보육서비스 확대가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중국의 경우에는 국공립 보육·교육시설의 확충과 같은 인프라 지원 확대가 좀 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섯째, 0~2세 영아에 대한 육아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일본과 중국은 가정 양육이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의 경우에는 부모의 가정 양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육아 시간 제도 등이 크게 강화되고 확장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은 0~2세 영아의 양육은 조부모 세대를 활용한 돌봄이 일반적인 형태로, 아직까지 이 연령대의 영아에 대한 국가 차원의 돌봄 지원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한국의 경우 최근 부모급여의 도입 등을 통해 영아기 아동의 가정 양육을 좀 더 지원하고 강화하려는 경향성을 보이기는 하나, 2013년에 도입된 무상 보육·교육 정책의 영향으로 영아기 아동, 특히 2세의 경우에는 보육기관(어린이집) 이용이 매우 보편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여섯째, 저출생 대응 및 육아 지원을 위한 자원 조달 혹은 제도 추진 동력과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기업이 육아 시간 제도를 크게 확대,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하겠다. 한편, 중국의 경우에는 생육 보험을 통한 의료 지원의 강화가 특징적인 지점인데, 이때 생육보험은 국가와 기업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근로자의 부담분이 없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육아 시간 지원은 고용보험에서, 의료 지원은 건강보험에서 상당 부분을 커버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기업이 그 재원을 부담하는 구조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즉, 중국과 일본의 경우 육아 지원 제도 체계상에서 기업의 참여와 부담분이 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각종 사회보험이나 기업 내 육아 시간 지원 제도 등은 해당 기업에 속한 육아 가구에만 지원이 국한하여 이뤄지기 때문에, 지원 대상의 포괄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육아 휴직 급여 지급자는 고용보험의 가입자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근로자(육아 가구)는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중국의 생육보험 또한 제도 도입 초기 단계로 가입율이 매우 낮고,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에 국한하여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이 취약계층이 아닌 오히려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가진 집단이라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Part II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조사 개요

III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조사 개요

- 01 조사 설계
- 02 설문 구성과 변화
- 03 조사 결과

Ⅲ.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개요⁹¹⁾

1. 조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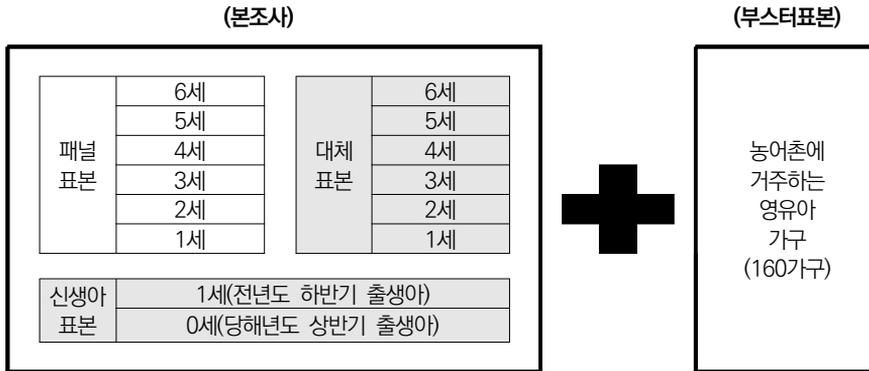
가. 표본 추적 및 구축

제 II기(2023~2027년)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조사 표본은 크게 본조사 표본과 부스터 표본으로 구분된다. 본조사 표본은 막내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를 표본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 응답 표본 가구를 추적 조사한 패널표본과 전년도 응답 표본 가구 중 추적에 실패한 표본을 대체하여 추가 표집되는 대체표본, 전년도 하반기 출생아 및 당해연도 상반기 출생아를 신규 표집하여 추가한 신생아 표본으로 구성된다. 이때, 전년도 응답 표본 가구 중 막내 자녀가 초등학교령기가 되어 가구 내 더 이상 영유아가 없는 경우는 조사 대상 표본에서 제외된다. 한편, 본조사 표본의 추적은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조사 대상이 된 가구들은 가구용 설문과 함께 영유아기의 모든 자녀별로 아동용 설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한편, 부스터 표본은 특정 시점에만 별도 표본을 구성하여 횡단적으로 조사하는 자료로, 지난 해 연구인 2023년에는 임신부 504가구와 무자녀 817가구에 대한 부가조사 자료가 구축 완료되었다. 올해 연구인 2024년에는 농어촌 지역(도농복합시 제외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 160가구를 부스터 표본으로 추가 구축하였다. 2024년 구축되는 농어촌 영유아 가구 표본은 2024년에만 한시적으로 조사되는 표본으로, 차년도에 이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91) 연속과제의 성격상 최효미 외(2023). III장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조사개요(pp.81~139) 부분의 내용을 포괄 인용하였음.

[그림 III-1-1]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표본 구성



주: 1) 패널 표본은 전년도 조사에 이어 추적조사 한 표본으로, 차년도에도 추적조사를 실시(단, 6세 제외).
 2) 대체표본과 신생아표본(회색음영)은 당해년도 신규 구축하여 차년도부터 추적조사 실시.
 3)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의 부스터 표본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로, 2024년에 한해 조사함.
 자료: 최효미 외(2023),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조사(KICCE 소비실태조사 II), 육아정책연구소.
 [그림 III-1-3'에 기초하여 수정 보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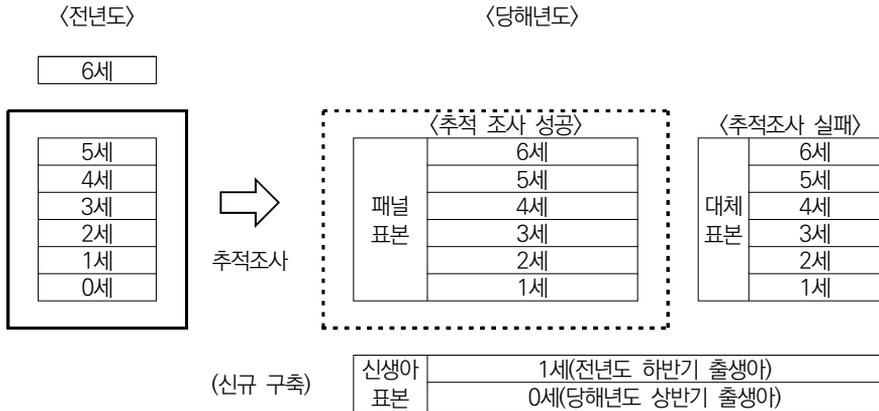
1) 본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의 본조사 표본은 2023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표본을 구축한다. 첫째, 이전조사 차수 자료와 패널 자료 형태로 구성이 가능한 패널 표본의 경우에는 전년도 조사 표본을 추적 조사한 표본으로, 조사 당해연도 기준 막내 자녀가 7세(초등1학년)인 경우는 표본 추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전년도 조사 기준 대체표본의 경우에는 막내 자녀 연령이 6세이하인 경우에는 추적대상 표본에 포함된다. 즉, 표본 추적의 원칙은 전년도 조사 성공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KICCE 소비실태조사’의 표본 추적률은 1차년도 원표본에 대한 추적률이 아닌 전년도 조사 표본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값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둘째, 전년도(2023년) 하반기 출생아와 당해연도(2024년) 상반기 출생아가 있는 영유아 가구 각 125가구 내외를 신생아 표본 가구로 추가 구축한다.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조사기간이 당해연도 5월부터 8월까지이기 때문에, 2023년 상반기 출생아는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에서 신규로 127가구가 이미 구축이 완료되었고, 2023년 하반기 출생아는 올해 최소 125가구 추가 구축하게 된다. 이에 따라 2년을 주기로 신생아 표본이 매해 250가구씩 추가적으로 구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셋째, 전년도 조사 기준 막내 자녀 연령이 0~5세였던 가구에 대해 추적 조사를 시도 하였으나, 당해연도(2024년) 조사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조사 표본과 최대한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가구로 대체하여 표본의 마모를 보완한다. 이때 대체 표본은 조사 실패 가구(당해년도 조사 대상 가구이지만, 조사에 실패한 경우)와 자녀 수, 막내 자녀의 연령이 동일하고 해당 조사구 내에 거주하는 가구를 조사원이 직접 발굴하여 추가하는 방식이다. 다만, 해당 조사구 내 표본 특성에 맞는 영유아 가구가 없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2023년 조사부터는 대체 표본 가구 조사구의 범위를 기존 표본과 동일한 시군구로 크게 확대하였으며, 2024년 조사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유지한다.

[그림 III-1-2]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 추적 및 추가 방식



주: 1) 굵은 점선은 추적 대상 표본 가구를 의미하며(전년도 6세를 추적 대상 표본에서 제외), 굵은 점선은 추적 조사에 성공한 표본의 당해년도 연령을 의미.
 2) 표본의 연령은 가구의 막내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함.
 자료: 최효미 외(2023).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조사(KICCE 소비실태조사 II). 육아정책연구소. [그림 III-1-4] 인용.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축된 'KICCE 소비실태조사' 각 차수별 본조사 표본의 막내 자녀 연령과 출생연도는 <표 III-1-1>과 같다.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은 2012년생(6세)~2018년 상반기 출생아(0세)까지를 표본 가구로 하고 있으며, 2019~2021년까지는 막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일부 연령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⁹²⁾

92) 막내 자녀 연령 기준 2019년에는 7세(초1), 2020년에는 8세(초2), 2021년에는 7세(초1)까지를 추적 대상 표본 가구로 보았음. 이는 초등 돌봄 등에 관한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II기 조사 연구의 부스터 표본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조사임.

2022~2023년에는 막내 자녀 연령이 6세 이하인 영유아 가구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4년은 1차년도 조사(KICCE 소비실태조사_2018) 당시 신생아 표본(0세)이었던 2018년생이 6세에 도달하는 해로, 조사 대상 아동의 영유아기(0~6세) 전체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첫해이다. <표 III-1-1>에서 알 수 있듯이, 2023년 조사까지는 출생코호트별로 영유아기 전 연령이 조사된 표본이 존재하지 않았다.

<표 III-1-1> 연차별 조사 대상 연령(막내 자녀 연령 기준)

아동 연령		조사 차수									
출생 년도	출생 시기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추진 계획)		
2027	상반기										0세
	하반기										1세
2026	상반기									0세	1세
	하반기									1세	2세
2025	상반기								0세	1세	2세
	하반기								1세	2세	3세
2024	상반기							0세	1세	2세	3세
	하반기							1세	2세	3세	4세
2023	상반기						0세	1세	2세	3세	4세
	하반기						1세	2세	3세	4세	5세
2022	상반기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하반기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2021	상반기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하반기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2020	상반기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하반기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2019	상반기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하반기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2018	상반기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하반기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2017		2세	3세	4세	5세	6세					
2016		3세	4세	5세	6세						
2015		4세	5세	6세							
2014		5세	6세	7세(초1)							
2013		6세	7세(초1)	8세(초2)							
2012											

주: 1) 셀 안의 연령은 생활연령으로, 각 출생년도별 아동의 조사 당해연도 연령을 의미함. 연령이 기재되지 않고 사선 처리된 경우는 당해연도 조사 대상 가구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함.

2) 하늘색 음영(굵은글씨)은 조사 2024년 표본의 출생년도와 연령을 의미하며, 검은색 음영 표기 부분은 조사연도 기준 신생아 표본으로 신규 표본 가구를, 회색 음영 표기 부분은 초등학교가 조사된 차수와 조사된 연령 구간을 표시한 것임.

자료: 최효미 외(2023),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조사(KICCE 소비실태조사 II), 육아정책연구소. <표 III-1-3>을 수정 보완함.

2) 부스터 표본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의 부스터 표본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가구이다. 앞서 용어 정의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24년 부스터표본 조사 대상인 농어촌 지역이란 도농복합도시를 제외한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이다. 2024년 부스터 표본 목표 표본 수는 160가구이다.

2024년 4월 주민등록인구 집계 기준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은 총 1,465개 지역으로, 이 중 도농복합지역을 제외한 순수한 농어촌 지역은 803개 지역(54.8%)이었다. 읍면지역이 속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군단위로 집계하면, 총 75개의 군지역이 순수한 농어촌 지역이었으며⁹³⁾, 도농복합시가 63개였다.

2024년 부스터표본 대상인 도농복합시를 제외한 농어촌 지역(읍면지역)의 영유아 수는 9만5,40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 영유아 현황은 2024년 4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전국 읍면지역(약 1,465개)의 영유아 수 현황을 출력하여, 이 중 도농복합시에 해당하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후, 시도 단위로 다시 합산하여 산출한 결과 값이다. 2024년 4월 기준 전체 영유아 수는 198만3,694명으로, 도농복합시를 제외한 농어촌 지역(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비중은 전체 영유아의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복합시를 제외한 농어촌 지역(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수는 전남 지역이 가장 많아서 2만2,121명이었으며, 다음으로 경북 1만3,268명 순이었다. 이는 도농복합시가 아닌 읍면지역이 전남에 많기 때문에 유발된 결과로 사료된다.

〈표 III-1-2〉 읍면지역 영유아 현황 : 도농복합시 제외 (2024년, 도단위 집계)

단위: 명, %

시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계
계	11,120	11,630	12,377	13,349	14,659	15,722	16,547	95,404
경기	781	844	880	946	1,007	1,068	1,205	6,731
강원	1,481	1,567	1,553	1,718	1,804	1,930	2,017	12,070
충북	1,307	1,416	1,555	1,629	1,781	2,052	2,213	11,953
충남	1,183	1,225	1,405	1,572	1,689	1,833	1,994	10,901
전북	1,077	1,124	1,181	1,345	1,393	1,439	1,478	9,037
전남	2,832	2,786	2,868	3,107	3,402	3,494	3,632	22,121
경북	1,504	1,667	1,762	1,788	2,057	2,249	2,241	13,268
경남	955	1,001	1,173	1,244	1,526	1,657	1,767	9,323

주: 2024년 4월 기준 전국 영유아(0-6세)의 수는 198만3,694명임.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24.4월 기준), <https://jumin.mois.go.kr/> (인출일: 2024. 5. 28.).

93) 농어촌 지역이 포함된 군지역의 목록은 [부록 1]을 참조하기 바람.

이를 표본 설계를 위해 다시 좀 더 큰 권역별로 집계한 결과는 <표 III-1-3>과 같다. 즉, 부스터표본 모집단⁹⁴⁾에 해당하는 영유아 수는 9만5,404명으로, 전북/전남권이 3만1,158명, 충북/충남권이 2만2,854명, 경북/경남권이 2만2,591명, 강원/경기권이 1만8,801명이었다.

<표 III-1-3> 권역별 읍면지역 영유아 현황 : 도농복합시 제외 (2024년)

단위: 명, %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합계
강원/경기	2,262	2,411	2,433	2,664	2,811	2,998	3,222	18,801
경북/경남	2,459	2,668	2,935	3,032	3,583	3,906	4,008	22,591
전북/전남	3,909	3,910	4,049	4,452	4,795	4,933	5,110	31,158
충북/충남	2,490	2,641	2,960	3,201	3,470	3,885	4,207	22,854
합계	11,120	11,630	12,377	13,349	14,659	15,722	16,547	95,404

주: 2024년 4월 기준 전국 영유아(0-6세)의 수는 198만3,694명임.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24.4월 기준), <https://jumin.mois.go.kr/> (인출일 : 2024. 5. 28).

보는 바와 같이 권역별로 집계하여도 영유아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표본 설계는 권역을 기준으로 영유아 수를 고려하여 목표 표본 수를 할당하였다. 그러나, 권역별 목표 표본 수는 조사 관리를 위한 집계 단위를 의미하며, 실제 표집은 해당 권역 내 농어촌 지역(읍면 단위 조사구)을 몇 군데 지정하여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을 밝혀둔다. 권역 전체를 조사 대상 구역으로 설정할 경우 면접원의 배정 및 이동 거리 등이 급격히 늘어나고, 조사 대상자 발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오히려 조사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조사처럼 조사구(읍면동)를 엄격하게 지정하여 조사구 내 영유아 가구만을 조사하게 하는 경우 조사구로 뽑힌 읍면 지역 내 영유아 가구가 극히 드물어 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우려 또한 크기 때문에, 조사구를 기존의 읍면에 비해서는 좀 더 큰 단위(군 단위)로 확장하여 지정하는 방식으로 표집을 진행하였다.

2024년 부스터표본의 권역별 목표 표본 수는 <표 III-1-4>과 같다.

94) 'KICCE 소비실태조사'는 가구 단위 표집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을 기준으로 하는 영유아 수는 엄밀한 의미에서 모집단과는 약간 차이가 있음.

〈표 III-1-4〉 권역별 부스터표본 목표 표본 수(2024년)

단위: 명

구분	강원/경기	경남/경북	전북/전남	충북/충남	합계
영아(0-3세)	17	18	28	18	81
유아(4-6세)	15	20	25	19	81
합계	32	38	53	37	160

주: 2024년 4월 기준 전국 영유아(0-6세)의 수는 198만3,694명임.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24.4월 기준), <https://jumin.mois.go.kr/> (인출일 : 2024. 5.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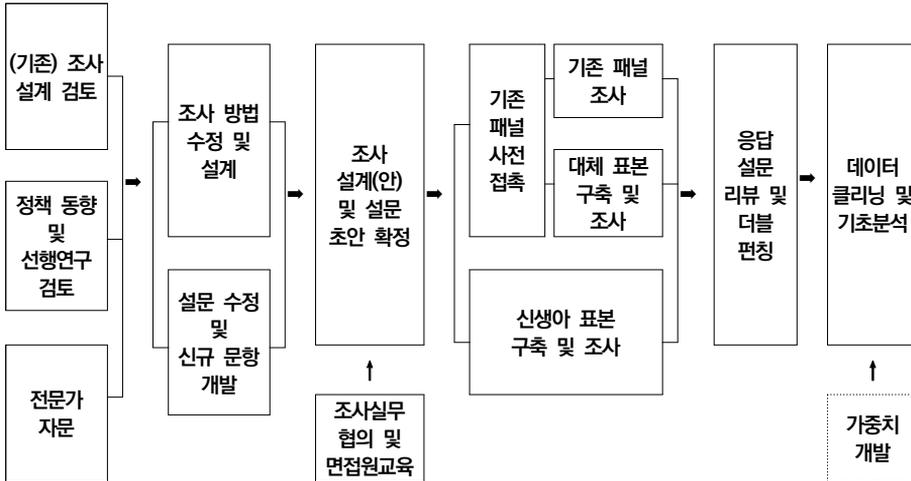
나. ‘KICCE 소비실태조사’ 조사 수행 절차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의 경우에는 부스터 표본이 무자녀 가구와 임신부 가구로, 영유아 가구(본조사)와는 다른 설문을 진행해야 하는 필요성이 컸다. 가계 소비 지출이나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한 인지 등의 설문은 영유아 가구와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등은 무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응답할 수 없는 설문에 해당한다. 반대로 영유아 가구(본조사)의 경우 임신·출산 계획 등에 관한 설문은 시급성이 낮은 설문에 해당하여 질문하지 않는 문항이었다. 결과적으로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는 본조사 설문이 2종(가구용, 아동용)이 있었으며, 부스터 표본 조사를 위한 별도의 2종의 설문(무자녀 가구용 설문, 임신부 가구용 설문)이 부가조사 형태로 구성되었다(최효미 외, 2023: 95~114). 이에 따라,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는 조사 대상에 따라 조사 방법 또한 각기 다른 방법이 적용되었으며(최효미 외, 2023: 92~94), 결과적으로 본조사와 부스터 표본의 수행 절차가 다르게 진행되었다(최효미 외, 2023: 81~84).

그러나,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는 조사 대상(표본)은 본조사와 부스터 표본(농어촌 영유아 가구 추가 표본)으로 구분되지만, 조사 설문은 기존의 본조사 설문을 수정, 보강하는 형태로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표본의 종류와 무관하게 조사 수행 절차는 기존의 본조사 수행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그림 III-1-3]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조사 수행 절차



주: 1) 가중치 개발은 출생아 통계에 기반하여 작성되므로, 차년도에 진행함
 2) 조사 설계(안)은 조사 방식 및 조사 도구, 표본 추적 및 구축 원칙 등을 포함함.
 3) 보고서 작성은 조사 완료 이후 차년도에 수행하는 업무로,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의 분석 결과가 2024년 보고서에 수록됨.

자료: 최효미 외(2023).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조사(KICCE 소비실태조사 II). 육아정책연구소. [그림 III-1-1]을 수정 보완함.

다. 조사 도구 및 조사 방법

‘KICCE 소비실태조사’는 본조사는 매해 큰 틀을 유지하되, 표본 및 설문 대상과 조사 방법을 꾸준히 개선하면서 시의성 있는 데이터 생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따라 설문 종류에 따라 같은 해 조사라도 조사 방법이 다른 경우가 있으며, 본조사의 경우에도 응답률 제고 및 자료 신뢰도 제고를 위해 꾸준히 조사 방법을 개선해왔다.

‘KICCE 소비실태조사’ 본조사의 조사 도구는 2019년 조사까지는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 면접조사(TAPI)를 실시하였으나,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장시간 대면 조사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조사 도구를 종이설문(PAPI)으로 전환하고, 조사 방식 또한 설문의 유치 혹은 전화 조사 등 비대면 조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최효미 외, 2020: 68). 2023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의 해제되어 대면 면접조사가 가능해지긴 했으나, 이미 기존 조사방식에 익숙해진 응답자들을 추적조사 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조사 방식을 유지하였으며(최효미 외, 2023: 92~94), 2024년도 또한 2023년과 마찬가지로 방식을 유지한다.

한편, 2023년 부스터 표본(무자녀, 임신부 가구)의 경우에는 표본의 수가 많고, 지역규모 등을 감안한 대표 표집이 필요하며, 응답 대상자가 대면 면접을 꺼려하는 집단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온라인을 통한 자기 응답 방식의 조사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2024년 조사의 부스터 표본인 농어촌 거주 영유아 가구의 경우에는 설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반하여 본조사와 동일한 개념으로 응답된 데이터의 수집이 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즉, 2024년 부스터 표본은 본조사에서 관측치가 작고, 극히 조사하기 어려운 지역의 표본을 추가 표집하는 형태로 표본을 크게 확대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조사방법에 따른 모드 효과가 최소화 되도록 만들기 위해 조사 방법을 본조사와 동일하게 일치시켰다.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조사 방법 변경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연구인 최효미(2023)에 따르면, 다행히 코로나19로 인한 조사 도구 및 조사 방법의 변경, 즉 TAPI → PAPI와 혼합조사방식의 도입은 ‘KICCE 소비실태조사’의 데이터 수집 및 품질에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으며, 일부 긍정적 효과(조사 기간의 단축 등)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 시간이 긴 다자녀 가구와 대면 접촉이 어려운 맞벌이 가구 등에서, 혼합조사방법의 도입은 응답 편의성 제고를 통한 응답률 제고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최효미, 2023). 문제는 신생아 표본의 경우에는 대면 접촉을 꺼려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조사에 처음 들어온 가구로 양육비용의 비목 구분 및 정부지원금 설문 등에 응답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에 대한 혼합조사 방법의 도입은 신중해야한다는 점에 주의가 요구된다.

〈표 III-1-5〉 KICCE 소비실태조사 조사 방법 변화

조사 연도	조사 종류	조사도구	대면조사여부	변화 사유	
I기 조사	2018	본조사	TAPI	대면면접	-
		육아용품 구매	온라인	자기응답	-
	2019	본조사 (초등 설문 포함)	TAPI	대면면접	-
	2020	본조사	PAPI	대면면접 원칙 (일부 설문 혼합조사)	코로나19로 인한 대면면접의 어려움
	2021	(초등 설문 포함)			
2022	본조사				
II기 조사	2023	본조사	PAPI	대면면접 원칙 (일부 설문 혼합조사)	이전 조사방식에 적응한 응답자 고려
		부스터표본 (무자녀, 임신부)	온라인	자기응답	대면 면접의 어려움, 샘플 수 대비 연구예산의 제약

조사 연도	조사 종류	조사도구	대면조사여부	변화 사유
2024	본조사	PAPI	대면면접 원칙 (일부 설문 혼합조사)	이전 조사 방식 유지 부스터표본의 응답 정확성 확보 (본조사와의 모드효과 통제)
	부스터표본 (농어촌)			

자료: 최호미 외(2023).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조사(KICCE 소비실태조사 II). 육아정책연구소. pp.92~94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라. 조사 시점 변경

한편, 기존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조사 시기는 매년 5월 중순부터 8월 중순으로, 전체 조사 설계를 위한 준비 기간이 길었던 1차년도를 제외하고는 매해 이 시기에 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2024년 조사부터는 조사 기간을 7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로 조정하였다.

이는 전년도 조사 자료에 대한 1차적인 분석과 정책 변동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진행한 이후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2023년부터 수행되고 있는 ‘KICCE 소비실태조사’ II기 연구는 당해연도 조사 자료의 분석을 차년도에 실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영유아 가중치 산출 시 0세아의 인구 통계가 집계되어 발표되는 시점이 연말(12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차년도가 되어야 가중치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클리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서를 발간함에 따라, 주요 통계 수치가 매해 변경, 수정되면서 상당한 수준의 혼란이 발생하였으며, 5월 조사 시작 시점을 맞추기 위해 설문 개발 및 조사 설계(표본 특성 분석 등)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함에 따라 정책 변화의 시의성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조사 시작 시점을 7월로 변경함에 따라 7월 도입 예정 정책까지를 포괄하는 형태로 설문 개발이 가능해지게 되었으며, 가중치 산출 및 데이터 클리닝을 완료한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표본 설계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자료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24년의 경우 부스터표본 표집을 위해 기존 표본의 거주 지역에 대한 사전적인 표본 특성 분석 등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조사 준비 기간이 좀 더 소요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통해 KICCE 소비실태조사에서 부족한 표본 집단에 대한 정확한 식별에 기초하여 좀 더 정밀하고 정교한 표본 구축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단, 조사 시점이 7월로 두 달가량 늦춰짐에 따라 지난 조사 이후 1년간의 변화를 질문하는 설문문의 경우 일시적으로 분량이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예컨대, 정부지원금 수급 현황의 경우 전년도 5월부터 당해연도 4월까지의 수급 현황을 조사하였으나, 2024년에는 전년도 5월부터 당해연도 7월까지의 수급 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총 15개월의 수급 현황을 조사하도록 설문문이 조정되었다. 한편, 조사 시점 변경에 따라 계절성 소비로 인한 조사 결과의 시계열 연속성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사전적으로 지난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5~6월 응답자의 소비패턴과 7~8월 응답자의 소비패턴의 차이를 분석해 보았는데, 육아 가구의 소비지출 패턴에서 있어 응답월에 따른 효과를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마. 데이터 구성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는 해마다 표본과 설문문의 구성이 조금씩 변화하기 때문에 데이터도 연도별로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매해 추적 조사를 통해 반복 조사하는 본조사 가구 설문은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의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로 가구 데이터로 구축된다. 한편, 아동별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등을 조사하는 아동 설문은 아동 데이터로 구성되는데, 모든 조사 차수에서 조사가 진행된 영유아 설문은 영유아 데이터로 구축되고, 초등 돌봄과 관련한 조사가 실시된 2019~2021년의 경우에는 초등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한편, 2023년 부스터 표본인 임신부 가구 데이터와 무자녀 가구 데이터도 본조사 가구 데이터와는 구분하여 별도로 구축하였다.

2024년의 부스터표본인 농어촌 영유아 가구는 설문문의 내용은 본조사와 동일하지만, 데이터의 구축은 부스터표본만을 따로 구분하여 별도로 구축한다. 이는 차년도 표본 추적 등을 고려할 때, 연구자들이 2024년 표본의 특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활용함에 따라 농어촌 표본이 2024년에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표 III-1-6〉 ‘KICCE 소비실태조사’ 데이터 구성

데이터 종류		조사연도(차수)							
		2018년 (1차)	2019년 (2차)	2020년 (3차)	2021년 (4차)	2022년 (5차)	2023년 (6차)	2024년 (7차)	
본조사	가구 데이터	○	○	○	○	○	○	○	
	아동 데이터	영유아	○	○	○	○	○	○	○
		초등	×	○	○	○	×	×	×
부스터 표본	임산부 가구	×	×	×	×	×	○	×	
	무자녀 가구	×	×	×	×	×	○	×	
	농어촌 영유아 가구 (가구, 영유아 2중)	×	×	×	×	×	×	○	

주: 초등학령기 데이터의 표본은 2019년(2차년도) 초등1학년, 2020년(3차년도) 초등1~2학년, 2021년(4차년도) 초등1학년 아동임.

2. 설문문의 구성과 변화

가. 본조사 설문 개요

본 절은 2018년~2023년까지 수행한 ‘KICCE 소비실태조사’에 대해 설문 내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정리하였다.

I기 1차조사(2018년) 이래로 시계열 연속성 확보를 위해 기본적인 설문 문항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연도별로 시의성 주제 및 표본 변화 등에 따라 설문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였다. II기(2023년~2027년)에서도 기본적인 설문 문항들을 유지할 예정이며, 부스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설문 문항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예정이다.

이에 2024년 조사에서도 가구 및 부모, 자녀 특성에 관한 설문은 대부분 유지하였으며, 소비실태를 파악하는 가구의 소득과 지출도 기본적으로 유지하였다. 소득의 세부 항목인 공적지원금의 변화(코로나 등)를 반영하는 정도의 변화만 있었다. 육아서비스 수요와 육아물가지수 산출에 필요한 설문들은 연구과제 축소에 따라 삭제되었고, 초등아동에 대한 추적여부에 따라 초등 설문이 추가되고 삭제되었다.

2023년(6차년도)에는 부스터 조사로 임신부 가구와 무자녀 가구를 조사하여 기존 설문과는 완전히 다른 설문이 다수 있어 별도의 조사로 구분하여 설문을 개발하였으나, 2024년(7차년도)에는 농어촌 가구를 부스터 표본으로 조사함에 따라 별도의 설문지를 만들지 않고 기존 설문에 일부 문항을 추가하는 형태로 조사하였다. 단, 농어촌 가구와 기존 가구를 비교할 수 있는 문항과 농어촌에 특화된 설문을 일부 추가하였다.

그 외에는 조사기간이 5~8월에서 7~10월로 미뤄짐에 따라 일부 문항의 기준기간이 조정되었으며, 지자체 및 직장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문항 등이 추가되었다.

〈표 III-2-1〉 본조사 설문사의 개요 (1~7차년도)

설문종류	설문 주요 내용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가구용 조사	가구의 부모, 자녀 특성	○	○	○	○	○	단시간근로이유, 비정규직 여부 추가	이주민 여부 추가
	가구의 경제활동 → '가구의 소득과 정책 수 혜'로 변경(2022)	○	양육 관련 공적 이전소득, 아동수당, 세계 지원 문항 추가	코로나19로 인한 변동 문항 추가, 아동수당 및 세제지원 문항 축소	유연근무, 시간지원 활용 현황 추가, 코로나19 변동 문항 축소, 가구 지출 세목 조정, 주택관련 문항 추가	영아수당 관련 문항 추가, 첫만남 이용권 관련 문항 추가, 육아휴직급여특 례 수혜 경험 추가, 육아소비성향 관련 문항 추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출 감소증가 비목 추가, 주거비에 대한 주관적 부담감 추가	부모급여 관련 문항 추가, 정부 지원금에 대한 선호도 추가, 소비문항에 주식 및 인화화폐와 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지출 추가	지자체 및 직장의 출산지원금 관련 문항 추가, 주거 지원 정책 관련 일부 문항 축소 및 거주 지역 서비스 및 인프라 관련 추가
		가구의 지출 및 양육 비용	○	설문축소 및 통합 (초등포함으로 수정)	2차년도 기준 설문 축소	×	×	×
	육아서비스 선호 및 이용 의사	○	○	×	×	×	×	×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요구	○	○	×	×	×	×	×	×
영유아 가구의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	○	설문축소	×	×	×	×	×



설문종류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가정 내 부모 직접 돌봄 및 부모지원 서비스	×	×	×	문항 추가	○	○	○
개별돌봄서비스	×	○	○	○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이용 변화 추가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이용 변화 삭제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이용 변화 삭제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및 요구	×	○	○	○	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별 부족한 육아지원에 대한 의견 추가	○	비용 지원 정책 만족도 삭제
긴급 돌봄 대응, 돌봄 공백	×	×	○	○	코로나19 관련 돌봄공백 경험 추가	×	×
육아 소비 성향	○	○	○	○	×	×	×
영유아 가구의 사회경제 적 가치관 및 미래 전망	○	일부 문항만 조사	○	○	×	일부 문항만 조사	일부 문항만 조사
육아용품 구매 경험 및 소비 행태	온라인 조사	×	×	×	×	×	×
육아품목 물가 체감	온라인 조사	본 설문에서 조사	○	○	×	×	×
경제 인식 및 물가 전망	온라인 조사	본 설문에서 조사	○	○	×	×	×

설문종류	설문 주요 내용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아동용 조사 : 영유아	육아서비스 이용 및 수요 - 어린이집 이용 - 유치원 이용 -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 시간제 사교육 이용 - 기타 돌봄	○	○	시간표 형태로 조사, 이용시간 (기본보육시간) 관련 문항 및 긴급 돌봄 관련 문항 추가	서비스별 이용 시간 조사로 복원, 비대면 서비스 활용 추가	반일제 이상 기관 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한 미이용 경험 추가, 비정기 체험활동 이용 행태 추가	반일제 이상 기관 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한 미이용 경험 삭제	반일제 이상 기관과 집까지의 거리 문항 추가
	- 개별돌봄서비스	○	가구용으로 이관	×	×	×	×	×
아동용 조사 : 초등	육아서비스 이용 및 수요 - 초등돌봄교실 이용 - 방과후학교 이용 - 시간제 사교육 이용 - 기타 돌봄	×	○	시간표 형태로 조사, 긴급 돌봄 관련 문항 추가	서비스별 이용 시간 조사로 복원, 비대면 서비스 활용 추가	×	×	×

주: 1) 문자 기입사항은 주요 변화 내용이며, 전년도 설문 대비 설문의 변화가 없거나 문구 수정 등의 작은 변화만이 있는 경우는 ○로 표기, 해당년도에 조사 문항 자체가 삭제되어 조사되지 않은 경우 ×로 표기함.
 2) 육아돌봄채널: 육아돌봄가전망은 이 연구가 아닌 'KICCE 육아돌봄가전망' 연구에서 활용했던 문항임
 자료: 1) 최효미 외(2023),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KICCE 소비실태조사 II), 육아정책연구소, pp.96-97, <표 III-2-1>을 참고하여 수정 및 추가함.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본 연구 설문지.



나. 본조사 설문 변화

1) 주요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

I기 조사에서는 설문의 기존틀을 개발하였으며, 각 연도별 시의성 주제에 따라 설문 문항을 추가 및 삭제하였으며, 초등 아동에 대한 추적조사 여부에 따라 관련 문항을 추가하고 삭제하였다. 각 연도 시의성 주제에 따라 1차년도(2018년)에는 공유 경제에 관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2차년도(2019년)에는 아동수당과 세제지원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였으며, 추가로 초등1학년 아동에 대한 첫 추적조사를 진행하였고, 3차년도(2020년)에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관련 문항과 새롭게 도입된 어린이집 보육지원체제 개편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4차년도(2021년)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서비스 이용이 불가해짐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 관련 조사를 하였으며, 5차년도(2022년)에는 I기 조사의 마지막임을 고려하여 연도별 결과를 정리하고, 2022년에 새롭게 도입된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 등 관련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⁹⁵⁾.

II기 1차년도(6차년도, 2023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코로나19와 관련 설문을 삭제하였으며, 추가로 새롭게 도입된 부모급여 관련 문항을 조사하였으며, 부스터 조사로는 임신부 가구와 무자녀 가구를 조사하였다. II기 2차년도(7차년도, 2024년)에는 조사 실시 기간이 미뤄짐에 따라 각 설문의 조사 기준 기간을 변경하였으며, 농어촌 부스터 조사함에 따라 부모의 이주민(다문화, 결혼이민자, 귀화자) 여부, 거주 지역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관련 문항과 반일제 이상 기관과 집까지의 거리 문항 등을 추가 조사하였다.

〈표 III-2-2〉 KICCE 소비실태조사 주요 설문 변경 내용 및 사유 (2019~2024년)

구분	주요 변경내용	변경 사유
2차년도 (2019)	아동수당 및 세제 지원 문항 추가	아동수당 제도 도입
	육아서비스 선호 및 이용의사, 사회경제적 가치관 및 미래 전망 문항 축소 통합	응답부담 경감
	개별돌봄서비스 가구용으로 이관	서비스 활용 양태를 고려하여, 응답자 편의 제고
	초등아동용 설문 개발 및 추가	표본 확대
3차년도 (2020)	긴급돌봄 관련 문항 추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 파악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 및 양육비용 변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 파악

95)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육아정책연구소. pp.21~22,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구분	주요 변경내용	변경 사유
4차년도 (2021)	보육지원 체계에 대한 인지 및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대한 의견	보육지원체계 제도 도입
	시간표 형태로 설문 전환	육아서비스 이용 시간대 및 조합방식 확인
	유연근무 활용 실태 문항 추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 파악
	비대면 육아서비스 활용 실태 문항 추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 파악
	가정내 돌봄서비스 및 부모지원서비스 활용 실태 문항 추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 파악
	육아서비스 이용시간으로 설문 복원	3차년도 한시 설문으로, 응답자 편의 제고를 위해 기존 설문으로 복원
5차년도 (2022)	영아수당 관련 설문 추가(수혜여부, 가정양육 수당·영아수당의 활용 비목 및 자녀양육비용 경감에 도움 정도)	가정양육수당의 '영아수당'으로의 확대개편
	첫만남이용권 관련 설문 추가(인지, 사용 비목 계획, 양육비 경감에 도움 정도)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지원으로서 '첫만남이용권' 도입
	육아휴직급여특례 수혜 경험 추가	육아휴직 이용 장려를 위한 특례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실질적 활용 정도 파악
	여유소득 증가시 자녀양육을 위한 지출 비목 설문 추가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양육비 경감을 위한 현금성 지원 증가시의 효과 예측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변동의 가계 경제 부담과 대응 관련 문항 추가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 지출감소 및 증가 항목 파악
	영유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감 항목 추가	거주 형태에 따른 주거비 부담 정도 파악
	코로나19로 인한 육아서비스 이용 변화 관련 문항 추가	육아서비스(개별, 반일제 이상 기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파악
	가정 내 부모직접 돌봄 관련 문항 추가	자녀양육부담 경감 용도로 미디어 허용 여부 파악
	생애주기 중 정부 지원의 부족 시기 및 해당 시기에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 추가	생애주기별 정책 요구 파악
	돌봄공백 관련 문항 추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의 구체적 상황/ 일상적인 돌봄공백과 돌발적인 돌봄공백 상황에 대한 수요 구분
	비정기 체험활동 이용 관련 문항 추가	영유아기에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신(新)육아 서비스 이용 행태 파악
	육아소비 성향 및 육아 품목 물가 체감/경제 인식 및 물가전망 관련 문항 삭제	연관 세부과제(주)의 종료. 육아소비 성향 관련 2개 문항은 유지.
6차년도 (2023)	초등학생용 설문 삭제	초등학생 표본 제외
	코로나19 관련 문항 삭제 : 가구소득 및 양육비용 변화, 공적지원금 사용처 및 양육비용 부담 경감,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변화, 돌봄공백 등 부모급여 수혜여부 및 사용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체됨에 따라 관련 지원금이 사라지고 서비스 이용도 정상화 되어 조사 필요성이 없어짐 '부모급여' 도입
	지출항목 중 금융상품 세부항목에 '주식 및 암호화폐' 추가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지출 파악
	지출항목에 '반려동물 상품 및 서비스' 추가	반려동물양육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비용 파악
	주거관련 세부항목 추가	신혼부부 및 영유아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내용 파악
	시기별 양육비용 예상(초등기, 중·고등기)	영유아 가구가 생각하는 시기별 예상되는 양육비용 파악



구분	주요 변경내용	변경 사유
	삶의 만족도(사회경제적 위치 포함)	영유아 가구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만족도와 사회경제적 위치 파악
	육아 시간 지원 정책 활용과 의견	육아 시간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 파악
	부스터 조사1: 임신부 가구 조사	임산부 가구에 대한 특성 및 요구 파악
	부스터 조사2: 무자녀 가구 조사	무자녀 가구에 대한 특성 및 요구 파악
7차년도 (2024)	부모특성에 이주민 여부 추가	농어촌 부스터 표집에 대한 다문화가정 여부 파악
	가구의 소득과 정책 수혜 조사 기간을 기존 '전년도 5월 ~ 올해 4월까지'를 '전년도 5월 ~ 올해 6월까지'로 확장	올해부터 조사 실시 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응답 내용의 전체 기간을 복원하기 위해 확장
	지자체 및 직장의 출산지원금 수혜 경험 및 금액 문항 추가	지자체와 직장에서 출산지원금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현황 파악
	주거 및 지역 환경 문항에서 자가 소유 필요성 및 주거 관련 지원 정책 항목 삭제	전년도 부스터 조사와 비교를 위해 추가한 문항으로 부스터 조사가 변경됨에 따라 삭제
	거주 지역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관련 문항 추가	농어촌 부스터 조사를 위한 현황 파악
	비용 지원 정책 만족도 삭제	다년간 조사한 항목으로 변화가 없어 계속 조사가 불필요함
	반일제 이상 기관과 집까지의 거리 문항 추가	농어촌 부스터 조사를 위한 현황 파악

주: KICCE 소비실태조사 연구의 세부과제 중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를 위한 조사를 본 연구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에서 통합하여 수행하였으나, 세부과제 중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는 4차년도를 끝으로 종료됨.

자료: 최호미 외(2023),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KICCE 소비실태조사 II), 육아정책연구소, pp.98~100, <표 III-2-2>에 추가함.

2) 가구 특성 및 가계경제·양육비 변화

6차년도(2023년)와 7차년도(2024년)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2-3>과 같다.

부모특성에서는 농어촌 부스터가 진행됨에 따라 다문화가정을 파악하기 위해 부모의 이주민(다문화, 결혼이민자, 귀화자) 여부를 추가하였고, 농어촌 지역의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거주 지역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관련 문항을 추가하였다.

올해부터 조사 실시 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응답 내용의 전체 기간을 복원하기 위해 가구 소득과 정책 수혜 조사 기간을 기존 '전년도 5월~올해 4월까지'에서 '전년도 5월~올해 6월까지'로 확장하였다. 지자체와 직장에서 출산지원금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현황 파악을 위해 지자체와 직장에서 출산지원금 제도 유무와 수혜 내용 등에 대한 질문도 추가하였다.

6차년도(2023년) 부스터조사와 본조사 간의 비교를 위해 들어갔던 주거 및 지역 환경 문항에서 자가 소유 필요성과 주거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항목들이 삭제하였다.

〈표 III-2-3〉 가구용 설문 비교 (1~7차년도) : 가구 특성 및 기계경제·양육비

세부문항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응답자 성별, 자녀수, 자녀 출생연월 및 성별, 가구원 구성	○	○	○	○	○	○	○
부모 특성 : 생년, 학력, 취업여부, 직업, 근로형태, 노동시간, 출퇴근 시간	○	노동시간 관련 설문은 세분	○	유연근무, 시간지원 활용	근로시간단축 시간 추가	단시간근로이유, 비정규직 여부 추가	이주민 여부 추가
결혼 시기,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 여부	○	결혼 시기는 신규 가구만 응답	○	○	○	○	○
[미취업도] 취업 의향	×	×	문항 신설	×	×	×	×
가구소득(지난 3개월 월평균 세후) : 근로소득, 부동소득 및 금융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 사회보험소득, 코로나19 긴급상황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	근로소득 및 사업자 소득으로 수정	○	○	○	○	○
양육관련 공제이전 소득 1 : 누리과정, 보육료, 양육수당(영아수당), 유아휴직급여, 출산장려금, 기타	지난 1개월 1회 수령	지난 1년 동안의 수령 현황 모두 조사	문항 통합 (응답표 형태 수정)	○	○	부모급여 추가	○
양육관련 공제이전 소득 2 : 아동수당	×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변동, 부모 노동시간 변동 등	×	×	문항 신설	×	×	×	×
아동수당 사용 출처, 양육비용 부담 경감 도움 정도	×	○	○	○	○	×	×
코로나19 공적지원금 활용처	×	×	×	○	○	×	×
세제 지원 인지 및 수급현황	×	○	○	문항간소화	○	○	○
아동수당 지원제도 정책 변화 인지 및 경로	×	○	×	×	×	×	×
아동수당정책에 대한 신뢰 및 우선순위	×	○	×	×	×	×	×
아동수당 지원 정책의 확대 방향에 대한 의견	×	○	×	×	×	×	×

세부문항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기정양육수당(영아수당) 사용 비목, 양육비용 부담 경감 도움 정도	×	×	×	×	○	×	×
첫만남이용권 사용계획 지출비목, 양육비용 경감 도움 정도에 대한 기대	×	×	×	×	○	지출비목만 조사	지출비목만 조사
지자체 및 직장 출산지원금 받은 경험 및 금액	×	×	×	×	×	×	○
부모급여 사용 비목	×	×	×	×	×	○	○
현금성 지원금 자녀 양육비용 부담 경감 도움 정도(아동수당, 기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출산지원금, 첫만남 이용권)	×	×	×	×	△(기정양육수당, 첫만남 이용권에 대해 개별 질의)	○(통합)	○(통합)
영유아 가구 대상 정부 지원금 중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	×	×	×	×	×	○	○
세법 개정(아동수당과 자녀 세액공제 중복 수행 금지)에 대한 인지 여부, 인지 경로, 정책에 대한 의견	×	○	×	×	×	×	×
자녀 장려금 제도 변화에 대한 인지 및 의견	×	○	×	×	×	×	×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선호	×	○	보육지원 체계가면	×	×	×	×
생활비 지출 및 자녀 양육비용 : 비목 13개, 세부 항목 11개	○	○	○	보건의료 예시보장, 기기/집기 세목 추가	○	금융상품 세부항목에 주식 및 임의화폐 추가, 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 항목 추가	○
코로나19로 인한 지출 변동, 양육비용 변동	×	×	문항 신설	×	코로나19로 생활비 지출이 감소증가한 비목	×	×

세부문항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주거 관련 문항 : 현재 주거 현황, 주택 구입의 필요성, 주거관련 양육환경, 주거비 부담	○	문항 간소화	문항 간소화	주택평수 추가	주거비에 대한 부담감 정도 추가	거주 주택 가격 추가, 육아기구 자가소유 필요성 추가, 1차년도 주거 문항 추가, 주거관련 지원 정책 인지, 이용 경험 추가, 주거 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성과 농어촌 거주 장단점 추가	주거관련 지원 정책 인지, 이용 경험 삭제, 주거 정책 출산 영향 등 삭제, 거주 지역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성과 농어촌 거주 장단점 추가
양육 비용 충분성 및 지출 우선 순위, 비용 부담	○	○	○	○	생활비 감축 우선순위 추가	여유소득 우선 지출 삭제, 추가소득 발생시 우선 지출 삭제	○
시기별 양육비용 예상(초등기, 중·고등기)	×	×	×	×	×	○	○
자녀 출산 전후 가계 소비 변화	○	×	×	×	×	×	×
사회경제적 위치	○	○	○	○	×	○	○
삶의 만족도	×	×	×	×	×	○	○

주: 문자 기입사항은 주요 변화 내용이며, 설문지 변화가 없거나 문구 수정 등의 작은 변화만이 있는 경우는 ○로 표기, 해당년도에 조사 문항 자체가 삭제되어 조사되지 않은 경우 ×로 표기함.

자료: 1) 최호미 외(2023),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KICCE 소비실태조사 II). 육아정책연구소. pp.102-104, <표 III-2-3>에 추가 및 수정함.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본 연구 설문지.



3) 육아서비스 이용 및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변화

7차년도(2024년) 육아서비스 이용 및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변화 설문은 6차년도(2023년) 설문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였다.

6차년도(2023년)에 부스터조사와 비교하기 위해 다시 추가했던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부모/국가) 설문을 삭제하였으며,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비용 지원 정책 수급여부 및 만족도는 다년간 조사결과 변화가 없어 삭제하였다.

〈표 III-2-4〉 가구용 설문 비교 (1~7차년도) : 육아서비스 이용 및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세부문항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 정책 인지, 선호	x	x	문항 신설	x	x	x	x
가정 내 부모직접 돌봄 및 부모지원 서비스, 자녀 양육부담, 자녀의 전자기기 이용 시간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전자기기 허용 여부	x	x	x	문항 신설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전자기기 허용 여부	○	○
자녀 연령별 이용희망 서비스, 자녀연령별 이상적인 육아서비스	○	○	x	x	x	x	x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및 요구	x	○	○	○	임신출산/영양 기/유아기별 부족한 육아지원에 대한 의견 추가	○	○
초등학교 입학 후 자녀 돌봄 방법	○	○	○	x	x	x	x
긴급 돌봄 대응, 돌봄 공백	x	x	○	○	긴급한 돌봄공백 대응 경험,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경험 추가	x	x
육아 정책 변화에 따른 육아서비스 이용 의사 변화	○	○	x	x	x	x	x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이동용 설문	○	○	○	코로나19로 인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변화 추가	코로나19로 인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변화 식재	○



세부문항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보건 의료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이용, 만족도 / 교육·보육관련 지원 정책 이용여부, 만족도, 미이용 사유 /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인지, 이용 / 가정 내 양육 지원 정책 인지, 이용, 만족도	○	×	×	×	×	×	×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부모/국가), 부모교육 필요성, 자녀 양육에 있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육아지원 분야	○	○	×	×	×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부모/국가) 추가	×
초등 돌봄 국가 책임(부모/국가)	×	○	×	×	×	×	×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기간	×	×	×	×	×	○	○
양육 지원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육아지원 분야	×	○	○	○	○	○	○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비용지원 정책 수급여부 및 정책 만족도	○	○	○	○	○	○	×
육아 시간 지원 정책 활용과 의견 ²⁾ - 이용 경험, 만족도, 도움정도, 이용하지 못한 이유, 개인 필요 정책 및 개선 방향 등	×	×	×	×	△ (이용경험만 질문)	○	○

주: 1) 문자 기입사항은 주요 변화 내용이며, 설문 변화가 없거나 문구 수정 등의 작은 변화만 있는 경우는 ○로 표기, 해당년도에 조사 문항 자체가 삭제되어 조사되지 않은 경우 ×로 표기함.
 2) 육아 시간 지원 정책에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 포함),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직장에서 별도 제공하는 제도 및 유연근무제도를 포함함.
 자료: 1) 최효미 외(2023),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KICCE 소비실태조사 II), 육아정책연구소, pp.106-107, <표 III-2-4>에 추가함.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본 연구 설문지.

4) 아동용 설문 변화

2024년 아동용 설문은 기존 조사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설문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농어촌 부스터 조사를 고려해 반일제 이상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및 반일제 이상 학원) 설문에 집과 기관과의 거리 문항을 추가하였다.

〈표 III-2-5〉 아동용 설문 비교 (1~7차년도) : 영유아

세부 문항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주요 돌보는 사람	○	○	×	×	×	×	×
자녀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이유	×	○	×	×	×	×	×
자녀의 기관 이동 경험	×	○	×	×	×	×	×
기관 이동 경로	×	○	×	×	×	×	×
평균적인 한 주 일과(시간대별 육아서비스 이용 종류)	×	×	○	×	×	×	×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	×	×	○	×	×	×	×
어린이집 유형, 이용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 관련 지출비용, 특별활동 이용관련 지출비용, 만족도, 이용 사유, 원하는 양육 형태	○	○	문항 간소화	○	○	○	집에서 어린이집까지 거리 추가
비대면(온라인 수업) 서비스 이용	×	×	×	○	○	×	×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이유로 어린이집을 등원하지 못한 경험	×	×	×	×	○	×	×
유치원 유형, 이용 서비스, 이용 시간, 만족도, 서비스 이용 관련 지출비용,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관련 지출비용, 이용 사유, 원하는 양육 형태	○	○	문항 간소화	○	○	○	집에서 유치원까지 거리 추가
비대면(온라인 수업) 서비스 이용	×	×	×	○	○	×	×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이유로 유치원을 등원하지 못한 경험	×	×	×	×	○	×	×
반일제 이상 기관 유형,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 관련 지출비용, 특별활동 이용관련 지출비용, 만족도, 이용 사유, 원하는 양육 형태	○	○	문항 간소화	○	○	○	집에서 반일제 이상 학원까지 거리 추가
비대면(온라인 수업) 서비스 이용	×	×	×	○	○	×	×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이유로 반일제 이상 기관을 등원하지 못한 경험	×	×	×	×	○	×	×
문화센터 이용 기관, 이용 종류, 이용 비용	○	○	○	○	○	○	○

세부 문항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터	코로나19 영향 이용 수요	x	x	x	○	○	x	x
시간제 일시 보육	이용여부, 시간제 보육 장소, 이용 빈도, 1회당 평균 이용 시간, 지출비용, 만족도, 이용 사유	○	○	이용 사유 식제	○	○	○	○
개별돌 봄 서비스	이용여부, 돌봄 장소, 개별돌봄 인력 근무형태, 육아도우미 국적, 이용 빈도, 이용시간, 지출비 용, 만족도, 이용 사유, 원하는 양육 형태	○	가구용 설문으로 이관	x	x	x	x	x
학원	이용여부, 종류, 개수, 월 이용비용, 비대면 수 업 여부, 만족도,	○	○	○	비대면 수업 관련 문항 추가	○	○	○
	코로나19 영향 이용 수요	x	x	x	○	○	x	x
시간제 사교육	이용여부, 이용 사교육 개수, 이용 빈도, 이용시 간, 지출비용, 만족도(비용, 서비스), 이용 사유	○	○	서비스 종류별로 세분	○	○	EBS 등 교육 관련 방송 추가	○
기타 육아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이용	x	x	x	○	○	x	x
	이용여부, 이용 빈도, 이용시간, 지출비용, 만족 도(비용, 서비스), 이용 사유	○	○	키즈카페만 질문	○	비정기체험활 동 관련 설문 추가	○	○

주: 문자 기입사항은 주요 변화 내용이며, 설문지의 변화가 없거나 문구 수정 등의 적은 변화만이 있는 경우는 ○로 표기, 해당년도에 조사 문항 자체가 삭제되어 조사되지 않은 경우 x로 표기함.

자료: 1) 최호미 외(2023),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KICCE 소비실태조사 II), 육아정책연구소, pp.109-110, 〈표 III-2-5〉에 추가함.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본 연구 설문지.

3. 조사 결과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조사는 2024년 10월 말에 실사가 마무리되었으며, 조사 응답 가구와 아동 수를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KICCE 소비실태조사 2018~2023 표본추적률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의 가구 표본은 1,648가구였으며, 초등1학년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한 1,902가구, 초등 2학년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한 2020년 2,156가구, 다시 초등1학년까지만 추적조사를 실시한 2021년에는 1,993가구가 조사되었으며, 영유아 자녀까지만 조사한 2022년에는 1,730가구, 2023년에는 1,773가구가 조사되었다(최효미 외, 2023 : 115). 2024년 조사 완료 표본 수는 1,821가구로 1차년도 조사에 비해 173가구가 증가하였다. 이는 표본 추적에 실패하더라도 표본을 바로 대체하는 ‘KICCE 소비실태조사’의 표본 구축 특성과 함께 기존 추적 표본 가구 내에서 후속 출산으로 인해 막내 자녀 연령이 낮아짐에 따른 영향 2가지가 영향을 미친 결과라 볼 수 있다(최효미 외, 2023 : 115).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KICCE 소비실태조사’의 표본추적률은 1차년도 표본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전년도 표본에 대한 추적 조사 성공률을 의미한다. ‘KICCE 소비실태조사’의 표본추적률은 2019년(75.4%)를 제외하고는 80% 이상의 표본 추적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4에는 87.0%의 표본추적률을 보였다. II기 연구가 시작되던 해인 2023년 조사에서는 표본추적률이 전년에 비해 다소 낮아 82.8%에 그쳤으나, II기 조사 시작 당시 5개년 연속과제임을 안내한 상태에서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2024년 표본유지율은 상승한 것으로 사료된다.

2024년의 추적 대상 표본의 수는 1,567가구이며, 신생아표본(2023년 하반기 출생아 및 2024년 상반기 출생아) 254가구를 더하여, 총 1,821가구를 조사하였다. 이처럼 영유아 가구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더라도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일반적인 가구패널 조사와는 달리 조사 표본이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⁹⁶⁾

96) 이후 조사 예산의 확보 여부에 따라 기존의 표본 추적 및 구축 원칙 등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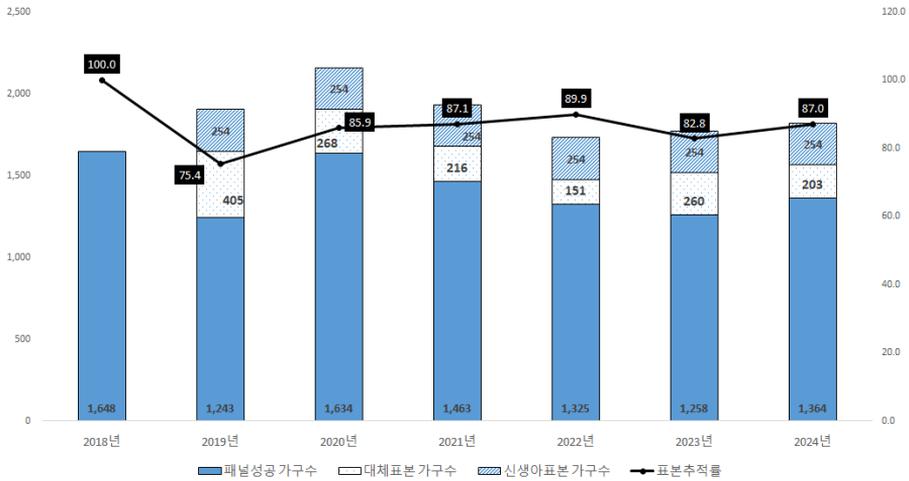
〈표 III-3-1〉 KICCE 소비실태조사(2018~2024년) 표본 가구수 및 추적률

단위 : 가구, %

구분	연도	전체 표본 수	추적대상 표본 수	당해년도 조사성공 가구 표본 특성			표본 추적률
				패널표본	대체 표본	신생아 표본	
I 기	2018년	1,648					
	2019년	1,902	1,648	1,243	405	254	75.4
	2020년	2,156	1,902	1,634	268	254	85.9
	2021년	1,933	1,679	1,463	216	254	87.1
	2022년	1,730	1,476	1,325	151	254	89.8
II 기	2023년	1,772	1,518	1,258	260	254	82.8
	2024년	1,821	1,567	1,364	203	254	87.0

주: 1) 추적 대상 표본이 막내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2018년 영유아(만6세)이며, 2019년은 7세(초1), 2020년 8세(초2), 2021년 7세(초1), 2022년 이후로는 영유아(만6세)임
 2) 표본추적률은 (당해년도 패널(추적성공) 표본/당해년도 추적 대상 표본) *100으로 산출됨.
 자료: 1) 최호미 외(2023).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조사(KICCE 소비실태조사 II). 육아정책연구소. 〈표 III-3-1〉을 수정 보완함.
 2)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그림 III-3-1〕 KICCE 소비실태조사(2018~2024년) 표본 가구 수 및 추적률



주: 표주 및 자료 출처는 상동.



나.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표본 특성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의 표본의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막내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2018년생(만6세)가 245가구, 2019년생 265가구, 2020년생 268가구, 2021년생 276가구, 2022년생 295가구, 2023년생 313가구, 2024년생 159가구였다. 2024년생은 2023년 조사 당시 신생아 표본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27가구를 신규 구축했으며, 기존 가구 중 후속 출산으로 막내 자녀 연령이 변동한 경우가 32가구 있었다.

〈표 III-3-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본조사 가구 표본 : 막내자녀 연령별

단위 : 가구(%)

구분	전체 표본 수	패널표본	대체 표본	신생아 표본
전체	1,821(100.0)	1,364(100.0)	203(100.0)	254(100.0)
2017년생 (6세)	245(13.5)	226(16.6)	19(9.4)	-
2018년생 (5세)	265(14.6)	243(17.8)	22(10.8)	-
2019년생 (4세)	268(14.7)	236(17.3)	32(15.8)	-
2020년생 (3세)	276(15.2)	225(16.5)	51(25.1)	-
2021년생 (2세)	295(16.2)	247(18.1)	48(23.6)	-
2022년생 (1세)	313(17.2)	156(11.4)	30(14.8)	127(50.0)
2023년생 (0세)	159(8.7)	31(2.3)	1(0.5)	127(50.0)

주: 1) 연령은 막내자녀 연령을 의미함.

2) 패널표본은 전년도(5차) 조사에 참여한 가구의 추적조사에 성공한 경우이며, 대체표본은 추적조사에 실패한 가구를 대신하여 대체된 표본, 신규표본은 조사차수 기준 전년도 하반기 및 당해연도 상반기에 출생한 신생아 표본을 의미함.

자료: 1) 최효미 외(2023),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조사(KICCE 소비실태조사 II), 육아정책연구소. 〈표 III-3-5〉.

2)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한편, 아동용 설문에 조사한 아동의 수는 2018년 2,277명, 2019년 2,776명, 2020년 3,278명, 2021년 2,832명, 2022년 2,395명이었으며, 2023년에는 2,422명이 조사되었다(최효미 외, 2023: 135~136). 2024년에는 2,434명의 아동이 조사 완료되었다.

초등 아동이 포함된 2019~2021년을 제외하고, 아동 조사 표본은 2018년 대비 2024년 157명이 증가하였다. 저출생 심화 현상과 맞물려서 전체 영유아 수 뿐 아니라 다자녀 가구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KICCE 소비실태조사’의 다자녀 가구 비중은 애초에 다른 조사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는데, 표본 추적 및 표본 구축 원칙에 따라 다자녀 가구 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⁹⁷⁾(최효미 외, 2023: 179~181), 아동 설문 응답자도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III-3-3〉 소비실태조사(2018~2023년) 영유아 연령별 표본 (아동용 설문 조사 표본 기준)

단위 : %(명)

출생년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7차년도 (2024년)
2024년생	-	-	-	-	-	-	6.6 (161)
2023년생	-	-	-	-	-	6.4 (156)	13.3 (323)
2022년생	-	-	-	-	6.5 (156)	13.1 (317)	14.0 (341)
2021년생	-	-	-	5.6 (160)	13.4 (321)	14.2 (343)	15.0 (365)
2020년생	-	-	4.8 (158)	11.2 (316)	14.0 (335)	15.7 (381)	16.4 (400)
2019년생	-	5.7 (158)	9.8 (321)	12.5 (353)	16.5 (396)	17.0 (411)	17.4 (424)
2018년생	5.6 (127)	10.7 (297)	10.1 (331)	13.0 (367)	15.8 (379)	16.5 (400)	17.3 (420)
2017년생	11.7 (267)	10.7 (296)	10.2 (333)	12.8 (363)	16.4 (392)	17.1 (414)	-
2016년생	13.0 (295)	12.1 (336)	11.6 (379)	14.3 (404)	17.4 (416)	-	-
2015년생	15.6 (356)	14.8 (410)	12.9 (424)	15.5 (438)	-	-	-
2014년생	16.2 (370)	14.6 (406)	12.9 (422)	15.2 (431)	-	-	-
2013년생	17.7 (403)	15.2 (421)	13.5 (441)	-	-	-	-
2012년생	20.2 (459)	16.3 (452)	14.3 (469)	-	-	-	-
전체	100.0 (2,277)	100.0 (2,776)	100.0 (3,278)	100.0 (2,832)	100.0 (2,395)	100.0 (2,422)	100.0 (2,434)

주: 1) KICCE 소비실태조사 본조사의 아동용 설문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함.

2) 2019(2차년도)는 초등1학년, 2020년(3차년도)는 초등2학년, 2021년(4차년도)는 초등1학년까지 아동용 설문조사를 실시함.

자료: 1) 최효미 외(2023).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조사(KICCE 소비실태조사 II). 육아정책연구소. 〈표 III-3-22〉.

2)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97) ‘KICCE 소비실태조사’ 2018년 다자녀 가구(자녀가 2명 이상)의 비중은 61.3%로, 인구동향조사 45.6%에 비해 15.7%p가 높음. 2023년 ‘KICCE 소비실태조사’의 다자녀 가구 비중은 66.3%까지 증가함(최효미·이정원·조미라 외, 2023: 180).



2024년 부스터표본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로, 160가구를 목표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62가구가 조사되었다. 영아 가구가 83가구, 유아 가구가 79가구이며, 권역별로 강원/경기 지역이 33가구, 경남/경북 지역 37가구, 전북/전남 지역 54가구, 충북/충남 지역 38가구가 조사되었다.

〈표 III-3-4〉 권역별 부스터표본 조사 표본 수(2024년)

단위: 가구

구분	강원/경기	경남/경북	전북/전남	충북/충남	합계
영아(0-3세)	17	18	29	19	83
유아(4-6세)	16	19	25	19	79
합계	33	37	54	38	162

Part III

데이터 분석

III-1. KICCE 소비실태조사(2018-2023)를 활용한 기초 분석

IV

영유아 가구의 가계 경제와 양육비용 실태

- 01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 및 소득
- 02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실태
- 03 소결

IV. 영유아 가구의 가계 경제와 양육비용 실태

IV장은 'KICCE 소비실태조사' 2018~2023년 자료를 활용한 기초 분석 결과로, 크게 2개의 절로 구성된다. 먼저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 및 소득 등 가계 경제와 관련된 주요 지표의 변화를 살펴보고, 2절에서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실태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본 장에서 제시한 실질비용은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를 감안하여 환산된 값으로, 각 연도 5~7월 소비자물가지수를 평균한 값을 적용하였다⁹⁸⁾.

1.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 및 소득

가.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 총액 및 주요 지수

영유아 가구의 특성별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의 변화를 명목비용과 실질비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명목비용의 경우 1차년도(2018년) 311만9천원에서 2차년도(2019년) 328만원으로 증가했다가 3차년도(2020년) 322만5천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후 6차년도(2023년)까지는 377만5천원 수준으로 점차 증가하였다. 실질비용의 경우 명목비용과 마찬가지로 3차년도(2020년)까지 동일한 추세를 보이다가 4차년도(2021년)에 증가한 후 6차년도(2023년)까지 소폭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22년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의 영향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98) 1차년도(2018년) 98.78, 2차년도(2019년) 99.44, 3차년도(2020년) 99.59, 4차년도(2021년) 102.12, 5차년도(2022년) 108.15, 6차년도(2023년) 111.19를 적용하여 환산함.

〈표 IV-1-1〉 가구 특성별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변화(2018~2023년, 영유아 가구)

단위: 만원, 가구

구분	1차년도 (2018)	2차년도 (2019)	3차년도 (2020)	4차년도 (2021)	5차년도 (2022)	6차년도 (2023)
명목비용	311.9	328.0	322.5	343.5	364.0	377.5
실질비용	315.8	329.9	323.8	336.4	336.5	339.5
(수)	(1,648)	(1,665)	(1,679)	(1,708)	(1,730)	(1,773)

주: 1) 본 연구에서는 가구 지출 비목 중 1,2,3,4,5,6,7,8,9,10,11-2,13 항목의 합산값만을 “가구 생활비”로 정의하였음. 이에 ‘가구생활비 지출 총액’에는 11-1(저축), 11-3(원금상환), 11-4(이자상환), 12(이전지출)에 대한 지출액이 합산에서 제외됨.

2) 실질비용은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을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6차년도 원자료.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및 비목별 비중을 명목비용과 실질비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금융상품(저축 및 보험납입금)’이 평균 명목비용 138만1천원(27.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 ‘저축’의 비중이 10.1%, ‘보험’ 9.3%, ‘원금상환’ 3.4%, ‘이자상환’ 3.5%, ‘주식 및 압호화폐’ 0.7%로 나타났다. ‘식비(외식비포함)’의 평균 명목비용이 103.8만원(22.5%)으로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중 ‘외식비’가 32만2천원(6.8%)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보육비’ 47만9천원(9.1%), ‘여가 및 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36만8천원(7.4%), ‘주거/관리비’ 29만5천원(6.6%) 등으로 조사되었다. 2023년(6차년도) 기준 월평균 가구생활비 총액은 484만7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IV-1-2〉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및 비목별 비중/가구지출 총액(2023년, 명목비용, 영유아 가구 표본)

단위: %, 만원

구분	가구생활비 지출총액 ^{주)}			가구 지출 총액
	평균 (명목비용)	비목별비중	평균 (실질비용)	
총계	377.5	100.0	339.5	484.7
1.식비(외식비포함)	103.8	22.5	93.3	103.8
1-1.외식비	32.2	6.8	29.0	32.2
2.주거/관리비	29.5	6.6	26.6	29.5
2-1.관리비및수도/광열비	24.5	5.4	22.0	24.5
2-2.월세	4.2	1.0	3.8	4.2
3.기기/집기	8.3	1.5	7.5	8.3
3-1 PC/노트북/태블릿PC	1.7	0.3	1.6	1.7

구분	가구생활비 지출총액 ^{주)}			가구 지출 총액
	평균 (명목비용)	비목별비중	평균 (실질비용)	
4.피복비(의류및신발)	24.1	5.1	21.6	24.1
5.보건/의료비	14.2	2.9	12.8	14.2
6.교육/보육비	47.9	9.1	43.1	47.9
7.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36.8	7.4	33.1	36.8
7-1.가족여행 등	24.2	4.8	21.8	24.2
7-2.관람 체험학습	3.9	0.8	3.5	3.9
7-3.완구	4.4	0.9	3.9	4.4
7-4.도서구매	4.0	0.8	3.6	4.0
8.교통비	28.2	6.2	25.4	28.2
9.통신비	18.5	4.1	16.6	18.5
9-1.휴대전화비	12.6	2.8	11.3	12.6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16.4	3.6	14.7	16.4
11.금융상품(저축 및 보험납입금)	43.2	9.3	38.9	138.1
11-1.저축	-	-	-	50.8
11-2.보험	43.2	9.3	38.9	43.2
11-3.원금상환	-	-	-	19.2
11-4.이자상환	-	-	-	18.9
11-5.주식, 압호화폐	-	-	-	5.3
12.이전지출	12.4	2.5	11.1	12.4
13.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	0.5	0.1	0.5	0.5
14.기타상품및서비스	6.1	1.3	5.5	6.1

주: 본 연구에서는 가구 지출 비목 중 1,2,3,4,5,6,7,8,9,10,11-2,13,14 항목의 합산값만을 "가구 생활비"로 정의 하였음. 이에 '가구생활비 지출 총액'에는 11-1(저축), 11-3(원금상환), 11-4(이자상환), 12(이전지출)에 대한 지출액이 합산에서 제외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양육비용과 비목 일치 시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및 비목별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지출 총액은 1차년도(2018년) 278만6천원원에서 6차년도(2023년) 341만3천원으로 점차 증가했다. 총 지출액 중 '식비(외식비포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식비의 비중은 3차년도(2020년) 32.5%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여 6차년도(2023년) 30.4%였다. 6차년도(2023년) 기준 교육/보육비의 평균 명목비용이 47만9천원(14.0%)으로 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표 IV-1-3〉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및 비목별 비중 변화: 양육비용과 비목 일치 시(2018~2023년, 명목비용, 영유아 가구)

구분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		3차년도(2020)		4차년도(2021)		5차년도(2022)		6차년도(2023)	
	평균비용	비목별 비중	평균비용	비목별 비중	평균비용	비목별 비중	평균비용	비목별 비중	평균비용	비목별 비중	평균비용	비목별 비중
총계	278.6	(100.0)	294.3	(100.0)	289.5	(100.0)	310.5	(100.0)	328.0	(100.0)	341.3	(100.0)
1. 식비(외식비포함)	81.1	(29.1)	83.3	(28.3)	94.1	(32.5)	95.0	(30.6)	98.6	(30.1)	103.8	(30.4)
1-1. 외식비	25.0	(9.0)	26.1	(8.9)	27.5	(9.5)	28.4	(9.1)	30.8	(9.4)	32.2	(9.4)
3. 기기/잡기	6.2	(2.2)	8.0	(2.7)	10.9	(3.8)	13.1	(4.2)	13.6	(4.1)	8.3	(2.4)
4. 피복비(의류및신발)	18.3	(6.6)	18.6	(6.3)	18.8	(6.5)	20.3	(6.5)	21.9	(6.7)	24.1	(7.1)
5. 보건/의료비	7.0	(2.5)	8.9	(3.0)	11.4	(3.9)	12.6	(4.1)	13.3	(4.1)	14.2	(4.2)
6. 교육/보육비	41.0	(14.7)	43.1	(14.6)	30.0	(10.4)	39.8	(12.8)	41.4	(12.6)	47.9	(14.0)
7. 여가및문화생활비	32.3	(11.6)	31.6	(10.7)	22.8	(7.9)	26.0	(8.4)	33.5	(10.2)	36.8	(10.8)
7-1. 가족여행 등	19.8	(7.1)	19.2	(6.5)	11.0	(3.8)	14.4	(4.6)	20.0	(6.1)	24.2	(7.1)
7-2. 관람 체험학습	4.1	(1.5)	4.0	(1.4)	1.2	(0.4)	1.7	(0.5)	3.5	(1.1)	3.9	(1.1)
7-3. 완구	4.0	(1.4)	4.1	(1.4)	4.6	(1.6)	4.8	(1.5)	4.8	(1.5)	4.4	(1.3)
7-4. 도서구매	4.5	(1.6)	4.3	(1.5)	4.9	(1.7)	4.5	(1.4)	4.4	(1.3)	4.0	(1.2)
8. 교통비	26.4	(9.5)	27.6	(9.4)	26.1	(9.0)	26.5	(8.5)	28.4	(8.7)	28.2	(8.3)
9. 통신비	17.1	(6.1)	17.6	(6.0)	17.9	(6.2)	18.1	(5.8)	18.4	(5.6)	18.5	(5.4)
9-1. 휴대전화비	12.5	(4.5)	12.2	(4.1)	12.8	(4.4)	13.4	(4.3)	12.2	(3.7)	12.6	(3.7)
10. 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12.9	(4.6)	13.5	(4.6)	14.7	(5.1)	15.1	(4.9)	16.1	(4.9)	16.4	(4.8)
11-2. 보험	36.3	(13.0)	42.0	(14.3)	42.8	(14.8)	44.1	(14.2)	42.7	(13.0)	43.2	(12.7)

주: 1) 비목 및 세부별 지출액이 없는 경우는 0으로 처리하여 평균비용을 산출하였으며, 비목별 비중은 산출값의 비중임(비목의 평균비용/총계 평균비용*100).

2) 양육비용과 비목을 일치시킨 생활비 지출 총액에서 주거비, 이전 지출 등을 제외한 금액.

자료: 'KICCE 소비자실태조사' 1~6차년도 원자료.

가구생활비 중 특정 지출 비목의 비중을 살펴볼 수 있는 생활비 관련 지수를 통해 1차년도(2018년)~6차년도(2023년)에 걸친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 특성을 살펴보았다. 가구 생활비 중 식비의 비중을 의미하는 ‘엔젤지수’는 1차년도(2018년) 26.5에서 2차년도(2019년) 26.1로 소폭 하락했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시점인 3차년도(2020년)에 30.0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후 4차년도(2021년)부터 28%대 수준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생활비 중 주거비의 비중을 의미하는 ‘슈바베지수’는 1차년도(2018년)~6차년도(2023년) 기간 동안 변동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장 낮은 때는 4차년도(2021년) 8.1, 가장 높은 때는 1차년도(2018년) 8.7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생활비 지출 총액 중 양육비의 비중을 보여주는 ‘엔젤지수’를 살펴보면 1차년도(2018년)에 29.1, 2차년도(2019년)도부터 5차년도(2022년)까지는 전반적으로 26.5~27.2 사이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6차년도(2023년) 29.0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4〉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2018~2023년, 영유아 가구표본)

구분	1차년도 (2018)	2차년도 (2019)	3차년도 (2020)	4차년도 (2021)	5차년도 (2022)	6차년도 (2023)
엔젤지수	26.5	26.1	30.0	28.4	28.0	28.3
슈바베지수	8.7	8.4	8.5	8.1	8.3	8.2
엔젤지수	29.1	26.5	26.7	27.2	26.9	29.0

주: 1) 엔젤지수는 각 가구별로 (식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2) 슈바베지수는 각 가구별로 (주거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3) 엔젤지수는 각 가구별로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가구 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5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가구특성별로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을 보면 맞벌이 가구인 경우 세 가지 지수 중 엔젤지수가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외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엔젤지수와 엔젤지수가 29.2로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나누어 세 가지 지수를 살펴보면 299만원 이하에서는 엔젤지수가 30.0, 300~399만원 이하에서는 엔젤지수가 30.3, 400~499만원 이하에서는 엔젤지수가 28.9, 500~599만원 이하에서는 엔젤지수가 29.1, 600만원 이상에서는



엔젤지수가 29.7로 가장 높게 관찰되었다. 앵겔지수 최고치는 30.3으로 300~399만원 가구소득 구간에서, 슈바베지수 최고치는 11.7, 엔젤지수 최고치는 30.0으로 모두 299만원 이하 가구소득 구간에서 관찰됐다.

〈표 IV-1-5〉 가구특성별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2023년, 영유아 가구표본)

구분		앵겔지수	슈바베지수	엔젤지수
전체		28.3	8.2	29.0
맞벌이가구 여부	맞벌이	27.3	8.0	28.9
	외벌이	29.2	8.3	29.2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29.0	11.7	30.0
	300~399만원 이하	30.3	9.2	28.8
	400~499만원 이하	28.9	8.9	28.3
	500~599만원 이하	28.2	7.8	29.1
	600만원 이상	27.0	7.2	29.7

주: 1) 앵겔지수는 각 가구별로 (식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2) 슈바베지수는 각 가구별로 (주거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3) 엔젤지수는 각 가구별로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가구 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나. 영유아 가구 가구소득

월평균 총 가구소득의 변화를 명목비용과 실질비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명목비용의 경우 2018년 462만9천원에서 2020년 526만4천원까지 증가하다가 2021년 522만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3년에는 560만1천원 수준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실질비용은 2018년 468만7천원에서 2020년 528만6천원까지 증가한 후 2021년 511만2천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2년 500만5천원까지 하락하였다가 2023년에 소폭 증가하여 503만8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즉, 최근의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코로나19 이후 실질소득이 감소한 현상이 포착되었다.

〈표 IV-1-6〉 가구특성별 KICCE 소비실태조사 월평균 총 가구소득 변화(2018~2023년)

단위 : 만원, 가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명목 비용	462.9	494.2	526.4	522.0	541.4	560.1
실질 비용	468.7	497.0	528.6	511.2	500.5	503.8
(수)	(1,648)	(1,665)	(1,679)	(1,708)	(1,730)	(1,773)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6차년도 원자료.

월평균 총 가구소득의 변화를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2018~2023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총 가구소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았다. 지역규모의 경우는 추세가 일관적이지 않은데 2018년, 2021년, 2022년, 2023년에는 지역 규모가 클수록 가구소득이 높았으나 2019년, 2020년에는 중소도시의 가구소득이 가장 높았다.

〈표 IV-1-7〉 가구특성별 KICCE 소비실태조사 월평균 총 가구소득 변화(2018~2023년, 명목비용)

단위 : 만원, (가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462.9	494.2	526.4	522.0	541.4	560.1
		(1,648)	(1,665)	(1,679)	(1,708)	(1,730)	(1,77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540.8 (762)	576.2 (738)	599.4 (735)	600.8 (719)	633.3 (767)	640.1 (835)
	외벌이	396.0 (886)	429.0 (927)	469.6 (944)	464.7 (989)	468.1 (963)	488.9 (938)
자녀수	1명	455.7 (638)	478.3 (559)	493.2 (543)	481.8 (550)	494.2 (583)	524.7 (628)
	2명	461.8 (818)	502.2 (878)	542.2 (889)	542.1 (910)	563.9 (900)	572.6 (894)
	3명이상	491.9 (192)	503.0 (228)	542.9 (247)	537.5 (248)	570.5 (247)	604.3 (251)
지역 규모	대도시	477.3 (662)	494.0 (664)	516.3 (670)	536.6 (696)	552.3 (683)	576.6 (708)
	중소도시	459.7 (717)	502.9 (728)	540.1 (746)	524.3 (781)	541.9 (788)	554.4 (834)
	읍면지역	436.2 (269)	471.8 (273)	513.5 (263)	470.2 (231)	511.1 (259)	530.1 (23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6차년도 원자료.

2023년 명목비용 기준 맞벌이가구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640만1천원이었고, 외벌이가구의 경우 488만9천원으로 맞벌이가구가 높게 나타났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수가 1명일 때는 524만7천원, 2명일 때는 572만6천원, 3명이상일 때는 604만3천원으로 3명이상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 보면 대도시일 때 576만6천원, 중소도시일 때 554만4천원, 읍면지역 530만1천원으로 대도시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 세목별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월평균 498만2천원으로 가장 많고, 공적이전소득 및 사회보험소득이 50만2천원으로 다음이었다. 부동산소득 및 금융소득은 월평균 4만원, 사적이전소득 4만1천원, 기타소득이 3만6천원이었다.



〈표 IV-1-8〉 가구특성별 세목별 월평균 가구소득(2023년): 명목비용

단위 : %, 만원, (가구)

구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부동산소 득 및 금융소득	공적이전 소득 및 사회보험 소득	사적 이전소득	기타소득	월평균 총 가구 소득	계(수)
소득보유비율 (%)	99.5	3.8	100.0	6.7	3.2	-	(1,773)
전체	498.2	4.0	50.2	4.1	3.6	560.1	(1,773)
맞벌이가구 여부	맞벌이	579.5	3.8	48.8	4.5	3.5	640.1 (835)
	외벌이	425.8	4.2	51.5	3.7	3.7	488.9 (938)
자녀수	1명	467.6	3.3	46.2	3.9	3.7	524.7 (628)
	2명	512.9	3.3	48.7	4.5	3.2	572.6 (894)
	3명이상	522.6	8.1	65.4	3.2	5.0	604.3 (251)
지역 규모	대도시	515.4	3.6	50.8	3.1	3.7	576.6 (708)
	중소도시	491.8	3.8	49.8	5.0	4.0	554.4 (834)
	읍면지역	468.4	5.8	50.0	3.9	2.1	530.1 (231)

주: 1) 근로소득은 본인의 근로소득+배우자 근로소득+기타 가구원 근로소득으로 계산함.

2) 소득이 없는 경우는 0으로 처리한 후 계산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다. 정부 지원금

정부 지원금 수급률은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및 아동수당은 아동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부모급여는 0~1세 아동 중 수급 비율을,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및 누리과정은 2~6세 아동 중 수급 비율, 아동수당은 전체 아동 중 수급 비율을 계산하여 산출하였다.

2023년도에 영유아 가구들의 공적이전소득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누리과정을 지원받은 아동은 61.4%, 보육료지원을 받은 아동은 33.8%, 가정양육수당 4.8%, 부모급여를 받은 아동은 0~1세 중 93.7%로 나타났다. 1명을 제외한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수급⁹⁹⁾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18.6%, 육아 휴직급여 10.3%로 나타났다.

부모급여 수급형태 별로는 현금만 74.8%, 현금+바우처 7.6%, 바우처만 11.2%로 나타났다. 아동연령별로 2세에는 가정양육수당 비율이 14.0%로 나타났으나 3세 5.0%, 4세 1.9%로 낮은 연령의 수급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9) 2,422명 중 1명만 제외하고 수급하여 비율은 100.0%로 나타남.

〈표 IV-1-9〉 양육관련 정부지원금 수급률(2023년): 2022년 이후 출생아

단위 : %, (명)

구분	2022년 이후 출생(부모급여)					
	현금만	현금+바우처	바우처만	해당 없음	(수)	
전체	74.8	7.6	11.2	6.3	(473)	
아동연령	0세(2023년생)	73.7	7.1	0.0	19.2	(156)
	1세(2022년생)	75.4	7.9	16.7	0.0	(317)

주: 1) 아동을 기준으로 수급률을 산출하였음.
 2) 2023년 4월에 수급하고 있는 제도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표 IV-1-10〉 양육관련 정부지원금 수급률(2023년): 2021년 이전 출생아

단위 : %, (명)

구분	2021년 이전 출생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수)	
전체	4.8	33.8	61.4	(1,949)	
아동연령	2세(2021년생)	14.0	86.0	0.0	(343)
	3세(2020년생)	5.0	95.0	0.0	(381)
	4세(2019년생)	1.9	0.2	97.8	(411)
	5세(2018년생)	2.5	0.3	97.3	(400)
	6세(2017년생)	2.2	0.0	97.8	(414)

주: 1) 아동을 기준으로 수급률을 산출하였음.
 2) 2023년 4월에 수급하고 있는 제도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표 IV-1-11〉 양육관련 정부지원금 수급률(2023년) - 아동수당, 출산 장려금, 육아 휴직급여

단위 : %, (명), (가구)

구분	아동수당	(수)	출산 장려금	(수)	육아 휴직급여	(수)
전체	100.0	(2,422)	18.6	(1,773)	10.3	(1,773)

주: 아동수당은 아동을 기준으로 수급률을 산출하였으며, 출산장려금과 육아휴직급여는 가구단위로 수급률을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양육관련 공적 지원금 수급 비중의 변화를 보면 가정양육수당은 2018년 19.0%에서 2019년 25.6%까지 늘어나다가 2022년 22.4%로 하락한 뒤 2023년 4.8%까지 하락했다. 보육료 지원은 2019년 52.3%로 수급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23년 현재 33.8%까지 하락했다. 누리과정지원의 경우에는 2018년 30.2%에 불과하던 비중이 2019년 27.3%로 낮아진 뒤 계속 증가하여 2023년 61.4%로 나타났다. 아동수당의 경우 2019년 92.9%로 시작하여 2023년 현재 100.0%로 나타났다. 2022년에 도입되었다가 2023년 부모급여로 재편된 영아수당은 2022년 출생아의 경우 69.9%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급여는 93.7%의 수급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2〉 양육관련 공적 지원금 수급 비중의 변화(2018~2023년)

단위 :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가정양육수당	19.0 (2,298)	25.6 (2,334)	22.4 (2,368)	21.5 (2,403)	17.4 (2,239)	4.8 (1,949)
보육료 지원(영아)	49.9 (2,298)	52.3 (2,334)	24.5 (2,368)	28.1 (2,403)	31.8 (2,239)	33.8 (1,949)
누리과정지원(유아)	30.2 (2,298)	27.3 (2,334)	45.8 (2,368)	48.6 (2,403)	51.7 (2,239)	61.4 (1,949)
아동수당	-	92.9 (2,334)	98.1 (2,368)	99.5 (2,403)	99.7 (2,395)	100.0 (2,422)
영아수당 (‘22년 출생아)	-	-	-	-	69.9 (156)	-
부모급여	-	-	-	-	-	93.7 (473)

주: 1) %는 해당 정부 지원금 지원 대상자 중 수급자 비중을 의미하며, ()의 수치는 해당 정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 수를 의미함. 수급 기준 월 확인 필요.
 2) 2018~2019년은 어린이집의 다니는 경우 보육료 지원으로 분류하고,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만 누리과정 지원으로 분류함
 3) 2020~2023년은 각년도 4월에 수급하고 있는 지원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아동수당 제외)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5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양육관련 공적 지원금 수급 금액(월평균, 명목비용)의 변화를 보면 가정양육수당은 2018년 16.3만원에서 2020년 17.4만원까지 늘어나다가 2021년 17.2만원으로 감소한 뒤 2023년 14.5만원까지 하락했다. 보육료 지원은 2018년 28.7만원에서 등락을 보이며 2023년 현재 43.8만원 수준으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누리과정지원의 경우에는 2018년 20.7만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26.2만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도입된 영아수당은 29.6만원에서 2023년 31.4만원으로 증가했다. 부모급여의 경우에는 2023년 현재 64.9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13〉 양육관련 공적 지원금 수급 금액(2018~2023년, 월평균, 명목비용)

단위 : 만원(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가정양육수당	16.3 (438)	16.8 (598)	17.4 (737)	17.2 (783)	17.1 (668)	14.5 (295)
보육료지원(영아)	28.7 (1,145)	27.7 (1,221)	34.1 (968)	40.6 (1,036)	37.9 (998)	43.8 (1,062)
누리과정지원(유아)	20.7 (691)	21.7 (638)	22.9 (1,131)	23.2 (1,178)	25.4 (1,164)	26.2 (1,202)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아동수당	-	10.0 (2,169)	10.0 (2,324)	10.0 (2,390)	10.0 (2,389)	10.0 (2,421)
영아수당 (‘22년 출생아)	-	-	-	-	29.6 (70)	31.4 (317)
부모급여	-	-	-	-	-	64.9 (444)

주: 양육관련 공적 지원금 수급 금액은 해당 공적 지원 수급 총액을 총 수급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였으며, 2018년에는 가장 최근에 받은 수급액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음.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5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부모급여 활용처를 보면 대부분 ① 식비(외식비 포함), ⑥ 개인유지비(목욕/세탁 용품, 이미용 서비스, 기저귀, 화장품, 화장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① 식비(외식비 포함), ⑥ 개인유지비(목욕/세탁 용품, 이미용 서비스, 기저귀, 화장품, 화장지 등)에 활용한 비중이 각각 64.4%, 60.3%로 나타났다. 외벌이부부의 경우, ① 식비(외식비 포함), ⑥ 개인유지비(목욕/세탁 용품, 이미용 서비스, 기저귀, 화장품, 화장지 등)에 사용한 비중이 각각 65.6%, 61.1%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300만 원 이상 599만 원 이하 가구는 ① 식비(외식비 포함), ⑥ 개인유지비(목욕/세탁 용품, 이미용 서비스, 기저귀, 화장품, 화장지 등) 순으로 부모급여를 가장 많이 활용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600만 원 이상 가구는 ⑥ 개인유지비(목욕/세탁 용품, 이미용 서비스, 기저귀, 화장품, 화장지 등) 59.9%, ① 식비(외식비 포함) 57.9% 순으로 많이 활용했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① 식비(외식비 포함)에, 읍면지역은 ⑥ 개인유지비(목욕/세탁 용품, 이미용 서비스, 기저귀, 화장품, 화장지 등)에 가장 많이 활용했다.

〈표 IV-1-14〉 부모급여 활용처: 1+2순위(2023년)

단위 : %(가구)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수)
전체		65.1	15.5	14.9	11.0	5.4	60.8	22.0	1.1	1.3	(464)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64.4	13.9	14.4	13.9	3.1	60.3	24.7	0.5	1.0	(194)
	외벌이	65.6	16.7	15.2	8.9	7.0	61.1	20.0	1.5	1.5	(270)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50.0	-	-	-	-	100.0	-	50.0	-	(2)
	300~399만원 이하	73.0	19.0	14.3	7.9	6.3	65.1	12.7	-	1.6	(63)
	400~499만원 이하	68.0	19.7	11.6	6.8	5.4	60.5	22.4	1.4	2.0	(147)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수)
	500~599만원 이하	67.0	16.0	18.0	6.0	2.0	59.0	24.0	2.0	1.0	(100)
	600만원 이상	57.9	9.9	16.4	19.7	7.2	59.9	24.3	-	0.7	(152)
총 자녀수	1명	61.6	14.7	15.3	5.8	4.7	63.7	26.8	2.1	0.5	(190)
	2명	67.6	19.3	13.0	11.1	5.3	61.8	17.9	0.5	1.9	(207)
	3명이상	67.2	6.0	19.4	25.4	7.5	49.3	20.9	-	1.5	(67)
지역 규모	대도시	62.3	18.0	17.5	12.6	4.9	58.5	20.2	0.5	1.1	(183)
	중소도시	70.9	13.9	13.0	10.8	5.4	61.0	20.2	1.3	1.3	(223)
	읍면지역	51.7	13.8	13.8	6.9	6.9	67.2	34.5	1.7	1.7	(58)

주: 1) ① 식비(외식비 포함), ② 피복비, ③ 보건/의료비(영양제 등 포함), ④ 교육/보육비(교재교구비 포함), ⑤ 여가 및 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도서구입비), ⑥ 개인유지비(목욕/세탁 용품, 이미용 서비스, 기저귀, 화장품, 화장지 등), ⑦ 저축 등 금융상품(어린이보험, 저축 등), ⑧ 기기/집기, ⑨ 기타.

2) 2순위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들이 있어, 합계가 200%보다 작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첫만남이용권¹⁰⁰⁾ 활용처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부모급여와 마찬가지로 ① 식비(출생 자녀 분유, 이유식비, 식재료 구입비 등)와 ⑥ 개인유지비(출생자녀용·산모용 목욕/세탁 용품, 이미용 서비스, 기저귀, 영유아용 로션, 물티슈, 화장지 등)에 활용된다. 그다음으로 ⑦ 산후조리비(산후조리원, 사후도우미 이용), ③ 보건/의료비(출생자녀의 치료 등 의료비, 영양제, 산모용 약제비(한약) 등 포함), ⑧ 출생자녀를 위한 기기/집기(유모차, 카시트, 아기 침대 등), ② 피복비(출생 자녀용 의류, 이불, 싸개 등 포함), ④ 교육/보육비(기관 이용, 육아도우미 비용, 교재교구비 등 포함), ⑤ 여가 및 문화생활비(자녀용 도서구입비 등), ⑨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15〉 첫만남이용권 활용처: 1+2순위(2023년)

단위 : %(가구)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수)
전체		48.5	19.2	25.0	5.2	3.0	41.2	34.9	19.6	0.6	(464)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43.3	20.1	30.9	6.2	0.5	37.6	37.6	20.1	0.5	(194)
	외벌이	52.2	18.5	20.7	4.4	4.8	43.7	33.0	19.3	0.7	(270)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50.0	-	100.0	-	-	-	50.0	-	-	(2)
	300~399만원 이하	47.6	23.8	25.4	-	1.6	44.4	34.9	22.2	-	(63)

100)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함. 국민행복카드 이용권(바우처)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함.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수)
	400~499만원 이하	49.0	18.4	26.5	4.8	2.0	46.9	31.3	18.4	0.7	(147)
	500~599만원 이하	54.0	22.0	28.0	3.0	3.0	39.0	29.0	19.0	-	(100)
	600만원 이상	44.7	16.4	20.4	9.2	4.6	36.2	42.1	20.4	1.3	(152)
총 자녀수	1명	41.1	16.8	34.7	1.6	3.2	45.3	36.3	16.3	0.5	(190)
	2명	53.6	24.2	17.4	6.8	1.9	40.6	30.0	23.7	1.0	(207)
	3명이상	53.7	10.4	20.9	10.4	6.0	31.3	46.3	16.4	-	(67)
지역 규모	대도시	43.2	21.3	31.1	6.6	2.7	41.0	27.3	20.2	1.6	(183)
	중소도시	52.9	18.8	21.5	4.0	2.7	39.0	40.8	18.8	-	(223)
	읍면지역	48.3	13.8	19.0	5.2	5.2	50.0	36.2	20.7	-	(58)

주: 1) ① 식비(출생 자녀 분유, 이유식비, 식재료 구입비 등), ② 피복비(출생 자녀용 의류, 이불, 싸개 등 포함), ③ 보건/의료비(출생자녀의 치료 등 의료비, 영양제, 산모용 약제비(한약) 등 포함), ④ 교육/보육비(기관 이용, 육아도우미 비용, 교재교구비 등 포함), ⑤ 여가 및 문화생활비(자녀용 도서구입비 등), ⑥ 개인유지비(출생자녀용·산모용 목욕/세탁 용품, 이마용 서비스, 기저귀, 영유아용 로션, 물티슈, 화장지 등), ⑦ 산후조리비(산후조리원, 사후도우미 이용), ⑧ 출생 자녀를 위한 기기/집기(유모차, 카시트, 아기 침대 등), ⑨ 기타.
 2) 2순위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들이 있어, 합계가 200%보다 작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현금성 지원금이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는가를 조사한 결과, 약간 도움된다는 응답이 전체의 36.8%, 보통 30.7%, 매우 도움 됨 18.7%, 별로 도움 안 됨 10.8%, 전혀 도움 안 됨 3.0%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에서는 약간 도움 된다고 응답한 비중이 35.3%로 가장 높았고 외벌이 가구에서도 약간 도움 됨(38.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더라도, 약간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규모에서 또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모두 약간 도움 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매우 도움 된다는 응답은 읍면지역에서 2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1-16〉 현금성 지원금 양육비용 부담 경감 도움정도(2023년)

단위 : %, 점, (가구)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됨	약간 도움됨	보통	별로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전체	18.7	36.8	30.7	10.8	3.0	3.6	100.0 (1,773)
맞벌이 가구	맞벌이	19.4	35.3	29.6	11.9	3.8	100.0 (835)
	외벌이	18.0	38.1	31.8	9.8	2.3	100.0 (938)
여부	χ^2 / t	6.964(4)				-1.0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도움됨	약간 도움됨	보통	별로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7.8	28.9	26.7	20.0	6.7	3.3	100.0 (45)
	300~399만원	18.2	36.9	31.0	11.3	2.6	3.6	100.0 (274)
	400~499만원	18.9	36.7	32.8	10.2	1.5	3.6	100.0 (472)
	500~599만원	19.9	34.7	32.0	9.8	3.6	3.6	100.0 (366)
	600만원 이상	18.0	38.6	28.6	10.9	3.9	3.6	100.0 (616)
	χ^2 / F	16.137(16)					1.0	
총 자녀수	1명	17.8	41.1	30.1	8.6	2.4	3.6	100.0 (628)
	2명	18.9	33.8	32.9	10.7	3.7	3.5	100.0 (894)
	3명이상	19.9	36.7	24.7	16.3	2.4	3.6	100.0 (251)
	χ^2 / F	22.654(8)**					1.8(a)	
지역규모	대도시	17.1	38.1	30.8	10.5	3.5	3.5	100.0 (708)
	중소도시	19.1	35.7	31.1	11.3	2.9	3.6	100.0 (834)
	읍면지역	22.1	36.4	29.4	10.0	2.2	3.7	100.0 (231)
	χ^2 / F	4.839(8)					1.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 $p < .01$.

라. 세제 혜택

2019~2023년 세제혜택 수혜여부를 보면 자녀 기본 공제 수혜는 2021년 79.0%에서 2023년 74.0%까지 떨어졌다. 출산·입양 공제 대상 자녀 항목에서는 2022년 8.6%로 가장 낮았지만, 2023년 17.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 장려금은 2019년 31.1%에서 2020년 13.9%로 큰 폭 하락한 뒤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3년에는 8.3%까지 떨어졌다. 자녀교육비소득공제 또한 2019년 48.0%부터 2022년 26.8%까지 꾸준히 하락하다 2023년 30.3%로 증가했다.

자녀 장려금과 자녀교육비 소득공제는 가구소득 및 가구특성에 따라 세제 지원 대상이 결정되는 항목으로,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 내 저소득 가구의 비중이 감소하는 현상의 영향으로 이해된다. 반면, 자녀 기본 소득공제는 해당 아동이 있으면 공제가 적용되는 사항인데, 이 비중이 낮아진다는 점은 세제 혜택에 대한 영유아 가구의 인지가 낮아지는 것의 영향으로 추측된다.

〈표 IV-1-17〉 세제혜택 수혜여부(2019~2023년)

단위 : %, (명)

구분	2차년도 (2019)	3차년도 (2020)	4차년도 (2021)	5차년도 (2022)	6차년도 (2023)
자녀 기본 공제	79.0 (1,129)	80.1 (1,728)	79.0 (1,528)	77.2 (1,336)	74.0 (1,312)
출산·입양 공제 대상 자녀	15.6 (143)	14.7 (318)	16.1 (312)	8.6 (148)	17.4 (308)
자녀 장려금	31.1 (291)	13.9 (300)	13.1 (254)	11.4 (197)	8.3 (147)
자녀 교육비 소득 공제	48.0 (511)	33.3 (717)	29.7 (575)	26.8 (464)	30.3 (537)
없음	- -	- -	- -	22.8 (394)	26.0 (46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6차년도 원자료.

세제혜택의 구체적 지원금액에 대한 인지 비율을 살펴보면 자녀 기본 공제에 대한 인지 비율은 2차년도(2019년) 30.0%에서 점차 감소하여 6차년도(2023년)에는 18.0%까지 하락하였다. 출산·입양 공제 대상 자녀에 대해서는 40.6%에서 4차년도(2021년) 9.9%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5차년도(2022년)에 19.6%까지 증가하였으나, 다시 6차년도(2023년)에 14.9%로 감소했다. 자녀장려금에 대해서는 2차년도(2019년) 59.8%에서 6차년도(2023년) 41.5%로 하락했다.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는 2차년도(2019년) 33.9%에서 6차년도(2023년) 22.7%까지 점차 하락했다. 다른 항목이 5차년도(2022년)에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한 반면,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V-1-18〉 세제혜택 구체적 지원금액 인지 비율(2019~2023년)

단위 : %, (명)

구분	2차년도 (2019)		3차년도 (2020)		4차년도 (2021)		5차년도 (2022)		6차년도 (2023)	
	알고 있음	(수)								
자녀 기본 공제	30.0	(1,129)	23.1	(1,728)	17.7	(1,348)	18.6	(1,336)	18.0	(1,312)
출산·입양 공제 대상 자녀	40.6	(143)	14.2	(318)	9.9	(312)	19.6	(148)	14.9	(308)
자녀 장려금	59.8	(291)	42.7	(300)	41.1	(236)	46.2	(197)	41.5	(147)
자녀 교육비 소득 공제	33.9	(511)	27.3	(717)	24.9	(485)	23.3	(464)	22.7	(53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6차년도 원자료.

2.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실태

가. 가구당 양육비용

2018~2023년에 기간 동안 영유아 가구의 가구당 양육비용 지출(실질비용)은 2018년 116만6천원에서 2023년 135만4천원까지 증가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3차년도(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감소를 보인(118만원)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최근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과 달리 양육비용은 실질비용 수준에서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표 IV-2-1〉 월평균 가구당 양육비용 변화(2018~2023년): 영유아 가구

단위: 만원, (가구)

구분	가구당 양육비용					
	1차년도 (2018)	2차년도 (2019)	3차년도 (2020)	4차년도 (2021)	5차년도 (2022)	6차년도 (2023)
명목비용	115.1	123.8	117.5	130.5	137.7	150.6
실질비용	116.6	124.5	118.0	127.6	127.3	135.4
(수)	(1,648)	(1,665)	(1,679)	(1,708)	(1,730)	(1,773)

주: 1) 가구당 양육비용은 가구 내 모든 자녀에게 소요된 양육비용을 의미함.

2)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을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6차년도 원자료.

2018~2023년 영유아 가구의 가구당 양육비용 변화를 비목별로 살펴보면, '식비(외식비포함)'가 더 많이 지출되었던 3차년도(2020년)를 제외하면 1차년도에서 6차년도까지 '교육/보육비'가 가장 많이 지출된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보육비'는 1차년도(2018년) 39만2천원에서 2차년도(2019년) 40만2천원으로 증가한 뒤 3차년도(2020년) 28만9천원으로 급감했으나, 이후 6차년도(2023년) 45만7천원으로 증가하였다. 6차년도(2023년) 기준, '식비(외식비포함)'의 평균 명목비용은 34만4천원으로 '교육/보육비' 다음으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식비(외식비포함)'는 1차년도(2018년) 24만4천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3차년도(2020년) 31만3천원에서 4차년도(2021년) 30만3천원으로 약간 감소했으나, 다시 6차년도(2023년)까지 점차 증가했다.

〈표 IV-2-2〉 비목별 월평균 가구당 양육비용 변화(2018~2023년, 명목비용): 영유아 가구

단위: 만원, (가구)

구분	1차년도 (2018)	2차년도 (2019)	3차년도 (2020)	4차년도 (2021)	5차년도 (2022)	6차년도 (2023)
총계 (수)	115.1 (1,648)	123.8 (1,665)	117.5 (1,679)	130.5 (1,708)	137.7 (1,730)	150.6 (1,773)
1. 식비(외식비포함)	24.4	26.3	31.3	30.3	32.4	34.4
1-1. 외식비	5.9	6.3	7.3	7.1	8.4	8.1
3. 기기/집기	2.9	3.3	4.3	5.4	5.6	3.5
4. 피복비(의류및신발)	9.3	9.9	10.5	11.4	12.8	14.0
5. 보건/의료비	4.4	5.3	6.5	7.0	7.9	8.7
6. 교육/보육비	39.2	42.0	28.9	38.7	36.1	45.7
7. 여가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19.2	18.2	15.0	16.7	20.2	21.4
7-1. 가족여행 등	8.9	8.7	5.2	6.8	9.2	11.1
7-2. 관람 체험학습	2.3	2.2	0.7	1.1	2.2	2.4
7-3. 완구	3.8	3.7	4.4	4.7	4.7	4.2
7-4. 도서구매	4.2	3.6	4.5	4.2	4.1	3.7
8. 교통비	0.6	0.8	1.0	0.7	1.1	0.8
9. 통신비	0.5	0.6	0.9	0.7	0.8	0.8
9-1. 휴대전화비	0.4	0.5	0.7	0.6	0.6	0.7
10. 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5.2	5.7	6.6	6.8	7.5	7.8
11-2. 보험	9.4	11.7	12.5	12.8	13.2	13.5

주: 총 양육비용은 가구 내 모든 자녀에게 소요된 양육비용을 의미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5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영유아 가구의 가구소득 대비 가구당 양육비용의 비중은 1차년도(2018년) 27.3%에서 6차년도(2023년) 28.8%로 다소 증가하였다. 가구소득 대비 가구당 양육비용의 비중은 해마다 등락을 거듭하지만,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27~28%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3년에는 이 비중이 28.8%로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되는데 이는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영향으로 보여진다.

가구특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도에서 맞벌이 가구보다 외벌이 가구의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의 비중이 큰 양상을 보였다. 가구소득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양육비용 비중이 감소했다. 6차년도(2023년) 기준 299만원 이하 가구의 양육비용 비중은 82.6%로 직전년도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소득 가구 표본 중 급격한 소득 감소가 발생한 가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표본을 제외할 경우 평균 비중은 40.4%로 예년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하겠다.

또한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 대비 가구당 양육비용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6차년도(2023년) 기준 자녀가 1명인 경우 17.7%, 2명인 경우 31.3%, 3명 이상인 경우 47.8%에 달했다. 1차년도(2018년)에서 6차년도(2023년)까지 자녀 1명인 가구의 양육비용 비중은 약간 감소했고 2명인 가구의 양육비용 비중은 약간 증가했는데,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양육비용 비중은 40.5%에서 47.8%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 가구소득 대비 가구당 양육비용 비중 변화(2018~2023년, 명목비용)

단위: %, (가구)

구분		1차년도 (2018)	2차년도 (2019)	3차년도 (2020)	4차년도 (2021)	5차년도 (2022)	6차년도 (2023)
전체 (수)		27.3 (1,646)	27.9 (1,665)	24.2 (1,679)	28.0 (1,708)	27.0 (1,730)	28.8 (1,77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4.4	24.9	22.5	25.3	25.6	26.4
	외벌이	29.9	30.4	25.4	30.0	28.1	31.0
	<i>t</i>	-4.3***	-3.3***	-3.3***	-2.5**	-2.9**	-2.0*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9.2	48.8	49.0	55.2	36.5	82.6 ²⁾
	300~399만원	28.2	28.8	25.5	30.7	28.4	31.6
	400~499만원	26.5	27.7	23.1	26.3	27.1	27.9
	500~599만원	25.5	25.4	23.2	25.7	25.8	27.6
	600만원 이상	20.7	21.7	19.9	22.6	22.3	25.2
	<i>F</i>	18.5***	16.3***	64.6***	16.2***	17.9***	16***
총 자녀수	1명	19.6	18.8	17.0	18.6	17.6	17.7
	2명	30.2	30.7	25.6	28.9	29.5	31.3
	3명이상	40.5	40.0	34.7	45.5	40.0	47.8
	<i>F</i>	62.7***	39.9***	102.9***	42.9***	181.6***	39.6***

주: 1) 가구별로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 비중을 산출하여 평균한 값임.

2) 일시적인 소득감소로 인해 가구소득 대비 가구당 양육비용 비중이 1940.0%인 가구로 인해 나온 결과로 해당 가구를 제외했을 때, 평균 40.4%로 나타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6차년도 원자료.

* $p < .05$, ** $p < .01$, *** $p < .001$.

가구 생활비 대비 가구당 양육비용 비중을 살펴보면 2018~2022년에 35.5%~36.7% 수준으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35.5%로 소폭 하락했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2023년에는 38.1%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목별로는 교육/보육비와 여가 및 문화 생활비 중 완구와 도서구매 등의 경우 해당 비목의 가구 지출 총액 중 대부분이 자녀를 위해 소요된 비용이었다. 반면, 교통비, 통신비 등의 경우에는 이 비중이 3~4% 수준으로 대부분 가구 내 성인을 위해 소비하는 품목임을 알 수 있었다. 가구 전체 식비 중 자녀의 식비는 6차년도(2023년) 기준 33.7%였으며, 개인유지비 중 자녀를 위해 소요된 비중은 48.7%였다.

〈표 IV-2-4〉 비목별 가구 생활비 대비 가구당 양육비용 비중(2018~2023년, 명목비용)

단위: %, (가구)

구분	1차년도 (2018)	2차년도 (2019)	3차년도 (2020)	4차년도 (2021)	5차년도 (2022)	6차년도 (2023)
총계 (수)	35.8 (1,648)	36.6 (1,665)	35.5 (1,679)	36.7 (1,708)	36.5 (1,730)	38.1 (1,773)
1.식비(외식비포함)	30.7	32.4	33.2	32.6	33.3	33.7
1-1.외식비	25.8	25.4	27.9	25.7	28.5	25.6
3.기기/집기	50.4	44.0	43.7	43.7	51.1	36.3
4.피복비(의류및신발)	54.1	56.4	58.3	59.4	59.9	59.9
5.보건/의료비	71.5	68.1	61.9	59.9	61.9	65.4
6.교육/보육비	96.6	96.5	96.1	97.4	91.8	96.1
7.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62.9	62.0	69.7	69.1	63.7	60.6
7-1.가족여행 등	45.7	46.7	47.5	47.3	45.4	45.3
7-2.관람 체험학습	61.8	56.3	58.8	62.1	66.3	64.2
7-3.완구	95.0	91.0	94.7	97.8	98.8	97.5
7-4.도서구매	92.4	85.4	90.6	94.5	95.1	94.0
8.교통비	3.0	3.2	4.2	3.1	4.4	3.0
9.통신비	2.5	3.1	4.4	3.8	4.0	3.9
9-1.휴대전화비	3.1	3.7	5.1	4.7	4.6	4.9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42.5	43.7	44.5	46.0	48.19	48.7
11-2.보험	30.4	31.2	32.6	31.9	33.5	34.0

주: 가구당 양육비용은 영유아가 아닌 자녀의 양육비용도 합산된 금액으로, 생활비 대비 비율은 각 가구별로 "(가구당 양육비용/가구 총소비지출)*100"로 변수를 생성한 후에 이 비중을 평균한 값. (예: 식비 총양육비용 비율 = (전체 자녀에게 들 여간 식비/가구 전체 식비지출)*100).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6차년도 원자료.

나.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를 명목비용과 실질비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명목비용의 경우 1차년도(2018년) 65만9천원에서 3차년도(2020년) 61만원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6차년도(2023년) 80만7천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실질비용의 경우 1차년도(2018년) 66만7천원에서 3차년도(2020년) 61만3천원까지 감소하다 이후 6차년도(2023년) 72만6천원으로 다소 증가했다. 특히,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실질비용)은 2022년 대비 2023년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표 IV-2-5〉 월평균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2018~2023년)

단위: 만원, (명)

구분	1차년도 (2018)	2차년도 (2019)	3차년도 (2020)	4차년도 (2021)	5차년도 (2022)	6차년도 (2023)
명목비용	65.9	66.0	61.0	67.0	70.5	80.7
실질비용	66.7	66.4	61.3	65.5	65.2	72.6
(수)	(2,298)	(2,334)	(2,368)	(2,403)	(2,395)	(2,422)

주: 1) 가구당 양육비용은 가구 내 모든 자녀에게 소요된 양육비용을 의미함.

2)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을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6차년도 원자료.

자녀의 연령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를 보면 대체로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양육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6차년도(2023년)에서 5세, 6세에서 처음으로 1인당 양육비용이 9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 IV-2-6〉 자녀 연령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2018~2023년, 월평균, 명목비용)

단위: 만원(명)

구분	1차년도 (2018)	2차년도 (2019)	3차년도 (2020)	4차년도 (2021)	5차년도 (2022)	6차년도 (2023)
전체	65.9 (2,298)	66.0 (2,334)	61.1 (2,368)	67.0 (2,403)	70.5 (2,395)	80.7 (2,422)
연령 ^{주2)}						
0세	53.5 (128)	53.7 (161)	53.1 (158)	52.8 (161)	63.8 (156)	69.4 (156)
1세	51.1 (267)	53.7 (298)	53.9 (321)	56.6 (316)	59.7 (321)	70.4 (317)
2세	57.2 (299)	58.6 (296)	53.4 (331)	61.2 (354)	60.0 (335)	73.2 (343)
3세	59.7 (360)	59.2 (337)	59.4 (333)	63.1 (367)	67.9 (366)	72.0 (381)
4세	70.4 (372)	67.5 (410)	61.3 (379)	70.2 (363)	73.3 (379)	81.2 (411)
5세	74.3 (407)	72.3 (408)	66.0 (424)	71.7 (404)	81.2 (392)	92.0 (400)
6세	77.2 (465)	82.7 (423)	71.9 (422)	80.7 (438)	79.6 (416)	95.7 (414)
F	27.0***(a)	24.2***(a)	15.2***(a)	18.6***(a)	16.8***(a)	19.8***(a)

주: 1) 가구조사 자료를 아동단위로 자료화하여 분석한 것임.

2) 연령은 생활연령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6차년도 원자료.

* $p < .05$, ** $p < .01$, *** $p < .001$.

생활비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 변화를 보면 2018년 20.8%에서 2020년 18.9%까지 하락했다가 2023년 21.3%까지 상승하였다. 자녀 연령별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생활비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 또한 증가하는 경향성은 2023년에도 발견되었다.

〈표 IV-2-7〉 생활비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 변화(2018~2023년, 명목비용)

단위: %(명)

구분	1차년도 (2018)	2차년도 (2019)	3차년도 (2020)	4차년도 (2021)	5차년도 (2022)	6차년도 (2023)
전체	20.8 (2,298)	19.9 (2,334)	18.9 (2,368)	19.3 (2,403)	19.4 (2,395)	21.3 (2,422)
연령 ^{주2)}						
0세	18.1 (128)	16.7 (161)	17.9 (158)	16.8 (161)	18.4 (155)	20.1 (156)
1세	17.9 (267)	17.4 (298)	17.7 (321)	17.4 (316)	17.9 (321)	20.5 (317)
2세	19.4 (299)	18.4 (296)	17.4 (331)	18.4 (354)	18.2 (335)	20.0 (343)
3세	19.9 (360)	18.4 (337)	18.1 (333)	18.5 (367)	19.0 (366)	19.9 (381)
4세	21.4 (372)	20.7 (411)	19.1 (379)	19.6 (363)	20.0 (379)	21.1 (411)
5세	22.8 (407)	21.3 (408)	20.2 (424)	20.2 (404)	20.9 (392)	22.6 (400)
6세	22.8 (465)	23.1 (423)	20.8 (422)	21.9 (438)	20.6 (416)	23.5 (414)
F	17.6***	23.9***	9.2***	14.7***	8.0***	9.3***

주: 1) 가구조사 자료를 아동단위로 자료화하여 분석한 것임.

2) 연령은 생활연령을 의미함.

3)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을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6차년도 원자료.

* $p < .05$, ** $p < .01$, *** $p < .001$.

비목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의 변화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금액이 가장 큰 비목은 교육/보육비(19만9천원)으로, 해마다 변동폭이 큰 편이었다. 교육/보육비는 2018년 22만원으로 매우 큰 액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초기인 2020년 12만9천원까지 감소하였으며, 이 후 상승세를 보이지만 2018년 수준 보다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다음으로 비중이 큰 비목은 식비인데, 2023년 명목비용기준 평균 18만3천원으로,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비목이었다. 한편, 2022년 대비 2023년에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러한 증가는 교육/보육비와 여가문화생활비의 증가에 기인한 면이 큼을 알 수 있다. 여가문화생활비의 경우 2022년 월평균 11만3천원이었으나, 2023년 15만4천원으로 4만1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세부비목별로 가족여행비가 증가한 것에 영향을 받는다 하겠다.

〈표 IV-2-8〉 비목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2018~2023년, 명목비용)

단위: 만원, (명)

구분	1차년도 (2018)	2차년도 (2019)	3차년도 (2020)	4차년도 (2021)	5차년도 (2022)	6차년도 (2023)
총계 (수)	65.9 (2,298)	66.0 (2,334)	61.0 (2,368)	67.0 (2,403)	70.5 (2,395)	80.7 (2,422)
1. 식비(외식비포함)	13.8	13.8	16.4	16.0	17.2	18.3
1-1. 외식비	3.3	3.3	3.8	3.6	4.2	4.1
3. 기기/집기	1.8	1.8	2.4	2.5	2.6	1.7
4. 피복비(의류및신발)	5.3	5.3	5.8	6.2	6.8	7.7
5. 보건/의료비	2.7	2.7	3.7	4.0	4.5	4.9
6. 교육/보육비	22.0	22.0	12.9	17.4	15.6	19.9
7. 여가 및 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11.3	11.3	8.4	9.4	11.3	15.4
7-1. 가족여행 등	5.2	5.2	2.8	3.8	5.1	9.4
7-2. 관람 체험학습	1.3	1.3	0.4	0.5	1.1	1.3
7-3. 완구	2.4	2.4	2.7	2.9	2.9	2.7
7-4. 도서구매	2.5	2.5	2.4	2.2	2.2	2.0
8. 교통비	0.2	0.2	0.5	0.3	0.6	0.4
9. 통신비	0.0	0.0	0.1	0.0	0.1	0.0
9-1. 휴대전화비	0.0	0.0	0.1	0.0	0.0	0.0
10. 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3.2	3.2	4.0	4.2	4.6	4.8
11-2. 보험	5.5	5.5	6.9	7.0	7.2	7.4

주: 가구조사 자료를 아동단위로 자료화하여 분석한 것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6차년도 원자료.

가구특성별로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를 살펴본 결과 6차년도(2023년) 기준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의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각각 87만4천원, 75만원이었다.

가구특성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조사년도 전반적으로 공통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외벌이 가구보다 맞벌이 가구,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지역규모가 클수록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의 지출이 증가했다. 맞벌이 가구의 양육비용은 1차년도(2018년) 74만5천원에서 3차년도(2020년) 68만4천원으로 감소하였으나, 4차년도(2021년)부터 이전 수준을 회복한 후 점차 증가했다. 외벌이 가구의 양육비용은 1차년도(2018년) 58만9천원, 2차년도(2019년) 60만5천원으로 증가하다가 3차년도(2020년) 55만7천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이전보다 증가한 수준으로 회복한 경향을 보여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가구소득의 경우, 300~399만원 이하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들은 5차년도(2022년)까지 1차년도(2021년) 수준 이하의 양육비용을 지출했으나 6차년도(2023년)에서 비교적 큰 증가폭을 보였다.

자녀수가 1명인 가구의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1차년도(2018년) 83만3천원에서 3차년도(2020년) 61만1천원까지 크게 하락했으나, 다시 4차년도(2021년) 큰 폭으로 증가했고 6차년도(2023년)에는 91만8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자녀수 2명 가구의 양육비용이 3차년도(2020년)에 감소한 것과 달리 3명 이상 가구의 양육비용은 다소 증가했다. 자녀수 2명 가구의 양육비용은 6차년도(2023년)까지 점차 증가했으며, 3명 이상 가구의 양육비용은 4차년도(2021년) 감소했다가 5차년도(2022년)부터 다시 증가했다.

지역규모별로 보면, 대도시 거주 가구의 양육비용은 5차년도(2022년)까지 지출수준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6차년도(2023년)에 비교적 크게 증가했다. 중소도시 가구의 양육비용은 3차년도(2020년)까지 감소하다가 4차년도(2021년)부터 증가 경향을 지속하고 있다. 읍면지역은 다소 변동이 있었는데 2차년도(2019년)까지 증가하다 3차년도(2020년)에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4차년도(2021년)부터 다시 증가했다.

〈표 IV-2-9〉 가구특성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2018~2023년, 명목비용)

구분	단위: 만원(명)						
	1차년도 (2018)	2차년도 (2019)	3차년도 (2020)	4차년도 (2021)	5차년도 (2022)	6차년도 (2023)	
전체	65.9 (2,298)	66.0 (2,334)	61.1 (2,368)	67.0 (2,403)	70.5 (2,395)	80.7 (2,422)	
맞벌이	74.5 (1,031)	73.5 (1,000)	68.4 (1,004)	74.5 (991)	77.1 (1,033)	87.4 (1,111)	
가구	58.9 (1,267)	60.5 (1,333)	55.7 (1,364)	61.7 (1,412)	65.5 (1,362)	75.0 (1,311)	
여부	<i>t</i>	7.6***	8.9***	7.6***	6.9***	6.5***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44.3 (311)	53.1 (170)	51.8 (124)	51.5 (143)	50.1 (106)	60.1 (60)
	300~399만원 이하	55.0 (623)	54.1 (646)	51.2 (391)	58.9 (534)	59.6 (507)	68.1 (359)
	400~499만원 이하	64.7 (515)	63.1 (606)	53.6 (709)	60.2 (631)	63.2 (567)	69.8 (639)
	500~599만원 이하	73.5 (396)	72.6 (424)	64.3 (504)	68.0 (461)	71.2 (492)	79.0 (503)
	600만원 이상	90.6 (451)	84.5 (487)	74.8 (640)	83.3 (634)	86.2 (723)	96.5 (861)
총 자녀수	<i>F</i>	72.3***	48.61***	47.4***	42.7***	48.7***	46.5***
	1명	83.3 (638)	83.3 (559)	61.1 (946)	79.3 (550)	82.2 (583)	91.8 (628)
	2명	61.2 (1,300)	63.2 (1,361)	60.3 (1,050)	66.2 (1,385)	69.2 (1,364)	80.9 (1,347)
지역 규모	3명이상	51.8 (360)	52.4 (413)	63.2 (372)	54.7 (468)	59.1 (448)	64.4 (447)
	<i>F</i>	96.19***	78.64***	0.93	48.0***	42.4***	46.9***
	대도시	71.6 (929)	70.5 (910)	74.9 (543)	70.4 (998)	73.0 (950)	83.7 (978)
지역	중소도시	63.4 (985)	62.3 (1,036)	59.7 (1,376)	65.0 (1,077)	69.7 (1,094)	80.4 (1,137)
	읍면지역	58.5 (384)	65.9 (387)	48.5 (449)	62.9 (328)	66.3 (351)	72.5 (307)
규모	<i>F</i>	17.42***	9.5***	78.2***	6.4***	3.74**	6.8**

주: 가구조사 자료를 이동단위로 자료화하여 분석한 것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6차년도 원자료.
 * $p < .05$, ** $p < .01$, *** $p < .001$.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의 비중변화를 살펴보면, 2018년 15.8%, 2019년 14.9%로 연속 하락한 뒤,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육/보육비가 감소한 것에 기인하여 12.7%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2021년 14.3%, 2022년 14.2%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15.6%로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특성별로 외별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에 비해 비중이 높았으며,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로 낮은 저소득 가구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에서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여,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22년도에는 이 비중이 43.3%에 달할 정도로 높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관측치가 작은 상태에서 소득의 급격한 감소가 발생한 가구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총 자녀수는 많을 수록 가구 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2023년에도 여전히 발견되었다.

〈표 IV-2-10〉 가구특성별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 변화(2019~2023년, 명목비용)
단위: %(명)

구분		가구소득 대비 비중					
		1차년도 (2018)	2차년도 (2019)	3차년도 (2020)	4차년도 (2021)	5차년도 (2022)	6차년도 (2023)
총계 (사례수)		15.8 (2,298)	14.9 (2,334)	12.7 (2,368)	14.3 (2,403)	14.2 (2,395)	15.6 (2,422)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4.5 (1,031)	13.9 (1,000)	12.3 (1,004)	13.3 (991)	13.5 (1,033)	14.3 (1,111)
	외별이	16.9 (1,267)	15.7 (1,333)	13.1 (1,364)	15.0 (1,412)	14.8 (1,362)	16.7 (1,311)
	<i>t</i>	-3.6***	-3.1**	-1.8	-2.9**	-3.1**	-3**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3.7 (311)	28.3 (170)	29.6 (124)	26.4 (143)	22.9 (106)	43.3 (60)
	300~399만원	16.5 (623)	15.7 (646)	14.3 (391)	16.5 (534)	15.8 (507)	19.3 (359)
	400~499만원	15.1 (515)	14.4 (606)	12.1 (709)	13.6 (631)	13.9 (567)	15.7 (639)
	500~599만원	14.1 (396)	13.5 (424)	11.8 (504)	12.4 (461)	12.9 (492)	14.7 (503)
	600만원 이상	11.8 (451)	11.2 (487)	9.9 (640)	10.8 (634)	10.4 (723)	12.6 (861)
	<i>F</i>	28.6***	48.7***	115.4***	44.8***	67.7***	42.9***



구분		가구소득 대비 비중					
		1차년도 (2018)	2차년도 (2019)	3차년도 (2020)	4차년도 (2021)	5차년도 (2022)	6차년도 (2023)
총 자녀수	1명	19.6 (638)	18.8 (559)	17.0 (946)	18.6 (550)	17.6 (583)	18.4 (628)
	2명	15.0 (1,300)	14.2 (1,361)	12.0 (1,050)	13.4 (1,385)	13.7 (1,364)	14.9 (1,347)
	3명이상	12.2 (360)	12.1 (413)	9.8 (372)	11.7 (468)	11.4 (448)	13.7 (447)
	<i>F</i>	29.2***	29.2***	72.5***	35.1***	52.4***	9.9***

주: 1) 아동별로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 비중을 산출하여 평균한 값.

2)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을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6차년도 원자료.

* $p < .05$, ** $p < .01$, *** $p < .001$.

가구특성별 가구생활비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8년 20.8% 수준 이후 20.0%에 못 미치는 낮은 비중을 보이다가 2023년 21.3%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맞벌이의 경우 외벌이보다 높게 나타났고, 가구소득별로는 299만원이하 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0~499만원 가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자녀 1인 가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영유아 1인당 투입되는 양육비용이 작아짐을 방증하는 결과로, 다자녀 가구 양육비용의 부담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표 IV-2-11〉 가구특성별 가구생활비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 변화(2019~2023년, 명목비용)

단위: %(명)

구분		가구생활비 대비 비중					
		1차년도 (2018)	2차년도 (2019)	3차년도 (2020)	4차년도 (2021)	5차년도 (2022)	6차년도 (2023)
총계 (사례수)		20.8 (2,298)	19.9 (2,334)	18.9 (2,368)	19.3 (2,403)	19.4 (2,395)	21.3 (2,422)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1.7 (1,031)	20.6 (1,000)	19.5 (1,004)	19.9 (991)	19.7 (1,033)	21.7 (1,111)
	외벌이	20.1 (1,267)	19.4 (1,333)	18.5 (1,364)	18.9 (1,412)	19.2 (1,362)	20.9 (1,311)
	<i>t</i>	-3.6***	-3.1**	-1.8	-2.9**	-3.1**	2.3*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0.0 (311)	21.7 (170)	21.1 (124)	20.5 (143)	19.7 (106)	22.5 (60)
	300~399만원	20.4 (623)	19.3 (646)	19.5 (391)	19.8 (534)	19.2 (507)	22.0 (359)

구분		가구생활비 대비 비중					
		1차년도 (2018)	2차년도 (2019)	3차년도 (2020)	4차년도 (2021)	5차년도 (2022)	6차년도 (2023)
	400~499만원	21.0 (515)	19.6 (606)	18.1 (709)	19.0 (631)	19.5 (567)	20.9 (639)
	500~599만원	21.0 (396)	20.3 (424)	19.3 (504)	18.7 (461)	19.3 (492)	21.2 (503)
	600만원 이상	21.7 (451)	20.2 (487)	18.9 (640)	19.3 (634)	19.1 (723)	21.2 (861)
	<i>F</i>	28.6***	48.7***	115.4***	44.8***	67.7***	1.2
총 자녀수	1명	27.6 (638)	26.9 (559)	25.9 (946)	25.9 (550)	25.8 (583)	27.9 (628)
	2명	19.2 (1,300)	18.9 (1,361)	18.1 (1,050)	18.8 (1,385)	18.7 (,1364)	20.6 (1,347)
	3명이상	14.7 (360)	13.9 (413)	13.3 (372)	13.2 (468)	13.5 (448)	14.0 (447)
	<i>F</i>	413.9***	372.2***	384.4***	383.4***	416.3***	448.7***

주: 1) 아동별로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 비중을 산출하여 평균한 값.

2)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을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6차년도 원자료.

* $p < .05$, ** $p < .01$, *** $p < .001$.

3. 소결

IV장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지출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소폭 감소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3년 월평균 377만5천원(명목비용 기준)을 기록했다. 2023년 기준 앵겔 지수는 28.3, 슈바베지수는 8.2, 엔젤지수는 29.0으로, 2018년과 비교하여 앵겔지수는 상승하고, 슈바베지수는 소폭 하락하였으며, 엔젤지수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총 소득은 2023년 명목비용 기준 560만1천원이었으며, 실질 비용 기준 503만8천원이었다. 명목비용 기준 월평균 총 소득은 전년대비 18만7천원가량 증가하였으나, 실질비용은 3만3천원의 소폭 증가만이 발견되었다. 특히 실질비용 기준 월평균 총 소득은 2020년과 2022년 전년 대비 감소를 보였기 때문에, 2023년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이후 높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 혹은 보합세를 보이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정부지원금 지급율을 살펴본 결과 0~1세 아동의 기관 이용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세 보육료 지원 지급율이 86.0%, 3세 95.0%로 증가하며, 이후에는 누리과정지원을 약 97%가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아동에서 가정양육수당 지급율이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료 지원이나 누리과정지원은 계속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은 대부분 식비(부모급여: 65.1%, 첫만남이용권: 48.5%)나 개인유지비(부모급여: 60.8%, 첫만남이용권: 41.2%)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첫만남이용권은 산후조리원에 사용하는 비율도 높게(34.9%) 나타났다. 전반적인 세제혜택에 대한 인지 및 수혜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넷째, 영유아 가구의 가구당 양육비용 지출(실질비용)은 2018년 116만6천원에서 2023년 135만천원까지 증가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앞서 최근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과 달리 양육비용은 실질비용 수준에서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다섯째, 비목별 양육비용은 '식비(외식비포함)'가 더 많이 지출되었던 3차년도(2020년)를 제외하면 1차년도에서 6차년도까지 '교육/보육비'가 가장 많이 지출된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식비, 여가문화 생활비 등의 순이었다. 한편, 영유아 가구의 가구소득 대비 가구당 양육비용의 비중은 해마다 등락을 거듭하지만,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27~28%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3년에는 이 비중이 28.8%로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되는데 이는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영향으로 보여진다.

여섯째,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명목비용 기준 6차년도(2023년) 80만7천원이었으며, 실질비용 기준 72만6천원이었다. 실질비용 기준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실질비용)은 2022년 대비 2023년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비목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교육/보육비, 식비, 여가문화생활비 순으로 높은 지출을 보였는데, 2022년 대비 2023년에 교육/보육비와 여가문화생활비의 증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V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및 지원 요구

- 01 영유아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 02 가정 내 돌봄 및 부모지원서비스 이용 행태
- 03 육아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
- 04 소결

V.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및 지원 요구

1. 영유아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가. 반일제이상 기관

1) 이용기관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2018년 51.1%에서 2023년 50.0%로 소폭 감소했고, 동 기간 유치원 이용 비율 역시 27.7%에서 27.0%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반일제이상 기관 미이용 비중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7.6%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점차 예년 수준으로 복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2022년과 2023년 반일제 이상 기관 미이용자 비중이 2021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는 양상이 발견되는데, 이는 2022년 영아수당의 도입과 2023년 부모급여 도입의 영향으로 사료된다.

〈표 V-1-1〉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2018~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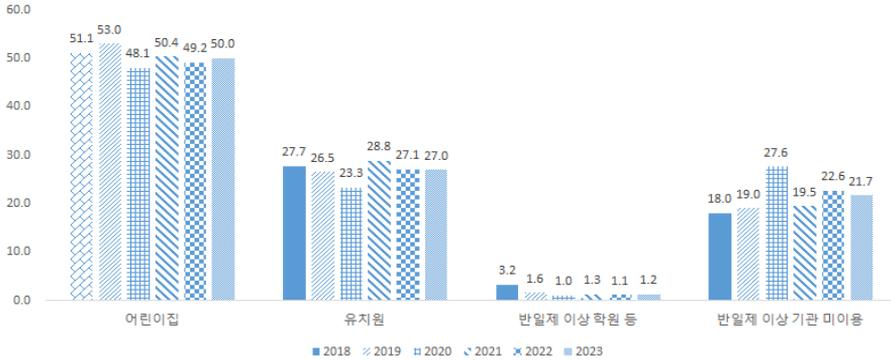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등	반일제이상 기관 미이용
2018년	100.0 (2,277)	51.1 (1,163)	27.7 (630)	3.2 (74)	18.0 (410)
2019년	100.0 (2,333)	53.0 (1,235)	26.5 (617)	1.6 (37)	19.0 (443)
2020년	100.0 (2,368)	48.1 (1,139)	23.3 (551)	1.0 (24)	27.6 (653)
2021년	100.0 (2,371)	50.4 (1,196)	28.8 (682)	1.3 (31)	19.5 (462)
2022년	100.0 (2,393)	49.2 (1,177)	27.1 (648)	1.1 (27)	22.6 (542)
2023년	100.0 (2,422)	50.0 (1,212)	27.0 (655)	1.2 (29)	21.7 (526)

주: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3' 1~6차년도 원자료.

[그림 V-1-1]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2018~2023년)

단위: %



주: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3' 1~6차년도 원자료.

2023년도 영유아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비율을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우선 외별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보다 반일제 이상 기관의 미이용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유치원 이용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가 1명인 경우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경우보다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반일제 이상 기관 미이용 비율이 감소했는데, 특히 2세 이후부터는 그 비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 가구특성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2023년)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등	반일제 이상 기관 미이용	계(수)	
전체	50.0	27.0	1.2	21.7	100.0 (2,422)	
맞벌이 가구	맞벌이	51.6	29.3	1.4	17.7	100.0 (1,108)
	외벌이	48.7	25.1	1.0	25.1	100.0 (1,314)
여부	χ^2				21.110(3)***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76.5	15.4	-	8.0	100.0 (58)
	300~399만원	57.5	22.5	0.3	19.7	100.0 (350)
	400~499만원	48.7	25.6	0.4	25.2	100.0 (647)
	500~599만원	47.1	27.5	0.5	24.8	100.0 (508)
	600만원 이상	47.9	30.4	2.6	19.0	100.0 (860)
	χ^2				59.466(12)***	
총 자녀수	1명	46.1	19.0	0.6	34.3	100.0 (647)
	2명	51.0	30.4	1.6	17.0	100.0 (1,331)
	3명이상	52.9	28.5	0.9	17.7	100.0 (444)

V.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및 지원 요구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등	반일제 이상 기관 미이용	계(수)
χ^2		92.810(6)***				
지역 규모	대도시	48.0	28.2	1.4	22.4	100.0 (935)
	중소도시	51.0	26.0	1.5	21.5	100.0 (1,104)
	읍면지역	52.3	26.9	-	20.8	100.0 (383)
χ^2		8.045(6)				
자녀 연령	0세(2023년생)	2.0	-	-	98.0	100.0 (269)
	1세(2022년생)	31.7	-	-	68.3	100.0 (302)
	2세(2021년생)	86.3	0.6	0.3	12.8	100.0 (317)
	3세(2020년생)	94.0	1.0	0.5	4.5	100.0 (333)
	4세(2019년생)	60.0	37.9	1.9	0.2	100.0 (369)
	5세(2018년생)	43.0	54.4	2.7	-	100.0 (398)
	6세(2017년생)	30.4	67.5	2.1	-	100.0 (434)
χ^2		2470.491(18)***				

주: 반일제 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 $p < .01$, *** $p < .001$.

2023년도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설립 유형을 살펴보면 국공립 34.4%, 사회 복지 법인 2.5%, 법인·단체 2.5%, 민간 49.4%, 가정 7.9%, 직장 3.2%로 민간어린이집 이용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가구와 대도시 가구를 제외하고는 민간어린이집의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국공립 유형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를 제외하고는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표 V-1-3> 가구특성별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설립 유형 (2023년)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사회 복지 법인	법인· 단체	민간	가정	직장	계(수)
전체		34.4	2.5	2.5	49.4	7.9	3.2	100.0 (1,212)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5.5	1.7	2.3	46.2	8.7	5.5	100.0 (572)
	외벌이	33.4	3.1	2.7	52.3	7.3	1.2	100.0 (640)
χ^2		23.215***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41.6	7.0	4.1	41.1	4.0	2.2	100.0 (44)
	300~399만원	40.9	2.2	1.4	45.6	9.5	0.4	100.0 (201)
	400~499만원	35.5	1.9	2.3	51.5	6.4	2.4	100.0 (315)
	500~599만원	27.0	3.3	3.8	54.1	10.0	1.9	100.0 (239)
	600만원 이상	34.0	2.0	2.4	47.9	7.6	6.1	100.0 (412)
χ^2		37.098*						

구분		국공립	사회 복지 법인	법인· 단체	민간	가정	직장	계(수)
총 자녀수	1명	29.9	1.4	2.4	50.8	11.0	4.5	100.0 (298)
	2명	36.0	1.8	2.4	50.5	6.3	3.0	100.0 (678)
	3명이상	35.5	5.6	3.1	44.7	8.8	2.4	100.0 (235)
	χ^2	24.621**						
지역 규모	대도시	43.0	2.1	4.2	41.4	6.3	3.0	100.0 (449)
	중소도시	27.0	2.8	1.4	55.6	10.1	3.1	100.0 (563)
	읍면지역	36.0	2.4	1.8	50.1	5.5	4.2	100.0 (200)
	χ^2	44.612***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 $p < .05$, ** $p < .01$, *** $p < .001$.

2023년도 유아가 이용하는 유치원 설립 유형을 보면, 국·공립 34.2%, 사립 65.8%였다.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는 32.4%가 국·공립 유치원을 이용하고, 외벌이 가구는 그보다 높은 35.9%가 국·공립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국·공립 유치원 이용 비율이 자녀가 1명인 경우 28.7%, 2명인 경우 31.7%, 3명 이상인 경우 47.4%로 자녀가 많을수록 국·공립 유치원 이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국·공립 유치원 이용 비율은 대도시 26.1%, 중소도시 33.2%, 읍면지역 57.6%로 지역의 규모가 작을수록 국·공립 유치원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V-1-4〉 가구특성별 유아가 이용하는 유치원 설립 유형 (2023년)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사립	계(수)
전체		34.2	65.8	100.0 (655)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2.4	67.6	100.0 (324)
	외벌이	35.9	64.1	100.0 (330)
	χ^2	0.914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35.7	64.3	100.0 (9)
	300~399만원	42.5	57.5	100.0 (79)
	400~499만원	33.9	66.1	100.0 (166)
	500~599만원	26.5	73.5	100.0 (140)
	600만원 이상	35.9	64.1	100.0 (261)
	χ^2	6.850		
총 자녀수	1명	28.7	71.3	100.0 (123)
	2명	31.7	68.3	100.0 (405)
	3명이상	47.4	52.6	100.0 (127)
	χ^2	12.639**		

V.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및 지원 요구

구분		국·공립	사립	계(수)	
지역규모	대도시	26.1	73.9	100.0	(264)
	중소도시	33.2	66.8	100.0	(288)
	읍면지역	57.6	42.4	100.0	(103)
	χ^2	32.210***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 $p < .01$, *** $p < .001$.

2023년도 영유아가 이용하는 반일제 이상 학원 유형을 살펴보면, 영어학원이 75.6%로 가장 많았고, 놀이학원 비중이 15.5%로 영어학원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5〉 영유아가 이용하는 반일제 이상 학원 유형 (2023년)

단위: %(명)

영어학원	예능학원	놀이학원	체육학원	기타	계(수)
75.6	0.0	15.5	0.0	8.8	100.0 (29)

주: 괄호 숫자는 반일제 이상 학원 전체 이용자 수.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2) 특별활동 및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이용 기관별로 영유아의 특별활동 이용 비중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3차년도(2020년)의 42.4%를 제외하면, 1차년도(2018년) 65.1%에서 6차년도(2023년) 73.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은 1차년도(2018년)부터 3차년도(2020년)까지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4차년도(2021년)부터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V-1-6〉 이용 기관별 영유아의 특별활동 이용 비중 및 이용자 수 (2018~2023년)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특별활동		유치원특성화 프로그램		반일제이상 학원 특성화 프로그램	
1차년도(2018년)	65.1	(726)	66.4	(401)	59.1	(44)
2차년도(2019년)	65.9	(734)	52.1	(288)	47.2	(18)
3차년도(2020년)	42.4	(459)	42.3	(211)	42.7	(10)
4차년도(2021년)	66.3	(792)	73.5	(501)	51.0	(16)
5차년도(2022년)	71.7	(843)	84.2	(545)	54.5	(15)
6차년도(2023년)	73.9	(896)	84.7	(554)	45.1	(13)

주: 해당 기관 이용자 중 특별활동 이용자 비중 및 이용자 수임.
자료: 1)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69. 〈표 V-1-6〉.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영유아의 특별활동 이용 과목 수를 살펴보면, 대체로 3개 내외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반일제 이상 학원을 다니는 경우에는 2021년도 3.4개, 2023년 3.6개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 비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7〉 이용 기관별 영유아의 특별활동 이용 과목 수 (2018~2023년)

단위: 개(명)

구분	어린이집 특별활동 과목 수	유치원특성화 프로그램 과목 수	반일제이상 학원 특성화 프로그램 과목 수
1차년도(2018년)	3.0 (726)	3.1 (401)	2.9 (44)
2차년도(2019년)	3.0 (734)	3.1 (288)	2.9 (18)
3차년도(2020년)	2.9 (459)	2.9 (211)	2.9 (10)
4차년도(2021년)	2.7 (792)	3.2 (501)	3.4 (16)
5차년도(2022년)	3.0 (843)	3.0 (545)	3.2 (15)
6차년도(2023년)	2.9 (896)	3.3 (554)	3.6 (13)

주: 특별활동 이용자(괄호는 이용자 수) 기준 평균값임.
 자료: 1)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69. 〈표 V-1-7〉.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3) 이용시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주당 평균 이용 시간은 코로나19 확산 초기로 보육·교육기관 휴원 조치 및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어린이집은 35시간 내외, 유치원은 34시간 내외, 반일제 이상 학원은 30시간 내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율은 감소하였으나, 일단 어린이집과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 이용시간이 길어진 경향이 뚜렷하게 포착되었다.

〈표 V-1-8〉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주당 평균 이용 시간 (2018~2023년)

단위: 시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등	
1차년도 (2018년)	34.9	(1,163)	34.4	(630)	28.3	(74)
2차년도 (2019년)	35.4	(1,235)	34.4	(617)	29.7	(37)
3차년도 (2020년)	37.5	(1,139)	34.5	(551)	34.5	(24)
4차년도 (2021년)	35.0	(1,196)	34.5	(682)	29.5	(31)
5차년도 (2022년)	34.9	(1,233)	34.8	(678)	35.1	(28)
6차년도 (2023년)	35.5	(1,212)	35.5	(655)	30.5	(29)

주: 1)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2) 해당 서비스 이용자 기준으로 산출함. 괄호의 수치는 해당 서비스 전체 이용자 수.
 3) 3차년도 이용시간은 시간표로 조사된 시간을 합산한 값이며, 그 외 차수는 하루 이용시간에 5일로 곱하여 산출함.
 자료: 1)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70. 〈표 V-1-9〉.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2~2023' 5~6차년도 원자료.

2023년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하루 평균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7.1시간으로 나타났고, 반일제 이상 학원 등의 경우 6.1시간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외벌이 가구에 비해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시간이 가장 길었다. 총 자녀수에 따라 살펴보면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가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자녀수 2명 이하인 가구보다 오래 이용했고, 반일제 이상 학원 등은 총 자녀수가 1명인 가구에서 6.5시간으로 가장 오래 이용했다.

〈표 V-1-9〉 가구특성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하루 평균 이용시간 (2023년)

단위 : 시간(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등	
전체		7.1 (1,212)	7.1 (655)	6.1 (29)	
맞벌이 가구	맞벌이	7.5 (572)	7.4 (324)	6.2 (16)	
	외벌이	6.8 (640)	6.8 (330)	5.9 (13)	
여부	<i>t</i>	10.5***	7.6***	1.2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7.0 (44)	6.8 (9)	- (0)	
	300~399만원 이하	6.8 (201)	6.9 (79)	5.7 (1)	
	400~499만원 이하	7.0 (315)	6.9 (166)	6.0 (3)	
	500~599만원 이하	7.3 (239)	7.1 (140)	5.8 (3)	
	600만원 이상	7.3 (412)	7.4 (261)	6.1 (23)	
	<i>F</i>	9***	8.2***	0.1	
총 자녀수	1명	7.1 (298)	7.0 (123)	6.5 (4)	
	2명	7.1 (678)	7.1 (405)	6.0 (22)	
	3명이상	7.4 (235)	7.4 (127)	6.0 (4)	
	<i>F</i>	6.6**	7.3***	0.5	
지역 규모	대도시	7.0 (449)	7.1 (264)	6.3 (13)	
	중소도시	7.2 (563)	7.1 (288)	5.9 (16)	
	읍면지역	7.2 (200)	7.0 (103)	- (0)	
	<i>F</i>	1.9	1.1	1.3	
아동 연령	0세(2023년생)	6.5 (5)	- (0)	- (0)	
	1세(2022년생)	7.0 (96)	- (0)	- (0)	
	2세(2021년생)	7.0 (274)	9.1 (2)	6.9 (1)	
	3세(2020년생)	7.2 (313)	7.6 (3)	6.7 (2)	
	4세(2019년생)	7.2 (221)	7.2 (140)	6.1 (7)	
	5세(2018년생)	7.2 (171)	7.1 (216)	5.8 (11)	
	6세(2017년생)	7.1 (132)	7.1 (293)	6.2 (9)	
	<i>F</i>	1.9	2.5*	0.7	

주: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 $p < .05$, ** $p < .01$, *** $p < .001$.



2023년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시간의 충분성 정도를 살펴보면 현재 이용시간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86.4%로 가장 많았고, 지금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늘리고 싶다는 응답이 8.0%, 지금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줄이고 싶다는 응답이 3.0%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맞벌이 가구들이 지금보다 이용시간을 줄이고 싶다는 응답 비중이 5.3%로 외벌이 가구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표 V-1-10〉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시간의 충분성 정도 (2023년)

단위 : %, (명)

구분		지금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늘리고 싶다	지금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늘리고 싶다	현재 이용시간이 적당하다	지금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줄이고 싶다	지금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줄이고 싶다	계(수)	
전체		2.5	8.0	86.4	3.0	0.2	100.0 (1,896)	
맞벌이 가구	맞벌이	2.1	7.6	84.6	5.3	0.5	100.0 (912)	
	외벌이	2.8	8.3	88.0	0.8	-	100.0 (984)	
여부		χ^2					38.172***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6	7.2	87.5	1.7	-	100.0 (53)	
	300~399만원 이하	2.9	8.3	88.1	0.6	-	100.0 (281)	
	400~499만원 이하	1.9	9.1	87.5	1.4	-	100.0 (483)	
	500~599만원 이하	2.4	8.1	86.6	2.6	0.3	100.0 (381)	
	600만원 이상	2.6	7.0	84.6	5.3	0.5	100.0 (696)	
			χ^2					28.269*
아동 연령	0세(2023년생)	-	-	100.0	-	-	100.0 (5)	
	1세(2022년생)	4.1	9.6	83.4	2.9	-	100.0 (96)	
	2세(2021년생)	2.8	9.7	84.2	3.3	-	100.0 (276)	
	3세(2020년생)	2.6	8.1	85.0	4.0	0.3	100.0 (318)	
	4세(2019년생)	1.4	8.2	87.9	1.7	0.7	100.0 (368)	
	5세(2018년생)	2.5	9.7	82.9	5.0	-	100.0 (398)	
	6세(2017년생)	2.6	4.7	91.1	1.4	0.2	100.0 (434)	
			χ^2					34.445
이용 기관	어린이집	2.5	7.7	86.5	3.2	0.1	100.0 (1,212)	
	유치원	2.5	8.4	86.0	2.6	0.4	100.0 (655)	
	반일제이상 기관	-	9.2	87.4	3.4	-	100.0 (29)	
			χ^2					3.129

주: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 $p < .05$, *** $p < .001$.

반일제이상 기관별 이용을 늘리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 늘리고 싶은 주당 평균 시간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6.1시간, 유치원 5.7시간, 반일제이상 학원 등 6.8시간으로 대부분 주 평균 약 6시간 수준으로 반일제이상 기관의 이용을 늘리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1〉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을 늘리고 싶은 주당 평균 시간 (2023년)

단위 : 시간(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등	
전체		6.1	(123)	5.7	(72)	6.8	(3)
아동 연령	0세(2023년생)	-	-	-	-	-	-
	1세(2022년생)	7.0	(13)	-	(0)	-	(0)
	2세(2021년생)	5.8	(34)	-	(0)	-	(0)
	3세(2020년생)	6.4	(33)	-	(0)	5.0	(1)
	4세(2019년생)	6.4	(15)	5.3	(19)	5.0	(1)
	5세(2018년생)	5.4	(17)	4.6	(30)	10.0	(1)
	6세(2017년생)	5.2	(10)	7.5	(22)	-	(0)
	<i>F</i>	0.7		3.7*		-	
현재 이용 시간	4시간 미만	10.2	(5)	-	(0)	-	(0)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5.5	(16)	7.4	(12)	7.6	(2)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6.1	(90)	5.4	(54)	5.0	(1)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5.3	(11)	3.5	(5)	-	(0)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5.0	(1)	10.0	(1)	-	(0)
	12시간 이상	-	-	-	-	-	-
	<i>F</i>	2.6*		1.7		-	

주: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 $p < .05$.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 줄이고 싶은 주당 평균 시간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7.3시간, 유치원 5.9시간, 반일제이상 학원 등 5.0시간으로 나타났다. 단, 관측치가 많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표 V-1-12〉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을 줄이고 싶은 주당 평균 시간 (2023년)

단위 : 시간(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등	
전체		7.3	(40)	5.9	(20)	5.0	(1)
현재 이용 시간	4시간 미만	-	-	-	-	-	-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	-	-	-	-	-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5.3	(10)	5.2	(9)	5.0	(1)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7.9	(25)	5.5	(7)	-	(0)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7.6	(5)	8.1	(5)	-	(0)
	12시간 이상	-	-	-	-	-	-
	<i>F</i>	2.5		1.3		-	

주: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4) 이용비용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월평균 이용 비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1차년도(2018년) 6만6천원에서 2차년도(2019년) 7만8천원으로 증가했다가 3차년도(2020년) 6만1천원으로 다시 감소하여 4차년도(2021년)까지 증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5차년도(2022년)와 6차년도(2023년)에는 7만6천원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치원의 경우 1차년도(2018년) 14만2천원부터 6차년도(2023년)까지 등락을 반복했다. 반일제이상 학원 등의 경우 1차년도(2018년) 52만2천원에서 6차년도(2023년) 125만1천원까지 증가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비용이 큰 변동이 없었던 것에 비해 매우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 V-1-13〉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월평균 이용 비용 (명목비용, 2018~2023년)

단위 : 만원(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등
1차년도(2018년)	6.6(1,163)	14.2(630)	57.2(74)
2차년도(2019년)	7.8(1,235)	15.0(617)	71.2(37)
3차년도(2020년)	6.1(1,139)	13.7(551)	88.4(24)
4차년도(2021년)	7.1(1,196)	14.1(682)	92.0(31)
5차년도(2022년)	7.6(1,233)	12.9(678)	106.6(28)
6차년도(2023년)	7.6(1,212)	13.3(655)	125.1(29)

주: 1)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2) 해당 서비스 이용자 기준으로 산출. 괄호는 해당 서비스 전체 이용자 수.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3' 1~6차년도 원자료.

5) 서비스 만족도

반일제이상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1차년도(2018년) 평균 3.9점, 만족 비중 75.7%에서 6차년도(2023년) 평균 4.2점, 만족 비중 92.5%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유치원의 경우에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1차년도(2018년) 평균 3.9점, 만족비중 77.2%에서 6차년도(2023년) 평균 4.2점, 만족비중 89.9%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반일제이상 학원의 경우 평균 점수는 매해 4.0점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만족 비중은 1차년도(2018년) 87.4%에 비해 6차년도(2023년)에 83.6%로 하락했다.

〈표 V-1-14〉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만족도 (2018~2023년)

단위: %, 점, (명)

구분	어린이집 서비스			유치원 서비스			반일제이상 학원 서비스		
	만족 비중	평균 점수	(수)	만족 비중	평균 점수	(수)	만족 비중	평균 점수	(수)
1차년도(2018년)	75.7	3.9	(1,163)	77.2	3.9	(630)	87.4	4.0	(74)
2차년도(2019년)	79.6	3.9	(1,235)	82.2	4.0	(617)	87.2	4.2	(37)
3차년도(2020년)	84.3	4.0	(1,139)	83.0	4.0	(551)	82.1	4.0	(24)
4차년도(2021년)	86.8	4.0	(1,196)	85.1	4.0	(682)	82.6	4.0	(29)
5차년도(2022년)	89.8	4.1	(1,233)	87.5	4.1	(678)	84.8	4.0	(28)
6차년도(2023년)	92.5	4.2	(1,212)	89.9	4.2	(655)	83.6	4.1	(29)

주: '매우 불만족=1'~'매우 만족=5'로 역코드 하여 산출한 수치임.
 자료: 1)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77. 〈표 V-1-15〉.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나. 시간제 교육

1) 이용 기관

연도별 시간제 교육 이용을 살펴보면¹⁰¹⁾, 단시간 학원은 2차년도(2019년)에서 3차년도(2020년)를 제외하고 1차년도(2018년) 15.5%에서 6차년도(2023년) 23.1%까지 증가하였다. 방문형 학습지와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의 경우 1차년도(2018년)부터 4차년도(2021년)까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며 12%~15%대의 이용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문화센터가 2023년 기준 10.4%로 높은 이용 비중을 보였다. 한편,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과 비방문형 교구활동 교육은 2023년 기준 3.9%였으며,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이용률도 3.2%의 이용률을 보였다. 시간제 교육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중은 59.3%였다.

101) EBS 방송시청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교육에 해당함.

〈표 V-1-15〉 연도별 시간제 교육 이용 (2018~2023년)

단위: %(명)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단시간 학원	15.5 (353)	16.0 (372)	12.9 (304)	21.3 (506)	21.9 (524)	23.1 (559)
방문형학습지	15.3 (349)	14.6 (341)	12.1 (287)	15.0 (356)	12.0 (286)	12.2 (295)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2.2 (49)	1.7 (40)	1.5 (35)	2.1 (49)	2.2 (52)	2.4 (59)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3.2 (72)	3.2 (74)	3.9 (91)	3.4 (80)	3.3 (79)	3.9 (94)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1.1 (26)	1.1 (25)	1.0 (23)			
개인 및 그룹지도	3.2 (73)	2.5 (58)	1.5 (35)	1.4 (32)	1.9 (46)	1.2 (28)
문화센터	10.0 (228)	8.2 (190)	0.9 (21)	5.7 (134)	7.6 (181)	10.4 (253)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3.2 (76)	3.4 (81)	3.2 (77)
EBS등 교육 관련 방송 시청						0.9 (23)
없음						59.3 (1,435)

주: 1) 전체 영유아 중 해당 서비스 이용자 비중과 이용자 수(말초)으로, 중복 응답 문항임.
 2) 사선으로 표현된 서비스는 해당 연도에 조사가 되지 않은 항목임.
 자료: 1)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83. 〈표 V-1-21〉.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2023년도 영유아의 시간제 교육 유형별 이용 과목을 살펴보면 단시간 학원의 경우 체육이 62.3%로 가장 많았고 미술이 34.9%로 그 뒤를 이었다. 영어와 음악은 각각 15.6%와 12.9%를 차지했다. 방문형 학습지의 경우에는 한글이 41.7%로 가장 많았고 수학 및 과학이 28.6%로 두 번째로 많았다.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의 경우 수학 및 과학이 31.9%로 가장 많았고 종합교과가 17.5%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비방문형 학습지, 교구 활동교육의 경우 영어와 한글이 23.9%로 가장 많았고 수학 및 과학도 23.8%로 영어와 한글과 비슷한 정도로 많이 이용했다. 개인 및 그룹지도의 경우 체육이 33.7%로 가장 많았고, 영어와 한글이 각각 13.9%, 13.3%로 그 뒤를 이었다. 교육용 온라인콘텐츠의 경우 영어, 한글, 종합교과 이용 비율이 각 2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학 및 과학은 19.1%로 나타났다. EBS 등 교육관련 방송시청의 경우 한글이 40%로 가장 많았고 영어는 15.9%, 수학 및 과학은 13.5%로 그 뒤를 이었다.

〈표 V-1-16〉 영유아의 시간제 교육 유형별 이용 과목 (2023년)

단위 : %, (명)

구분	체육	음악	미술	영어	한글	영어 외 언어	수학 및 과학	종합 교과	기타	(수)
단시간 학원	62.3	12.9	34.9	15.6	-	8.6	9.5	-	1.9	(559)
방문형 학습지	3.5	0.6	1.6	12.0	41.7	2.8	28.6	7.7	1.3	(295)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	2.5	2.4	16.4	2.5	11.8	1.3	31.9	17.5	13.9	(59)
비방문형 학습지, 교구 활동교육	1.2	-	2.9	23.9	23.9	2.4	23.8	20.0	1.8	(94)
개인 및 그룹지도	33.7	7.0	6.9	13.9	13.3	4.8	7.3	4.5	8.7	(28)
교육용 온라인콘텐츠	2.1	-	-	27.5	25.1	3.9	19.1	21.5	0.8	(77)
EBS등 교육관련 방송시청	2.3	10.9	4.9	15.9	40.0	2.6	13.5	4.9	5.1	(23)

주: 1) 단시간 학원은 '한글'과 '종합교과'는 관련 문항이 없음.
 2) 과목별 이용율은 해당 유형의 사교육 전체 이용자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중복 이용 문항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2023년도 영유아의 문화센터 이용기관을 살펴보면 백화점, 마트 이용이 90.4%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 외에 공공기관 이용은 27.3%로 두 번째로 많았다.

〈표 V-1-17〉 영유아의 문화센터 이용기관 (2023년)

단위: %, (명)

백화점, 마트	주민센터	공공기관	기타	(수)
90.4	8.6	27.3	6.4	(253)

주: 1) 이용 기관을 중복응답한 결과임.
 2) 기관별 이용율은 문화센터 전체 이용자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중복 이용 문항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2023년도 영유아의 문화센터 이용 과목을 살펴보면 체육이 52.5%로 가장 높았고 통합놀이(오감, 쿠킹클래스)가 37.9%로 두 번째로 높았다. 미술, 음악, 언어가 각각 17.6%, 8.1%, 6.8%로 그 뒤를 이었다.

〈표 V-1-18〉 영유아의 문화센터 이용 과목 (2023년)

단위 : %, (명)

체육	음악	미술	통합놀이 (오감, 쿠킹클래스)	언어 관련(동화, 외국어 등)	수학 관련(가베 등)	과학 관련	기타 (바둑, 체스 등)	(수)
52.5	8.1	17.6	37.9	6.8	1.6	3.2	5.1	(253)

주: 1) 이용 과목을 중복응답한 결과임.
 2) 과목별 이용율은 문화센터 전체 이용자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중복 이용 문항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2) 이용 시간

영유아의 시간제 교육 주당 이용 시간을 살펴보면 단시간 학원의 경우 1차년도(2018년) 3.2시간에서 3차년도(2020년) 5.6시간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3차년도(2020년)부터 5차년도(2022년)까지는 5.6시간에서 3.9시간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방문형학습지의 경우 매해 주당 0.6시간 정도의 이용 시간을 유지했고,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은 1차년도(2018년) 1.1시간 이후 2차년도(2019년)부터는 0.7~0.8시간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과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의 경우 개별조사한 1차년도(2018년) 1.0%와 1.3%에서 통합한 4차년도(2021년) 1.7%, 5차년도(2022년) 3.6%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6차년도(2023년)에 1.3%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표 V-1-19〉 연도별 영유아의 시간제 교육 주당 이용 시간 (2018~2023년)

단위: 시간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단시간 학원	3.2	3.5	5.6	4.2	3.9	4.2
방문형학습지	0.6	0.5	0.6	0.6	0.6	0.6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1.1	0.7	0.8	0.8	0.7	0.8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1.0	1.1	1.6	1.7	3.6	1.3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1.3	1.0	1.3			
개인 및 그룹지도	1.9	1.7	2.1	2.8	2.2	2.2
문화센터	1.2	1.1	2.3	1.2	1.3	1.2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1.9	1.9	1.8
EBS등 교육관련 방송시청						1.8

주: 1) 이용 시간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2) 사선인 서비스는 해당 연도에 조사가 되지 않은 항목임.

자료: 1)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p.186~187. 〈표 V-1-24〉.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영유아의 시간제 교육 유형별 주당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단시간 학원의 경우 학습관련 이용은 주당 2.8시간, 예체능 관련 이용 시간은 3.8시간으로 예체능 관련 이용 시간이 1시간 가량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유형의 시간제 교육은 학습관련 이용 시간과 예체능 관련 이용 시간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V-1-20〉 영유아의 시간제 교육 유형별 주당 이용시간 (2023년)

단위: 시간, (명)

구분	학습관련		예체능	
	이용시간	(수)	이용시간	(수)
단시간 학원	2.8	(155)	3.8	(508)
방문형 학습지	0.5	(30)	0.6	(269)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	0.9	(24)	0.7	(38)
비방문형 교구 활동교육	0.9	(8)	1.3	(86)
개인 및 그룹지도	1.9	(18)	2.0	(12)
문화센터	0.9	(29)	1.2	(237)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1.0	(3)	1.8	(74)
EBS등 교육관련 방송시청	0.9	(8)	1.6	(21)

주: 1) 이용 시간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2) 학습관련 학원에는 한글, 영어, 영어 외 언어, 수학 및 과학, 종합교과가 포함되며, 예체능 학원에는 체육, 음악, 미술, 기타가 포함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3) 이용 비용

영유아의 시간제 교육 월평균 이용비용을 살펴보면, 단시간 학원 이용 비용이 1차년도(2018년) 13만4천원이었으며, 6차년도(2023년) 19만7천원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방문형 학습지의 경우 증감을 반복했으나 5차년도(2022년) 이후부터 9만원대 이상을 유지했다.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과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은 매년 월평균 이용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및 그룹지도의 경우 3차년도(2020년)에서 4차년도(2021)에 14만8천원에서 21만2천원으로 크게 증가한 후 2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표 V-1-21〉 연도별 영유아의 시간제 교육 월평균 이용비용 (명목비용, 2018~2023년)

단위: 만원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단시간 학원	13.4	14.2	17.0	17.6	18.0	19.7
방문형학습지	7.4	7.2	8.2	8.6	9.6	9.3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10.2	9.1	11.4	10.2	10.7	13.1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5.6	7.6	8.3	9.2	10.7	11.3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8.8	8.1	8.6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개인 및 그룹지도	12.7	14.8	14.8	21.2	23.1	20.5
문화센터	5.2	4.8	5.5	5.5	5.6	6.0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10.2	9.9	12.5
EBS등 교육관련방송시청						1.1

주: 1) 이용비용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2) 사선인 서비스는 해당 연도에 조사가 되지 않은 항목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3' 1~6차년도 원자료.

4) 만족도 및 개선요구

시간제 교육 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보면 단시간학원의 경우 4차년도(2021년) 3.8점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3.9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방문형학습지의 경우에도 큰 증감 없이 3.6~3.8점 정도의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개인 및 그룹지도 만족도가 4.2점, 방문형 교구활동이 4.1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V-1-22〉 시간제 교육 서비스 만족도 (2018~2023년)

단위: 점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단시간학원	3.9	3.9	3.9	3.8	3.9	4.0
방문형학습지	3.6	3.6	3.8	3.8	3.8	3.8
방문형 교구활동	3.9	3.9	3.8	4.1	3.8	4.1
비방문형 학습지, 통신교육	3.5	3.5	3.8	3.7	3.5	3.6
비방문형 교구활동	3.7	3.9	3.9			
개인 및 그룹지도	3.9	4.0	3.9	4.1	4.0	4.2
문화센터	4.0	3.8				
교육용온라인콘텐츠				3.7	3.7	3.8
EBS등 교육 관련 방송 시청						3.6

주: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하였으며, 사선인 서비스는 해당 연도에 조사가 되지 않은 항목임.
 자료: 1)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p.189~190. 〈표 V-1-29〉.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2023년도 비대면 기타 사교육 서비스 이용시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19.9%가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었으면'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아이들의 흥미를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면'이라는 의견이 18.2%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교육 내용이 좀 더 질적으로 개선되었으면'(13.7%), '약정이나 의무사용 기간이 없었으면'(12.8%), '교육 내용이 좀 더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었으면' (11.8%) 순이었다.

〈표 V-1-23〉 비대면 기타 사교육 서비스 이용시 개선 필요 사항 (2023년)

단위 : %(명)

구분	6차년도(2023년)
전자 기기가 아닌 실물 혹은 종이 등을 통한 서비스가 더 많았으면	2.6
아이들의 흥미를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면	18.2
교육 내용이 좀더 질적으로 개선되었으면	13.7
교육 내용이 좀더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었으면	11.8
아이와 부모가 함께 진행할 수 있었으면	4.4
아이와 선생님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형태였으면	6.0
서비스 이용 후 사후 관리가 더 잘 이뤄졌으면	7.7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었으면	19.9
약정이나 의무사용 기간이 없었으면	12.8
기타	2.9
계(수)	100.0 (186)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2023년도 사교육 비용 부담 정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점수는 3.2점으로 '보통'이라는 의견이 46.1%로 가장 많았고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27.1%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인 가구에서는 평균 점수가 3.9점으로 다른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단, 응답자가 15명에 불과하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표 V-1-24〉 사교육 비용 부담정도 (2023년)

단위: %, 점, (명)

구분		매우 부담됨	부담됨	보통	부담 안됨	전혀 부담 안됨	평균 점수	계(수)
전체		4.4	14.0	46.1	27.1	8.5	3.2	100.0 (827)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	12.6	24.8	25.5	37.1	3.9	100.0 (15)
	300~399만원	5.0	12.5	51.0	21.2	10.3	3.2	100.0 (94)
	400~499만원	3.4	12.2	49.6	28.2	6.6	3.2	100.0 (201)
	500~599만원	4.8	15.9	42.5	30.1	6.7	3.2	100.0 (184)
	600만원 이상	4.8	14.5	45.5	26.5	8.7	3.2	100.0 (333)
χ^2/F		25.744(16)					2.0	

주: 1)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2) '전혀 부담안됨=1'~'매우 부담됨=5'로 측정됨. 점수가 높을수록 사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높음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사교육 부담에도 사교육을 이용하는 이유를 설문한 결과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쳐질까봐'라는 의견이 매년 30%를 넘으며 가장 많았고,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라는 의견도 매년 26%를 넘으며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다음으로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라는 응답도 매년 10% 이상의 응답 비중을 보였다.

〈표 V-1-25〉 사교육 부담에도 이용하는 이유 (2020~2023년)

단위: %(명)

구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자녀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	8.3	8.1	5.7	7.5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처질까봐	31.1	36.2	35.6	36.1
서비스의 질이 높다고 생각되어서	5.9	5.3	3.6	6.5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	26.5	27.4	30.5	27.8
퇴근 전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2.7	1.4	2.6	2.4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12.0	11.1	10.5	10.7
다른 돌봄서비스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어서	0.5	1.1	2.5	2.5
아이가 원해서	9.5	7.7	7.7	4.3
기타	1.0	1.6	1.3	2.2
모름	2.4	0.0	-	-
계(수)	100.0 (220)	100.0 (291)	100.0 (315)	100.0 (294)

자료: 1)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91. 〈표 V-1-31〉.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다. 기타서비스

기타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시간제 일시보육의 경우 이용 비중이 1차년도(2018년) 1.9%에서 2차년도(2019년) 0.8%로 감소하는 등 6차년도(2023년)까지 2% 이내에서 증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월평균 이용 횟수와 회당 이용 시간도 이에 따라 대체적으로 증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간제 일시보육 월평균 비용은 1차년도(2018년)부터 5차년도(2022년)까지 7만원 아래를 유지하다가 6차년도(2023년)에 13만6천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용자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키즈카페의 경우 이용 비중이 1차년도(2018년) 66.7%, 2차년도(2019년) 57.7%로 높았으나, 3차년도(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4.7%로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4차년도(2021년)부터 다시 증가해 6차년도(2023년)에는 이용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55.2%를 달했다. 월평균 이용 횟수는 1차년도(2018년)부터 5차년도(2022년) 1.5~2.0회를 유지하다가 6차년도(2023년)에는 3.0회로 증가했다. 이용 비용은 1만원 내외로 그다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기 체험활동을 하는 경우는 2022년 16.5%였으며, 2023년 19.1%였다. 2023년 기준 비정기 체험활동은 월평균 2.6회가량 이용하였으며, 회당 이용 시간은 2.3시간, 월평균 이용 비용은 2만3천원이었다.

〈표 V-1-26〉 영유아의 기타서비스 이용 현황 (2018~2023년)

단위: %, 회, 시간, 만원, (명)

구분		이용 비중	횟수(월평균)	이용 시간(회당)	비용	(수)
시간제 일시보육	1차년도(2018년)	1.9	8.7	2.7	6.9	(43)
	2차년도(2019년)	0.8	7.4	2.2	2.0	(19)
	3차년도(2020년)	1.8	10.5	3.0	5.4	(42)
	4차년도(2021년)	0.7	11.3	3.8	3.2	(17)
	5차년도(2022년)	0.6	6.2	2.3	6.8	(14)
	6차년도(2023년)	1.2	11.5	3.4	13.5	(28)
키즈카페	1차년도(2018년)	66.7	1.8	2.0	0.7	(1,518)
	2차년도(2019년)	57.7	1.7	2.0	0.6	(1,347)
	3차년도(2020년)	14.7	1.5	2.2	0.8	(349)
	4차년도(2021년)	24.9	1.5	2.2	0.9	(591)
	5차년도(2022년)	44.7	1.6	2.2	0.9	(1,070)
	6차년도(2023년)	55.2	3.0	2.3	1.1	(1,339)
비정기 체험활동	5차년도(2022년)	17.2	1.4	2.5	2.0	(411)
	6차년도(2023년)	19.1	2.6	2.3	2.3	(464)

주: 1)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 키즈카페와 비정기 체험활동은 지난 3개월 동안 이용경험, 월평균 이용횟수이며, 1회 이용 시 시간이며,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월평균 비용, 키즈카페는 1시간당 이용비용 그리고 비정기 체험활동은 1회 이용비용임.

2) 기타서비스 이용 비용은 명목비용으로 서비스 이용자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임.

자료: 1)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95. 〈표 V-1-38〉.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기타서비스 유형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시간제 일시보육의 경우 1차년도(2018년)와 2차년도(2019년)의 평균점수는 3.6점, 만족 비중(‘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응답 비율)은 각각 56.5%, 62.1%이었다.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의 경우 평균점수 4.1점, 만족 비중 각각 85.1%, 83.8%로 1차년도(2018년)와 2차년도(2019년)보다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5차년도(2022년)의 경우 평균점수 3.7점, 만족 비중 62.7%로 전년도보다 감소했고, 6차년도(2023)은 평균점수 4.0점, 만족 비중 71.2%로 다시 증가했다.

키즈카페의 경우 1차년도(2018년)와 2차년도(2019년) 평균 점수 3.7점, 3차년도(2020년) 3.8점, 4차년도(2021년) 이후 3.9점을 유지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만족 비중의 경우 2차년도(2019년) 63%를 제외하고 70% 이상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정기 체험활동의 경우 5차년도(2022년), 6차년도(2023년) 평균점수는 각각 4.1점, 4.0점으로 4점대 이상을 유지했다. 만족 비중은 각각 86.9%, 82.8%로 다른 서비스와 비교해 만족 비중이 가장 높았다.



〈표 V-1-27〉 기타서비스 유형별 만족도 (2018~2023년)

단위: %, 점, (명)

구분		만족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시간제 일시 보육	1차년도(2018년)	18.7	37.8	31.9	6.9	4.7	3.6	100.0 (43)
	2차년도(2019년)	17.2	44.9	22.1	15.8	-	3.6	100.0 (19)
	3차년도(2020년)	20.9	64.2	14.9	-	-	4.1	100.0 (42)
	4차년도(2021년)	27.0	56.8	16.3	-	-	4.1	100.0 (17)
	5차년도(2022년)	20.5	42.2	29.9	6.1	1.2	3.7	100.0 (66)
	6차년도(2023년)	45.3	25.9	15.9	8.1	4.8	4.0	100.0 (141)
키즈 카페	1차년도(2018년)	9.9	60.0	25.7	4.1	0.3	3.7	100.0 (1,518)
	2차년도(2019년)	8.0	55.0	32.6	4.1	0.3	3.7	100.0 (1,347)
	3차년도(2020년)	11.2	61.7	24.8	2.1	0.3	3.8	100.0 (349)
	4차년도(2021년)	11.5	65.2	22.2	1.0	0.2	3.9	100.0 (591)
	5차년도(2022년)	15.5	63.7	19.6	0.8	0.4	3.9	100.0 (1,070)
	6차년도(2023년)	12.8	65.3	19.0	2.9	0.1	3.9	100.0 (1,339)
비정기 체험할 등	5차년도(2022년)	22.8	64.1	12.4	0.7	-	4.1	100.0 (441)
	6차년도(2023년)	21.6	61.2	16.2	1.0	-	4.0	100.0 (464)

주: '매우 불만족=1'~'매우 만족=5'로 측정된 수치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1)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p.196~197. 〈표 V-1-39〉.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시간제 일시보육 범주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이용시간의 선택성의 경우 2022년과 2023년의 평균 점수는 3.7로 같았지만, 만족도 '보통'인 응답은 33.8%에서 19.4%로 감소하고 불만족 비중('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응답 비율)이 2022년 5.9%에서 2023년 18.8%로 증가했다. 비용, 이용 장소의 접근성, 긴급 보육의 유용성의 경우 평균 점수와 만족 비중이 2022년에 비해 2023년에 증가했다. 인력의 전문성의 경우 만족도 평균 점수는 2022년 3.7점에서 2023년 3.9점으로 증가했지만, 불만족 비중은 0%에서 9.1%로 증가했다.

즉, 2022년 대비 2023년 이용시간의 선택성에 대한 만족도를 제외하고, 비용, 이용장소의 접근성, 인력의 전문성, 긴급보육의 유용성 등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표 V-1-28〉 시간제 일시보육 범주별 만족도 (2022~2023년)

단위: %, 점, (명)

구분	만족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2022년	이용시간의 선택성	20.9	39.4	33.8	0.0	5.9	3.7	100.0 (13)
	비용	25.7	42.2	25.9	6.2	0.0	3.9	100.0 (13)
	이용 장소의 접근성	28.3	33.5	25.9	12.4	0.0	3.8	100.0 (13)
	인력의 전문성	0.0	68.2	31.8	0.0	0.0	3.7	100.0 (13)
	긴급 보육의 유용성	27.7	27.8	32.4	12.1	0.0	3.7	100.0 (13)
2023년	이용시간의 선택성	35.8	26.0	19.4	12.7	6.1	3.7	100.0 (28)
	비용	45.4	29.1	16.6	5.9	2.9	4.1	100.0 (28)
	이용 장소의 접근성	60.9	19.6	3.8	9.6	6.1	4.2	100.0 (28)
	인력의 전문성	38.7	29.0	23.1	6.2	2.9	3.9	100.0 (28)
	긴급 보육의 유용성	45.7	25.6	16.7	6.1	5.9	4.0	100.0 (28)

주: '매우 불만족=1'~'매우 만족=5'로 측정된 수치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1)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97. 〈표 V-1-40〉.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키즈카페 이용 이유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아이가 좋아해서'라는 의견이 매년 가장 많았으며 '비용이 저렴해서'라는 의견은 매년 0.5% 이하로 가장 적었다. 2018년에서 2020년까지는 '자녀를 동반해 지인을 만날 수 있으므로'라는 응답이 각각 16.8%, 13.3%, 16.2%로 두 번째로 많았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집에 없는 놀이기구들이 있어서'라는 의견이 각각 14.1%, 13.4%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2023년에는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편안해서'라는 의견이 14.0%로 두 번째로 우세했다.

〈표 V-1-29〉 키즈카페 이용 이유 (2018~2023년)

단위 : %(명)

구분	이용하는 이유							계(수)
	집에 없는 놀이기구들이 있어서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편안해서	자녀를 동반해 지인을 만날 수 있으므로	아이가 좋아해서	비용이 저렴해서	지역에 적당한 공공 놀이장소가 없어서	기타	
2018년	13.9	16.6	16.8	51.8	0.5	-	0.6	100.0 (1,520)
2019년	11.9	10.9	13.3	62.4	-	-	1.5	100.0 (1,347)
2020년	11.0	10.8	16.2	54.7	-	5.5	1.7	100.0 (349)

구분	이용하는 이유							계(수)
	집에 없는 놀이기구들이 있어서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편안해서	자녀를 동반해 지인을 만날 수 있으므로	아이가 좋아해서	비용이 저렴해서	지역에 적당한 공공 놀이장소가 없어서	기타	
2021년	14.1	12.8	10.2	56.5	-	4.3	2.1	100.0 (591)
2022년	13.4	12.9	10.5	58.5	0.3	3.2	1.2	100.0 (1,027)
2023년	12.3	14.0	11.3	57.8	0.1	3.0	1.5	100.0 (1,337)

주: 2018~2019년에는 '지역에 적당한 공공놀이장소가 없어서' 보기가 없음.
 자료: 1) 이정원·이정림·김태우(2018).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 p.133. <표 III-1-30>.
 2) 이정림·구자연·김한솔(2019).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II). p.115. <표 III-1-29>.
 3) 최효미 외(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III). p.218. <표 IV-4-3>.
 4) 최효미 외(2021).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IV). p.190. <표 V-1-33>.
 5)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98. <표 V-1-41>.
 6)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 $p < .05$.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의 키즈카페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감염병 위험 때문에'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특히 2021년에는 91.8%가 감염병 위험 때문에 키즈카페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이는 2022년 76.5%, 2023년 52.7%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과반수를 차지했다. '주변에 운영하는 키즈카페가 없어서'라는 의견은 매년 두 번째로 많았다. '감염병 위험 때문에'를 제외한 모든 응답은 매해 증가하였는데, 특히 '비용이 부담되어서'라는 의견과 '아이가 좋아하지 않아서'라는 의견이 2021년에 비해 2023년에 크게 증가했다.

<표 V-1-30> 키즈카페 이용하지 않는 이유 (2021~2023년)

단위: %(명)

구분	주변에 운영하는 키즈카페가 없어서	감염병 위험 때문에	자녀를 동반한 만남이 줄어서	아이가 좋아하지 않아서	비용이 부담되어서	기타	계(수)
2021년	2.0	91.8	1.1	0.6	1.2	3.3	100.0 (1,780)
2022년	4.8	76.5	1.3	2.7	3.2	11.6	100.0 (1,366)
2023년	9.6	52.7	4.7	6.3	8.2	18.6	100.0 (1,085)

자료: 1) 최효미 외(2021).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IV). p.191. <표 V-1-34>.
 2)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98. <표 V-1-42>.
 3)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비정기 체험활동을 이용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아이가 좋아해서’라는 의견이 2022년 49.3%, 2023년 51.6%로 가장 많았고 ‘체험활동 인솔자의 해당분야 전문성을 고려해서’,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편안해서’라는 의견이 다음으로 많았다. ‘비용이 저렴해서’라는 의견은 2022년과 2023년 모두 1.7%를 차지하며 가장 적었다.

〈표 V-1-31〉 비정기 체험활동 이용 이유 (2022~2023년)

단위: %(명)

구분	체험활동 인솔자의 해당분야 전문성을 고려해서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편안해서	자녀가 희망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아이가 좋아해서	비용이 저렴해서	원하는 시간대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타	계(수)
2022년	9.0	9.0	23.3	49.3	1.7	3.2	3.9	100.0 (395)
2023년	9.2	7.6	23.1	51.6	1.7	1.8	5.0	100.0 (463)

자료: 1)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99 〈표 V-1-43〉.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비정기 체험활동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2022년에는 ‘감염병 위험 때문에’라는 의견이 60.6%로 가장 많았고 ‘체험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라는 의견이 15.5%로 두 번째로 많았다. 2023년의 경우 ‘체험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라는 의견이 31.3%로 가장 많았다. ‘감염병 위험 때문에’라는 의견은 26.9%로 두 번째로 많았고 2022년에 비해서는 절반 이상 감소했다.

〈표 V-1-32〉 비정기 체험활동 이용하지 않는 이유 (2022~2023년)

단위: %(명)

구분	체험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감염병 위험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아이가 좋아하지 않아서	비용이 부담되어서	기타	계(수)
2022년	15.5	60.6	8.9	2.6	3.8	8.5	100.0 (1,998)
2023년	31.3	26.9	18.0	4.2	7.9	11.6	100.0 (1,959)

자료: 1)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99 〈표 V-1-44〉.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비정기 체험활동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 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인 가구의 경우 ‘비용이 부담되어서’라는 의견이 30.8%로 다른 가구는 10.7% 이하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많았다.



총 자녀수별로 살펴보면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비용이 부담되어서’라는 응답이 증가했다. 지역 규모별로 살펴보면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체험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라는 의견이 증가했고 ‘안전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라는 의견은 감소했다.

〈표 V-1-33〉 가구특성별 비정기 체험활동 이용하지 않는 이유 (2023년)

단위 : %(명)

구분	이용하는 이유						계(수)	
	체험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코로나 19의 감염을 피하기 위해	안전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아이가 좋아하지 않아서	비용이 부담되어서	기타		
전체	31.3	26.9	18.0	4.2	7.9	11.6	100.0 (1,959)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3.1	16.3	8.0	2.1	30.8	9.6	100.0 (47)
	300~399만원 이하	34.4	24.0	19.8	3.5	10.7	7.6	100.0 (292)
	400~499만원 이하	29.5	29.1	18.5	4.5	8.5	9.9	100.0 (541)
	500~599만원 이하	27.9	30.4	17.7	5.6	6.3	12.2	100.0 (420)
	600만원 이상	33.6	24.8	17.7	3.6	5.6	14.6	100.0 (660)
	χ^2	65.594(20)***						
총 자녀 수	1명	27.2	32.5	20.4	3.8	3.5	12.5	100.0 (548)
	2명	33.3	26.1	16.9	4.7	8.0	11.0	100.0 (1,070)
	3명이상	31.7	20.2	17.6	3.4	14.9	12.2	100.0 (341)
		χ^2	56.444(10)***					
지역 규모	대도시	25.9	29.9	23.6	4.7	5.9	10.0	100.0 (751)
	중소도시	34.3	21.3	15.5	4.4	9.8	14.6	100.0 (889)
	읍면지역	35.8	35.1	11.8	2.7	7.3	7.3	100.0 (319)
		χ^2	78.064(10)***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 $p < .001$.

2. 가정 내 돌봄 및 부모지원서비스 이용 행태

가.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행태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를 살펴보면, 조부모가 개별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2023년 기준 조부모가 자녀를 돌보아주는 비중은 67.2%였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의 경우 2차년도(2019년) 17.9%에서 3차년도(2020년) 4.9%로 급감 후 6차년도(2023년)에 32.8%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민간 육아도우미의 경우 3차년도(2020년) 3.5%와 4차년도(2021년) 6.5%를 제외하면 매년 8.4~8.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은 3차년도(2020년) 11.9%에서 6차년도(2023년) 7.5%까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V-2-1〉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2019~2023년, 중복응답)

단위: %, (가구)

구분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수)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조부모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무응답	
2차년도(2019년)	17.9	8.4	69.3	10.6	-	(179)
3차년도(2020년)	4.9	3.5	61.1	11.9	21.7	(226)
4차년도(2021년)	16.4	6.5	75.7	8.9	-	(214)
5차년도(2022년)	17.0	8.7	74.3	8.7	-	(206)
6차년도(2023년)	32.8	8.7	67.2	7.5	-	(265)

- 주: 1) 각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비율은 개별돌봄서비스 이용가구를 대상으로 한 응답 비율임.
 2) 개별돌봄은 개별돌봄서비스로 부모가 아닌 사람(조부모, 친인척,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아이 도우미 등)이 가정에서 해당 아동(혹은 가구 내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의미함.
 3) 개별돌봄서비스는 중복 이용으로 비중의 합이 100%를 초과함.
 4) 2019~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19~2023' 2~6차년도 원자료.

개별돌봄서비스 동시 돌봄 자녀수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1.2~1.6명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의 경우 3차년도(2020년)부터 5차년도(2022년)까지 감소하다가 6차년도(2023)에 32.4시간으로 전년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간 육아도우미와 조부모 돌봄의 경우 2차년도(2019년) 각각 28.8시간, 27.4시간에서 6차년도(2023년) 각각 16.3시간, 18.9시간으로 매년 감소했다.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의 경우 2차년도(2019년)부터 4차년도(2021년)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후 6차년도(2023년)까지는 10.0시간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월평균 이용비용의 경우 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의 비용이 매년 가장 높았으나, 2차년도(2019년) 81만7천원에서 6차년도(2023년) 52만8천원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V-2-2〉 개별돌봄서비스 동시 돌봄 자녀수, 이용시간, 이용비용 (명목비용, 2019~2023년)

단위: 명, 시간, 만원, (가구)

구분		동시 돌봄 자녀수	주당 평균 이용시간	월평균 이용비용	(수)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2차년도(2019년)	1.5	17.0	26.9	(32)
	3차년도(2020년)	1.2	23.4	27.3	(11)
	4차년도(2021년)	1.3	18.2	23.2	(35)
	5차년도(2022년)	1.5	15.2	19.5	(33)
	6차년도(2023년)	1.5	32.4	26.2	(74)
민간 육아도우미	2차년도(2019년)	1.4	28.8	81.7	(15)
	3차년도(2020년)	1.5	21.6	85.0	(8)
	4차년도(2021년)	1.3	21.0	76.2	(14)
	5차년도(2022년)	1.4	21.5	74.2	(17)
	6차년도(2023년)	1.5	16.3	52.8	(23)
조부모 돌봄	2차년도(2019년)	1.5	27.4	42.8	(124)
	3차년도(2020년)	1.5	23.2	34.3	(134)
	4차년도(2021년)	1.4	22.8	35.6	(161)
	5차년도(2022년)	1.5	20.5	38.1	(148)
	6차년도(2023년)	1.4	18.9	35.2	(170)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2차년도(2019년)	1.2	18.3	14.2	(19)
	3차년도(2020년)	1.5	23.9	42.8	(27)
	4차년도(2021년)	1.5	24.9	32.6	(19)
	5차년도(2022년)	1.5	19.3	31.5	(17)
	6차년도(2023년)	1.6	10.0	32.1	(18)

주: 1) 개별돌봄서비스로 부모가 아닌 사람(조부모, 친인척,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아이 도우미 등)이 가정에서 해당 아동(혹은 가구내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의미함.

2) 월평균 이용비용은 명목비용임.

3) 2019~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19~2023' 2~6차년도 원자료.

민간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가정의 민간도우미 구인 경로를 살펴보면 2022년에는 지인소개가 56.8%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기반 돌봄서비스 플랫폼은 29.4%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2023년에는 인터넷기반 돌봄서비스 플랫폼이 43.5%로 가장 많았고, 지인소개는 전년도보다 급감한 17.4%로 전년도 보다 급감하여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V-2-3〉 민간도우미 구인 경로 : 민간육아도우미 이용 가정 (2022~2023년)

단위: %, (가구)

구분	사설 인력 전문 소개소	지인소개	구직광고	인터넷기반 돌봄 서비스플랫폼	여성인력 교육·훈련기관	기타	(수)
2022년	5.9	56.8	-	29.4	-	5.9	(17)
2023년	4.3	17.4	13.0	43.5	4.3	17.4	(23)

자료: 1)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201 〈표 V-2-3〉.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나. 가정 내 부모 직접 돌봄

1) 돌봄 시간 및 미디어 활용, 양육부담

하루 평균 가정 내 양육 시간을 살펴보면, 대체로 평일에는 8시간 내외였으며, 주말의 경우 13시간 내외를 가정 내 양육을 위해 투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 내 양육 시간의 대부분은 부모가 직접 돌보는 시간으로 2023년 기준 평일 7.82시간, 주말 12.84시간을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4〉 가정 내 양육 및 부모직접돌봄 시간 변화 (2021~2023년)

단위: 시간, (가구)

구분	가정 내 양육		부모직접돌봄		(수)
	평일	주말	평일	주말	
2021년	8.14	13.20	7.79	12.95	(1,708)
2022년	8.37	13.05	8.27	13.03	(1,730)
2023년	7.99	13.00	7.82	12.84	(1,773)

주: 1) 평범한 지난 주를 기준으로 하며, 하루 평균임. 수면시간 제외.
 2) 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1)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206 (표 V-2-8).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정 내 양육과 부모직접돌봄 시간이 평일과 주말 모두 외벌이 가구에 비해 더 적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수가 적을수록 가정 내 양육과 부모직접돌봄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 연령에 따라서는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가정내 양육 및 부모직접 돌봄 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포착되었는데, 평일에 비해 주말은 자녀 연령에 따른 가정 내 양육 및 부모 돌봄 시간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V-2-5〉 가구특성별 가정 내 양육 및 부모직접돌봄 시간 (2023년)

단위: 시간, (가구)

구분	가정 내 양육		부모직접돌봄		(수)	
	평일	주말	평일	주말		
전체	7.99	13.00	7.82	12.84	(1,773)	
맞벌이 가구	맞벌이	7.51	12.93	7.14	12.70	(835)
	외벌이	8.42	13.06	8.44	12.97	(938)
여부	<i>t</i>	-5.8***	-1.0	-7.9***	-1.9	
총	1명	9.06	13.21	8.95	13.15	(628)

구분	가정 내 양육		부모직접돌봄		(수)	
	평일	주말	평일	주말		
자녀수	2명	7.44	12.92	7.27	12.73	(894)
	3명이상	7.30	12.73	6.98	12.49	(251)
	F	52.8***	3.6*	52.6***	5.6**	
아동 연령	0세(2023년생)	11.61	13.34	11.45	13.14	(154)
	1세(2022년생)	9.97	13.15	9.90	13.21	(310)
	2세(2021년생)	7.84	13.04	7.71	12.92	(299)
	3세(2020년생)	7.13	13.08	6.94	12.90	(280)
	4세(2019년생)	6.89	12.98	6.75	12.84	(274)
	5세(2018년생)	6.93	12.65	6.54	12.41	(250)
	6세(2017년생)	6.47	12.78	6.35	12.43	(206)
	F	88.5***	1.6	80***	2.6*	

주: 평범한 지난 주를 기준으로 하며, 하루 평균임. 수면시간 제외.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 $p < .05$, ** $p < .01$, *** $p < .001$.

2021년에서 2023년 사이의 영유아 자녀의 미디어 이용시간은 평일 기준 1.3시간 내외, 주말 2시간 내외였으나, 2023년은 전년에 비해 평일과 주말 모두 미디어 이용시간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6〉 영유아 자녀 미디어 이용시간 변화 (2021~2023년)

단위: 시간, (가구)

구분	평일	주말	(수)
2021년	1.31	1.99	(1,708)
2022년	1.34	2.00	(1,730)
2023년	1.16	1.78	(1,773)

주: 1) 평범한 지난 주를 기준으로 하며, 하루 평균임.
 2) 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1)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208 (표 V-2-9).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2023년 기준 자녀의 미디어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평일 1.16시간, 주말 1.78시간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인 가구의 미디어 이용시간이 평일 1.47시간, 주말 2.37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총 자녀 수가 많고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미디어 이용시간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평일의 경우 5세에서 6세, 주말의 경우 4세에서 5세를 제외하고는 아동연령이 많을수록 미디어 이용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표 V-2-7〉 가구특성별 자녀 미디어 이용시간 (2023년)

단위: 시간, (가구)

구분		평일	주말	(수)
전체		1.16	1.78	(1,773)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47	2.37	(121)
	300~399만원 이하	1.22	1.85	(445)
	400~499만원 이하	1.07	1.61	(464)
	500~599만원 이하	1.11	1.69	(342)
	600만원 이상	1.15	1.81	(401)
F		4.4**	6.5***	
총 자녀수	1명	1.01	1.41	(628)
	2명	1.19	1.87	(894)
	3명이상	1.44	2.41	(251)
	F	17***	42.6***	
지역규모	대도시	1.11	1.69	(708)
	중소도시	1.17	1.81	(840)
	읍면지역	1.32	1.98	(225)
	F	3.5*	3.2*	
아동 연령	0세(2023년생)	0.50	0.72	(154)
	1세(2022년생)	0.74	0.99	(310)
	2세(2021년생)	1.03	1.57	(299)
	3세(2020년생)	1.32	1.98	(280)
	4세(2019년생)	1.46	2.30	(274)
	5세(2018년생)	1.49	2.24	(250)
	6세(2017년생)	1.48	2.59	(206)
F		38.1***	53.9***	

주: 평범한 지난 주를 기준으로 하며, 하루 평균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 6차년도 원자료.
 * $p < .05$, ** $p < .01$, *** $p < .001$.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가정 내 부모직접돌봄 시간의 부담 정도를 살펴보면 부담 정도의 평균 점수는 3.2~3.3점으로 해마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3개년 모두 부담된다는 응답('다소 부담됨', '매우 부담됨')이 가장 많았고 '보통'이라는 의견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표 V-2-8〉 가정 내 부모직접돌봄 시간의 부담 정도 변화 (2021~2023년)

단위: %, 점, (가구)

구분	부담정도					평균 점수	(수)
	전혀 부담안됨	별로 부담안됨	보통	다소 부담됨	매우 부담됨		
2021년	3.4	20.2	29.9	36.3	10.2	3.3	(1,709)
2022년	4.7	19.4	31.7	36.1	8.2	3.2	(1,730)

구분	부담정도					평균 점수	(수)
	전혀 부담안됨	별로 부담안됨	보통	다소 부담됨	매우 부담됨		
2023년	4.2	19.6	29.9	36.6	9.6	3.3	(1,773)

주: 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_2021' 4차년도 원자료.
 2)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209 (표 V-2-10).
 3)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2023년도 가정 내 부모직접돌봄 시간의 부담 정도를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자녀수가 많을수록 부담정도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총 자녀수 1명인 가구의 경우 부담이 안 된다고 응답(‘전혀 부담안됨’, ‘별로 부담안됨’)한 비율이 32.3%, 부담이 된다고 응답(‘다소 부담됨’, ‘매우 부담됨’)한 비율이 35.5%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총 자녀수 3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 ‘부담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16.8%,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58.1%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지역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가 작은 지역의 가구일수록 ‘부담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부담이 된다’고 한 비율이 낮았다.

〈표 V-2-9〉 가구특성별 가정 내 부모직접돌봄 시간의 부담 정도 (2023년)

단위: %, 점, (가구)

구분	부담정도					평균 점수	(수)	
	전혀 부담안됨	별로 부담안됨	보통	다소 부담됨	매우 부담됨			
전체	4.2	19.6	29.9	36.6	9.6	3.3	(1,773)	
총 자녀수	1명	5.9	26.4	32.2	29.3	6.2	3.0	(628)
	2명	2.3	17.4	29.8	39.7	10.7	3.4	(894)
	3명이상	6.4	10.4	25.1	43.8	14.3	3.5	(251)
	χ^2/F	75.082***					29.9***	
지역 규모	대도시	2.5	18.8	29.7	39.7	9.3	3.3	(708)
	중소도시	4.5	19.9	28.8	36.7	10.1	3.3	(840)
	읍면지역	8.0	21.3	35.1	26.7	8.9	3.1	(225)
	χ^2/F	23.974**					6.2**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 $p < .01$, *** $p < .001$.

부모직접돌봄 시간의 부담 이유를 살펴보면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합쳐 ‘가사·육아 병행의 어려움’이 매년 60.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큰 부담 이유로 선택됐다. 다음으로 ‘체력적으로 힘들’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이는 항목이었다.

〈표 V-2-10〉 가정 내 부모직접돌봄 시간의 부담이유 (2021~2023년, 순위별)

단위: %, (가구)

구분		①양육 과정의 스트레스	②체력적으로 힘들	③가사-육아 병행의 어려움	④성인과의 교류 감소	⑤놀이줄 방법을 몰라서	⑥나만의 시간 부재	⑦기타	(수)
1순위	2021년	37.8	35.8	22.7	1.1	1.5	0.9	0.2	(1,306)
	2022년	28.8	28.7	30.9	1.3	2.1	7.8	0.4	(1,314)
	2023년	27.9	30.9	31.6	1.0	2.4	5.8	0.4	(1,351)
2순위	2021년	1.1	13.2	41.0	2.5	8.6	32.9	0.8	(1,306)
	2022년	14.4	22.5	29.3	2.5	5.3	24.7	0.5	(1,314)
	2023년	17.1	26.7	30.7	4.6	5.4	13.9	0.4	(1,351)
1+2순위	2021년	38.9	48.9	63.7	3.5	10.1	33.8	0.9	(1,306)
	2022년	43.2	51.2	60.2	3.8	7.5	32.6	0.8	(1,314)
	2023년	45.0	57.7	62.3	5.6	7.8	19.8	0.7	(1,351)

주: 1) ① 양육 과정(아이가 울거나 떼를 쓸 때)에서 생기는 스트레스 때문, ② 육아가 체력적으로 힘이 들어서, ③ 가사와 육아를 동시에 병행하기 힘들어서, ④ 육아 고민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성인들과의 교류가 줄어들어서, ⑤ 아이와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 모르겠어서, ⑥ 나만의 시간이 없어서.
 2) 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_2021' 4차년도 원자료.
 2)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211 〈표 V-2-11〉.
 3)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2023년도 가정 내 양육 부담 이유를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 과정의 스트레스' 응답이 많았으며 '체력적으로 힘들', '가사-육아 병행의 어려움', '놀이줄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은 적었다. 규모가 작은 지역의 가구일수록 '양육 과정의 스트레스' 응답이 많았고 '체력적으로 힘들'이라는 응답은 적었다.

〈표 V-2-11〉 가구특성별 가정 내 양육 부담 이유 (2023년, 1순위)

단위 : %(가구)

구분		부담 이유							(수)
		①	②	③	④	⑤	⑥	기타	
전체		27.9	30.9	31.6	1.0	2.4	5.8	0.4	(1,351)
총 자녀수	1명	26.6	36.7	24.9	0.9	3.3	6.8	0.7	(425)
	2명	27.9	29.8	34.2	0.8	2.2	4.9	0.1	(717)
	3명이상	30.6	23.0	36.4	1.4	1.0	7.2	0.5	(209)
	χ^2	27.734**							
지역 규모	대도시	25.9	32.7	30.7	0.2	2.3	7.7	0.5	(557)
	중소도시	28.2	30.4	33.1	1.6	2.4	4.1	0.3	(635)
	읍면지역	34.0	27.0	28.9	1.3	2.5	6.3	-	(159)
	χ^2	18.893							

주: ① 양육 과정(아이가 울거나 떼를 쓸 때)에서 생기는 스트레스 때문, ② 육아가 체력적으로 힘이 들어서, ③ 가사와 육아를 동시에 병행하기 힘들어서, ④ 육아 고민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성인들과의 교류가 줄어들어서, ⑤ 아이와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 모르겠어서, ⑥ 나만의 시간이 없어서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 $p < .01$.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자기기 사용을 허용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허용한다는 응답이 2022년 전체 76.0%에서 2023년 전체 71.3%로 감소했다.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전자기기 사용 허용 비율이 79.3%로 3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 69.9~71.8% 수준에서 허용하는 것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총 자녀 수별로 살펴보면 자녀수가 1명인 경우 전자기기 사용 허용 비율이 50.8%로 2명 이상인 경우에서 82.3% 이상 허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V-2-12〉 가구특성별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자기기 사용(TV, PC, 전자기기 등) 허용 여부 (2022~2023년)

단위: %, (가구)

구분		허용여부		
		그렇다	아니다	계(수)
2022년 전체		76.0	24.0	100.0 (1,730)
2023년 전체		71.3	28.7	100.0 (1,773)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79.3	20.7	100.0 (121)
	300~399만원 이하	71.0	29.0	100.0 (445)
	400~499만원 이하	70.0	30.0	100.0 (464)
	500~599만원 이하	69.9	30.1	100.0 (342)
	600만원 이상	71.8	28.2	100.0 (401)
χ^2		4.585		
총 자녀수	1명	50.8	49.2	100.0 (628)
	2명	82.3	17.7	100.0 (894)
	3명이상	83.3	16.7	100.0 (251)
	χ^2	199.670***		

주: 가구특성별 자료는 2023년 응답자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임.
 자료: 1)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212 〈표 V-2-12〉.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 $p < .001$.

2) 장난감 대여 및 도서 대여 서비스 활용

2023년 기준 장난감 대여 서비스는 8.9%, 도서 대여 서비스는 18.1%가 이용하여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서비스 이용 여부는 맞벌이 가구 여부나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자녀수가 많을수록 장난감 대여 비중은 줄어들고, 도서 대여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단, 2023년의 경우에는 장난감 대여의 경우 자녀수에 따른 차이도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021년에는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도서대여 이용율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2022년 이후 지역규모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표 V-2-13〉 가구특성별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이용여부 (2021~2023년)

단위: %, (가구)

구분		이용률						계(수) (2023)
		장난감 대여			도서 대여			
		2023	2022	2021	2023	2022	2021	
전체		8.9	6.8	6.3	18.1	16.5	13.9	100.0 (1,773)
맞벌이 가구	맞벌이	8.5	7.4	7.1	17.5	16.2	13.5	100.0 (835)
	외벌이	9.3	6.3	5.7	18.7	16.7	14.2	100.0 (938)
여부		χ^2	0.3	0.8	1.5	0.4	0.1	0.2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0.7	9.7	8.7	25.6	15.2	14.4	100.0 (121)
	300~399만원 이하	6.3	6.3	7.0	16.4	15.8	14.6	100.0 (445)
	400~499만원 이하	8.6	6.7	7.1	17.5	19.3	12.2	100.0 (464)
	500~599만원 이하	11.1	7.0	6.3	16.7	13.3	13.6	100.0 (342)
	600만원 이상	9.7	6.5	4.4	19.7	17.3	15.0	100.0 (401)
		χ^2	6.7	2.2	5.4	6.8	5.2	1.8
총 자녀수	1명	9.9	8.9	8.4	11.0	10.8	9.5	100.0 (628)
	2명	8.6	6.2	5.5	21.7	18.9	15.7	100.0 (894)
	3명이상	7.6	4.0	4.4	23.1	21.1	16.9	100.0 (251)
	χ^2	1.4	7.5*	6.5*	33.5***	21.2***	13.5**	
지역 규모	대도시	9.3	6.0	7.3	18.1	16.5	15.8	100.0 (708)
	중소도시	8.5	7.4	5.5	18.7	17.1	13.7	100.0 (840)
	읍면지역	9.3	7.3	5.6	16.0	14.3	8.7	100.0 (225)
	χ^2	0.4	1.2	2.3	0.9	1.2	7.4*	

주: 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1)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213 (표 V-2-13).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 $p < .05$, ** $p < .01$, *** $p < .001$.

장난감 대여의 이용 빈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월 1회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데 반해, 도서 대여의 이용 빈도는 장난감 대여에 비해서는 짧은 주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14〉 장난감/도서 대여 이용 빈도 (2021~2023년)

단위: %, (가구)

구분		대여 이용 빈도						계(수)
		매일	주 3~4회	주 1~2회	격주 1회	월 1회	분기별 1회	
장난감	2021년	-	-	11.2	27.1	47.7	14.0	100.0 (107)
	2022년	-	0.8	19.5	27.1	42.4	10.2	100.0 (118)
	2023년	-	-	14.6	25.3	40.5	19.6	100.0 (158)
도서	2021년	1.3	3.4	32.9	28.3	28.7	5.5	100.0 (237)

구분	대여 이용 빈도						계(수)
	매일	주 3~4회	주 1~2회	격주 1회	월 1회	분기별 1회	
2022년	1.1	3.9	35.1	22.1	31.2	6.7	100.0 (285)
2023년	0.9	2.5	29.9	29.3	32.1	5.3	100.0 (321)

주: 1) 장난감/도서 대여 서비스 이용자 기준.
 2) 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_2021' 4차년도 원자료.
 2)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213 (표 V-2-14).
 3)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장난감 대여 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21년 44.9%, 2022년 66.9%, 2023년 63.9%로 가장 많았고, 지자체(위탁기관 포함)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2021년 20.6%, 2022년 21.2%, 2023년 17.1%로 두 번째로 많았다. 도서 대여의 경우에는 공공시설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2021년 82.7%, 2022년 87.0%, 2023년 84.7%로 가장 많았다.

〈표 V-2-15〉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제공기관, 이용비용 및 만족도 (2021년~2023년)

단위: %, 만원, 점, (가구)

구분	제공기관(중복응답)							이용 비용	만족도	(수)	
	반일제 이상 기관	육아종합 지원센터	공공 시설	지자체 (위탁기관 포함)	지역 아동 센터	민간 시설 업체	기타				
장난감	2021년	2.8	44.9	13.1	20.6	3.7	19.6	-	0.9	4.1	(107)
	2022년	0.8	66.9	11.0	21.2	0.8	6.8	-	0.5	4.2	(118)
	2023년	1.3	63.9	10.8	17.1	4.4	3.8	-	0.5	4.2	(158)
도서	2021년	5.9	3.4	82.7	6.8	0.8	2.5	1.3	1.1	4.2	(237)
	2022년	7.0	6.7	87.0	3.9	-	3.9	0.4	0.1	4.4	(285)
	2023년	6.5	5.6	84.7	5.6	0.6	2.2	1.6	0.1	4.4	(321)

주: 1) 장난감/도서 대여 서비스 이용자 기준.
 2) 만족도는 '매우 만족=1'~'매우 불만족=5'로 응답된 수치를 역코딩하여 산출함.
 3) 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_2021' 4차년도 원자료.
 2)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214 (표 V-2-15).
 3)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3)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활용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10.2%로 높은 편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 6.0%까지 감소했다. 육아물품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2023년 기준 평균 3.4회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V-2-16〉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이용여부 및 횟수 (2021~2023년)

단위: %, (가구), 회, (가구)

구분	이용여부			이용횟수	
	이용함	이용안함	계(수)	평균	(수)
2021년	10.2	89.8	100.0 (1,709)	3.3	(175)
2022년	8.7	91.3	100.0 (1,730)	3.6	(150)
2023년	6.0	94.0	100.0 (1,773)	3.4	(106)

주: 1) 이용 횟수는 최근 3개월간 이용 횟수이며, 서비스 이용자 기준 평균임.

2) 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_2021' 4차년도 원자료.

2)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215 〈표 V-2-16〉.

3)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살펴보면 반일제 이상 기관이 2021년 56.0%, 2022년 62.7%, 2023년 47.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21년 22.9%, 2022년 24.0%, 2023년 28.3%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V-2-17〉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비용 및 만족도 (2021~2023년)

단위: %, 만원, 점, (가구)

구분	제공기관(중복응답)							이용 비용	만족도	(수)
	①반일제 이상 기관	②육아 종합 지원 센터	③공공 시설	④지자체 (위탁기 관 포함)	⑤지역 아동 센터	⑥민간 사설 업체	⑦기타			
2021년	56.0	22.9	10.9	9.1	2.9	9.1	2.9	1.2	4.0	(175)
2022년	62.7	24.0	6.7	5.3	4.0	8.7	0.7	1.5	4.0	(150)
2023년	47.2	28.3	12.3	7.5	7.5	7.5	1.9	1.2	4.0	(106)

주: 1) ①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③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④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 기관, ⑤ 지역아동센터, ⑥ 민간사설업체(민간기업, 사설업체).

2) 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_2021' 4차년도 원자료.

2)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216 〈표 V-2-17〉.

3)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4) 육아지원 서비스 정책 개선 요구

장난감, 도서 대여 및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여 기관이나 서비스 제공 기관 접근성이 개선되었으면'이라는 의견이 3개년 모두 5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물품/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었으면'이라는 의견이 매년 35.7% 이상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물품 품질이나 프로그램 내용이 좀 더 질적으로 개선되었으면’, ‘부모가 아이의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이나 지도서 등이 함께 제공되었으면’이라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표 V-2-18〉 장난감, 도서 대여 및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정책 방향 (2021~2023년, 1+2순위)

단위: %, (가구)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대여 기관이나 서비스 제공 기관 접근성이 개선되었으면	50.6	55.6	56.5
부모가 아이의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이나 지도서 등이 함께 제공되었으면	26.0	23.6	25.5
물품/프로그램 활용법을 쌍방향 소통이 되는 형태로 제공해 줬으면	17.9	21.2	23.5
물품 품질이나 프로그램 내용이 좀 더 질적으로 개선되었으면	33.9	36.0	34.7
물품/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었으면	35.7	36.1	36.2
소독 및 위생 관리가 철저히 되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었으면	26.9	18.6	17.5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었으면.	5.5	6.8	4.0
기타	1.7	1.4	1.1
(수)	(1,709)	(1,730)	(1,773)

- 주: 1) 중복 응답으로, 비중의 합이 100%를 초과함.
 2) 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_2021' 4차년도 원자료.
 2)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217 〈표 V-2-18〉.
 3)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다. 부모 지원 서비스

부모 지원 서비스별 이용 여부 및 이용횟수를 살펴보면 부모교육의 경우 이용경험이 2021년 7.7%에서 2023년 14.7%까지 매년 증가했으나, 이용하는 경우 이용횟수는 2.0회에서 1.5회로 감소했다. 부모상담의 경우 이용경험이 2021년 11.4%에서 2023년 21.3%까지 매년 증가했고 이용횟수는 1.4회를 유지했다. 육아멘토의 경우 이용경험은 3개년 모두 1.0% 이하로 가장 낮았지만 이용 횟수는 2.1회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2-19〉 부모 지원 서비스별 이용 여부 및 이용횟수 (2021~2023년)

단위: %, (가구), 회, (가구)

구분	이용경험여부		이용횟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부모교육	2021년	7.7 (1,709)	2.0 (131)	
	2022년	10.2 (1,730)	1.6 (177)	
	2023년	14.7 (1,773)	1.5 (260)	
부모상담	2021년	11.4 (1,709)	1.4 (194)	

V.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및 지원 요구

구분		이용경험여부		이용횟수	
육아멘토	2022년	15.0	(1,730)	1.4	(260)
	2023년	21.3	(1,773)	1.4	(377)
	2021년	0.8	(1,709)	2.3	(13)
	2022년	1.0	(1,730)	2.4	(18)
	2023년	0.7	(1,773)	2.1	(13)

주: 1) 평균 이용 횟수는 이용자 기준으로 산출.
 2) 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_2021' 4차년도 원자료.
 2)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217 (표 V-2-19).
 3)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부모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에서 가장 많은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부모상담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90% 이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두 번째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부모교육과 육아멘토 서비스에서 각각 10.4% 이상, 16.7% 이상으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표 V-2-20〉 부모 지원 서비스별 제공기관 (2021~2023년)

단위: %, (가구)

구분	부모교육			부모상담			육아멘토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64.9	72.9	79.6	90.2	92.3	90.2	38.5	50.0	46.2
육아종합지원센터	13.7	16.4	10.4	2.6	1.9	6.1	23.1	16.7	30.8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3.1	2.3	1.5	0.5	0.8	1.1	-	5.6	-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 기관	4.6	4.0	4.2	0.5	0.8	0.8	-	-	7.7
지역아동센터	0.8	1.7	1.2	0.5	1.2	-	-	5.6	-
민간사업체	6.1	0.6	1.9	3.1	2.3	1.6	-	5.6	7.7
기타	6.9	2.3	1.2	2.6	0.8	0.3	38.5	16.7	7.7
계 (수)	100.0 (131)	100.0 (177)	100.0 (260)	100.0 (194)	100.0 (260)	100.0 (377)	100.0 (13)	100.0 (18)	100.0 (13)

주: 1) 각 서비스별 이용자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2) 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_2021' 4차년도 원자료.
 2)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218 (표 V-2-20).
 3)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부모교육 서비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양육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가 2021년 71.8%, 2022년 62.1%, 2023년 58.5%로 가장 많았고, 영유아 성장 발달 관련 정보, 보호자의 역할을 제공하는 경우가 2023년 기준 각각 45.8%, 35.0%로 그 뒤를 이었다. 부모상담 서비스의 경우 영유아 성장 발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2023년 기준 80.4%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양육 방법의 경우 52.8%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육아멘토 서비스의 경우 2021년에는 영유아 성장 발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76.9%로 가장 많았고 양육 방법은 69.2%로 두 번째로 많았다. 2023년에는 양육 방법에 대한 내용이 53.8%로 가장 많았고 영유아 성장 발달 관련 정보가 46.2%로 두 번째로 많았다.

〈표 V-2-21〉 부모 지원 서비스별 내용 분야 (2021~2023년, 1+2순위)

단위: %, (가구)

구분	부모교육			부모상담			육아멘토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영유아 성장 발달 관련 정보	38.9	49.2	45.8	82.5	80.4	80.4	76.9	72.2	46.2
양육 방법	71.8	62.1	58.5	60.3	55.8	52.8	69.2	72.2	53.8
보호자의 역할	31.3	38.4	35.0	26.3	20.4	20.4	15.4	16.7	38.5
영유아의 인권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18.3	15.3	19.2	3.6	7.7	9.0	-	5.6	15.4
가족윤리 및 예절	2.3	5.1	2.7	2.1	3.5	0.8	-	5.6	15.4
가족의 건강·영양·안전교육	7.6	4.0	5.0	2.6	8.1	11.7	15.4	5.6	7.7
미디어·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6.1	3.4	7.3	1.5	1.5	3.7	15.4	5.6	15.4
부모 정서 상담 및 지원	11.5	11.9	7.7	7.7	10.4	13.3	7.7	11.0	7.7
기타	2.3	2.8	2.3	1.5	1.9	-	-	-	-
(수)	(131)	(177)	(260)	(194)	(260)	(377)	(13)	(18)	(13)

주: 1) 각 서비스별 이용자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2) 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_2021' 4차년도 원자료.
 2)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219 〈표 V-2-21〉.
 3)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부모 교육, 부모 상담, 육아 멘토 서비스 모두 2021년과 2022년에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면으로 진행되는 경우보다 많았으나, 2023년에는 대면 서비스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부모 교육과 부모 상담의 경우 유료 서비스 비중이 매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만족도는 모든 부모 지원 서비스에 대해 매년 4.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표 V-2-22〉 부모 지원 서비스의 비대면 서비스 여부, 유료여부 및 만족도 (2021~2023년)

단위: %, 점, (가구)

구분	비대면 서비스 여부			유료 여부	만족도	(수)	
	대면	비대면	대면+비대면				
부모 교육	2021년	23.7	71.8	4.6	7.6	4.1	(131)
	2022년	27.7	70.1	2.3	2.8	4.1	(177)
	2023년	72.3	23.1	4.6	1.9	4.2	(260)
부모 상담	2021년	27.3	68.6	4.1	4.6	4.0	(194)
	2022년	48.5	48.8	2.7	3.1	4.1	(260)
	2023년	67.9	23.3	8.8	1.6	4.1	(377)
육아 멘토	2021년	7.7	84.6	7.7	0.0	4.0	(13)
	2022년	38.9	50.0	11.1	11.1	4.1	(18)
	2023년	53.8	38.5	7.7	7.7	4.2	(13)

- 주: 1) 각 서비스별 이용자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2) 만족도는 '매우 만족=1'~'매우 불만족=5'로 응답된 수치를 역코딩하여 산출함.
 3) 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_2021' 4차년도 원자료.
 2)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220 〈표 V-2-22〉를 수정 보완함.
 3)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부모 지원 서비스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2021년에는 일대일 서비스 확대가 29.7%, 2022년에는 프로그램 확대가 31.1%로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에 2023년에는 이용시간 확대 혹은 변경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2-23〉 부모 지원 서비스 개선 필요사항(2021~2023년, 1+2순위)

단위: %, (가구)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일대일 서비스 확대	29.7	29.8	31.8
쌍방향 서비스 확대	10.4	10.0	13.5
프로그램 확대	30.1	31.1	31.1
서비스 제공기관 접근성 개선	28.0	24.8	22.8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지원 강화	12.1	10.7	10.8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9.8	21.6	16.7
서비스 홍보 강화	20.3	25.8	25.8
이용시간 확대 혹은 변경	26.9	29.7	33.7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7.8	11.7	10.1
기타	0.3	0.2	0.2
개선 필요사항 없음	1.9	1.6	1.4
(수)	(1,709)	(1,730)	(1,773)

- 주: 1) 각 서비스별 이용자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2) 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_2021' 4차년도 원자료.
 2)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221 〈표 V-2-23〉.
 3)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3. 육아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

가. 희망하는 육아서비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가 아닌 경우 실제로 희망하는 양육형태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1차년도(2018년)와 2차년도(2019년)에는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보는 형태의 양육을 원하는 비중이 각각 34.8%,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후에는 유치원 이용을 원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중은 3차년도(2020년) 32.5%, 6차년도(2023년) 44.1%까지 증가하였다.

〈표 V-3-1〉 어린이집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가 아닌 어린이집 이용 자녀에 대한 실제 원하는 양육형태 (2018~2023년)

단위: %, (명)

구분	유치원 이용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지원 이용	가정에서 조부모, 육아도우미 등이 부모 대신 돌봄	기타	계(수)
1차년도(2018년)	24.8	11.3	34.8	26.4	1.7	1.0	100.0 (199)
2차년도(2019년)	31.6	10.0	36.9	19.6	1.3	0.6	100.0 (166)
3차년도(2020년)	32.5	11.3	31.6	20.8	1.9	1.8	100.0 (109)
4차년도(2021년)	37.1	9.9	33.7	18.6	0.8	-	100.0 (112)
5차년도(2022년)	47.9	4.5	27.5	18.9	1.1	-	100.0 (78)
6차년도(2023년)	44.1	0.8	26.8	24.7	3.6	-	100.0 (101)

자료: 1)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222. 〈V-3-1〉.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가 아닌 경우 실제 원하는 양육형태로 양육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모든 조사기간에 걸쳐 '일을 하고 있어서'라는 이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6차년도(2023년)에는 46.9%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외에도 '집 근처에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비용 부담 때문에' 등의 다양한 이유가 있었다.

〈표 V-3-2〉 어린이집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가 아닌 어린이집 이용 자녀를 실제 원하는 양육형태로 양육하지 않는 이유 (2018~2023년)

단위: %, (명)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비용 부담 때문에	17.0	19.1	13.6	11.8	18.9	16.9
일을 하고 있어서	43.5	38.6	41.1	41.6	43.4	46.9
원하는 서비스는 대기가 길어서	2.7	7.2	9.4	11.9	6.3	8.5
집 근처에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12.6	7.4	13.0	5.3	8.7	9.1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6.3	5.7	6.5	7.8	6.4	3.4
아이를 맡길만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	3.1	8.9	5.3	4.6	1.1	1.8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	6.1	4.3	2.9	4.4	3.4	6.1
서비스 이용자격이 해당하지 않아서	0.5	0.6	1.8	0.8	2.4	0.9
기타	8.2	8.3	6.4	11.8	9.5	6.5
계(수)	100.0(199)	100.0(166)	100.0(109)	100.0(112)	100.0(78)	100.0(101)

자료: 1)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223. 〈V-3-2〉.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유치원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가 아닌 경우 실제로 희망하는 양육형태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1차년도(2018년)와 2차년도(2019년)에는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형태의 양육을 원하는 비율이 각각 40.2%,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차년도(2020년)에는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보는 형태의 양육을 원하는 비율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차년도(2021년)와 5차년도(2022년)에는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각각 53.0%,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차년도(2023년)에는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지원을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3-3〉 유치원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가 아닌 유치원 이용자녀에 대한 실제 원하는 양육형태 (2018~2023년)

단위: %, (명)

구분	어린이 집이용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지원 이용	가정에서 조부모, 육아도우미 등이 부모 대신 돌봄	기타	계(수)
1차년도(2018년)	26.8	40.2	7.9	25.1	-	-	100.0 (37)
2차년도(2019년)	27.6	28.9	23.5	12.1	3.9	4.0	100.0 (24)

구분	어린이 집이용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지원 이용	가정에서 조부모, 육아도우미 등이 부모 대신 돌봄	기타	계(수)
3차년도(2020년)	29.2	21.3	38.5	11.0	-	-	100.0 (19)
4차년도(2021년)	53.0	23.4	11.9	5.9	5.8	-	100.0 (18)
5차년도(2022년)	41.2	18.0	8.6	32.1	-	-	100.0 (22)
6차년도(2023년)	15.7	6.9	25.6	47.0	-	4.8	100.0 (18)

자료: 1)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224. <V-3-3>.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유치원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가 아닌 경우 실제 원하는 양육형태로 양육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일을 하고 있어서'라는 이유가 대체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2023년 기준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는 응답이 21.6%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V-3-4> 유치원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가 아닌 유치원 이용자녀를 원하는 양육형태로 양육하지 않는 이유 (2018~2023년)

단위: %, (명)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비용 부담 때문에	25.5	23.6	22.0	11.7	18.8	11.9
일을 하고 있어서 원하는 서비스는 대기가 길어서	30.6	27.5	38.1	23.6	18.3	42.4
집 근처에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5.2	4.2	11.0	11.9	19.8	4.8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23.3	24.3	6.1	11.5	11.0	5.0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3.1	-	6.1	-	8.6	5.6
아이를 맡길만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	4.9	8.1	5.3	-	4.1	-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	4.8	4.2	-	11.5	19.4	21.6
서비스 이용자격이 해당하지 않아서	2.6	4.0	-	-	-	-
기타	-	4.0	11.5	29.8	-	8.7
계(수)	100.0(37)	100.0(24)	100.0(19)	100.0(18)	100.0(22)	100.0(18)

자료: 1)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224. <V-3-4>.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나. 자녀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요구

1) 정부 지원 부족 부분 및 정책 범주별 개선 필요 사항

정부 지원 부족 부분을 살펴보면 양육수당 등 현금 지원에서 부족함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1차년도(2018년) 3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후에도 매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보육·교육서비스에서 부족함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1차년도(2018년) 27.9%에서 6차년도(2023년) 16.4%로 매년 감소하였으며, 6차년도(2023년)의 경우 육아휴직 등 돌봄시간 지원에 부족함을 느끼는 응답이 18.3%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표 V-3-5〉 정부 지원 부족 부분 변화 (2018~2023년)

단위: %, (가구)

구분	정부 지원 부족 부분						계(수)
	기관보육· 교육 서비스	개별 돌봄 서비스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육아휴직 등 돌봄 시간 지원	양육수당 등 현금 지원	기저귀 등 양육 물품 지원	
1차년도(2018년)	27.9	11.2	6.6	17.6	30.9	5.8	100.0 (1,648)
2차년도(2019년)	27.0	9.6	8.7	15.3	31.5	7.9	100.0 (1,665)
3차년도(2020년)	21.0	13.7	9.1	12.4	34.4	9.4	100.0 (1,679)
4차년도(2021년)	20.8	12.1	7.9	14.2	39.1	6.0	100.0 (1,708)
5차년도(2022년)	18.8	13.9	7.4	11.6	42.4	6.0	100.0 (1,730)
6차년도(2023년)	16.4	12.9	5.2	18.3	42.0	5.3	100.0 (1,773)

주: 1) 개별돌봄서비스는 부모가 아닌 사람(조부모, 친인척,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아이도우미 등)이 가정에서 해당 아동(혹은 가구내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의미함.

2) 2019~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3' 1~6차년도 원자료.

정부 지원 부족 부분을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개별 돌봄 서비스,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육아휴직 등 돌봄시간 지원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가 외벌이 가구보다 높았으며, 외벌이 가구의 경우 양육수당 등 현금 지원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가 맞벌이 가구보다 높았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개별 돌봄 서비스,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육아휴직 등 돌봄시간 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양육수당 등 현금 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다. 총 자녀수별로 살펴보면 자녀수가 많을수록 기관보육·교육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으며 반면 양육수당 등 현금 지원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지역규모별로는 지역규모가 클수록 오히려 기관보육·교육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기저귀 등 양육 물품 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았다.

〈표 V-3-6〉 가구특성별 정부 지원 부족 부분 (2023년)

단위: %, (가구)

구분	정부 지원 부족 부분						계(수)	
	기관보육·교육 서비스	개별 돌봄 서비스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육아휴직 등 돌봄 시간 지원	양육수당 등 현금 지원	기저귀 등 양육 물품 지원		
전체	16.4	12.9	5.2	18.3	42.0	5.3	100.0 (1,773)	
맞벌이 가구	맞벌이	14.6	13.8	5.7	21.6	39.0	5.3	100.0 (835)
	외벌이	17.9	12.0	4.7	15.5	44.6	5.3	100.0 (938)
여부	χ^2	17.091**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2.4	9.9	4.1	9.9	55.4	8.3	100.0 (121)
	300~399만원	18.7	11.5	4.3	13.5	47.2	4.9	100.0 (445)
	400~499만원	14.7	11.6	4.7	18.3	45.9	4.7	100.0 (464)
	500~599만원	17.3	12.9	5.8	20.2	38.9	5.0	100.0 (342)
	600만원 이상	16.2	16.7	6.5	24.7	30.2	5.7	100.0 (401)
	χ^2	59.287***						
총 자녀수	1명	18.6	13.5	5.3	20.7	37.1	4.8	100.0 (628)
	2명	16.2	12.5	5.3	16.4	43.8	5.7	100.0 (894)
	3명이상	11.2	12.4	4.8	19.1	47.4	5.2	100.0 (251)
	χ^2	17.014						
지역 규모	대도시	18.9	14.4	5.1	19.1	38.7	3.8	100.0 (708)
	중소도시	15.5	11.8	5.0	17.3	45.0	5.5	100.0 (840)
	읍면지역	11.6	12.0	6.2	20.0	40.9	9.3	100.0 (225)
	χ^2	23.847**						

주: 개별돌봄서비스는 부모가 아닌 사람(조부모, 친인척,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아이도우미 등)이 가정에서 해당 아동(혹은 가구내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 $p < .01$, *** $p < .001$.

기관보육·교육서비스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개선되어야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다고 한 의견이 매년 50.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유치원·어린이집 영유아 인구 수 대비 적정 설치 및 확충으로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년 두 번째로 많았다.

〈표 V-3-7〉 기관보육·교육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18~2023년)

단위: %, (가구)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유치원·어린이집 영유아 인구 수 대비 적정 설치 및 확충으로 접근성 제고	18.3	20.9	22.7	12.1	16.9	19.3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	50.2	53.1	49.7	52.5	51.4	49.3
보육료·교육비 지원 안정화	9.3	9.3	9.4	8.7	8.3	10.7
시설 등 물리적 환경 개선	2.6	4.2	2.8	6.2	3.1	1.7
보육·교육과정(표준교육과정, 누리과정) 개선	4.6	2.9	3.4	3.9	3.4	1.7
인력 지원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감축	8.3	4.2	6.5	9.0	7.7	8.3
아동학대 등 근절	5.2	2.7	3.7	5.9	7.4	3.1
부모 참여 프로그램 확대	0.2	0.4	-	-	0.3	2.4
기타	1.1	1.1	0.9	0.6	1.2	0.7
개선할 부분 없음	0.2	1.1	0.9	1.1	0.3	2.8
계(수)	100.0 (460)	100.0 (450)	100.0 (352)	100.0 (356)	100.0 (325)	100.0 (290)

주: 2019~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1)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227. <V-3-6>.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19~2021' 2~4차년도 원자료.
 3)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개별돌봄서비스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2차년도(2019년)를 제외하고는 공공 개별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매년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공 개별돌봄 인력 양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표 V-3-8〉 개별돌봄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18~2023년)

단위: %, (가구)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공공 개별돌봄인력 양성 확대	29.3	30.6	21.3	20.3	22.5	22.4
공공 개별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확대	33.2	29.4	35.7	33.8	34.2	32.5
공공 개별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수준 제고	10.3	7.5	7.8	9.7	13.3	9.2
공공 개별돌봄서비스의 유형 다양화	9.8	10.6	17.8	16.9	9.2	15.8
공공 개별돌봄인력의 전문성 제고	7.1	13.1	8.3	11.6	11.7	11.8
긴급 돌봄에 대한 대응성 제고	9.8	6.9	7.8	6.3	8.3	7.9
기타	-	1.3	0.4	1.0	0.4	0.4
개선할 부분 없음	0.5	0.6	0.9	0.5	0.4	-
계(수)	100.0 (184)	100.0 (160)	100.0 (230)	100.0 (207)	100.0 (240)	100.0 (228)

주: 2019~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1)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228. <V-3-7>.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19~2021' 2~4차년도 원자료.
 3)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개선 필요 부분으로는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서비스 이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매년 높은 비중을 보이며 특별히 경향성에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V-3-9〉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18~2023년)

단위: %, (가구)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서비스의 다양성 확대	29.4	30.3	41.2	36.6	36.7	41.3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29.4	30.3	35.9	29.9	35.9	29.3
서비스 수준 제고	21.1	15.2	9.8	11.2	9.4	13.0
적극적 홍보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인지도 제고	19.3	20.7	11.8	18.7	17.2	14.1
기타	0.9	3.4	1.3	3.0	0.8	2.2
개선할 부분 없음	-	-	-	0.7	-	-
계(수)	100.0 (109)	100.0 (145)	100.0 (153)	100.0 (134)	100.0 (128)	100.0 (92)

주: 2019~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1)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229. 〈V-3-8〉.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19~2021’ 2~4차년도 원자료.
 3)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부모의 돌봄시간 지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매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높은 비중을 보였는데, 2019년에는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한, 제도 이용의 일부 자동화·강제화가 필요하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2020년에는 15.4%만이 응답하였으나, 2021년 이후 비중이 증가하여, 6차년도(2023년)에는 23.4%가 이에 응답하며,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V-3-10〉 부모의 돌봄 시간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18~2023년)

단위: %, (가구)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급여 수준 제고	12.4	18.9	16.8	12.0	14.5	13.2
근로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복직(휴가 사용), 승급 등 인사관련 수준의 명확한 기준 설정	14.5	7.5	7.7	7.9	11.5	9.5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홍보 강화)	32.8	25.6	28.8	29.8	25.5	24.6
제도 이용의 일부 자동화·강제화	19.0	12.6	15.4	22.3	21.0	23.4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 지원 강화	16.2	28.0	23.1	16.9	20.5	20.6
이용 대상 자녀 연령기준 상향	-	2.0	2.4	4.1	-	3.1

V.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및 지원 요구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서비스 다양성 강화	4.5	3.9	4.8	6.2	6.0	3.7
기타	0.7	1.6	1.0	0.4	1.0	1.2
개선할 부분 없음	-	-	-	0.4	-	0.6
계(수)	100.0 (290)	100.0 (254)	100.0 (208)	100.0 (242)	100.0 (200)	100.0 (325)

주: 2019~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1)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230. <V-3-9>.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19~2021' 2~4차년도 원자료.
 3)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매년 '현금 지원 수준에 대해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양육 비용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필요성과 '자녀 연령별 양육비 소요 핵심 범주 집중 양육비 제공'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표 V-3-11>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18~2023년)

구분	단위: %, (가구)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현금 지원 수준 제고	30.5	30.7	44.6	46.0	48.5	46.1
자격 충족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되는 시스템	17.9	13.3	10.0	8.5	8.2	7.0
양육 비용 지원 대상 확대	25.5	28.2	22.5	24.0	21.0	25.3
자녀 연령별 양육비 소요 핵심범주 집중 양육비 제공	25.1	25.9	21.5	21.0	21.9	21.2
기타	0.8	1.5	0.9	0.3	0.3	0.3
개선할 부분 없음	0.2	0.4	0.5	0.1	0.1	0.1
계(수)	100.0 (509)	100.0 (525)	100.0 (578)	100.0 (667)	100.0 (734)	100.0 (744)

주: 2019~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1)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231. <V-3-10>.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19~2021' 2~4차년도 원자료.
 3)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양육물품 지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구체적인 개선 항목으로는 '지원 자격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든 기간에 걸쳐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9-2021년에는 물품 지원 서비스 분야 다양화 요구가 높았던데 반해, 2022년에는 물품 지원량을 실제 필요량 수준으로 높여달라는 요구가 많았고, 2023년에는 지원 자격 기준 확대 요구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표 V-3-12〉 양육물품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18~2023년)

단위: %, (가구)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물품 지원 서비스 분야 다양화	17.7	29.8	28.5	30.4	17.5	17.0
물품 지원량 실제 필요량 수준으로 제고	12.5	13.7	22.2	17.6	26.2	18.1
서비스 홍보 강화	13.5	9.9	10.1	6.9	5.8	2.1
물품 당 지원 기간 연장	9.4	4.6	5.1	8.8	9.7	17.0
지원 자격기준 확대	30.2	26.0	20.3	21.6	26.2	33.0
물품지원 전달체계의 접근성 확대	16.7	14.5	12.7	13.7	10.7	9.6
기타	-	0.8	-	1.0	1.9	2.1
개선할 부분 없음	-	0.8	1.3	-	1.9	1.1
계(수)	100.0 (96)	100.0 (131)	100.0 (158)	100.0 (102)	100.0 (103)	100.0 (94)

주: 2019~2021년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1)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233. 〈V-3-12〉.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19~2021' 2~4차년도 원자료.
 3)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2) 육아지원 부족 시기 및 개선 필요 정책 범주

육아 지원이 부족한 시기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10.9%가 임신·출산 시기에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32.4%가 영아기(출생~24개월 이하), 56.7%가 유아기(24개월~초등학교 입학 전)라고 응답했다.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자녀의 유아기에는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육아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임신·출산 시기에 소득 300~399만원 이하 가구가 육아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유아기에는 소득 299만원 이하 가구가 육아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가 작은 지역의 가구일수록 영아기에 육아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V-3-13〉 가구특성별 육아지원 부족한 시기 (2023년)

단위: %, (가구)

구분	부족한 시기			계(수)	
	임신·출산 시기	영아기(출생~24개월 이하)	유아기(24개월~초등학교 입학 전)		
전체	10.9	32.4	56.7	100.0 (1,77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7.8	31.4	60.8	100.0 (835)
	외벌이	13.6	33.4	53.0	100.0 (938)
	χ^2	19.290***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9.1	28.9	62.0	100.0 (121)
	300~399만원 이하	14.4	32.8	52.8	100.0 (445)

구분	부족한 시기				계(수)
	임신·출산 시기	영아기(출생~24개월 이하)	유아기(24개월~초등학교 입학 전)		
총 자녀수	400~499만원 이하	9.9	34.5	55.6	100.0 (464)
	500~599만원 이하	9.6	31.9	58.5	100.0 (342)
	600만원 이상	9.7	31.2	59.1	100.0 (401)
	χ^2	10.526			
	1명	17.4	36.9	45.7	100.0 (628)
지역규모	2명	7.6	28.4	64.0	100.0 (894)
	3명이상	6.4	35.5	58.2	100.0 (251)
	χ^2	68.650***			
지역규모	대도시	10.7	30.8	58.5	100.0 (708)
	중소도시	9.8	33.0	57.3	100.0 (840)
	읍면지역	15.6	35.6	48.9	100.0 (225)
	χ^2	9.700*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 $p < .05$, *** $p < .001$.

시기별 부족한 육아지원을 살펴보면 임신·출산기에는 비용지원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2년 70.6%, 2023년 80.8%로 가장 높았다. 영아기에는 비용지원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2년 47.7%, 2023년 54.3%로 가장 높긴 했으나, 임신·출산기에 비하면 많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영아기에는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2년 28.7%, 2023년 18.4%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영아기의 경우 다른 시기에 비해 시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7.7%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유아기에도 비용지원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2022년 65.2%, 2023년 72.4%를 차지했다. 즉, 임신·출산기 뿐 아니라 영유아 전체적으로 비용 지원에 선호가 높은 특징을 보이나, 영아기의 경우에는 시간지원이나 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가 다른 시기보다는 좀 더 높은 시기임을 알 수 있었다.

〈표 V-3-14〉 시기별 부족한 육아지원 범주 (2022~2023년)

단위: %, (가구)

구분		지원 부족으로 개선이 필요한 범주				계(수)
		비용지원	서비스지원	물품지원	시간지원	
임신·출산기	2022년	70.6	16.3	9.5	3.6	100.0 (221)
	2023년	80.8	11.9	4.7	2.6	100.0 (193)
영아기	2022년	47.7	28.7	14.1	9.5	100.0 (453)
	2023년	54.3	18.4	9.6	17.7	100.0 (575)

구분		지원 부족으로 개선이 필요한 범주				
		비용지원	서비스지원	물품지원	시간지원	계(수)
유아기	2022년	65.2	16.0	4.3	14.5	100.0 (1,056)
	2023년	72.4	13.0	1.9	12.6	100.0 (1,005)

주: 각 시기가 가장 육아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개선 필요 범주를 질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2~2023' 5~6차년도 원자료.

3) 영유아 가구 비용 지원 정책 만족도

비용 지원 정책의 수혜여부 및 만족도를 살펴보면 유치원 비용의 경우 51.0%가 지원을 받았고 만족도 평균은 4.0점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비용의 경우 93.9%가 지원을 받았고 만족도 평균 점수는 4.2점으로 나타났다. 양육수당(영아수당 포함)의 경우 85.9%가 수혜를 받았고, 만족도 평균점수는 3.8점이었고, 부모급여의 경우 99.1%가 수혜를 받았고 만족도 평균점수 4.1점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의 경우 응답자 전체가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만족도 평균 점수는 가장 낮은 3.7점으로 나타났다. 첫만남 이용권 역시 응답자 전체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 평균점수는 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3-15〉 비용 지원 정책 수혜여부 및 만족도 (2023년)

단위: %, 점, (가구)

구분	수급율	만족도							계(수)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모름/무응답	평균 점수	
유치원 비용 지원	51.0	25.1	57.7	8.7	6.3	2.1	-	4.0	100.0 (804)
어린이집 비용 지원	93.9	32.7	56.4	7.2	3.2	0.5	-	4.2	100.0 (1,482)
양육수당 (영아수당 포함)	85.9	19.3	53.4	16.7	7.6	3.0	-	3.8	100.0 (1,355)
부모급여	99.1	37.0	48.5	7.2	3.9	3.5	-	4.1	100.0 (460)
아동수당	100.0	18.7	47.4	20.8	9.9	3.1	-	3.7	100.0 (1,773)
첫만남 이용권	100.0	48.5	39.7	4.1	6.3	1.5	-	4.3	100.0 (464)

- 주: 1) 수급율은 해당 제도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이 있는 가구를 분모로 하여 산출함.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 양육수당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2021년 이전 출생한 아동이 있는 1,578가구를 기준으로, 부모급여와 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이 있는 464 가구를 기준으로 산출함
 2) 첫만남 이용권은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만 수혜한 것으로 간주함.
 3) 만족도 점수는 '매우 만족=1점'~'매우 불만족=5점'으로 측정하여 역코딩하여 산출함. 만족도 점수 산출시 '모름/무응답' 사례는 제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4. 소결

V장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일제 이상 기관 미이용 비율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전년대비 약 9%포인트 가량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예년 수준으로 복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단, 2021년대비 2022년과 2023년 반일제이상 기관 미이용 비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과 2023년 도입된 부모급여 제도의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사료된다.

둘째, 반일제 이상 기관, 즉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의 특별활동 혹은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율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 42%대의 낮은 이용율을 보이지만, 2023년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율은 73.9%, 유치원 84.7%로 높은 이용율을 보였다.

셋째, 반일제이상 기관 주당 평균 이용 시간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대체로 주당 35시간 내외, 반일제이상 학원은 30시간 내외의 이용 시간을 보였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에는 어린이집 이용율은 낮았으나, 일단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긴(주당 37.5시간) 특징을 보였다. 이는 다른 교육·보육서비스의 이용에 제한에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사료된다.

넷째, 2023년 기준 어린이집 이용비용은 7만6천원으로 전년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을 보였다. 유치원 이용비용 또한 2023년 13만3천원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상승하지 않고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 비용은 2018년(57만2천원) 대비 2023년(125만1천원)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섯째, 영유아 가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제 교육은 단시간 학원으로, 2023년 기준 전체 영유아 중 23.1%가 단시간 학원을 이용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방문형 학습지가 12.2%, 문화센터 10.4%가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¹⁰²⁾. 시간제 교육기관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59.3%에 달하여, 시간제 교육을 이용하는 가구가 중복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102) 중복 이용을 포함함.

여섯째, 단시간 학원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은 주로 체육(62.3%), 미술(34.9%) 등의 예체능 과목을 주로 수강하였으며, 방문형 학습지의 경우에는 한글(41.7%), 수학 및 과학(28.6%)이 주를 이뤘다. 한편 교육용 온라인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영어(27.5%), 한글(25.1%)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았다. 즉, 교과목에 따라 이용하는 서비스의 종류가 약간씩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일곱째, 시간제 교육 이용 시간은 2023년 기준 단시간 학원 주당 4.2시간, 방문형 학습지 0.6시간, 개인 및 그룹지도 2.2시간 등으로 이용시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교육 월평균 이용비용은 2023년 기준 개인 및 그룹지도 20만 5천원, 단시간 학원이 19만7천원,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이 13만1천원 순이었다.

여덟째, 시간제 일시보육은 2% 이하의 낮은 이용율을 보였으며, 키즈카페는 50% 이상의 높은 이용율을 보였다. 비정기 체험활동은 20%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율이 높은 편인 키즈카페의 경우 주요 이용 사유로는 ‘아이가 좋아해서’가 1차년도부터 가장 주된 이유로 꼽혔다.

아홉째,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2023년 기준 14.9%(265가구)로, 그 중 67.2%가 조부모가 돌봐주는 경우였으며,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경우가 32.8%였다. 2023년 기준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이용 비중이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상승하며,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열째, 가정내 양육 및 부모직접돌봄시간은 평일 8시간 내외, 주말 13시간 내외로 전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영유아 자녀의 미디어 이용시간은 2023년 기준 평일 1.16시간, 주말 1.78시간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열한째, 장난감 대여 및 도서 대여 서비스 이용율은 전년대비 2023년 소폭 증가하였다. 도서 대여서비스 이용율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성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육아 물품 지원서비스 이용 비율은 2021년 10.2%에서 2023년 6.0%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열둘째, 부모교육, 부모상담 등 부모 지원 서비스 이용율은 2021년 조사 이래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가 발견되었다. 단, 육아멘토 서비스의 이용율은 해마다 1% 미만으로 이용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교육 서비스의 내용 중 가장 이용율이 높은 것은 양육방법에 대한 것이었으며, 그 다음이 영유아 성장 발달 관련 정보 순이었다. 부모 상담의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장 발달 관련 정보 제공이

8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다음이 양육 방법(52.8%) 순이었다.

열셋째,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지만 원하는 양육 형태가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 유치원 이용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2023년 기준 44.1%),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원하는 양육 형태가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이 47.0%로 가장 높았다. 단, 후자는 응답자가 18명에 불과하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열넷째, 정부 지원이 부족한 부분으로 양육수당 등 현금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2022년 이전까지는 기관보육·교육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두 번째를 차지했으나, 2023년에는 육아휴직 등 돌봄시간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18.3%)이 증가하면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2023년 순위가 상승한 부모 돌봄 시간 지원 개선 필요 부분은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24.6%)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제도 이용의 일부 자동화·강제화(23.4%)가 다음을 이었다.

VI

저출생 대응 및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 임산부, 무자녀, 영유아 가구 비교

- 01 육아시간 지원 정책 활용 현황 및 개선 요구
- 02 주거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정책적 요구
- 03 출산 의향 및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의견
- 04 소결

VI. 저출생 대응 및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 임신부, 무자녀, 영유아 가구 비교

VI장은 저출생 대응 및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과 관련된 주요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의 본조사(영유아 가구) 뿐 아니라 부스터표본(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 조사의 결과를 함께 제시하여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다만, 해당 응답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문항(예 : 출산 의향별로 다른 설문이 진행된 경우 등)은 해당 표본의 분석 결과만을 별도로 제시하였다. 각 절은 육아시간 지원 정책 활용 현황 및 개선 요구, 주거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정책적 요구, 출산 의향 및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도 임신부 정책에 대한 인지 등을 질문한 결과가 원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보고서 가독성 및 지면 관계상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음을 주지하는 바이다.

1. 육아시간 지원 정책 활용 현황 및 개선 요구

가. 출산 및 육아휴직 등(영유아 가구, 임신부 가구)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이용 경험과 계획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유아 가구의 실제 이용 경험에 비해 임신부 가구의 경우 이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임신부 가구 부의 응답을 보면 출산휴가를 계획한 경우가 56.0%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육아휴직은 3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4.3%로 나타난 반면, 영유아 가구의 2023년 이용 경험 비중을 보면 출산휴가는 10.1%, 육아휴직은 4.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로 나타났다. 임신부 가구 모의 응답 역시 출산휴가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경우는 86.0%, 육아휴직은 72.4%에 달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것다는 계획도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유아 가구 모의 실제 이용 경험을 보면 출산휴가는 25.0%, 육아휴직은 3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3%로 낮게 나타났다.

〈표 VI-1-1〉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이용 경험 : 영유아 가구 및 임신부 가구

단위: %, (가구)

구분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있음	없음	(수)	이용중	계획 있음	계획 없음	(수)	
부	출산휴가	10.1	89.9	(1,432)	0.2	56.0	43.7	(450)
	육아휴직	4.1	95.9	(1,432)	1.8	32.3	65.9	(45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	98.0	(1,432)	1.0	24.3	74.6	(450)
모	출산휴가	25.0	75.0	(648)	2.0	86.0	12.0	(355)
	육아휴직	31.2	68.8	(648)	10.8	72.4	16.8	(35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8.3	91.7	(648)	7.1	54.6	38.3	(355)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가구 부모의 휴가휴직 이용경험을 종단적으로 살펴보면 이용율이 증가했다는 것이 확인된다. 즉, 출산휴가에 대한 부의 이용경험은 4차년도 6.7%에서 6차년도에는 10.1%로 증가했으며, 육아휴직의 경우도 4차 2.8%에서 6차년도에는 4.1%로 증가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도 4차년도에는 1.6%에서 6차년도에는 2.0%로 증가하였다. 모의 이용경험 역시 모두 증가하여 출산휴가는 4차년도에 13.6%에서 6차년도 25.0%로 증가했으며, 육아휴직은 4차년도 18.6%에서 6차년도 31.2%로 증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4차년도 6.7%에서 6차년도에는 8.3%로 증가하였다.

〈표 VI-1-2〉 부모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 경험(2021~2023년) : 영유아 가구

단위: %

구분	부			모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출산휴가	6.7	8.9	10.1	13.6	15.9	25.0
육아휴직	2.8	3.6	4.1	18.6	21.8	3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6	0.8	2.0	6.7	5.8	8.3

주: 1) 부, 모 중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임금 근로자로 일자리가 있었던 사례 부 1,432명, 모 1,125명의 응답 결과임.

2) 이정원 외(2022). p.104 〈표 Ⅲ-3-15〉의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함.

자료: 1) 이정원 외(2022). p.104 〈표 Ⅲ-3-15〉.

2)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 집단을 대상으로 단축 후의 근로시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부의 경우 영유아 가구는 평균 33.1시간, 임신부 가구는 31.6시간이며, 모의 경우 영유아 가구는 31.9시간, 임신부 가구는 30.4시간으로 나타났다.

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결과 30~33시간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부가 모보다 최종 근무시간이 다소 긴 가운데 영유아 가구보다는 임신부 가구의 근로시간이 더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VI-1-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종 근로한 시간(2023년: 주당) : 영유아 가구 및 임신부 가구
단위: %, 시간, (가구)

구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종 근로한 시간(주당)						평균 시간	(수)	
	15시간 이하	15~20시간 미만	20~25시간 미만	25~30시간 미만	30~35시간 미만	35시간 이상			
부	영유아 가구	-	-	-	7.1	42.9	50.0	33.1	(28)
	임산부 가구	-	7.6	1.9	1.9	33.3	55.2	31.6	(110)
모	영유아 가구	3.7	-	1.9	1.9	57.4	35.2	31.9	(54)
	임산부 가구	-	4.8	9.5	3.2	42.3	40.2	30.4	(193)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종 근로한 시간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다음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도움 정도 점수를 분석한 결과이다. 임신부 가구 중 현재 이용하지 않으나 이용계획이 있는 가구에게는 예상되는 도움 정도를 질문하였다. 분석 결과 세 개 제도 모두 4.5점 이상으로 도움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 가구의 부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도움 정도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임신부 가구의 부는 출산휴가에 대한 도움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I-1-4〉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도움정도 : 영유아 가구 및 임신부 가구
단위 : 점, (가구)

구분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평균 점수	(수)	평균 점수	(수)	평균 점수	(수)	
부	영유아 가구	4.4	(144)	4.5	(59)	4.8	(28)
	임산부 가구	4.6	(253)	4.5	(153)	4.5	(114)
모	영유아 가구	4.8	(162)	4.8	(202)	4.8	(54)
	임산부 가구	4.6	(312)	4.6	(295)	4.5	(219)

주: 1)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2) 임신부 가구 이용가구에게는 도움정도의 예상을 물었고, 이용 계획이 있는 가구에는 도움정도를 질문하였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다음으로 출산휴가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이용 계획이 없는 임산부 가구에게는 이용하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영유아 가구 부의 경우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의 응답 비중이 46.7%로 가장 높고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 22.7%,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12.9%로 나타났다. 임산부 가구 부의 경우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의 응답 비중이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의 응답 비중이 23.3%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18.1%, '나중에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의 응답도 14.5%로 높은 비중으로 확인되었다.

모의 경우도 영유아 가구의 경우 부와 응답 비중의 정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임산부 가구의 모는 응답 비중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사용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의 응답 비중이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의 응답 비중 26.7%에 이어 22.7%로 높게 나타나 제도 이용이 근속해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5〉 출산휴가를 이용하지 않은/않으려는 주된 이유 : 영유아 가구 및 임산부 가구

단위 : %, (가구)

구분	부		모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이용하지 않은/않으려는 이유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	22.7	23.3	24.3	26.7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12.9	2.4	18.7	9.4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8.5	29.9	5.8	7.0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5.7	18.1	5.3	2.4
	나중에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승진 등)	2.2	14.5	1.6	2.1
	사용 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1.1	4.1	1.4	22.7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46.7	6.0	40.5	2.4
	출산 후에는 일을 그만둘 예정이라서	-	-	-	18.7
	기타	0.2	1.7	2.3	8.5
(수)	(1,288)	(197)	(486)	(43)	

주: 1) 영유아 가구는 '이용하지 않은 이유'이며, 임산부 가구는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질문하였음.

2) 영유아 가구에게는 '출산 후에는 일을 그만둘 예정이라서'는 보기에 없었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이용 계획이 없는 임산부 가구에게는 이용하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유아 가구의 부는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의 응답 비중이 45.3%로 가장 높았으며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 22.3%,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산부 가구 부의 경우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나중에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승진 등)’의 응답 비중이 모두 20%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즉, 임신부 가구 부의 경우 이 용시 차별이나 소득감소에 대한 우려로 육아휴직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영유아 가구의 모의 경우도 영유아 가구의 부와 비슷하게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의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임신부 가구의 모의 경우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가 2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용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도 19.9%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출산 후에는 일을 그만둘 예정이라서’의 응답 비중은 13.4%로 나타났다.

〈표 VI-1-6〉 육아휴직을 이용하지 않은/않으려는 주된 이유 : 영유아 가구 및 임신부 가구

단위 : %, (가구)

구분	부		모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이용하지 않은/ 않으려는 이유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	22.3	18.8	25.8	27.1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9.6	1.7	16.6	7.6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10.1	24.8	6.7	7.8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7.6	23.4	5.4	12.9
	나중에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승진 등)	3.4	20.1	2.5	3.4
	사용 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1.5	5.7	1.3	19.9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45.3	4.0	38.8	-
	출산 후에는 일을 그만둘 예정이라서		0.3		13.4
	기타	0.4	1.2	2.9	7.8
	(수)	(1,373)	(296)	(446)	(60)

주: 1) 영유아 가구는 ‘이용하지 않은 이유’이며, 임신부 가구는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질문하였음.

2) 영유아 가구에게는 ‘출산 후에는 일을 그만둘 예정이라서’는 보기에 없었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이용 계획이 없는 임신부 가구에게는 이용하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를 분석한 결과 영유아 가구의 부의 경우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44.7%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의 응답 비중이 25.4%로 높았다. 임신부 가구의 부 역시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의 응답 비중이 28.1%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25.8%,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18.2%, ‘나중에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승진 등)’ 16.8%로 높게 나타나 소득감소와 부정적인 회사 분위기를 의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유아 가구의 모의 경우도 부와 마찬가지로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40.1%로 가장 높았으며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의 응답 비중이 25.9%로 높게 나타났다. 임신부 가구의 모도 부와 비슷하게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와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도 각각 26.3%, 23.9%로 높게 나타났다. 단, 임신부 가구의 모는 ‘사용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의 응답 비중도 11.6%로 높았다.

〈표 VI-1-7〉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지 않은/않으려는 주된 이유 : 영유아 가구 및 임신부 가구
단위 : %, (가구)

구분	부		모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이용하지 않은/ 않으려는 이유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	25.4	28.1	25.9	23.9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8.5	1.7	11.6	3.9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9.3	25.8	9.9	26.3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7.5	18.2	6.1	11.2
	나중에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승진 등)	2.9	16.8	2.4	7.5
	사용 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1.4	3.2	1.3	11.6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44.7	4.9	40.1	3.0
	출산 후에는 일을 그만둘 예정이라서		-		8.1
	기타	0.3	1.4	2.7	4.6
(수)	(1,404)	(336)	(594)	(136)	

주: 1) 영유아 가구는 ‘이용하지 않은 이유’이며, 임신부 가구는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질문하였음.
2) 영유아 가구에게는 ‘출산 후에는 일을 그만둘 예정이라서’는 보기에 없었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또는 이용계획이 없는 이유에 대해 영유아 가구의 경우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거나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과 달리 임신부 가구의 경우 제도 이용시의 소득감소나 직장에서의 차별과 눈치로 인해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계획이 없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또한 임신부 여성의 경우 사용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응답 비중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경우 약 20%,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약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가족돌봄제도(영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제도의 이용 경험에 대해 분석한 2023년의 6차년도 조사 결과를 보면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한 부는 0.5%, 모는 0.8%이었다. 가족돌봄휴가의 이용 경험 비중은 가족돌봄휴직보다는 높아서 부는 3.4%, 모는 5.1%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VI-1-8〉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이용 경험: 영유아 가구

단위: %, (가구)

구분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있음	없음	(수)	있음	없음	(수)
부	0.5	99.5	(1,432)	3.4	96.6	(1,432)
모	0.8	99.2	(648)	5.1	94.9	(648)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제도의 이용 경험을 4~6차년도 자료로 종단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돌봄휴직은 부의 경우 4차년도 1.0%, 5차년도와 6차년도는 0.5%로 나타났으며, 모의 경우 4차년도 2.1%, 5차년도 1.0%, 6차년도 0.8%로 나타나,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던 4차년도(2021년)에 이용 비중이 높은 것이 확인된다. 반면 가족돌봄휴가는 증가 양상을 보인다. 부의 경우 4차년도 1.9%에서 4차 2.1%, 6차년도에는 3.4%까지 증가했으며, 모의 경우 4차년도 3.1%, 5차년도 4.2%, 6차년도에는 5.1%까지 증가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역시 부모 모두 5차년도에 비해 6차년도에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표 VI-1-9〉 부모의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 경험 (2021~2023년) : 영유아 가구

단위: %

구분	부			모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가족돌봄휴직	1.0	0.5	0.5	2.1	1.0	0.8
가족돌봄휴가	1.9	2.1	3.4	3.1	4.2	5.1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	0.6	1.1	-	1.5	4.0

자료: 1) 이정원 외(2022). p.104 〈표 III-3-15〉.

2)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종 근로한 시간(2023년 주당)은 부의 경우 29.5시간, 모는 28.8시간으로 모가 1시간 정도 부모보다 짧게 나타났다. 범주로 보면 25~30시간 근무가 부모 모두 90% 이상으로 다수를 차지하며 부의 경우 20~25시간 구간 이용 비중이 6.3%, 모는 15시간 이하의 단시간 근무 비중이 7.7%로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표 VI-1-10〉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종 근로한 시간(2023년: 주당) : 영유아 가구

단위: %, 시간, (가구)

구분	15시간 이하	15~20시간	20~25시간	25~30시간	30~35시간	35시간 초과	평균 시간	(수)
부	-	-	6.3	93.8	-	-	29.5	(16)
모	7.7	-	-	92.3	-	-	28.8	(26)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종 근로한 시간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다음으로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도움 정도 점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족돌봄휴직과 휴가, 근로시간 단축제도 모두에 4점 이상으로 도움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수가 매우 소수인 것을 고려해야 하나 모의 경우 가족돌봄휴직에 대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있었다.

〈표 VI-1-11〉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움정도 : 영유아 가구

단위: %, 점, (가구)

구분		도움정도					평균 점수	(수)
		매우 도움됨	약간 도움됨	보통	별로 도움되지 않음	전혀 도움되지 않음		
가족돌봄휴직	부	85.7	14.3	-	-	-	4.9	(7)
	모	60.0	20.0	-	-	20.0	4.0	(5)
가족돌봄휴가	부	68.8	27.1	4.2	-	-	4.6	(48)
	모	69.7	21.2	9.1	-	-	4.6	(33)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부	93.8	-	6.3	-	-	4.9	(16)
	모	84.6	11.5	-	3.8	-	4.8	(26)

주: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이어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미이용자 대상으로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의 응답 비중이 40% 가량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의 응답 비중이 30% 가량으로 나타났다.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의 응답 비중도 각각 10% 가량으로 확인되었다.

〈표 VI-1-12〉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 : 영유아 가구

단위 : %, (가구)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부	모	부	모	부	모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	29.1	29.6	29.3	29.7	29.2	30.3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7.2	10.6	7.3	10.6	7.3	9.8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8.4	9.3	8.4	9.5	8.5	10.3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5.3	6.1	5.0	5.2	5.5	5.5
나중에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승진 등)	2.9	1.9	3.1	1.8	3.0	1.8
사용 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1.3	1.2	1.2	1.1	1.2	1.3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45.3	39.1	45.0	39.4	44.7	38.8
기타	0.7	2.2	0.7	2.6	0.7	2.3
(수)	(1,425)	(642)	(1,384)	(612)	(1,416)	(62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다. 직장 지원 제도(영유아 가구, 임신부 가구)

휴가나 휴직,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 법정 보장제도 외에 직장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법정 제도 외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영유아 가구 부모의 경우 각각 12.9%, 16.5%로 나타났다. 반면 임신부 가구의 부모의 응답 비중은 각각 22.2%, 32.7%로 영유아 가구에 비해 10%p 이상 높았다. 법정 제도 외 육아휴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영유아 부모는 각각 17.1%, 22.1%인데 비해 임신부 가구의 부모는 39.8%, 41.3%로 높았다. 법정 제도 외 자녀돌봄 휴가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 역시 영유아 가구의 부모는 각각 12.6%, 16.0%인데 비해 임신부 가구의 부모는 21.7%, 22.4%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1-13〉 근로시간 단축 지원, 육아 휴직, 자녀돌봄 휴가 제도 유무 : 영유아 가구 및 임신부 가구

단위: %, (가구)

구분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있음	없음	(수)	있음	없음	(수)
근로시간 단축 지원	부	12.9	87.1	(1,432)	22.2	77.8	(504)
	모	16.5	83.5	(648)	32.8	67.2	(504)
육아 휴직	부	17.1	82.9	(1,432)	39.8	60.2	(504)
	모	22.1	77.9	(648)	41.3	58.7	(504)
자녀돌봄 휴가	부	12.6	87.4	(1,432)	21.7	78.3	(504)
	모	16.0	84.0	(648)	22.4	77.6	(504)

주: 본 표에서 언급하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과 '육아 휴직'은 법적 보장 기간 이상 지원 받은 제도를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법정 보장제도 외에 직장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 육아 휴직, 자녀돌봄 휴가 제도의 이용 경험(영유아 가구) 또는 이용 계획(임산부 가구)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의 경우 영유아 가구 부는 8.6%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데 비해 모의 경우는 32.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육아휴직의 경우 영유아 가구 부모 각각 2.4%, 24.5%가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자녀돌봄 휴가의 경우 영유아 가구 부모 각각 8.3%, 14.4%가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임신부 가구 부모에게 이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부모 모두 공통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지원의 경우 60~70%, 육아 휴직과 자녀돌봄 휴가의 경우 80~90%가 이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여 영유아 가구의 이용경험에 비교할 때 높은 수치를 보였다.

〈표 VI-1-14〉 근로시간 단축 지원, 육아 휴직, 자녀돌봄 휴가 제도 이용 경험/이용 계획 유무 : 영유아 가구 및 임신부 가구

단위: %, (가구)

구분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있음	없음	(수)	있음	없음	(수)
근로시간 단축 지원	부	8.6	91.4	(185)	63.3	36.7	(112)
	모	32.7	67.3	(107)	75.7	24.3	(165)
육아 휴직	부	2.4	97.6	(245)	86.2	13.8	(201)
	모	24.5	75.5	(143)	93.2	6.8	(208)
자녀돌봄 휴가	부	8.3	91.7	(181)	82.3	17.7	(109)
	모	14.4	85.6	(104)	83.3	16.7	(113)

주: 1) 본 표에서 언급하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과 '육아 휴직'은 법적 보장 기간 이상 지원 받은 제도를 의미함.
 2) 영유아 가구에게는 이용 경험을 물었고, 임신부 가구에게는 이용 계획 유무를 질문하였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법정 외에 제공되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 제도 이용시의 단축 후 근무시간(또는 계획하고 있는 단축 후 근무시간)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영유아 가구의 부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평균 30.4시간 일하고 있으며 모는 28.5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신부 가구의 부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28.4시간, 모는 28.3시간 일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25시간 이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지만, 영유아 가구에 비해 임신부 가구의 경우 15~20시간의 반일 근무 정도의 응답 비중이 높은 것도 확인되었다.

〈표 VI-1-15〉 근로시간 단축 지원 단축 시간 : 영유아 가구 및 임신부 가구

단위: %, 시간, (가구)

구분	영유아 가구	15시간 이하	15~20시간	20~25시간	25~30시간	30~35시간	평균 시간	(수)
		부	영유아 가구	-	-	6.3	75.0	18.8
	임산부 가구	-	26.5	1.4	31.4	40.7	28.4	(71)
모	영유아 가구	14.3	2.9	-	34.3	48.6	28.5	(35)
	임산부 가구	-	24.2	4.8	37.8	33.3	28.3	(125)

주: 1)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종 근로한 시간을 의미함.
 2) 본 표에서 언급하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과 '육아 휴직'은 법적 보장 기간 이상 지원 받은 제도를 의미함.
 3) 영유아 가구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응답하였으며, 임신부 가구는 이용할 계획을 응답하였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이러 법정 외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 육아 휴직, 자녀돌봄 휴가 제도의 실제 도움정도(영유아 가구) 또는 예상되는 도움정도(임산부 가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제도에서 평균 4.5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1-16〉 근로시간 단축 지원, 육아 휴직, 자녀돌봄 휴가 제도 도움정도

단위 : 점, (가구)

구분	영유아 가구	근로시간 단축 지원		육아 휴직		자녀돌봄 휴가	
		평균 점수	(수)	평균 점수	(수)	평균 점수	(수)
부	영유아 가구	4.8	(16)	4.5	(6)	4.7	(15)
	임산부 가구	4.4	(71)	4.4	(173)	4.5	(90)
모	영유아 가구	4.8	(35)	4.9	(35)	4.5	(15)
	임산부 가구	4.6	(125)	4.6	(194)	4.7	(94)

주: 1)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2) 본 표에서 언급하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과 '육아 휴직'은 법적 보장 기간 이상 지원 받은 제도를 의미함.
 3) 영유아 가구는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정도를 응답하였으며, 임신부 가구 이용가구는 도움정도의 예상을 응답하였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라. 유연근무제도 (영유아 가구, 임신부 가구, 무자녀 가구)

영유아 가구, 임신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도의 이용 경험에 대해 2023년 조사 자료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재택근무제의 이용 경험 비중이 가장 높고 이어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로제,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탄력적 근무제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 비중이 높은 재택근무와 선택근로제의 이용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택근무의 경우 영유아 가구의 부모 각각 7.3%, 9.7%가 이용한 데 비해 임신부 가구와 무자녀 가구는 부모 모두 18.6~22.8%로, 영유아 가구보다 10%p 가량 이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시차출퇴근제의 경우도 영유아 가구 부모가 5~6%가 이용한 데 비해 임신부 가구는 부모 각각 7.2%, 8.0%가 이용했으며 무자녀 가구는 10% 이상으로 이용 비중이 더 높았다.

모든 제도에서 영유아 가구보다는 임신부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이용 경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부 보다는 모의 이용 비중이 높았다. 특히 무자녀 가구가 영유아 가구보다 모든 제도에서 이용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유연근무제도 이용에서 자녀조건보다 연령이나 세대 영향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VI-1-17〉 유연근무제도 이용 경험 : 영유아 가구, 임신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단위: %, (가구)

구분	부			모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
재택근무	7.3	19.4	18.6	9.7	21.6	22.8
시차출퇴근	4.8	7.2	10.6	6.2	8.0	13.0
선택근로제	2.2	8.0	7.7	3.2	8.4	6.2
원격근무	1.2	6.6	5.9	2.0	5.1	5.0
전환형시간선택제	-	-		-	-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1.8	5.2	3.0	7.1	14.4	5.7
탄력적 근무제	3.1	8.1	9.2	2.2	9.1	8.7
기타 유형	0.8	1.6	3.5	1.4	2.2	2.4
(수)	(1,432)	(504)	(651)	(648)	(504)	(522)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영유아 가구 부모의 유연근무제도 이용 경험을 4~6차년도 자료로 종단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택근무의 경우 4차년도와 5차년도에는 10% 이상의 이용 비중을 보이다가 6차년도에는 부모 각각 7.3%, 9.7%로 낮아졌다.

원격근무의 경우도 4차년도에 비해 6차년도 이용 비중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4차년도와 5차년도 조사가 이루어진 2021년, 2022년도에 코로나19가 유행하다가 6차년도의 2023년도에 종식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차출퇴근제와 선택근로제는 4차년도와 6차년도를 비교했을 때 이용 비중이 낮아지지 않은 특성을 보였다.

〈표 VI-1-18〉 부모의 유연근무제도 이용 경험(2021~2023년) : 영유아 가구

단위: %

구분	부			모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재택근무	11.3	10.5	7.3	14.5	12.6	9.7
시차출퇴근	4.0	3.5	4.8	6.5	4.6	6.2
선택근로제	2.1	1.7	2.2	2.7	3.2	3.2
원격근무	3.5	2.1	1.2	3.3	3.0	2.0
전환형시간선택제	0.7	0.2	-	1.9	1.0	-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	-	1.8	-	-	7.1
탄력적 근무제	-	-	3.1	-	-	2.2
기타 유형	-	-	0.8	-	-	1.4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2) 이정원 외(2022). p.106. 〈표 III-3-19〉 결과를 수정 추가함.

다음으로 유연근무제도의 도움정도를 분석하였다. 영유아 가구에게는 제도가 육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임신부 가구에게는 자녀유무에 관계없이 육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질문하고, 무자녀 가구에게는 육아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4점 정도로 산출되어 도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유아 가구나 임신부 가구에 비해 무자녀 가구의 점수가 다소 낮은 것도 확인되었다.

〈표 VI-1-19〉 유연근무제도 도움정도 : 영유아 가구, 임신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단위 : 점, (가구)

구분		부			모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
재택근무	평균 점수	4.2	4.2	4.1	4.8	4.5	4.2
	(수)	(104)	(98)	(651)	(63)	(109)	(522)
시차출퇴근	평균 점수	4.6	4.2	4.1	4.7	4.6	4.1
	(수)	(69)	(36)	(651)	(63)	(40)	(522)

구분		부			모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
선택근로제	평균 점수	4.7	4.2	4.2	4.9	4.5	4.3
	(수)	(31)	(40)	(651)	(21)	(42)	(522)
원격근무	평균 점수	4	4.2	3.9	4.6	4.5	4
	(수)	(17)	(33)	(651)	(13)	(26)	(522)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평균 점수	4.2	4.2	4.1	4.5	4.5	4.3
	(수)	(26)	(26)	(651)	(46)	(72)	(522)
탄력적 근무제	평균 점수	4.4	4.3	4.1	4.9	4.4	4.3
	(수)	(44)	(41)	(651)	(14)	(46)	(522)
기타 유형	평균 점수	4.5	3.2	3.9	4.9	3.9	4
	(수)	(11)	(8)	(651)	(9)	(11)	(522)

주: 1)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2) 영유아 가구에게는 해당 제도가 육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물어보았으며, 임산부 가구는 자녀유무에 관계없이 육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물어보았고, 무자녀 가구에게는 육아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물어보았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재택근무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전반적으로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가 42.0%~6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영유아 부모의 경우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30%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또한 무자녀 가구의 경우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의 응답 비중이 부모 각각 12.4%, 15.1%로 영유아, 임산부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특성도 드러났다. 임산부 가구의 경우 부모 모두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의 응답 비중이 다른 가구와 달리 10%를 상회하였으며,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의 응답 비중은 임산부 가구의 부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I-1-20〉 재택근무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 :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단위 : %, (가구)

구분		부			모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
재택근무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	42.0	54.1	62.1	47.5	55.7	66.5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7.2	9.1	12.4	7.9	10.2	15.1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6.3	11.0	6.2	5.8	13.3	6.7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3.0	6.6	2.8	2.6	1.6	-
	나중에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승진 등)	1.7	4.9	2.1	0.9	2.0	1.0
	사용 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0.6	1.9	0.7	0.3	3.2	0.7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38.7	10.2	10.8	33.3	11.3	7.3
	기타	0.5	2.1	2.9	1.7	2.7	2.7
	(수)	(1,328)	(352)	(530)	(585)	(246)	(403)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시차출퇴근을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역시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의 응답 비중이 40.9%~67.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영유아 가구의 경우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의 응답 비중이 부모 각각 40.1%, 33.7%로 높았다. 반면 임신부 가구는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의 응답 비중이 부모 각각 15.0%, 14.2%로 높았고, 무자녀 가구는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의 응답 비중이 부모 각각 11.4%, 10.9%로 높았다. 또한 임신부 가구의 부는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나중에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승진 등)'의 응답 비중이 다른 가구 부모에 비해 다소 높은 특성을 보였다.

〈표 VI-1-21〉 시차출퇴근을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 : 영유아 가구, 임신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단위 : %, (가구)

구분	부			모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	
시차 출퇴근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	40.9	50.0	59.6	45.4	55.3	67.4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5.9	7.6	11.4	7.6	7.5	10.9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7.2	15.0	7.4	7.6	14.2	8.2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3.0	5.6	2.6	2.6	1.6	1.9
	나중에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승진 등)	1.7	7.5	2.1	1.0	2.9	0.2
	사용 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0.7	1.4	0.5	0.3	3.8	0.7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40.1	11.2	14.8	33.7	13.3	9.5
	기타	0.5	1.6	1.6	1.8	1.5	1.1
(수)	(1,363)	(413)	(582)	(608)	(314)	(454)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선택적 근무시간제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영유아 가구의 경우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의 응답 비중이 부모 모두 3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임신부 가구는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의 응답 비중이 부모 각각 11.0%, 12.5%로 높게 나타났고, 무자녀 가구는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의 응답 비중이 부모 각각 10.2%, 12.1%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임신부 가구의 경우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나중에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승진 등)'의 응답 비중이 다른 가구에 비해 다소 높았다.

〈표 VI-1-22〉 선택적 근무시간제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 : 영유아 가구, 임신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단위 : %, (가구)

구분		부			모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
선택적 근무 시간제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	42.3	53.8	60.8	45.6	56.7	66.9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5.5	7.1	10.2	7.5	6.5	12.1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7.2	11.0	9.0	6.1	12.5	7.3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3.1	5.1	2.7	2.7	3.1	1.8
	나중에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승진 등)	1.9	7.4	2.9	1.3	4.4	0.6
	사용 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0.6	3.5	0.6	0.3	3.5	0.6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38.9	10.6	12.0	34.8	12.1	9.3
	기타	0.4	1.6	1.8	1.8	1.2	1.4
(수)		(1,401)	(410)	(601)	(627)	(312)	(490)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원격근무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역시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의 응답 비중이 모두 4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영유아 가구와 임신부 가구의 경우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의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임신부 가구는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의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VI-1-23〉 원격근무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 : 영유아 가구, 임신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단위 : %, (가구)

구분		부			모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
원격근무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	43.0	55.0	62.5	47.7	60.0	72.7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6.4	8.8	10.4	6.9	8.4	8.4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6.4	11.5	6.7	5.4	8.5	5.0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3.0	4.7	1.5	2.5	2.4	0.6
	나중에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승진 등)	1.6	5.4	2.8	1.3	2.8	0.5
	사용 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0.7	2.1	0.6	0.3	3.0	0.8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38.5	11.4	13.1	34.2	13.7	9.7
	기타	0.4	1.1	2.4	1.7	1.2	2.2
(수)		(1,415)	(416)	(613)	(635)	(329)	(496)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근로시간 단축근무제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도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는 영유아 가구의 경우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의 응답 비중이 30%를 넘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임신부 가구는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의 응답 비중이 다른 가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무자녀 가구는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의 응답 비중이 다른 가구보다 높은 특성을 보였다.

〈표 VI-1-24〉 근로시간 단축근무제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 : 영유아 가구, 임신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단위 : %, (가구)

구분		부			모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
근로시간 단축 근무제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	40.7	53.2	58.7	44.0	46.9	61.3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5.5	6.9	11.3	7.0	7.0	16.0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7.7	12.7	7.9	7.6	20.2	7.7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3.6	6.2	3.3	3.5	3.4	3.1
	나중에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승진 등)	1.9	7.4	2.7	1.2	4.4	0.6
	사용 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0.6	1.9	1.0	0.3	3.1	1.2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39.5	10.9	13.4	34.6	13.3	8.4
	기타	0.4	0.8	1.7	1.8	1.6	1.7
(수)		(1,406)	(423)	(632)	(602)	(282)	(493)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탄력적 근무제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역시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영유아 가구의 경우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의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임신부 가구는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의 응답 비중이 다른 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무자녀 가구의 부는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의 응답 비중이 다른 가구 및 무자녀 여성보다 높았다.

〈표 VI-1-25〉 탄력적 근무제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 : 영유아 가구, 임신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단위 : %, (가구)

구분		부			모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
탄력적 근무제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	41.1	54.5	59.2	44.8	54.9	71.3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5.9	7.5	11.2	7.3	9.3	9.9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6.9	12.0	8.7	7.1	11.9	5.7

구분	부			모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3.2	5.1	1.9	2.8	3.9	1.1
나중에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승진 등)	1.7	7.7	2.8	0.9	4.1	0.8
사용 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0.9	2.2	0.6	0.3	2.3	1.0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39.8	9.8	13.9	35.0	12.1	8.6
기타	0.4	1.1	1.7	1.7	1.5	1.5
(수)	(1,388)	(409)	(591)	(634)	(309)	(47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탄력적 근무제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도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 역시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공통적으로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로 나타났다. 한편 임산부 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에 비해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의 응답 비중이 다소 높은 특성을 보였다.

〈표 VI-1-26〉 기타 유형(재량근무 등)을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 :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단위 : %, (가구)

구분	부			모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	
기타 유형 (재량 근무 등)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	41.2	58.0	60.9	46.6	59.2	71.8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5.7	5.8	10.0	6.9	5.7	8.5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7.2	8.9	7.4	6.6	11.6	3.9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3.2	7.2	2.6	2.8	3.8	2.5
	나중에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승진 등)	2.0	6.7	2.3	0.9	3.0	0.6
	사용 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0.6	2.5	0.6	-	2.3	1.4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39.5	10.4	15.2	34.4	12.9	10.1
	기타	0.5	0.6	1.2	1.7	1.6	1.2
(수)	1,421	442	629	639	344	510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개선이 필요한 육아 시간 지원 정책에 대해 영유아 가구 및 임산부 가구에게 조사한 결과(1+2순위)를 보면, 영유아 가구의 경우 가족돌봄휴직/휴가가 53.6%로 가장 높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6.5%, 육아휴직 46.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산부 가구는 육아휴직이 66.9%로 가장 높았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3.5%, 가족돌봄휴직/휴가가 40.6%로 나타났다.

〈표 VI-1-27〉 개선이 필요한 육아 시간 지원 정책 : 영유아 가구 및 임신부 가구

단위 : %, (가구)

구분	가족돌봄 휴직/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유연근무	(수)	
1+2순위	영유아 가구	53.6	46.4	46.5	16.1	37.2	(1,773)
	임산부 가구	40.6	66.9	43.5	26.1	22.9	(504)
1순위	영유아 가구	35.3	24.6	19.5	7.5	13.2	(1,773)
	임산부 가구	19.7	42.0	20.4	11.3	6.6	(504)
2순위	영유아 가구	18.3	21.8	27.1	8.6	24.0	(1,773)
	임산부 가구	20.9	24.9	23.1	14.8	16.3	(504)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가족돌봄휴직/휴가의 개선방향을 조사한 결과(1+2순위), '휴가/휴직 사용 일수, 사용 시간의 연장'이 영유아와 임신부 가구 모두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임신부 가구는 '비용 지원의 확대(급여 대체율 등)'가 6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영유아 가구는 '신청 절차의 간소화'가 24.7%로 임신부 가구 6.2%에 비해 높게 나타나 영유아 가구의 제도 접근 경험이 응답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표 VI-1-28〉 가족돌봄휴직/휴가 개선방향 : 영유아 가구 및 임신부 가구

단위 : %, (가구)

구분	1+2순위		1순위		2순위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가족돌봄휴직/휴가	휴가/휴직 사용 일수, 사용 시간의 연장		52.2	57.2	34.9	38.8	17.3	18.3
	비용 지원의 확대(급여 대체율 등)		49.4	61.5	24.9	29.6	24.4	31.9
	신청 절차의 간소화		24.7	6.2	8.0	3.4	16.7	2.8
	자격해당자의 제도사용 의무화(정부가 강제)		39.2	39.7	19.9	18.3	19.3	21.4
	자격해당자의 확대		15.1	11.3	6.5	3.2	8.5	8.2
	아동의 신청자격 연령 상향		13.8	14.4	4.7	3.4	9.1	11.0
	사업주 인센티브 강화		4.6	9.3	0.8	2.9	3.8	6.4
	기타		0.1	0.5	0.1	0.5	-	-
(수)		(950)	(205)	(950)	(205)	(950)	(205)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이어 육아휴직의 개선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1+2순위)를 보면, 영유아 가구와 임신부 가구 모두 '비용 지원의 확대(급여 대체율 등)'가 각각 52.0% 65.4%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공통적으로 휴가/휴직 사용 일수, 사용 시간의 연장', '자격해당자의 제도사용 의무화(정부가 강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육아휴직에 있어서도 영유아 가구는 '신청 절차의 간소화'의 응답 비중이 임신부 가구에 비해 높았다.

〈표 VI-1-29〉 육아휴직 개선방향 : 영유아 가구 및 임신부 가구

단위 : %, (가구)

구분		1+2순위		1순위		2순위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육아 휴직	휴가/휴직 사용 일수, 사용 시간의 연장	45.2	53.7	31.5	34.3	13.7	19.4
	비용 지원의 확대 (급여 대체율 등)	52.0	65.4	24.5	30.2	27.5	35.2
	신청 절차의 간소화	24.3	9.3	10.9	4.1	13.4	5.2
	자격해당자의 제도사용 의무화 (정부가 강제)	44.3	38.4	23.1	23.7	21.3	14.7
	자격해당자의 확대	14.7	10.7	5.0	2.6	9.7	8.2
	아동의 신청자격 연령 상향	13.0	14.0	2.8	2.1	10.2	11.9
	사업주 인센티브 강화	5.7	7.0	2.1	2.7	3.6	4.3
	기타	0.1	1.5	0.1	0.3	-	1.2
(수)		(823)	(337)	(823)	(337)	(823)	(33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1+2순위)를 보면, '자격해당자의 제도사용 의무화(정부가 강제)'가 약 50%의 응답 비중을 차지해 가장 높았다. 이어 '비용 지원의 확대 (급여 대체율 등)', '휴가/휴직 사용 일수, 사용 시간의 연장'이 영유아 가구와 임신부 가구 모두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영유아 가구의 경우 '임산부 가구에 비해 신청 절차의 간소화', '자격해당자의 확대'의 응답 비중이 다소 높았다.

〈표 VI-1-3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선방향 : 영유아 가구 및 임신부 가구

단위 : %, (가구)

구분		1+2순위		1순위		2순위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휴가/휴직 사용 일수, 사용 시간의 연장	33.0	42.0	20.2	24.8	12.7	17.3
	비용 지원의 확대 (급여 대체율 등)	45.5	49.0	21.5	26.1	24.0	22.9
	신청 절차의 간소화	25.1	11.6	12.5	5.4	12.6	6.2
	자격해당자의 제도사용 의무화 (정부가 강제)	47.4	52.2	28.6	30.7	18.8	21.5
	자격해당자의 확대	15.2	9.2	7.3	3.0	7.9	6.2
	아동의 신청자격 연령 상향	22.2	24.8	6.8	6.4	15.4	18.4
	사업주 인센티브 강화	10.9	10.7	3.0	3.6	7.9	7.1
	기타	0.2	0.5	0.1	-	0.1	0.5
(수)		(825)	(219)	(825)	(219)	(825)	(219)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출산휴가의 개선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1+2순위)를 보면, ‘비용 지원의 확대 (급여 대체율 등)’와 ‘휴가/휴직 사용 일수, 사용 시간의 연장’이 영유아와 임신부 가구 모두에서 50% 가량의 응답 비중을 보여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격해당자의 제도사용 의무화(정부가 강제)’도 영유아와 임신부 가구 모두 40% 가량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청 절차의 간소화’는 영유아 가구의 응답이 27.3%로, 임신부 가구 15.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VI-1-31〉 출산휴가 개선방향 : 영유아 가구 및 임신부 가구

단위 : %, (가구)

구분	1+2순위		1순위		2순위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출산 휴가	휴가/휴직 사용 일수, 사용 시간의 연장	45.5	55.6	34.6	35.4	10.8	20.2
	비용 지원의 확대 (급여 대체율 등)	49.0	56.6	18.9	29.1	30.1	27.4
	신청 절차의 간소화	27.3	15.0	12.9	7.0	14.3	8.1
	자격해당자의 제도사용 의무화 (정부가 강제)	38.1	40.1	18.9	20.0	19.2	20.1
	자격해당자의 확대	17.8	15.0	6.3	4.9	11.5	10.1
	아동의 신청자격 연령 상향	13.3	8.8	5.2	1.3	8.0	7.4
	사업주 인센티브 강화	8.0	7.4	3.1	1.6	4.9	5.8
	기타	-	1.5	-	0.7	-	0.8
(수)	(286)	(131)	(286)	(131)	(286)	(13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유연근무의 개선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1+2순위) ‘자격해당자의 제도사용 의무화(정부가 강제)’가 50% 가량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에서도 해당 항목의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나 휴가/휴직제도 보다 단축/유연근무에 대한 사용 의무화에 대한 요구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된다. 이어서는 ‘비용지원의 확대 (급여 대체율 등)’, ‘휴가/휴직 사용 일수, 사용 시간의 연장’의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영유아 가구는 임신부 가구에 비해 ‘신청 절차의 간소화’와 ‘자격해당자의 확대’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VI-1-32〉 유연근무 개선방향 : 영유아 가구 및 임신부 가구

단위 : %, (가구)

구분	1+2순위		1순위		2순위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유연근무	휴가/휴직 사용 일수, 사용 시간의 연장	28.8	38.4	16.5	22.4	12.3	16.1
	비용 지원의 확대 (급여 대체율 등)	34.5	41.9	17.7	18.0	16.8	24.0
	신청 절차의 간소화	26.5	16.0	10.8	5.0	15.8	11.0
	자격해당자의 제도사용 의무화 (정부가 강제)	48.8	56.3	31.8	38.3	17.0	18.0
	자격해당자의 확대	21.1	8.8	9.2	3.0	11.8	5.8
	아동의 신청자격 연령 상향	24.2	23.3	8.6	8.6	15.6	14.8
	사업주 인센티브 강화	15.0	15.2	5.0	4.8	10.0	10.4
	기타	0.5	-	0.3	-	0.2	-
(수)	(660)	(116)	(660)	(116)	(660)	(116)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2. 주거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정책적 요구

거주 주택 종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영유아 가구, 임신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모두 아파트의 거주 비중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는 연립주택/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거주 비율이 11.9%~20.4%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의 거주 비중은 영유아 가구가 83.8%로 가장 높았으며, 연립주택/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거주 비중은 무자녀 가구가 20.4%로 다른 가구에 비해 높았다.

〈표 VI-2-1〉 거주 주택 종류 : 영유아 가구, 임신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단위 : %, (가구)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기타	(수)
영유아 가구	3.0	83.8	11.9	0.8	0.5	(1,773)
임산부 가구	6.9	75.8	14.8	1.7	0.9	(504)
무자녀 가구	4.7	71.3	20.4	1.8	1.9	(81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가구의 거주 형태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자가의 비중이 43.3%~55.7%로 높았으며 전세가 30% 정도로 나타났다. 월세는 8.3%~22.1%로 나타났다. 기타 형태는 5% 안팎이었다. 가구별로 비교해 보면 영유아 가구에서 자가 비중이 다른 가구들에 비해 높았으며 무자녀 가구는 다른 가구들에 비해 월세의 비중이 높았다.

〈표 VI-2-2〉 가구의 거주 형태 : 영유아 가구, 임신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단위 : %, (가구)

구분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사택, 무상거주)	(수)
영유아 가구	55.7	30.1	8.3	5.9	(1,773)
임산부 가구	50.1	31.4	14.0	4.4	(504)
무자녀 가구	43.3	29.7	22.1	4.9	(81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가구의 거주 비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가의 경우 영유아 가구는 4억4,550만원, 임신부 가구는 5억8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무자녀 가구는 보다 다른 가구들보다 100백만원 정도 낮게 3억4,930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전세의 경우 영유아 가구가 2억7,480만원으로 나타난 반면, 임신부 가구와 무자녀 가구는 다소 낮게 2억3,370만 원, 2억38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월세의 경우는 영유아와 임신부 가구 모두 보증금은 약 1억1,100만원으로 비슷했으나 월세액은 영유아 가구가 37만2천원, 임신부 가구는 49만1천원으로 임신부 가구의 월세가 높았다. 또한 무자녀 가구의 경우 보증금은 7,850만원으로 다른 가구들에 비해 낮으나 월세액은 50만2천원으로 임신부 가구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3〉 가구의 거주 비용 : 영유아 가구, 임신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단위 : 백만원, 만원, (가구)

구분	자가		전세		월세		
	금액	(수)	금액	(수)	보증금	월세액	(수)
영유아 가구	445.5	(987)	274.8	(533)	111.6	37.2	(148)
임산부 가구	500.8	(253)	233.7	(158)	111.2	49.1	(71)
무자녀 가구	349.3	(354)	203.8	(243)	78.5	50.2	(180)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주거비의 부담정도를 조사한 결과 영유아 가구의 경우 3.2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임신부 가구는 3.4점, 무자녀 가구는 3.1점으로 나타나 임신부 가구의 부담 정도가 가장 높고 영유아 가구, 무자녀 가구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VI-2-4〉 주택의 주거비 부담 정도 :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단위 : %, 점, (가구)

구분	부담 정도					평균 점수	(수)
	전혀 부담안됨	별로 부담안됨	적당	다소 부담됨	매우 부담됨		
영유아 가구	11.7	27.8	38.0	14.6	8.0	3.2	(1,773)
임산부 가구	9.9	16.5	23.0	28.6	21.9	3.4	(504)
무자녀 가구	16.0	16.5	26.3	26.9	14.4	3.1	(81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기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영유아 가구는 3.3점으로 나타났으며, 임산부 가구 3.2점, 무자녀 가구는 3.1점으로 영유아 가구가 가장 높고 임산부, 무자녀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 가구의 경우 2018년도의 점수와 비교해보면 2018년 3.1점에서 3.3점으로 다소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VI-2-5 참조).

거주지에 살게 된 계기가 자녀의 출산 혹은 양육과 관련되어 있는지 영유아 가구와 임산부 가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유아 가구의 40.0%, 임산부 가구의 48.3%가 관련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VI-2-6 참조). 거주지가 양육 혹은 출산과 관련되어 있다고 응답한 이들에 한해 거주지 선택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영유아 가구의 경우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가 35.2%로 가장 높았으며 ‘아이를 키우기에 적당한 규모(협소하지 않은)의 집에 살기 위해서’ 21.7%,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유해시설이 적거나, 자연친화적, 공원/놀이시설이 가까워서)’ 21.4% 순으로 나타났다. 임산부 가구의 경우도 영유아 가구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아이를 돌봐줄 친인척(혹은 아이 돌보미)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의 응답 비중이 영유아 가구에 비해 높았다.

〈표 VI-2-5〉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기 집이 있어야 한다’ 해당 의견 동의 정도 : 영유아 가구 (2018, 2023년),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단위 : %, 점, (가구)

구분		동의 정도				평균 점수	(수)
		매우 동의 한다	동의 한다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영유아 가구	2018	28.7	54.9	14.6	1.8	3.1	(1,648)
	2023	42.5	49.1	7.6	0.8	3.3	(1,773)

VI. 저출생 대응 및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 임신부, 무자녀, 영유아 가구 비교



구분	동의 정도				평균 점수	(수)
	매우 동의 한다	동의 한다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임산부 가구	37.8	48.2	13.4	0.6	3.2	(504)
무자녀 가구	29.4	50.9	18.2	1.5	3.1	(817)

주: 2018년 영유아 가구에게는 '자녀 출산 이후 주택 구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질문하였고, 2023년 영유아 가구, 임신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에게는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기 집이 있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로 질문하였음.

자료: 1) 최효미 외(2018). p.162 <표 V-1-6>.
2)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영유아 가구의 경우 2018년도의 응답과 비교해 보면 2018년도에는 거주지의 양육 또는 출산 관련성이 38.3%인데 비해 2023년도에는 40.0%로 증가한 것이 확인된다. 또한 거주지 선택 이유로 '아이를 돌봐줄 친인척(혹은 아이돌보미)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의 응답 비중은 줄고 '아이를 키우기에 적당한 규모(협소하지 않은) 집에 살기 위해서'의 응답 비중이 증가한 것도 확인된다.

<표 VI-2-6> 자녀양육과 거주지 선택 관련성 : 영유아 가구(2018, 2023년) 및 임신부 가구

단위 : %, (가구)

구분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2018	2023	
거주지 양육관련 유무		38.3	40.0	48.3
자녀 양육과 거주지 선택 관련성	아이를 돌봐줄 친인척(혹은 아이돌보미)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	22.5	3.8	11.0
	엄마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살기 위해서	4.9	2.9	5.8
	아빠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살기 위해서	12.2	6.6	6.7
	지역 내 보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질과 접근성 등이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	18.8	7.7	9.3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		35.2	22.8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유해시설이 적거나, 자연친화적, 공원/놀이시설이 가까워서)	28.8	21.4	18.6
	아이를 키우기에 적당한 규모(협소하지 않은) 집에 살기 위해서	10.3	21.7	24.0
	기타	2.5	0.6	1.9
(수)		(632)	(1,773)	(504)

주: 2018년 영유아 가구의 보기는 '지역 내 교육 및 보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질과 접근성 등이 좋다고 생각해서' 하나로 되어있으며, 2023년 영유아 가구, 임신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는 '지역 내 보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질과 접근성'과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2개의 보기로 나누어져 있음.

자료: 1) 최효미 외(2018). p.165. <표 V-1-9>.
2)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향후 5년 이내에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이사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영유아 가구의 44.4%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임신부 가구는 68.4%, 무자녀 가구는 56.8%가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이사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영유아 가구의 경우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가 35.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아이를 키우기에 적당한 규모(협소하지 않은) 집에 살기 위해서’ 21.7%,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유해시설이 적거나, 자연친화적, 공원/놀이시설이 가까워서)’ 21.4% 순으로 분석되었다. 임신부 가구는 ‘아이를 키우기에 적당한 규모(협소하지 않은) 집에 살기 위해서’가 24.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유해시설이 적거나, 자연친화적, 공원/놀이시설이 가까워서)’ 순으로 나타났다.

무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출산을 고려해 이사할 경우 이사 지역의 가장 중요한 결정 기준을 조사한 결과,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유해시설이 적거나, 자연친화적, 공원/놀이시설이 가까워서)’ 25.1%, ‘아이를 키우기에 적당한 규모(협소하지 않은) 집에 살기 위해서’ 22.0%, ‘아이를 돌봐줄 친인척(혹은 아이돌보미)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 21.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2-7〉 향후 5년 이내 자녀 양육을 위한 이사 의향 : 영유아 가구(2018, 2023년), 임신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단위 : %, (가구)

구분	영유아 가구		임산부	무자녀	
	2018	2023	가구	가구	
이사의향	47.7	44.4	68.4	56.8	
이사를 하려는 이유	아이를 돌봐줄 친인척(혹은 아이돌보미)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	5.1	3.8	11.0	21.4
	엄마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살기 위해서	1.4	2.9	5.8	4.3
	아빠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살기 위해서	8.1	6.6	6.7	1.9
	지역 내 보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질과 접근성 등이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	19.1	7.7	9.3	16.5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		35.2	22.8	8.0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유해시설이 적거나, 자연친화적, 공원/놀이시설이 가까워서)	39.7	21.4	18.6	25.1
	아이를 키우기에 적당한 규모(협소하지 않은) 집에 살기 위해서	24.4	21.7	24.0	22.0
	기타	2.2	0.6	1.9	0.7
(수)	(786)	(1,773)	(504)	(480)	

주: 1) 무자녀 가구의 경우 출산의향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질문하였음.
 2) 영유아 가구와 임신부 가구는 이사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한가지를 물어보았으며, 무자녀 가구는 출산을 고려해 이사할 경우 이사 지역의 가장 중요한 결정 기준을 질문하였고 1순위만을 기준으로 산출함.
 3) 2018년 영유아 가구의 보기는 ‘지역 내 교육 및 보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질과 접근성 등이 좋다고 생각해서’ 하나로 되어있으며, 2023년 영유아 가구, 임신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는 ‘지역 내 보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질과 접근성’과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2개의 보기로 나누어져 있음.
 자료: 1) 최효미 외(2018), p.168. 〈표 V-1-12〉.
 2)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주거지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영유아, 임신부, 무자녀 가구 모두 공통적으로 ‘주거지역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유해시설이 없거나, 범죄율이 낮은 지역 등)’이 3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의 응답 항목은 차이를 보여 영유아 가구와 임신부 가구의 경우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환경이 좋은 곳’이 높게 나타난 반면, 무자녀 가구는 ‘아동관련 인프라가 많은 곳(공연장, 문화센터, 도서관, 종합병원, 소아과 등)’이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 가구의 경우 2018년도의 응답과 비교해 보면 전반적인 응답 경향은 비슷하나 ‘주거지역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유해시설이 없거나, 범죄율이 낮은 지역 등)’에 대한 응답 비중이 2018년도에 비해 2023년도에 다소 줄어든 반면 ‘아동관련 인프라가 많은 곳(공연장, 문화센터, 도서관, 종합병원, 소아과 등)’,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환경이 좋은 곳’ 등 다른 항목의 응답 비중이 증가한 것이 확인된다.

〈표 VI-2-8〉 자녀 양육 시 좋은 주거지가 갖춰야 할 주요 조건 : 영유아 가구(2018, 2023년), 임신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단위 : %, (가구)

구분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	
	2018	2023			
자녀 양육 시 좋은 주거지가 갖춰야 할 주요 조건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환경이 좋은 곳	26.4	27.4	27.1	19.2
	영유아기 자녀 보육을 위한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접근성이 좋은 곳	12.1	13.4	15.7	15.3
	주거지역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 (유해시설이 없거나, 범죄율이 낮은 지역 등)	36.7	32.1	35.0	38.7
	아동관련 인프라가 많은 곳 (공연장, 문화센터, 도서관, 종합병원, 소아과 등)	24.1	26.5	21.7	24.6
	주거 밀집지역	0.4	0.5	0.4	2.1
	기타	0.4	0.1	0.1	0.1
	(수)	(1,648)	(1,773)	(504)	(817)

자료: 1) 최효미 외(2018). p.170. 〈표 V-1-14〉.
 2)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다음으로 인지하고 있는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영유아 가구, 임신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가 공통적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 미만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II에 대해서도 30% 정도만이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영유아 가구 40% 이상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임산부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경우는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영유아 가구에 비해 20%p 가량 낮았다.

〈표 VI-2-9〉 인지하고 있는 신혼부부 및 영유아 가구 주거 지원 정책(중복응답) :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단위 : %, (가구)

구분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
주거 지원 정책	신혼희망타운	52.6	52.6	52.5
	통합공공임대주택	18.0	14.5	13.3
	국민임대주택	65.2	52.0	63.2
	공공분양주택	50.1	30.0	31.1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29.2	24.7	31.8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II	30.5	26.7	33.0
	행복주택	71.0	56.9	66.4
	영구임대주택	55.0	16.0	22.6
	공공임대주택	65.0	34.6	37.5
	장기전세주택	42.7	16.6	18.3
	전세임대주택	44.4	18.4	18.7
	알고 있는 주거 관련 지원 정책이 없음	7.1	7.3	6.3
(수)		(1,773)	(504)	(81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이어 주거 지원 정책 신청 경험에 대해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영유아 가구에 비해 임산부 및 무자녀 가구의 경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신혼희망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산부 가구의 경험 비중이 1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임대 주택과 공공분양주택도 임산부가구와 무자녀 가구가 모두 10~20%로 나타나 영유아 가구는 5% 정도인데 비해 높게 나타났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는 임산부 가구만이 10% 이상 신청 경험이 있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II, 행복주택 모두 임산부와 무자녀 가구의 경우 15% 정도만 신청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다른 가구들이 10% 미만의 신청 경험 비중이 있는데 비해 무자녀 가구의 신청 경험은 15%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세임대주택 역시 무자녀 가구의 경우 20.2%가 신청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가구들에 비해 높았다.

〈표 VI-2-10〉 주거 지원 정책 신청 경험 여부 : 영유아 가구, 임신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단위 : %, (가구)

구분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	
	경험 있음	(수)	경험 있음	(수)	경험 있음	(수)
주거 지원 정책	신혼희망타운	6.7 (932)	14.7 (265)	10.1 (429)		
	통합공공임대주택	2.8 (320)	12.5 (73)	6.0 (109)		
	국민임대주택	5.7 (1,156)	14.4 (262)	12.6 (517)		
	공공부양주택	5.4 (889)	21.8 (151)	18.1 (254)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1.9 (517)	10.0 (124)	6.9 (259)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II	5.9 (540)	14.9 (134)	14.9 (270)		
	행복주택	5.1 (1,259)	17.4 (287)	15.1 (542)		
	영구임대주택	1.1 (976)	3.5 (81)	3.5 (185)		
	공공임대주택	3.5 (1,152)	9.1 (174)	15.5 (307)		
	장기전세주택	3.2 (757)	13.0 (83)	7.1 (150)		
	전세임대주택	3.6 (787)	16.1 (93)	20.2 (152)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인지하고 있는 신혼부부 및 영유아 가구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다자녀 버팀목 전세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모든 가구의 54.9%~77.6%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영유아 가구의 응답 비중이 77.6%로 가장 높고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무자녀 가구의 응답 비중이 65.6%로 가장 높았다. 알고 있는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정책이 없다는 응답은 무자녀 가구는 9.2%, 임신부 가구 10.0%, 영유아 가구는 12.6%였다.

〈표 VI-2-11〉 인지하고 있는 신혼부부 및 영유아 가구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정책(중복응답) : 영유아 가구, 임신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단위 : %, (가구)

구분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	
금융 지원 정책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77.6	68.9	72.0
	신혼부부, 다자녀 버팀목 전세대출	58.3	60.6	52.6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60.7	54.9	65.6
	알고 있는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정책이 없음	12.6	10.0	9.2
(수)	(1,773)	(504)	(81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다음으로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정책 신청 경험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신청 경험 비중이 30%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혼부부, 다자녀 버팀목 전세대출은 임산부 가구가 22.3%로 다른 가구들에 비해 높았다. 신혼부부전용 전제자금대출 역시 임산부 가구 그리고 무자녀 가구가 20% 이상으로 영유아 가구 15.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VI-2-12〉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정책 신청 경험 여부 :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단위 : %, (가구)

구분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	
	경험 있음	(수)	경험 있음	(수)	경험 있음	(수)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정책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24.6 (1,375)	30.7 (347)	27.4 (589)		
	신혼부부, 다자녀 버팀목 전세대출	9.8 (1,034)	22.3 (305)	13.6 (430)		
	신혼부부전용 전제자금대출	15.7 (1,077)	21.9 (277)	20.8 (536)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정부의 신혼부부 및 영유아 가구 대상 주거 지원 정책이 신혼부부가 출산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영유아 가구 3.0점, 임산부와 무자녀 가구 3.1점으로 보통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I-2-13〉 정부의 신혼부부 및 영유아 가구 대상 주거 지원 정책 신혼부부의 출산결정 도움 정도 :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단위 : %, 점, (가구)

구분	도움 정도					평균 점수	(수)
	매우 도움됨	약간 도움됨	보통	별로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영유아 가구	8.1	33.5	24.5	22.1	11.8	3.0	(1,773)
임산부 가구	20.4	23.5	22.8	16.6	16.8	3.1	(504)
무자녀 가구	17.9	26.3	20.6	21.1	14.0	3.1	(817)

주: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표 VI-2-14〉 신혼부부 및 영유아 가구 대상 주거 지원 정책이 저출산 대책으로 실효성이 없는 이유 : 영유아 가구, 임신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단위 : %, (가구)

구분	1+2순위			1순위			2순위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
실제 거주하기를 원하는 지역의 주택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	37.7	28.0	29.7	22.8	19.2	18.6	14.9	8.8	11.1
지원 대상 조건이 까다로워, 자격 조건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	54.9	54.5	51.6	34.9	40.6	33.1	20.0	13.9	18.5
지원되는 비용이 주택 구매 혹은 전세 자금에 비해 너무 적기 때문	31.4	26.0	29.9	13.1	12.0	16.1	18.3	13.9	13.8
실제 온 가족이 거주하기에는 너무 협소한 평수이기 때문	27.9	31.6	29.9	12.9	12.1	9.4	15.0	19.4	20.5
정부지원 주택(예: 임대주택)에 산다고 아이가 차별을 받을까봐	13.1	17.2	13.4	3.9	4.2	4.8	9.3	13.0	8.5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지원 대상 당첨 확률이 낮기 때문	22.4	24.0	26.6	8.2	7.9	10.3	14.2	16.1	16.3
원하는 주택 유형이 아니기 때문 (단독주택 거주를 희망 등)	5.2	6.5	5.2	2.1	0.6	2.1	3.1	5.9	3.1
자산으로써 가치가 너무 낮기 때문	3.2	8.5	7.3	0.5	2.3	2.4	2.7	6.2	4.8
정보접근성이 떨어져서	1.4	2.0	3.6	0.8	0.3	1.1	0.6	1.7	2.5
기타	0.9	1.8	2.8	0.8	0.7	2.0	0.1	1.1	0.8
응답없음	-	-	-	-	-	-	1.9	-	-
(수)	(1,035)	(283)	(456)	(1,035)	(283)	(456)	(1,035)	(283)	(456)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정부의 신혼부부 및 영유아 가구 대상 주거 지원 정책이 신혼부부의 출산결정 도움 정도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조사 하였다. 1+2순위의 분석 결과를 보면 '지원 대상 조건이 까다로워, 자격 조건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 항목의 응답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는 '실제 거주하기를 원하는 지역의 주택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 '지원되는 비용이 주택 구매 혹은 전세 자금에 비해 너무 적기 때문'의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 응답 비중을 가구별로 비교해보면 영유아 가구의 경우 '실제 거주하기를 원하는 지역의 주택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 항목의 응답 비중이 다른 가구들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무자녀 가구의 경우 '지원되는 비용이 주택 구매 혹은 전세 자금에 비해 너무 적기 때문'과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지원 대상 당첨 확률이 낮기 때문'의 응답 비중이 다른 가구들에 비해 높았다.

3. 출산 의향 및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의견

가. 출산의향 및 출산전후 관련(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

임산부 가구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출산 후 3년 내 본인과 배우자의 취업상태, 근로시간 및 근로소득에 변동이 있을 예정인지 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 취업상태는 본인(여성)의 경우 77.8%가 변동 없을 것이라 응답한 반면 배우자(남성)는 93.9%가 변동 없을 것이라 응답하였다. 그만둘 것이라 응답한 경우는 본인(여성)과 배우자(남성) 각각 14.2%, 0.6%, 새로운 일을 할 것이라 응답한 경우 역시 본인과 배우자 각각 8.1%, 5.4%로 차이를 보였다.

출산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해 출산 이후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은 본인(여성)이 9.1%인데 비해 배우자(남성)는 23.3%였으며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본인(여성) 34.4%인데 비해 배우자(남성)는 4.7%로 달리 나타났다. 변함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본인(여성)은 56.4%인데 비해 배우자(남성)은 72.0%로 높았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출산 이후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은 본인(여성)이 21.5%인데 비해 배우자(남성)는 44.5%였으며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본인(여성) 33.7%인데 비해 배우자(남성)는 3.1%로 차이가 있었다.

〈표 VI-3-1〉 임산부 가구 부모 자녀 출산 후 근로형태 및 소득 변화 여부

단위 : 가구, (%)

구분		본인(여성)		배우자(남성)	
전체		393	(100.0)	482	(100.0)
취업 상태	변동 없음	305	(77.8)	452	(93.9)
	그만둠	56	(14.2)	3	(0.6)
	새로운 일을 함	32	(8.1)	26	(5.4)
근로 시간	늘어남	36	(9.1)	112	(23.3)
	줄어듦	135	(34.4)	23	(4.7)
	변함 없음	222	(56.4)	347	(72.0)
근로 소득	늘어남	84	(21.5)	214	(44.5)
	줄어듦	132	(33.7)	15	(3.1)
	변함 없음	176	(44.8)	252	(52.4)

주: 노동시간은 취업인 경우(휴직자 제외)만을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다음으로는 자녀 출산 후 양육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조사한 결과이다.

무자녀 가구의 경우는 자녀 출산의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임신부, 무자녀 가구 공통적으로 '생활비를 줄여서 해결할 계획임'의 응답 비중이 약 60%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기존에 저축해 둔 돈을 씀(보험 해지 포함)'이 약 20%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3-2〉 출산 후 자녀 양육 시 양육비용 마련 계획 : 임신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출산의향이 있는 경우

단위 : %(가구)

구분	생활비를 줄여서 해결할 계획임	은행 기관 등의 대출(보험 담보 대출 포함)	기존에 저축해 둔 돈을 씀(보험 해지 포함)	부모님 등 친인척으로부터 지원 받음	기존 소득으로 충분함	기타	계(수)
임산부 가구	56.6	6.1	18.2	3.1	14.7	1.4	100.0 (504)
무자녀 가구	58.6	5.7	20.8	3.8	10.8	0.3	100.0 (480)

주: 무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출산의향이 있는 경우에게만 질문하였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임산부 가구에게는 임신 중인 자녀의 출산 계획으로 인해 현재 소비 지출을 원하는 만큼 못하고 있는지, 무자녀 가구에게는 현재 출산 계획으로 인해 소비 지출을 원하는 만큼 못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임신부 가구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 비중(매우 그러함+그러함)이 70% 가량으로 나타났으며, 무자녀 가구의 경우는 50% 가량으로 나타났다. 무자녀 가구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중이 45.3%로 임신부 가구의 28.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VI-3-3〉 자녀 출산 계획으로 인해 현재 소비지출 현황(원하는 만큼 못하고 있는가) : 임신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출산의향이 있는 경우

단위 : %(가구)

구분	매우 그러함	그러함	그렇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음	계(수)
임산부 가구	19.3	47.0	28.4	5.3	100.0 (504)
무자녀 가구	12.4	36.8	45.3	5.5	100.0 (480)

주: 1) 임신부 가구에게는 '현재 임신 중인 자녀의 출산 계획으로 인해 현재 소비 지출을 원하는 만큼 못하고 있습니까?'로 질문하였으며, 무자녀 가구에게는 '현재 출산 계획으로 인해 소비 지출을 원하는 만큼 못하고 있습니까?'로 질문하였음.
 2) 무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출산의향이 있는 가구에게만 질문하였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무자녀 가구 중 출산의향이 없는 가구에 한해 현재 소비 지출을 원하는 만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그렇다는 응답 비중(매우 그러함+그러함)은 약 40%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중은 약 60%로 원하는 만큼 소비 지출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I-3-4〉 현재 소비 지출을 원하는 만큼 하고 있는지 여부 : 무자녀 가구 출산의향이 없는 경우
단위 : %(가구)

구분	매우 그러함	그러함	그렇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음	계(수)
전체	3.7	37.0	43.7	15.6	100.0 (337)

주: 자녀 출산의향이 없는 가구에게만 질문하였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자녀가 생긴다면 가구의 소비 지출을 얼마나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임산부 가구는 '현재 가구 소비 지출 총액의 20% 미만' 항목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무자녀 가구는 '현재 가구 소비 지출 총액의 20% 이상 40% 미만' 항목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특히 무자녀 가구 중 출산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들은 다른 가구들에 비해 '현재 가구 소비 지출 총액의 40% 이상 60% 미만' 항목과 '현재 가구 소비 지출 총액의 60% 이상' 항목의 응답 비중이 높았다. 즉, 임산부 가구에 비해 무자녀가구 특히, 출산 의향이 없는 무자녀 가구들은 자녀 출산 후 줄여야 할 소비 지출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VI-3-5〉 자녀 출산 후 줄여야 할 소비 지출 금액 정도 :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단위 : %(가구)

구분	줄일 필요 없음	현재 가구 소비 지출 총액의 20% 미만	현재 가구 소비 지출 총액의 20% 이상 40%미만	현재 가구 소비 지출 총액의 40% 이상 60%미만	현재 가구 소비 지출 총액의 60% 이상	계(수)
임산부 가구	7.6	44.4	36.7	8.2	3.1	100.0 (504)
무자녀 가구(출산의향 유)	4.3	36.0	46.6	11.5	1.6	100.0 (480)
무자녀 가구(출산의향 무)	6.8	17.6	37.1	25.4	13.1	100.0 (33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무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향후 10년 내 월평균 소득 증가 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출산의향에 관계 없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가구가 약 60%로 나타났으며,

변동 없을 것으로 전망한 가구는 출산의향이 있는 가구 23.5%, 출산의향이 없는 가구 28.8%로 나타났으며,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가구는 출산의향이 있는 가구 15.4%, 출산의향이 없는 가구는 12.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3-6〉 무자녀 가구의 향후 10년 내 월평균 소득 증가 전망 : 무자녀 가구

단위 : %(가구)

구분	크게 증가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변동 없을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크게 감소할 것이다	계(수)
무자녀 가구(출산의향 유)	4.3	56.8	23.5	13.8	1.6	100.0 (480)
무자녀 가구(출산의향 무)	5.1	53.9	28.8	12.0	0.3	100.0 (33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자녀 출산 의향이 있는 무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첫 자녀 출산 후 월평균 소득 변화 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출산 전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45.0%였으며 변동 없을 것이라는 전망은 35.2%,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19.7%로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높고 외벌이 가구는 변동이 없거나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VI-3-7〉 무자녀 가구의 첫 자녀 출산 후 월평균 소득 변화 전망 : 무자녀 가구 출산의향이 있는 경우

단위 : %(가구)

구분	출산 전보다 감소할 것이다	출산 전후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출산 전보다 증가할 것이다	계(수)
전체	45.0	35.2	19.7	100.0 (480)
맞벌이 가구	50.4	31.9	17.7	100.0 (359)
외벌이 가구	29.1	45.2	25.7	100.0 (121)
여부	χ^2	16.890(2)***		

주: 자녀 출산의향이 있는 가구에게만 질문하였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 $p < .05$, ** $p < .01$, *** $p < .001$.

첫 자녀 출산 후 월평균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 무자녀 가구(출산 의향이 있는 가구)에게 월평균 소득 감소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 중 한 명이 일을 그만 둘 예정이어서'가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휴직 예정이어서' 26.4%, '부모 중 한명 이상 현재 직장에서의 근로시간을 줄일 예정이어서' 20.3%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3-8〉 무자녀 가구의 첫 자녀 출산 후 월평균 소득 변화 이유 : 무자녀 가구 출산의향이 있는 경우

단위 : %, (가구)

구분	비중
부부 중 한명이 일을 그만 둘 예정이어서	38.7
부모 중 한명 이상 현재 직장에서의 근로시간을 줄일 예정이어서	20.3
휴직 예정이어서	26.4
부모 중 한명 이상 소득이 적은 일자리로 이직할 가능성이 높아서	12.4
기타	2.2
(수)	(216)

주: 1) 자녀 출산의향이 있는 가구에게만 질문하였음.
 2) 첫 자녀 출산 후 월평균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하는 가구에게만 질문하였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첫 자녀 출산 후 월평균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하는 무자녀 가구(출산 의향이 있는 가구)에게 월평균 소득 감소의 정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현재 가구 소비 지출 총액의 20% 이상 40% 미만'이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가구 소비 지출 총액의 40% 이상 60% 미만' 29.3%, '현재 가구 소비 지출 총액의 20% 미만' 17.5%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3-9〉 무자녀 가구의 첫 자녀 출산 후 예상 월평균 소득 감소 정도 : 무자녀 가구 출산의향이 있는 경우

단위 : %(가구)

구분	현재 가구 소비 지출 총액의 20% 미만	현재 가구 소비 지출 총액의 20% 이상 40%미만	현재 가구 소비 지출 총액의 40% 이상 60%미만	현재 가구 소비 지출 총액의 60% 이상 80% 미만	계(수)
전체	17.5	44.0	29.3	9.3	100.0 (216)

주: 1) 자녀 출산의향이 있는 가구에게만 질문하였음.
 2) 첫 자녀 출산 후 월평균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하는 가구에게만 질문하였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무자녀 가구 중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결혼 전과 후 출산 의향을 조사한 결과, '결혼 전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가 51.3%로 '결혼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 결혼 전후로 의향이 바뀐 무자녀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표 VI-3-10〉 무자녀 가구의 결혼 전과 후 출산 의향 비교 : 무자녀 가구 출산의향이 없는 경우

단위 : %, (가구)

구분	결혼 전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없음	결혼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음	계(수)	
전체	51.3	48.7	100.0	(337)

주: 자녀 출산의향이 없는 가구에게만 질문하였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무자녀 가구 중 출산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에 한해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1+2+3순위)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서'의 응답 비중이 60.8%로 가장 높았으며, '육아 및 자녀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가 51.4%로 높았다. 이어 '개인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서' 32.4%, '소득이 적어서' 28.8%, '자녀를 돌볼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24.2%, '일자리가 불안정해서(실업, 비정규직, 일용직 등의 고용불안정)' 20.1%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서'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고, 이어 '소득이 적어서', '육아 및 자녀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순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1+2+3순위 응답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개인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서'의 응답 비중은 1순위 응답에서는 4.1%로 낮았으며 2, 3순위 응답에서 10% 이상으로 높았다.

〈표 VI-3-11〉 무자녀 가구의 출산의향이 없는 이유(순위별) : 무자녀 가구 출산의향이 없는 경우

단위 : %, (가구)

구분		1+2+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출산 의향 없는 이유	소득이 적어서	28.8	19.2	5.0	4.6
	일자리가 불안정해서 (실업, 비정규직, 일용직 등의 고용불안정)	20.1	6.9	6.9	6.3
	자녀를 키우기 위한 주택 마련이 어려워서	17.4	6.6	6.2	4.6
	육아 및 자녀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51.4	15.2	18.0	18.3
	자녀를 돌볼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24.2	7.0	9.0	8.2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불이익 때문에	14.0	2.1	6.6	5.3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60.8	22.4	20.6	17.8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12.0	6.1	2.0	3.9
	건강상의 문제로	16.3	4.1	6.4	5.8
	개인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서	32.4	4.1	15.0	13.4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서	19.0	5.4	3.8	9.8
	기타	3.6	0.9	0.6	2.1
	(수)	(334)	(334)	(334)	(334)

주: 자녀 출산의향이 없는 가구에게만 질문하였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무자녀 가구 중 출산 의향이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무자녀 가구의 출산의향이 없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아이를 낳을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평균 3.3점으로 분석되었다. 즉, 출산을 꺼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아이를 낳을 의사가 보통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I-3-12〉 무자녀 가구의 출산의향이 없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출산 의향 : 무자녀 가구 출산의향이 없는 경우

단위 : %, 점, (가구)

구분	출산 의향					평균 점수	계(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2.3	12.6	26.5	32.5	16.1	3.3	100.0 (337)

주: 자녀 출산의향이 없는 가구에게만 질문하였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무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출산 후 예상되는 생활 변화 양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회적 평판'과 '이웃과의 어울림'은 모두 3.1점으로 변함없음에서 조금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음의 안정감'은 3.0점으로 변함없을 것으로, '삶의 재미'는 3.2점으로 변함없음에서 조금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면 '삶의 경제적 여유'와 '일에서의 성공(직장에서의 기회 등)'은 2.1점으로 조금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시간활용의 자유)'는 1.7점으로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VI-3-13〉 무자녀 가구의 자녀 출산 후 생활 변화 양상 : 무자녀 가구

단위 : %, 점, (가구)

구분	변화 정도					평균	계(수)
	매우 좋아짐	조금 좋아짐	변함 없음	조금 나빠짐	매우 나빠짐		
삶의 경제적 여유	0.2	4.6	17.9	58.3	19.0	2.1	100.0 (817)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시간활용의 자유)	0.1	3.4	10.5	35.7	50.2	1.7	100.0 (817)
사회적 평판	2.1	23.1	62.4	10.5	1.9	3.1	100.0 (817)
이웃과의 어울림	1.0	25.7	57.1	13.7	2.4	3.1	100.0 (817)
일에서의 성공(직장에서의 기회 등)	0.3	3.2	30.7	41.1	24.6	2.1	100.0 (817)
마음의 안정감	5.4	27.7	33.1	24.7	9.1	3.0	100.0 (817)
삶의 재미	8.4	38.2	30.5	15.8	7.2	3.2	100.0 (81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무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아이 1명을 출산하여 양육하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세후)이 최소한 어느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보면 월 600만원이상 되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월 평균 500~600만원 미만, 월 평균 400~500만원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출산 의향 유무에 따라 비교해보면, 월 평균 600만원 이상 고소득 구간은 출산 의향이 있는 가구(31.4%)가 출산 의향이 없는 가구(40.7%)에 비해 비중이 적었으나, 월 평균 300~600만원 미만의 중간 소득 구간에서는 출산 의향이 있는 가구가 없는 가구에 비해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VI-3-14〉 무자녀 가구의 아이 1명을 출산·양육 위한 가구소득(세후) 수준 : 무자녀 가구
단위 : %(가구)

구분	월 평균 300만원 미만	월 평균 300~ 400만원 미만	월 평균 400~ 500만원 미만	월 평균 500~ 600만원 미만	월 평균 600만원 이상	소득 정도와는 무관하다	계(수)
무자녀 가구(출산의향 유)	1.6	12.9	24.3	29.0	31.4	0.8	100.0 (480)
무자녀 가구(출산의향 무)	2.3	9.3	16.1	27.4	40.7	4.1	100.0 (33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나. 자녀계획(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

다음으로 임신부 가구에게는 자녀를 임신한 이유를, 무자녀 가구에게는 출산을 희망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이다. 임신부 가구는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서'가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그냥 생겨서' 20.7%,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보람 등 심리적인 만족 때문에/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보람' 14.7% 순으로 나타났다. 무자녀 가구의 경우는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의 응답 비중이 33.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보람 등 심리적인 만족 때문에/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보람'이 28.4%로 나타났다. '배우자 혹은 양가 부모님이 원해서'라는 응답은 임신부 가구의 경우 7.0%, 무자녀 가구는 14.3%로 나타났다.

〈표 VI-3-15〉 자녀를 임신한 이유 및 출산 희망 이유 : 임신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출산의향이 있는 경우

단위 : %, (가구)

구분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 (출산의향 유)
자녀를 갖고자 하는 이유	그냥 생겨서	20.7	-
	배우자 혹은 양가 부모님이 원해서	7.0	14.3
	노후에 외롭지 않을 것 같아서	2.9	8.1
	대를 잇기 위해서	2.9	1.2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어서	0.6	0.4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보람 등 심리적인 만족 때 문에/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보람	14.7	28.4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서	39.3	-
	주변의 평판과 사회적인 인정 때문에	0.2	-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	33.9
	아이를 좋아해서	10.6	12.3
기타	1.2	1.5	
(수)		(504)	(480)

주: 1) 임산부 가구에게는 자녀를 임신한 이유를 질문하였으며, 무자녀 가구에게는 출산을 희망하는 이유를 질문하였음.
2) 자녀 출산의향이 있는 가구에게만 질문하였음.
3) 임산부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보기에 차이가 있으며, 해당없는 보기는 '-' 표기하였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임산부 가구를 대상으로 결혼 전 자녀 계획 여부 및 계획 자녀 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녀 계획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중은 71.8%였으며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응답은 7.1%였다. 맞벌이 여부별로 비교해보면 맞벌이 가구에서 자녀 계획이 있었다는 응답 비중이 외벌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I-3-16〉 임신부 가구 결혼 전 자녀 계획 여부 및 계획 자녀 수 : 임신부 가구

단위 : %, (가구)

구분		자녀 계획 있음	자녀 계획 없음	생각 해보지 않았음	계(수)
전체		71.8	21.1	7.1	100.0 (504)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74.4	18.5	7.0	100.0 (384)
	외벌이	63.3	29.2	7.5	100.0 (120)
	χ^2/t	6.565(2)*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 $p < .05$, ** $p < .01$, *** $p < .001$.

임산부 가구 중 자녀 계획이 있는 경우, 무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출산의향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계획 자녀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임신부 가구의 경우 계획 자녀수가 평균 2.01명이었다. 반면 출산의향 있는 무자녀 가구의 경우 이보다 적은 1.52명으로 나타났다.

〈표 VI-3-17〉 계획 자녀수 : 임신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출산의향이 있는 경우

단위 : %, 명, (가구)

구분	계획 자녀수			평균	계(수)
	1명	2명	3명 이상		
임산부 가구	19.1	63.1	17.7	2.01	100.0 (362)
무자녀 가구(출산의향 유)	54.2	40.3	5.4	1.52	100.0 (480)

주: 임신부 가구 중 자녀 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질문하였으며, 무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출산의향이 있는 가구에게만 질문하였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이상에서 계획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를 2명 이상 낳고 싶은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자녀가 혼자이면 외로울 것 같아서'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사회성이 좋을 것 같아서',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인 것 같아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신부 가구의 경우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인 것 같아서'와 '아이를 좋아해서'의 응답 비중이 무자녀 가구에 비해 다소 높았다. 반면, 무자녀 가구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사회성이 좋을 것 같아서'의 응답 비중이 임신부 가구에 비해 높았다.

〈표 VI-3-18〉 2명 이상 출산 희망 이유 : 임신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출산의향이 있는 경우

단위 : %, (가구)

구분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 (출산의향 유)
2명 이상 출산 희망 이유	아이를 좋아해서	12.7	8.2
	자녀가 혼자이면 외로울 것 같아서	44.3	48.3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사회성이 좋을 것 같아서	21.9	30.4
	배우자나 부모님이 원해서	1.5	2.2
	내가 노후에 덜 외로울 것 같아서	0.7	1.3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인 것 같아서	18.5	9.1
	기타	0.3	0.5
(수)		(293)	(220)

주: 계획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질문하였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무자녀 가구 중 출산 의향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첫째 자녀를 언제쯤 낳을 계획인지 조사한 결과 ‘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4.7%로 가장 높았다. ‘2년’이라는 응답 비중은 10.6%, ‘5년 이상’도 9.7%로 높게 나타났다. 이외 ‘3년’ 7.7%, ‘1년’ 5.8%로 조사되었다.

〈표 VI-3-19〉 무자녀 가구 첫 자녀 결혼 후 출산 시기 계획: 무자녀 가구 출산의향이 있는 경우

단위 : %, (가구)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이상	정하지 않음	계(수)
전체	5.8	10.6	7.7	1.5	9.7	64.7	100.0 (480)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무자녀 가구 중 첫 자녀 출산 시기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결혼 전과 비교하여 출산 희망시기가 변동되었는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결혼 전과 비교했을 때 늦춰졌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 전과 동일하다’는 응답은 33.7%, ‘결혼 전과 비교했을 때 앞당겨졌다’는 응답은 11.4%로 조사되었다.

〈표 VI-3-20〉 무자녀 가구 결혼 이전과 이후 출산 희망시기 계획 변동 여부 :

무자녀 가구 출산의향이 있는 경우

단위 : %, (가구)

구분	결혼 전과 비교했을 때 앞당겨졌다	결혼 전과 동일하다	결혼 전과 비교했을 때 늦춰졌다	계(수)
전체	11.4	33.7	54.8	100.0 (170)

주: 결혼 후 첫 자녀 출산 시기 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질문하였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무자녀 가구 중 결혼 후 자녀 출산 시기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출산시기를 계획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1+2순위) ‘소득 등 경제적으로 준비가 될 것 같아서’의 응답 비중이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 부부만의 시간을 가진 후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도 43.8%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커리어, 직장에서의 일을 고려할 때 적절할 것 같아서’ 32.0%, ‘주택마련 등 주거환경이 갖춰질 것 같아서’ 29.5%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상의 이유로(난임 등으로 인한 치료기간을 고려 등)’의 응답 비중도 23.8%에 달했다.

〈표 VI-3-21〉 무자녀 가구 출산시기를 계획한 주된 이유 : 무자녀 가구 출산의향이 있는 경우

단위 : %, (가구)

구분		1+2순위	1순위	2순위
출산 시기를 계획한 주된 이유	소득 등 경제적으로 준비가 될 것 같아서	54.4	38.1	16.4
	커리어, 직장에서의 일을 고려할 때 적절할 것 같아서	32.0	14.4	17.6
	주택마련 등 주거환경이 갖춰질 것 같아서	29.5	5.4	24.1
	가족 혹은 내가 아이를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서	13.5	6.8	6.8
	개인, 부부만의 시간을 가진 후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43.8	20.1	23.7
	건강상의 이유로(난임 등으로 인한 치료기간을 고려 등)	23.8	14.6	9.2
기타	2.8	0.6	2.2	
(수)		(170)	(170)	(170)

주: 결혼 후 첫 자녀 출산 시기 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질문하였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다. 임신 관련(임산부 가구)

임산부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임신한 아이가 계획한 시기에 가진 아이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계획한 시기에 가졌다'는 응답 비중이 절반가량으로 높게 나타났다. '계획보다 늦게 가졌다'는 응답(21.3%)이 '계획보다 빨리 가졌다'는 응답(11.0%)보다 비중이 높았으며 '시기는 계획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18.2%로 나타났다.

〈표 VI-3-22〉 임신부 가구 임신 계획 시기 실천 여부 : 임신부 가구

단위 : %(가구)

구분	계획한 시기에 가짐	계획보다 빨리 가짐	계획보다 늦게 가짐	시기는 계획하지 않음	계(수)
전체	49.5	11.0	21.3	18.2	100.0 (362)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임산부 가구를 대상으로 계획보다 아이를 늦게 갖게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난임 등)'가 69.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낳으려고(주택 마련 등)' 11.01%, '일을 하는데 지장이 생기게 될까봐(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 등)' 7.6%,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4.9%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3-23〉 임신부 가구 계획보다 늦은 임신 이유 : 임신부 가구

단위 : %, (가구)

구분		값
임신이 늦은 이유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난임 등)	69.0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낳으려고(주택마련 등)	11.0
	회사에서 임신/출산하는 경우에 눈치를 주어서	-
	일을 하는데 지장이 생기게 될까봐(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 등)	7.6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2.6
	배우자가 원하지 않아서	2.4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4.9
	건강해진 이후에 낳으려고(질병, 체력저하 등)	2.6
	기타	-
(수)		(78)

주: 결혼 후 첫 자녀 출산 시기 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질문하였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임산부 가구를 대상으로 임신한 기간 동안 산전 진찰을 주로 받고 있는지(받을 예정인지) 조사한 결과 산전 진찰 병원으로는 병·의원이 81.0%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종합병원 14.9%로 분석되었다. 분만 병원으로도 병·의원이 75.8%로 높게 나타났으며 종합병원은 21.5%로 조사되었다.

〈표 VI-3-24〉 임신부 가구 병원 이용 계획: 산전 진찰 병원 : 임신부 가구

단위 : %(가구)

구분	종합병원	병·의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산전 진찰을 받지 않을 계획임	자택	기타	계(수)
산전 진찰 병원	14.9	81.0	0.6	3.0	0.5	-	-	100.0 (504)
분만 병원	21.5	75.8	0.9	1.2	-	0.6	-	100.0 (504)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임산부 가구를 대상으로 자연분만으로 낳을 것인지 제왕절개로 낳을 것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연분만이라 응답한 경우가 63.7%로 제왕절개 36.3%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I-3-25〉 임신부 가구 임신 계획: 분만 방식 : 임신부 가구

단위 : %(가구)

구분	자연분만	제왕절개	계(수)
전체	63.7	36.3	100.0 (504)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임산부 가구를 대상으로 산전 진찰과 분만에 들어가는 의료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는지 조사한 결과 평균 246만9천원 들 것으로 예상하였다. 예상 비용을 구간별로 분석해보면 ‘150~300만원 미만’이 37.2%로 가장 높았으며, ‘150만원 미만’ 25.0%, ‘300~450만원 미만’ 20.6%, ‘450만원이상’ 17.2%로 나타났다.

〈표 VI-3-26〉 임신부 가구 임신 계획: 예상 의료비용 : 임신부 가구

단위 : %, 만원, (가구)

구분	예상 의료비용				평균	(수)
	150만원 미만	150~300만원 미만	300~450만원 미만	450만원 이상		
전체	25.0	37.2	20.6	17.2	246.9	(504)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임산부 가구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산후조리 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산후조리원 등 전문시설에서 할 것이라 응답한 경우가 81.1%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산후조리원 등 전문시설에서의 산후조리 일수는 평균 13.6일, 비용은 358만9천원으로 예상하였다. 집에서 산후조리 한다는 응답은 26.4%였으며 집에서의 산후조리 일수는 평균 17.0일, 비용은 141만1천원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집에서 부모 및 친인척 도움을 받을 거라는 응답은 24.4%이고 이 경우의 산후조리 일수는 평균 27.4일이며 비용은 108만4천원으로 예상하였다.

〈표 VI-3-27〉 임신부 가구 산후조리 방식(중복응답) : 임신부 가구

단위 : %, 일, 만원

구분	여부	일수	비용
집에서 산후조리	26.4	17.0	141.1
집에서 부모 및 친인척 도움	24.4	27.4	108.4
산후 조리원 등 전문시설	81.1	13.6	358.9
기타	0.2	30.0	40.0

주: 504명의 응답 값이며, 산후조리를 안한다는 응답은 없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라. 양육 관련(영유아 가구, 임신부 가구, 무자녀 가구)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영유아 자녀에게 들어가는 양육비용은 충분한 수준(필요한 만큼)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6차년도 자료로 분석한 결과(5점 척도)는 아래와 같다. 분석 결과 1차년도에는 평균 2.5점이었으나 2~4차년도에는 3.0점으로 높아졌으며 5~6차년도에는 2.9점으로 다소 낮아졌다. 집단별로는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별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총 자녀수별로는 1명인 경우가 다자녀인 경우에 비해 점수가 높았다.

〈표 VI-3-28〉 가구 특성별 양육비용 충분성에 대한 태도 변화 (2018~2023년) : 영유아 가구

단위 : 점, (가구)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평균 점수	(수)	평균 점수	(수)	평균 점수	(수)	평균 점수	(수)	평균 점수	(수)	평균 점수	(수)
전체	2.5	(1,648)	3.0	(1,665)	3.0	(1,679)	3.0	(1,709)	2.9	(1,730)	2.9	(1,77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6 (761)	3.1 (738)	3.2 (735)	3.1 (720)	3.0 (767)	2.9 (835)					
	외벌이	2.4 (887)	3.0 (927)	2.9 (944)	2.9 (989)	2.9 (963)	2.9 (938)					
	<i>t</i>	5.8***	2.2**	5.1***	4.1***	2.2*	2.0*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2 (359)	2.7 (239)	2.5 (118)	2.6 (200)	2.6 (145)	2.5 (45)					
	300~399만원	2.4 (474)	2.9 (468)	2.9 (372)	2.9 (476)	2.8 (495)	2.6 (274)					
	400~499만원	2.6 (374)	3.0 (435)	3.0 (512)	3.0 (448)	2.9 (419)	2.8 (472)					
	500~599만원	2.6 (201)	3.1 (268)	3.1 (296)	3.2 (293)	3.0 (301)	2.8 (366)					
	600만원 이상	2.7 (240)	3.3 (255)	3.3 (381)	3.3 (292)	3.2 (370)	3.1 (616)					
	<i>F</i>	25.2***	17.2***	21.8***	28.3***	20.5***(a)	23***(a)					
총 자녀수	1명	2.6 (638)	3.1 (559)	3.2 (543)	3.2 (551)	3.0 (583)	3.1 (628)					
	2명	2.5 (818)	3.0 (878)	3.0 (889)	3.0 (910)	2.9 (900)	2.8 (894)					
	3명이상	2.3 (192)	2.8 (228)	2.8 (247)	2.7 (248)	2.7 (247)	2.6 (251)					
	<i>F</i>	15.0***	15.5***	16.6***	25.4***	13.3***(a)	30.8***(a)					

주: 1차년도는 4점 척도, 2~4차는 5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므로 주의를 요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5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 $p < .05$, ** $p < .01$, *** $p < .001$.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영유아 자녀 양육과정 중 가장 부담되는 비목에 대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6차년도 자료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6차년도 동안 교육/보육비의 비중이 32.5%~5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식비가 15.5%~28.7%로 높게 나타났다. 이 외 원리금 상환이 10% 내외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 및 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는 2.5%~5.0%로 분석되었다.

연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식비(외식비 포함)의 경우 1~3차년도에는 20% 미만이었으나 4차년도에 24.3%로 증가하였다. 교육/보육비는 1~4차년도까지 40%를 상회하였으나, 5차년도와 6차년도에 30%대로 낮아지고 대신 여가 및 문화생활비가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관련해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 실내생활 비중이 늘어나며 식비에 대한 부담이 늘고, 코로나19 종식 이후부터 여가 활동의 증가로 관련 비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VI-3-29〉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 변화 (2018~2023년) : 영유아 가구

단위 : (가구), %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수)	(1,648)	(1,665)	(1,679)	(1,709)	(1,730)	(1,773)
1. 식비(외식비포함)	17.7	15.5	18.7	24.3	28.7	26.1
2. 주거 관리비	4.0	2.7	1.5	1.3	1.9	2.7
3. 기기/집기	0.8	0.8	0.5	0.6	0.5	0.7
4. 피복비(의류및신발)	1.8	2.0	1.8	1.9	2.1	0.8
5. 보건/의료비	1.6	1.6	1.3	1.5	1.4	1.4
6. 교육/보육비	44.6	48.8	54.6	40.6	35.3	32.5
7. 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5.0	3.5	2.5	2.8	4.0	2.4
8. 교통비/통신비	0.8	1.0	0.2	0.3	0.5	0.3
9. 개인유지비	7.0	7.7	6.8	11.0	9.7	6.3
10. 금융상품	4.1	4.1	2.4	4.1	5.0	4.9
11. 원리금 상환	-	11.0	7.8	9.5	9.9	12.6
12. 이전지출	0.7	1.0	0.7	1.0	0.3	0.3
13. 기타 상품 및 서비스	0.5	0.5	1.2	0.1	0.6	0.1
14. 부담되는 항목없음	11.3	-	-	0.8	-	8.9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5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다음은 영유아 자녀 양육과정 중 가장 부담되는 비목에 대해 2023년 자료로 영유아 가구, 임신부 가구, 무자녀 가구(출산 의향이 있는 경우)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이다.

공통적으로 교육/보육비의 응답 비중이 30~4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식비의 비중이 20% 전후로 높았다. 원리금 상환도 10% 내외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영유아 가구의 경우 식비의 비중이 26.1%로 임산부 가구와 무자녀 가구가 15% 정도인데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임산부 및 무자녀 가구는 주거/관리비의 비중이 각각 6.3%, 8.2%로 영유아 가구 2.7%에 비해 높았다. 또한 교육/보육비의 경우 임산부 및 무자녀 가구의 응답 비중이 영유아 가구에 비해 10%p 정도 높게 나타났다.

〈표 VI-3-30〉 가구 특성별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 (2023년) :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출산 의향 있는 경우

단위 : %, (가구)

구분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출산의향 유)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	식비	26.1	16.8	15.5
	주거/관리비	2.7	6.3	8.2
	기기/집기	0.7	2.3	1.1
	피복비	0.8	2.6	0.1
	보건/의료비	1.4	5.0	4.5
	교육/보육비	32.5	39.4	42.2
	여가/문화생활비	2.4	1.8	1.8
	교통/통신비	0.3	0.4	0.4
	개인유지비	6.3	9.8	9.8
	금융상품	4.9	2.9	2.7
	원리금상환	12.6	9.8	11.7
	이전지출	0.3	1.7	1.2
	기타상품 및 서비스	0.1	0.4	0.4
	부담되는 비용 없음	8.9	0.8	0.4
(수)	(1,773)	(504)	(480)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다음은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소득이 줄어들거나 양육 관련 용품 가격이 증가하여 양육비용 부담이 증가할 때, 어떤 비목에서 우선적으로 지출을 줄일 것인지 조사한 결과이다(표 VI-3-31 참조). 영유아 가구(1+2순위)의 경우 식비의 응답비중이 50.1%로 가장 높았으며 여가/문화생활비가 47.0%, 개인유지비 31.1%, 피복비 24.2%로 나타났다. 반면 임산부 가구는 교육/보육비가 39.4%로 가장 높았으며, 식비는 16.8%로 나타났다. 출산의향이 있는 무자녀 가구의 경우 영유아 가구와 비슷하게 식비가 52.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여가/문화생활비가 20.4%로 나타났다. 출산의향이 없는 무자녀 가구 역시(1+2+3순위) 식비가 64.3%로 가장 높았으며, 피복비 48.9%, 여가/문화생활비 48.1%, 개인유지비 43.6%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표 VI-3-32 참조), 영유아, 임신부, 무자녀 가구 공통적으로 ‘부모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해야 함’의 응답 비중이 6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 가구의 경우 ‘부모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음’의 응답 비중이 그 다음을 차지한 반면, 임신부와 무자녀 가구는 ‘국가가 우선 책임지고 나머지를 부모가 부담해야 함’의 응답 비중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국가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음’의 응답 비중도 영유아 가구에 비해 임신부, 무자녀 가구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VI-3-31〉 양육비용 부담 증가 등 상황에서 우선적 지출 축소 항목

단위 : %, (가구)

구분	양육부담 증가로 인한 지출축소 우선 비목																(수)		
	식비	주거 / 관리비	기기 / 집기	피복비	보건 / 의료비	교육 / 보육비	여가 / 문화 생활비	교통	통신비	개인유지비	금융상품	주택대출 등 원리금 상환	이전지출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	모름 / 무응답		부담 되는 항목 없음	
영유아 가구	1+2순위	50.1	4.2	3.6	24.2	1.9	7.1	47.0	4.5	31.1	15.6	-	4.8	1.7	0.3	1.5	-	(1,773)	
	1순위	37.7	1.7	1.5	10.1	0.7	2.8	22.2	1.1	10.9	7.5	-	1.4	0.6	0.2	1.5	-	(1,773)	
	2순위	12.4	2.4	2.0	14.1	1.1	4.3	24.8	3.4	20.2	8.1	-	3.4	1.1	0.1	-	-	(1,773)	
임산부 가구		16.8	6.3	2.3	2.6	5.0	39.4	1.8	0.4	9.8	2.9	9.8	1.7	0.4	-	-	0.8	(504)	
무자녀 가구 (출산의향 유)		52.0	2.0	1.4	7.5	0.8	1.0	20.4	1.0	7.7	1.7	2.4	0.7	-	0.2	-	1.2	(480)	
무자녀 가구 (출산의향 무)	1+2+3 순위	64.3	18.4	9.4	48.9	4.4	4.1	48.1	4.3	8.2	43.6	-	-	14.9	14.2	-	-	5.7	(334)
	1순위	50.2	6.6	2.7	13.7	0.9	0.6	10.4	-	0.5	5.4	-	-	1.7	1.5	-	-	5.7	(334)
	2순위	7.1	8.5	3.2	25.5	1.2	0.9	20.7	1.6	3.6	15.1	-	-	6.2	0.9	-	5.7	-	(334)
	3순위	7.0	3.3	3.6	9.6	2.3	2.6	17.0	2.8	4.1	23.1	-	-	7.0	11.8	-	5.7	-	(334)

- 주: 1) 영유아 가구에게는 ‘가구소득이 줄어들거나 양육 관련 용품 가격이 증가하여 양육비용 부담이 증가할 때, 어떤 비목에서 우선적으로 지출을 줄이십니까?’를 질문하였으며, 임신부 가구와 무자녀 가구 중 출산의향이 있는 가구에게는 ‘양육비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출을 줄일 비목은 무엇입니까?’를 질문하였고, 무자녀 가구 중 출산의향이 없는 가구에게는 ‘만약 귀댁에 자녀가 있다면, 어떤 비목의 지출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를 질문하였음.
- 2) 영유아 가구, 임신부 가구, 무자녀 가구 중 출산의향이 있는 가구에게는 교통/통신비를 하나의 보기로 질문하였으며, 무자녀 가구 중 출산의향이 없는 가구에게는 교통비와 통신비를 구분하여 질문하였음.
- 3) 영유아 가구에게는 ‘주택대출 등 원리금 상환’은 보기가 없었으며, 무자녀 가구 중 출산의향이 없는 가구에게는 ‘금융상품’과 ‘주택대출 등 원리금 상환’ 보기가 없었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표 VI-3-32〉 자녀 양육 시 책임 소재

단위 : %(가구)

구분	부모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음	부모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해야 함	국가가 우선 책임지고 나머지를 부모가 부담해야 함	국가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음	기타	잘 모름	계(수)
영유아 가구	23.1	62.0	12.9	1.5	0.3	0.2	100.0 (1,773)
임산부 가구	13.5	66.6	16.9	2.8	-	0.2	100.0 (504)
무자녀 가구	13.1	66.7	14.8	2.8	0.2	2.4	100.0 (81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부모는 자녀에 대해 어느 시기까지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영유아, 임산부, 무자녀 가구 공통적으로 '대학 졸업까지 지원'의 응답 비중이 40% 정도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영유아 가구에서는 '취업이 될 때까지는 지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임산부 가구와 무자녀 가구는 '미성년시기까지 지원(고교졸업까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VI-3-33〉 자녀 양육 시 경제적 지원 시기

단위 : %(가구)

구분	미성년시기까지 지원 (고교졸업까지)	대학 졸업까지 지원	취업이 될 때까지는 지원	결혼할 때까지 지원	손자녀 양육까지 지원	기타	계(수)
영유아 가구	20.2	40.2	32.3	6.5	0.5	0.3	100.0 (1,773)
임산부 가구	25.9	42.8	21.6	5.7	3.6	0.4	100.0 (504)
무자녀 가구	37.1	38.0	17.9	5.0	1.4	0.6	100.0 (81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무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및 자녀 양육에 대한 항목별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아이를 키우는 것은 희생이 필요하다'의 동의 정도가 4.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이를 키우는 데는 돈이 많이 든다', '아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할 것 같으면 낳지 않는 것이 좋다'가 4.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이가 있는 집은 아빠 보인다'도 4.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은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또래보다 성숙하다'로 3.1점이었으며 '아이가 있는 집은 행복해 보인다'도 3.4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VI-3-34〉 무자녀 가구 해당 문구에 동의 정도

단위 : %, 점, (가구)

구분	동의 정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그려함	그려함	보통	그렇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음		
아이를 키우는데는 돈이 많이 든다	59.8	34.3	4.9	0.9	0.1	4.5	100.0 (817)
아이가 있는 집은 행복해 보인다	12.3	35.0	35.4	14.5	2.8	3.4	100.0 (817)
아이가 있는 집은 바빠 보인다	51.3	39.9	7.3	1.5	0.1	4.4	100.0 (817)
아이를 키우는 것은 희생이 필요하다	67.7	26.2	4.9	0.9	0.4	4.6	100.0 (817)
아이들은 다루기 어렵다	39.5	41.8	14.0	4.4	0.2	4.2	100.0 (817)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또래보다 성숙하다	13.1	23.8	30.6	22.5	10.0	3.1	100.0 (817)
아이를 키우며 나의 일을 하는 것은 어렵다	36.1	44.1	14.4	4.5	0.9	4.1	100.0 (817)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에 대해 국가가 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27.7	35.5	25.6	7.8	3.4	3.8	100.0 (817)
아이들을 잘 키우지 못해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많다	41.1	36.5	18.5	3.0	0.9	4.1	100.0 (817)
아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할 것 같으면 낳지 않는 것이 좋다	59.6	28.1	10.2	2.0	0.1	4.5	100.0 (81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마. 육아 지원에 대한 요구 (영유아 가구, 임신부 가구, 무자녀 가구)

영유아 가구, 임신부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의 임신·출산부터 영아, 유아에 이르는 시기 중 정부의 지원이 가장 부족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공통적으로 유아기가 가장 높고 영아기, 임신·출산 시기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 비중에는 차이를 보이는데, 영유아 가구의 경우 유아기라는 응답 비중이 임신부 가구에 비해 15%p 정도 높았고, 임신부 가구는 임신·출산 시기라는 응답 비중이 영유아 가구에 비해 10%p 정도 높았다.

〈표 VI-3-35〉 가구특성별 육아지원 부족한 시기 : 영유아 가구 및 임신부 가구

단위: %, (가구)

구분	임신·출산 시기	영아기	유아기	(수)
영유아 가구	10.9	32.4	56.7	100.0 (1,773)
임산부 가구	24.4	33.6	41.9	100.0 (504)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이러 자녀의 임신·출산부터 영아, 유아기에 비용, 서비스, 물품, 시간 지원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는 모든 시기에 걸쳐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영아기에는 서비스와 시간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응답이 다른 시기보다 높았다. 유아기에는 다시 비용 지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영유아 가구와 임신부 가구를 비교해 보면 영유아 가구는 전반적으로 임신부 가구보다 비용 지원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임신부 가구는 임신·출산기에 물품과 시간 지원의 응답 비중이 높고, 영아기에는 서비스 지원, 유아기에는 시간 지원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았다.

〈표 VI-3-36〉 시기별 부족한 육아지원 범주 영유아 가구 및 임신부 가구

단위: %(가구)

구분	지원 부족으로 개선이 필요한 범주					계(수)
	비용지원	서비스지원	물품지원	시간지원		
임산출산기	영유아 가구	80.8	11.9	4.7	2.6	100.0 (193)
	임산부 가구	71.5	11.0	7.0	10.5	100.0 (123)
영아기	영유아 가구	54.3	18.4	9.6	17.7	100.0 (575)
	임산부 가구	51.0	26.7	4.1	18.2	100.0 (169)
유아기	영유아 가구	72.4	13.0	1.9	12.6	100.0 (1,005)
	임산부 가구	61.7	12.5	1.7	24.1	100.0 (211)

주: 각 시기가 가장 육아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개선 필요 범주를 질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임산부와 무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출산 및 양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임신부와 무자녀 가구 공통적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비용지원(보육료, 유아학비지원, 부모급여 등)', '육아기 부모의 근로시간단축 또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근무'의 응답 비중(1+2순위)이 40~50% 전후로 높게 나타나, 시간과 비용 지원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별로 비교해 보면 임신부 가구의 경우 무자녀 가구에 비해 시간 지원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았으며, 무자녀 가구는 비용 및 시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았다.

〈표 VI-3-37〉 출산 및 양육 시 우선 시행 정부 지원 정책 : 임신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단위 : %, (가구)

구분	1+2순위		1순위		2순위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	
우선 지원 정책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확대	51.0	37.7	40.3	23.7	10.7	14.0
	육아기 부모의 근로시간단축 또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근무	45.5	39.5	19.7	17.3	25.8	22.2
	개별돌봄인력(베이비시터)의 인력관리	11.0	12.9	3.5	5.4	7.5	7.5
	유치원 및 어린이집 질 제고	10.4	7.3	3.4	2.9	7.0	4.5
	비용지원(보육료, 유아학비지원, 부모급여 등)	45.8	47.9	24.1	29.3	21.7	18.6
	공공 보육·교육시설(국공립 어린이집 등) 확충	12.6	19.8	3.3	7.6	9.3	12.1
	출산 및 영유아를 위한 의료시설(산부인과 및 소아과) 확충	13.0	15.5	2.3	5.2	10.7	10.3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7.5	13.7	2.8	5.8	4.7	7.9
	영유아 문화 및 놀이시설 확충	1.8	1.9	0.2	0.2	1.6	1.7
	기타	1.4	3.7	0.4	2.6	1.0	1.2
(수)	(504)	(817)	(504)	(817)	(504)	(81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임산부와 무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는 이하와 같다. 전반적으로 임신부 가구의 인지 정도가 높으며 출산 의향이 있는 무자녀 가구의 인지 정도가 출산 의향이 없는 무자녀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무자녀 가구들의 경우 서비스와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시간 지원 정책에 비해 다소 낮은 양상을 보였다.

임산부 가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서비스 지원 중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중 첫만남이용권, 시간 지원 중 가족돌봄휴가/휴직을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중이 20% 가량으로 나타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의향 있는 무자녀 가구의 경우 시간 지원제도 전반과 비용 지원 중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높았으나(잘 알고 있음의 응답 비중이 30% 이상) 시간제 보육,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잘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비중이 약 40% 정도). 출산 의향 없는 무자녀 가구들은 출산 의향 있는 가구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시간 지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휴직의 인지도가 출산의향 있는 무자녀 가구들에 비해 낮았다.

〈표 VI-3-38〉 육아지원정책별 인지 여부 : 임신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단위 : %, (가구)

구분	임신부 가구				무자녀 가구 (출산의향 유)				무자녀 가구 (출산의향 무)				
	잘 알고 있음	들어는 봤음	잘 모르겠음	(수)	잘 알고 있음	들어는 봤음	잘 모르겠음	(수)	잘 알고 있음	들어는 봤음	잘 모르겠음	(수)	
서비스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지원	51.1	36.6	12.3	(504)	22.9	56.2	20.9	(480)	19.8	58.3	21.9	(337)
	시간제보육	37.2	42.2	20.6	(504)	14.6	46.1	39.3	(480)	16.9	47.2	36.0	(337)
비용 지원 정책	아이돌봄서비스	36.7	42.0	21.3	(504)	22.0	55.3	22.6	(480)	22.7	55.3	22.1	(337)
	첫만남이용권	57.8	24.6	17.6	(504)	26.4	30.8	42.8	(480)	16.6	30.8	52.6	(337)
	부모급여	56.0	29.8	14.2	(504)	25.6	37.1	37.3	(480)	15.6	37.4	47.0	(337)
	가정양육수당	51.6	31.7	16.7	(504)	23.4	40.6	36.1	(480)	17.0	44.2	38.8	(337)
시간 지원	이동수당	62.8	26.7	10.4	(504)	30.5	46.7	22.9	(480)	22.5	55.5	22.1	(337)
	출산지원금	60.7	28.5	10.8	(504)	34.5	52.8	12.8	(480)	29.9	53.0	17.1	(337)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 휴가 포함)	55.5	30.7	13.8	(504)	41.5	44.3	14.1	(480)	34.9	44.2	21.0	(337)
가족돌봄휴가/휴직	육아휴직	64.5	29.4	6.1	(504)	53.6	42.1	4.4	(480)	50.9	43.9	5.3	(337)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48.5	35.4	16.1	(504)	31.9	39.4	28.7	(480)	27.2	41.7	31.1	(337)
가족돌봄휴가/휴직	42.3	38.1	19.6	(504)	29.2	45.1	25.7	(480)	27.7	44.5	27.9	(33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이어 임신부와 무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모든 제도에 대해 평균 4점 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임신부 가구의 경우 비용과 시간 지원 제도는 모두 4.5점으로 나타났으나, 서비스 지원은 4.3~4.4점으로 다소 낮았다. 출산의향이 있는 무자녀 가구의 경우는 시간 지원은 4.7점 또는 4.8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비용지원이 4.6점 또는 4.7점으로 다소 낮으며, 서비스 지원은 4.4~4.5점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출산의향이 없는 무자녀 가구는 시간 지원이 4.3~4.5점으로 가장 높고 서비스와 비용 지원은 4점대 초반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VI-3-39〉 육아지원정책 필요성 인식 정도 : 임신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단위 : %, 점, (가구)

구분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 (출산의향 유)						무자녀 가구 (출산의향 무)									
	전혀 필요 하지 않음	필요 하지 않음	보통	필요 함	매우 필요 함	평균 점수	(수)	전혀 필요 하지 않음	필요 하지 않음	보통	필요 함	매우 필요 함	평균 점수	(수)	전혀 필요 하지 않음	필요 하지 않음	보통	필요 함	매우 필요 함	평균 점수	(수)	
서비스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지원	2.2	2.6	8.9	25.6	60.7	4.4	(442)	1.1	1.1	6.5	38.5	52.9	4.4	(380)	0.3	5.3	15.0	41.5	38.0	4.1	(263)
	시간제보육	1.4	3.2	12.2	31.1	52.1	4.3	(400)	1.8	0.3	9.0	34.5	54.4	4.4	(291)	2.0	3.6	10.1	47.6	36.8	4.1	(216)
비용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1.5	4.9	13.1	26.7	53.9	4.3	(396)	1.4	1.6	7.1	30.3	59.6	4.5	(372)	1.6	4.3	9.1	42.0	43.0	4.2	(262)
	첫만남이용권	1.7	3.5	7.1	17.6	70.2	4.5	(415)	0.9	0.7	5.1	16.3	76.9	4.7	(275)	1.3	6.6	13.7	35.2	43.2	4.1	(159)
육아 지원 정책	부모급여	1.8	2.7	8.8	18.7	67.9	4.5	(432)	1.9	0.3	5.8	17.1	75.0	4.6	(301)	1.8	6.2	14.3	31.2	46.5	4.1	(178)
	가정양육수당	1.4	2.9	9.2	19.2	67.2	4.5	(420)	1.1	1.6	6.5	19.5	71.4	4.6	(307)	2.6	7.7	15.7	29.8	44.2	4.1	(206)
시간 지원	이동수당	1.7	3.5	7.2	18.3	69.3	4.5	(451)	1.1	2.7	5.5	19.4	71.3	4.6	(370)	4.6	5.5	18.0	29.8	42.0	4.0	(262)
	출산지원금	1.5	2.1	7.9	19.2	69.3	4.5	(449)	0.8	1.6	4.5	16.3	76.8	4.7	(419)	3.7	2.9	15.3	29.8	48.4	4.2	(279)
시간 지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포함)	1.3	3.2	9.1	13.5	72.9	4.5	(434)	1.1	1.2	2.9	11.4	83.4	4.7	(412)	2.0	1.9	7.2	23.0	65.9	4.5	(266)
	육아휴직	1.4	3.7	6.8	16.2	71.8	4.5	(473)	1.2	0.6	2.7	12.6	82.9	4.8	(459)	2.3	3.4	6.1	23.6	64.5	4.4	(319)
가족돌봄휴가/ 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1.4	2.5	9.6	16.5	70.0	4.5	(423)	1.4	0.8	4.4	14.5	78.9	4.7	(342)	2.6	3.9	10.6	27.3	55.5	4.3	(232)
	가족돌봄휴가/ 휴직	1.4	3.8	7.2	20.2	67.3	4.5	(405)	1.6	1.4	4.4	14.5	78.1	4.7	(357)	3.4	1.9	8.3	28.9	57.4	4.4	(243)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해 정부가 진행 중인 육아지원정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모든 가구의 평균 점수가 2점대 초반을 보여 대체로 불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의향 있는 무자녀가구의 점수는 2.1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VI-3-40〉 정부의 육아지원정책 충분함 정도 : 임신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단위 : %, 점, (가구)

구분	충분함 정도					평균 점수	(수)
	매우 불충분함	대체로 불충분함	보통	대체로 충분함	매우 충분함		
임산부 가구	21.6	34.9	27.5	13.6	2.5	2.4	(504)
무자녀 가구(출산의향 유)	28.2	41.5	21.5	7.3	1.4	2.1	(480)
무자녀 가구(출산의향 무)	26.9	32.6	29.7	7.5	3.3	2.3	(33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아래는 임신부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정부의 육아지원정책 충분함 정도를 세 부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맞벌이에 비해 외벌이의 경우 '매우 불충분함', '대체로 충분함'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진 않았으나, 299만원이하인 경우 평균 점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서는 낮았다. 총 자녀수별로는 무자녀 임신부(첫째 자녀를 임신한) 가구의 평균 점수가 유자녀 임신부(둘째 이상을 임신한) 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도 통계적 유의미성이 발견되진 않았으나, 중소도시가 대도시, 읍면 지역에 비해 평균 점수가 낮았다.

〈표 VI-3-41〉 임신부 가구 정부의 육아지원정책 충분함 정도 : 임신부 가구

단위 : %, 점, (가구)

구분	충분함 정도					평균 점수	(수)	
	매우 불충분함	대체로 불충분함	보통	대체로 충분함	매우 충분함			
전체	21.6	34.9	27.5	13.6	2.5	2.4	(504)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9.9	38.0	27.8	11.8	2.5	2.4	(384)
	외벌이	27.0	24.8	26.5	19.2	2.5	2.5	(120)
	χ^2 / t	10.266(4)*					-0.5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6.9	26.6	34.7	8.8	3.0	2.3	(34)
	300~399만원	19.9	38.3	26.2	13.3	2.3	2.4	(44)
	400~499만원	23.8	30.2	22.8	20.5	2.8	2.5	(73)

구분	충분함 정도					평균 점수	(수)	
	매우 불충분함	대체로 불충분함	보통	대체로 충분함	매우 충분함			
500~599만원 600만원 이상	17.7	40.5	25.0	13.8	2.9	2.4	(101)	
	22.1	34.4	29.2	12.1	2.2	2.4	(252)	
	χ^2 / F					9.045(16)	0.2	
총 자녀수	0명	25.2	39.7	24.1	10.2	0.8	2.2	(245)
	1명	19.2	31.4	31.6	13.9	3.9	2.5	(194)
	2명	15.7	25.0	27.2	26.9	5.2	2.8	(57)
	3명이상	13.1	40.4	34.3	12.2	-	2.5	(8)
	χ^2 / F					-	6.4***(a)	
지역규모	대도시	21.0	31.4	28.1	17.1	2.4	2.5	(199)
	중소도시	23.4	36.9	26.6	10.2	2.9	2.3	(243)
	읍면지역	16.4	38.0	29.0	15.1	1.6	2.5	(62)
	χ^2 / F					6.889(8)	1.5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 $p < .05$, ** $p < .01$, *** $p < .001$.

바. 삶의 만족도(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의 항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조사한 결과, 대체로 평균 3점대 이상의 만족도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가족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항목의 만족도가 3점대 후반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다소 높았다. 가구별로 비교해 보면 영유아 가구의 평균 만족도가 임산부, 무자녀 가구에 비해 가구의 경제적 수준, 주거환경, 가족관계, 자녀돌봄, 사회적 친분관계, 자아성취, 전반적 생활만족도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여가생활 항목에서는 무자녀 가구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I-3-42〉 삶의 만족도 :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단위 : %, 점, (가구)

구분	만족도					평균	계(수)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가구의 경제적 수준	영유아 가구	2.0	30.2	53.1	12.8	1.8	3.2 100.0 (1,773)
	임산부 가구	4.1	25.0	43.0	21.0	6.9	3.0 100.0 (504)
	무자녀 가구	2.8	23.2	47.1	21.6	5.3	3.0 100.0 (817)
여가생활	영유아 가구	2.5	27.9	46.3	19.9	3.4	3.1 100.0 (1,773)
	임산부 가구	5.8	27.2	38.6	21.5	7.0	3.0 100.0 (504)
	무자녀 가구	5.1	31.2	45.4	14.8	3.5	3.2 100.0 (817)
주거환경	영유아 가구	4.9	49.8	36.6	7.7	1.1	3.5 100.0 (1,773)
	임산부 가구	7.4	31.7	38.1	16.4	6.4	3.2 100.0 (504)

VI. 저출생 대응 및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 임신부, 무자녀, 영유아 가구 비교

구분	만족도					평균	계(수)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가족관계	무자녀 가구	5.7	36.7	37.8	16.0	3.9	3.2	100.0 (817)
	영유아 가구	19.1	60.0	18.6	2.0	0.5	4.0	100.0 (1,773)
	임산부 가구	23.1	43.6	22.5	8.0	2.8	3.8	100.0 (504)
	무자녀 가구	18.2	45.7	28.9	6.1	1.2	3.7	100.0 (817)
자녀돌봄 (양육)	영유아 가구	6.0	44.2	42.7	6.3	0.8	3.5	100.0 (1,773)
	임산부 가구	4.8	35.2	34.8	20.0	5.2	3.1	100.0 (259)
	무자녀 가구	-	-	-	-	-	-	-
사회적 친분관계	영유아 가구	6.3	49.0	39.4	4.9	0.5	3.6	100.0 (1,773)
	임산부 가구	9.3	37.3	38.3	11.4	3.7	3.4	100.0 (504)
	무자녀 가구	8.9	39.6	43.2	7.0	1.2	3.5	100.0 (817)
자아성취	영유아 가구	3.1	31.8	46.4	15.1	3.7	3.2	100.0 (1,773)
	임산부 가구	6.8	28.4	41.7	16.9	6.2	3.1	100.0 (504)
	무자녀 가구	5.5	32.7	44.7	13.0	4.1	3.2	100.0 (817)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영유아 가구	2.9	46.8	45.2	4.6	0.6	3.5	100.0 (1,773)
	임산부 가구	7.3	39.7	36.5	13.2	3.3	3.3	100.0 (504)
	무자녀 가구	7.4	41.4	39.9	8.9	2.4	3.4	100.0 (81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영유아 가구, 임신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결혼 당시와 현재 사회경제적 위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또한 향후 10년에는 어떤 정도의 사회경제적 위치일 것이라 예상하는지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중층'의 응답 비중이 높았는데, 특히 결혼 당시와 현재의 경우 '중중', '중하층'의 응답 비중이 높고 미래전망에 대해서는 '중상층'의 응답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표 VI-3-43〉 시기별 사회경제적 위치 : 영유아 가구, 임신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

단위 : %, (가구)

구분	시기별 사회 경제적 위치									
		결혼당시			현재			미래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
상층	상상	0.3	1.9	0.4	0.1	0.6	0.2	2.5	3.1	2.0
	상중	3.4	5.2	2.2	1.9	4.1	2.1	6.7	12.0	6.6
	상하	1.5	5.2	3.0	1.9	7.3	3.0	9.9	14.4	13.7
중층	중상	9.5	20.3	19.1	10.1	16.1	21.0	28.7	25.3	29.6
	중중	32.5	33.8	35.8	38.9	30.8	33.8	32.3	23.7	27.0
	중하	31.2	20.6	24.0	32.1	22.6	24.1	14.6	11.2	13.9
하층	하상	15.3	6.4	8.9	9.4	10.3	9.2	3.7	6.0	5.2
	하중	4.7	3.6	5.2	3.8	4.5	5.1	1.0	2.0	1.6
	하하	1.5	2.9	1.5	1.9	3.7	1.4	0.7	2.3	0.4
(수)	(1,773)	(504)	(817)	(1,773)	(504)	(817)	(1,773)	(504)	(81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6차년도) 원자료.

집단별로 살펴보면 영유아 가구의 경우 '중증'과 '중하층'의 응답 비중이 다른 가구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무자녀 가구는 '중상층'의 비중이 다른 가구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미래의 '상층' 전망과 관련해 '상상'은 영유아 가구, 임신부 가구의 응답 비중이 무자녀 가구에 비해 다소 높고, '상하'의 경우는 임신부, 무자녀 가구가 높게 나타났다.

4. 소결

VI장에서는 영유아 가구와 임신부 가구, 무자녀 가구의 저출생 대응 및 육아지원 정책 활용 경험 및 의견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신부 가구의 출산 및 육아휴직 등의 이용 계획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취업 중인 부모 각각 출산휴가 56.0%, 86.0%, 육아휴직 32.3%, 7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4.3%, 54.6%에 달했다. 반면, 영유아 가구의 출산 및 육아휴직 이용 경험은 부모 각각 출산 휴가 10.1%, 25.0%, 육아휴직 4.1%, 3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 8.3%로, 이용 희망과 실제 이용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가구 부모의 출산 및 육아 관련 휴가·휴직 이용경험을 종단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이용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출산 및 육아 관련 휴가·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영유아 가구들은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 임신부 가구들은 직장상사나 동료들의 눈치가 보인다거나,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셋째, 영유아 가구의 가족돌봄 제도 활용 경험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2021년에 약간 증가하였으나,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돌봄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도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긴 하나, 다음으로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0% 전후의 높은 비중을 보였다.

넷째, 영유아 가구, 임신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도의 이용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23년 기준 전반적으로 재택근무제의 이용 경험 비중이 가장 높고, 이어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로제,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탄력적 근무제 순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가구 부모의 유연근무제도 이용 경험을 4~6차년도 자료로 종단적으로 살펴보면, 육아시간 지원 제도와 달리 전반적으로 유연근무 이용 경험이 6차년도(2023년)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던 시기에 유연근무가 활성화되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이전 근로방식으로의 회귀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유연근무제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섯째,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기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5점 만점 기준 영유아 가구는 3.3, 임신부 가구 3.2점, 무자녀 가구는 3.1점으로 영유아 가구의 동의 정도가 높았다. 영유아 가구는 2018년도에는 동일 문항에 대해 3.1점을 응답하여, 자가 주택 보유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거주지에 살게 된 계기가 자녀의 출산 혹은 양육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영유아 가구와 임신부 가구에게 물어본 결과에서는 영유아 가구의 40.0%, 임신부 가구의 48.3%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섯째, 향후 5년 이내에 자녀의 양육을 위한 이사 의향의 경우, 영유아 가구의 44.4%, 임신부 가구의 68.4%, 무자녀 가구의 56.8%가 이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사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유아 가구의 경우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가 35.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아이를 키우기에 적당한 규모(협소하지 않은) 집에 살기 위해서’ 21.7%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임신부 가구는 ‘아이를 키우기에 적당한 규모(협소하지 않은) 집에 살기 위해서’가 24.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 순이었다. 한편, 무자녀 가구의 경우 출산을 고려해 이사할 경우 이사 지역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였으며,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유해시설이 적거나, 자연친화적, 공원/놀이시설이 가까워서)’ 25.1%, ‘아이를 키우기에 적당한 규모(협소하지 않은) 집에 살기 위해서’ 22.0%, ‘아이를 돌보줄 친인척(혹은 아이돌보미)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 21.4% 순이었다.

일곱째,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주거지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는 영유아, 임산부, 무자녀 가구 모두 공통적으로 ‘주거지역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유해시설이 없거나, 범죄율이 낮은 지역 등)’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는데, 그 다음의 응답 항목은 차이를 보였다. 영유아 가구와 임산부 가구의 경우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환경이 좋은 곳’이 높게 나타난 반면 무자녀 가구는 ‘아동관련 인프라가 많은 곳(공연장, 문화센터, 도서관, 종합병원, 소아과 등)’이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 가구의 경우 2018년도의 응답과 비교할 때, 전반적인 응답 경향은 비슷하나 ‘주거지역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유해시설이 없거나, 범죄율이 낮은 지역 등)’에 대한 응답 비중이 다소 낮아진 반면, ‘아동관련 인프라가 많은 곳(공연장, 문화센터, 도서관, 종합병원, 소아과 등)’,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환경이 좋은 곳’ 등 다른 항목의 응답 비중이 증가한 것이 나타났다.

여덟째,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행복주택에 대한 인지도가 영유아 가구 71.0%, 임산부 가구 56.9%, 무자녀 가구 66.4%로 높은 편이었으며, 국민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인지도 또한 모든 조사 대상에서 50% 이상의 인지도를 보였다. 하지만, 실제 신청 경험은 임산부 가구와 무자녀 가구는 10% 대, 영유아 가구는 10% 미만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한편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임대 주택 등의 지원 정책에 비해 인지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신청 경험 또한 대체로 20%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혼부부 및 영유아 가구 대상 주거 지원 정책이 신혼부부가 출산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에서는 영유아 가구 3.0점, 임산부와 무자녀 가구 3.1점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정부의 신혼부부 및 영유아 가구 대상 주거 지원 정책이 신혼부부의 출산결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는 1+2순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조건이 까다로워, 자격 조건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실제 거주하기를 원하는 지역의 주택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 ‘지원되는 비용이 주택 구매 혹은 전세 자금을 비해 너무 적기 때문’의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열째, 자녀가 생긴다면 가구의 소비 지출을 얼마나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임산부 가구는 ‘현재 가구 소비 지출 총액의 20% 미만’ 항목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무자녀 가구는 ‘현재 가구 소비 지출 총액의 20% 이상 40% 미만’ 항

목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특히 무자녀 가구 중 출산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는 다른 가구 유형들에 비해 ‘현재 가구 소비 지출 총액의 40% 이상 60% 미만’ 항목과 ‘현재 가구 소비 지출 총액의 60% 이상’ 항목의 응답 비중이 높았다. 즉, 임신부 가구에 비해 무자녀 가구 특히, 출산 의향이 없는 무자녀 가구들은 자녀 출산 후 줄여야 할 소비 지출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열한째, 무자녀 가구 중 출산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1+2+3순위 기준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서’의 응답 비중이 60.8%로 가장 높았으며, ‘육아 및 자녀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가 51.4%로 높았다. 이어 ‘개인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서’ 32.4%, ‘소득이 적어서’ 28.8%, ‘자녀를 돌볼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24.2%, ‘일자리가 불안정해서(실업, 비정규직, 일용직 등의 고용불안정)’ 20.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무자녀 가구에게 앞선 문제가 해결된다면 아이를 낳을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 5점 만점 기준 3.3점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출산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그렇다+매우 그렇다)이 48.6%로,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이 24.9%보다 높게 나타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출산의향이 변할 수 있는 집단이 절반가량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열둘째, 무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아이 1명을 출산하여 양육하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세후)이 최소한 어느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600만원 이상 되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31.4%로 가장 높았다. 출산 의향이 없는 경우는 출산의향이 있는 경우에 비해 자녀 양육에 요구되는 소득 수준을 좀 더 높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열셋째, 임신부 가구의 계획 자녀수는 평균 2.01명이었으며, 출산의향이 있는 무자녀 가구는 이보다 적은 1.52명으로 나타났다. 계획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이유로는 ‘자녀가 혼자이면 외로울 것 같아서’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사회성이 좋을 것 같아서’,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인 것 같아서’가 높게 나타났다. 무자녀 가구 중 결혼 후 자녀 출산 시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출산시기를 계획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1+2순위) ‘소득 등 경제적으로 준비가 될 것 같아서’의 응답 비중이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 부부만의 시간을 가진 후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도 43.8%로 높게 나타났다.

열넷째, 2023년 기준 영유아 자녀 양육과정 중 가장 부담되는 비목에 대해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무자녀 가구(출산 의향이 있는 경우)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 공통적으로 교육/보육비의 응답 비중이 30~4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식비의 비중이 20% 전후로 높았다. 영유아 가구의 경우 해당 문항을 1차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교육/보육비가 가장 부담된다는 응답이 매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다섯째,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대체로 3점대의 보통 수준을 보이기는 하나, 영유아 가구의 삶의 만족도가 대부분의 항목(가구의 경제적 수준, 주거환경, 가족관계, 자녀돌봄, 사회적 친분관계, 자아성취, 전반적 생활만족도)에서 무자녀 가구나 임산부 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다. 다만, 여가생활 항목에 대해서는 영유아가 가구 3.1점, 임산부 가구 3.0점, 무자녀 가구 3.2점으로 무자녀 가구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Part III

데이터 분석

III-2. 심층 분석

VII

영유아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소비실태 비교

- 01 분석 목적
- 02 분석 자료
- 03 무자녀 가구와 영유아 가구의 소비지출 비교
- 04 성인의 소비지출 결정 요인
- 05 무자녀 가구의 예상 양육비용과 출산 의향간의 관례
- 06 소결

VII. 영유아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소비실태 비교

1. 분석 목적

심각한 수준의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저출생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하나로 특정하기 어려우며, 경제적 요인(양육비용 부담, 일자리 등), 사회적 요인(교육, 성차별, 일-가정 양립의 곤란 등), 문화·가치관적인 요인(가치관·인식의 변화 등), 인구학적 요인(혼인율 하락·초혼연령 상승, 평균 출생아 수 감소 등)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관계부처 합동, 2020: 12~19) 저출생 현상을 심화,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구학적 측면에서 혼인율의 하락, 초혼 연령의 상승은 저출생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는데, 최근 저출생의 심화는 결혼과 관련된 요인 뿐 아니라 유배우 출산율의 하락 혹은 무자녀 가구의 증가가 이를 더욱 가속화 시킨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앞서 [그림 II-1-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계출산율의 감소세는 혼인율의 감소세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거의 맥락을 같이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철희(2012)에 따르면, 1991년 이후 한국의 합계출산율의 감소는 주로 유배우 여성 비율의 감소, 즉 혼인율의 감소에 기인한 부분이 크긴 하지만, 이 시기 오히려 유배우 출산율은 증가세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을 일부 상쇄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2015년 이후 혼인율의 급격한 하락 뿐 아니라 유배우 출산율마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급격한 출산율 하락이 유발되었다는 것이다(이철희, 2019; 계봉오 외, 2022).

이와 같은 무자녀 가구의 증가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다수의 OECD 국가에서 흔히 발견되는 현상이다(OECD Family Database¹⁰³). 무자녀 가구의 증가 원인

103) OECD Family Database, Fertility indicators, SF.2.5 Childlessness, https://www.oecd.org/els/family/SF_2-5-Childlessness.pdf (인출일: 2023. 3. 2.).

또한 매우 다양하게 논의되는데, 조성호 외(2021: 189~192)는 가구의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지속적으로 무자녀 가구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무자녀 선택은 서구권에서 나타나는 기회비용 이론¹⁰⁴⁾과 달리 자녀 양육에 따르는 비용 부담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양육비용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언제나 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 의향을 저하시켜 저출생을 유발하는 가장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KICCE 소비실태조사’는 한국의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실태를 자녀별로 비목 수준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그러나,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조사 대상은 영유아 가구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영유아 가구의 소비 양태의 변화를 고찰하기에는 매우 적합하나, 영유아 가구의 소비 양태가 다른 비교 집단과는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는 고찰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에서는 부스터 표본으로 무자녀 가구와 임신부 가구를 선정하여, 이들 가구의 소비 실태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최효미 외, 2023)¹⁰⁵⁾.

임산부 가구의 경우 임부의 출산 및 신생아 용품에 대한 소비지출로 인해 기기/집기 및 보건의료비 등의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특수한 시기적 배경에 따른 소비패턴이 관찰될 뿐 아니라, 둘째 이상 자녀를 임신한 가구 등이 포함되어 있어 영유아 가구의 소비패턴과 유사한 부분(양육비용이 소비지출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다. 이에 이 장에서 자녀로 인해 유발되는 양육비용의 부담을 보다 선명하고 명료하게 포착하기 위해 임신부 가구를 제외하고 무자녀 가구의 소비 지출 패턴과 영유아 가구의 가계 생활비 지출액을 중심으로, 소비지출 양태의 차이를 관찰해보았다.

이를 통해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가 직면하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가중되는지를 유추해 보고, 양육비용에 대한 무자녀 가구와 임신부 가구의 인식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무자녀 가구의 출산 지연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04)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본인의 커리어와 기존의 근로조건 등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감소(기회비용)가 클수록 무자녀 가구로 남아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의미함.

105) 2023년 부스터표본인 무자녀 가구는 설문지 내용과 종류, 조사 방법 등이 영유아 가구와는 완전히 별도로 분리된 부가조사의 성격을 갖고 있음(최효미·이정원·조미라 외, 2023).

2. 분석 자료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의 본조사(영유아 가구)와 부스터표본 중 무자녀 가구 조사 원자료이다. 이 장의 분석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산출한 결과임을 주지하는 바이다.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의 본조사(영유아 가구) 응답자 수는 1,773가구이며, 무자녀 가구는 817가구이다.

영유아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소비 지출 실태 분석에 앞서, 가구 및 가구원 특성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이는 가구 특성이 가구 소비 지출뿐 아니라 자녀 출산 혹은 출산의향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영유아) 가구가 실질적으로 가구 특성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두 집단 간 소비실태의 차이가 양육비용 뿐 아니라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인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556만5천원이었으며, 무자녀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578만8천원으로 무자녀 가구의 소득 수준이 영유아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소득 구간별 비중을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가구는 영유아 가구의 2.6%에 불과한데 반해, 무자녀 가구의 경우 9.9%에 달했다. 반면,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가구의 비중은 영유아 가구 중 33.9%, 무자녀 가구 중에서는 39.3%로, 고소득 가구의 비중 또한 무자녀가 가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유아 가구들은 가구소득의 편차가 크지 않고 평균에 밀집되어 있는데 반해, 무자녀 가구들은 가구소득의 편차가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제 자녀를 낳지 않는 무자녀 가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이 지연되는 집단과 자아실현 및 자유로운 삶을 추구함에 따라 출산 회피하려는 집단이 섞여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총 가구원 수는 무자녀 가구의 경우 3명 이하인 경우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으로 실제로 대부분의 무자녀 가구는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였다. 맞벌이 가구 비중 또한 영유아 가구와 무자녀 가구는 큰 차이를 보여, 영유아 가구의 52.9%가 외벌이 가구인데 반해, 무자녀 가구는 26.4%만이 외벌이 가구였다.

모(여성)의 연령은 무자녀 가구의 경우 20대의 비중(26.8%)이 높게 나타났으나, 40세 이상의 비중도 25.7%로, 실제 출산 계획이 없는 무자녀 가구도 상당수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부(남성)의 연령도 여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20대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다 하겠다. 모(여성)와 부(남성)의 학력수준은 무자녀 가구의 경우가 영유아 가구에 비해 대학원 이상 학력 소지자 비중이 약간 높긴 하나, 전반적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역(거주지) 규모별로도 영유아 가구의 경우 대도시 거주자가 39.9%, 중소도시 거주자 47.0%, 읍/면지역 거주자 13.0%였으며, 무자녀 가구는 대도시 41.1%, 중소도시 42.5%, 읍/면지역 16.4%로, 두 집단 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VII-2-1〉 영유아 가구 및 무자녀 가구 특성 (기초 통계량)

단위: %, (가구), 만원

구분		영유아 가구		무자녀 가구	
		%	(수)	%	(수)
총계		100.0	(1,773)	100.0	(817)
가구소득	299만원이하	2.6	(46)	9.9	(81)
	300~399만원	15.9	(282)	12.1	(99)
	400~499만원	26.7	(473)	18.4	(150)
	500~599만원	20.9	(371)	20.3	(166)
	600만원 이상	33.9	(601)	39.3	(321)
월평균 가구소득 (만원)		556.5		578.8	
총 가구원 수	3명이하	35.0	(620)	97.6	(797)
	4명	49.0	(869)	1.1	(9)
	5명이상	16.0	(284)	1.4	(11)
맞벌이 여부	외벌이 가구	52.9	(938)	26.4	(216)
	맞벌이 가구	47.1	(835)	73.6	(601)
모(여성) 연령	29세이하	4.7	(84)	26.8	(219)
	30~39세	67.5	(1,196)	47.5	(388)
	40세 이상	27.7	(491)	25.7	(210)
부(남성) 연령	29세이하	2.1	(37)	15.3	(125)
	30~39세	53.7	(947)	50.9	(416)
	40세 이상	44.2	(779)	33.8	(276)
모(여성) 학력	고졸이하	16.9	(299)	15.1	(123)
	대졸	76.8	(1,360)	75.8	(619)
	대학원 이상	6.3	(112)	9.2	(75)
부(남성) 학력	고졸이하	14.9	(263)	22.3	(182)
	대졸	77.7	(1,370)	67.6	(552)
	대학원 이상	7.4	(131)	10.2	(83)
지역규모	대도시	39.9	(708)	41.1	(336)
	중소도시	47.0	(834)	42.5	(347)
	읍/면지역	13.0	(231)	16.4	(134)
N		(1,773)		(817)	

주: 영유아 각구의 모 연령과 학력은 결측이 2명 있으며, 부 연령과 학력은 10개의 결측이 있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3. 무자녀 가구와 영유아 가구의 소비지출 비교

가. 전체 소비 지출 총액 비교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지출액은 377만5천원으로, 무자녀 가구 355만원에 비해 22만5천 원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액 중에서 자녀에게 소요된 양육비용을 제외하고 성인 가구원의 생활비 지출액을 산출해 본 결과, 월평균 226만9천원으로 무자녀 가구에 비해 128만1천원이 적었다.

비목별로는 무자녀 가구는 영유아 가구의 전체 비목별 생활비 대비 식비 총액은 더 적게 지출하였으나, 외식비 지출 비용은 많았으며, 주거/관리비와 기기/집기, 피복비, 보건/의료비, 여가문화생활비, 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이용비,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이용비 등이 높았다. 반대로 영유아 가구는 교육/보육비, 교통비, 통신비, 개인유지비(생필품 포함)에 대한 생활비 지출액이 무자녀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문화생활비 총액은 무자녀 가구가 높으나, 세부 비목 중 관람/체험학습비와 완구, 도서구매 등의 비목에서 영유아 가구의 지출비용이 더 많은 반면, 무자녀 가구들은 가족여행 등에 대한 지출액이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액은 양육비용을 제외하고 성인에게 소요된 비용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관리비 및 수도광열비¹⁰⁶⁾, 교통비, 통신비를 제외하고 모든 비목에서 무자녀 가구의 지출액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유아 가구들은 자녀 양육비용 지출로 인해 전체 생활비 지출액은 무자녀 가구에 비해 높지만, 성인이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은 상당히 적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족여행, 외식비, 기기/집기류,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이용비 등에서의 차이는 영유아 부모들이 자녀 양육으로 인해 개인 취미활동 및 문화적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한편, 영유아 가구들의 다른 비목에 대한 소비를 위축시키고 월평균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은 교육/보육비용과 식비 부담을 꼽을 수 있다. 이외에도 영유아 가구들은 보험료 지출액이 무자녀 가구에 비해 월평균 11만원가량 높게 나타났는데, 양육비용을 제외한 성인의 보험료는 무자녀 가구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으로, 자녀에 대한 보험료 부담 또한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됨을 엿볼 수 있었다.

106) 해당 비목은 양육비용에서 제외되는 비목으로,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지출액과 동일한 금액임.

〈표 VII-3-1〉 월평균 생활비 지출액 및 비목별 비중 비교(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vs 무 자녀 가구

단위: 만원, (%), (가구)

구분	영유아 가구				무자녀 가구	
	전체 지출액		양육비용 제외 지출액		비용	비목별 비중
	비용	비목별 비중	비용	비목별 비중		
총계	377.5	(100.0)	226.9	(100.0)	355.0	(100.0)
1. 식비 (외식비 포함)	103.8	(27.5)	69.4	(30.6)	82.4	(23.2)
1-1. 외식비	32.2	(8.4)	24.1	(10.6)	35.5	(10.0)
2. 주거/관리비	29.5	(7.8)	29.5	(13.0)	31.5	(8.9)
2-1. 관리비 및 수도·광열비 등	24.5	(6.5)	24.5	(10.8)	20.7	(5.8)
2-2. 월세	4.2	(1.1)	4.2	(1.9)	10.8	(3.0)
3. 기기/집기	8.3	(2.2)	4.8	(2.1)	33.7	(9.5)
3-1. PC/노트북/태블릿PC	1.7	(0.5)	1.7	(0.7)	10.8	(3.0)
4. 피복비	24.1	(6.4)	10.0	(4.4)	30.7	(8.6)
5. 보건/의료비	14.2	(3.8)	5.5	(2.4)	18.6	(5.2)
6. 교육/보육비	47.9	(12.7)	2.2	(1.0)	6.0	(1.7)
7. 여가 및 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36.8	(9.7)	15.4	(6.8)	49.9	(14.1)
7-1. 가족여행 등	24.2	(6.4)	13.2	(5.8)	33.8	(9.5)
7-2. 관람, 체험학습	3.9	(1.0)	1.5	(0.7)	3.6	(1.0)
7-3. 완구	4.4	(1.2)	0.1	(0.0)	0.7	(0.2)
7-4. 도서구매	4.0	(1.1)	0.3	(0.1)	2.3	(0.6)
8. 교통비	28.2	(7.5)	27.4	(12.1)	24.7	(7.0)
9. 통신비	18.5	(4.9)	17.7	(7.8)	16.0	(4.5)
9-1. 휴대전화비	12.6	(3.3)	11.9	(5.2)	10.0	(2.8)
10. 개인유지비 (생필품 포함)	16.4	(4.3)	8.6	(3.8)	15.8	(4.5)
11-2. 보험	43.2	(11.4)	29.8	(13.1)	32.2	(9.1)
13. 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	0.5	(0.1)	0.5	(0.2)	5.1	(1.4)
14. 기타 상품 및 서비스	6.1	(1.6)	6.1	(2.7)	8.5	(2.4)
N	(1,773)		(1,773)		(817)	

주: 1) 'KICCE 소비실태조사' 연구에서 생활비 지출액은 식비, 주거/관리비, 기기/집기,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및문화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개인유지비, 금융상품 중 보험, 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기타 상품 및 서비스로 구성됨. (비목 앞의 숫자는 단순히 설문지 상의 비목 분류 코드를 의미함)

2) 세부 비목은 비목 내 일부 품목에 대한 생활비 지출을 별도로 질문한 것으로, 비목의 평균이 세부 비목의 합계값과 동일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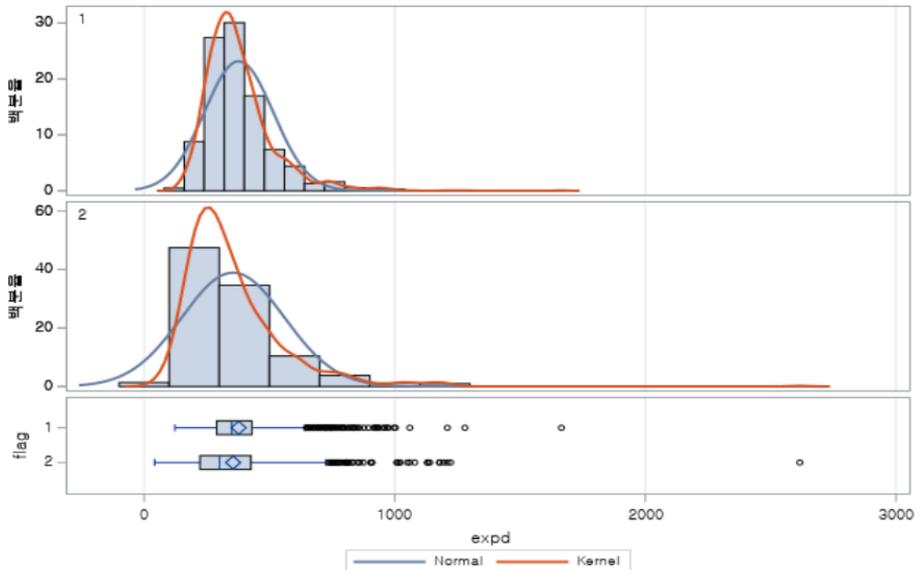
3) 양육비용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은 비목은 주거/관리비, 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기타 상품 및 서비스로, 이 비목은 전체 생활비 지출액과 양육비용 제외 지출액이 동일함.

4) 비목별 비중은 (비목별 평균값/ 전체 지출액 평균) *100으로 산출한 값으로, 가구별로 비목별 비중을 산출하여 평균한 값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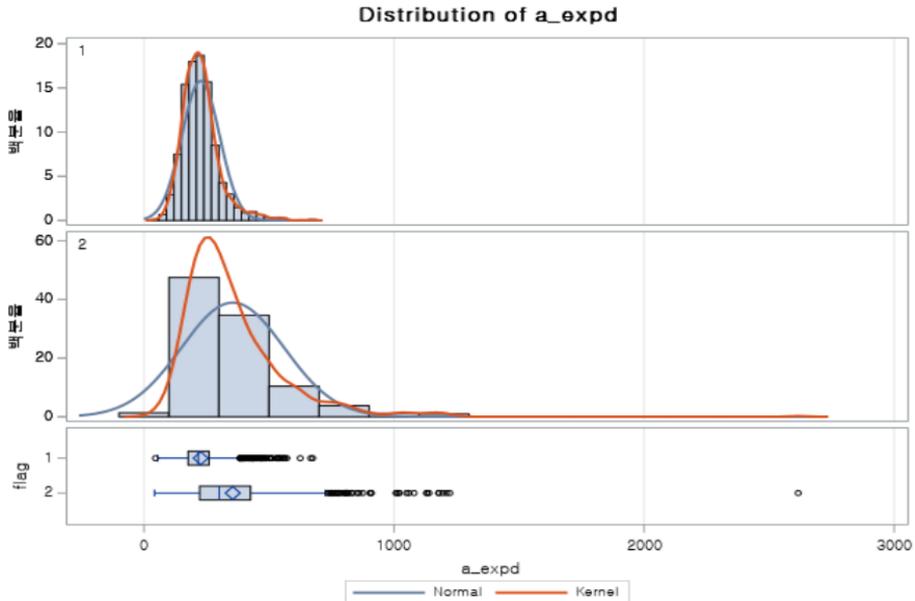
[그림 VII-3-1]을 통해 영유아 가구의 전체 생활비와 무자녀 가구의 생활비 지출액 분포를 살펴보면, 무자녀 가구의 경우 왼쪽으로 살짝 편포되어 있으나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가진 형태의 분포를 보이는데 반해, 영유아 가구는 정규분포에 근접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무자녀 가구들의 생활비 지출 패턴이 영유아 가구에 비해 상당히 이질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그림 VII-3-2]는 양육비용을 제외한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성인에 대한 지출액) 분포와 무자녀 가구의 분포를 보여주는데, 영유아 가구의 성인에 대한 지출액은 무자녀 가구의 생활비 지출액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에 집중되어 밀집된 형태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영유아 가구의 성인에 대한 지출액은 높게 솟은 정규 분포와 거의 일치하는 형태의 분포를 보이며, 오른쪽으로 짧은 꼬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영유아 가구의 성인에 대한 지출액은 가구 특성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집단 내에서 매우 동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VII-3-1] 월평균 생활비 지출액 분포 (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Distribution of expd



주: 1) 영유아 가구 전체 월평균 생활비 지출액과 무자녀 가구 월평균 생활비 지출액을 비교한 것으로, 상단(flag=1)이 영유아 가구의 분포, 하단(flag =2)이 무자녀 가구의 분포를 나타냄.
2) t-test 값은 2.85**로 1% 유의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그림 VII-3-2] 성인의 월평균 생활비 지출액 분포 (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성인 vs 무자녀 가구



주: 1) 영유아 가구 전체 월평균 생활비 지출액에서 양육비용을 제외한 월평균 생활비(성인의 월평균 생활비)와 무자녀 가구 월평균 생활비 지출액을 비교한 것으로, 상단(flag=1)이 영유아 가구의 분포, 하단(flag =2)이 무자녀 가구의 분포를 나타냄.

2) t-test 값은 -17.33***로 0.1% 유의수준에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한편, 생활비 지출액에는 제외되어 있는 일종의 비소비지출에 해당하는 지출액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지출액과 이전 지출액이 있는데, 영유아 가구와 무자녀 가구 사이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금융 지출 및 이전 지출액 또한 무자녀 가구가 영유아 가구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상품에 대한 지출은 영유아 가구는 월평균 138만1천원, 무자녀 가구는 296만8천원으로, 무자녀 가구가 2.15배나 많았으며, 이전 지출 또한 영유아 가구는 12만4천원에 불과한 반면 무자녀 가구는 34만원으로 2.74배 더 높았다.

금융상품에 대한 지출액 세부 비목 중에서는 저축액 차이가 가장 컸다. 영유아 가구는 월평균 50만8천원을 저축하는데 반해, 무자녀 가구들은 123만6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식이나 암호화폐와 같은 금융상품에 대한 지출도 영유아 가구는 5만3천원에 그친 반면, 무자녀 가구들은 81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금 상환액과 이자 상환액도 무자녀 가구가 영유아 가구에 비해서는 높긴 하나, 금액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소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료에 대한 지출액은 영유아 가구가 무자녀 가구에 비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 보험료를 제외한 성인에 대한 보험료 지출액은 영유아 가구가 무자녀 가구에 비해 낮았다.

결론적으로 금융상품 관련 지출 중 자산 형성(금융 투자)과 관련성이 높은 비목인 저축, 주식/암호화폐에 있어서 영유아 가구들은 무자녀 가구에 비해 제약이 큰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자산과 연관성이 큰 원금 상환이나 이자 상환 등에 있어서도 영유아 가구들은 여력이 적은 상황으로 보인다. 반면, 미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 지출(혹은 투자)인 보험에 대해서는 영유아 가구들이 좀 더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3-2〉 월평균 금융상품에 대한 지출 및 이전 지출 (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단위: 만원, (%), (가구)

구분	영유아 가구				무자녀 가구	
	전체 금융상품 지출액		자녀 명의 상품 제외 지출액			
	비용	비목별 비중	비용	비목별 비중	비용	비목별 비중
11. 금융상품(저축 및 보험 납입금)	138.1	(100.0)	119.3	(100.0)	296.8	(100.0)
11-1. 저축	50.8	(36.8)	45.4	(38.1)	123.6	(41.6)
11-2. 보험	43.2	(31.3)	29.8	(25.0)	35.4	(11.9)
11-3. 원금 상환	19.2	(13.9)	19.2	(16.1)	31.0	(10.4)
11-4. 이자 상환	18.9	(13.7)	18.9	(15.8)	25.9	(8.7)
11-5. 주식, 암호화폐	5.3	(3.8)	5.3	(4.4)	81.0	(27.3)
12. 이전 지출	12.4	(100.0)	12.4	(100.0)	34.0	(100.0)
N	(1,773)		(1,773)		(817)	

주: 금융상품 중 자녀 명의의 저축과 보험은 자녀별로 지출액이 구분되므로, 전체 지출액에서 자녀 명의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성인 명의의 금융상품 지출액으로 간주함. (비목 앞의 숫자는 단순히 설문지 상의 비목 분류 코드를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반면, 주택 소유 여부 등 현재 주거 여건 및 부동산 자산 등에 관한 항목에서는 영유아 가구들이 좀 더 높은 수치를 보인다. 영유아 가구의 현재 거주 주택이 자가인 비중이 55.7%, 전세가 30.1%, 월세가 8.4%인데 반해, 무자녀 가구들은 자가 43.8%, 전세 29.7%, 월세 21.5%로 자가 비중이 영유아 가구에서 현저히 높고 월세 비중이 현저히

낮은 특징을 보였다. 주택 가격 또한 자가인 경우 영유아 가구는 4억4,550만원, 무자녀 가구는 3억5,280만원으로, 영유아 가구들이 약 9,270만원 비싼 집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인 경우에도 평균 보증금이 영유아 가구는 2억7,480만원, 무자녀 가구는 2억410만원으로 영유아 가구의 전세 보증금이 약 7천만원가량 높았으며, 월세 보증금 또한 영유아 가구는 1억1,160만원으로 무자녀 가구의 7,880만원보다 높았다. 반면, 월세 지출액은 영유아 가구들은 월평균 37만2천원에 그친 반면, 무자녀 가구는 50만2천원으로 무자녀 가구의 지출액이 높았다.

요컨대,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액은 무자녀 가구에 비해 높으나, 성인의 생활비 지출액은 무자녀 가구에 비해 낮고, 금융 투자에 있어서도 무자녀 가구에 비해 제약이 큰 상황이지만, 부동산 자산 형성 측면에서는 무자녀 가구에 비해 좀 더 높은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녀가 있는 가구는 주거가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생각과 연관된 결과로 사료된다.

〈표 VII-3-3〉 주택 소유 여부 및 주택 가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단위: 가구, (%), 백만원, 만원

구분		영유아 가구		무자녀 가구		
거주 형태	자가	987	(55.7)	358	(43.8)	
	전세	533	(30.1)	243	(29.7)	
	월세	148	(8.4)	176	(21.5)	
	기타	105	(5.9)	40	(4.9)	
주택 가격	자가 (백만원)	445.5		352.8		
	전세 (백만원)	274.8		204.1		
	월세	보증금 (백만원)	111.6		78.8	
		월세 (만원)	37.2		50.2	

주: 1) 거주형태 응답자 수는 영유아 가구는 1,773명, 무자녀 가구는 817가구이며, 주택 가격은 거주 형태별 응답자 수가 모수임.

2) 거주형태 중 기타는 사택, 친인척(조부모 포함) 주택 등에서 무상 거주 하는 경우 등이 포함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가구특성별로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액이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가구소득, 총 가구원 수, 맞벌이 가구여부, 부모 연령, 부모 학력, 지역 규모 등 모든 변수에서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액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맞벌이 가구인 경우, 부모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지역규모가 클수록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액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액에서 자녀 양육을 제외한 성인에 대한 지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는 가구소득과 총 가구원 수, 맞벌이 여부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 성인에 대한 지출액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은 부모의 연령과 부모의 학력 수준에 따라 지출 비용이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무자녀 가구의 경우에도 영유아 가구의 성인에 대한 지출액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 월평균 생활비 지출액이 높았다. 단, 무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남성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 생활비 지출액이 5% 유의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3-4〉 가구특성별 월평균 생활비 지출액 비교(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단위: 만원, (가구)

구분		영유아 가구				무자녀 가구	
		전체 지출액		양육비용 제외 지출액			
		월평균	(수)	월평균	(수)	월평균	(수)
총계		377.5	(1,773)	226.9	(1,773)	355.0	(817)
가구소득	299만원이하	261.0	(46)	158.7	(46)	260.1	(81)
	300~399만원	307.6	(282)	195.1	(282)	260.8	(99)
	400~499만원	334.6	(473)	210.6	(473)	316.0	(150)
	500~599만원	374.7	(371)	226.3	(371)	356.4	(166)
	600만원 이상	454.6	(601)	260.3	(601)	425.6	(321)
	<i>F</i>	104.74***		64.29***		22.62***	
총 가구원 수	3명이하	320.0	(620)	231.5	(620)	351.0	(797)
	4명	389.9	(869)	220.9	(869)	577.7	(9)
	5명이상	465.0	(284)	235.3	(284)	462.3	(11)
	<i>F</i>	131.60***		5.64**		7.07***	
맞벌이 여부	외벌이 가구	355.0	(938)	215.9	(938)	321.7	(216)
	맞벌이 가구	402.7	(835)	239.3	(835)	367.0	(601)
	<i>t</i>	-7.35***		-6.49***		-2.88**	
모(여성) 연령	29세이하	326.5	(84)	217.9	(84)	369.6	(219)
	30~39세	371.2	(1,196)	226.9	(1,196)	350.3	(388)
	40세 이상	401.9	(491)	228.7	(491)	348.5	(210)
	<i>F</i>	14.90***		0.74		0.76	
부(남성) 연령	29세이하	304.8	(37)	206.8	(37)	370.5	(125)
	30~39세	363.6	(947)	226.6	(947)	346.6	(416)
	40세 이상	399.3	(779)	229.4	(779)	360.7	(276)
	<i>F</i>	20.15***		1.70		0.81	
모(여성) 학력	고졸이하	361.4	(299)	222.4	(299)	350.1	(123)
	대졸	378.5	(1,360)	227.5	(1,360)	350.9	(619)
	대학원 이상	410.4	(112)	233.4	(112)	396.9	(75)

구분	영유아 가구				무자녀 가구		
	전체 지출액		양육비용 제외 지출액				
	월평균	(수)	월평균	(수)	월평균	(수)	
	<i>F</i>	5.29**		0.96		1.73	
부(남성) 학력	고졸이하	360.2	(263)	222.0	(263)	316.3	(182)
	대졸	376.0	(1,370)	227.4	(1,370)	366.6	(552)
	대학원 이상	435.3	(131)	238.2	(131)	363.0	(83)
	<i>F</i>	13.91***		2.03		4.23*	
지역규모	대도시	382.7	(708)	230.8	(708)	354.2	(336)
	중소도시	379.4	(834)	225.1	(834)	354.8	(347)
	읍/면지역	354.4	(231)	221.6	(231)	357.8	(134)
	<i>F</i>	3.84*		1.71		0.02	
N		(1,773)		(1,773)		(817)	

주: 영유아 각구의 모 연령과 학력은 결측이 2명 있으며, 부 연령과 학력은 10개의 결측이 있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 $p < .05$, ** $p < .01$, *** $p < .001$.

나. 비목별 생활비 지출액 비교

이 항에서는 영유아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비목별 생활비 지출액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 생활비 지출 총액을 기준으로 영유아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생활비 지출액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거/관리비, 기기/집기, 피복비, 보건/의료비, 여가 및 문화생활비, 반려동물관련 상품 및 서비스,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이용비 등 다수 비목에서 무자녀 가구의 생활비 지출액이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액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비와 교육/보육비,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등은 영유아 가구가 무자녀 가구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은 지출 수준을 보였다. 주거/관리비와 개인유지비(생필품 포함)의 경우에는 영유아 가구와 무자녀 가구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성인의 생활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주거비를 제외한 모든 비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교통비, 통신비를 제외한 모든 비목에서 무자녀 가구의 지출 수준이 영유아 가구의 성인 지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3-5〉 비목별 월평균 생활비 지출액비교(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vs 무자녀 가구

단위: 만원.

구분	전체 생활비 지출 총액			성인의 생활비 지출액 (양육비용 제외)		
	영유아 가구	무자녀 가구	t	영유아 가구	무자녀 가구	t
총계	377.5	355.0	2.85 **	226.9	355.0	-17.33 ***
1. 식비 (외식비 포함)	103.8	82.4	11.14 ***	69.4	82.4	-7.06 ***
2. 주거/관리비	29.5	31.5	-1.92	29.5	31.5	-1.92
3. 기기/집기	8.3	33.7	-8.58 ***	4.8	33.7	-9.87 ***
4. 피복비	24.1	30.7	-4.97 ***	10.0	30.7	-15.9 ***
5. 보건/의료비	14.2	18.6	-5.48 ***	5.5	18.6	-18.5 ***
6. 교육/보육비	47.9	6.0	29.05 ***	2.2	6.0	-4.89 ***
7. 여가 및 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36.8	49.9	-4.18 ***	15.4	49.9	-11.3 ***
8. 교통비	28.2	24.7	5.38 ***	27.4	24.7	4.20 ***
9. 통신비	18.5	16.0	6.30 ***	17.7	16.0	4.25 ***
10. 개인유지비 (생필품 포함)	16.4	15.8	1.14	8.6	15.8	-14.80 ***
11-2. 보험	43.2	32.2	10.39 ***	29.8	32.2	-2.50 *
13. 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	0.5	5.1	-9.13 ***	0.5	5.1	-9.13 ***
14. 기타 상품 및 서비스	6.1	8.5	-5.66 ***	6.1	8.5	-5.7 ***

주: 영유아 가구는 1,773명 기준, 무자녀 가구는 817명 기준 산출 결과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 $p < .05$, ** $p < .01$, *** $p < .001$.

1) 식비

세부 비목별로 영유아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소비행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보고서의 가독성 제고 및 편의를 위해 비목별 지출액 분포 비교표는 본문에는 주요 내용만을 제시하고 그래프는 부록2에 제시하였다.

먼저 식비의 경우 성인의 식비 지출액 분포를 살펴보면, 영유아 가구 성인의 식비 지출액은 정규 분포에 근접한 패턴을 보이는데 반해, 무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봉우리를 가진 형태로, 오른쪽으로 긴 분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무자녀 가구 내에서도 상당히 이질적 지출 양태를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가구 특성별 식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영유아 가구 전체 식비 지출액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맞벌이 가구인 경우, 지역규모가 클수록 커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발견되었다. 반면, 영유아 가구 내 성인의 식비 지출액의 경우에도 가구소득이 높고 지역규모가 큰 경우에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총 가구원 수의 경우에는 3명인 경우가 4명 혹은 5명인 경우에 비해 더 높은 지출액을 보였다. 즉,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성인의 식비 지출이 다소 위축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맞벌이 여부는 성인의 식비 지출액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유의미한 수준에서 식비 지출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자녀 가구 중 총 가구원 수가 4명인 경우는 9가구, 5명이상인 경우는 11가구에 불과하므로, 총 가구원 수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하기 어려워 보인다. 무자녀 가구의 식비 지출액은 맞벌이 여부나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VII-3-6〉 가구특성별 식비 지출액 비교(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vs 무자녀 가구

단위: 만원, (가구)

구분	영유아 가구				무자녀 가구	
	식비 전체 지출액		양육비용 제외 지출액			
	월평균	(수)	월평균	(수)	월평균	(수)
총계	103.8	(1,773)	69.4	(1,773)	82.4	(817)
가구소득	299만원이하	72.6 (46)	44.6 (46)	60.3 (81)		
	300~399만원	91.0 (282)	61.9 (282)	66.9 (99)		
	400~499만원	95.6 (473)	64.8 (473)	76.3 (150)		
	500~599만원	103.4 (371)	69.1 (371)	83.2 (166)		
	600만원 이상	118.8 (601)	78.6 (601)	95.2 (321)		
<i>F</i>	43.57***		23.9***		14.36***	
총 가구원 수	3명이하	93.9 (620)	72.8 (620)	81.3 (797)		
	4명	104.8 (869)	67.0 (869)	148.6 (9)		
	5명이상	122.1 (284)	69.2 (284)	110.7 (11)		
<i>F</i>	51.23***		5.42**		11.20***	
맞벌이 여부	외벌이 가구	100.7 (938)	68.0 (938)	79.2 (216)		
	맞벌이 가구	107.2 (835)	71.0 (835)	83.6 (601)		
<i>t</i>	-3.34***		-1.87		-1.16	
지역규모	대도시	105.6 (708)	71.3 (708)	81.8 (336)		
	중소도시	104.3 (834)	69.5 (834)	85.1 (347)		
	읍/면지역	96.0 (231)	63.2 (231)	77.0 (134)		
<i>F</i>	5.16**		4.94**		1.46	
N	(1,773)		(1,773)		(817)	

주: 영유아 가구 전체 월평균 식비 지출액에서 양육비용 중 식비를 제외한 월평균 식비(성인의 월평균 식비)와 무자녀 가구 월평균 식비 지출액을 비교한 것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 $p < .01$, *** $p < .001$.

2) 주거/관리비

주거/관리비는 양육비용 산출 시 제외되는 비목이므로, 영유아 가구 전체의 주거/관리비와 영유아 가구 성인의 주거/관리비는 동일한 금액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주거/관리비를 성인에 대한 지출로 간주하고 기술하였음을 주지하는 바이다. 주거관리비 지출액 분포는 다른 비목들과는 달리 매우 독특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영유아 가구의 경우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가지고 있으나 중간값에 매우 밀집된 형태의 분포를 보이는 하나, 중간값 근처의 분포가 들쭉날쭉한 형태를 보였다. 무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왼쪽으로 편향된 형태의 분포를 보이지만, 오른쪽으로 좀 더 두꺼운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유아 가구와 무자녀 가구 모두 정규 분포에 비해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이며, 가구 특성에 따라 큰 편차를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식비와 달리 주거관리비는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은데, 영유아 가구의 경우에는 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 주거/관리비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무자녀 가구의 경우 가구 특성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¹⁰⁷⁾.

〈표 VII-3-7〉 가구특성별 주거관리비 지출액 비교(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단위: 만원, (가구)

구분	영유아 가구		무자녀 가구	
	월평균	(수)	월평균	(수)
총계	29.5	(1,773)	31.5	(817)
가구소득	299만원이하	(46)	31.7	(81)
	300~399만원	(282)	28.7	(99)
	400~499만원	(473)	29.7	(150)
	500~599만원	(371)	30.6	(166)
	600만원 이상	(601)	33.7	(321)
	<i>F</i>	2.36		1.06
총 가구원 수	3명이하	(620)	31.1	(797)
	4명	(869)	41.6	(9)
	5명이상	(284)	55.5	(11)
	<i>F</i>	18.7***		5.36**
맞벌이 여부	외벌이 가구	(938)	32.4	(216)
	맞벌이 가구	(835)	31.2	(601)
	<i>t</i>	-2.68**		0.59
지역규모	대도시	(708)	33.6	(336)
	중소도시	(834)	30.3	(347)
	읍/면지역	(231)	29.3	(134)
	<i>F</i>	2.01		1.92

107) 무자녀 가구의 경우 총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경우는 많지 않아, 이에 대한 해석은 생략함.

구분	영유아 가구		무자녀 가구	
	월평균	(수)	월평균	(수)
N	(1,773)		(817)	

주: 영유아 가구의 주거관리비는 양육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성인의 주거비와 동일한 값이므로, 가구 전체 지출액만 제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 $p < .01$, *** $p < .001$.

3) 기기/집기

성인의 기기/집기에 대한 지출액은 영유아 가구의 경우 정규분포와 유사하지만 매우 평평한 형태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무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왼쪽에 편포된 높은 봉우리를 가지고 있으나 오른쪽으로 매우 긴 꼬리를 가진 분포를 보였다.

기기/집기에 대한 지출은 영유아 가구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 유의미하게 높은 지출 수준을 보였으며, 전체 생활비에서 양육비용을 제외한 지출액의 경우에는 지역규모가 클수록, 기기/집기에 대한 지출비용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무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기기/집기에 대한 지출액이 가구특성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VII-3-8〉 가구특성별 기기/집기 지출액 비교(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단위: 만원, (가구)

구분	영유아 가구				무자녀 가구		
	기기/집기 전체 지출액		양육비용 제외 지출액		월평균	(수)	
	월평균	(수)	월평균	(수)			
총계	8.3	(1,773)	4.8	(1,773)	33.7	(817)	
가구소득	299만원이하	4.0	(46)	3.3	(46)	38.1	(81)
	300~399만원	4.9	(282)	2.5	(282)	25.3	(99)
	400~499만원	5.9	(473)	2.9	(473)	32.4	(150)
	500~599만원	9.2	(371)	6.1	(371)	32.8	(166)
	600만원 이상	11.6	(601)	6.7	(601)	36.2	(321)
	F	5.40***		5.21***		0.4	
총 가구원 수	3명이하	7.2	(620)	4.6	(620)	32.8	(797)
	4명	8.3	(869)	4.3	(869)	62.2	(9)
	5명이상	10.6	(284)	6.8	(284)	69.6	(11)
	F	1.83		2.22		1.62	
맞벌이 여부	외벌이 가구	6.5	(938)	3.8	(938)	29.5	(216)
	맞벌이 가구	10.3	(835)	6.0	(835)	35.2	(601)
	t	2.84***		1.68***		-0.86	
지역규모	대도시	9.0	(708)	6.0	(708)	32.5	(336)
	중소도시	8.2	(834)	4.2	(834)	29.6	(347)
	읍/면지역	6.6	(231)	3.4	(231)	47.2	(134)

구분	영유아 가구				무자녀 가구	
	기기/집기 전체 지출액		양육비용 제외 지출액		월평균	(수)
	월평균	(수)	월평균	(수)		
F	0.82		3.27**		2.24	
N	(1,773)		(1,773)		(817)	

주: 영유아 가구 전체 월평균 기기/집기 지출액에서 양육비용 중 기기/집기 비용을 제외한 월평균 기기/집기(성인의 월 평균 기기/집기)와 무자녀 가구 월평균 기기/집기 지출액을 비교한 것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 $p < .05$, ** $p < .01$, *** $p < .001$.

4) 피복비

성인의 피복비 지출액은 무자녀 가구가 전반적으로 지출액 수준이 높고, 넓게 분포된 특징을 보인다. 영유아 가구의 경우 왼쪽으로 편포되어 있으며, 왼쪽에 높은 두 개의 봉우리를 가진 형태의 분포를 보인 반면, 무자녀 가구의 경우 오른쪽으로 넓게 분포하면서 등락을 보이는 분포를 보였다.

피복비 지출액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모든 경우에 지출액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영유아 가구의 전체 피복비 지출액은 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지출액도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반면, 영유아 가구의 성인의 피복비 지출액은 총 가구수원 수가 많을수록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 가구의 경우 자녀 피복비 지출로 인해 가계 지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며, 부모의 피복비 지출이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지역규모가 클수록 영유아 가구의 성인 피복비 지출액이 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VII-3-9〉 가구특성별 피복비 지출액 비교(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단위: 만원, (가구)

구분	영유아 가구				무자녀 가구		
	피복비 전체 지출액		양육비용 제외 지출액		월평균	(수)	
	월평균	(수)	월평균	(수)			
총계	24.1	(1,773)	10.0	(1,773)	30.7	(817)	
가구소득	299만원이하	14.3	(46)	5.5	(46)	17.2	(81)
	300~399만원	20.0	(282)	8.4	(282)	18.1	(99)
	400~499만원	21.2	(473)	8.8	(473)	24.8	(150)
	500~599만원	24.4	(371)	10.4	(371)	29.1	(166)
	600만원 이상	28.7	(601)	11.9	(601)	41.6	(321)
	F	29.1***		12.66***		14.73***	
총 가구원 수	3명이하	21.0	(620)	11.7	(620)	30.2	(797)
	4명	24.5	(869)	9.3	(869)	66.3	(9)
	5명이상	29.5	(284)	8.7	(284)	34.8	(11)

구분	영유아 가구				무자녀 가구		
	피복비 전체 지출액		양육비용 제외 지출액				
	월평균	(수)	월평균	(수)	월평균	(수)	
	<i>F</i>	31.8***		15.15***		4.43***	
맞벌이 여부	외벌이 가구	23.6	(938)	9.9	(938)	26.3	(216)
	맞벌이 가구	24.6	(835)	10.2	(835)	32.2	(601)
	<i>t</i>	-1.46		-0.85		1.07	
지역규모	대도시	24.0	(708)	10.8	(708)	31.3	(336)
	중소도시	24.2	(834)	9.6	(834)	29.4	(347)
	읍/면지역	23.8	(231)	9.4	(231)	32.5	(134)
	<i>F</i>	0.07		3.59*		0.43	
	<i>N</i>	(1,773)		(1,773)		(817)	

주: 영유아 가구 전체 월평균 피복비 지출액에서 양육비용 중 피복비 비용을 제외한 월평균 피복비(성인의 월평균 피복비)와 무자녀 가구 월평균 피복비 지출액을 비교한 것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 $p < .05$, *** $p < .001$.

5) 보건의료비

영유아 가구 성인의 보건의료비 지출액은 영유아 가구의 경우 왼쪽으로 뾰족하게 높은 봉우리를 가지고 있으며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가진 형태를 보이는데 반해, 무자녀 가구의 경우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고 들쭉날쭉한 형태의 분포를 보였다. 보건의료비에는 질병 등의 치료를 위한 병원비가 포함되기는 하나 건강식품 구입비 등 반드시 질병과 관련된 비용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의료비의 들쭉날쭉한 패턴은 다분히 개인적 취향에 따른 비용 지출의 차이일 것으로 생각된다.

가구특성별 보건의료비 지출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른 비목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경우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보건의료비 지출액도 높아지는 특성이 발견되었다. 한편, 총 자녀수가 많을수록 영유아 가구의 전체 보건의료비 지출액도 유의미하게 높았다. 한편, 영유아 가구의 성인 보건의료비 지출은 다른 비목들과는 약간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 맞벌이 가구인 경우 외벌이 가구에 비해 보건의료비 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영유아 가구의 성인 보건의료비 지출액은 무자녀 가구의 성인 보건의료비 지출액에 비해 전반적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표 VII-3-10〉 가구특성별 보건의료비 지출액 비교(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단위: 만원, (가구)

구분		영유아 가구				무자녀 가구	
		보건의료비 전체 지출액		양육비용 제외 지출액			
		월평균	(수)	월평균	(수)	월평균	(수)
총계		14.2	(1,773)	5.5	(1,773)	18.3	(817)
가구소득	299만원이하	11.8	(46)	5.6	(46)	17.2	(81)
	300~399만원	11.0	(282)	3.9	(282)	14.5	(99)
	400~499만원	13.4	(473)	6.1	(473)	17.7	(150)
	500~599만원	13.5	(371)	4.8	(371)	18.1	(166)
	600만원 이상	17.0	(601)	6.3	(601)	20.8	(321)
	<i>F</i>		5.80***		2.90*		2.50*
총 가구원 수	3명이하	11.8	(620)	6.2	(620)	18.0	(797)
	4명	13.8	(869)	4.9	(869)	53.9	(9)
	5명이상	20.6	(284)	6.2	(284)	31.1	(11)
	<i>F</i>		21.58***		3.23*		19.85***
맞벌이 여부	외벌이 가구	13.7	(938)	4.9	(938)	19.2	(216)
	맞벌이 가구	14.8	(835)	6.3	(835)	18.3	(601)
	<i>t</i>		1.02		3.75***		0.58
지역규모	대도시	14.2	(708)	5.6	(708)	18.5	(336)
	중소도시	14.1	(834)	5.3	(834)	18.6	(347)
	읍/면지역	14.6	(231)	6.3	(231)	18.8	(134)
	<i>F</i>		0.05		0.64		0.01
N		(1,773)		(1,773)		(817)	

주: 영유아 가구 전체 월평균 보건의료비 지출액에서 양육비용 중 보건의료비를 제외한 월평균 보건의료비(성인의 월평균 보건의료비)와 무자녀 가구 월평균 보건의료비 지출액을 비교한 것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 $p < .05$, *** $p < .001$.

6) 교육보육비

영유아 가구의 성인 교육보육비 지출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고 매우 평평한 분포를 보일 뿐 아니라, 다른 비목들의 결과와 달리 영유아 가구의 성인이나 무자녀 가구가 매우 흡사한 분포 형태를 보였다. 이는 성인의 교육보육비이기 때문에, 학업 목적으로 수행되는 교육보육비가 전반적으로 필요 없는 시기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유아 가구의 전체 교육보육비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맞벌이 가구인 경우, 지역규모가 클수록 높아지는 특징이 뚜렷하게 발견되는데, 전체 교육보육비에서 자녀의 교육보육비를 제외한 성인의 교육보육비는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영유아 가구의 성인 교육보육비의 경우에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단, 영유아 가구 성인의 교육보육비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특징이 있다.

무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의 가장 낮은 가구에서 교육보육비 지출액이 평균 6만원으로 높았으며, 그 이상의 소득구간에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보육비 지출도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또, 지역규모가 클수록 교육보육비 지출액이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표 VII-3-11〉 가구특성별 교육보육비 지출액 비교(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단위: 만원, (가구)

구분		영유아 가구				무자녀 가구	
		교육보육비 전체 지출액		양육비용 제외 지출액			
		월평균	(수)	월평균	(수)	월평균	(수)
총계		47.9	(1,773)	2.2	(1,773)	6.0	(817)
가구소득	299만원이하	29.7	(46)	1.3	(46)	6.0	(81)
	300~399만원	27.2	(282)	0.9	(282)	1.0	(99)
	400~499만원	33.5	(473)	1.4	(473)	4.0	(150)
	500~599만원	45.2	(371)	1.6	(371)	4.9	(166)
	600만원 이상	72.0	(601)	3.8	(601)	8.9	(321)
	<i>F</i>	60.36***		4.90***		3.50**	
총 가구원 수	3명이하	20.5	(620)	1.6	(620)	5.8	(797)
	4명	57.2	(869)	2.0	(869)	17.8	(9)
	5명이상	79.2	(284)	3.8	(284)	5.5	(11)
	<i>F</i>	178.94***		3.92*		1.45	
맞벌이 여부	외벌이 가구	39.9	(938)	1.5	(938)	8.3	(216)
	맞벌이 가구	56.9	(835)	2.9	(835)	5.1	(601)
	<i>t</i>	-6.77***		-2.59**		1.53	
지역규모	대도시	51.9	(708)	2.9	(708)	8.2	(336)
	중소도시	48.7	(834)	1.6	(834)	4.8	(347)
	읍/면지역	32.6	(231)	1.9	(231)	3.5	(134)
	<i>F</i>	12.21***		2.50		3.39*	
N		(1,773)		(1,773)		(817)	

주: 영유아 가구 전체 월평균 교육보육비 지출액에서 양육비용 중 교육보육비를 제외한 월평균 교육보육비(성인의 월평균 교육보육비)와 무자녀 가구 월평균 교육보육비 지출액을 비교한 것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 $p < .05$, ** $p < .01$, *** $p < .001$.

7) 여가문화생활비

성인의 여가문화생활비 지출액은 영유아 가구와 무자녀 가구 사이에 확연한 차이를 보였던 비목이다. 영유아 가구의 여가문화생활비 지출 분포를 살펴보면, 낮은 수준에 밀집되어 있는 형태를 보였다. 반면, 무자녀의 경우에도 왼쪽으로 편포된 분포를 보이기는 하나, 영유아 가구에 비해서는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가구의 전체 여가문화생활비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육비용을 제외한 성인의 여가문화생활비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 통계적으로 높긴 하나, 무자녀 가구에 비하면 1/3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무자녀 가구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 여가문화생활비 지출액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이때, 영유아 가구의 성인과 무자녀 가구의 여가문화생활비 지출액을 비교해보면, 동일한 가구특성을 가진 집단 간에도 여가문화생활비의 지출 격차는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즉,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인 299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 영유아 가구의 성인 여가문화생활비 지출액은 7만9천원에 불과하지만, 무자녀 가구의 경우 19만5천원으로 영유아 가구 성인에 비해 2배이상 높았다. 반면,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경우와 300~399만원인 경우에는 영유아 가구 전체 월평균 여가문화생활비가 무자녀 가구의 월평균 여가문화생활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자녀 양육비용으로 지출되는 여가문화생활비(예컨대, 체험학습비, 도서 및 완구 구매 비용 등)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표 VII-3-12〉 가구특성별 여가문화생활비 지출액 비교(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단위: 만원, (가구)

구분	영유아 가구				무자녀 가구		
	여가문화생활비 전체 지출액		양육비용 제외 지출액		월평균	(수)	
	월평균	(수)	월평균	(수)			
총계	36.8	(1,773)	15.4	(1,773)	49.9	(817)	
가구소득	299만원이하	21.2	(46)	7.9	(46)	19.5	(81)
	300~399만원	27.9	(282)	11.4	(282)	20.9	(99)
	400~499만원	31.2	(473)	13.2	(473)	37.3	(150)
	500~599만원	35.8	(371)	14.4	(371)	51.4	(166)
	600만원 이상	47.2	(601)	20.2	(601)	71.7	(321)
	<i>F</i>	23.92***		19.61***		11.79***	

구분		영유아 가구				무자녀 가구	
		여가문화생활비 전체 지출액		양육비용 제외 지출액			
		월평균	(수)	월평균	(수)	월평균	(수)
총 가구원 수	3명이하	32.6	(620)	16.6	(620)	49.6	(797)
	4명	37.4	(869)	14.5	(869)	63.9	(9)
	5명이상	43.9	(284)	15.5	(284)	59.3	(11)
	<i>F</i>	10.31***		2.50		0.19	
맞벌이 여부	외벌이 가구	33.6	(938)	13.5	(938)	39.1	(216)
	맞벌이 가구	40.3	(835)	17.6	(835)	53.8	(601)
	<i>t</i>	-3.98***		-4.82***		-2.68**	
지역규모	대도시	36.5	(708)	15.1	(708)	49.8	(336)
	중소도시	37.1	(834)	15.5	(834)	52.9	(347)
	읍/면지역	36.6	(231)	15.8	(231)	42.4	(134)
	<i>F</i>	0.05		0.17		0.72	
N		(1,773)		(1,773)		(817)	

주: 영유아 가구 전체 월평균 여가문화생활비 지출액에서 양육비용 중 여가문화생활비를 제외한 월평균 여가문화생활비(성인의 월평균 여가문화생활비)와 무자녀 가구 월평균 여가문화생활비 지출액을 비교한 것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 $p < .01$, *** $p < .001$.

8) 교통비

성인의 교통비 지출액은 다른 비목들과 달리 영유아 가구가 무자녀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비목이다. 교통비 분포는 전반적으로 일정한 패턴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나, 영유아 가구의 경우 무자녀 가구에 비해 오른쪽으로 좀 더 치우친 분포를 보였다.

가구특성별 교통비 지출액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특징이 모든 가구에서 발견되었다. 한편, 무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만 존재할 뿐 다른 가구특성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반해, 영유아 가구의 경우에는 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맞벌이 가구인 경우,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교통비 지출액이 커지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영유아 가구 성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특성으로, 다른 비목과 달리 교통비 전체 지출액에서 자녀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은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상 다른 비목들이 지역규모가 클수록 지출액이 많아지는 특징이 있었다면, 교통비의 경우에는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교통비 지출액이 커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즉, 소도시 및 읍면지역에 사는 경우 교통비 부담이 다소 큰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표 VII-3-13〉 가구특성별 교통비 지출액 비교(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단위: 만원, (가구)

구분	영유아 가구				무자녀 가구		
	교통비 전체 지출액		양육비용 제외 지출액		월평균	(수)	
	월평균	(수)	월평균	(수)			
총계	28.2	(1,773)	27.4	(1,773)	24.7	(817)	
가구소득	299만원이하	18.8	(46)	18.4	(46)	16.0	(81)
	300~399만원	24.0	(282)	23.3	(282)	20.8	(99)
	400~499만원	26.3	(473)	25.8	(473)	22.1	(150)
	500~599만원	28.8	(371)	28.0	(371)	26.1	(166)
	600만원 이상	31.9	(601)	30.9	(601)	28.6	(321)
	F	23.15***		20.67***		15.15***	
총 가구원 수	3명이하	26.9	(620)	26.5	(620)	24.8	(797)
	4명	28.3	(869)	27.5	(869)	25.0	(9)
	5명이상	30.5	(284)	29.4	(284)	19.2	(11)
	F	5.71**		3.86*		0.69	
맞벌이 여부	외벌이 가구	26.9	(938)	26.3	(938)	19.8	(216)
	맞벌이 가구	29.5	(835)	28.7	(835)	26.5	(601)
	t	-3.62***		-3.46***		-6.08	
지역규모	대도시	27.3	(708)	26.4	(708)	24.3	(336)
	중소도시	28.0	(834)	27.3	(834)	25.2	(347)
	읍/면지역	31.6	(231)	31.0	(231)	24.4	(134)
	F	7.24***		8.48***		0.28	
N	(1,773)		(1,773)		(817)		

주: 영유아 가구 전체 월평균 교통비 지출액에서 양육비용 중 교통비를 제외한 월평균 교통비(성인의 월평균 교통비)와 무자녀 가구 월평균 교통비 지출액을 비교한 것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 $p < .05$, ** $p < .01$, *** $p < .001$.

9) 통신비

성인의 통신비 지출액은 매우 독특한 분포 형태를 보이는데, 전반적인 평균 수준은 영유아 가구 성인이나 무자녀 가구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무자녀 가구가 영유아 가구 성인에 비해 낮은 지출액 구간에서 보다 넓은 분포를 보이면서 약간 더 낮은 평균을 보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통신비 지출액은 앞서 교통비와 유사하게 영유아 가구의 경우 가구소득, 총 가구원 수, 맞벌이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영유아 가구 전체 통신비 지출액과 성인의 통신비 지출액의 경향성 자체가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 비목이었다. 즉, 자녀가 사용하는 통신비는 영유아 가구의 통신비 지출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 비목이었다. 반면, 교통비와 달리 영유아 가구의 통신비는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무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을 포함한 모든 가구특성에 따라 통신비에서의 유의미한 차이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표 VII-3-14〉 가구특성별 통신비 지출액 비교(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단위: 만원, (가구)

구분	영유아 가구				무자녀 가구		
	통신비 전체 지출액		양육비용 제외 지출액		월평균	(수)	
	월평균	(수)	월평균	(수)			
총계	18.5	(1,773)	17.7	(1,773)	16.0	(817)	
가구소득	299만원이하	14.7	(46)	14.0	(46)	13.9	(81)
	300~399만원	16.6	(282)	16.2	(282)	15.2	(99)
	400~499만원	17.9	(473)	17.3	(473)	15.4	(150)
	500~599만원	18.7	(371)	17.8	(371)	16.9	(166)
	600만원 이상	20.0	(601)	18.9	(601)	16.7	(321)
	<i>F</i>	15.80***		11.81***		1.86	
총 가구원 수	3명이하	17.2	(620)	17.2	(620)	15.9	(797)
	4명	18.4	(869)	17.6	(869)	21.9	(9)
	5명이상	21.6	(284)	19.1	(284)	18.6	(11)
	<i>F</i>	35.63***		7.32***		1.94	
맞벌이 여부	외벌이 가구	17.6	(938)	16.9	(938)	15.2	(216)
	맞벌이 가구	19.5	(835)	18.6	(835)	16.3	(601)
	<i>t</i>	-5.47***		-4.99***		-1.45	
지역규모	대도시	18.0	(708)	17.3	(708)	15.5	(336)
	중소도시	18.7	(834)	17.8	(834)	16.0	(347)
	읍/면지역	19.1	(231)	18.4	(231)	17.3	(134)
	<i>F</i>	2.99		2.11		1.54	
N	(1,773)		(1,773)		(817)		

주: 영유아 가구 전체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에서 양육비용 중 통신비를 제외한 월평균 통신비(성인의 월평균 통신비)와 무자녀 가구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을 비교한 것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 $p < .001$.

10) 개인유지비

개인유지비 지출액은 영유아 가구 성인과 무자녀 가구 모두 왼쪽이 높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차 낮아지기는 하나 등락을 거듭하며 낮아지면서 꽤 긴 꼬리를 가진 형태의 분포를 보였다. 즉, 개인유지비는 낮은 수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긴 하나, 이 구간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 상당한 수준의 개인차를 가지고 있는 비목이라 볼 수 있다. 또, 유사한 패턴을 보이기는 하나, 영유아 가구 성인의 경우 왼쪽 평균 중심으로 밀집도가 무자녀 가구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여, 무자녀 가구의 개인유지비 지출이 개인에 따라 매우 큰 편차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유아 가구의 전체 개인유지비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양육비용을 제외한 성인의 개인유지비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총 가구원 수가 3명으로 적은 경우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가구 성인의 개인유지비는 지역규모가 클수록 높아지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한편, 무자녀 가구의 개인유지비 지출액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표 VII-3-15〉 가구특성별 개인유지비 지출액 비교(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단위: 만원, (가구)

구분		영유아 가구				무자녀 가구	
		개인유지비 전체 지출액		양육비용 제외 지출액			
		월평균	(수)	월평균	(수)	월평균	(수)
총계		16.4	(1,773)	8.6	(1,773)	15.8	(817)
가구소득	299만원이하	10.0	(46)	4.9	(46)	11.3	(81)
	300~399만원	15.1	(282)	7.8	(282)	12.9	(99)
	400~499만원	15.8	(473)	8.3	(473)	14.4	(150)
	500~599만원	16.2	(371)	8.4	(371)	16.9	(166)
	600만원 이상	18.1	(601)	9.6	(601)	17.9	(321)
	<i>F</i>	9.76***		6.45***		6.77***	
총 가구원 수	3명이하	16.4	(620)	9.9	(620)	15.7	(797)
	4명	15.8	(869)	7.8	(869)	16.7	(9)
	5명이상	18.2	(284)	8.1	(284)	22.3	(11)
	<i>F</i>	5.82**		14.76***		1.42	
맞벌이 여부	외벌이 가구	16.5	(938)	8.4	(938)	13.8	(216)
	맞벌이 가구	16.3	(835)	8.8	(835)	16.5	(601)
	<i>t</i>	0.31		-1.14		-2.76**	
지역규모	대도시	16.8	(708)	9.1	(708)	16.0	(336)
	중소도시	16.4	(834)	8.4	(834)	15.5	(347)
	읍/면지역	15.0	(231)	7.7	(231)	16.1	(134)
	<i>F</i>	2.39		3.75*		0.17	
N		(1,773)		(1,773)		(817)	

주: 영유아 가구 전체 월평균 개인유지비 지출액에서 양육비용 중 개인유지비를 제외한 월평균 개인유지비(성인의 월평균 개인유지비)와 무자녀 가구 월평균 개인유지비 지출액을 비교한 것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 $p < .05$, ** $p < .01$, *** $p < .001$.

11) 보험

영유아 가구 성인과 무자녀 가구의 보험료 지출액 분포는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긴 하나 정규분포에 가까운 모양을 보였다. 영유아 가구가 무자녀 가구에 비해서는 좀 더 정규분포에 가까운 모양을 보이고 있으며, 무자녀 가구들은 평균 근처에서 영유아 가구에 비해 좀 더 넓게 분포되는 특징을 보였다.

영유아 가구의 전체 보험료 또한 다른 비목들과 유사하게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의 전체 보험료는 가구소득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무자녀 가구의 경우에도 영유아 가구의 성인과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 보험료 지출액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지출액은 영유아 가구의 성인 지출액과 무자녀 가구의 지출액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비목으로, 동일한 가구특성을 가진 집단 간에도 큰 차이가 없이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비목이었다.

〈표 VII-3-16〉 가구특성별 보험 지출액 비교(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단위: 만원, (가구)

구분		영유아 가구				무자녀 가구	
		보험 전체 지출액		양육비용 제외 지출액			
		월평균	(수)	월평균	(수)	월평균	(수)
총계		43.2	(1,773)	29.8	(1,773)	32.2	(817)
가구소득	299만원이하	30.9	(46)	20.1	(46)	20.8	(81)
	300~399만원	35.9	(282)	24.8	(282)	27.1	(99)
	400~499만원	38.5	(473)	26.7	(473)	28.4	(150)
	500~599만원	44.1	(371)	30.3	(371)	33.3	(166)
	600만원 이상	50.8	(601)	34.8	(601)	37.9	(321)
<i>F</i>		23.61***		15.38***		11.99***	
총 가구원 수	3명이하	38.6	(620)	30.7	(620)	32.2	(797)
	4명	45.2	(869)	30.0	(869)	41.1	(9)
	5명이상	47.3	(284)	27.1	(284)	27.1	(11)
	<i>F</i>	14.56***		2.45		0.88	
맞벌이 여부	외벌이 가구	41.2	(938)	28.3	(938)	27.3	(216)
	맞벌이 가구	45.5	(835)	31.4	(835)	34.0	(601)
	<i>t</i>	-3.22**		-2.79**		-3.73***	
지역규모	대도시	41.8	(708)	28.9	(708)	30.3	(336)
	중소도시	43.7	(834)	29.9	(834)	33.5	(347)
	읍/면지역	45.9	(231)	31.9	(231)	33.8	(134)
	<i>F</i>	2.13		1.60		1.86	
N		(1,773)		(1,773)		(817)	

주: 영유아 가구 전체 월평균 보험 지출액에서 양육비용 중 보험을 제외한 월평균 보험 지출액(성인의 월평균 보험 지출액)과 무자녀 가구 월평균 보험 지출액을 비교한 것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 $p < .01$, *** $p < .001$.

12) 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

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 비용은 2023년 조사에서 비목을 구분하여 추가한 비목이다. 대체로 0에 집중된 분포를 보이는 비목으로, 특히 영유아 가구의 경우 대부분의 가구가 0에 분포하면서 편차도 거의 없는 비목이었다. 반면, 무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0에 밀집되어 있기는 하나 일단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오른쪽으로 길고 넓게 분포하는 특징을 보였다.

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지출액은 영유아 가구는 5천원으로, 지출하지 않는 가구가 매우 많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가구특성에 따라 총 가구원 수가 3명이하인 경우에 그나마 좀 더 높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자녀 가구의 경우 월평균 5만1천원을 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지출 비용이 좀 더 높은 특징이 발견되었다. 즉,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무자녀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표 VII-3-17〉 가구특성별 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지출액 비교(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단위: 만원, (가구)

구분		영유아 가구		무자녀 가구	
		월평균	(수)	월평균	(수)
총계		0.5	(1,773)	5.1	(817)
가구소득	299만원이하	0.9	(46)	3.1	(81)
	300~399만원	0.5	(282)	2.9	(99)
	400~499만원	0.5	(473)	5.4	(150)
	500~599만원	0.5	(371)	4.7	(166)
	600만원 이상	0.5	(601)	6.3	(321)
<i>F</i>		0.31		1.57	
총 가구원 수	3명이하	0.8	(620)	5.1	(797)
	4명	0.3	(869)	3.4	(9)
	5명이상	0.5	(284)	4.5	(11)
	<i>F</i>	5.83**		0.07	
맞벌이 여부	외벌이 가구	0.4	(938)	4.1	(216)
	맞벌이 가구	0.6	(835)	5.4	(601)
<i>t</i>		-1.26		-1.36	
지역규모	대도시	0.4	(708)	3.9	(336)
	중소도시	0.6	(834)	5.3	(347)
	읍/면지역	0.4	(231)	7.5	(134)
	<i>F</i>	1.44		3.18*	
N		(1,773)		(817)	

주: 가구단위 지출이어서 양육비용 제외는 삭제.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 $p < .05$, ** $p < .01$.

13) 기타 상품 및 서비스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지출액은 성인을 위한 기호상품(예 : 술, 담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양육비용에서는 제외되는 비목이다. 영유아 가구와 무자녀 가구 모두 들쭉날쭉한 분포를 보이는 비목으로, 둘 다 왼쪽으로 편포된 분포를 보였다. 영유아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분포는 매우 흡사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무자녀 가구 중 지출액이 높은 가구가 약간 더 많은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지출액 또한 다른 모든 비목들과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특징이 발견된다. 다만, 영유아 가구의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지출액은 무자녀 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며, 가구소득 구간에 따른 지출액 차이도 적은 편이었다.

〈표 VII-3-18〉 가구특성별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지출액 비교(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단위: 만원, (가구)

구분	영유아 가구		무자녀 가구	
	월평균	(수)	월평균	(수)
총계	6.1	(1,773)	8.5	(817)
가구소득	299만원이하	3.3 (46)	5.0 (81)	
	300~399만원	6.0 (282)	6.5 (99)	
	400~499만원	5.6 (473)	8.2 (150)	
	500~599만원	6.3 (371)	8.4 (166)	
	600만원 이상	6.6 (601)	10.2 (321)	
	<i>F</i>	2.86*		4.94***
총 가구원 수	3명이하	6.3 (620)	8.5 (797)	
	4명	6.2 (869)	15.3 (9)	
	5명이상	5.5 (284)	4.1 (11)	
	<i>F</i>	1.03		2.63
맞벌이 여부	외벌이 가구	5.9 (938)	7.4 (216)	
	맞벌이 가구	6.3 (835)	8.9 (601)	
	<i>t</i>	-1.22		-1.72
지역규모	대도시	6.5 (708)	8.5 (336)	
	중소도시	6.1 (834)	8.7 (347)	
	읍/면지역	4.7 (231)	8.1 (134)	
	<i>F</i>	5.57**		0.12
N	(1,773)		(81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 $p < .05$, ** $p < .01$, *** $p < .001$.

다. 예상하는 양육비용

이 항에서는 양육비용에 대한 예상 혹은 체감적 경제적 부담이 실제 자녀 출산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한 예상 양육비용이 영유아 가구와 무자녀 가구 사이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간략히 살펴보았다.

영유아 가구의 경우 영유아기 양육비용은 현재 실제 양육비용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양육비용 예상액은 자녀가 초등학교 이상이 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영유아 가구들은 자녀가 초등학교 시기 월평균 양육비용을 85만3천원, 중고등학생기에는 141만6천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면, 무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시기에는 145만1천원, 중고등학생기에는 210만1천원이 들 것 같다고 응답하여, 영유아 가구에 비해 약 1.5배이상의 양육비용이 더 들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무자녀 가구들은 영유아기 양육비용에 대해서도 실제 양육비용 지출액인 영아기 71만6천원, 유아기 89만6천원보다 각 19만1천원, 17만4천원이 높은 90만7천원과 107만원을 응답하였다.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양육비용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영유아 가구와 무자녀 가구 모두에서 발견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영유아 가구들은 초등학교기의 양육비용을 영유아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을 뿐 아니라, 유아기의 양육비용 지출액에 비해 초등학교기 예상 양육비용을 좀 더 낮게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무자녀 가구들은 전반적으로 자녀 양육비용을 현실보다 좀 더 높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녀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양육비용 부담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보여주었다.

〈표 VII-3-19〉 자녀 1명을 키우는데 필요한 양육비용 (월평균 예상액) : 영유아 vs 무자녀 가구

단위: 만원, (명), 만원, (가구)

자녀 연령	영유아 가구		무자녀 가구	
영아(36개월 미만)	71.6	(1,197)	90.7	(817)
유아(36개월 이상~취학전)	89.6	(1,225)	107.0	(817)
초등학생(1~6학년)	85.3	(1,773)	145.1	(817)
중·고등학생	141.6	(1,773)	210.1	(817)

주: 1) 영유아 가구의 영아, 유아 응답 값은 예상액이 아닌 실제 아동 1인당 양육비용 평균값으로, 구분을 위해 음영 처리함.

2) 예상액은 가구 단위로 자녀가 해당 시기가 되면, 월평균 어느 정도에 양육비용이 들 것이라고 예상하는지를 묻은 문항으로, 가구 단위로 조사된 결과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이와 같은 양육비용에 대한 좀 더 과장된 예상이 무자녀 가구의 출산 기피와 상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무자녀 가구의 출산의향에 따라 예상 양육비용이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출산의향이 있는 경우에 자녀 연령대별 예상 양육비용이 출산 의향이 없는 경우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영유아 가구와 무자녀 가구 사이에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예상액은 실제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며, 무자녀 가구들이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다소 과장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무자녀 가구들 사이에서 출산 의향에 따른 예상 양육비용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아, 양육비용 부담이 무자녀 가구의 출산 의향 자체를 결정짓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바꾸어 말하자면, 예상 양육비용에 따른 부담감은 출산 의향 자체에 결정적 영향을 줄만큼은 아니지만, 출산을 지연시키는 원인 중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표 VII-3-20〉 자녀 1명을 키우는데 필요한 양육비용 (월평균 예상액) : 무자녀 가구 출산 의향별

단위: 만원, 가구

자녀 연령	출산 의향 있음		출산 의향 없음		t
영아(36개월 미만)	89.8	(483)	92.2	(334)	-0.47
유아(36개월 이상~취학전)	105.1	(483)	109.8	(483)	-0.80
초등학생(1~6학년)	144.6	(483)	145.9	(483)	-0.16
중·고등학생	206.3	(483)	215.7	(483)	-0.84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4. 성인의 소비지출 결정 요인

영유아 가구 뿐 아니라 무자녀 가구의 성인의 소비지출액에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소득이었다. 이 외에 영유아 가구의 경우 부연령이 많을수록 성인의 소비지출액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수 값이 0.008에 불과하여 그 차이가 큰 수치는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총 가구원수의 경우 영유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성인의 소비지출액이 줄어드는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이는 자녀 양육비용 부담이 커짐에 따라 성인의 소비지출액이 감소하는 현상을 잘 보여준다.

이 심층 분석의 주요 변수인 무자녀 가구 여부는 매우 유의미한 양수로, 무자녀

가구의 성인들은 영유아 가구의 성인에 비해 소비지출액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높은 현상이 발견됨을 알 수 있었다.

〈표 VII-4-1〉 성인의 소비지출(총액) 결정 요인, OLS

구분	영유아 가구	무자녀 가구	전체(pooling)
맞벌이 여부(=1)	1.364	-9.403	-5.442
가구소득	0.144***	0.278***	0.212***
총 가구원 수	-7.731***	50.620*	-5.957
모 연령	0.007	-0.438	0.004
부 연령	0.008***	-0.861	0.006
모 학력	대졸이상	-2.641	-21.093
	대학원 이상	-6.654	17.512
부 학력	대졸이상	-3.903	29.731*
	대학원 이상	-4.140	-2.179
지역규모	중소도시	-2.362	4.091
	읍면지역	-2.969	22.375
무자녀 가구 여부(=1)	-	-	120.743***
상수	167.200***	183.965***	121.623***
N	(1,773)	(817)	(2,590)

주: 1) (=1)은 더미변수의 기준 값이며, 설명 변수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는 연속 변수임.

2) 무자녀 가구의 경우 모는 부부 중 여성을, 부는 남성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 $p < .1$, ** $p < .05$, *** $p < .01$.

비목별 성인의 소비지출액을 종속변수로 하는 경우에도 가구소득만이 유일하게 일관될 뿐 아니라 모든 비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모든 비목에서 성인의 소비지출액이 커지는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무자녀 가구 여부는 대부분의 비목에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이 발견되긴 하나, 교통비와 통신비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음수였으며, 보험료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가구 특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무자녀 가구의 성인들은 영유아 가구 성인에 비해 대부분의 비목에서의 소비지출액이 컸으나, 교통비와 통신비의 경우에는 오히려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비목별 추정 결과에서 무자녀 가구 여부 변수의 계수값이 컸던 비목은 여가문화생활비와 기기/집기 구매비용으로, 영유아 가구의 성인들은 무자녀 가구 성인에 비해 개인의 취미활동 및 문화적 생활에 좀 더 제약이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표 VII-4-2〉 성인의 비록별 소비지출(총액) 결정 요인 : pooling 표본 기준, OLS

구분	식비	주거 관리비	기기/ 집기	피복비	보건 의료비	교육 보육비	여기문화 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개인 유지비	보험료	반려 동물	기타
맞벌이(여부(=1))	-3.852**	0.307	1.213	-2.112**	-0.532	-1.588**	-2.544	1.096*	0.957***	0.157	0.699	0.166	0.113
가구소득	0.433***	0.008***	0.024***	0.248***	0.005***	0.010***	0.564***	0.161***	0.004***	0.005***	0.020***	0.002***	0.004***
총 가구원 수	-3.183**	4.054***	1.339	-2.345***	0.204	0.607	-3.025*	0.319	0.647**	-1.125***	-2.551***	-0.379	-0.518*
모 연령	0.001	0.001	-0.000	0.000	0.000	-0.000	-0.001	0.000*	0.001	0.001	0.001	0.000	-0.001
부 연령	0.002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0.001**	0.001***	0.000	0.002**	0.000	0.000
모 대졸이상	0.225	-0.884	-1.146	0.079	-1.179	-0.442	-0.992	-1.761***	-1.461***	-0.525	0.235	-1.129**	-1.973***
학력 대학원이상	4.653	-2.573	-4.288	-0.777	1.197	3.320**	7.615	-4.972	-3.021***	0.020	2.488	-1.431*	-0.791
부 대졸이상	1.200	-1.264	1.557	0.106	1.943**	1.556*	5.997**	0.625	-1.174**	0.464	0.034	-1.006**	0.056
학력 대학원이상	-3.636	0.923	4.380	0.464	0.944	2.685**	2.684	-0.154	-2.947***	-1.413*	-5.078**	-1.016	-0.547
지역 중소도시	0.858	-1.961**	-1.933	-0.783	-0.002	-1.651***	2.641	1.111*	0.386	-0.532	2.152**	0.558	-0.167
규모 읍면지역	-4.535**	-3.197**	4.247	0.929	0.905	-1.528*	1.210	3.571***	1.249**	-0.663	4.248***	1.255**	-1.241**
무자녀가구(=1)	10.818***	4.830***	29.219***	18.783***	13.145***	4.448***	31.980***	-3.054***	-1.536***	6.247***	-0.174	4.106***	1.930***
상수	51.916***	20.878***	-5.084	1.590	1.518	-4.181***	-15.235***	17.588***	15.675***	7.981***	21.255***	1.195	6.527***
N	(2,590)	(2,590)	(2,590)	(2,590)	(2,590)	(2,590)	(2,590)	(2,590)	(2,590)	(2,590)	(2,590)	(2,590)	(2,590)

주: 1) (=1)은 데미변수의 기준 값이며, 설명 변수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는 연속 변수임.

2) 무자녀 가구의 경우 모는 부부 중 여성을, 부는 남성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 원자료.

* $p < .1$, ** $p < .05$, *** $p < .01$.

5. 무자녀 가구의 예상 양육비용과 출산 의향과의 관계

영유아 가구와 무자녀 가구가 아동의 각 연령대별 예상하는 양육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성인의 소비지출에서와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이 모든 경우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무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각 시기별 예상 양육비용이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다소 유의도가 낮은 특성을 보였다.

전체 표본(pooling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무자녀 가구여부는 중고등학교기 뿐 아니라 초등학교기에도 유의미한 양수로, 영유아 가구에 비해 무자녀 가구가 가구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예상 양육비용을 높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II-5-1〉 영유아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예상 양육비용 결정 요인 : OLS

구분	영유아 가구		무자녀 가구		전체(pooling)		
	초등학교기	중고등학교기	초등학교기	중고등학교기	초등학교기	중고등학교기	
맞벌이 여부(=1)	1.458	2.409	-6.760	-8.441	-0.762	-0.654	
가구소득	0.042***	0.061***	0.024*	0.039*	0.033***	0.051***	
총 가구원 수	-2.668	-2.338	2.176	0.047	-1.810	-1.443	
모 연령	-0.000	0.002	-1.416	-1.947	0.002	0.005	
부 연령	-0.002	-0.003	0.509	1.260	-0.001	-0.002	
모 학력	대졸이상	6.922**	11.834**	-37.995***	-66.232***	-6.338	-11.781*
	대학원 이상	13.063**	25.769**	-19.485	-43.158*	3.338	4.077
부 학력	대졸이상	-4.410	-6.419	-2.785	5.080	-4.251	-2.454
	대학원 이상	12.144**	11.862	-4.237	-2.748	5.920	6.830
지역 규모	중소도시	-5.246**	-8.000**	-19.590**	-26.846**	-10.081***	-14.332***
	읍면지역	-9.156**	-15.362***	-22.381**	-27.831*	-13.716***	-19.594***
무자녀가구(=1)						57.096***	65.911***
상수		66.214**	109.738***	208.867***	282.294***	84.334***	135.523***
N		(1,773)	(1,773)	(817)	(817)	(2,590)	(2,590)

주: 1) (=1)은 더미변수의 기준 값이며, 설명 변수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는 연속 변수임.

2) 무자녀 가구의 경우 모든 부부 중 여성을, 부는 남성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 $p < .1$, ** $p < .05$, *** $p < .01$.

무자녀 가구 중에서 출산 의향에 따라 예상 양육비용이 체계적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VII-5-2>와 같다. 분석 결과 출산 의향은 예상 양육비용에 전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외로 무자녀 가구 내에서 예상 양육비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변인은 지역 규모로, 특히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무자녀 가구에 비해 모든 연령 구간에서 예상 양육비용을 낮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계수값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동의 연령이 영아기에서 중고등학령기로 점차 많아질수록 계수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무자녀 가구들이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무자녀 가구들에 비해 학령기 자녀의 양육비용을 훨씬 더 낮게 예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VII-5-2> 무자녀 가구의 출산 의향별 예상 양육비용 결정 요인 : OLS

구분		예상 양육비용			
		영아기	유아기	초등학령기	중고등학령기
맞벌이 여부(=1)		-6.246	-5.958	-6.763	-8.341
가구소득		0.014	0.018*	0.024*	0.038*
총 가구원 수		-0.600	7.276	2.194	-4.889
여성 연령		-1.817**	-1.727*	-1.413	-2.040
남성 연령		0.025	0.537	0.511	1.220
여성 학력	대졸이상	-19.306**	-19.896*	-38.019***	-65.523***
	대학원 이상	-3.772	-15.565	-19.511	-42.418*
남성 학력	대졸이상	-10.310	-7.679	-2.805	5.651
	대학원 이상	-6.661	-4.109	-4.247	-2.447
지역 규모	중소도시	-10.518*	-11.252*	-19.596**	-26.656**
	읍면지역	-10.444	-15.426*	-22.382**	-27.797*
출산의향 (있음 =1)		-4.495	-5.121	0.204	-5.957
상수		181.145***	165.638***	208.607***	289.879***
N		(817)	(817)	(817)	(817)

주: 1) 종속변수는 무자녀 가구의 출산 의향으로 의향 있음 =1, 의향 없음 =0이며, 각 칼럼은 설명변수인 시기별 예상 양육비용에 따라 구분됨.

2) 설명 변수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는 연속 변수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 $p < .1$, ** $p < .05$, *** $p < .01$.

반대로 예상 양육비용이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로짓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종속변수가 출산 의향인 경우에도 모든 아동 연령구간의 예상 양육비용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자녀 가구의 양육비용에 대한 예상액은 전반적으로 출산 의향과는 무관한 경향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자녀 가구들이 양육비용을 실제 혹은 영유아 가구의 예상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생각하는 경향성에 기인한 것으로, 양육비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출산 의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무자녀 가구들은 전반적으로 양육비용을 높게 생각하여 출산으로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포기되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VII-5-3〉 예상 양육비용이 무자녀 가구의 출산 의향에 미친 영향 : 로짓 분석

구분		출산 의향 (있음 =1, 없음 0)			
맞벌이 여부(=1)		0.062	0.062	0.068	0.065
가구소득		-0.000	-0.000	-0.000	-0.000
총 가구원 수		-0.409	-0.403	-0.408	-0.408
여성 연령		-0.070 ***	-0.070 ***	-0.068 ***	-0.068 ***
남성 연령		-0.023	-0.029	-0.030	-0.030
여성 학력	대졸이상	0.503 **	0.504 **	0.522 **	0.504 **
	대학원 이상	0.536	0.526	0.540	0.529
남성 학력	대졸이상	0.416 **	0.419 **	0.425 **	0.427
	대학원 이상	0.214	0.217	0.219	0.220 **
지역 규모	중소도시	0.132	0.132	0.142	0.135
	읍면지역	0.010	0.006	0.020	0.013
예상 양육비용	영아기	-0.001			
	유아기		-0.001		
	초등학교령기			-0.000	
	중고등학교령기				-0.000
상수		3.596 ***	3.573 ***	3.433 ***	3.508 ***
N		(817)	(817)	(817)	(817)

주: 설명 변수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는 연속 변수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 $p < .1$, ** $p < .05$, *** $p < .01$.

6. 소결

VII장에서는 영유아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소비실태 현황을 비교하고, 영유아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성인에 대한 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무자녀 가구의 예상 양육비용이 출산 의향과는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등에 관한 심층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의 본조사(영유아 가구) 1,773가구와 부스터표본 중 무자녀 가구 조사 817가구이다.

먼저, 이 장의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 지출액은 377만5천원으로, 무자녀 가구 355만원에 비해 27만5천원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액 중에서 자녀에게 소요된 양육비용을 제외한 성인 가구원의 생활비 지출액을 산출해 본 결과, 월평균 226만9천원으로 무자녀 가구에 비해 128만1천원이 적었다.

둘째, 비목별로 지출액을 비교해본 결과, 영유아 가구의 전체 생활비 지출액은 자녀 양육비용 지출로 인해 무자녀 가구의 전체 생활비 지출액 보다 높지만, 성인이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은 상당히 적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가족여행, 외식비, 기기/집기류,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이용비 등에서의 차이는 영유아 부모들이 자녀 양육으로 인해 개인 취미활동 및 문화적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영유아 가구들의 다른 비목에 대한 소비를 위축시키고 월평균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은 교육/보육비용과 식비 부담을 꼽을 수 있었다.

셋째, 생활비 지출액에는 제외되어 있는 일종의 비소비지출에 해당하는 지출액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지출액과 이전 지출액이 영유아 가구와 무자녀 가구 사이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금융 지출 및 이전 지출액 또한 무자녀 가구가 영유아 가구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상품에 대한 지출 중 자산형성(금융 투자)과 관련성이 높은 비목인 저축, 주식/암호화폐, 부동산 자산과 연관성이 큰 원금 상환이나 이자 상환 등에 있어서도, 무자녀 가구에 비해 영유아 가구들은 여력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미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 지출(혹은 투자)인 보험에 대해서는 영유아 가구들이 좀 더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양육비용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영유아 가구나 무자녀 가구 모두에서 발견되는 현상이지만, 영유아 가구들은 예상되는 초등학교령기의 양육비용을 영유아기와 큰 차이가 없게 응답했을 뿐 아니라, 유아기의 양육비용 지출액에 비해 초등학교령기 양육비용을 좀 더 낮게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무자녀 가구들은 전반적으로 자녀 양육비용을 현실보다 좀 더 높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녀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양육비용 부담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보여주었다.

다섯째, 영유아 가구 뿐 아니라 무자녀 가구의 성인의 소비지출액에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소득이었다. 이 외의 통제변수는 약간씩 다른 영향력을 보였다. 한편, 이 심층 분석의 주요 변수인 무자녀 가구 여부의 경우 매우 유의미한 양수로, 무자녀 가구의 성인들은 영유아 가구의 성인에 비해 소비지출액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높은 현상이 발견됨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비목별 성인의 소비지출액을 종속변수로 하는 경우에도 가구소득만이 유일하게 일관될 뿐 아니라 모든 비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무자녀 가구 여부는 대부분의 비목에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이 발견되긴 하나, 교통비와 통신비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음수였으며, 보험료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때, 비목별 추정 결과에서 무자녀 가구 여부 변수의 계수 값이 컸던 비목은 여가문화생활비와 기기/집기 구매비용으로, 영유아 가구의 성인들은 무자녀 가구 성인에 비해 개인의 취미활동 및 문화적 생활에 좀 더 제약이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일곱째, 영유아 가구와 무자녀 가구가 아동의 각 연령대별 예상하는 양육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성인의 소비지출액에서와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이 모든 경우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무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각 시기별 예상 양육비용이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다소 유의도가 낮은 특성을 보였다.

여덟째, 무자녀 가구 중에서 출산 의향에 따라 예상 양육비용이 체계적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출산 의향은 예상 양육비용에 전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외로 무자녀 가구 내에서 예상 양육비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변인은 지역 규모로, 특히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무자녀 가구에 비해 모든 연령 구간에서 예상 양육비용을 낮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홉째, 예상 양육비용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모든 아동 연령구간의 예상 양육비용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자녀 가구의 양육비용에 대한 예상액은 전반적으로 출산 의향과는 무관한 경향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는 양육비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출산 의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거나 무자녀 가구들은 전반적으로 양육비용을 높게 생각하여 출산으로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포기되었음을 반증하는 결과로 사료된다.

VIII

부모급여 지원이 양육비용 및 서비스 선택에 미친 영향

- 01 분석 목적
- 02 분석 자료
- 03 부모급여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친 요인
- 04 부모급여 수급이 아동 당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
- 05 소결

Ⅷ. 부모급여 지원이 양육비용 및 서비스 선택에 미친 영향

1. 분석 목적

Ⅷ장에서는 2023년 도입된 부모급여 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정부는 2023년 양육비용 부담 완화 및 영아기 집중 투자의 맥락에서 부모급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24년 이를 더욱 강화 확대하였다(보건복지부, 2024b). 부모급여는 논의 초기에는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 등이 함께 논의되었으나, 제도가 도입될 당시 아동수당법에 근거하여 양육비용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보편적 급여(수당) 제도로 도입이 확정되었다. 2022년 영아수당의 도입으로 영아기 집중 투자 맥락에서의 보편 급여 체계가 틀을 갖추었으나, 영아수당은 급여액의 수준이 기존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현금 지원액이 약간 더 커지는 수준의 변화였다(보건복지부, 2022). 반면, 부모급여는 특히 0세의 급여액이 매우 크게 확대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뿐 아니라 급여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기관 이용에 따른 급여액의 차이가 완전히 사라진 형태의 급여 제도라는 점에서 기존 영아수당과 확연한 차이를 갖는다.

한국은 2013년을 전후한 시기 무상보육·유아교육 제도 도입에 따라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을 통한 양육비용 완화에 무게가 실려 있었으나, 이후 2018년 9월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되면서(보건복지부, 2018) 아동에 대한 보편적 현금 급여(수당) 제도로의 체계 개편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아동 대상 급여 제도의 도입이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은 편으로, 2018년 9월 아동수당이 도입되면서 아동 급여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19년부터 소득 기준 적용이 사라짐에 따라 보편 지원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보건복지부, 2019). 이후 아동 급여 지원 대상은 해마다 확대되어 오다가, 2022년 영아 수당 제도의 도입으로 가정 양육을 하는 영아기 아동에 대한 지원 수준이 크게 강화되었다(보건복지부, 2022).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은 기존의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체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상태에서, 가정 양육을 하는 아동에 대한 현금 지원을 확대하는 형태의 제도 개편이었다면, 부모급여는 보육료와 가정양육의 경계를 허물고 아동이 어떠한 형태의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모급여는 영아기 아동의 서비스 선택의 자율권이 확대된 형태의 제도 개편이라고도 평가될 수 있는 제도이다.

〈표 Ⅷ-1-1〉 영유아 대상 주요 비용 지원 제도의 변화

구분	보육료·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영아수당 포함)
2012년	0~2세, 5세 보편 지원 시작	-	-	-
2013년	0~5세 전 연령 보편 지원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 수준은 동결	-	-
2016년 7월 2017년	0~2세 맞춤형 보육 시행 (종일반/맞춤반)		-	-
2018년 9월			선별 지원 (소득인정액 90% 이하)	-
2019년 1월			0~71개월 이하 모든 아동 보편 지원	-
2019년 9월			지원 연령 상향 (83개월이하)	-
2020년 3월 2021년			지원 연령 상향 (95개월이하)	-
2022년 1월 2022년 4월 2023년 1월	기본보육시간 제도 운영 (기본보육/연장보육)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23개월 아동	

주: 1) 기준시점은 제도가 적용되는 시작시점을 기준으로 표기함.

2) 2022년은 영아수당 제도가 적용되었으며, 부모급여는 2023년에 도입되었으나, 지원 대상이 동일하므로 지면 관계상 함께 표기.

자료: 육아정책연구소(2023. 9. 21). 내 아이의 육아비용 얼마나 지원받았나? : 출생코호트별 보편 지원 정책의 수급액을 중심으로. 육아정책Brief, 97호. 〈표 1〉 재인용.

한편, 부모급여의 지원 대상은 1세(23개월) 이하 영아이기 한, 2023년도에 도입당시 2022년생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도록 하는 기준에 따라, 실제 2021년생 중 월령이 23개월 이하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보건복지부, 2023b). 즉,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의 경우에는 이전에 출생한 아동에 비해 영아수당을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보육료)뿐 아니라 현금 급여 지원이 크게 강화된 시기에 해당하는 아동들이다.

〈표 VIII-1-2〉 영아수당 및 부모 급여 지원 내용

구분	영아 수당 (2022년 기준)	부모 급여 (2023년 기준)
시행시기	2022년 1월~2022년 12월	2023년 1월 이후 시행 중
지급 대상	'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 아동(0~23개월)	
지급 방식 및 지급 금액	-현금 : 수급아동 1인당 월 30만원 -보육료 : 보육료 전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 정부지원금 전액	- 현금 : 0세 70만원, 1세 35만원 - 보육료 : 보육료 전액 (단, 0세의 경우 보육료 전액 514,000원 + 현금 186,000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 정부지원금 전액

주: 이 장의 심층 분석은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을 활용하므로, 부모급여는 2023년도 지원 기준만 제시함.
2024년 부모급여 지원액은 0세 (현금) 100만원, 1세 (현금) 50만원 등으로 증액됨(보건복지부, 2024).
자료: 1) 보건복지부(2022). 2022년 영아수당 사업안내. pp.3~8.
2) 보건복지부(2023b).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pp.3~8.

이 장에서는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을 활용하여, 영유아 가구가 보육료가 아닌 현금 급여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나아가 현금 급여의 증가가 실제 지원 대상 아동의 양육비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2. 분석 자료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의 본조사(영유아 가구) 자료 중 2021년생부터 2023년생까지의 자료이다. 부모급여 및 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의 월별 수급 여부는 가구 설문에서 아동별로 조사가 된 문항으로, 해당 자료는 아동 단위로 자료를 변환한 것임을 밝혀둔다. 한편, 분석 대상을 2021년부터 2023년으로 제한한 이유는 영아와 유아의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보육연령 기준 2세 이상(2020년 이전 출생아)과 2세 미만(2021년 이후 출생아)을 비교 집단으로 분석할 경우 연령 효과가 크게 발생하여 엄밀한 의미에서 정책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아래 제시된 바와 같이 2023년 기준 자료를 활용할 경우 2021년 이후 출생아 사이에서도 월령에 따라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지원액 등이 섞여 있어, 정책 도입의 효과를 보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아동 관련 주요 급여 수급 여부를 월별로 조사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데이터가 수집된 마지막 월인 2023년 4월 기준 수급 여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음을 밝혀둔다. 통상 어린이집 이용 시작 시기는 아동의 월령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 입학시기인 3월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견되기 때문에(최효미 외, 2023: 196), 4월 자료를 활용할 경우 가장 안정적으로 정책 도입의 효과를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자료에는 2023년 5월생~7월생 30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부모급여 수급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분석 자료에서 제외하였음을 주지하는 바이다.

해당 자료 기준 아동 월령별로 수급 가능 급여와 급여 종류별 수급액을 정리하면 <표 VIII-2-1>과 같다. 먼저 2023년 4월 기준 부모급여는 아동의 월령이 23개월 이하라 하더라도, 2022년 이후 출생아까지만 지원하였으므로, 2021년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1년생은 다시 월령에 따라 12~23개월인 경우(2021년 5월생~12월생)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액이 15만원이며, 24개월 이상인 경우(2021년 1월생~4월생)는 가정양육수당 수급액이 10만원이었다. 한편, 2021년생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생월과 무관하게 모두 1세반으로 보육료 지원금(46만2천원)이 동일하며, 현금 수급액은 0원이다. 2023년 4월 기준 2022년생 이후 출생아는 모두 부모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되며,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모두 0세반 보육료(51만4천원)를 지원받는다. 다만, 2022년생의 경우 출생월(월령)에 따라 부모급여 종류와 현금 수급액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먼저 2022년 1월생~4월생(월령 기준 12~15개월)인 경우에는 1세 부모급여 수급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현금 35만원을 지원받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금이 부모급여액보다 크기 때문에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되 현금 지원액은 0원이다. 반면, 2022년 4월생~12월생(월령 기준 4~11개월)은 0세 부모급여 수급 대상으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70만원의 현금을 지원받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0세반 보육료(51만4천원) 지원금을 제외한 18만6천원을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2023년은 1월생~4월생(월령 기준 1~3개월)까지만 분석 대상에 포함되며, 2022년 4월생~12월생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경우는 현금 70만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는 0세반 보육료(51만4천원)와 현금 18만6천원을 지원받는다. 한편, 0세 부모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더라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전액으로 현금 지원액이 0원이다.

〈표 VIII-2-1〉 2023년 4월 기준 출생연도별 수급 급여 종류

단위 : 천원

출생연도	출생월	2023년 4월 기준 월령	급여 종류 1	어린이집 이용여부	현금 수급액
2021년	1~4월	24~27개월	보육료(1세반)	○	0
			가정양육수당(24~36개월)	×	100
2021년	5~12월	16~23개월	보육료(1세반)	○	0
			가정양육수당(12~23개월)	×	150
2022년	1~4월	12~15개월	1세 부모급여_현금	○	350
			1세 부모급여_보육료(0세반)	×	0
2022년	5~12월	4~11개월	0세 부모급여_현금	○	700
			0세 부모급여_보육료(0세반)+현금	×	186
2023년	1~4월	0~3개월	0세 부모급여_현금	○	700
			0세 부모급여_보육료(0세반)+현금	×	186

주: 1) 2023년 5~7월생이 30명 조사되었으나,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지원금 수급여부를 질문하여 응답률이 없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2) 현금수급액은 영유아 가구가 보육료 바우처가 아닌 현금을 수급한 금액을 의미함. 2023년 4월 기준 1세 보육료는 452천원, 0세 보육료는 514천원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분석에 활용된 관측치는 786명으로, 부모급여 수급 대상인 2022년 이후 출생아가 443명, 부모급여 비수급가구인 2021년생이 343명이었다. 먼저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2022년 이후 출생아 가구의 겨우 월평균 566만원으로, 부모급여 비수급 가구의 가구소득 556만원에 비해 평균 10만원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자녀수의 분포를 부모급여 수급 대상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맞벌이 비중 또한 2021년생 영아가 있는 가구가 외벌이 비중이 약간 높긴 하나 큰 차이는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부모의 연령이 2021년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40세 이상의 비중이 각 19.0%, 32.9%로, 2022년생 이후 자녀가 있는 가구(10.6%, 23.9%)에 비해 다소 높은 특징이 있었다. 부모의 학력 수준은 부모급여 수급 대상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지역규모에 따른 비중 또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VII-2-2〉 응답 가구 특성 (기초 통계량)

단위: %, 명, 만원

구분		전체		부모급여수급가구 (2022~2023년생)		부모급여 비수급가구 (2021년생)	
		%	(수)	%	(수)	%	(수)
총계		100.0	(786)	100.0	(443)	100.0	(343)
가구소득	299만원이하	1.7	(13)	0.7	(3)	2.9	(10)
	300~399만원	15.4	(121)	14.5	(64)	16.6	(57)
	400~499만원	29.1	(229)	31.8	(141)	25.7	(88)
	500~599만원	22.7	(178)	22.4	(99)	23.0	(79)
	600만원 이상	31.2	(245)	30.7	(136)	31.8	(109)
월평균 가구소득 (만원)		561.6		566.0		556.0	
총 가구원 수	3명이하	37.4	(294)	38.8	(172)	35.6	(122)
	4명	44.7	(351)	43.8	(194)	45.8	(157)
	5명이상	17.9	(141)	17.4	(77)	18.7	(64)
맞벌이 여부	외벌이 가구	59.4	(467)	58.5	(259)	60.6	(208)
	맞벌이 가구	40.6	(319)	41.5	(184)	39.4	(135)
모(여성) 연령	29세이하	8.7	(68)	9.0	(40)	8.2	(28)
	30~39세	77.1	(606)	80.4	(356)	72.9	(250)
	40세 이상	14.3	(112)	10.6	(47)	19.0	(65)
부(남성) 연령	29세이하	3.4	(27)	4.1	(18)	2.6	(9)
	30~39세	68.7	(540)	72.0	(319)	64.4	(221)
	40세 이상	27.9	(219)	23.9	(106)	32.9	(113)
모(여성) 학력	고졸이하	17.5	(132)	18.7	(83)	14.3	(49)
	대졸	80.5	(607)	75.2	(333)	79.9	(274)
	대학원 이상	2.0	(47)	6.1	(27)	5.8	(20)
부(남성) 학력	고졸이하	15.1	(119)	16.9	(75)	12.8	(44)
	대졸	77.4	(608)	75.2	(333)	80.2	(275)
	대학원 이상	7.5	(59)	7.9	(35)	7.0	(24)
지역규모	대도시	40.1	(315)	39.7	(176)	40.5	(139)
	중소도시	46.7	(367)	47.4	(210)	45.8	(157)
	읍/면지역	13.2	(104)	12.9	(57)	13.7	(4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분석 대상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아가 52.0%로 여아에 비해 다소 많았으며, 아동의 출생연도에 따라서는 2021년생이 343명, 2022년생 317명, 2023년생이 126명이었다. 이 장의 분석 대상은 2023년 4월 기준 지원금 수급 정보를 응답한 2021년생~2023년생이므로, 2023년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를 보인다. 그러나, 실제 분석에서는 아동의 월령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므로, 급여 효과를 측정하는데 있어 큰 문제를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현금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즉 부모급여에서 바우처가 아닌 현금을 선택한 경우와 가정양육수당 지급자가 402명(51.2%)였으며, 현금 급여 비수급자가 384명(48.9%)로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약간 적긴 하나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급여 종류는 월령을 기준으로 구분된 기준으로, 0세 부모급여 지급자가 323명, 1세 부모급여 지급자 120명이었다. 0세 부모급여 지급자 중에서는 현금을 선택한 경우가 대다수(287명, 36.5%)였으며, 0세 부모급여 지급자 중 현금+바우처를 선택한 경우가 36명이었다. 한편, 1세 부모급여 지급자의 경우에는 현금을 선택한 경우가 67명, 바우처를 선택한 경우가 53명으로, 현금을 선택한 경우가 약간 많긴 하나 현금과 바우처 선택 비중의 차이가 크게 줄었음으로 알 수 있었다. 반면, 2021년생이 지원받은 어린이집 보육료(1세)와 가정양육수당 지급자 수는 각각 295명과 48명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단, 통상 자녀의 월령이 증가하면서 보육기관 이용 비중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통계량만으로 부모급여가 현금 급여 선택 확률을 증가시켰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표 VII-2-3〉 아동 특성 및 급여 수급(기초 통계량)

단위: %, (명), 만원

구분		전체	
		%	(수)
총계		100.0	(786)
아동성별	남아	52.0	(409)
	여아	48.0	(377)
아동 출생연도	2021년생	43.6	(343)
	2022년생	40.3	(317)
	2023년생	16.0	(126)
현금급여 수급여부	수급자	51.2	(402)
	비수급자	48.9	(384)
월평균 현금 수금액		317.6	
급여 종류	0세 부모급여(현금)	36.5	(287)
	0세 부모급여(현금+바우처)	4.6	(36)
	1세 부모급여(현금)	8.5	(67)
	1세 부모급여(바우처)	6.7	(53)
	어린이집 보육료	37.5	(295)
	가정양육수당	6.1	(48)

주: 현금 급여 수급자는 0세 부모급여(현금), 1세 부모급여(현금), 가정양육수당 수급자로 구성되며, 실제 현금 수급 여부라기 보다는 어린이집 이용과 가정양육수당 수급자를 구분짓는 기준임. 즉, 0세 부모급여 수급자 중 현금+바우처 수급자는 실제 현금 급여 수금액이 일부 있긴 하나, 현금급여 비수급자로 분류되므로 주의를 요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월평균 양육비용은 전체 분석 대상 기준 66만6천원이었으며, 2022년 이후 아동의 양육비용은 월평균 67만4천원, 2021년생 아동의 양육비용은 65만7천원으로, 2022년생 이후 아동의 양육비용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비목별 아동 당 양육비용을 살펴보면, 교육보육비를 제외한 모든 비목에서 2022년생 이후 출생아의 양육비용이 2021년생의 양육비용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경우 식비의 비중이 가장 높아서 월평균 17만7천원이 아동의 식비로 지출되고 있었는데, 2022년 이후 아동의 경우 18만3천원, 2021년생은 17만원으로 2022년 이후 아동이 식비 지출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22년 아동의 경우 분유 및 이유식 섭취 등이 필요한 시기의 영아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VII-2-4〉 월평균 양육비용 및 비목별 비중 비교(2023년, 명목비용)

단위: 만원, (%), (가구)

구분	전체		부모급여 수급가구 (2022~2023년생)		부모급여 비수급가구 (2021년생)	
	비용	비목별 비중	비용	비목별 비중	비용	비목별 비중
총계	66.6	(100.0)	67.4	(100.0)	65.7	(100.0)
1. 식비 (외식비 포함)	17.7	(26.6)	18.3	(27.2)	17.0	(25.9)
1-1. 외식비	2.5	(3.8)	1.5	(2.2)	3.6	(5.5)
3. 기기/집기	2.1	(3.2)	2.5	(3.7)	1.4	(2.1)
4. 피복비	7.8	(11.7)	8.0	(11.9)	7.5	(11.4)
5. 보건/의료비	5.8	(8.7)	5.9	(8.8)	5.6	(8.5)
6. 교육/보육비	8.4	(12.6)	6.7	(9.9)	10.7	(16.3)
7. 여가 및 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10.0	(15.0)	10.1	(15.0)	9.9	(15.1)
7-1. 가족여행 등	5.3	(8.0)	5.2	(7.7)	5.4	(8.2)
7-2. 관람, 체험학습	0.7	(1.1)	0.3	(0.4)	1.1	(1.7)
7-3. 완구	3.0	(4.5)	2.8	(4.2)	3.3	(5.0)
7-4. 도서구매	2.0	(3.0)	1.4	(2.1)	2.7	(4.1)
8. 교통비	0.3	(0.5)	0.3	(0.4)	0.4	(0.6)
9. 통신비	0.0	(0.0)	0.0	(0.0)	0.1	(0.2)
10. 개인유지비 (생필품 포함)	7.1	(10.7)	8.4	(12.5)	5.4	(8.2)
11-2. 보험	7.4	(11.1)	7.2	(10.7)	7.7	(11.7)
N	(786)		(443)		(343)	

주: 1) 'KICCE 소비실태조사' 연구에서 생활비 지출액은 식비, 주거/관리비, 기기/집기,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및문화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개인유지비, 금융상품 중 보험, 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기타 상품 및 서비스로 구성됨. (비목 앞의 숫자는 단순히 설문지 상의 비목 분류 코드를 의미함)

2) 세부 비목은 비목 내 일부 품목에 대한 생활비 지출을 별도로 질문한 것으로, 비목의 평균이 세부 비목의 합계값과 동일하지 않음.

3) 비목별 비중은 (비목별 평균값/ 전체 지출액 평균) *100으로 산출한 값으로, 가구별로 비목별 비중을 산출하여 평균한 값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3. 부모급여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친 요인

이 절에서는 현금 급여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현금 급여 수급자란, 0세 부모급여(현금), 1세 부모급여(현금), 가정양육수당 수급자를 지칭한다. 즉, 실제 현금 급여의 수급액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라기 보다는 보육기관 이용 여부(혹은 가정양육 선택 여부)에 따른 구분점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0세 부모급여 수급자 중 현금+바우처 수급자는 실제 현금 급여 수급액이 일부 있긴 하나, 현금 급여 비수급자로 분류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즉, 이 분석에서 현금 급여 수급 여부는 가정 양육을 선택하는 확률을 대리하고 있는 변수라 하겠다. 부모급여의 도입은 영아기 기관 이용 여부에 따른 정부 지원금의 급여액 차이를 없앤 제도적 변화로, 영아기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이전에 비해 크게 확대한 정책적 변화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급여 등 급여 종류 선택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어떠한 서비스를 선택하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액이 동일한 상황에서, 영아기 가정양육에 대한 선호 및 서비스가 아닌 현금 급여를 선택하게 되는 요인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전체 분석 대상 기준 현금 급여 수급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맞벌이 가구 여부와 가구소득, 중소도시 거주 여부, 아동의 월령 등이었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에 비해 가정양육 확률이 낮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정양육 확률도 10% 유의수준에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오히려 현금 급여를 수급(가정양육)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월령이 높을수록 가정 양육 확률이 낮았다.

그러나, 분석 대상을 부모급여 지원 대상인 2022년생 이후만을 남겨서 동일한 분석을 실시한 경우, 맞벌이 여부와 아동의 월령만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보육기관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급여 수급 총액은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맞벌이 가구들은 외벌이 가구에 비해 어린이집을 이용할 확률이 높았으며, 아동의 월령이 높을수록 어린이집에 다닐 확률이 높아졌다. 이 외에 다른 가구 특성과 아동 특성은 기관 선택 여부에 그다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한 발견이라 하겠다.

반면, 부모급여 지원 대상이 아닌 2021년생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약간 다른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2021년생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에 비해 실제 수급액(지원금)이 많긴 하나 현금 급여는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즉,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금에 적은 금액이긴 하나 실질적으로 현금 급여를 지원받는 경우로, 지원금의 차등이 있는 상황에서 바우처가 아닌 현금에 대한 영유아 가구의 선호를 보다 잘 고찰할 수 있는 분석 대상이라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가구소득, 모연령, 중소도시 거주 여부, 아동의 월령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으며, 부모급여 지원 대상들과는 달리 맞벌이 여부에 따른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정양육을 선택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오히려 모 연령이 많을수록 가정양육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가정양육 비중이 낮았다. 한편, 아동의 월령은 부모급여 지원 대상과 마찬가지로 월령이 높을수록 기관 이용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Ⅷ-3-1〉 현금 급여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친 요인 : logit

구분		전체	2022~2023년생	2021년생
맞벌이 여부(=1)		-0.771***	-0.844***	-0.423
가구소득		-0.001*	-0.000	-0.004***
총 가구원 수		-0.128	-0.036	-0.166
모 연령		0.054	0.035	0.119*
부 연령		-0.027	-0.011	-0.074
모학력	대졸이상	0.257	0.103	0.730
	대학원 이상	0.415	0.888	0.373
부학력	대졸이상	-0.357	-0.240	-0.282
	대학원 이상	-0.390	-0.854	0.686
지역구 모	중소도시	-0.496**	-0.354	-0.788**
	읍면지역	-0.423	-0.629	-0.037
아동 성별		0.153	0.207	0.094
아동 월령		-0.267***	-0.238***	-0.217***
상수		4.236***	3.472**	3.831*
N		(786)	(443)	(343)

주: 2021년생의 경우 현금수급은 가정양육수당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 $p < .1$, ** $p < .05$, *** $p < .01$.

한편, 2022년생 이후 출생아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부모급여의 종류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해 보았다. 부모급여의 종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동일한 제도 안에서도 월령에 따른 수급액의 차이와 바우처보다는 현금을 선호하는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0세 부모급여(현금)을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아동의 월령 단 하나의 변수로, 아동의 월령이 높을수록 0세 부모급여(현금)을 선택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0세 부모급여(현금+바우처)의 경우에는 가구특성이나 아동 특성 중 어떤 변인도 유의미한 영향을 가진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즉, 0세 부모급여 지원 대상의 경우 어떤 형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급액이 전혀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는 급여 종류 선택에 있어 일정한 패턴이 발견되지 않고 자유로운 선택이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1세 부모급여(현금)을 선택 확률에는 맞벌이 가구 여부, 부의 학력(대학원 이상), 중소도시 거주여부, 아동의 월령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세 부모급여(바우처)의 경우에는 맞벌이 여부, 중소도시 거주여부, 아동의 월령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VIII-3-2〉 부모 급여 종류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 : logit, 2022~2023년생

구분	0세 부모급여 (현금)	0세 부모급여 (현금+바우처)	1세 부모급여 (현금)	1세 부모급여 (바우처)
맞벌이 여부(=1)	0.294	0.457	-2.155***	1.820***
가구소득	0.001	-0.000	-0.001	0.000
총 가구원 수	-0.090	0.198	0.185	-0.270
모 연령	0.019	-0.047	-0.014	-0.085
부 연령	0.036	0.011	-0.024	0.083
모학력	대졸이상	-0.235	0.043	0.466
	대학원 이상	0.703	-1.362	
부학력	대졸이상	0.236	0.214	0.132
	대학원 이상	0.122	0.751	-1.981*
지역구 모	중소도시	0.465	-0.308	-1.087**
	읍면지역	-0.193	0.755	-0.445
아동 성별	0.515	-0.601	-0.551	0.179
아동 월령	-0.527***	-0.047	0.663***	0.970***
상수	2.526	-1.114	-6.372***	-15.095***
N	(443)	(443)	(416)	(443)

주: 1세 부모급여(현금) 수급자 중 모학력이 대학원이상인 경우가 없어, 계수 값이 추정되지 않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3' 원자료.

* $p < .1$, ** $p < .05$, *** $p < .01$.

4. 부모급여 수급이 아동 당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

이 장에서는 부모급여 수급이 아동 당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전체 아동 당 양육비용을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 모형의 결과를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 여부, 가구소득, 총 가구원 수, 부모 학력, 아동 월령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양육비용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분석 결과로, 외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가, 가구소득이 높고, 부모 학력수준이 높은 경우, 아동 월령이 많을수록 아동 당 양육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된다. 한편, 총 가구원 수(자녀수)가 많을수록 아동 한명당 투입되는 양육비용은 유의미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심층 분석이 주로 관심을 갖는 변수인 현금 급여의 효과와 관련된 변수는 현금 급여 수급 여부를 투입한 모형1, 현금 급여 수급액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형2, 급여 종류를 구분하여 투입한 모형 3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서 모형 1의 현금 급여 수급 여부가 1인 경우는 0세 부모급여(현금), 1세 부모급여(현금),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는 경우이며, 모형2의 현금 급여 수급액이 독립변수로 투입된 경우에는 앞서 <표 VIII-2-1>의 현금 수급액을 의미한다. 한편, 모형 3의 급여 종류는 각각이 터미변수로 베이스 값은 가정양육수당 수급 여부이다.

분석 결과, 부모급여 지원은 아동 당 양육비용에는 그다지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금 급여를 지원받은 경우와 어린이집 이용자(보육료 지원)의 경우 아동 당 양육비용은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금 급여액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형2에서도 유의미한 효과를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급여 종류를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형3에서 0세 부모급여(현금)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발견되었다. 즉, 2023년 도입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은 0세 아동(2022년 5월생~ 2023년 4월생) 중 전액 현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른 급여를 지원받은 경우에 비해 아동 당 양육비용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수당의 효과성을 분석한 최효미 외(2023)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로, 현금 지원이 증가하면 아동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영유아 가구의 특성이 잘 반영된 결과라 사료된다.

한편, 지면 관계상 분석 결과를 보고하지는 않았으나, 출생연도 및 월령별로 집단을 구분하여 동일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 현금 급여 수급 여부, 현금 급여 수급액 뿐 아니라 급여 종류에 따른 차이까지 모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표 VIII-4-1〉 부모급여 수급이 아동 당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 : 전체, OLS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맞벌이 여부(=1)		6.527**	6.639**	6.138**
가구소득		0.065***	0.065***	0.064***
총 가구원 수		-15.343***	-15.337***	-15.537***
모 연령		0.053	0.046	0.111
부 연령		-0.546	-0.557	-0.602
모학력	대졸이상	0.306	2.224	2.610
	대학원 이상	6.596***	6.429***	7.229***
부학력	대졸이상	2.928	3.035	2.958
	대학원 이상	14.431**	14.643**	14.552**
지역구 모	중소도시	-0.552	-0.522	-1.085
	읍면지역	0.136	0.182	0.173
아동 성별		-2.324	-2.442	-2.489
아동 월령		0.382*	0.644**	0.912**
현금 급여 수급 여부		-0.297		
현금 급여 수급액			0.008	
급여 종류	0세 부모급여(현금)			16.593*
	0세 부모급여(현금+바우처)			11.687
	1세 부모급여(현금)			11.331
	1세 부모급여(바우처)			12.739
	어린이집 보육료			6.723
상수		66.063***	60.485***	48.468***
N		786	786	786

주: 1) (=1)은 더미변수의 기준 값이며, 설명 변수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는 연속 변수임.

2) 급여종류의 기준값은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경우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 $p < .1$, ** $p < .05$, *** $p < .01$.

한편, 종속변수를 비목별 아동 당 양육비용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VIII-4-2〉와 같다. 각 비목별로 가구특성이 미치는 영향이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긴 하지만 보고서 가독성을 위해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므로, 표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 연구에서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변수인 정책효과 관련 변수는 편의상 앞서 전체 아동 당 양육비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급여 종류를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식비의 경우에는 0세 부모급여(현금), 1세 부모급여(현금), 1세 부모급여(바우처)인 경우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발견되었다. 이때, 급여 종류의 베이스 값은 가정양육수당으로, 가정양육수당 수급자는 같은 현금 수당을 수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아동의 월령이 부모급여 수급자에 비해 많은 경우임을 의미하는데, 통상 아동 월령이 많을수록 식비가 더 많이 지출되는 현상을 감안할 때, 주목할만한 변화라 볼 수 있다. 다만, 이 시기 분유 및 이유식 섭취로 인한 식비의 증가가 있을 수 있으나, 분석 대상의 아동의 연령이 모두 이유식기에 해당하는 월령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부모급여로 인한 급여액의 상승이 식비의 증가를 유인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기기/집기의 경우 1세 부모급여(바우처)를 수급하는 경우 음의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었다. 1세 부모급여 수급자는 2022년 1월생~4월생으로, 월령이 12~15개월인 아동들로, 이 시기 아동들의 기기/집기 양육비용이 그 외 아동의 기기/집기 양육비용에 비해 낮음을 의미한다. 이는 영아기 기기/집기의 구매가 신생아 시기(12개월 이하)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에 기인한 결과로 보여진다(최효미 외, 2024b).

반면, 피복비의 경우에는 0-1세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가 다른 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기 때문에 외출복 뿐 아니라 갈아입어야 하는 의복의 추가 구매 등으로 인한 필요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특이한 점은 교통비의 경우로, 1세 부모급여(현금)를 받는 경우가 다른 경우에 비해 교통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0세에 비해 1세의 경우 바깥 활동이 많아 현금 수급, 즉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아동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택시비 등의 교통비 지출액이 많아져서 생긴 현상으로 추측된다. 1세 이하의 아동을 동반하여 교통비 면제가 적용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이 연령의 아동을 동반하는 경우 자가용 이용 혹은 택시 이용이 보다 많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개인유지비(기저귀, 목욕용품, 이발 비용 등을 포함)의 경우 0세 부모급여(현금), 0세 부모급여(현금+바우처), 1세 부모급여(바우처)를 수급하는 경우 10% 유의수준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양육비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KICCE 소비실태조사’의 개인유지비용에는 기저귀 구매비용, 목욕용품 구매비용, 이발 비용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은 급여 종류에 따른 효과라기보다는 기저귀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집단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사료된다.

이 외에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문화생활비, 통신비, 보험료 등은 급여 종류에 따른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VIII-4-2〉 부모급여 수급이 비목별 아동 당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 : 전체, OLS

구분	식비	기거/집기	피복비	보건 의료비	교육 보육비	여가문화 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개인 유지비	보험료
맞벌이(여부=1)	2.237 **	1.362	-0.501	-1.013	4.426 ***	-0.027	-0.088	-0.056 *	-0.429	0.704 *
가구소득	0.008 ***	0.002	0.006 ***	0.006 ***	0.025 ***	0.006 **	0.001 **	0.000	0.002 *	0.001
총 가구원 수	-2.941 ***	-0.968 *	-1.982 ***	-1.138 *	-2.349 **	-3.550 ***	0.005	0.054 **	-1.367 ***	-0.781 ***
모 연령	0.168	-0.015	-0.055	0.029	-0.108	-0.107	-0.012	-0.001	0.067	-0.009
부 연령	-0.107	-0.187	-0.052	0.001	-0.020	-0.019	0.001	0.002	-0.011	0.006
대졸이상	-2.534 *	1.317	0.102	0.613	2.614	0.345	0.320	0.020	0.168	-0.847
대학원이상	-2.794	8.882 ***	0.032	-1.445	2.342 ***	0.079	0.180	-0.024	-0.415	-2.354 **
대졸이상	0.028	-0.351	0.553	-0.677	2.384	-0.454	0.173	0.030	0.290	0.330
대학원이상	-0.770	0.981	2.111 *	2.546	8.143 **	2.753	-0.042	-0.013	-0.172	0.519
중소도시	-0.484	0.236	0.552	0.034	-0.353	0.290	-0.030	-0.023	0.418	0.108
읍면지역	0.438	1.842	0.537	0.259	-2.799	-0.439	-0.020	-0.044	-0.223	0.711
아동 성별	0.060	-0.784	0.256	-0.756	-1.790	2.196 **	0.218 *	0.005	0.584	-0.099
아동 월령	0.325 ***	-0.170	-0.041	-0.093	0.396 *	-0.136	0.029	-0.007	-0.028	0.027
0세 부모급여(현금)	5.579 **	-3.613	1.085	0.590	3.692	-0.913	0.486	-0.077	2.683 *	0.830
0세 부모급여(현금+바우처)	3.615	-3.130	1.041	1.293	-0.337	-0.303	0.445	-0.087	3.011 *	0.055
1세 부모급여(현금)	4.765 **	-3.046	2.000	1.471	-0.151	0.299	0.732 *	-0.061	1.463	0.542
1세 부모급여(바우처)	3.635 *	-4.476 *	1.198	3.679	2.200	-0.954	0.180	-0.038	2.257 *	-0.024
0-1세 어린이집 보험료	-0.760	-2.303	1.830 *	2.648	1.393	0.906	0.197	0.065	-0.052	1.022
상수	10.789 **	13.377 ***	10.078 ***	3.472	-9.340	19.193 ***	-0.918	-0.063	4.962 *	7.246 ***
N	786	786	786	786	786	786	786	786	786	786

주: 1)

2) 급여 종류는 기준 값인 가정양육수당 수급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 $p < .1$, ** $p < .05$, *** $p < .01$.

5. 소결

Ⅷ장은 현금 급여 선택 요인과 부모급여가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심층 분석 결과이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의 본조사(영유아 가구) 자료 중 2021년생부터 2023년까지의 자료이며, 급여 수급 시점은 2023년 4월 기준이다. 따라서, 2023년 5월 이후 출생아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관측치는 786명으로, 부모급여 수급 대상인 2022년 이후 출생아가 443명, 부모급여 비수급가구인 2021년생이 343명이었다. 부모급여 수급과 관련된 심층 분석은 먼저 현금 급여 선택 요인에 대한 분석과 부모급여가 영유아의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에 관한 분석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현금 급여 선택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 현금 급여 수급 여부는 가정 양육을 선택하는 확률을 대리하고 있는 변수라 볼 수 있다. 첫째, 전체 분석 대상 기준 현금 급여 수급 선택 요인에 관한 분석 결과,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에 비해 가정양육 확률이 낮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정양육 확률도 10% 유의수준에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오히려 현금 급여를 수급(가정양육)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월령이 높을수록 가정 양육 확률이 낮았다.

둘째, 분석 대상을 부모급여 지원 대상인 2022년생 이후만을 남겨서 동일한 분석을 실시한 경우, 맞벌이 여부와 아동의 월령만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외에 다른 가구 특성과 아동 특성은 기관 선택 여부에 그다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셋째, 부모급여 지원 대상이 아닌 2021년생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전혀 다른 경향성을 보이는데, 가구소득, 모연령, 중소도시 거주 여부, 아동의 월령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으며, 부모급여 지원 대상들과는 달리 맞벌이 여부에 따른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2021년생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가정양육에 비해 실제 수급액(지원금)이 많긴 하나 현금 급여는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한편, 부모급여 수급이 아동 당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당 양육비용은 외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가,

가구소득이 높고, 부모 학력수준이 높은 경우, 아동 월령이 많을수록 아동 당 양육 비용이 증가하였다. 한편, 총 가구원 수(자녀수)가 많을수록 아동 한 명당 투입되는 양육비용은 유의미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발견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둘째, 이 심층 분석의 주요 관심 내용인 부모급여 지원이 아동 당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은 그다지 유의미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독립변수를 현금 급여 수급여부와 현금 급여액으로 설정한 모형1과 모형2 모두에서 정책 변화는 아동 당 양육비용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급여 종류를 독립 변수로 투입한 모형3에서 0세 부모급여(현금)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발견되었다. 즉, 2023년 도입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은 0세 아동(2022년 5월생~2023년 4월생) 중 전액 현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른 급여를 지원받은 경우에 비해 아동 당 양육비용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종속변수를 비록별 아동 당 양육비용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몇 가지 발견되었다. 식비의 경우에는 0세 부모급여(현금), 1세 부모급여(현금), 1세 부모급여(바우처)인 경우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발견되었다. 즉, 부모급여로 인한 급여액의 상승이 식비의 증가를 유인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기기/집기의 경우 1세 부모급여(바우처)를 수급하는 경우 음이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었으며, 피복비의 경우에는 0-1세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가 다른 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비는 1세 부모급여(현금)를 받는 경우가 다른 경우에 비해 교통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유지비(기저귀, 목욕용품, 이발 비용 등을 포함)의 경우 0세 부모급여(현금), 0세 부모급여(현금+바우처), 1세 부모급여(바우처)를 수급하는 경우에 10% 유의수준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양육비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외에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문화생활비, 통신비, 보험료 등은 급여 종류에 따른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PartIV

결론 및 제언

IV

결론 및 제언

- 01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정책
- 02 아동 권리 보장에 초점을 둔 비용 지원 체계 정비
- 03 육아시간 지원 제도 확대
- 04 저출생 대응 정책의 실효성 제고

IX. 결론 및 제언

1.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정책

가. 필수 육아용품에 대한 물가 관리 필요

2023년(6차년도) 영유아 가구의 가계 경제와 양육비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파른 물가 상승에 따른 양육비용 부담이 가장 특징적이라 볼 수 있다. 2023년(6차년도)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 총액은 명목비용 기준 377만5천원으로, 2018년(1차년도) 조사 당시 311만9천원에 비해 65만6천원이 상승하였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비용의 경우 2018년 315만8천원에서 2023년 339만5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2022년 대비 월평균 생활비 지출은 명목비용 기준 13만5천원이 상승하였으나, 실질비용 기준 3만원이 상승한 것에 그쳤다. 즉, 영유아 가구들이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해서 훨씬 높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때, 영유아 가구의 가구당 양육비용 지출(실질비용)은 2018년 116만6천원에서 2023년 135만4천원까지 증가해 18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2022년(127만3천원) 대비로도 8만1천원이 증가하였다. 즉, 영유아 가구의 실질 생활비 지출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상황인데 반해, 양육비용은 크게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양육비용이 가구 생활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엔젤지수의 변화 추세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1차년도(2018년)에 29.1였으나, 2차년도(2019년)도부터 5차년도(2022년)까지는 전반적으로 26.5~27.2 사이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6차년도(2023년) 29.0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가구들이 2023년도에 전년 대비 양육비용 지출이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양육비용의 증가가 추가적인 투입-더 많은 물품을 구입하거나 더 비싼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에 따른 것인지, 육아용품의 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를 상회하기 때문인지는 KICCE 소비실태조사 자료만으로는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다만, 동 기간 중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명목비용 기준 2023년 560만1천원으로 2018년 462만9천원에 비해 97만2천원이 상승하였으나, 실질비용 기준 2023년 503만8천원, 2018년 468만7천원으로 35만1천원이 상승한 것에 그쳤다. 무엇보다 실질비용을 기준으로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2020년 528만6천원이었으나, 2021년 511만2천원, 2022년 500만5천원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2023년 소폭 상승하긴 했으나, 여전히 2020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영유아 가구의 2023년 생활비 지출의 증가는 양육비용의 증가에 기인한 부분이 크며, 실질 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육비용 지출이 커졌다는 점은 양육비용과 관련된 물품 및 서비스의 물가가 상승한 것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된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연간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기준)는 2018년 99.086, 2019년 99.466, 2020년 100, 2021년 102.50, 2022년 107.72, 2023년 111.59로 최근 물가상승폭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통계청 KOSIS¹⁰⁸).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의 대표 품목은 12개 부문에 걸쳐 총 458개 대표품목으로 이뤄져 있는데(통계청 KOSIS¹⁰⁹), 이 중 육아용품은 0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부문에 분유와 이유식, 03. 의류 및 신발류 부문에 유아동복과 아동화, 06. 보건 부문에 종이기저귀, 09. 오락 및 문화 부문에 장난감과 유아용 학습교재, 10. 교육부문에 유치원 납입금, 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부문에 유모차와 산후조리원 이용료, 보육 시설이용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대표 품목에 포함된 육아용품 및 육아서비스의 소비자물가지수는 <표 IX-1-1>과 같다.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23년에 분유(109.21), 유아동복(113.96), 아동화(107.42), 종이기저귀(115.57) 유아용학습지(107.90), 산후조리원비(111.26)의 소비자물가가 크게 상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유치원 납입금(69.39), 보육시설 이용료(96.78) 등은 유아학비 상한율 및 보육료 상한제 등이 적용되어, 오히려 물가가 하락한 품목에 해당하였다. 이 외에도 식품이나 생필품의

108)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2024.09, 2024.10.17., 소비자물가지수(2020=10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22003&conn_path=I2 (인출일: 2024. 10. 10.).

109) 통계청, CPI소비자물가지수, 이해, 소비자물가지수 알아보기, 대표품목,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458개 대표품목 다운로드, <https://kostat.go.kr/menu.es?mid=b70101020000> (인출일: 2024. 10. 10.).

경우에는 성인과 아동이 함께 사용하는 물품들이므로, 아동 양육비용에 관한 대표적인 품목들은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최근 크게 상승한 현상이 포착된다. 즉, 최근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의 상승은 소비자물가 상승과 상당부분 맞닿아 있다고 사료된다.

〈표 IX-1-1〉 소비자물가지수 대표 품목 : 육아물품 및 서비스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분유	97.990	97.751	100.00	100.90	102.27	109.21
이유식	91.736	97.821	100.00	100.00	100.15	100.00
유아동복	103.436	101.963	100.00	98.99	102.73	113.96
아동화	94.091	97.538	100.00	100.00	100.53	107.42
종이거저귀	91.713	93.438	100.00	103.82	106.98	115.57
장난감	99.485	99.384	100.00	99.19	99.38	100.74
유아용학습지	98.334	98.358	100.00	100.31	100.32	107.90
유치원납입금	104.913	104.762	100.00	92.25	76.97	69.39
유모차	106.535	104.484	100.00	95.78	101.87	103.51
산후조리원비	96.880	98.627	100.00	101.97	105.88	111.26
보육시설이용료	107.060	102.838	100.00	99.49	99.34	96.78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2024.09, 2024.10.17,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품목성질별: 2020=10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22112&conn_path=12 (인출일: 2024. 10. 10.).

결과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소비자물가의 급격한 상승의 영향으로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 **육아 필수재 및 필수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물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특정 품목의 물가가 크게 요동치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해당 품목에 대한 물가 특별 관리를 실시하곤 한다. 육아 물가가 이와 같이 크게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첫째, **육아 필수재에 대한 시급한 물가 관리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육아용품에 대한 물가 조절이 어려운 경우, **저소득 가구 등 취약 가구에 대해서는 육아 필수재(예: 분유, 거저귀 등)를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영유아 가구가 아동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기존에도 저소득층에 대해 분유, 기저귀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 중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상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적인 지원이 아닌, 물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일시적이고 긴급하게 지원이 요구되는 집단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한번 올라간 시장 가격은 다시 이전 수준으로 하향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물가상승이 둔화된다 하더라도 육아용품의 가격이 이전 수준보다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향후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금의 지원 수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 같은 아동 급여는 지원 수준이 고정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유아학비나 보육료는 매해 조금씩 상향되긴 했으나 물가상승률을 하회하는 수준의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아동 급여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일정 정도의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이며, 유아학비나 보육료 또한 서비스 질 관리 측면에서도 현실적인 지원 수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단, 유아학비와 보육료의 경우 부모 지원금 뿐 아니라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에 직접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부모 지원금 및 수익자 부담금)만으로 유아학비나 보육료 지원금의 적정성을 논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과후 과정 지원 강화

비목별 양육비용의 지출(명목비용 기준) 변화를 살펴보면, 2022년 대비 2023년 양육비용이 가장 크게 상승한 비목은 교육·보육비(△9만6천원)였다. 그런데,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비용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어린이집 이용비용(명목비용 기준)은 2018년 월평균 6만6천원에서 2023년 7만6천원으로 1만원이 상승한 것에 그쳤으며, 유치원 이용비용은 2018년 월평균 14만2천원에서 2023년 13만3천원으로 오히려 소폭 하락하였다. 반면,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비용은 2018년 57만2천원에서 2023년 125만1천원으로 2배 이상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¹¹⁰⁾

110) 단, 관측치가 2018년 74개, 2023년 29개에 불과하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됨.

한편, 시간제 교육서비스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단시간 학원이 가장 이용율이 높은 서비스인데, 2018년 15.5%, 2022년 21.9%, 2023년 23.1%로, 코로나19시기를 낮아졌던 이용율이 이후 증가하여, 2023년 크게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방문형 학습지는 2018년 이용율이 15만3천원이었는데, 2023년 12.2%로 소폭 하락하였으며, 그 외 방문형 교구활동이나 비방문 학습지 및 온라인 통신교육, 비방문형 교구활동, 개인 및 그룹지도,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이용율은 5%미만의 낮은 이용율을 보였다. 영유아를 중심으로 많이 이용하는 문화센터의 경우 2018년 이용율이 10.0%였다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0.9%로 급감했다가 이후 점차 회복되면서, 2023년에는 10.4%의 이용율을 보였다.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은 2023년 기준 단시간 학원이 월평균 19만7천원, 방문형 학습지는 월평균 9만3천원, 방문형 교구활동 13만1천원, 개인 및 그룹지도 20만5천원 등이었다. 이러한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은 2018년 이후 대부분의 서비스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즉,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중 교육·보육비가 크게 상승한 현상은 전반적인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중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비용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시간제 사교육 비용이 부담됨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이용하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에서,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쳐질까봐’라는 의견이 매년 30%를 넘으며 가장 많았고,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라는 의견도 매년 26% 이상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한 경우 이용 과목을 살펴보면, 단시간 학원은 체육(62.3%), 미술(34.9%)이 가장 많고 방문형 학습지는 한글(41.7%)과 수학 및 과학(28.6%), 방문형 교구 활동은 수학 및 과학(31.9%) 비방문형 학습지 및 교구활동은 영어(23.9%), 한글(23.9%), 수학 및 과학(23.8%) 등이었다. 즉, 이용하는 시간제 사교육 종류에 따라 이용하는 과목이 차이를 보이는 상황으로, 이용비용이 높은 편인 단시간 학원은 체육과 미술 등 예체능 과목 위주인 경우가 많았다.

2023년 물가의 상승과 더불어 코로나19 종식 이후 증가한 사교육 서비스 이용율의 증가로,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을 감안할 때, 교육·보육비 경감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정부가 사교육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정부가 2023년 6월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교육부 사교육대책팀, 2023. 6: 16~18)에 포함된 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에 따르면, 유아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이음학기 운영 및 영어·예체능 등 맞춤형 방과후 과정 지원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보통합 연계 및 3~5세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등의 계획이 발표되었다. 또한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하고, 유아 영어학원의 편법 운영 근절을 위한 대책이 발표된 바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유·초 연계 이음학기 운영 및 확대와 관련하여 맞춤형 유아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테마형 유치원 지정·운영, 학부모의 다양한 선택 기회를 위해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다양한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방과후 과정 지원비의 단계적 인상 추진 등 예산 지원 확대, 돌봄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방과후 과정 참여 대상 및 운영시간(최소보장시간) 확대 등이 제안되었다. 또, 유보통합과 연계한 중·장기적 지원 방안으로, 거점형 방과후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 등 돌봄 확대와 유보통합 대비 및 2022 초등교육과정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3~5세 교육과정 개정 추진 등이 제안되었다. 이 외에도 유아 사교육비 조사의 추진과 유아 영어학원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학원이 사실상 유치원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유아교육법 개정 추진 등이 제시되었다(교육부 사교육대책팀, 2023. 6: 16~18).

대책이 발표되고 1년여가 지난 시점에 유아 사교육 대책의 이행 정도를 검토해보면, 유·초 연계 이음학기 사업과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은 각 교육청별로 지속적으로 운영, 확대되고 있으며, 방과후 과정 지원비는 2023년부터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월 5만원을,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월 7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5세에 한해 2024년 유아학비를 5만원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유아학비(교육과정비)에서는 방과후 과정비 지급 불가가 원칙이나, 방과후 과정의 교재교구비와 간식비에 대해서는 유아학비 잔액으로 집행 가능하도록 하여(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2024. 2: 13) 방과후 과정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한편, 유보통합과 연계한 거점형 방과후 과정 등은 유보통합 시범사업 내에서 해당 내용이 일부 추진 중에 있으며, 유초 연계성 강화를 위한 3~5세 교육과정 개정은 애초 2025년에 개정·고시 계획이 있어, 2024년 기준 정책연구가 수행 중에 있다.

한편, 유아 사교육비 조사는 2024년 9.30~10.17까지 조사가 실시되었으며(통계청 홈페이지, 유아사교육비조사¹¹¹), 학원이 사실상 유치원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은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다.

즉, 교육부가 2023년 6월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상당부분이 현재 이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상황으로, 이러한 사교육 경감 대책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다만,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은 기본적으로 공보육·교육의 강화와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 이용 감소 유인책으로, 기존의 다양한 공보육·교육 체계의 개선 과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해당 정책의 일차적 목표가 사교육 경감이라기 보다는 양질의 유아교육·보육서비스의 제공에 있다는 점에서 사교육 경감 방안으로서의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영유아기 과도한 사교육 이용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놀이 중심의 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 이용을 줄여가는 방향으로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2. 아동 권리 보장에 초점을 둔 비용 지원 체계 정비

가. 아동 급여 지원 체계 정비 필요

한국에서 현재 시행 중인 아동 급여는 아동 수당과 부모급여를 들 수 있다. 이 외에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가 지원받는 (부모)보육료 및 유아학비와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지원받는 가정양육수당이 대표적인 보편적 비용 지원에 해당하는 지원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제도적 측면에서 아동 급여의 도입에 앞서 영유아기 무상 보육·교육의 실현이 우선적으로 추진된 특징이 있다. 2013년 무상 보육·교육을 위한 제도 도입 당시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감이 높아지며, 저출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높은 교육·보육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부각되면서, 영유아기 보편적 무상 보육·교육 정책은 서비스 지원과 비용이 복합되어 있는 형태, 즉 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111) 통계청, 유아사교육비 조사, <https://survey.k-stat.go.kr/nsb/p2400803.n010001.s020001/main?shortUrl=/icpedu> (인출일: 2024. 10. 11.).

이때, 비용 지원이 기관 이용에 한정됨에 따라, 영유아기 기관 보육의 필요성과 가정양육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었으며, 결과적으로 기관 미이용 영유아에 대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이 함께 도입되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 지원이므로, 아동 급여의 성격이 보다 강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보육료·유아학비와 함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서비스 미이용에 대한 대체재적 성격의 비용 지원이라는 모호한 성격을 갖게 되었다.

한편, 2018년 9월에는 아동수당이 도입되면서 실질적인 아동급여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22년 영아수당과 2023년 부모급여의 도입으로 아동급여제도가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동수당법」 제1조¹¹²⁾에 따르면, 아동수당의 지급 목적은 첫째,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과 둘째,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부모급여 지원 제도 또한 「아동수당법」 제4조에 근거하여 지원이 이뤄지는 아동 급여 제도의 일종이다. 다만, 부모급여는 기존의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부모급여 현금 지급액이 기관 이용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24b). 부모급여 지원의 목적 또한 영아기 양육비용 부담 완화(영아기 집중 투자)에 방점이 있다(보건복지부, 2024b).

요컨대, 한국의 아동 급여 및 보편적 비용 지원 정책의 경우 현금 급여 제도와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지원이 뒤섞여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제도의 일차적 목적은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완화에 초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아동 급여의 경우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또 다른 중요한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는 있으나, 정부가 발표한 대부분의 문건은 아동 급여 지원이 양육비용 부담의 완화, 나아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원임을 암암리에 전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 최근 아동기본법의 재정 등을 비롯하여, 육아지원 제도 설계 시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호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일본은 보다 폭넓은 연령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반해, 영유아기 보육·교육서비스는 필요한 집단(맞벌이 가구 등)에게만 무상으로 지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112) 아동수당법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455호, 2023. 6. 13., 일부개정]

이러한 일본의 육아지원 제도는 단기적으로 정책 효과성이 모호하기는 하나, 일본의 최근 저출생 현상의 둔화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기존의 정책적 기초를 유지하되,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권리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에 좀 더 방점을 둔 관점으로 현재 시행 중인 아동 급여 및 비용 지원 정책을 재검토하여, 일부 제도의 재정비 및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사료된다. 예를 들면, 동일한 아동수당 제도라 할지라도 정책의 목표를 양육비용 부담 완화에 두느냐와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지원 수준과 정책 효과성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1) 가정양육수당의 아동수당으로의 편입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가정양육수당은 그 성격이 매우 모호한 제도로, 제도 본연의 급여적 성격을 고려할 때 **아동 급여 제도로의 흡수 통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부모급여 제도의 경우 24개월 미만 영아에 대한 아동 급여로, 지원 대상 영아는 모두 동일한 지원금을 지원받는다. 물론 보육 서비스(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보미) 이용 여부에 따라 현금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2024년 기준 지원 총액은 동일한 수준이다. 단, 보육료가 부모급여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 대신 현금 지원액은 0원이다. 한편, 2024년 기준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 이상이면서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즉 부모급여 지원 대상이 아니면서 보육료·유아학비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 지원되는 급여이다.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율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0세반 24.9%, 1세반 86.2%, 2세반 92.8%로, 1세반 이후 이용율이 크게 상승함을 알 수 있다(육아정책연구소, 2023: 27). 이때, 0세반은 실제로 2개의 연령(출생코호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월에 따라 일부 부모급여 수급자가 1세반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어린이집 이용율 산출 기준인 각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부모급여 수급자는 모두 0세반에 재원 중이라고 볼 수 있다. 즉, 2024년 12월 기준 23개월 인 아동은 2023년 1월생으로, 이들은 부모급여 수급자이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0세반에 재원 중인 상황이다. 따라서, 현행 부모급여 지원 월령에 속하는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율은 24.9%로, 3/4가량의 가구가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반면, 1세반 이상의 경우 이용율이 80%이상으로 크게 증가하고, 3세 이상의 기관 이용율은 90%가량인 상황(육아정책연구소, 2023: 27)으로, 사실 1세반 이후 가정 양육의 비중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기관 이용율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급여 체계로 편입하기보다는 기존과 같이 보육료·유아학비와 함께 별도의 수당으로 존재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부모급여는 기본적으로 기관 이용여부에 무관하게 동일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가정양육수당을 부모급여에 포함할 경우 24개월이상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지원 수준을 얼마로 할 것인가, 실제로 이 연령에게 지원되는 가정양육수당이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등의 또 다른 논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정양육수당은 실제 성격 자체가 급여의 성격을 갖는 수당임에도, 무상 보육·교육과 맞물려 제도가 도입되면서 제도의 성격과 취지가 모호해진 상태이므로, 아동 급여 제도가 도입된 이래라도 본연의 성격에 맞게 제도를 정비, 조정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가정양육수당을 아동 급여인 아동수당 제도에 편입하되, 아동수당플러스 제도의 신설과 함께 하나의 추가 지원 수당 형태로 지원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2) 아동 당 투입 비용을 고려한 아동수당플러스 제도 신설

앞서 가정양육수당을 아동수당으로의 편입 방식은 기존의 아동수당 체계 내에서의 지원 대상의 변경 등이 아닌 아동수당의 추가적인 급여 지원 형태인 아동수당플러스를 제안하였다. 아동수당플러스는 기본적인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보편 수당 이 외에, 추가적인 금전적 지원을 요하는 아동에 대한 추가지원 수당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의 대상**으로 고려해야하는 집단은 앞서 언급한 가정양육을 하는 영유아 뿐 아니라, **저소득 가구와 다자녀 가구** 등을 들 수 있다.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은 매우 분명하고도 일관되게 관찰되는 현상이다. 저소득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아동들은 가계의 상황으로 다른 아동에 비해 적은 투자 기회를 갖는다. 2023년 기준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60만1천원으로 평균 80만7천원에 20만6천원이 낮은 상황이다.

한편, 가구 내 총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월평균 64만4천원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도 영유아 1인당 투입 비용이 다른 영유아 가구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가구소득 대비 가구당 양육비용의 비중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전체 평균이 28.8%인 가운데,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는 40.4%¹¹³⁾였으며, 총 자녀수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47.8%였다. 즉, 저소득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경우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은 크게 증가하는데 반해, 아동 당 투입 비율은 낮은 상황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아동수당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다수의 국가에서 아동수당 내에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제도를 갖추고 있는 상황으로(최효미, 2024: 27), 특히 **생애 초기 아동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이라는 측면을 생각할 때, 저소득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급여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지원은 기존의 아동수당 급여 지원 체계를 기본 수당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아동수당플러스 제도의 신설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제도의 명료성과 절차적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3)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 검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아동수당의 정책적 목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의 권리 보호의 목적을 갖는다.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육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생애 초기 12개월(0세)을 제외하고는 이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육비용은 대체로 모든 비목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띤다. 그 중에서 영유아기를 포함한 학령기 자녀의 양육비용이 연령 증가에 따라 크게 증가하게 되는 이유는 교육·보육비의 증가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이 연구에서도 영유아 가구에게 자녀 1명을 키우는데 필요한 양육비용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령기(평균 85만3천원)에는 영유아기(80만7천원)와 별반 차이가 없는 금액을 응답했으나, 중고등학령기(141만6천원)에는 1.5배 이상의 양육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아동수당의 연령 상한 확대를 주장하는 경우 주된 이유는 이와 같은 양육비용 부담의 증가를 꼽는다. 즉,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육비용이 증가하는데 반해, 아동수당은 상대적으로 어린 연령의 아동에게만 국한되어 있어,

113) 일시적인 가구소득 감소로 인해 비중이 이상 산출된 경우를 제외한 수치를 인용함.

실제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비단 교육·보육비 뿐 아니라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면 식비를 포함한 대부분의 비목에서 양육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양육비용의 부담 증가와 아동의 실제 소비를 반영한 최소한의 아동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수당의 지원 연령의 상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수당 제도를 운영 중인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동수당의 연령은 청소년기 아동을 포함하고 있다(최효미, 2024: 27).

그런데, 아동수당의 지원 연령 상향 조정을 고려할 때 몇가지 지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이 연구의 전년도 연구인 최효미 외(2023: 201~222)에서는 아동수당이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최효미 외(2023)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영아의 양육비용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 유아의 양육비용은 오히려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아동수당을 받은 만큼 유아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때, 특히 아동수당 지원으로 아동에 대한 투입이 증가된 비목은 교육·보육비로, 영유아기 기관 이용비용(수익자 부담금)은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결국 아동수당 지원이 사교육비의 지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수당 지원이 실질적으로 양육비용 부담을 감소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과도한 사교육을 오히려 조장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양육비용 특히 교육·보육비용의 상승을 아동의 교육 혹은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투자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아동수당의 효과가 반드시 부정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아동수당은 급여의 사용처를 한정하지 않고 아동의 부모의 선택에 맡기는 지원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비용의 경감 목적보다는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식의 지원 제도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수당을 받아서 어디에 쓸 것인지는 오롯이 부모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 볼 수 있다. 이때, ‘KICCE 소비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영유아 가구들은 아동수당의 주 사용처로 식비를 응답하였다(이정원 외, 2022: 133). 이는 영유아 가구들이 아동수당을 받아 실제 식비로 지출 하였더라도, 식비 지출액의 감소로 인해 생긴 여유통을 아동의 교육·보육을 위해 사용했다고 풀이될 수 있다. 이처럼 영유아 가구가 아동수당을 성인을 위한 지출(예: 주류, 담배, 성인의 여가문화생활비 등)로 활용하지 않고, 아동을 위한 재투자의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 나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높지 않은 수준의 아동수당 지원**은 지원금의 일부가 결국 사교육비의 증가를 유인한다 할지라도,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지원 연령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비목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월평균 식비만 18만3천원에 달한다. 현재의 아동수당 지원 수준인 10만원은 아동의 식비 지출 평균액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정부가 아동수당의 정책 목표를 아동의 최소한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금이라고 설정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지원금은 이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아동수당은 식비 등 양육비용 부담으로 이용하지 못하던 교육·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완화하고 실질적으로 아동에 대한 투입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지점은 아동수당의 재원 마련 방법에 관한 것이다. 아동수당의 지원 연령 확대는 지원 수준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지원 대상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재원 투입을 요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한 것인가는 제도 도입 전에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결정될 필요가 있다. 최근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한 일본의 경우 일종의 기금을 조성하여 이 재원을 마련하였는데, 새로운 기금 조성은 실질적으로 증세와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 진통을 겪어야 했다. 연구진이 일본 출장에서 면담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초기 진통이 있긴 했으나, 정책 목표에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할 뿐 아니라 납부금이 크지 않아 재원 조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아동수당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증세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일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아동수당과 같은 급여는 한번 제도가 도입되면, 제도를 폐지하거나 지원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입 시 장기적인 계획에 기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증세 혹은 별도 기금 조성 없이 기존의 예산 조정으로 아동수당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육아 지원 예산의 전체 증액이 아닌 육아 지원 예산 내 조정이라면 기존의 육아 지원 체계 전반에 커다란 반항을 불러올 위험이 높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축소되어 오히려 아동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고도 심도 깊은 논의와 숙고가 요구된다.

4) 부모급여 지원 수준의 적정성

이 보고서의 Ⅷ장을 중심으로 한 부모급여의 효과성에 대한 결과에 따르면, 현금 급여를 선택할 확률은 외벌이 가구,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아동의 연령이 어린 경우에 현금 급여 수급 확률이 높았으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가정양육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분석 대상을 2022년생 이후 즉 부모급여 지원 대상으로 한정할 경우 맞벌이 여부와 아동의 월령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요인은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다. 특기할만한 점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실제 현금 급여는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2021년생의 경우에는 가구소득, 모연령, 중소도시 거주 여부, 아동의 월령 등이 가정양육 선택에 영향을 미쳤으나, 맞벌이 여부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으로 현금 수급 여부가 확실히 구분되는 기존 지원 제도의 경우 외벌이 가구들도 가정양육이 아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특징이 발견된다고 요약할 수 있다.

한편, 부모급여가 아동 당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급여는 실제 아동 당 양육비용에는 그다지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0세 부모급여 수급자 중 전액 현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른 급여를 지원받은 경우에 비해 아동 당 양육비용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아동에 대한 투입을 증가시키는 영유아 가구들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판단된다. 이때, 비목별 아동 당 양육비용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의 분석 결과를 참고해 보면, 현금급여액의 증가는 영아기 아동에게 있어 식비의 유의미한 증가를 유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문화생활비 등은 부모급여의 수급 종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비목으로, 영아기 현금 급여의 증가는 아동수당과는 달리 교육보육비로 유입되지 않고, 아동의 생필품 구입을 위해 활용되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영아기 현금 급여의 강화는 제한적이긴 하나 가정양육을 유인하는 효과가 일부 있으며, 지원받은 현금 급여는 아동수당과 달리 대부분 아동의 식비 등

생필품 구입에 활용되어, 생애 초기 아동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의 목적 달성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때, 부모급여의 현금 급여 지원액은 기존의 가정양육수당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지원액의 규모가 이러한 차이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크긴 하나, 보다 분명한 경향성은 보다 장기에 걸친 분석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최효미 외(2024)에 따르면, 생애 초기 아동의 양육비용 대비 부모급여의 커버율은 중간 수준(모형 2-1) 기준 2023년에 101.2%, 2024년 132.6%로, 100%를 넘어서었다. 부모급여 중 보육료 지원금을 뺀 정부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커버율 또한 2023년 71.2%, 2024년 114.3%¹¹⁴⁾로, 12개월 이하 아동의 양육비용에 대한 부모급여의 커버율은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연구의 조사인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에서도 0세아의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2023년 기준 69만4천원, 1세는 70만4천원으로, 산술적으로 부모급여 지원액이 생애 초기(12개월 미만) 영아의 평균 양육비용을 상회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부모급여의 경우 제도 도입 초기 정책적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고 있긴 하나, 이미 충분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생애 주기를 고려한 촘촘한 육아 지원을 고려한다면, 생애 초기 아동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보다는 이후 연령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적 선택으로 사료된다. 다만, 생애 초기 아동이 아닌 경우에는 현금 급여 지원의 확대 효과가 다소 모호한 상황으로, 이후 연령 아동에 대한 육아 지원의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후속 연구를 요한다 하겠다.

5) 종합 및 요약

이상의 아동 급여 지원 체계 정비 필요와 관련된 이 연구의 결과를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그림 IX-2-1]과 같다.

114) 중간 수준(모형 2-1) 기준, 양육비용 중 보건의료서비스 등 이용비용을 제외한 양육비용(필수 육아용품 산출 결과) 기준 산출 기준임.

[그림 IX-2-1] 아동 급여 지원 체계 정비 방안 (변경 전·후 비교)

<변경 전>



<변경 후>



주: 점선은 이 과제에서 제안하는 내용이며, 굵은 선은 아동수당 제도에 포함됨을 뜻함.

나. 유보통합을 고려한 비용 지원 체계 정비 및 운영시간 보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용비용은 2018년 이후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으로,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도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비용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는 현행 무상 보육·교육 제도 하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료 상한제와 원비 상한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시장 가격 자체를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다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부모가 납입하는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반드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원되는 예산 혹은 기관 운영비 전체가 감소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비용은 부모가 직접 기관에 납부한 금액으로, 최근 상향 조정된 보육료·유아학비 등의 정부 지원금은 제외된 금액일 뿐 아니라, 기관의 경우 바우처로 지원되는 (부모)보육료, 유아학비 이 외에도 각종 기관 지원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KICCE 소비실태조사’의 기관 이용비용의 감소는 실제 영유아 가구가 기관을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높은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감소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긍정적 효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원되는 적정 수준의 정부 지원금 수준 등에 대해서는 수요자 측면에서의 비용(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비용) 연구가 아닌 공급자 측면에서의 비용(표준보육비용과 표준유아교육비 등) 연구를 통해 책정하는 것이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방식이다. 다만, 유보통합이 진행됨에 따라 기존의 보육료와 유아학비의 지원 수준과 방식 등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부모들의 육아서비스 이용비용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유치원을 이용하던 부모가 지원받는 (부모)보육료 및 유아학비는 동일하다. 그러나, 기타 필요경비 및 수익자 부담금 성격으로 부모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납입하는 금액은 언제나 유치원이 어린이집에 비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KICCE 소비실태조사’에서도 매해 유치원 이용비용은 어린이집 이용비용의 약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용 기관이 아닌 다른 형태의 양육을 원했는지를 질문한 질문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상당수는 유치원을 이용하고 싶었다고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을 이용하고 싶었다는 응답 자체가 매우 적을 뿐 아니라, 다른 기관을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가정양육(부모직접돌봄)을 하면서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유치원을 이용하고 싶었다는 응답자들이 유치원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부모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매해 40% 이상의 높은 비중을 보였다. 즉, 맞벌이인 영유아 가구 입장에서 유치원은 충분한 돌봄 시간이 제공되지 않는 기관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 중인 유보통합 과정에서 이와 같은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비용 지원 체계의 정비와 운영시간 보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먼저는 유보통합으로 인해 기존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어린이집의 이용비용

(소비자 부담분)이 상승하지 않을 수 있는 비용 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해 보이며, 둘째, 일부 수익자 부담분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이 기존보다 짧아지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유치원의 경우에도 기존보다는 긴 시간 돌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돌봄 시간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소요 비용의 상승분이 부모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 지원금 지원 체계라 사료된다.

셋째, 영유아 가구 부모들이 좀 더 비싼 비용이 들더라도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을 보내고 싶어 한 이유는 **교육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부분이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부모 부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보육·교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면, 이는 유보통합의 근본적인 목적에 위배 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공공 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외면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높다. 현재 유보통합이 급속도로 추진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보통합의 초기 논의 단계에서 교육과정과 인력수급(교원 양성 등) 등 매우 첨예하고 시급한 현안이 산재되어 있긴 하나, 유보통합의 원활한 이행과 안착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 혹은 비용(정부 지원금) 지원 체계의 논의 과정에서 공급자 측면에서의 고려뿐 아니라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적정 수준의 비용 지원 체계의 수립이 요구된다.**

3. 육아시간 지원 제도 확대

가. 유연근무제 확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은 본조사인 영유아 가구 조사뿐 아니라, 부스터 표본으로 임신부 가구와 무자녀 가구에 대한 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의 일부를 보고서의 VI장과 VIII장 등에 수록하였다. 이 중에서 유연근로와 관련된 제도 활용과 개선 요구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연근로제도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용 비중이 높은 재택근무와 선택근로제의 이용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택근무의 경우 영유아 가구의 부모 각각 7.3%. 9.7%가 이용한 데 비해 임신부 가구와 무자녀 가구는 부모 모두 18.6~22.8%로,

영유아 가구보다 10%p 가량 이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시차출퇴근제의 경우도 영유아 가구 부모가 5~6%가 이용한 데 비해 임신부 가구는 부모 각각 7.2%, 8.0%가 이용했으며 무자녀 가구는 10% 이상으로 이용 비중이 더 높았다. 대부분의 제도에서 영유아 가구에 비해 무자녀 가구가 이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연근무제도 활용에 있어 자녀 유무보다는 응답자의 연령(세대)의 영향이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런데, 이때 유연근로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제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나, 전반적으로 회사에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이 외에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다음을 차지했는데, 이 비중은 무자녀 가구에 비해 영유아 가구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반대로 무자녀 가구들은 상대적으로 제도가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이용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영유아 가구나 임신부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연근로제도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긴 하지만, 육아와 관련된 경우에 보장 범위가 더 넓을 수 있음을 내포한다. 유연근무의 개선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1+2순위) ‘자격해당자의 제도 사용 의무화(정부가 강제)’가 50% 가량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즉, 유연근로는 영유아 가구뿐 아니라 무자녀 가구 등에서 이용 요구가 매우 높으나, 제도 자체가 도입되지 않아 사용에 제한이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영유아 가구 부모의 유연근무제도 이용 경험을 종단적으로 살펴보면, 육아 시간 지원 제도와 달리 전반적으로 유연근무 이용 경험은 4~5차년도에 비해 6차년도(2023년)에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던 시기에 유연근무가 활성화되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이전 근로 방식로의 회귀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런데, 실제 유연근로에 대한 응답자들의 요구는 매우 높은 편이며, 이와 같은 유연근무제도가 실제 육아에 도움을 주는(혹은 줄 것이라는 예상)¹¹⁵⁾ 정도는 모 기준 5점 만점에 영유아 가구는 선택근로자 4.9점, 재택근무 4.8점, 시차출퇴근 4.7점으로 매우 높았으며, 임신부 가구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4.5점 수준, 무자녀 가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간 낮긴 하나 4.2~4.3점 수준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115) 영유아 가구는 실제 도움 정도를 질문하였으며, 임신부 가구와 무자녀 가구에게는 예상되는 도움 정도를 질문하였음.

엄밀한 의미에서 유연근로는 육아 지원 제도가 아닌 고용 및 근로시간 관련 지원 제도이기는 하나, 유연근로는 상대적으로 동료들로부터의 눈총과 질시로부터 좀 더 자유로우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 또, 유연근로는 육아휴직 등과 같은 육아시간 제도에 비해 제도의 보급이 보다 용이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반대로 재택근로 등 유연근로가 적합하지 않은 직종의 경우 유연근로의 활용 및 확장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다만, **유연근로의 확장은 영유아 가구의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무자녀 가구의 시간 활용에 대한 장벽을 완화하여 출산 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제도 확장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19 시기 부득이하게 운영되었을지도 모르는 유연근로제도라 할지라도, 이로 인한 경험의 축적은 향후 유연근로 확장과 강화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연근로를 사용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가 제도 자체가 회사가 없다는 점을 숙고하여, 유연근로의 확산을 통한 워라벨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나. 기업 참여 활성화를 통한 육아시간 지원 제도 확장

VI장 1절에 제시되어 있는 육아시간 관련 정책 활용 현황과 개선 요구를 살펴보면, 영유아 가구들의 출산 및 육아휴직 이용경험은 부가 10% 미만, 모는 육아휴직 기준 31.2%가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임산부 가구의 모가 출산휴가 이용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86.0%, 육아휴직 7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54.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실제 사용율보다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의 비중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대체로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거나,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인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통상 육아 휴직 등의 육아시간 지원 제도 활용이 낮은 이유는 낮은 소득 대체율, 육아 휴직으로 인한 경력단절 위험 증가, 제한된 이용 대상자 등 여러 가지가 언급되는데, 이 연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가구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요인보다도 여전히 기업 문화와 제도 도입율과 같은 사항이 육아휴직 사용 등을 방해하는 요인임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이 연구의 응답자들은 개선이 필요한 육아 시간 지원 정책으로, 1+2순위 기준 영유아 가구는 가족돌봄휴직/휴가(53.6%)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46.5%) > 육아휴직(46.4%) 순으로 응답했고, 반면 임신부 가구는 육아휴직(66.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43.5%) > 가족돌봄휴직/휴가(40.6%) 순으로 응답하였는데, 개선 방안으로는 전반적으로 제도 사용 의무화(정부가 강제)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물론 개별 제도별, 가구 특성별로 그 사유가 급여 대체율 상향 조정, 휴가 일수 및 사용 시간 확대 등이 높게 응답된 경우도 있었다.

또, 임신부와 무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출산 및 양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비용지원(보육료, 유아학비지원, 부모급여 등)’, ‘육아기 부모의 근로시간단축 또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근무’의 응답 비중(1+2순위)이 40~50% 전후로 높게 나타나 시간 지원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물어본 문항에서도 육아시간 지원과 관련된 문항은 모두 4.5점 이상으로, 서비스 지원이나 비용 지원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최근 정부는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을 크게 확대 강화했는데, 엄마·아빠의 맞돌봄 확대를 위해 기존의 3+3 육아휴직 제도를 6+6제도로 강화하여, 6개월간 부모 합산 최대 3,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관계부처 합동, 보도참고자료, 2024. 1. 5: 8).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연령을 초등6학년(12세)까지 확대하고, 휴직 기간도 부모 1인당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상향 조정하였으며, 급여도 주당 최초 10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등 **제도의 보장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관계부처 합동, 보도참고자료, 2024. 1. 5: 9).

또한,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였으며,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도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상한 인상,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지원 확대, 육아휴직 통합신청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하여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매월 20만원) 신설 지원, 아빠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강화, 중소기업 부담 경감 방안으로 대체인력 고용시 지원금 인상(120만원) 등 육아시간 지원이 크게 확장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4. 6. 19.).

육아시간 지원 제도의 확장과 강화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긴 하나, 다만 제시된 지원 강화 방안이 제도의 활용 기간 연장, 소득 대체율 상승 등과 관련되어 있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장 범위가 강화되었으나, **애초 제도 활용이 어려운 집단에게는 정책 강화의 영향이 체감되지 않는 상황**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유아 가구들이 육아시간 지원 제도를 많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사용 자체가 할 수 없거나 어려운 상황이 많았다. 이를 고려할 때, **육아시간 지원 제도의 강화와 확대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 혹은 사용율 제고 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처럼 사용율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사업장은 인력을 대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료들이 일을 나누어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도 활용율이 낮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도 인재채움뱅크를 5개까지 확대하고, 민간 취업포털 3개사에 ‘인재채움 전용관’을 설치하여 접근성과 활용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관계부처 합동, 보도참고자료, 2024. 1. 5: 9). 다만, 이와 같은 대책이 실제 중소기업이 육아시간 지원을 확대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이 연구의 국외 사례로 제시된 **일본의 경우 육아와 관련된 매우 협조적인 기업 문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육아시간 제도가 잘 정착되고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은 최근 부모의 육아휴직 뿐 아니라 조부모의 육아휴직 활용 제도를 정부와 지자체 뿐 아니라 기업들이 앞 다투어 도입하면서(최효미 외, 2024a 발간예정), **아동이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육아시간 지원에 대한 젊은 세대의 높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육아시간 지원 제도의 보장 범위 확대, 강화와 함께 육아휴직 등을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법제 검토, 일본과 같이 부모를 넘어선 가족(조부모)의 육아시간 지원 제도 도입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봄직 하다고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의 육아시간 지원 제도 도입과 실질적 사용 권장 등과 같은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복안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해 보자면, 최근 기업이 출산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세제 지원 등을 하는 사례 등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 있는데, 출산지원금과 같은 다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육아휴직 제도 활용율이 높은 기업 등에 대한 세제(법인세) 혜택을 도입하는 방안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저출생 대응 정책의 실효성 제고

가. 주거 지원 정책 실효성 제고

정부는 최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4. 6. 19.). 이에 따르면, 결혼·출산 시 주거(집)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7만호→12만호)하고, 신규택지를 발굴하여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4만호를 배정할 계획이며,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年 약 3.6만호)에서 23%(年 약 4.6만호)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4. 6. 19.).

또한,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2.5억원, 3년간 시행)하고,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0.2%p ↓→0.4%p ↓)하며, 신혼·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를 확대(추가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하는 등 지원 대책을 제시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4. 6. 19.). 나아가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한다는 계획과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중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주거 관련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4. 6. 19.).

한편,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의 조사 결과,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기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는 영유아 가구가 3.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임신부 가구 3.2점, 무자녀 가구는 3.1점이었다. 이때, 영유아 가구의 경우 이 점수가 2018년 3.1점에서 3.3점으로 다소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영유아 가구의 40.0%가 현재 거주지에 살게 된 계기가 자녀 출산 혹은 양육과 관련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임신부의 경우에는 48.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 비중 또한 영유아 가구 기준 2018년(38.3%)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지에 살게 된 계기가 자녀 출산 혹은 양육과 관련되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거주지 선택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영유아 가구는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 35.2%, ‘아이를 키우기에 적당한 규모(협소하지 않은)의 집에 살기 위해서’ 21.7%,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유해시설이 적거나, 자연친화적, 공원/놀이시설이 가까워서)’ 21.4% 순으로 나타났다. 임산부 가구의 경우도 영유아 가구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아이를 돌봐줄 친인척(혹은 아이돌보미)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의 응답 비중이 영유아 가구에 비해 높았다.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주거지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영유아, 임산부, 무자녀 가구 모두 공통적으로 ‘주거지역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유해시설이 없거나, 범죄율이 낮은 지역 등)’이 3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 가구의 경우 2018년과 비교하여, ‘주거지역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유해시설이 없거나, 범죄율이 낮은 지역 등)’에 대한 응답 비중이 다소 줄어든 반면 ‘아동관련 인프라가 많은 곳(공연장, 문화센터, 도서관, 종합병원, 소아과 등)’,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환경이 좋은 곳’ 등에 대한 응답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에서 조사한 주거 지원 정책은 2023년 기준 정책으로, 최근 주거 지원 정책이 발표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2023년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 등은 현 시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영유아 가구의 인지와 선호를 유추해 보기 위해, 지난해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시행 중이었던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 경험이 높지 않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영유아 가구들이 임산부 가구나 무자녀 가구에 비해서는 주택 지원 정책에 대해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주거 지원 정책 중에서는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주거 지원 정책에 비해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인지도와 별개로 지원 정책 이용 경험은 매우 낮은 상태였다. 이처럼 주거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이용 경험이 현저히 낮고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영유아 가구에게 질문한 결과, 1+2순위 기준 지원 대상 조건이 까다로워 자격 조건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런데, 1순위 응답 기준 영유아 가구의 경우 '실제 거주하기를 원하는 지역의 주택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 항목의 응답 비중이 임신부 가구나 무자녀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무자녀 가구의 경우 '지원되는 비용이 주택 구매 혹은 전세 자금에 비해 너무 적기 때문'과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지원 대상 당첨 확률이 낮기 때문'의 응답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최근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의 강화는 저출생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무자녀 가구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정책적 변화라 사료된다. 특히 지원 대상 조건의 완화와 관련된 정책들은 출산 전후의 가구나 영유아 가구에게 와 닿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현재 정부가 제시한 수준이 실질적으로 무자녀 가구의 출산 의향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의 변화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여진다. 상당히 완화된 기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이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인지, 원하는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 자금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준인지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영유아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구매 가격이나 자격 조건 등에 대한 요구가 높긴 하나,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의 특성이 뚜렷하여 일반적인 양적 확대만으로는 정책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유아 가구들은 거주지 선택 시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아동을 키우기에 안전하고 교육여건이 좋은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와 같은 주거 지원은 무자녀 가구의 출산 의향에는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영유아 가구들이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는 지역에서 살기를 희망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주거 지원 대책에서 신규 분양 등 양적 확대 뿐 아니라, 거주지 내 아이를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 조성과 교육 여건 및 보육인프라 등을 함께 확충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과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즉, 아파트 신축 시 일정 면적 이상을 학교 및 육아 인프라로 활용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신규 분양뿐 아니라 금융 지원의 확대 강화와 구축 건물의 구매 등에서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영유아 가구 부모의 문화적 삶 보장을 위한 지원 신설

이 연구의 VII장의 심층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가구의 소비지출액은 무자녀 가구에 비해 월평균 22만5천원가량 높았으나,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액 중에서 자녀에게 소요된 양육비용을 제외하고 성인 가구원의 생활비 지출액을 산출해 본 결과는 월평균 226만9천원으로 무자녀 가구에 비해 128만1천원이 적었다. 특히 가족여행, 외식비, 기기/집기류,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이용비 등에서의 큰 격차를 보였으며, 이는 영유아 부모들이 자녀 양육으로 인해 개인 취미활동 및 문화적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성인의 소비지출(총액) 결정 요인에 관한 심층 분석 결과, 무자녀 가구의 성인들은 영유아 가구의 성인에 비해 소비지출액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높은 현상이 발견되었다. 비목별 성인의 소비지출액을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비목에서 무자녀 가구 여부가 유의미한 양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비목별 추정 결과에서 무자녀 가구 여부 변수의 계수 값이 컸던 비목은 여가문화생활비와 기기/집기 구매비용으로, 영유아 가구의 성인들은 무자녀 가구 성인에 비해 개인의 취미활동 및 문화적 생활에 좀 더 제약이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영유아 가구의 전체 생활비 지출액에서 여가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지출은 월평균 36만8천원으로 무자녀 가구 49만9천원에 비해 13만1천원이 낮았는데, 이 중에서 영유아 가구 성인의 여가문화생활비 지출액은 15만4천원으로, 영유아 가구들은 여가문화생활비의 지출 총액 자체가 적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문화 활동을 가족 단위로 이용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이는 영유아 가구의 부모로 하여금 문화적 삶과 육아가 분리되지 않는 현상을 유발하여, 적은 기회로 행해지는 문화생활조차 실질적으로 문화적 활동 참여에 따른 삶의 질 제고로 이어지지 않을 위험이 높다고 사료된다.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의 부스터 표본인 무자녀 가구 조사 결과에서, 출산 의향이 없는 경우 그 사유로 '개인 시간이 줄어들 것 같다'라는 응답이 1+2+3순위 기준 32.4%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개인 시간의 확보 혹은 문화적 생활의 영유아 젊은 세대의 출산 의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암시한다.

실제 영유아 가구와 임신부 가구, 무자녀 가구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이 연구의 VI장 3절 방향 참조), 영유아 가구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임신부 가구나 무자녀 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지만, 여가생활 항목에서는 무자녀 가구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 혹은 아동의 가구를 지원하는 일반 적인 육아 지원 방안과는 약간의 괴리감이 있긴 하나, **영유아 가구의 부모가 일반적인 성인이 즐기는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즉 영유아 가구의 부모에 대한 문화적 지원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해본다. 예를 들면, 부모의 결혼기념일 등에 부부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지원으로, 이에 대한 비용 지원과 돌봄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는 행사 등을 기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결혼기념일에 부부가 공연이나 외식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상품권 등을 지원하면서, 그 시간 동안 아이를 돌봐 주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 인근에 **단시간 자녀 돌봄 시설이나 돌봄 인력이 상주하는 아동의 놀이시설 등을 확충**하여, 성인이 마음 놓고 성인을 위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등을 진행하는 방안이다. 즉, **성인이 관람 가능한 공연장 주변에 아동도 즐겁게 놀이 및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는 복합 돌봄 시설을 지원**하여, 부모가 공연을 관람하는 동안 아동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가 개인 시간과 문화 활동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봄직 할 것이다.

다. 무자녀 가구의 출산의향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 발굴

무자녀 가구들은 영유아 가구에 비해 예상 양육비용을 매우 높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무자녀 가구 중 출산 의향이 없는 경우 자녀가 생긴다면 가구의 소비 지출을 얼마나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현재 가구 소비 지출 총액의 20% 이상 40% 미만’를 줄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37.1%로 가장 높았으며, ‘현재 가구 소비 지출 총액의 40% 이상 60% 미만’ 25.4%, ‘현재 가구 소비 지출 총액의 60% 이상’ 13.1%로, 임신부 가구나 출산 의향이 있는 무자녀 가구에 비해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훨씬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무자녀 가구 중에서 출산 의향에 따라 예상 양육비용이 체계적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이 연구의 VIII장 5절), 출산 의향은 예상 양육비용에 전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무자녀 가구들이 양육비용을 실제 혹은 영유아 가구의 예상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생각하는 경향성에 기인한 것으로, 양육비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출산 의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무자녀 가구들은 전반적으로 양육비용을 높게 생각하여 출산으로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포기되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자녀 가구가 출산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1+2+3순위 기준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서’의 응답 비중이 60.8%로 가장 높았으며, ‘육아 및 자녀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가 51.4%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즉, 경제적 부담감이 무자녀 가구의 출산 의향에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무자녀 가구들은 앞서 3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연근로 활용 경험이 높고, 자신을 위한 시간 사용 등에 관한 요구가 높은 특징을 보였다. 특히 무자녀 가구 중 출산 의향이 없는 경우 그 사유로 ‘개인시간이 줄어들 것 같다’라는 응답이 1+2+3순위 기준 32.4%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무자녀 가구들은 자녀 출산 후 예상되는 생활 양상의 변화에 관한 질문에서도 ‘사회적 평판’과 ‘이웃과의 어울림’은 변함 없거나 조금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 반면, ‘삶의 경제적 여유’와 ‘일에서의 성공(직장에서의 기회 등)’은 2.1점으로 조금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시간활용의 자유)’는 1.7점으로 상당히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즉, 무자녀 가구들은 자녀 출산 이후 시간 활용에 있어서의 제약이 강해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고 보여진다.

요약하자면, 무자녀 가구의 출산 의향에는 다양한 변인이 영향을 미치지만, 양육비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실제 영유아 가구나 임산부 가구에 비해 매우 크다는 점과 자녀 출산 이후 개인적인 자유(시간 활용의 자유)가 제약될 것이라는 두려움 등이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무자녀 가구의 출산 의향을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양육비용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인식 개선 혹은 정책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무자녀 가구들은 실질적으로 출산 및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에서 양육비용 부담에 대한 극단적인

사례를 접하게 되면서, 경제적 부담감을 훨씬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한편, 무자녀 가구를 위한 지원 정책은 아니지만, 아동수당의 확대 및 육아지원의 확대는 이와 같은 오해를 조금은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앞서 제안한 **육아시간 지원 정책의 강화와 영유아 가구의 부모에 대한 문화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은 간접적으로나마 무자녀 가구로 하여금 자유로운 시간 사용 및 개인 생활이 불가능할 것이 심리적 장벽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임신부 가구가 계획보다 아이를 늦게 갖게 된 이유가 난임 등 신체적인 이유를 제외하면 주택마련 등 경제적 여유가 생겼을 때 낳으려고 했더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무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는 무자녀 가구의 출산 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러한 지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무자녀 가구까지 체감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실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주지할만한 사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과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가구의 삶의 만족도가 임신부 가구나 무자녀 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영유아 가구, 임신부 가구 및 무자녀 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대체로 3점대 이상으로 보통 수준을 보이는데, 항목별로 여가생활을 제외한 모든 항목 - 즉 가구의 경제적 수준, 주거환경, 가족관계, 자녀돌봄, 사회적 친분관계, 자아성취, 전반적 생활만족도 등-에서 영유아 가구의 삶의 만족도가 무자녀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 저출생 지원 대책의 방향성 설정과 지원 방안 모색 시 깊이 숙고하여 참고해 볼만한 지점이라 사료된다.

- 강유진(2020). 무자녀와 한자녀 여성의 출산계획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녀가치관과 부부평등성 요인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14(3). pp.3~26.
- 김병철·황지유(2019). 중국 저출산 위기와 대응정책에 관한 분석. 중국지식네트 워크 제14호.
- 계봉오·김두섭(2015). 무자녀 가정의 추이와 특성. 한국의 사회동향 2015. 통계청 통계개발원
- 계봉오·유삼현·최슬기(2022). 유배우 출산율 변화, 2005~2020: 혼인지속 기간 접근. 한국인구학, 45(4). pp.71~92.
- 고용노동부(2023).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 고용노동부(2024b). 일하는 부모를 위한 '6+6 부모육아휴직제' 따라잡기.
- 관계부처 합동(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교육부(2023). 2023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 교육부 사교육대책팀(2023. 6.). 사교육 경감대책.
- 내각부(2009). 자녀양육 비용관련 인터넷 조사.
- 김은설·유해미·김재윤·박유경(2023). 농촌형 보육지원 모델 도입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대한민국 정부(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0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 대한민국 정부(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새로마지플랜 2015.
- 대한민국 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브릿지플랜 2020.
- 대한민국 정부(2019. 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본.
- 대한민국 정부(2020).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 문부과학성(2021). 아동학습비 조사
- 박시내·박라나·박혜균(2020). 결혼기간별 무자녀 가구 특성. 통계청 통계개발원.
- 박은정·이정원·윤지연·김난주(2022).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통합적 제도 구축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베넷세 교육종합연구소(2022). 유아생활양케이트조사.
- 보건복지부(2013).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 보건복지부(2018). 2018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2019). 아동수당 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2022). 2022년 영아수당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3a).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3b).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4a).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4b). 2024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 시안시 의료보장국, 시안시 재정국 자료. 关于优化调整生育医疗保障待遇有关政策的通知 (西安市医疗保障局 西安市财政局发布) (2023. 7. 24.).
- 아동가정청(2024). 全国こども政策関係部局長會議.
- 아동미래재단(2002). 자녀양육비용에 관한 조사연구.
- 육아정책연구소(2023). 2022 영유아 주요 통계.
- 이수현(2012). 기혼여성의 무자녀 결정 시기와 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22(3). pp.43~88.
- 이유태(2021). 중국의 제도 변화가 중국 노동자에게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과 국제사회, 5(5): 225~247.
- 이응철(2019). 현대 중국 도시 젊은이들의 결혼과 비혼. 아시아연구, 22(2): 151~178.
- 이재희·김동훈·김종근·엄지원·윤소정(2022). 저출생시대 육아인프라 추이분석 및 대응 방안(I) : 임신·출산 관련 인프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림·구자연·김한솔(2019).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II).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이재희·김자연·우석진·김태우(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연구(V).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이정림·김태우(2018).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철희(2012).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혼인과 유배우 출산율 변화의 효과. 한국인구학, 35(3). pp.117~144.
- 이철희(2019). 출생아 수 변화요인 분석과 장래전망. 한국경제의분석, 25(1). pp37~77.
- 전일주·최영진(2015). 일본 아동수당법의 내용과 시사점. 법학연구, 23(2). pp.179~206.
- 조성호·이지나·김근태(2021). 기혼부부의 무자녀 선택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인희·김은지·이상림·정다은(2015). 무자녀 부부가족의 증가와 가족정책적 함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효미(2023). 코로나19 이후 조사방식의 변화와 모드효과: KICCE 소비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24(2). pp.41-68.
- 최효미(2024). 아동수당 지원이 영유아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 여성경제연구, 21(1). 23~48.
- 최효미·강은진·조미라·김태우(2018).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박은정·조미라·김문정·윤문희(2024a 발간예정). '24년 사회보장제도 심층평가 - 비공식 양육·돌봄지원제도 평가. 사회보장위원회·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박은정·조미라·김태우(2024b). 생애초기 적정규모 양육비용 산출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이정원·김자연·이재희·김태우(2021).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IV).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이정원·박은정·김태우(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III).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이정원·조미라·우석진·김태우(2023).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조사(KICCE 소비실태조사 II). 육아정책연구소.

- Blow, L., Walker, I., Zhu, Y.(2005). Who Benefits from Child Benefits?.
Economic Inquiry, 50(1). pp.153-170.
- Edmonds, E.(2002). Reconsidering the labeling effect for child benefits: evidence from a transition economy. Economics Letters, 76. pp.303-309.
- Jones, L., Milligan, K and Stalile, M.(2019). Child cash benefits and family expenditures: Evidence from the National Child Benefit.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52(4). pp.1433-1463.
- Kooreman, P(2000). The Labeling Effect of a Child Benefit System. American Economic Review, 90(3). pp.571-583.
- Raschke, C.(2012). The Impact of the German Child Benefit on Child Well-Being. IZA Discussion Paper, 6980. pp.1-60.
- Raschke, C.(2015). “The Impact of the German Child Benefit on Child Household Expenditures and Consumption,” German Economic Review, 17(4). pp.438-477.
- 史毅(2024). 中国托育服务发展现状、问题与挑战. CPDRC-KICCE 공동세미나(2024.6.12.) 발표자료. 中国人口与发展研究中心.
- 谢琼(2024). 中国育儿现状相关资料整理. 미발간자료.
- 守泉 理惠(2014. 4.). 1990 年以降の日本における少子化対策の展開と今後の課題,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 연구소.
- 杨胜慧(2024). 中国的低生育水平及影响因素. CPDRC-KICCE 공동세미나(2024. 6.12.) 발표자료. 中国人口与发展研究中心.
- 姚建平(2023). 私人物品还是公共物品? -中国托幼服务供给的历史逻辑和未来发展. 社会保障评论, 7(3): 96~105.
- 姚建平(2024). 三孩背景下我国生育支持政策评价 -基于十个城市社区的调查分. 华北电力大学学报 (社会科学版), 2024(2): 51~62.
- 蔡泽昊(2024). 中国育儿现状相关资料整理: 中国婴幼儿家庭、有儿童家庭的特点及现状. 미발간자료.

[보도자료]

- 관계부처 합동, 보도참고자료(2024. 1. 5.).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 교육부(2024. 2.). 202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5세 추가지원 포함).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영유아 교육보육통합추진단(2024. 2.). 202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5세 추가지원 포함).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 1. 12). 대폭 인상된 부모급여로 양육부담은 확 덜고 함께 하는 시간은 늘리세요.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2024. 6. 19.).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대 핵심분야 총력 지원 + 사회인식 변화 노력 강화.
- 통계청 보도자료(2023. 12. 19). 202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결과.

[인터넷 자료]

- 고용노동부(2024a). 2024년 확대·신설 추진 중인 모성보호 제도. https://www.moel.go.kr/local/cheongju/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40101329 (인출일: 2024. 6. 4.).
- 일본위키백과. 유연근무제, <https://ja.wikipedia.org/wiki/%E3%83%95%E3%83%AC%E3%83%83%E3%82%AF%E3%82%B9%E3%82%BF%E3%82%A4%E3%83%A0%E5%88%B6> (인출일: 2024. 7. 16.).
- OECD Family Database, Fertility indicators, SF.2.5 Childlessness, https://www.oecd.org/els/family/SF_2-5-Childlessness.pdf (인출일: 2023. 3. 2.).
- こどもミライ(오키나와현 야에야마군 타케토미정) 홈페이지, <https://www.kodomo-mirai.okinawa/support/detail/28141> (인출일: 2024. 7. 14.).
- こども家庭庁(아동가정청), こども未来戦略(아동미래전략),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fb115de8-988b-40d4-8f67-b82321a39daf/b6cc7c9e/20231222_resources_kodomo-mirai_02.pdf (인출일: 2024. 7. 11.).
- こども家庭庁(아동가정청), 幼児教育・保育の無償化概要(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fb115de8-988b-40d4-8f67-b82321a39daf/b6cc7c9e/20231222_resources_kodomo-mirai_02.pdf

_ref_resources/8a55e619-4b0a-4ab2-b385-45aeb296b425/d2817ebc/20230929_policies_kokoseido_mushouka_about_01.pdf (인출일: 2024. 5. 28.).

こども家庭庁(아동가정청), 幼児教育・保育の無償化概要(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개요),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8a55e619-4b0a-4ab2-b385-45aeb296b425/d2817ebc/20230929_policies_kokoseido_mushouka_about_01.pdf (인출일: 2024. 5. 28.).

こども家庭庁(아동가정청), 子育て支援パスポート事業の概要(자녀양육패스포트지원사업 개요), <https://www.cfa.go.jp/policies/kosodateishien/passport/gaiyou> (인출일: 2024. 7. 14.).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https://www.ips.go.jp/ps-doukou/j/doukou16/JNFS16gaiyo.pdf> (인출일: 2024. 3. 27.).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2006) 第13回出生動向基本調査 結婚と出産に関する全国調査夫婦調査について(제13회출생동향기본조사, 결혼과 출산에 관한 전국조사부부조사에 대하여), <https://www.ipss.go.jp/ps-doukou/j/doukou13/point13.asp> (인출일: 2024. 4. 10.).

内閣府(내각부), 少子化社会対策大綱(저출생사회대책대강), <https://www.mhlw.go.jp/file/05-Shingikai-11901000-Koyoukintoujidoukateikyoku-Sozumuka/0000081807.pdf> (인출일: 2024. 4. 16.).

内閣府(내각부), 少子化社会対策白書(소자화사회대책백서),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2772297/www8.cao.go.jp/shoushi/shoushika/whitepaper/measures/w-2022/r04pdfhonpen/pdf/s1-1.pdf> (인출일: 2024. 3. 26.).

内閣府(내각부), 少子化社会対策白書(소자화사회대책백서),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2772297/www8.cao.go.jp/shoushi/shoushika/whitepaper/measures/w-2022/r04pdfhonpen/pdf/s1-2.pdf> (인출일: 2024. 3. 27.).

内閣府(내각부), 総人口(총인구),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 gi/special/future/sentaku/s2_1.html (인출일: 2024. 7. 14.).

- 内閣府(내각부). 「少子化社会対策に関する子育て女性の意識調査」の概要(저출생사 회대책관련 자녀양육여성의 의식조사개요), https://www.gender.go.jp/kaigi/danjo_kaigi/siryu/pdf/ka20-2.pdf (인출일: 2024. 5. 29.).
- 大阪医療福祉専門学校(오사카의료복지전문학교), 各地方自治体における乳幼児医療 費助成制度の比較と課題(지방자치체별 영유아의료비 조성제도 비교·과제), <https://www.ocmw.ac.jp/contents/sotuken/archives/sotuken/12932> (인출일: 2024. 6. 30.).
- 東洋経済(동양경제) 보도자료, 「子どもの医療費」助成が過熱すぎの問題点(아동의 료비조성가열경쟁이 초래하는 문제점), <https://toyokeizai.net/articles/-/266769> (인출일: 2024. 6. 30.).
- 文部科学省(문부과학성), 子ども・子育てビジョン(아동·영유아양육비전), https://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2/siryu/_icsFiles/afieldfile/2010/03/16/1290947_2_2.pdf (인출일: 2024. 7. 17.).
- 社会福祉法人 陽光福祉会(사회복지법인 양광복지회), エンゼルプラン(엔젤플랜), <https://sunshine.ed.jp/%E3%82%A8%E3%83%B3%E3%82%BC%E3%83%AB%E3%83%97%E3%83%A9%E3%83%B3/> (인출일: 2024. 7. 17.).
- 社会福祉法人 陽光福祉会(사회복지법인 양광복지회), 新エンゼルプラン(신엔젤플 랜), <https://sunshine.ed.jp/%E6%96%B0%E3%82%A8%E3%83%B3%E3%82%BC%E3%83%AB%E3%83%97%E3%83%A9%E3%83%B3%E3%81%AB%E3%81%A4%E3%81%84%E3%81%A6/> (인출일: 2014. 7. 17.).
-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육아휴업· 간병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 간병 노동자 복지에 관한 법률),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03AC0000000076_20240531_506AC0000000042 (인출일: 2024. 7. 16.).
- 全国健康保険協会(전국건강보험협회) 홈페이지, <https://www.kyoukaikenpo.or.jp/g3/sb3290/r148/> (인출일: 2024. 7. 14.).
- 秩父市(사이타마현 지치부시) 홈페이지, <https://www.city.chichibu.lg.jp/9829.html> (인출일: 2024. 7. 14.).
- 総務省(총무성). 少子化対策に関する政策評価書(저출생대책정책평가서), https://www.soumu.go.jp/menu_news/s-news/daijinkanbou/040720_3_h.pdf (인출일: 2024. 7. 14.).

総務省統計局(총무성 통계국), 人口推計2024年(令和6年)1月確定値、2024年(令和6年)6月概算値), <https://www.stat.go.jp/data/jinsui/new.html> (인출일: 2024. 7. 14.).

豊後高田市(오이타현 분고타카다시) 홈페이지, <https://www.city.bungotakada.oita.jp/site/kosodate-kyoiku/2383.html> (인출일: 2024. 7. 14.).

横手市(아키타현 요코테시) 홈페이지, <https://www.city.yokote.lg.jp/kosodate/1001157/1001320/1001322/1003362.html> (인출일: 2024. 7. 14.).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21世紀出生児童縦断調査結果概要(21세기 출생아동종단 조사 결과개요), <https://www.mhlw.go.jp/toukei/saikin/hw/syusseiji/05/kekka3.html> (인출일: 2024. 5. 29.).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フレックスタイム制のわかりやすい解説&導入の手引き(이해하기 쉬운 유연근무제 해설 및 도입절차), <https://www.mhlw.go.jp/content/001140964.pdf> (인출일: 2024. 7. 16.).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雇用均等基本調査(고용균등기본조사), <https://www.mhlw.go.jp/toukei/list/dl/71-r03/03.pdf> (인출일: 2024. 7. 16.).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令和3年度「乳幼児等に係る医療費の援助についての調査」について(2021년도 영유아 등에 관한 의료비 원조에 관한 조사에 관하여), https://www.mhlw.go.jp/stf/newpage_28023.html (인출일: 2024. 6. 20.).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育児休業給付の内容と支給申請手続(육아휴업급부내용과 지급신청절차), <https://www.mhlw.go.jp/content/11600000/001276629.pdf> (인출일: 2024. 8. 23.).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人口動態総覧(인구동태총람), https://www.mhlw.go.jp/toukei/saikin/hw/jinkou/kakutei22/dl/03_h1.pdf (인출일: 2024. 3. 26.).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人口動態総覧の年次推移(인구동태통계월보연계개황), <https://www.mhlw.go.jp/toukei/saikin/hw/jinkou/geppo/nengai22/dl/h1.pdf> (인출일: 2024. 3. 26.).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出産・子育て応援交付金の概要について(출산·육아응원교부금에 대하여), <https://www.mhlw.go.jp/content/11908000/001035057.pdf> (인출일: 2024. 7. 16.).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出産育児一時金の支給額・支払方法について(출산육아일시금지금액, 지급방법에 대하여),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uu/iryuuhoken/shussan/index.html (인출일: 2024. 7. 16.).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出産育児一時金等の医療機関等への直接支払制度「実施要綱」(출산육아일시금등의 의료기관직접지불제도 실시요강), <https://www.mhlw.go.jp/content/12400000/001093053.pdf> (인출일: 2024. 7. 11.).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子ども・子育て応援プラン(아동·영유아양육 응원플랜), <https://www.mhlw.go.jp/houdou/2004/12/h1224-4c.html> (인출일: 2024. 4. 16.).

[통계자료]

세계은행,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L.TLF.TOTL.FE.ZS?locations=CN> (인출일: 2024. 10. 5.).

중국통계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https://data.stats.gov.cn/english/easyquery.htm?cn=C01> (인출일: 2024. 9. 25.).

중국 정부, 정책 및 규정의 해석_중국 인구 정책의 진화에 대한 "연대기", https://www.gov.cn/zhengce/2015-02/09/content_2816919.htm (인출일: 2024. 9. 28.).

중국 정부, 第七次全国人口普查主要数据情况, https://www.gov.cn/xinwen/2021-05/11/content_5605760.htm (인출일: 2024. 9. 30.).

통계청, CPI소비자물가지수, 이해, 소비자물가지수 알아보기, 대표품목,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458개 대표품목 다운로드, <https://kostat.go.kr/menu.es?mid=b70101020000> (인출일: 2024. 10. 10.).

통계청, 유아사교육비 조사, <https://survey.k-stat.go.kr/nsb/p2400803.n010001.s020001/main?shortUrl=/icpedu> (인출일: 2024. 10. 11.).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조사」, 2024.09, 2024.10.17,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품목성질별: 2020=10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22112&conn_path=I2 (인출일: 2024. 10. 10.).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조사」, 2024.09, 2024.10.17., 소비자물가지수(2020=10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22003&conn_path=I2 (인출일: 2024. 10. 10.).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22, 2024.06.11, 시도/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1&conn_path=I2 (인출일: 2024. 5. 29.).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23, 2024.06.11, 시도/일반혼인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34&conn_path=I2 (인출일: 2024. 5. 29.).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24.05, 2024.06.11, 행정구역(시군구)별 주민등록세대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B3&vw_cd=MT_ZTITLE&list_id=A_7&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인출일: 2024. 5. 28.).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24.4월 기준), <https://jumin.mois.go.kr/> (인출일: 2024. 5. 28.).

후생노동성(2022b). 인구동태통계개황, https://www.mhlw.go.jp/toukei/saikin/hw/jinkou/kakutei22/dl/03_h1.pdf (인출일: 2024. 3. 26.).

[법령]

아동수당법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455호, 2023. 6. 13., 일부개정]

A Study of Childrearing Costs and Demand for Childcare Services (KICCE Spending Survey 2024)

Hyo Mi Choi, Nayoung Kim, Mi Ra Cho, Tae Woo Kim, Kyung Hee Jang, Byung Cheol Kim

'KICCE Spending Survey' is a statistical survey of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focusing on their financial status and spending, as well as use of childcare services. It has been conducted annually from 2018 to 2024, during which a total of 7 annual waves worth of data has been compiled. The research program for 2024 mainly consists of implementing the 'KICCE Spending Survey_2024' study and analyses utilizing the data that has been compiled from 2018 to 2023.

In the 'KICCE Spending Survey_2024', the main ongoing survey has been supplemented with a booster sample of 160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residing in rural and agricultural areas. Furthermore, analyses of the 2018~2023 data consists of basic analysis focusing on the time-series evolution of key indices and in-depth analyses. The 2024 study includes two in-depth analyses: a comparison of spending practices between household with young children and that of childless households, and an analysis of the efficacy of parental allowance.

1. Overview of the KICCE Spending Survey_2024

- The 'KICCE Spending Survey_2024' consists of the main survey administered to a total of 1,822 households and a supplemental study of a booster sample of 160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residing in rural and agricultural areas.

- Compared to the 2018 study, the main survey sample grew by 174 households.
- The total number of young children who responded to the main survey of the 2024 study was 2,450.

2. Key Findings from the KICCE Spending Survey(2018~2023) Data

1) Childcare Costs

- The per-child monthly average child-rearing costs (nominal terms) among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in 2023 was 1,354,000 KRW, a sharp increase from 1,273,000 KRW in 2022.
 - During 2018~2022, the per-child average child-rearing costs (nominal terms) started at 659,000 KRW in the 1st wave (2018), decreasing to 610,000 KRW in the 3rd wave (2020), but then rose sharply to 807,000 KRW in the 6th wave (2023).

2) Use of Childcare Services

- Take-up rates for childcare centers dropped slightly from 51.1% in 2018 to 50.0% in 2023. Over the same period, use of kindergartens also fell slightly from 27.7% to 27.0%.
 - On the other hand, use of facilities offering half-day or longer programs rose sharply to 27.6% in 2020, during the early phase of the COVID19 pandemic, gradually returning to previous levels thereafter.
 - That said, for 2022 and 2023 we observed an upward tendency for the non-use of facilities offering half-day or longer programs compared to 2021. This appears to be attributable to the introduction of the child allowance in 2022 and of the parental allowance in 2023.
 - In 2023, the daily average hours of usage for half-day or longer facilities were 7.1 for child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and 6.1 hours for half-day or longer study centers.
 - Looking at the monthly average cost spent on half-day or longer facilities, for childcare centers the figure started at 66,000 KRW

- in the 1st wave (2018). After some fluctuations over the years, it stood at 76,000 KRW in the 6th wave (2023)
- Looking at the usage of part-time education, use of short-term study centers started at 15.5% in the 1st wave (2018) and rose to 23.1% by the 6th wave (2023).
 - In the case of in-person workbooks and in-person activities, usage fluctuated from the 1st wave (2018) to the 4th wave (2021) around the 12% ~ 15% range.
 - In 2023, usage of culture centers stood at 10.4%, usage of non-visit type workbooks, online education, and non-visit type activities stood at 3.9%. Also, reported usage of online educational content was 3.2%.
 - Respondents who reported zero use of part-time education accounted for 59.3%.
 - Looking at the part-time education used by young children in 2023 by type, usage of short-term study centers consisted mainly of physical education (62.3%) and art (34.9%). Usage of in-person workbooks consisted mainly of Korean language (41.7%) and math / science (31.9%).
 - Looking at the monthly average costs spent on part-time education, costs for short-term study centers started at 134,000 KRW in the 1st wave (2018), rising to 197,000 KRW by the 6th wave (2023).
 - Costs spent on part-time temporary care started at 1.9% in the 1st wave (2018), followed by 0.8% in the 2nd wave (2019), fluctuating under the 2% range until the 6th wave (2023).
 - Usage of kids cafés was relatively high, at 66.7% in the 1st wave (2018) and 57.7% in the 2nd wave (2019), dropping dramatically to 14.7% in the 3rd wave (2020) due to the pandemic. By the 6th wave (2023) it hard recovered to 55.2%.
 - Take-up of non-periodic experiential activities in 2023 was 19.1%, and average monthly incidence was 2.6 sessions. The average session lasted 2.3 hours and the monthly average costs spent was 23,000 KRW.

- Looking at the providers of individual care services, grandparents represented the majority at 67.3% in 2023.
 - Looking at the weekly average hours of individual care service usage, usage of MOGEF-provided caregivers dropped from the 3rd wave (2020) to the 5th wave (2022), then more than doubling to 32.4 hours in the 6th wave (2023).
 - The monthly average cost for individual care services was dominated every year by private caregiver services, albeit the figure has steadily declined from 817,000 KRW in the 2nd wave (2019) to 528,000 KRW in the 6th wave (2023).
- Looking at the daily average number of hours spent on in-home childrearing, the figure was around 8 hours on weekdays and 13 hours on weekends.
 - Time spent by young children on media use decreased slightly in 2023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standing at 1.16 hours on weekdays and 1.78 hours on weekends.
 - As of 2023, usage of toy rental services was 8.9% and book rental was 18.1%, both up from last year.
- As of 2023, take-up of parental training was 14.7%, with parental counseling and childrearing mentorship accounting for 21.3% and less than 1.0% respectively.
 - Parental training services mainly involved childrearing methods, while information regarding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dominated in the cases of parental counseling and childrearing mentorship.

3) Views Regarding Policies Addressing Low Fertility

- Among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respondents felt that the areas needing the most improvement were the following with regards to policies addressing low fertility rates: family leave / days off (53.6%), shorter work hours during childrearing (46.5%), and parental leave (46.4%).
 - Regarding ways of improving family care leave / days off, both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and expectant households felt the need (exceeding 50%) for improvements in 'greater number of available days / time of leave / days off'.

- Regarding ways of improving parental leave, both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52.0%) and expectant households (65.4%) prioritized 'greater cost support (higher income replacement)'.
 - Regarding ways of improving shorter work hours during childrearing, respondents prioritized '(government-enforced) mandatory use of available schemes' (50%).
 - Regarding ways of improving maternal leave, both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and expectant households prioritized 'greater cost support (higher income replacement)' and 'greater number of available days / time of leave / days off', with both items accounting for about 50%.
 - Regarding ways of improving flexible work arrangements, more than 50% of respondents prioritized '(government-enforced) mandatory use of available schemes'.
- Regarding the statement, "Households with children should own their own house", the degree of agreement was as follows: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3.3), expectant households (3.2), and childless households (3.1).
- Comparing the score among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to responses from 2018, there has been a slight increase from 3.1 to 3.3.
 - When asked about residential factors beneficial for childrearing, all household types (with young children, expectant, and childless) prioritized 'areas considered safe (free of harmful facilities, low crime rate, etc.)', with all responses exceeding 30%.
- When asked about which policies the government should prioritize to aid childbirth and childrearing, expectant and childless households considered 'longer maternal and parental leave', 'cost support (childrearing costs, educational costs, parental allowance, etc.)', and 'flexible work hours for childrearing parents' to be the most important, with responses ranging between the 40~50% interval.

-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had overall higher levels of life satisfaction compared to expectant and childless households, with higher satisfaction across facets such as financial situation, residential environs, family relationships, childrearing, social / amicable relationships, self-realization, and overall life satisfaction.
 - That said, childless households scored higher in the case of satisfaction with leisure activities.

3. In-depth Analyses Findings

1) Comparison of Spending between Households with and without Young Children

- Data used in this analysis consisted of microdata from the main survey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and childless households of the booster sample of the 'KICCE Spending Survey_2023'.
- As of 2023, the average monthly living expenditures among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was 3,775,000 KRW, some 225,000 KRW higher than that among childless households (3,550,000 KRW).
 - Looking at the distributions of the total living expenditures, that of childless households is slightly left-skewed with a long right-side tail. In contrast, the distribution for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more closely resembles the normal distribution.
- Across both types of households, the common significant factor behind spending was household income.
 - Even when various sub-items of expenditure among adult household members was set as the dependent variable, only household income was consistently significant across all sub-items.
 - Looking at estimates by sub-item, sub-items affected by the existence of children included spending on leisure, cultural activities and items, suggesting that adults in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faced higher constraints compared to those in childless households.
- Looking at the factors influencing 'expected childcare costs by child's

age' among both households with and without children, we found that household income was uniformly significant across all scenarios, as was the case for spending among adult household members.

- Among childless households, the expected childcare costs for various stages differed significantly at the 10% level, suggesting a somewhat low degree of significance.
- Looking at whether childbirth plans systematically affected the expected childcare costs among childless households, childbirth plans were not found to have any significant impact on expectations.
- Employing a logit model to ascertain whether expected childcare costs affected childbirth plans, none of the expected costs (at any age interval) were found to induce significant differences.
- This is attributable to a tendency among childless households to overestimate childcare costs compared to actual costs or expectations held by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It is not that the psychological burden concerning childcare costs has zero effect on childbirth plans; it is that childless households generally expected childcare costs to be higher, thus leading them to postpone or give up on childbirth plans.

2) The Effect of Parental Allowance on Childcare Costs and Choice of Services

- 2023 saw the introduction of the parental allowance scheme, aimed at alleviating the burden of childcare costs and focusing support to the earliest infancy stages. The program was subsequently boosted in 2024.
 - Data used in this analysis consisted of the main survey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of the 'KICCE Spending Survey_2023', for children born between 2021 ~ 2023.
- Across all subjects analyzed,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choice of in-cash payment included the number of income earners, household income, size of city of residence, and child's age in months.

- Looking only at children born in 2022 and later to ascertain factors affecting the preferred type of parental allowance, we found that the likelihood of choosing newborn parents' allowance (cash)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child's age in months.
- Looking at how take-up of parental allowance affected childcare costs per child, we found that significant factors included the number of income earners, household income, total number of household members, parents' education level, and the child's age in months.
- Repeating the analysis with various childcare cost sub-items as the dependent variable, we found that food costs were significantly positively associated with newborn parents' allowance (cash), parents' allowance (cash) for 1-year olds, parents' allowance (voucher) for 1-year olds.
 - Equipment/supply cost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negatively associated with take-up of parents' allowance (voucher) for 1-year olds. Compared to recipients of other types of the allowance, clothing costs were significantly higher among recipients of support for childcare center costs for children aged 0 to 1.
 - Personal maintenance costs (diapers, bathing goods, haircut fees, etc.) were significantly higher, at the 10% level, among recipients of newborn parents' allowance (cash), parents' allowance (cash + voucher), and parents' allowance (voucher) for 1-year olds.
 - The type of parental allowance was found to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health / medical costs, education and childcare costs, leisure and culture costs, communication costs, and insurance costs.

Drawing on the above findings, in this study we proposed the following measures for policy improvement.

- Support Policies for Alleviating Childcare Cost Burdens
 - Need for price administration targeting essential childcare goods
 - Strengthening support for after-school programs, for alleviating private education cost burdens

- Revising cost support systems with a focus on guaranteeing children's rights
 - Including family care allowance as a part of child allowance, introduction of a 'child allowance plus' scheme that accounts for costs per child, broadening the range of ages eligible for child allowance support
 - Revising cost support systems and ensuring operational time in step with the integration of education / childcare systems for young children
- Expanding Support Schemes for Childrearing Time
 - Improvement measures for expanding access to flexible work arrangements
 - Expanding support for childrearing time-related programs by encouraging businesses to participate
- Strengthening the actual efficacy of measures for addressing low fertility rates
 - Strengthening the actual efficacy of housing support measures
 - Discovering support measures for encouraging childless households' childbirth plans

Keyword: KICCE Spending Survey, childcare costs for young children, usage of childcare services, spending of childless households, efficacy of parental allowance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 - 부록 -

최효미·김나영·조미라·김태우·장경희·김병철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

- 부록 -

저 자 최효미, 김나영, 조미라, 김태우, 장경희, 김병철

연구진
연구책임자 최 효 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나 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조 미 라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태 우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장 경 희 (신성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자 김 병 철 (중국인민대학교 교수)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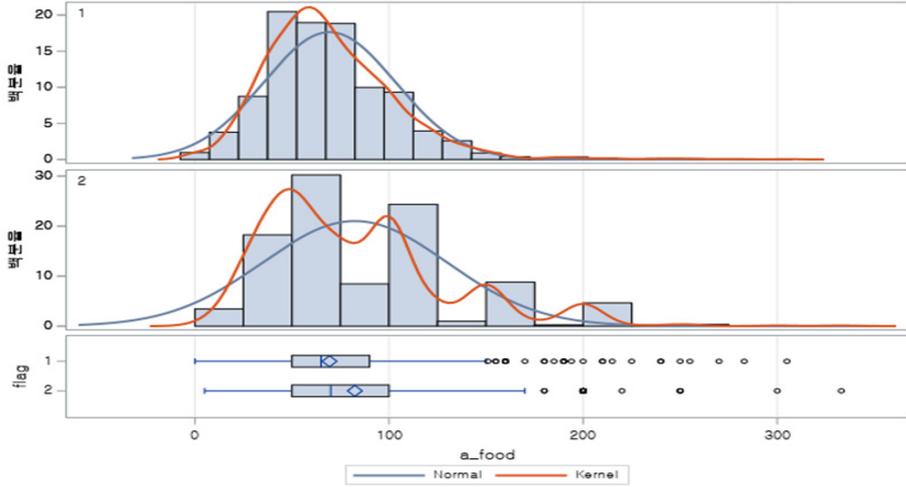
부록	411
부록 1. 순수한 농어촌 지역	411
부록 2. 7개장 비목별 지출액 분포 비교표	412
부록 3. 2024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419
보론	501
보론 1. 일본의 저출생 현황 및 영유아 가구 대상 육아지원 정책의 특징	501
보론 2. 중국의 저출생 현황 및 영유아 가구 대상 육아지원 정책의 특징	529

부록 1. 순수한 농어촌 지역

구분	시도	시군구
1	경기도(3)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2	강원도(11)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3	충청북도(8)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4	충청남도(7)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5	전라북도(8)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6	전라남도(17)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7	경상북도(12)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8	경상남도(9)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부록 2. 직장 비목별 지출액 분포 비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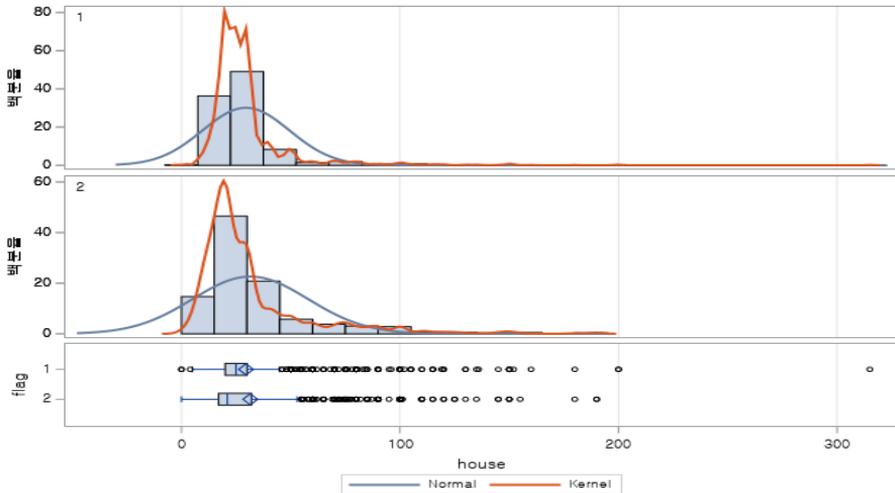
[부록그림 2-1] 성인의 식비 지출액 분포 (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성인 vs 무자녀 가구



주: 영유아 가구 전체 월평균 식비 지출액에서 양육비용 중 식비를 제외한 월평균 식비(성인의 월평균 식비)와 무자녀 가구 월평균 식비 지출액을 비교한 것으로, 상단(flag=1)이 영유아 가구의 분포, 하단(flag =2)이 무자녀 가구의 분포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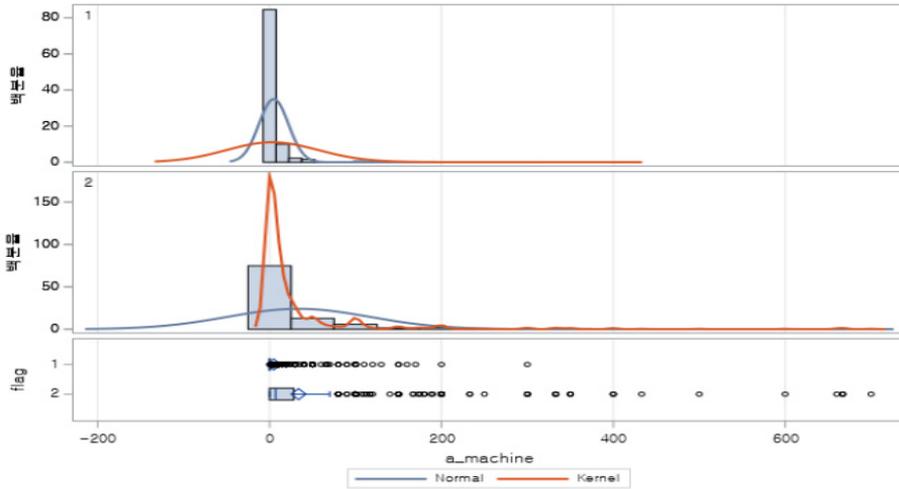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부록그림 2-2] 주거관리비 지출액 분포 (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주: 영유아 가구의 주거관리비는 양육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성인의 주거비와 전체 주거비가 동일한 값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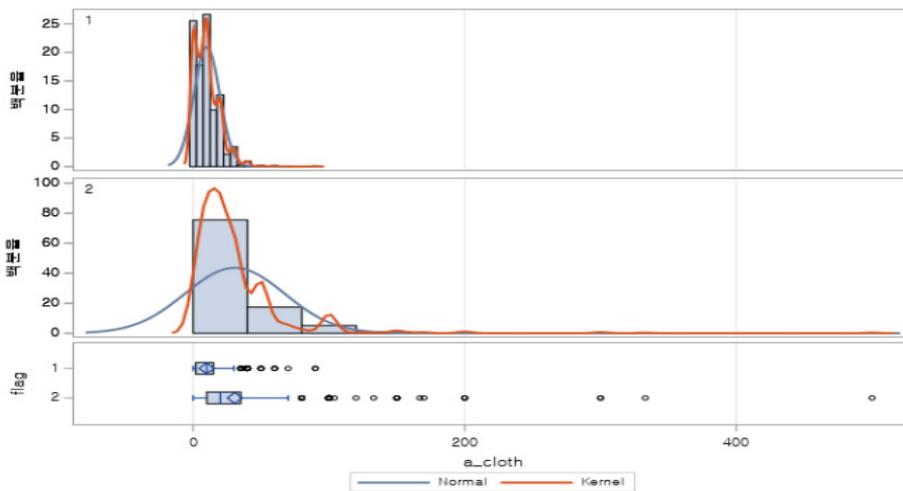
[부록그림 2-3] 성인의 기기/집기 지출액 분포 (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주: 영유아 가구 전체 월평균 기기/집기 지출액에서 양육비용 중 기기/집기 비용을 제외한 월평균 기기/집기(성인의 월평균 기기/집기)와 무자녀 가구 월평균 기기/집기 지출액을 비교한 것으로, 상단(flag=1)이 영유아 가구의 분포, 하단(flag =2)이 무자녀 가구의 분포를 나타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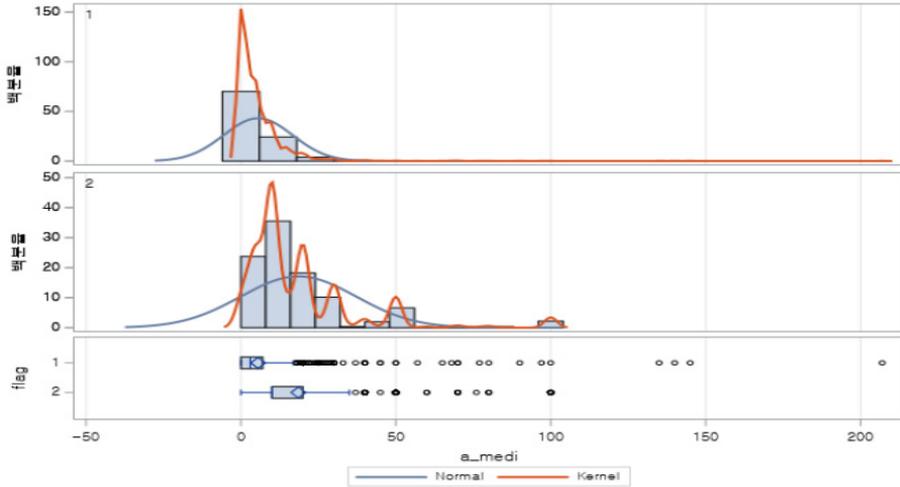
[부록그림 2-4] 성인의 피복비 지출액 분포 (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주: 영유아 가구 전체 월평균 피복비 지출액에서 양육비용 중 피복비 비용을 제외한 월평균 피복비(성인의 월평균 피복비)와 무자녀 가구 월평균 피복비 지출액을 비교한 것으로, 상단(flag=1)이 영유아 가구의 분포, 하단(flag =2)이 무자녀 가구의 분포를 나타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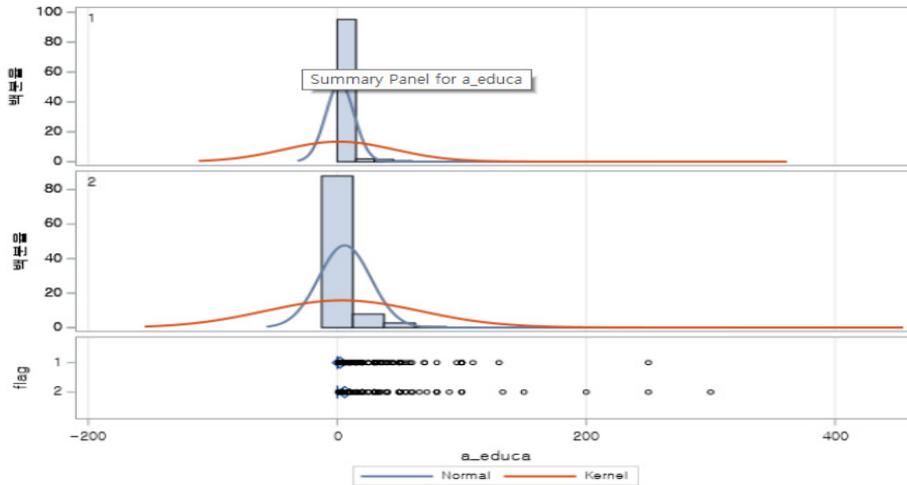
[부록그림 2-5] 성인의 보건의료비 지출액 분포 (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주: 영유아 가구 전체 월평균 보건의료비 지출액에서 양육비용 중 보건의료비를 제외한 월평균 보건의료비(성인의 월평균 보건의료비)와 무자녀 가구 월평균 보건의료비 지출액을 비교한 것으로, 상단(flag=1)이 영유아 가구의 분포, 하단(flag =2)이 무자녀 가구의 분포를 나타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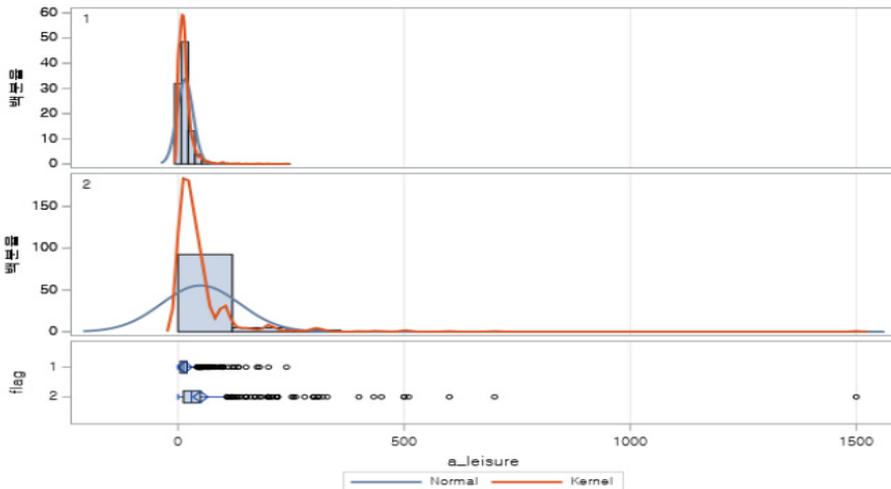
[부록그림 2-6] 성인의 교육보육비 지출액 분포 (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주: 영유아 가구 전체 월평균 교육보육비 지출액에서 양육비용 중 교육보육비를 제외한 월평균 교육보육비(성인의 월평균 교육보육비)와 무자녀 가구 월평균 교육보육비 지출액을 비교한 것으로, 상단(flag=1)이 영유아 가구의 분포, 하단(flag =2)이 무자녀 가구의 분포를 나타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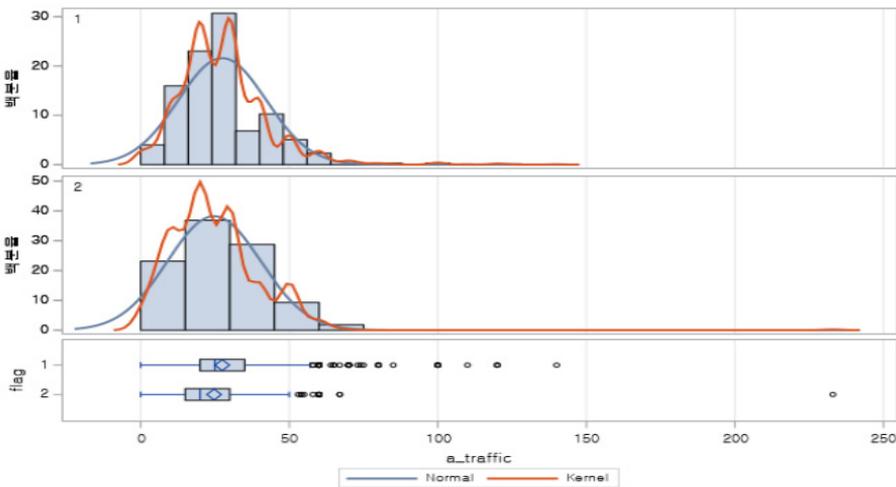
[부록그림 2-7] 성인의 여가문화생활비 지출액 분포 (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주: 영유아 가구 전체 월평균 여가문화생활비 지출액에서 양육비용 중 여가문화생활비를 제외한 월평균 여가문화생활비(성인의 월평균 여가문화생활비)와 무자녀 가구 월평균 여가문화생활비 지출액을 비교한 것으로, 상단(flag=1)이 영유아 가구의 분포, 하단(flag =2)이 무자녀 가구의 분포를 나타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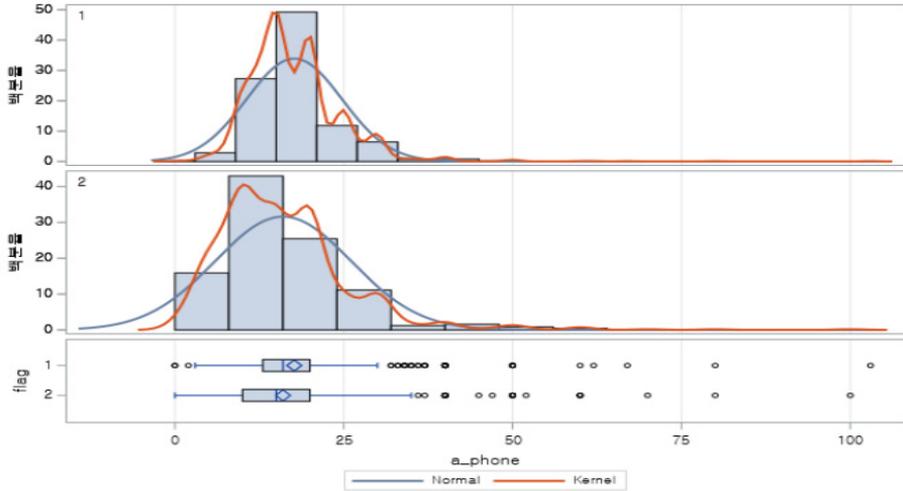
[부록그림 2-8] 성인의 교통비 지출액 분포 (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주: 영유아 가구 전체 월평균 교통비 지출액에서 양육비용 중 교통비를 제외한 월평균 교통비(성인의 월평균 교통비)와 무자녀 가구 월평균 교통비 지출액을 비교한 것으로, 상단(flag=1)이 영유아 가구의 분포, 하단(flag =2)이 무자녀 가구의 분포를 나타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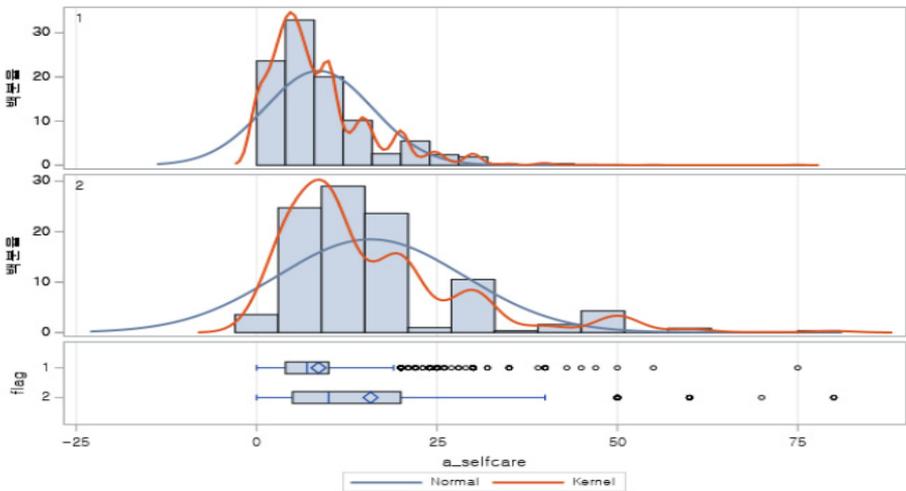
[부록그림 2-9] 성인의 통신비 지출액 분포 (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주: 영유아 가구 전체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에서 양육비용 중 통신비를 제외한 월평균 통신비(성인의 월평균 통신비)와 무자녀 가구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을 비교한 것으로, 상단(flag=1)이 영유아 가구의 분포, 하단(flag =2)이 무자녀 가구의 분포를 나타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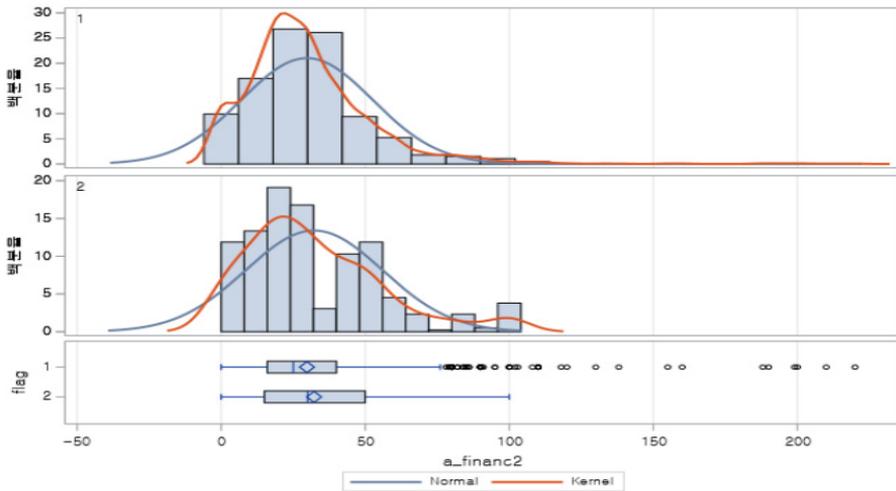
[부록그림 2-10] 성인의 개인유지비 지출액 분포 (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주: 영유아 가구 전체 월평균 개인유지비 지출액에서 양육비용 중 개인유지비를 제외한 월평균 개인유지비(성인의 월평균 개인유지비)와 무자녀 가구 월평균 개인유지비 지출액을 비교한 것으로, 상단(flag=1)이 영유아 가구의 분포, 하단(flag =2)이 무자녀 가구의 분포를 나타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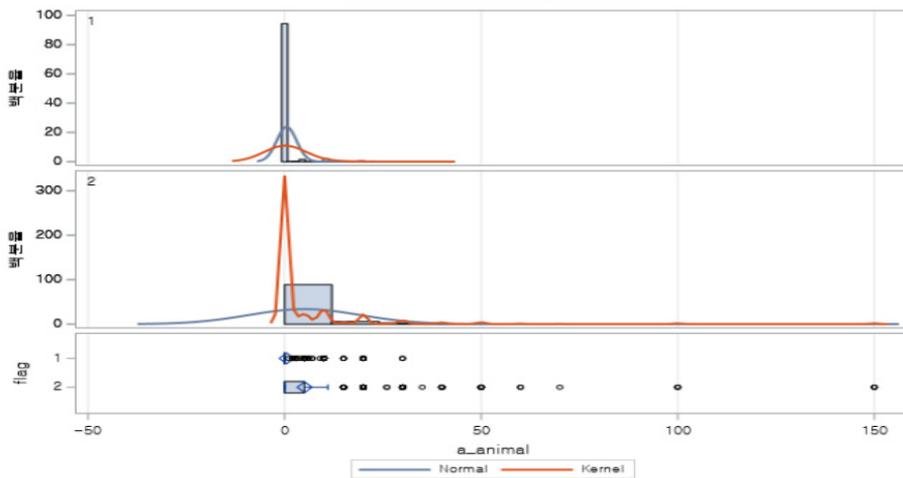
[부록그림 2-11] 성인의 보험 지출액 분포 (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주: 영유아 가구 전체 월평균 보험 지출액에서 양육비용 중 보험을 제외한 월평균 보험 지출액(성인의 월평균 보험 지출액)과 무자녀 가구 월평균 보험 지출액을 비교한 것으로, 상단(flag=1)이 영유아 가구의 분포, 하단(flag =2)이 무자녀 가구의 분포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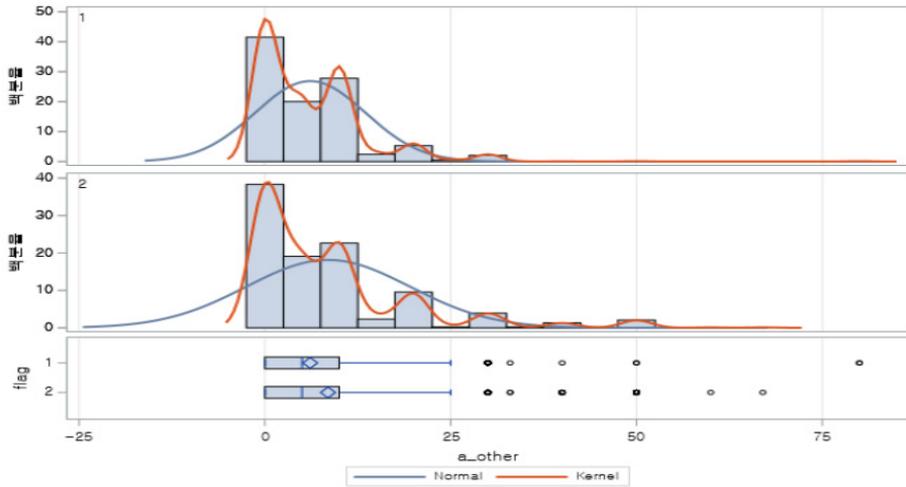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부록그림 2-12] 성인의 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지출액 분포 (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부록그림 2-13] 성인의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지출액 분포 (2023년, 명목비용) : 영유아 가구 vs 무자녀 가구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부록 3. 2024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2024년 일반과제인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조사(KICCE 소비실태조사_2024)」의 일환으로,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양육비 부담과 육아서비스 이용, 정부 지원금 수급 현황, 육아정책에 대한 선호 등에 대해 부모님들의 의견을 여쭙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개년에 걸쳐 1기 조사가 실시된 바 있으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동안 11기 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귀하의 의견이나 개인 정보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 제②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시·도	()구·군	()동·읍·면		
세부 주소					
모 취업 여부	① 취업 ② 휴직 중 ③ 학업 중 ④ 구직중 ⑤ 미취업 ⑥ 없음				
조사원 이름		조사원 ID		조사표 작성일	2022년 월 일
조사 방법	① 방문 ② 전화 ③ 유치 ④방문+전화 ⑤방문+유치 ⑥기타				



가구와 부모, 자녀 특성에 관한 질문

문0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문02. 귀댁의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명

문03. 귀댁 자녀의 출생연월과 성별은 각각 어떠합니까?

※ 가구 내 가장 나이가 많은 첫째 자녀부터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자녀 번호	구분	문3-1. 출생연월	문3-2. 성별	
			1. 남	2. 여
1	첫째 자녀	()년 ()월 생		
2	둘째 자녀	()년 ()월 생		
3	셋째 자녀	()년 ()월 생		
4	넷째 자녀	()년 ()월 생		
5	다섯째 자녀	()년 ()월 생		
6	여섯째 자녀	()년 ()월 생		

문06. [대체·신규·농어촌가구만 응답] 영유아 자녀의 부모님은 언제 결혼했습니까? [면접원 확인]
()년도

문07~08. 귀 닥의 영유아 부모님의 연령 등에 관해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문07. 모(어머니)	문08. 부(아버지)
① 출생연도	()년생	()년생
② 최종학력	1. 고졸 미만 2. 고졸 3. 전문대(2~3년제)졸업 4. 4년제 대학 졸업 5. 대학원 이상	1. 고졸 미만 2. 고졸 3. 전문대(2~3년제)졸업 4. 4년제 대학 졸업 5. 대학원 이상
③ 취업여부	1. 취업 2. 휴직 중 3. 학업 중 → 문08.부(아버지)로 4. 구직 중 → 문08.부(아버지)로 5. 미취업 → 문08.부(아버지)로	1. 취업 2. 휴직 중 3. 학업 중 → 문09로 4. 구직 중 → 문09로 5. 미취업 → 문09로
④ 직업군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10. 군인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10. 군인
⑤ 근로 형태	1. 임금근로자 2.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고용주 등) 3. 무급가족종사자*(18시간 이상 근로만 응답)	1. 임금근로자 2.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고용주 등) 3. 무급가족종사자*(18시간 이상 근로만 응답)
⑥ 노동시간*	주당 평균 () 시간 → 36시간 미만인 경우 ⑥-1로	주당 평균 () 시간 → 36시간 미만인 경우 ⑥-1로
⑥-1. 단시간 근로이유	1주 36시간 미만 일하는 이유 1. 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미만	1주 36시간 미만 일하는 이유 1. 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미만

구분	문07. 모(어머니)	문08. 부(아버지)
*주당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만 응답	2. 건강 4. 가사 6. 본인이 위해서 7.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 8. 기타()	3. 육아 5. 통학 6. 본인이 위해서 7.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 8. 기타()
⑦ 비정규여부 (⑤ 근로형태 중 1. 임금근로자만 응답)	1. 정규직 2. 비정규직	1. 정규직 2. 비정규직
⑧ 이주민 여부	1. 예 (예시: 다문화, 결혼이민자, 귀화자) 2. 아니오	1. 예 (예시: 다문화, 결혼이민자, 귀화자) 2. 아니오

※ 무급가족종사자는 돈을 받지 않고, 일주일에 18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노동시간에는 가사 노동 등에 소요한 시간을 제외하고 일자리에서의 노동시간만을 응답하며, 야근, 휴일 노동 등 초과 노동시간도 합산하여 응답합니다.



1. 가구의 소득과 정책 수혜

문09. 귀댁의 자녀는 지금 아동수당을 받고 있습니까? 각 아동별로 현재 아동수당 수혜 여부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이란 만 8세 미만(0~95개월)의 모든 아동에게 한 명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이라면 신청 후 누구나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여섯째 자녀
1. 수혜경험 있음					
2. 수혜경험 없음					

문10. 귀댁에서 지난 1년간(2023.5.1.~2024.6.30.) 받으신 양육관련 공적 이전소득지원 확인을 위해 이용하신 기관과 지원 금액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 ※ 2023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이용하신 기관 유형에 표시해 주세요.
- ※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우 아이가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나 (야간)24시간 보육료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연령별 보육료 지원이 아닌 해당 보육료 지원에 표시해주세요.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 한군데만 표시해주세요.)
- ※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우 야간연장 보육료는 일반아동 시간당 4,000원(최대 월 24만원까지), 장애아동은 시간당 5,000원(최대 월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야간 연장 보육료를 지원받으신 경우 시간당 단가에 맞춘 지원 금액을 적어주세요.
- ※ 유치원 지원 금액은 아동의 **방과후수업 신청 과목 수에 따라 방과후 과정 지원금액**을 계산하여 적어주시고, 저소득층 대상 기타 실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금액을 합산하여 적어주세요.
-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을 하시는 경우에는 지원받으신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 ※ 금액은 반올림하여 천원 단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24년 부모급여 지원 금액('22년 이후 출생아)

연령	부모급여 종류		
	시설 미이용	시설 이용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만0세	(현금) 100만원	(바우처) 54만원+(현금) 46만원	(바우처) 전액
만1세	(현금) 50만원	(바우처) 47만5천원+(현금) 2만5천원	(바우처) 전액

'24년 가정양육수당 지원 금액

연령	일반가정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24개월 이상	10만원	15만 6천원	20만원
36개월 미만		12만 9천원	10만원
48개월 미만		10만원	
48개월~86개월 미만			

'24년 어린이집 보육료 등 지원 금액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4세반 (누리과정)	5세반 (누리과정)	
적용시기	('24.1.1~)	('24.1.1~)	('24.1.1~)	('24.1.1~)	('24.1.1~)	('24.3.1~)
보육료 (일반, 다문화, 야간보육)	540,000원	475,000	394,000	280,000	280,000	330,000
장애아 보육료	587,000					
24시간 보육료	810,000원	712,500원	591,000원	420,000원		

※ 5세의 경우 '24년 3월부터 5만원 보육료·유아학비 추가지원으로 기존 28만원에서 33만원으로 지원액 인상

'24년 유치원 유아학비 등 지원 금액

구분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3~4세반 (누리과정)	5세반 (누리과정)		3~4세반 (누리과정)	5세반 (누리과정)	
적용시기	('24.1.1~)	('24.1.1~)	('24.3.1~)	('24.1.1~)	('24.1.1~)	('24.3.1~)
유아학비	100,000원	100,000원	150,000원	280,000원	280,000원	330,000원
방과후 과정비	50,000원			70,000원		
저소득층 학비지원	없음			최대 200,000원		

※ 5세의 경우 '24년 3월부터 5만원 보육료·유아학비 추가지원으로 기존 28만원에서 33만원으로 지원액 인상

어린이집 연장형 보육료 지원 금액

야간 연장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일반아동	1시간당 4천원	월 24만원 (60시간)
장애아동	1시간당 5천원	월 30만원 (60시간)

※ 달별로 ①어린이집, ②유치원, ③가정양육수당, ④부모급여, ⑤아동수당 중에 받으신지원금을 택하고, 해당하는 내용에 표시하거나 지원받으신 금액을 기입해 주세요.

- 어린이집 지원, 유치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의 경우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어린이집 지원, 유치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중에서는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는 (기관 미이용 시)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해당 월의 아동의 월령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1 : 2022년 7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2023년 5월에는 월령이 10개월이었으며, 2024년 6월 기준 월령은 23개월입니다. 따라서, 아래 전체 기간 중 부모급여만 지급하는 아동입니다.

예2 : 반면, 2022년 3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2023년 5월에 월령이 14개월로 부모급여 지급 대상이었지만, 2024년 6월에는 월령이 27개월로 부모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수당은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됩니다.

구분		23년 5월	23년 6월	23년 7월	23년 8월	23년 9월	23년 10월	23년 11월	23년 12월	24년 1월	24년 2월	24년 3월	24년 4월	24년 5월	24년 6월		
첫째 자녀	기관 이용	- 24개월 이상 -															
		① 어린이집	만1~2세반	<input type="checkbox"/>													
			만3~5세반 (누리과정)	<input type="checkbox"/>													
			장애아 보육료	<input type="checkbox"/>													
			24시 보육료	<input type="checkbox"/>													
	(이용 시) 야간연장 지원비용	() 천원															
	② 유치원	국공립	<input type="checkbox"/>														
		사립	<input type="checkbox"/>														
		방과후/ 추가지원 비용	() 천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input type="checkbox"/>														
	수당 급여	③가정양육수당 (기관 미이용 시)	() 천원														
	- 0~23개월 -																
	④부모 급여	어린이집 바우처(+현금)	<input type="checkbox"/>														
		전액 현금	<input type="checkbox"/>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 8세 미만 모든 아동 -																	
⑤아동수당		<input type="checkbox"/>															

※ 달별로 ①어린이집, ②유치원, ③가정양육수당, ④부모급여, ⑤아동수당 중에 받으신지원금을 택하고, 해당하는 내용에 표시하거나 지원받으신 금액을 기입해 주세요.

- 어린이집 지원, 유치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의 경우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어린이집 지원, 유치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중에서는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는 (기관 미이용 시)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해당 월의 아동의 월령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1 : 2022년 7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2023년 5월에는 월령이 10개월이었으며, 2024년 6월 기준 월령은 23개월입니다. 따라서, 아래 전체 기간 중 부모급여만 지급하는 아동입니다.

예2 : 반면, 2022년 3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2023년 5월에 월령이 14개월로 부모급여 지급 대상이었지만, 2024년 6월에는 월령이 27개월로 부모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수당은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됩니다.

구분		23년 5월	23년 6월	23년 7월	23년 8월	23년 9월	23년 10월	23년 11월	23년 12월	24년 1월	24년 2월	24년 3월	24년 4월	24년 5월	24년 6월		
돌 째 자 녀	관 이 용	- 24개월 이상 -															
		① 어 린 이 집	만1~2세반	<input type="checkbox"/>													
			만3~5세반 (누리과정)	<input type="checkbox"/>													
			장애아 보육료	<input type="checkbox"/>													
			24시 보육료	<input type="checkbox"/>													
	(이용 시) 아간연장 지원비용	() 천원															
	② 유 치 원	국공립	<input type="checkbox"/>														
		사립	<input type="checkbox"/>														
		방과후/ 추가지원 비용	() 천원														
	수 당 급 여	③가정양육수당 (기관 미이용 시)	저소득층 유아학비	<input type="checkbox"/>													
			() 천원														
	- 0~23개월 -																
	④부 모 급 여	어린이집 바우처(+현금)	<input type="checkbox"/>														
		전액 현금	<input type="checkbox"/>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 8세 미만 모든 아동 -																	
⑤아동수당		<input type="checkbox"/>															

택1
체크

택1
체크

택1
체크

※ 달별로 ①어린이집, ②유치원, ③가정양육수당, ④부모급여, ⑤아동수당 중에 받으신지원금을 택하고, 해당하는 내용에 표시하거나 지원받으신 금액을 기입해 주세요.

- 어린이집 지원, 유치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의 경우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어린이집 지원, 유치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중에서는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는 (기관 미이용 시)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해당 월의 아동의 월령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1 : 2022년 7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2023년 5월에는 월령이 10개월이었으며, 2024년 6월 기준 월령은 23개월입니다. 따라서, 아래 전체 기간 중 부모급여만 지급하는 아동입니다.

예2 : 반면, 2022년 3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2023년 5월에 월령이 14개월로 부모급여 지급 대상이었지만, 2024년 6월에는 월령이 27개월로 부모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수당은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됩니다.

구분		23년 5월	23년 6월	23년 7월	23년 8월	23년 9월	23년 10월	23년 11월	23년 12월	24년 1월	24년 2월	24년 3월	24년 4월	24년 5월	24년 6월		
셋 째 자 녀	기관 이용	- 24개월 이상 -															
		① 어 린 이 집	만1~2세반	<input type="checkbox"/>													
			만3~5세반 (누리과정)	<input type="checkbox"/>													
			장애아 보육료	<input type="checkbox"/>													
			24시 보육료	<input type="checkbox"/>													
	(이용 시) 야간연장 지원비용	() 천원															
	② 유 치 원	국공립	<input type="checkbox"/>														
		사립	<input type="checkbox"/>														
		방과후/ 추가지원 비용	() 천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input type="checkbox"/>														
	수 당 급 여	③가정양육수당 (기관 미이용 시)	() 천원														
	④부 모 급 여	- 0~23개월 -															
		어린이집 바우처(+현금)	<input type="checkbox"/>														
		전액 현금	<input type="checkbox"/>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 8세 미만 모든 아동 -																	
⑤아 동 수 당	<input type="checkbox"/>																

※ 달별로 ①어린이집, ②유치원, ③가정양육수당, ④부모급여, ⑤아동수당 중에 받으신지원금을 택하고, 해당하는 내용에 표시하거나 지원받으신 금액을 기입해 주세요.

- 어린이집 지원, 유치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의 경우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어린이집 지원, 유치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중에서는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는 (기관 미이용 시)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해당 월의 아동의 월령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1 : 2022년 7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2023년 5월에는 월령이 10개월이었으며, 2024년 6월 기준 월령은 23개월입니다. 따라서, 아래 전체 기간 중 부모급여만 지급하는 아동입니다.

예2 : 반면, 2022년 3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2023년 5월에 월령이 14개월로 부모급여 지급 대상이었지만, 2024년 6월에는 월령이 27개월로 부모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수당은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됩니다.

구분		23년 5월	23년 6월	23년 7월	23년 8월	23년 9월	23년 10월	23년 11월	23년 12월	24년 1월	24년 2월	24년 3월	24년 4월	24년 5월	24년 6월		
넷째 자녀	기관 이용	- 24개월 이상 -															
		① 어린이집	만1~2세반	<input type="checkbox"/>													
			만3~5세반 (누리과정)	<input type="checkbox"/>													
			장애아 보육료	<input type="checkbox"/>													
			24시 보육료	<input type="checkbox"/>													
		(이용 시) 야간연장 지원비용	() 천원														
		② 유치원	국공립	<input type="checkbox"/>													
			사립	<input type="checkbox"/>													
			방과후/ 추가지원 비용	() 천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input type="checkbox"/>													
	수당 급여	③가정양육수당 (기관 미이용 시)	() 천원														
	④부모 급여	- 0~23개월 -															
		어린이집 바우처(+현금)	<input type="checkbox"/>														
		전액 현금	<input type="checkbox"/>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 8세 미만 모든 아동 -																	
⑤아동수당	<input type="checkbox"/>																

※ 달별로 ①어린이집, ②유치원, ③가정양육수당, ④부모급여, ⑤아동수당 중에 받으신지원금을 택하고, 해당하는 내용에 표시하거나 지원받으신 금액을 기입해 주세요.

- 어린이집 지원, 유치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의 경우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어린이집 지원, 유치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중에서는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는 (기관 미이용 시)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해당 월의 아동의 월령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1 : 2022년 7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2023년 5월에는 월령이 10개월이었으며, 2024년 6월 기준 월령은 23개월입니다. 따라서, 아래 전체 기간 중 부모급여만 지급하는 아동입니다.
예2 : 반면, 2022년 3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2023년 5월에 월령이 14개월로 부모급여 지급 대상이었지만, 2024년 6월에는 월령이 27개월로 부모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수당은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됩니다.

구분		23년 5월	23년 6월	23년 7월	23년 8월	23년 9월	23년 10월	23년 11월	23년 12월	24년 1월	24년 2월	24년 3월	24년 4월	24년 5월	24년 6월		
다 섯 째 자 녀	기 관 이 용	- 24개월 이상 -															
		① 어 린 이 집	만1~2세반	<input type="checkbox"/>													
			만3~5세반 (누리과정)	<input type="checkbox"/>													
			장애아 보육료	<input type="checkbox"/>													
			24시 보육료	<input type="checkbox"/>													
	(이용 시) 야간연장 지원비용	() 천원															
	② 유 치 원	국공립	<input type="checkbox"/>														
		사립	<input type="checkbox"/>														
		방과후/ 추가지원 비용	() 천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input type="checkbox"/>														
	수 당 급 여	③가정양육수당 (기관 미이용 시)	<input type="checkbox"/>														
			() 천원														
			- 0~23개월 -														
	④부 모 급 여	어린이집 바우처(+현금)	<input type="checkbox"/>														
		전액 현금	<input type="checkbox"/>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 8세 미만 모든 아동 -															
⑤아동수당		<input type="checkbox"/>															

※ 달별로 ①어린이집, ②유치원, ③가정양육수당, ④부모급여, ⑤아동수당 중에 받으신지원금을 택하고, 해당하는 내용에 표시하거나 지원받으신 금액을 기입해 주세요.

- 어린이집 지원, 유치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의 경우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어린이집 지원, 유치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중에서는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는 (기관 미이용 시)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해당 월의 아동의 월령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1 : 2022년 7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2023년 5월에는 월령이 10개월이었으며, 2024년 6월 기준 월령은 23개월입니다. 따라서, 아래 전체 기간 중 부모급여만 지급하는 아동입니다.

예2 : 반면, 2022년 3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2023년 5월에 월령이 14개월로 부모급여 지급 대상이었지만, 2024년 6월에는 월령이 27개월로 부모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수당은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됩니다.

구분		23년 5월	23년 6월	23년 7월	23년 8월	23년 9월	23년 10월	23년 11월	23년 12월	24년 1월	24년 2월	24년 3월	24년 4월	24년 5월	24년 6월		
여섯째 자녀	기관 이용	- 24개월 이상 -															
		① 어린이집	만1~2세반	<input type="checkbox"/>													
			만3~5세반 (누리과정)	<input type="checkbox"/>													
			장애아 보육료	<input type="checkbox"/>													
			24시 보육료	<input type="checkbox"/>													
		(이용 시) 야간연장 지원비용	() 천원														
		② 유치원	국공립	<input type="checkbox"/>													
			사립	<input type="checkbox"/>													
			방과후/ 추가지원 비용	() 천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input type="checkbox"/>													
	수당 급여	③가정양육수당 (기관 미이용 시)	() 천원														
	④부모 급여	- 0~23개월 -															
		어린이집 바우처(+현금)	<input type="checkbox"/>														
			전액 현금	<input type="checkbox"/>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 8세 미만 모든 아동 -																	
⑤아동수당	<input type="checkbox"/>																

- 문11. 귀댁에서 지난 1년간(2023.7.1.~2024.6.30.)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경험
이 있으신 경우, 자녀별로 육아휴직급여 총 수급액과 수급 기간을 응답해 주십시오.
- ※ 금액은 반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응답하되, 반올림하여 만원 미만인 경우 0원 처리해 주십시오.
 - ※ 육아휴직 수급 가능 기간은 자녀별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입니다.
 - ※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이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겹치지 않는 기간으로 합산하고, 수급액도 부모 모두의 급여액을 합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지급(상한액:월 150만원, 하한액:월 70만원).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300만원)하여 지급.
23년 12월까지 시행.
- ※ 6+6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450만원)하여 지급.
24년 1월부터 시행.
-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급.

구분	문11. 육아휴직급여 수혜 경험	문11-1. 육아휴직급여특례 수혜 경험 ※1,2번 중복응답 가능	문11-2. 총 수급액	문11-3. 총 수급기간
	첫째 자녀	1. 있음 → 문11-1로 2. 없음 → 문12로	1. 3+3 부모육아 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2. 6+6 부모육아 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3.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4. 해당없음	()만원
둘째 자녀	1. 있음 → 문11-1로 2. 없음 → 문12로	1. 3+3 부모육아 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2. 6+6 부모육아 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3.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4. 해당없음	()만원	총()개월
셋째 자녀	1. 있음 → 문11-1로 2. 없음 → 문12로	1. 3+3 부모육아 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2. 6+6 부모육아 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3.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4. 해당없음	()만원	총()개월
넷째 자녀	1. 있음 → 문11-1로 2. 없음 → 문12로	1. 3+3 부모육아 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2. 6+6 부모육아 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3.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4. 해당없음	()만원	총()개월
다섯째 자녀	1. 있음 → 문11-1로 2. 없음 → 문12로	1. 3+3 부모육아 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2. 6+6 부모육아 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3.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4. 해당없음	()만원	총()개월
여섯째 자녀	1. 있음 → 문11-1로 2. 없음 → 문12로	1. 3+3 부모육아 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2. 6+6 부모육아 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3.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4. 해당없음	()만원	총()개월

문12. [2022년 이후 출생아가 있는 가구만 응답] 귀댁에서 지난 1년간(2023.7.1.~2024.6.30.)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으신 경우, 자녀별로 총 수급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 첫만남 이용권

-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 후 12개월까지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바우처)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

※ 금액은 반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응답하되, 반올림하여 만원 미만인 경우 0원 처리해 주십시오.

구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여섯째 자녀
수혜 경험	1. 있음 2. 없음					
총 수급액	() 만원					

문13. 귀댁에서 지난 1년간(2023.7.1.~2024.6.30.) 지자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으신 경우, 자녀별로 지자체 출산지원금 총 수급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 금액은 반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응답하되, 반올림하여 만원 미만인 경우 0원 처리해 주십시오.

구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여섯째 자녀
수혜 경험	1. 있음 2. 없음					
총 수급액	() 만원					

문14.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현재 근무하는 직장으로부터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금(출산지원금, 육아수당 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있음 → 문14-1
2. 없음 → 문15

문14-1. 귀댁에서 지난 1년간(2023.7.1.~2024.6.30.) 현재 근무하는 직장으로부터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금(출산지원금, 육아수당 등)을 받은 적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총 얼마를 받으셨는지요?

※ 월마다 10만원씩 12개월 지원 받는 경우 : 지원 주기는 2. 월마다, 기간 내 총 수금액 120만원

※ 금액은 반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응답하되, 반올림하여 만원 미만인 경우 0원 처리해 주십시오.

구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여섯째 자녀
수혜 경험	1. 있음 2. 없음					
지원 주기	1.일시금 2.월마다 3.분기마다 4.연마다 5. 기타					
기간 내 총 수금액	() 만원					

문15. 귀댁의 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세후소득)'을 기입해 주십시오.

※ 지난 3개월 내 일시금으로 받으신 금액은 1/3하여 한 달 평균으로 환산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가구 전체 소득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설명
1. 본인 근로 및 사업 소득	() 만원	일을 하여 번 돈 (자영업자 및 고용주, 프리랜서 등도 매출에서 제반 비용을 제하고 순수하게 본인의 소득으로 남은 돈을 기입, 직장에서부터 받은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금을 포함)
2. 배우자 근로 및 사업 소득	() 만원	
3. 기타 가구원 근로 및 사업 소득	() 만원	
4. 부동산소득 및 금융 소득	() 만원	월세 등으로 받은 돈, 땅이나 건물을 빌려주고 생긴 소득, 주식거래 차익, 은행 이자 등 (본인이 납입·투자한 원금은 제외, 전세보증금 받은 금액 등도 제외)
5. 공적이전소득 및 사회 보험소득	() 만원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보육료 제외), 임신출산기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포함,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지원금(생계급여) 장애수당, 농어업 정부 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 등 각종 연금(기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및 장애연금), 생계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을 의미함 ※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학비는 제외하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6. 사적이전소득	() 만원	부모 또는 친인척 등으로부터 받은 돈
7. 기타소득	() 만원	보험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증여·상속, 축의금, 돌잔치 등으로 생긴 돈

※ 2022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없는 가구는 문18로 가십시오.

문16. [2022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부모급여 지급 대상)만 응답] 귀하는 지원받은 부모급여를 어디에 가장 많이 활용하셨습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 생활비에 보태서 사용하여 특정 비목을 구분하기 어렵더라도, 귀하가 생각하기에 추가 소득으로 소비가 가장 증가한 품목 등을 고려하시어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input type="radio"/>	2순위	<input type="radio"/>
-----	-----------------------	-----	-----------------------

1. 식비 (외식비 포함)
2. 피복비
3. 보건/의료비 (영양제 등 포함)
4. 교육/보육비 (교재교구비 포함)
5.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도서구입비)
6. 개인유지비 (목욕/세탁 용품, 이미용 서비스, 기저귀, 화장품, 화장지 등)
7. 저축 등 금융상품 (어린이보험, 저축 등)
8. 기기/집기
9. 기타 ()

문19. 귀하는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금 중 어떤 것이 가장 육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가지)

- | | |
|--|------------------------------|
| 1.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0-2세) | 5. 부모급여(영아수당) |
| 2.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3-5세) 지원
(누리과정 지원) | 6. 첫만남 이용권 |
| 3. 가정양육수당 | 7. 지자체 출산지원금 |
| 4. 아동수당 | 8. 기타 () |

문20. 2024년도에 받으신 연말정산(2023.1~2023.12에 대한 소득)에서,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원 금액의 액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원 대상자는 누구였습니까?

※ 여러 명의 아이를 대상으로 지원된 경우 자녀를 모두 응답해 주세요

구분		수혜 여부	지원 금액 인지 여부	지원 대상자 (모두 선택)
1. 자녀 세액 공제	1-1. 기본 공제 대상 자녀	1. 지원받음 2. 지원받지 않음	1. 지원 금액 알고 있음 2. 지원받았으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모르겠음	/
	1-2. 출산·입양 공제 대상 자녀	1. 지원받음 2. 지원받지 않음	1. 지원 금액 알고 있음 2. 지원받았으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모르겠음	
2. 자녀장려금		1. 지원받음 2. 지원받지 않음	1. 지원 금액 알고 있음 2. 지원받았으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모르겠음	1. 첫째 자녀 4. 넷째 자녀 2. 둘째 자녀 5. 다섯째자녀 3. 셋째 자녀 6. 여섯째자녀
3.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		1. 지원받음 2. 지원받지 않음	1. 지원 금액 알고 있음 2. 지원받았으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모르겠음	1. 첫째 자녀 4. 넷째 자녀 2. 둘째 자녀 5. 다섯째자녀 3. 셋째 자녀 6. 여섯째자녀



II. 가구의 지출 및 양육비용

문21~22. 귀댁의 생활비 지출 및 자녀 양육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3개월간의 ‘월평균 비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 금액은 반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응답하되, 반올림하여 작성한 금액이 총액을 넘지 않도록 하며, 반올림하여 만원 미만인 경우 0원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자녀별 지출 비용은 미취학 자녀뿐만 아니라 가구 내 전체 자녀에 대해 응답하며, 자녀별 지출 비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어렵하여 응답하되, 실질적인 비용 지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0원을 기입해 주십시오.
- ※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여 자녀별 금액이 나누어지지 않은 금액(예: 가족 외식비 등)도 자녀별로 어느 정도 비중을 고려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설명	문21. 가구 전체 소비 지출액	문22. 가구 소비액 중 자녀 별로 지출액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여섯째 자녀
1. 식비 (외식비 포함)	가족 전체가 함께한 외식비 등은 포함하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불한 급간식비 등은 제외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1. 외식비	부모가 직장에서 사먹는 점심값 포함, 커피값은 제외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2. 주거/관리비	관리비, 수도/광열비, 월세 등을 합산	만원	/					
2-1. 관리비 및 수도·광열비 등	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 포함. 단, 집 전체의 수리, 건축비 등은 제외. 수도, 전기, 가스요금 등 포함	만원						
2-2. 월세	주거를 위해 월마다 고정적으로 지출해야하는 비용(장사를 위한 임대료는 제외)	만원						
3. 기기/집기	가구, 가전 등의 구매 (아동 침대, 책상 등 포함)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3-1.PC/노트북/태블릿PC		만원	/					
4. 피복비	의류 및 신발, 가방 등 구매비 (자녀의 내의류 등 모두 포함), 침구류 포함	만원						

구분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설명	문21. 가구 전체 소비 지출액	문22. 가구 소비액 중 자녀 별로 지출액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여섯째 자녀						
5. 보건/의료비	병원, 약 구매비, 비타민이나 영양제, 건강보조제(홍삼, 한약 등 포함), 마스크 등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6. 교육/보육비	부모님의 교육비 포함, 자녀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비용, 개별 돌봄서비스 이용비용, 사교육 이용비용 등 교재교구 포함, 자녀 셔틀버스 비용, 육아도우미 비용, 자녀 돌봄의 대가로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등 포함 ※ 정부 지원금 제외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7.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완구(장난감, 모빌 등), 여가용 도서 구입비, 가족여행 등 포함 단, 교재교구는 교육비로 포함	만원	/											
7-1. 가족여행 등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간 경우, 사용한 비용 전액	만원												
7-2. 관람, 체험학습	영화, 스포츠, 공연, 박물관 관람 등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7-3. 완구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7-4. 도서구매	교재 교구는 제외. 아동 전집류 등은 포함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8. 교통비	자동차 유지/유류비, 대중교통비 포함. 자동차 구입비 제외. 자녀의 셔틀버스 비용은 교통비가 아닌 교육비에 포함.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9. 통신비	핸드폰 이용료, 전화요금, 인터넷 이용료, IPTV 및 케이블 TV 수신료 등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9-1. 휴대전화비	휴대폰 구입비 제외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0. 개인유지비 (생필품 포함)	목욕용품, 바디로션, 기저귀, 물티슈, 세탁용품, 주방용품, 화장지, 화장품, 키친타올, 미용 서비스 등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구분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설명	문21. 가구 전체 소비 지출액	문22. 가구 소비액 중 자녀 별로 지출액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여섯째 자녀
11. 금융상품 (저축 및 보험 납입금)	이자, 저축, 보험 등(자녀 명의 포함)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1-1. 저축	예금, 적금 등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1-2. 보험	저축성 및 상해 등 각종 보험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1-3. 원금 상환	주택 및 대출 관련 원금 상환액	만원	/					
11-4. 이자 상환	주택 및 대출 관련 이자 납입금	만원						
11-5. 주식, 암호 화폐	주식, 암호화폐(코인) 투자금	만원						
12. 이전 지출	부모님 용돈, 경조금 등 (자녀 돌봄의 대가로 드리는 용돈은 보육비로 분류하고 제외, 가족 내 이전지출은 제외)	만원						
13. 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	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 ※ 반려동물 입양비용은 제외함	만원						
14.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주류 및 기호식품, 가사도우미 등 ※ 육아도우미는 교육/보육비 에 포함	만원						

문34-1. 그렇다면, 이사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 아이를 돌봐줄 친인척(혹은 아이돌보미)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
2. 엄마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살기 위해서
3. 아빠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살기 위해서
4. 지역 내 보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질과 접근성 등이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
5.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
6.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유해시설이 적거나, 자연친화적, 공원/놀이시설이 가까워서)
7. 아이를 키우기에 적당한 규모(협소하지 않은) 집에 살기 위해서
8. 기타()

문35.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주거지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환경이 좋은 곳
2. 영유아기 자녀 보육을 위한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접근성이 좋은 곳
3. 주거지역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유해시설이 없거나, 범죄율이 낮은 지역 등)
4. 아동관련 인프라가 많은 곳(공연장, 문화센터, 도서관, 종합병원, 소아과 등)
5. 주거 밀집지역
6. 기타()

문36.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는 귀하와 귀댁의 자녀(들)가 이용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충분한 수준은 거주 지역 인근에 해당 서비스 및 인프라의 유무, 이용가능한 질적수준, 접근성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임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불충분	←	←	보통	→	→	매우 충분	
36-1. 보육, 교육, 돌봄 기관 및 서비스	1) 영아자녀(0-35개월)를 돌봐줄 어린이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유아자녀(3세반 이상-미취학)를 돌봐줄 기관 (어린이집/유치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초등자녀를 방과 후에 돌봐줄 공공 기관 (늘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자녀 학원 등 사교육 기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급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관 (긴급 돌봄, 시간제 서비스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가정방문형 아이돌보미 등 개별돌봄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육아지원서비스(부모교육, 장난감도서관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6-2. 문화 및 놀이시설 및 서비스	1) 놀이터, 공원, 녹지 등 야외 놀이 공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도서관 등 공공 시설 및 관련 서비스 (이동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영화관, 체육관 등 문화 시설 및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체험활동(예: 박물관, 직업체험 등) 공간 및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키즈카페 등 실내 놀이 공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6-3. 보건/의료 시설	1) 소아청소년과 병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보건소 등 공공 의료기관(보건지소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응급 의료기관(응급실 및 종합병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약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6-4. 지역 공동체	1) 육아관련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사람 혹은 공동체 (오프라인 부모 모임 등, 공동육아나눔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지역 중심의 온라인 소통방 (지역맘카페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36-1-1~36-3-1. [문36에서 서비스 및 인프라가 불충분(1~3점)하다고 응답한 경우]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는 귀하와 귀하의 자녀(들)가 이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이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한가지)							
		보기 :							
		1. 시설이나 서비스가 아예 없음 2.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함 3. 서비스의 질이 나쁨 4.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음 5. 접근성이 좋지 않음 6. 이용하고 싶은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움 7. 이용 비용이 부담되어 8. 기타()							
36-1-1. 보육, 교육, 돌봄 기관 및 서비스	1) 영아자녀(0~35개월)를 돌봐줄 어린이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⑧ 기타 :)							
	2) 유아자녀(3세반 이상-미취학)를 돌봐줄 기관 (어린이집/유치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⑧ 기타 :)							
	3) 초등자녀를 방과 후에 돌봐줄 공공 기관 (늘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⑧ 기타 :)							
	4) 자녀 학원 등 사교육 기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⑧ 기타 :)								
5) 급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관 (긴급 돌봄, 시간제 서비스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⑧ 기타 :)								
6) 가정방문형 아이돌보미 등 개별돌봄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⑧ 기타 :)								
7)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육아지원서비스 (부모교육, 장난감도서관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⑧ 기타 :)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이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한가지)						
		보기 : 1. 시설이나 서비스가 아예 없음 2.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함 3. 서비스의 질이 나쁨 4.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음 5. 접근성이 좋지 않음 6. 이용하고 싶은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움 7. 이용 비용이 부담되어 8. 기타()						
36-2-1. 문화 및 놀이시설 및 서비스	1) 놀이터, 공원, 녹지 등 야외 놀이 공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기타 :)						
	2) 도서관 등 공공 시설 및 관련 서비스 (이동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기타 :)						
	3) 영화관, 체육관 등 문화 시설 및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기타 :)							
	4) 체험활동(예: 박물관, 직업체험 등) 공간 및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기타 :)							
	5) 키즈카페 등 실내 놀이 공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기타 :)							
36-3-1. 보건/의료 시설	1)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기타 :)						
	2)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기타 :)						
	3) 보건소 등 공공 의료기관(보건지소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기타 :)							
	4) 응급 의료기관(응급실 및 종합병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기타 :)							
	5) 약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기타 :)							

문37. **[농어촌에 거주하는 응답자만 응답]**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부족 이 외에 귀하가 농어촌에 살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 항목별로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그렇다	←	보통	→	전혀 그렇지 않다
1) 일자리 부족과 소득 활동의 어려움	1	2	3	4	5
2) 자녀의 또래 친구가 많지 않음	1	2	3	4	5
3) 육아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과 인식 자체가 높지 않음 (육아 친화적인 문화 미조성)	1	2	3	4	5
4)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 및 안전·치안이 열악 함 (도로, 교통, 노후시설, 유해시설 등)	1	2	3	4	5
5) 육아용품 구매가 어려움	1	2	3	4	5

문38. **[농어촌에 거주하는 응답자만 응답]** 귀하는 농어촌에 살면서 아이를 키우는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input type="radio"/>	2순위	<input type="radio"/>
-----	-----------------------	-----	-----------------------

1. 아이의 신체 건강이나 정서 발달에 좋은 자연 친화적 환경
2. 낮은 주거 비용 부담 및 생활비 부담이 적음 (주택 가격 등)
3. 친인척의 도움을 받기 용이함
4. 아이를 함께 돌봐주는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5.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공적 지원금 (출산 지원금, 농어촌 가정 양육수당 등)
6. 육아서비스 및 기관 이용 시 낮은 경쟁률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대기 등)
7.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시설이 적음 (여관, 술집 등)
8. 특별한 이점은 없음
9. 기타 ()



IV. 영유아 가구의 개별 돌봄 서비스 이용

[개별 돌봄 서비스]

문39. 귀댁 자녀를 위해 최근 3개월 내 다음의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 문39-1로
2. 아니오 → 문40(26페이지)로

〈개별돌봄서비스 종류〉

- | | |
|---|--------------------------------------|
| ①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여성가족부 및 기타 공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포함) | ② 민간 육아도우미
(학습시터, 놀이시터 등도 포함) |
| ③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등) | ④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아동의 삼촌, 이모, 고모 등) |

문39-1. 이용하고 계신 개별돌봄서비스 각각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는 누구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선택하여 번호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이용하고 계신 개별돌봄서비스에 대해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자녀의 외할머니가 오전에, 친할머니가 오후에 자녀를 돌보아주시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각각 '③조부모' 돌봄으로 적어 주십시오.

※ 학습(혹은 놀이)과 돌봄서비스를 결합하여 시간제로 아이를 돌보아주는 서비스(자란*, **약어, 핀덴** 등)를 이용하는 경우는 민간 육아도우미로 응답해 주십시오. 다른 경로로 여러 명의 도우미를 활용하는 경우 각각을 모두 구분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문39-2.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돌보고 있는 자녀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문39-3.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 비용은 월 평균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만 응답해 주십시오. 별도로 비용 지불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0'을 적어주십시오.

문39-4. 해당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가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주당 몇 시간**입니까?

※ 자녀를 직접적으로 돌보지 않고 가사일을 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문39-1 보기]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①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여성가족부 및 기타 공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포함) ② 민간 육아도우미
 ③ 조부모 ④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문39-1. 개별돌봄 서비스제공자	문39-2. 동시 돌봄 자녀 (모두 선택)	문39-3. 이용 비용	문39-4. 돌봄서비스제공의 노동시간
(<input type="radio"/>)	1. 첫째 자녀 4. 넷째 자녀 2. 둘째 자녀 5. 다섯째 자녀 3. 셋째 자녀 6. 여섯째 자녀	월 평균 ()원	주당 평균 ()시간
(<input type="radio"/>)	1. 첫째 자녀 4. 넷째 자녀 2. 둘째 자녀 5. 다섯째 자녀 3. 셋째 자녀 6. 여섯째 자녀	월 평균 ()원	주당 평균 ()시간
(<input type="radio"/>)	1. 첫째 자녀 4. 넷째 자녀 2. 둘째 자녀 5. 다섯째 자녀 3. 셋째 자녀 6. 여섯째 자녀	월 평균 ()원	주당 평균 ()시간
(<input type="radio"/>)	1. 첫째 자녀 4. 넷째 자녀 2. 둘째 자녀 5. 다섯째 자녀 3. 셋째 자녀 6. 여섯째 자녀	월 평균 ()원	주당 평균 ()시간
(<input type="radio"/>)	1. 첫째 자녀 4. 넷째 자녀 2. 둘째 자녀 5. 다섯째 자녀 3. 셋째 자녀 6. 여섯째 자녀	월 평균 ()원	주당 평균 ()시간

→ 문39-1에서 하나라도 ② 민간 육아도우미 선택 시 문39-5 응답

문39-5. [문39-1에 ②를 응답한 경우] 민간육아도우미는 어떤 경로로 구하셨습니까?

1. 사설인력전문소개업소
2. 지인소개
3. 구직광고(지역신문 등)
4. 인터넷 기반 돌봄서비스플랫폼 (*씨터, *터넷, 자란*, **악어, 핀덴** 등)
5. 여성인력 교육·훈련기관
6. 기타



V. 가정 내 부모 직접 돌봄 및 부모 지원 서비스

[가정 내 양육 지원_부모 직접 돌봄]

문40. 최근 한 달 동안(만약 방학 기간이라면 방학 전 한 달) 귀댁의 전체 자녀들의 가장 평균적인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부모가 직접 돌보지 않더라도 아이가 가정 내 머물렀던 시간을 기입해 주십시오.

※ 자녀의 야간 수면 시간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해당 자녀	문40-1. 가정내 양육시간	문40-2. 가정내 양육시간
첫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둘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셋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넷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다섯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여섯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문41. 귀댁의 자녀가 가정 내 머무르는 동안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함께 계셨던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최근 한 달 동안 귀댁의 전체 자녀들의 가장 평균적인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응답해 주십시오.

해당 자녀	문41-1. 부모직접돌봄시간	문41-2. 부모직접돌봄시간
첫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둘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셋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넷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다섯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여섯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문44. 귀하는 최근 3개월 동안 다음과 같은 육아 관련 대여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으십니까?

<육아서비스 종류> 1. 장난감 대여 2. 도서 대여

문44-1. 해당 육아서비스(혹은 활동)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문44-2. 해당 육아서비스(혹은 활동)를 제공한 곳은 어디입니까? 서비스를 이용하셨던 기관에 대해 모두 골라 주십시오.

문44-3. 해당 육아서비스(혹은 활동)를 이용하는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은 경우 0원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문44-4. 해당 육아서비스(혹은 활동)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육아 서비스 종류	문44. 이용여부	문44-1. 이용 빈도	문44-2. 제공기관 (중복 선택 가능)	문44-3. 이용 비용	문44-4. 이용 만족도
장난감 대여	1.이용함 → 2.이용안함	1. 매일 2. 주 3~4회 3. 주 1~2회 4. 격주 1회 5. 월 1회 정도 6. 분기별 1회	1.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2. 육아종합지원센터 3.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4.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 기관 5. 지역아동센터 6. 민간사설업체(민간기업, 사설업체) 7. 기타 ()	월 ()만원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도서 대여	1.이용함 → 2.이용안함	1. 매일 2. 주 3~4회 3. 주 1~2회 4. 격주 1회 5. 월 1회 정도 6. 분기별 1회	1.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2. 육아종합지원센터 3.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4.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 기관 5. 지역아동센터 6. 민간사설업체(민간기업, 사설업체) 7. 기타 ()	월 ()만원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문45. 귀하는 최근 3개월 동안 가정에서 육아 물품 제공 서비스(혹은 활동)를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육아서비스 종류〉

1. 교재/교구 물품 꾸러미 (장난감, 도서, 놀이키트, 만들기 키트, 문구류 등)

문45-1. 해당 육아서비스(혹은 활동)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문45-2. 해당 육아서비스(혹은 활동)를 제공한 곳은 어디입니까? 서비스를 이용하셨던 기관에 대해 모두 골라 주십시오.

문45-3. 해당 육아서비스(혹은 활동)를 이용하는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은 경우 0원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문45-4. 해당 육아서비스(혹은 활동)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육아 서비스 종류	문45. 이용여부	문45-1. 총 이용 횟수	문45-2. 제공기관 (중복 선택 가능)	문45-3. 이용비용	문45-4. 이용 만족도
교재/교구 물품 꾸러미	1.이용함 → 2.이용안함	최근 3개월간 총 ()회	1.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2. 육아종합지원센터 3.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4.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 기관 5.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6. 민간사설업체(민간기업, 사설업체) 7. 기타 ()	월 ()만원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문46. 귀하는 장난감이나 도서 대여, 육아 꾸러미 제공 등과 같은 육아 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부가 우선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input type="radio"/>	2순위	<input type="radio"/>
-----	-----------------------	-----	-----------------------

1. 대여 기관이나 서비스 제공 기관 접근성이 개선되었으면 (배송 서비스 포함)
2. 부모가 아이의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이나 지도서 등이 함께 제공되었으면
3. 물품/프로그램 활용법을 쌍방향 소통이 되는 형태로 제공해 줬으면 (온라인 수업 포함)
4. 물품 품질이나 프로그램 내용이 좀 더 질적으로 개선되었으면
5. 물품/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었으면
6. 소독 및 위생 관리가 철저히 되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었으면
7.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었으면
8. 기타 ()

항목		부모교육	부모 상담	육아 멘토 (예: 보육반장 등)
문47. 이용여부		1.이용함 2.이용안함	1.이용함 2.이용안함	1.이용함 2.이용안함
문47-1. 이용횟수		총 () 회	총 () 회	총 () 회
문47-2. 제공기관 (보기 참조)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문47-3. 비대면 서비스 여부		1.대면 2.비대면 3.대면+비대면	1.대면 2.비대면 3.대면+비대면	1.대면 2.비대면 3.대면+비대면
문47-4. 서비스 내용 (보기 참조)	1순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순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문47-5. 유료서비스 여부		1.유료 2.무료	1.유료 2.무료	1.유료 2.무료
문47-6. 만족도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문48. 귀하는 부모교육이나 상담 등과 같은 부모 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부가 우선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input type="radio"/>	2순위	<input type="radio"/>
-----	-----------------------	-----	-----------------------

- | | |
|----------------------|-------------------------------------|
| 1. 일대일 서비스 확대(맞춤서비스) | 7. 서비스에 대한 홍보 강화 |
| 2. 쌍방향 서비스 확대 | 8.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간대 확대 혹은 변경 |
| 3. 프로그램 확대 | 9.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
| 4. 서비스 제공 기관 접근성 개선 | 10. 기타 () |
| 5.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지원 강화 | 11. 개선 필요 사항 없음 |
| 6.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 |



VI. 육아 시간 지원 정책 활용과 의견

※ 문49~52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2023.7.1.~2024.6.30.)까지 임금 근로자로 일자리가 있었던 본인/배우자의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자영업자 및 고용주, 프리랜서는 제외)

※ 일자리가 없었던 경우, 자영업자 및 고용주 프리랜서는 문53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문07~08. 부모 근로형태 확인

구분	문07. 모(어머니)	문08. 부(아버지)
⑤ 근로 형태	1. 임금근로자 2.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프리랜서, 고용주 등) 3. 무급가족종사자* (18시간 이상 근로만 응답)	1. 임금근로자 2.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프리랜서, 고용주 등) 3. 무급가족종사자* (18시간 이상 근로만 응답)

문49-1~49-2.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2023.7.1.~2024.6.30.)까지 귀책 영유아의 부모님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이용한 제도는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문49-1. 모(어머니)		문49-2. 부(아버지)	
1. 출산휴가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2. 육아휴직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3.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1. 있음 → 주당 ()시간 으로 단축	2. 없음	1. 있음 → 주당 ()시간 으로 단축	2. 없음

문49-3~49-4.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 응답] 해당 제도를 활용한 것이 육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제도를 활용한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구분	문49-3. 모(어머니)					문49-4. 부(아버지)				
	매우 도움됨		보통		전혀 도움되지 않음	매우 도움됨		보통		전혀 도움되지 않음
	1	2	3	4	5	1	2	3	4	5
1. 출산휴가										
2. 육아휴직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50-1~50-2.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2023.7.1.~2024.6.30.)까지 귀댁의 영유아 부모님은 영유아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이나 휴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용하셨다면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휴직만 응답해 주십시오.)

1.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 구성원(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 연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
2. 가족돌봄휴가제도: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 연 최대 20일(취약계층과 한 부모 가정은 최대 25일)까지 사용 가능.
3.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가족 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을 위해 주당 15~30시간만 일하는 경우. 단축기간은 1년이며, 연장은 총 단축기간 3년(단, 학업은 1년) 범위 내에서 1회 가능.

구분	문50-1. 모(어머니)	문50-2. 부(아버지)
1. 가족돌봄휴직	1. 있음 → 총()일 2. 없음	1. 있음 → 총()일 2. 없음
2.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 휴가 포함)	1. 있음 → 총()일 2. 없음	1. 있음 → 총()일 2. 없음
3.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1. 있음 → 주당 () 시간으로 단축 2. 없음	1. 있음 → 주당 () 시간으로 단축 2. 없음

문50-3~50-4.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 응답] 해당 제도를 활용한 것이 육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구분	문50-3. 모(어머니)					문50-4. 부(아버지)					
	매우 도움됨	보통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매우 도움됨	보통			전혀 도움 되지 않음	
	1	2	3	4	5	1	2	3	4	5	
1. 가족돌봄휴직											
2.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 휴가 포함)											
3.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문51-1~51-4. 자녀 돌봄을 위해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육아 시간 지원 제도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귀하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2023.7.1.~2024.6.30.)까지 해당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문49~50에서 응답한 법적 보장 제도 및 휴가는 제외

[모(어머니)]

구분	문51-1. 제도 유무(어머니)	문51-2. 이용 경험 유무(어머니)
1. 근로시간 단축 지원 (법적 보장 기간 이상)	1. 있음 → 문51-2 2. 없음 3. 모르겠음	1. 있음 → 주당 ()시간 으로 단축 2. 없음
2. 육아 휴직 (법적 보장 기간 이상)	1. 있음 → 문51-2 2. 없음 3. 모르겠음	1. 있음 2. 없음
3. 자녀돌봄 휴가 (선생님 면담, 어린이집 행사 참여 등을 위한 특별휴가)	1. 있음 → 문51-2 2. 없음 3. 모르겠음	1. 있음 2. 없음

[부(아버지)]

구분	문51-3. 제도 유무(아버지)	문51-4. 이용 경험 유무(아버지)
1. 근로시간 단축 지원 (법적 보장 기간 이상)	1. 있음 → 문51-4 2. 없음 3. 모르겠음	1. 있음 → 주당 ()시간 으로 단축 2. 없음
2. 육아 휴직 (법적 보장 기간 이상)	1. 있음 → 문51-4 2. 없음 3. 모르겠음	1. 있음 2. 없음
3. 자녀돌봄 휴가 (선생님 면담, 어린이집 행사 참여 등을 위한 특별휴가)	1. 있음 → 문51-4 2. 없음 3. 모르겠음	1. 있음 2. 없음

문51-5~51-6.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 응답]** 해당 제도를 활용한 것이 육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구분	문51-5. 모(어머니)					문51-6. 부(아버지)				
	매우 도움 됨		보통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매우 도움 됨		보통		전혀 도움 되지 않음
	1	2	3	4	5	1	2	3	4	5
1. 근로시간 단축 지원 (법적 보장 기간 이상)										
2. 육아 휴직 (법적 보장 기간 이상)										
3. 자녀돌봄 휴가 (선생님 면담, 어린이 집 행사 참여 등을 위한 특별휴가)										

문52-1~52-2.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2023.7.1.~2024.6.30.)까지 귀댁의 영유아 부모님은 아래에 제시된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이용한 제도는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유연근무제도 유형〉	
1. 재택근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회사의 통신 회선으로 연결된 기기를 통해 업무
2. 시차출퇴근:	하루 중 출퇴근 시간 조절하여 업무
3. 선택적 근무시간제: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결정
4. 원격근무:	사무실이 아닌 외부 장소에서 컴퓨터나 기기를 활용해 근무
5.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시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
6. 탄력근무제 :	일이 많은 시기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적은 시기의 근로시간을 줄여 소정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로, 근로일과 근로시간대가 정해지면 모든 근로자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근무
7. 기타 유형(재량근무 등)	
	* 재량근무 : 소정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가입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

구분	문52-1. 모(어머니)		문52-2. 부(아버지)	
1. 재택근무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2. 시차출퇴근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3. 선택적 근무시간제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4. 원격근무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5.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6. 탄력적 근무제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7. 기타 유형(재량근무 등)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문52-3~52-4.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 응답]** 해당 제도를 활용한 것이 육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구분	문52-3. 모(어머니)					문52-4. 부(아버지)				
	매우 도움됨		보통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매우 도움됨		보통		전혀 도움 되지 않음
	1	2	3	4	5	1	2	3	4	5
1. 재택근무										
2. 시차출퇴근										
3. 선택적 근무시간제										
4. 원격근무										
5. 근로시간 단축 근무제										
6. 탄력적 근무제										
7. 기타 유형(재량 근무 등)										

문52-5~52-6.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에 응답] 해당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유 보기 :

- | | |
|-----------------------|----------------------------|
| 1. 회사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 | 5. 나중에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 (승진 등) |
| 2. 제도는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 6. 사용 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
| 3.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 7.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 4.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 8. 기타 |

구분	문52-5. 모(어머니)	문52-6. 부(아버지)																																		
1. 재택근무	<table border="1"> <tr><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d>7</td><td>8</td></tr> <tr><td colspan="4"></td><td>↓</td><td colspan="4"></td></tr> </table>	1	2	3	4	5	6	7	8					↓					<table border="1"> <tr><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d>7</td><td>8</td></tr> <tr><td colspan="4"></td><td>↓</td><td colspan="4"></td></tr> </table>	1	2	3	4	5	6	7	8					↓				
1	2	3	4	5	6	7	8																													
				↓																																
1	2	3	4	5	6	7	8																													
				↓																																
[ⓐ 기타 선택한 경우만 주관식 응답]	기타 ()	기타 ()																																		
2. 시차출퇴근	<table border="1"> <tr><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d>7</td><td>8</td></tr> <tr><td colspan="4"></td><td>↓</td><td colspan="4"></td></tr> </table>	1	2	3	4	5	6	7	8					↓					<table border="1"> <tr><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d>7</td><td>8</td></tr> <tr><td colspan="4"></td><td>↓</td><td colspan="4"></td></tr> </table>	1	2	3	4	5	6	7	8					↓				
1	2	3	4	5	6	7	8																													
				↓																																
1	2	3	4	5	6	7	8																													
				↓																																
[ⓐ 기타 선택한 경우만 주관식 응답]	기타 ()	기타 ()																																		
3. 선택적 근무시간제	<table border="1"> <tr><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d>7</td><td>8</td></tr> <tr><td colspan="4"></td><td>↓</td><td colspan="4"></td></tr> </table>	1	2	3	4	5	6	7	8					↓					<table border="1"> <tr><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d>7</td><td>8</td></tr> <tr><td colspan="4"></td><td>↓</td><td colspan="4"></td></tr> </table>	1	2	3	4	5	6	7	8					↓				
1	2	3	4	5	6	7	8																													
				↓																																
1	2	3	4	5	6	7	8																													
				↓																																
[ⓐ 기타 선택한 경우만 주관식 응답]	기타 ()	기타 ()																																		
4. 원격근무	<table border="1"> <tr><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d>7</td><td>8</td></tr> <tr><td colspan="4"></td><td>↓</td><td colspan="4"></td></tr> </table>	1	2	3	4	5	6	7	8					↓					<table border="1"> <tr><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d>7</td><td>8</td></tr> <tr><td colspan="4"></td><td>↓</td><td colspan="4"></td></tr> </table>	1	2	3	4	5	6	7	8					↓				
1	2	3	4	5	6	7	8																													
				↓																																
1	2	3	4	5	6	7	8																													
				↓																																
[ⓐ 기타 선택한 경우만 주관식 응답]	기타 ()	기타 ()																																		
5.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table border="1"> <tr><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d>7</td><td>8</td></tr> <tr><td colspan="4"></td><td>↓</td><td colspan="4"></td></tr> </table>	1	2	3	4	5	6	7	8					↓					<table border="1"> <tr><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d>7</td><td>8</td></tr> <tr><td colspan="4"></td><td>↓</td><td colspan="4"></td></tr> </table>	1	2	3	4	5	6	7	8					↓				
1	2	3	4	5	6	7	8																													
				↓																																
1	2	3	4	5	6	7	8																													
				↓																																
[ⓐ 기타 선택한 경우만 주관식 응답]	기타 ()	기타 ()																																		
6. 탄력적 근무제	<table border="1"> <tr><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d>7</td><td>8</td></tr> <tr><td colspan="4"></td><td>↓</td><td colspan="4"></td></tr> </table>	1	2	3	4	5	6	7	8					↓					<table border="1"> <tr><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d>7</td><td>8</td></tr> <tr><td colspan="4"></td><td>↓</td><td colspan="4"></td></tr> </table>	1	2	3	4	5	6	7	8					↓				
1	2	3	4	5	6	7	8																													
				↓																																
1	2	3	4	5	6	7	8																													
				↓																																
[ⓐ 기타 선택한 경우만 주관식 응답]	기타 ()	기타 ()																																		
7. 기타 유형(재량근무 등)	<table border="1"> <tr><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d>7</td><td>8</td></tr> <tr><td colspan="4"></td><td>↓</td><td colspan="4"></td></tr> </table>	1	2	3	4	5	6	7	8					↓					<table border="1"> <tr><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d>7</td><td>8</td></tr> <tr><td colspan="4"></td><td>↓</td><td colspan="4"></td></tr> </table>	1	2	3	4	5	6	7	8					↓				
1	2	3	4	5	6	7	8																													
				↓																																
1	2	3	4	5	6	7	8																													
				↓																																
[ⓐ 기타 선택한 경우만 주관식 응답]	기타 ()	기타 ()																																		

※ 모든 응답자가 응답해 주십시오.



Ⅶ.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및 요구 (영유아)

※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 모든 응답자가 응답해 주십시오.

문54. 귀택에서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꼈던 육아지원 분야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1. 기관보육·교육(어린이집, 유치원) 서비스 → 문54-1로
2. 개별 돌봄 서비스 → 문54-2로
3.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 문54-3으로
4.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 지원 → 문54-4로
5.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등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 문54-5로
6.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도서 및 장난감 대여 등 양육 물품 지원 → 문54-6으로

문54-1. **[기관보육·교육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귀하는 기관보육·교육서비스에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답하셨습니다. 귀하는 기관보육·교육서비스 정책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유치원·어린이집 설치의 지역
간 격차 해소 | 6. 인력 지원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감축 |
| 2.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 | 7. 아동학대 등 근절 |
| 3. 보육료·교육비 지원 안정화 | 8. 부모 참여 프로그램 확대 |
| 4. 시설 등 물리적 환경 개선 | 9. 기타() |
| 5. 보육·교육과정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 개선 | 10. 개선할 부분 없음 |
- 문55로

문54-2. **[개별 돌봄 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귀하는 개별 돌봄 서비스에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답하셨습니다. 귀하는 개별 돌봄 서비스 정책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공공 개별 돌봄 인력
(ex. 아이돌보미) 양성 확대 | 5. 공공 개별 돌봄 인력의 전문성 제고 |
| 2. 공공 개별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확대 | 6. 긴급 돌봄에 대한 대응성 제고(이용 필요
시 즉각적 연계 강화) |
| 3. 공공 개별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수준 제고 | 7. 기타() |
| 4. 공공 개별 돌봄 서비스의
유형 다양화 | 8. 개선할 부분 없음 |
- 문55로

문54-3.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귀하는 시간제 이용, 기타 서비스에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답하셨습니다. 귀하는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정책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서비스의 다양성 확대 | 4. 적극적 홍보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인지도 제고 |
| 2.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ex.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사업
비용 지원 대상 확대) | 5. 기타() |
| 3. 서비스 수준 제고 | 6. 개선할 부분 없음 |
- 문55로

문54-4. **[부모의 돌봄 시간 지원을 선택한 경우]** 귀하는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부모의 육아 시간 지원 서비스에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답하셨습니다. 귀하는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부모의 육아 시간 지원 서비스 정책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급여 수준 제고
2. 근로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복지(휴가 사용), 승급 등 인사관련 수준의 명확한 기준 설정
3.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홍보 강화)
4. 제도 이용의 일부 자동화·강제화(ex. 자동육아휴직, 아버지의 달 이용 강제화)
5.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 지원 강화(대체인력 풀 구축 및 연계, 대체인력 비용 지원 수준 제고 등)
6. 이용 대상 자녀 연령기준 상향
7. 서비스 다양성 강화(다양한 형태의 유연 근무, 휴가 휴직 형태 도입)
8. 기타 ()
9. 개선할 부분 없음

→ 문55로

문54-5.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을 선택한 경우]** 귀하는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등) 서비스에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답하셨습니다. 귀하는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정책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현금 지원 수준 제고
2. 자격 충족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되는 시스템 구축
3. 양육 비용 지원 대상 확대(지원 대상 연령 확대 등)
4. 자녀 연령별 양육비가 많이 소요되는 핵심 범주에 대한 집중 양육비 제공
5. 기타()
6. 개선할 부분 없음

→ 문55로

문54-6. **[양육물품 지원을 선택한 경우]** 귀하는 물품 지원(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도서 및 장난감 대여) 서비스에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답하셨습니다. 귀하는 양육 물품 지원 정책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물품 지원 서비스 분야 다양화
2. 물품 지원량 실제 필요한 수준으로 제고
3. 서비스 홍보 강화(자격 충족시 대상자 통보, 이용 의향 접수)
4. 물품 당 지원 기간 연장(최대 필요 기간까지 확대)
5. 지원 자격기준 확대(소득 기준 상향 등)
6. 물품지원 전달체계의 접근성 확대(물품 대여 기관의 확충 등)
7. 기타()
8. 개선할 부분 없음

→ 문55로

문55. 귀하는 자녀의 임신·출산부터 영아, 유아에 이르는 시기 중 정부의 지원이 가장 부족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해당 시기에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무엇입니까?

- ※ 비용 지원: 자녀 출산·양육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금 혹은 바우처 형태의 현금성 지원
예시: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 서비스 지원: 부모의 자녀 돌봄에 대한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서비스의 직접 공급 또는 이러한 서비스 이용 비용 (일부 또는 전부) 지원
예시: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 아이돌보미 등 개별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등
- ※ 물품지원: 자녀출산·양육에 필요한 직접적 물품제공 형태의 지원
예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양플러스사업, 장난감·도서 대여 등
- ※ 시간 지원: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휴가·휴직, 유연근무 형태의 시간 지원
예시: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육아시간 제공 등

문55-1. 육아지원이 가장 부족한 시기	문55-2. 개선이 필요한 지원 범주		
	문55-2-1. 임신·출산 시기의 부족한 육아지원 범주	문55-2-2. 영아기의 부족한 육아지원 범주	문55-2-3. 유아기의 부족한 육아지원 범주
1. 임신·출산 시기 → 문55-2-1으로 2. 영아기(출생~36개월 이하) → 문55-2-2로 3. 유아기(36개월~초등학교 입학 전) → 문55-2-3으로	1. 비용지원 2. 서비스 지원 3. 물품지원 4. 시간지원	1. 비용지원 2. 서비스 지원 3. 물품지원 4. 시간지원	1. 비용지원 2. 서비스 지원 3. 물품지원 4. 시간지원



VIII. 삶의 만족도

문56. 귀하는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각각의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하십시오.)

※ 사회적 친분관계는 친구 관계와 지인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합니다.

항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가구의 경제적 수준	1	2	3	4	5
2) 여가생활	1	2	3	4	5
3) 주거환경	1	2	3	4	5
4) 가족관계	1	2	3	4	5
5) 자녀돌봄(양육)	1	2	3	4	5
6) 사회적 친분관계	1	2	3	4	5
7) 자아성취	1	2	3	4	5
8)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1	2	3	4	5

문57. 본인 결혼 당시와 현재 사회경제적인 위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향후 10년에는 어떤 정도의 사회경제적 위치일거라 예상하십니까?

결혼 당시의 사회경제적 위치		현재의 사회경제적 위치		미래의 사회경제적 위치	
상층	① 상상	상층	① 상상	상층	① 상상
	② 상중		② 상중		② 상중
	③ 상하		③ 상하		③ 상하
중층	④ 중상	중층	④ 중상	중층	④ 중상
	⑤ 중중		⑤ 중중		⑤ 중중
	⑥ 중하		⑥ 중하		⑥ 중하
하층	⑦ 하상	하층	⑦ 하상	하층	⑦ 하상
	⑧ 하중		⑧ 하중		⑧ 하중
	⑨ 하하		⑨ 하하		⑨ 하하

※ 영유아 자녀용 설문은 아동 단위로 응답하며,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2018~2024년 출생)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영유아 자녀용	총 자녀 수	자녀 번호	해당 자녀 출생순위	1. 첫째	4. 넷째	해당 자녀 출생연월	()년 ()월생
				2. 둘째	5. 다섯째		
				3. 셋째	6. 여섯째		

*가구용 설문 2페이지 참조하여 일치하도록 기입



1. 영유아 자녀 육아서비스 이용 및 수요

- ※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2018~2024년 출생)의 육아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 ※ 자녀 수만큼 반복해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01. 귀 영유아 자녀는 최근 한 달 내에 다음의 반일제 이상 기관 중 이용한 육아 서비스가 있습니까? 이용한 반일제 이상 기관을 선택해 주세요. 한 달 이내에 변동 사항이 있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어린이집 → 문02 응답 후 p.39의 1-1. '어린이집' 설문으로
2. 유치원 → 문02 응답 후 p.41의 1-2. '유치원' 설문으로
3.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 문02 응답 후 p.43의 1-3. '반일제 이상 기관' 설문으로
4. 반일제 이상 기타 기관(유아스포츠탄, YMCA 등)
→ 문02 응답 후 p.43의 1-3. '반일제 이상 기관' 설문으로
5.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한 적 없음
→ 문02 응답 후 p.45의 1-4. '문화센터' 설문으로

문02. 귀 영유아 자녀는 최근 3개월 이내 다음의 육아서비스 중 이용한 서비스가 있습니까? 각 서비스에 대해 이용 여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 ※ 축구클럽 등의 수업은 학원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이용 여부
① 문화센터 등	1. 이용함 2. 이용 안 함
② 예체능학원 (태권도, 수영, 축구교실, 발레, 피아노, 미술 등)	1. 이용함 2. 이용 안 함
③ 학습관련 학원 (영어, 수학, 국어, 과학 등)	1. 이용함 2. 이용 안 함
④ 기타 교육서비스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활동교육, 비방문 학습지, 비방문형 교구활동교육, 개인 및 그룹지도,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1. 이용함 2. 이용 안 함



I-1. 어린이집 이용 자녀에 대한 설문입니다.

문03.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 모를 경우, 어린이집 이름 기입

1. 국공립 2. 사회복지법인 3. 법인·단체 4. 민간
5. 가정 6. 직장 7. 부모협동 8. 모름(기관명:)

문04. 평상시에 이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각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 기관에 도착하는 시각, 기관에서 나오는 시각을 24시간 단위로 표기 (오후 2시 → 14시)

등원시각	하원시각
()시 ()분	()시 ()분

문04-1. 이 자녀가 현재 이용하는 어린이집에 주로 어떻게 등원, 하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가 응답한 방법으로 등하원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평소 가장 자주 이용하는 방법과 평균적인 시간을 기입해 주십시오. 다만 놀이터나 학원 등 다른 곳을 경유하는 시간은 제외하고 등하원에 걸리는 시간만 응답해 주십시오.

방법 보기 :

1. 기관 차량을 이용해서 3. 보호자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2. 보호자와 자가용으로 4. 보호자와 동반하여 걸어서

등원방법	등원까지 걸리는 시간 (집 → 기관)	하원방법	하원하여 걸리는 시간 (기관 → 집)
()	()분	()	()분

문05. 다음의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된 비용 지출을 기입해 주십시오. 분기별, 연 1회 납부의 경우 월평균 비용으로 환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 2024년 기준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문05-1~05-2. 귀댁의 해당 자녀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에서는 현재 특별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다면 귀 자녀는 특별활동(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교구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몇 개 과목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없으면 0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항목	문05. 비용	문05-1. 운영여부	문05-2. 과목 수
1. 정부보조금 제외 추가 보육료	월 ()원	/	
2. 그 밖의 비용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입학금 등)	월 ()원		
3. 시간연장형 보육 서비스 (야간보육, 휴일보육, 24시간보육)	월 ()원		
4. 어린이집 특별활동 (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교구활동 등)	월 ()원	1. 운영함 2. 운영하지 않음	월 () 개
5. 총 비용 (※ 세부 비용을 모르는 경우 총비용으로 기입해 주세요)	월 ()원	/	

문06.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문07.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귀하가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입니까?

1. 예 → p.45 | -4. 문화센터로 2. 아니오 → 문07-1로

문07-1. 그렇다면,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귀하가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낮 시간 기준)

1. 유치원 이용
2.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3.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4.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지원 이용 (ex. 시간제 보육, 조부모·육아도우미의 개별 돌봄 시간제로 이용)
5. 가정에서 조부모, 육아도우미 등이 부모 대신 돌봄
6. 기타()

문07-2. 현재 귀하가 가장 원하는 형태의 양육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비용 부담 때문에
2. 일을 하고 있어서
3.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대기가 길어서 등)
4. 집 근처에서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또는 부족하여서)
5.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이용 신청을 했으나 추첨에서 떨어져서)
6. 아이를 맡길만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조부모 부재 포함)
7.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 (ex. 이용 가능 시간, 이용 가능 기간, 이용 형태 등)
8. 서비스 이용자격이 해당하지 않아서(소득 기준, 연령기준, 각종 지침 등에 비해당)
9. 기타()

※ 어린이집 이용 설문을 모두 완료하신 후, 45페이지(1-4.문화센터)로 이동해 주십시오.



1-2. 유치원 이용 자녀에 대한 설문입니다.

문08. 현재 이용하고 있는 유치원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1. 국·공립
2. 사립

문09. 평상시에 이 자녀가 유치원을 이용하는 시각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 기관에 도착하는 시각, 기관에서 나오는 시각을 24시간 단위로 표기 (오후 2시 → 14시)

등원시각	하원시각
()시 ()분	()시 ()분

문09-1. 이 자녀가 현재 이용하는 유치원에 주로 어떻게 등원, 하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가 응답한 방법으로 등하원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평소 가장 자주 이용하는 방법과 평균적인 시간을 기입해 주십시오. 다만 놀이터나 학원 등 다른 곳을 경유하는 시간은 제외하고 등하원에 걸리는 시간만 응답해 주십시오.

방법 보기 :

1. 기관 차량을 이용해서
2. 보호자와 자가용으로
3. 보호자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4. 보호자와 동반하여 걸어서

등원방법	등원까지 걸리는 시간 (집 → 기관)	하원방법	하원하여 걸리는 시간 (기관 → 집)
()	()분	()	()분

문09-2. 현재 이 자녀의 유치원 이용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늘리고 싶다 → 문09-3으로
2.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늘리고 싶다 → 문09-3으로
3. 현재 이용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 문10으로
4.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줄이고 싶다 → 문09-4로
5.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줄이고 싶다 → 문09-4로

문10. 다음의 유치원 이용과 관련된 비용 지출을 기입해 주십시오. 분기별, 연 1회 납부의 경우 월평균 비용으로 환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 2024년 기준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문10-1~10-2. 귀댁의 해당 자녀가 이용하는 유치원에서는 현재 방과후 과정과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다면 귀 자녀는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교구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과목 수는 몇 개입니까? (※ 없으면 0을 기입해 주십시오)

항목	문10. 비용	문10-1. 운영여부	문10-2. 과목수
1. 정부보조금 제외 추가 교육비	월 ()원	/	/
2. 그 밖의 비용(현장학습비, 행사비, 통학차량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원복비, 입학금 등)	월 ()원		
3. 방과후 과정(아침돌봄, 방과후 과정, 저녁돌봄 ※ 특성화프로그램 비용 제외)	월 ()원	1. 운영함 2. 운영하지 않음	/
4.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교구활동 등)	월 ()원	1. 운영함 2. 운영하지 않음	
5. 총 비용 (※ 세부 비용을 모르는 경우 총 비용을 기입해 주세요.)	월 ()원	/	/

문11.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유치원의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만족
- 2. 대체로 만족
- 3. 보통
- 4. 대체로 불만족
- 5. 매우 불만족

문12.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이 귀하가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입니까?

- 1. 예 → p.45 | -4. 문화센터로
- 2. 아니오 → 문12-1로

문12-1. 그렇다면,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귀하가 가장 원했던 양육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낮시간 기준)

1. 어린이집 이용
2.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3.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4.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 지원 이용 (ex. 시간제보육 이용, 조부모·육아도우미의 개별 돌봄 시간제 이용)
5. 가정에서 조부모, 육아도우미 등이 부모 대신 돌봄
6. 기타()

문12-2. 현재 귀하가 가장 원하는 형태의 양육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비용 부담 때문에
2. 일을 하고 있어서
3.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코로나19로 운영 중단, 대기가 길어서 등)
4. 집 근처에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또는 부족하여서)
5.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이용 신청을 했으나 추첨에서 떨어져서)
6. 아이를 맡길만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조부모 부재 포함)
7.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 (ex. 이용 가능 시간, 이용 가능 기간, 이용 형태 등)
8. 서비스 이용 자격이 해당하지 않아서(소득 기준, 연령기준, 각종 지침 등에 비 해당)
9. 기타()

※ 유치원 이용 설문을 모두 완료하신 후, 45페이지(1-4.문화센터)로 이동해 주십시오.

문15. 다음의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과 관련된 비용 지출을 기입해 주십시오. 분기별, 연 1회 납부의 경우 월평균 비용으로 환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 2024년 기준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문15-1~15-2. 귀댁의 해당 자녀가 이용하는 반일제 이상 기관에서는 현재 방과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다면 귀 자녀는 반일제 이상 기관에서 특별활동(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교구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과목 수는 몇 개입니까? (※ 없으면 0을 입력해 주십시오.)

항목	문15. 비용	문15-1.운영 여부	문15-2. 과목 수
1. 수업료	월 ()원	/	/
2. 그 밖의 비용 (교재교구비, 재료비, 급간식비, 차량운행비, 방과후 과정, 현장학습비, 행사비, 입학금, 원복비 등 ※ 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 제외)	월 ()원		
3. 특별활동 (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교구활동 등)	월 ()원	1. 운영함 2. 운영하지 않음	월()개
4. 총 비용 (※ 세부 비용을 모르는 경우 총 비용을 기입해 주세요)	월 ()원	/	/

문16. 이용 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만족
- 2. 대체로 만족
- 3. 보통
- 4. 대체로 불만족
- 5. 매우 불만족

문17.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반일제 이상 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만족
- 2. 대체로 만족
- 3. 보통
- 4. 대체로 불만족
- 5. 매우 불만족

※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설문을 모두 완료하신 후, 45페이지(4-4.문화센터)로 이동해 주십시오.



1-5. 학원에 대한 설문입니다.

문19. 지난 3개월 동안 자녀가 학원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1. 예 → 문20으로
- 2. 아니오 → 47페이지(1-6.기타 교육서비스)로

영유아용 설문 문02(38페이지)의 '②예체능학원(태권도·수영·축구교실·발레·피아노·미술 등)' 또는 '③학습 관련 학원(영어·수학·국어·과학 등)' 항목의 이용 여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문20. 자녀가 이용하는 학원은 어떤 종류의 학원입니까?

문20-1. 몇 개의 학원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문20-2~20-4. 해당 학원의 주당 이용 횟수와 이용 시간과 월 이용비용은 얼마입니까?

- ※ 분기별, 반기별, 연 1회 납부의 경우 월평균 비용으로 환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 ※ 해당 유형별 여러 개의 학원을 다닐 경우 이용횟수와 이용 시간은 유형별로 합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 2024년 기준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유형	문20. 이용여부	문20-1. 이용개수	문20-2. 이용횟수	문20-3. 이용시간	문20-4. 이용비용
체육 관련 (태권도,수영 등)	1.이용함 2.이용안함	()개	주 ()회	주당 ()시간 ()분	월 ()만원
음악 관련 (피아노,악기 등)	1.이용함 2.이용안함	()개	주 ()회	주당 ()시간 ()분	월 ()만원
미술 관련 (그리기, 만들기 등)	1.이용함 2.이용안함	()개	주 ()회	주당 ()시간 ()분	월 ()만원
영어	1. 이용함 2.이용안함	()개	주 ()회	주당 ()시간 ()분	월 ()만원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한글, 한자 등)	1. 이용함 2.이용안함	()개	주 ()회	주당 ()시간 ()분	월 ()만원
수학 및 과학 관련 (수, 주산, 과학실험, 로봇 등)	1. 이용함 2.이용안함	()개	주 ()회	주당 ()시간 ()분	월 ()만원
기타 (바둑, 웅변 등)	1. 이용함 2.이용안함	()개	주 ()회	주당 ()시간 ()분	월 ()만원

문21. 이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학원 비용수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 | | |
|------------|-----------|-------|
| 1. 매우 만족 | 2. 대체로 만족 | 3. 보통 |
| 4. 대체로 불만족 | 5. 매우 불만족 | |

문22. 이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학원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 | | |
|------------|-----------|-------|
| 1. 매우 만족 | 2. 대체로 만족 | 3. 보통 |
| 4. 대체로 불만족 | 5. 매우 불만족 | |



1-6. 기타 교육서비스에 대한 설문입니다.

문23. 지난 3개월 동안 귀댁의 해당 자녀는 아래의 기타 교육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 기타 사교육: 일회성, 단발성 이용(예: 일회성 체험활동 등)이 아닌 경우에 한함
1. 방문형 학습지(선생님이 직접 학습지를 들고 방문해서 수업 및 채점 등을 진행)
 2.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선생님이 직접 장난감이나 퍼즐 등 교구를 들고와서 함께 놀아주거나 시간을 보내는 경우)
 3. 비방문 학습지, 교구 활동교육(선생님의 방문 없이 택배나 우편으로 학습지 또는 교구를 받는 경우, 전화/화상 영어 등)
 4. 그룹활동 및 개인지도(축구, 미술, 피아노, 한글, 영어 등 과외)
 5.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온라인 사이트나 모바일 어플에 접속하여 수업하는 것)
 6. EBS 등 교육 관련 방송 시청

1. 예 → 문23-1로
 2. 아니오 → 49페이지(1-7.시간제보육(일시보육))로

영유아용 설문 문02(38페이지)의 '④기타 교육서비스' 항목의 이용 여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문23-1~23-5. 이용하시는 기타 교육서비스의 유형별로 이용 현황을 응답해 주십시오. 이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기타 교육서비스의 종류와 월 평균 총 이용비용, 서비스 이용의 만족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 2가지 이상의 방식의 섞여 있는 서비스의 경우 보다 주된 교육방식을 기준으로 유형을 응답해 주십시오

(예: 방문형 학습지인데,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에서 듣기 파일이나, 동영상 강의를 활용하는 경우 → 방문형 학습지)

※ 이용하시는 기타 교육서비스가 여러 개인 경우 아래 표에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문23-1 보기] 기타 교육서비스 종류	
1. 체육 관련 (태권도, 수영 등)	6. 기타 다른 언어(한자, 일본어 등)
2. 음악 관련 (피아노, 악기 등)	7. 수학 및 과학 관련(수, 주산, 과학실험, 로봇 등)
3. 미술 관련 (그리기, 만들기 등)	8. 종합교과
4. 영어	9. 기타 (바둑, 웅변 등)
5. 한글	

유형	문23-1. 종류	문23-2. 이용시간	문23-4. 이용비용	문23-5. 서비스 이용 만족도	비고
1. 방문형 학습지	(<input type="radio"/>)	주 ()분	()만원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 문25로
	(<input type="radio"/>)	주 ()분			
	(<input type="radio"/>)	주 ()분			
2.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input type="radio"/>)	주 ()분	()만원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 문25로
	(<input type="radio"/>)	주 ()분			
	(<input type="radio"/>)	주 ()분			
3. 비방문 학습지, 교구 활동교육	(<input type="radio"/>)	주 ()분	()만원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 문24로
	(<input type="radio"/>)	주 ()분			
	(<input type="radio"/>)	주 ()분			
4. 개인지도 및 그룹 활동	(<input type="radio"/>)	주 ()분	()만원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 문25로
	(<input type="radio"/>)	주 ()분			
	(<input type="radio"/>)	주 ()분			
5.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input type="radio"/>)	주 ()분	()만원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 문24로
	(<input type="radio"/>)	주 ()분			
	(<input type="radio"/>)	주 ()분			
6. EBS 등 교육 관련 방송 시청	(<input type="radio"/>)	주 ()분	()만원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 문24로
	(<input type="radio"/>)	주 ()분			
	(<input type="radio"/>)	주 ()분			



1-7. 시간제 보육(일시보육)에 대한 설문입니다.

문26. 지난 3개월 동안 귀택의 해당 자녀는 시간제 보육(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 문26-1로
2. 아니오 → 50페이지(1-8.기타서비스)로

문26-1. 지난 3개월 동안 이용하고 있는 시간제 보육(일시보육)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용한 곳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어린이집
2. 육아종합지원센터
3. 기타 ()

문26-2. 지난 3개월을 기준으로 해당 자녀는 시간제 보육(일시보육)을 월 평균 몇 회 이용하였습니까?

월 평균 ()회

문26-3. 시간제 보육(일시보육) 서비스 이용 시 1회당 평균 몇 시간 정도 이용하였습니까?

1회 평균 () 시간

문26-4. 자녀를 위한 시간제 보육(일시보육) 이용과 관련된 비용 지출을 기입해 주십시오.

※ 만원 이하 반올림, 정부지원금 제외

월 평균 ()만원

문26-5. 자녀를 위해 이용한 시간제 보육(일시보육) 서비스에 대한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구분	1.매우 불만족	2.대체로 불만족	3.보통	4.대체로 만족	5.매우 만족
1. 이용시간의 선택성					
2. 비용					
3. 이용 장소의 접근성					
4. 인력의 전문성					
5. 긴급 보육의 유용성					



1-8. 기타서비스(키즈카페, 비정기 체험활동 등)에 대한 설문입니다.

※ 다음은 기타서비스 중 키즈카페 혹은 비정기 체험활동(예: 숲체험, 요리체험, 박물관 견학, 직업체험 등)에 대한 이용실태에 대한 설문입니다. 자녀를 위해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키즈카페	비정기 체험활동
<p>문27. 이 자녀를 위해 지난 3개월 이내에 키즈카페를 이용한 적이 있으십니까? ※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키즈카페(놀이체험)도 포함해서 이용 경험을 응답해 주십시오.</p> <p>1. 예 → 문27-1로 2. 아니오 → 문28로</p>	<p>문29. 이 자녀를 위해 지난 3개월 이내에 비정기 체험활동을 이용한 적이 있으십니까?</p> <p>1. 예 → 문29-1로 2. 아니오 → 문30으로</p>
<p>문27-1. 키즈카페의 월 평균 이용횟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3개월 총 () 회</p>	<p>문29-1. 비정기 체험활동의 월 평균 이용 횟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3개월 총 () 회</p>
<p>문27-2. 키즈카페 1회 이용 시 몇 시간 정도 이용하십니까? 1회 ()시간 이용</p>	<p>문29-2. 비정기 체험활동 1회 이용 시 몇 시간 정도 이용하십니까? 1회 ()시간 이용</p>
<p>문27-3. 키즈카페의 시간당 이용비용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1시간 당 ()원 ※ 정기권을 이용하는 경우 평균 이용 시간으로 나눠서, 금액을 적어주십시오. ※ 키즈카페는 영유아 입장료만 응답해 주십시오. 부모 입장료 및 식음료 비용 제외</p>	<p>문29-3. 비정기 체험활동의 회당 비용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1회 당 ()원 ※ 체험활동은 해당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입장료 등을 모두 포함</p>
<p>문27-4. 키즈카페의 이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p>	<p>문29-4. 비정기 체험활동의 이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p>

키즈카페	비정기 체험활동
<p>문27-5.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에 없는 놀이기구들이 있어서 2.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편안해서(주양육자의 휴식을 위해) 3. 자녀를 동반해 지인을 만날 수 있으므로 4. 아이가 좋아해서 5. 비용이 저렴해서 6. 지역에 적당한 공공 놀이장소가 없어서 7. 기타() 	<p>문29-5. 비정기 체험활동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험활동 인솔자의 해당 분야 전문성을 고려해서 2.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편안해서(주양육자의 휴식을 위해) 3. 자녀가 희망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4. 아이가 좋아해서 5. 비용이 저렴해서 6. 원하는 시간대에 참여할 수 있어서 7. 기타()
<p>문28. (지난 3개월간) 키즈카페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변에 운영하는 키즈카페가 없어서 2. 감염병 위험 때문에 3. 자녀를 동반한 만남이 줄어서 4. 아이가 좋아하지 않아서 5. 비용이 부담되어서 6. 기타 () 	<p>문30. (지난 3개월간) 비정기 체험활동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험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2. 감염병 위험 때문에 3. 안전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4. 아이가 좋아하지 않아서 5. 비용이 부담되어서 6. 기타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 여 기 간** : 조사는 2024년 7월~10월 중 실시될 예정으로 이 기간 중 1회 조사 참여를 요청받을 것입니다.
- **장 소** : 귀택 또는 귀하가 편하게 조사에 응하실 수 있는 장소를 요청해 주시면 그 장소로 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 **연구참여에 따른 보상** : 본 조사에서는 참여자에게 감사의 뜻으로 영유아 자녀가 1명인 경우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동조사의 대상이 되는 영유아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경우 추가 영유아 수 1명당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 **연구참여에 따른 위험성 및 이익** : 귀하가 이번 조사에 참여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향후 우리나라의 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의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본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가구의 소득과 지출,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인지와 이해가 높아질 수 있으며, 국가의 양육 비용 지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본 조사는 설문 응답 시간이 40분 이상으로 다소 길고 상세한 가계소득과 지출액을 응답하는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일 응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 본 연구의 참여로 귀하에게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별, 연령, 가구소득, 취업 관련 정보, 연락처, 자녀수 등의 정보입니다. 연락처는 사례비 지급, 응답자 관리, 응답 정보 확인 등에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됩니다. 기타 수집된 자료는 연구를 위해서만 익명화된 상태에서 사용되며, 개인 정보 및 관련 정보는 잠금장치 및 암호화된 프로그램이 설치된 육아정책연구소와 조사업체의 저장장치에 보관되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연구진, 조사업체 데이터 담당 연구원만이 접근 가능합니다. 연구진과 조사업체 담당자는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연구자 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 **제3자 정보제공** :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제공되어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자료의 보관** : 조사로부터 수집된 원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잠금장치가 있는 연구책임자의 연구실 내에 2032년까지 보관되며, 이후 폐기됩니다.
- **연구참여 도중 중도 탈락** : 귀하는 연구에 참여하신 후에도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 둘 수 있거나 조사를 중단할 경우 조사에 대한 사례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사 중단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며, 수집된 모든 정보는 중단 즉시 폐기됩니다. 만일 귀하가 본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조사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 **연구 문의** : 연구 참여 관련 문의사항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연구진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책임연구자: 최효미 전화번호: 02-398-7771, 이메일: hmchoi@kicce.re.kr

*근무시간(09:00~18:00)외 전화하실 경우 개인 휴대폰으로 연결됩니다.

한국리서치 담당자: 김지은 책임, 전화번호: 02-3014-1055

연구대상자 권리 보호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02-398-7761 irb@kicce.re.kr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대상자 권리 보호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 소속 연구자들이 수행하는 연구의 계획서에 대한 심의 그리고 연구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을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 가구의 필요에 부합하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귀하께서는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문과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설명은 귀하가 이 연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예정이며, 조사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 경우 아래에 기재된 담당 연구원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참여 동의서 - 영유아 가구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본연구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으로,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개인정보 제외)은 연구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은 기관생명윤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계 처리 후 익명화하여 제공될 것입니다.
-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고, 확인란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성 명	연구 참여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날짜	확인
				(서명/인)

* 연구대상자가 직접 작성

조사원 또는 책임자	성명	날짜	확인	(서명/인)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 가구의 필요에 부합하는 육아 지원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입니다.
- **대 상** :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전국 대표 표집을 통해 추출된 영유아 자녀가 있는 약 1,800여 가구로, 가계 지출과 영유아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등 영유아의 양육과 관련한 질문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부모님 혹은 부모님을 대신해 주 양육자로서 영유아를 돌보고 있는 분입니다.
- **연구의 참여 절차** : 귀하의 가구는 임의 추출된 조사구에 속한 가구 중 영유아가 있는 가구로 본 연구의 조사 대상 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원칙적으로 면접 원을 통한 대면면접조사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신 경우 조사원과의 상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하여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방식 중 하나의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조사 방법	절차
방문(대면면접조사)	- 대면면접조사원이 패널가구와 미리 조사 일정을 조율 후 약속된 일정에 가구(또는 응답자가 희망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조사원이 설문 문항에 대해 설명하며 조사를 실시
전화	- 패널가구가 가구 방문 면접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설문을 해당 가구에 남겨둔 상태로, 미리 일정을 조율하여 정해진 약속된 일정에 대면면접조사원이 패널 가구로 전화하고, 조사원과 응답 가구와 설문을 동시에 보면서 전화로 조사.
유치	- 패널가구 방문 또는 전화 일정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 가능 기간과 설문지 회수 일정을 정하여 설문지를 배송하고 회수일에 전용 회수용 봉투에 담아 패널 가구의 문앞 또는 우편함에 두면 면접원이 회수일에 방문하여 회수하는 방식임.
방문 + 전화	- 대면조사면접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패널가구의 가용 시간 내 설문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문항에 대해 전화로 조사하는 방식임.
방문 + 유치	- 대면조사면접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패널가구의 가용 시간 내 설문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회수일을 정하여 설문지를 유치함. 응답자가 설문을 완료한 후 전용 회수용 봉투에 담아 문앞이나 우편함에 두면 면접원이 회수일에 방문하여 회수하는 방식임.
기타	- 방문과 유치, 전화조사를 병행하거나, 유치와 전화조사를 병행하는 등 설문완료를 위해 다양한 조사 방법을 동원하여 실시함.

본 조사는 가구조사와 아동조사의 2종의 설문지로 구성되며, 아동조사는 귀하께서 영유아 자녀별로 설문지에 각각 응답하여야 합니다. 본 조사를 완료하기까지 평균 40분 가량 소요되며(영유아가 1명인 경우), 가구 내 서비스 이용 빈도 및 영유아 수에 따라 60분 가량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1. 일본의 저출생 현황 및 영유아 가구 대상 육아지원 정책의 특징

일본정부는 1989년의 합계출산율 1.57명 쇼크를 계기로, 보육서비스 확대, 일-가정 양립시책, 경제적 부담의 완화, 아동을 양육하기 편리한 사회환경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출생을 반등을 꾀하고 있다.

가. 일본의 저출생 대응정책의 변화와 주요특징

1) 일본의 인구 및 저출생 현황

일본의 출생 아동 수는 1920년 국세조사가 실시된 이후, 매년 200만명 전후였다(厚生労働省¹⁾). 특히 제2차세계대전 직후 3년동안 (1947년~1949년) 에는 제1차 베이비 부머세대의 출생으로 매년 268만명이 출생하여, 평균 합계출산율도 4.32명으로 높은 수준이었다(厚生労働省²⁾). 그러나 1950년 이후, 점진적 하락 경향을 유지하던 합계출산율은 1966년 백말띠해를 맞이하여 베이붐 세대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1.58명으로 일본사회에 충격을 주었다(厚生労働省³⁾).

그 후, 합계출산율은 위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제2차 베이비부머들이 출생하는 1971년에서 1974년의 4년간 2.14명으로 재반등하여, 평균 출생아동 수도 209만 명으로 상승하였다(内閣府⁴⁾). 그러나 일시적 증가세를 보였던 합계출산율이 1975년 이후 다시 하락하고, 1989년에는 1966년 보다 낮은 1.57명이 되자, 이를 계기로 일본정부는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内閣府⁵⁾).

1)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人口動態総覧の年次推移(인구동태통계월보연계개황), <https://www.mhlw.go.jp/toukei/saikin/hw/jinkou/geppo/nengai22/dl/h1.pdf> (인출일: 2024. 3.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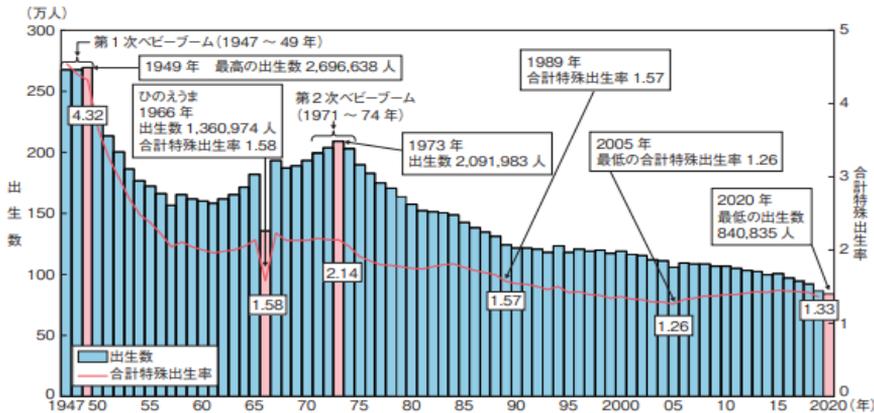
2)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人口動態総覧の年次推移(인구동태통계월보연계개황), <https://www.mhlw.go.jp/toukei/saikin/hw/jinkou/geppo/nengai22/dl/h1.pdf> (인출일: 2024. 3. 26.).

3)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人口動態総覧の年次推移(인구동태통계월보연계개황), <https://www.mhlw.go.jp/toukei/saikin/hw/jinkou/geppo/nengai22/dl/h1.pdf> (인출일: 2024. 3. 26.).

4) 内閣府(내각부), 少子化社会対策白書(소자화사회대책백서),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2772297/www8.cao.go.jp/shoushi/shoushika/whitepaper/measures/w-2022/r04pdfhonpen/pdf/s1-2.pdf> (인출일: 2024. 3.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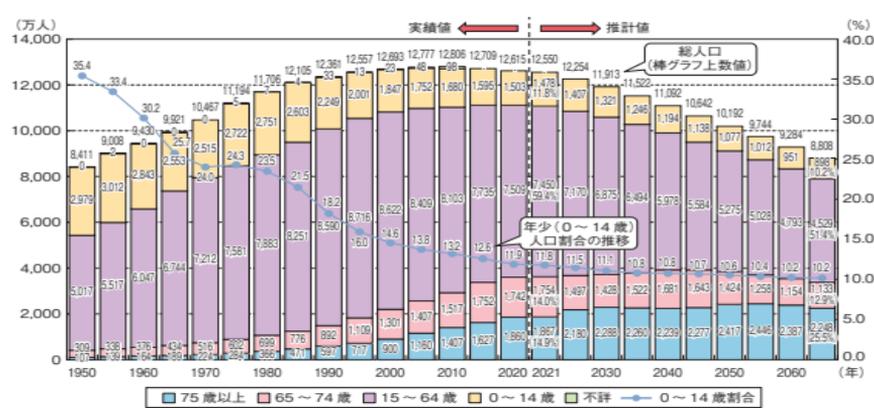
2022년 현재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26명이며, 출생아동 수는 770,750명이다 (厚生労働省⁶⁾).

[그림 1-1] 일본 연간 출생아동 수 추이



자료: 内閣府(내각부), 少子化社会対策白書(소자화사회대책백서),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2772297/www8.cao.go.jp/shoushi/shoushika/whitepaper/measures/w-2022/r04pdfhonpen/pdf/s1-2.pdf> (인출일: 2024. 3. 27.).

[그림 1-2] 총인구 추이 및 연령별 인구구성



자료: 内閣府(내각부), 少子化社会対策白書(소자화사회대책백서),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2772297/www8.cao.go.jp/shoushi/shoushika/whitepaper/measures/w-2022/r04pdfhonpen/pdf/s1-1.pdf> (인출일: 2024. 3. 26.).

5) 内閣府(내각부), 少子化社会対策白書(소자화사회대책백서),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2772297/www8.cao.go.jp/shoushi/shoushika/whitepaper/measures/w-2022/r04pdfhonpen/pdf/s1-2.pdf> (인출일: 2024. 3. 27.).

6)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人口動態総覧(인구동태총람), https://www.mhlw.go.jp/toukei/saikin/hw/jinkou/kakutei22/dl/03_h1.pdf (인출일: 2024. 3. 26.).

합계출산율 저하로 일본 총인구도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고도경제성장기였던 1967년에 처음으로 총인구 1억명시대로 진입(内閣府⁷⁾) 한 후, 1980년부터는 1억 2,000만명 수준의 안정적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8년 1억 2,808명의 최다인구수를 기점으로 점점 감소하여 2024년 1월 현재 인구는 1억 2,414만 3천명이다(総務省統計局⁸⁾).

저 출생은 인구수의 절대감소 문제뿐만 아니라 인구구성 불균형을 야기함으로써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 문제, 복지비용 증가 등을 초래한다.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장기간 지속된 저 출생으로 0~14세 유소년 인구비율은 11.9%, 15세~64세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59.5%로 점점 감소하고 있으나 65세 이상인구는 28.5%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内閣府⁹⁾). 이에 일본정부는 2030년 까지를 출생율 반등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저 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2023년 6월 각료회의에서 “아동미래전략”을 의결하였다.

2) 저출생 관련 사회환경

내각부(内閣府, 2020)가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4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생 관련 국제의식조사”에 의하면, 일본국민은 자녀출생을 기피하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51.6%), 고연령으로 출산기피(23.2%), 육아로 인한 육체적, 심리적 피로(19.4%), 일·가정 양립서비스 부족(17.5%), 고용불안정((14%) 순으로 대답하였다. 이로 볼 때, 저 출생은 단일요인 보다는 결혼·출산을 둘러싼 가치관의 변화, 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가) 결혼·출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의식이 점점 희박해 지고 있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¹⁰⁾의 18세~34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7) 内閣府(내각부), 総人口(총인구),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special/future/senta/ku/s2_1.html (인출일: 2024. 7.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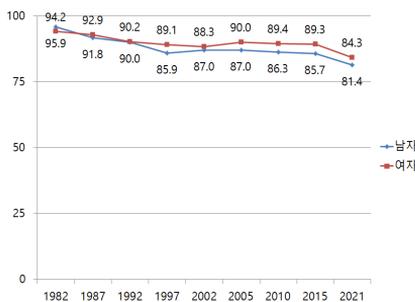
8) 総務省統計局(총무성 통계국), 人口推計2024年(令和6年)1月確定値、2024年(令和6年)6月概算値), <https://www.stat.go.jp/data/jinsui/new.html> (인출일: 2024. 7. 14.).

9) 内閣府(내각부), 少子化社会対策白書(소자화사회대책백서),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2772297/www8.cao.go.jp/shoushi/shoushika/whitepaper/measures/w-2022/r04pdfhonpen/pdf/s1-1.pdf> (인출일: 2024. 3.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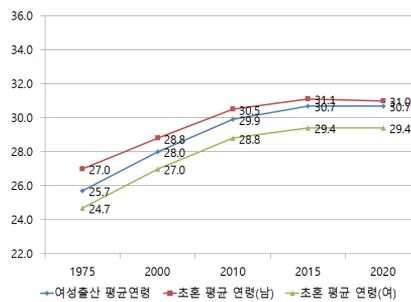
“언젠가는 결혼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 [그림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2년에는 남성의 95.9%, 여성의 94.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나, 2021년에는 남성 81.4%, 여성 84.3%로 감소하였다(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¹¹⁾).

[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혼 의향 감소율은 미혼율의 증가, 초혼, 초산 연령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 내각부(内閣府)¹²⁾에 의하면, 25세~39세 남녀 미혼 인구 비율은 1990년에는 각각 39%, 20.6%였으나, 2020년에는 51.6%, 40.4%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남녀평균초혼연령 역시 1975년 각각 27세, 24.7세 였으나 2020년에는 남자 3.7세, 여자 4.7세 상승하여 30.7, 29.4세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여성 초산 연령도 31세로 상승하였다.

[그림 1-3] 미혼남녀결혼희망비율



[그림 1-4] 남녀초혼연령 및 여성초산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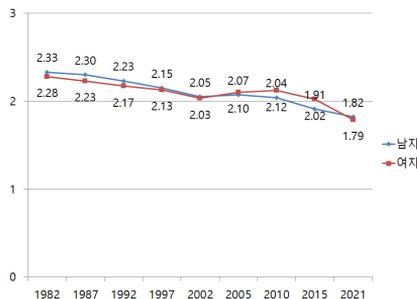
자료: 1)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https://www.ipss.go.jp/ps-doukou/j/doukou16/JNFS16gaiyo.pdf> (인출일: 2024. 3. 27.).
 2) 内閣府(내각부), 少子化社会対策白書(소자화사회대책백서),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2772297/www8.cao.go.jp/shoushi/shoushika/whitepaper/measures/w-2022/r04pdfhonpen/r04honpen.html> (인출일: 2023. 3. 27.).

[그림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혼의향 감소, 초혼연령증가, 만산화 경향은 미혼남녀가 낳기를 희망하는 자녀 수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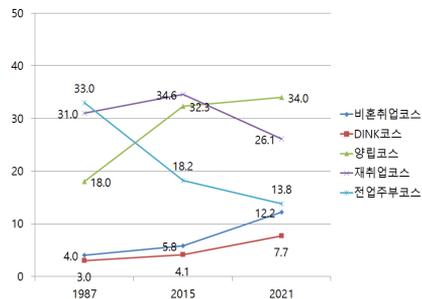
10)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https://www.ipss.go.jp/ps-doukou/j/doukou16/JNFS16gaiyo.pdf> (인출일: 2024. 3. 27.).
 11)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https://www.ipss.go.jp/ps-doukou/j/doukou16/JNFS16gaiyo.pdf> (인출일: 2024. 3. 27.).
 12) 内閣府(내각부), 少子化社会対策白書(소자화사회대책백서),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2772297/www8.cao.go.jp/shoushi/shoushika/whitepaper/measures/w-2022/r04pdfhonpen/r04honpen.html> (인출일: 2023. 3. 27.).
 13)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https://www.ipss.go.jp/ps-doukou/j/doukou16/JNFS16gaiyo.pdf> (인출일: 2024. 3. 27.).

1982년 미혼남성, 미혼여성은 각각 2,33명, 2.28명의 아동출산을 희망하였으나, 2021년에는 각각 1.82명, 1.79명으로 감소하였다(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¹⁴⁾).

[그림 1-5] 미혼남녀의 희망아동수



[그림 1-6] 미혼남녀의 이상적 라이프 코스



자료: 1)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https://www.ipss.go.jp/ps-doukou/j/doukou16/JNFS16gaiyo.pdf> (인출일: 2024. 3. 27.).

2) 内閣府(내각부), 男女共同参画白書(남녀공동참여백서), https://www.gender.go.jp/about_danjo/whitepaper/r05/zentai/pdf/r05_tokusyu.pdf (인출일: 2024. 4. 2.).

미혼남녀의 이상적인 라이프 코스도 변화하고 있다. [그림 1-6]에서 볼수 있듯이 2015년 까지 남녀 모두 결혼,출산 후, 다시 취업하는 재취업코스 희망 비율이 높았으나 2022년 조사에서는 여성의 34%, 남성의 39.4%는 일·가정 양립코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内閣府¹⁵⁾).

나)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이 출산을 주저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¹⁶⁾가 1명 아동이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추가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2002년부터 20년간 일관되게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하였으며, 이는 “저출생 관련 국제의식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14)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https://www.ipss.go.jp/ps-doukou/j/doukou16/JNFS16gaiyo.pdf> (인출일: 2024. 3. 27.).

15) 内閣府(내각부), 男女共同参画白書(남녀공동참여백서), https://www.gender.go.jp/about_danjo/whitepaper/r05/zentai/pdf/r05_tokusyu.pdf (인출일: 2024. 4. 2.).

16)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https://www.ipss.go.jp/ps-doukou/j/doukou16/JNFS16gaiyo.pdf> (인출일: 2024. 3. 27.).

아동양육비 관련 조사로는 아동미래재단(こども未来財団, 2002) “자녀양육비용에 관한 조사연구”, 내각부(内閣府, 2009)의 “자녀양육 비용관련 인터넷조사”,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 2021)의 “아동학습비 조사”, 베넷세 교육종합연구소(ベネッセ教育総合研究所, 2022)의 “유아생활양케이트조사” 등이 있다. 아동미래재단(こども未来財団, 2002)과 내각부(内閣府, 2009)는 각각 0세~6세 사이의 미취학 영유아 및 0세~중학생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양육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조사인 반면,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 2021)은 유치원~고등학생의 과외활동비를 포함한 전체 교육비를 조사하였다. 베넷세 교육종합연구소(ベネッセ教育総合研究所, 2022)는 0~6세 영유아의 수영, 외국어 학습 등의 특기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하였다.

아동미래재단(こども未来財団, 2002)은 0~6세 아동의 양육비용으로 임신·출산비 503,663엔, 양육비로 0세아동 506,007엔, 1세 464,774엔, 2세 514,481엔, 3세 516,308엔, 4세 620,316엔, 5세 659,349엔, 6세 634,241엔으로 총 4,419,130엔이 소요된다고 발표하였다¹⁷⁾. 내각부(内閣府, 2009) 역시 아동미래재단과 유사항목으로 양육비를 조사하여, 0~6세 중, 보육소, 유치원 등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의 연간 평균 양육비는 843,225엔, 취원아동은 1,216,547엔, 초등학교는 1,153,541엔, 중학생 1,555,567엔이 소요된다고 발표하였다. 양육비용중 비중이 큰 항목은, 0~6세 영유아는 보육소, 유치원등에 지불하는 보육비용, 초·중학교는 식비이며, 중학생 이상은 학원 등의 학교외 교육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의료비는 전 연령대에서 낮게 파악된다. 이는 1980년대부터 의료비 경감을 위한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 2021)은 유치원부터 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의 학교 및 과외비를 합산한 교육비를 공·사립별로 조사하였다. 이에 의하면, 2021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까지를 공립으로 다녔을 경우에는 574만 엔에 불과하나, 전체과정을 사립으로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1,838만엔이 소요된다¹⁸⁾.

17) 임신·출산비용 세부항목은 임신비용으로 임신부 용품, 임신 중 운동, 학습용품, 태교용품, 강좌참여 비용, 임신출산전후 교통비 등이며, 출산비용에는 정기검진, 분만비 등이 포함되었다. 0세~6세 까지의 양육비 항목 내역은 a. 유아비(식비, 보건, 의료비), b. 아동용품비(의류, 장난감, 문구비), c. 유치원, 보육관련 비용, d. 과외비 등의 교육비, e. 용돈, f. 생일 등 행사비용, g. 저축, 보험비 등이다.

18) 연간 교육비 내역은 공립유치원 165,126엔(학교교육비 61,156엔+급식비 13,415엔, 학교외 활동비 90,555엔), 사립유치원 308,909엔(학교교육비 134,835엔+급식비 29,917엔, 학교외 활동비 144,157엔), 공립초등학교 352,566엔(학교교육비 65,974엔+급식비 39,010엔, 학교외 활동비 247,582엔), 사립초등학교 1,666,949엔(학교교육비 971,013엔+급식비 45,139엔, 학교외 활동비 660,797엔), 공립중학교

베넷세 교육종합연구소(ベネッセ教育総合研究所, 2022)는 1995년부터 5년 간격으로 미취학 영유아의 특기교육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1995년에 비해 2022년 특기교육 수강 영유아의 비율은 평균 13%p 감소하였다. 그리고 2022년 기준으로 특기교육별 순위는 수영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월1회 정기적으로 가정으로 교재가 배달되는 통신교육, 체조, 영어회화 등의 어학교실의 순서였다¹⁹⁾. 1인당 특기교육 월 평균비용은 6,295엔 이었으며, 세부적으로는 1,000엔 미만인 31.3%, 1,000~5,000엔 미만 27.9%를 포함하여 월 1만엔 미만으로 지출하는 비율이 78.6%였다.

다) 일·가정 양립 환경

양성평등의식의 확산,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인한 여성 취업률의 상승으로 맞벌이 가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육아휴업제도, 유연근무제, 단시간 근무 등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위한 환경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다.

맞벌이 세대는 1997년을 기점으로 외벌이 세대를 능가하여 현재는 2배 이상이며(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연구소(全国保育団体連絡会·保育研究所), 2023), 25세~44세 여성 취업률은 86.7%이다²⁰⁾. 이에 정부는 저 출생 대책의 가장 큰 해결책은 보육시설 확충에 있다고 판단하여, 1994년 “긴급보육대책 5개년 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의 “신자녀양육안심플랜”에 이르기 까지 26년간 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하였다. 이로 인해 대기아동 수는 대폭 감소하였으며, 최근에는 저 출생의 심화로, 곳곳에서 정원부족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반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돌봄을 지원하는 방과 후 아동클럽은 여전히 부족하여 대기아동은 2022년 현재 15,180명이며, 이들 중, 7,540명은 1학년부터 3학년 까지의 저학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厚生労働省, 2022a: 9).

538,799엔(학교교육비 132,349엔+급식비 37,670엔, 학교외 활동비 368,780엔), 사립중학교 1,436,353엔(학교교육비 1,061,350엔+급식비 7,227엔, 학교외 활동비 367,776엔), 공립고등학교 512,971엔(학교교육비 309,261엔+학교외 활동비 203,710엔), 사립고등학교 1,054,444엔(학교교육비 750,362엔+학교외 활동비 304,082엔).

19) 1995년부터 5년 간격으로 시행되었으나, 2000년은 코로나로 인해 2022년에 행해졌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는 통신교육을 가장 많이 하였으나, 2010년부터 수영을 가장 많이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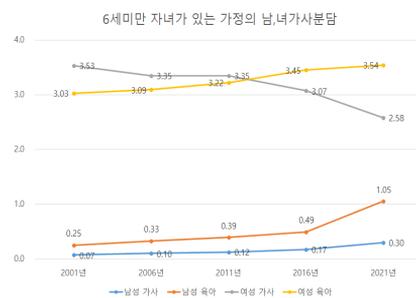
20) 総務省統計局(총무성 통계국). 노동력 조사(기본집계) 평균결과개요, <https://www.stat.go.jp/data/roudou/sokuhou/nen/ft/pdf/gaiyou.pdf> (인출일: 2024. 5. 21.).

장시간 근로, 경직화된 근로방식 역시 자녀양육기 세대의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고 있다. [그림 1-7]에서 볼 수 있듯이 근로자의 2022년도 평균근로시간은 한국, 미국, OECD평균에 비해 짧으나, 독일, 스웨덴, 프랑스보다는 길다²¹⁾. 특히 자녀출산·양육시기에 해당하는 30세~49세 남성의 주간근로시간은 48시간 이상이 54.8%, 60시간 이상이 20.3%으로, 이는 늦은 귀가시간으로 연결되고 있다(內閣府²²⁾). 특히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성역할분담의식이 뚜렷한 가운데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남성의 육아, 가사참여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6세 미만 자녀세대의 남성 분담시간은 5년전에 비해 각각 16분, 13분 증가(總務省統計局²³⁾)에 그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1일 가사참여시간 역시 내각부(內閣府) 조사²⁴⁾에 의하면 여성 391분, 남성 114분으로 확인되고 있다. 2023년도 여성 평균취업률이 86.3%인 상황아래에서 가사노동의 여성편중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7] 세계각국 연평균 근로시간



[그림 1-8] 6세미만 자녀가정의 남녀가사분담률



자료: 1) 통계청, OECD「<https://stats.oecd.org/Labour Force Statistics>」 2023. 8, 2022, 2024.04.03, 근로자당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314&conn_path=l2 (인출일: 2024. 4. 3.).
 2) 總務省統計局(총무성 통계국), 令和3年社会生活基本調査 生活時間及び生活行動に関する結果結果の要約, <https://www.stat.go.jp/data/shakai/2021/pdf/youyakua.pdf> (인출일: 2024. 4. 8.).

- 21) 통계청, OECD「<https://stats.oecd.org/Labour Force Statistics>」 2023. 8, 2022, 2024.04.03, 근로자당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314&conn_path=l2 (인출일: 2024. 4. 3.).
- 22) 內閣府(내각부), 男女共同参画白書(남녀공동참여백서), https://www.gender.go.jp/about_danjo/whitepaper/r05/zentai/pdf/r05_tokusyu.pdf (인출일: 2024. 4. 2.).
- 23) 總務省統計局(총무성 통계국), 令和3年社会生活基本調査 生活時間及び生活行動に関する結果結果の要約(2021년 사회생활기본조사, 생활시간 및 생활행동에 관한 결과, 결과 요약) <https://www.stat.go.jp/data/shakai/2021/pdf/youyakua.pdf> (인출일: 2024. 4. 8.).
- 24) 內閣府(내각부), 男女共同参画白書(남녀공동참여백서), https://www.gender.go.jp/about_danjo/whitepaper/r05/zentai/pdf/r05_tokusyu.pdf (인출일: 2024. 4. 2.).

육아휴업,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등도 맞벌이 세대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서 반드시 필요하나, 2021년 현재 남성의 육아휴직취득율은 13.97%로 여성 취득 율 85.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こども家庭庁, 2023). 육아휴직은 자녀와 의 관계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남녀 모두 수입감소, 승진 장애, 동료에 불편초래 등의 사유로 취득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内閣府²⁵⁾). 재택근무 비율도 저출생대책의 시행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으나 2022 년 현재 전체근로자의 6.7%에 불과하다(総務省統計局²⁶⁾).

3) 저출생 대응정책의 변화 과정

일본 정부는 1989년 합계출산율 1.57명 쇼크를 계기로 5년, 10년을 주기로 다양한 대응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보육시설 확충에 주안점을 두었던 저출생 대응정책은 점점 일-가정 양립, 아동을 키우기 편리한 사회환경 조성 방향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가) 엔젤플랜²⁷⁾과 신엔젤플랜²⁸⁾을 통한 보육서비스 확충정책(1990년~2004년)

1994년 정부는 “앞으로의 아동양육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 방향(엔젤플랜)” 에서 아동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환경정비, ② 영아보 육등 보육서비스 확충, ③ 신생아방문지도, 영유아 건강검진 등 아동양육에 편리한 환경 조성, ④ 양질의 임대주택 보급 등 아동·가족 생활에 편리한 환경조성, ⑤경쟁 지향적 교육환경 개선, ⑥ 경제적 부담 경감, ⑦ 전업주부의 육아불안해소를 위한 지역아동양육지원센터 설치 등 7가지 시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후속 조치로 시행된 긴급보육대책 5개년 사업(1995~1999)은, 주로 근로여성 증가에

25) 内閣府(내각부), 男女共同参画白書(남녀공동참여백서), https://www.gender.go.jp/about_danjo/whitepaper/r05/zentai/pdf/r05_tokusyuu.pdf (인출일: 2024. 4. 2.).

26) 総務省統計局(총무성 통계국), 令和3年社会生活基本調査生活時間及び生活行動に関する結果の要約(2021년 사회생활기본조사생활시간 및 생활행동에 관한 결과, 결과요약), <https://www.stat.go.jp/data/shakai/2021/pdf/youyakua.pdf> (인출일: 2024. 4. 8.).

27) 社会福祉法人 阳光福祉会(사회복지법인 양광복지회), エンゼルプラン(엔젤플랜), <https://sunshine.ed.jp/%E3%82%A8%E3%83%B3%E3%82%BC%E3%83%AB%E3%83%97%E3%83%A9%E3%83%B3/> (인출일: 2024. 7. 17.).

28) 社会福祉法人 阳光福祉会(사회복지법인 양광복지회), 新エンゼルプラン(신엔젤플랜), <https://sunshine.ed.jp/%E6%96%B0%E3%82%A8%E3%83%B3%E3%82%BC%E3%83%AB%E3%83%97%E3%83%A9%E3%83%B3%E3%81%AB%E3%81%A4%E3%81%84%E3%81%A6/> (인출일: 2014. 7. 17.).

대응하여 보육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으로서, 목표는 달성하였지만 대기아동 해소는 물론 출생률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특히 신엔젤플랜²⁹⁾(2000~2004)에서는 성역할 분업을 전제로 한 직장우선의 기업풍토 및 근로방식 개선을 주요 시책내용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추진된 시책은 보육서비스 및 모자의료체계 및 지역교육환경관련 내용이었다. 그러나 엔젤플랜과 신엔젤플랜으로 1997년 주40시간 근로시간제의 시행 및 2001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육아휴업소득대체율이 40%로 인상(守泉 理惠, 2014. 4.)되는 성과가 있었다.

나) 청년층 자립 및 경제적 지원을 중시한 저출생 대응정책(2005년~2014년)

저출생 대책을 장기적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2003년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과 저출생 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여, 자녀양육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 사업주의 환경정비³⁰⁾ 및 저출생 장기로드맵인 저출생사회대책대강 작성 의무화를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영유아양육 지원플랜(子ども・子育て応援プラン,厚生労働省³¹⁾)(2005~2009) 및 아동·영유아양육비전(子ども・子育てビジョン,文部科学省³²⁾)(2010~2014)이 시행되었다. 아동영유아양육지원플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4가지 중점과제³³⁾를 중심으로 28개의 세부과제를 도출한 후, 세부과제별로 실시할 137개의 구체적 시책과 함께 5년 후 목표치까지 전망하였다.

29) 정부는 엔젤플랜을 수정하여 1999년에 “저출생 대책 기본방침”을 각의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구체적 실시계획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저출생 대책의 구체적 실시계획에 대하여” (일명, 신엔젤플랜)을 실시하였다.

30)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의 제5,7, 8,9조에서 주무대신은 “ 차세대육성종합대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지침 작성”, “시정촌 및 도도부현은”지역에서의 아동양육, 일-가정 양립지원 등과 관련한 계획작성“, 사업주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환경정비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였다.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도 제2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모두에게 아동양육을 위한 환경정비의 책임을 명시함.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제7조는 “정부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저출산 대응의 지침이 되는 시책의 대강을 작성하여야만 한다”라고 규정함.

31)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子ども・子育て応援プラン(아동·영유아양육 지원플랜), <https://www.mhlw.go.jp/houdou/2004/12/h1224-4c.html> (인출일: 2024. 4. 16.).

32) 文部科学省(문부과학성), 子ども・子育てビジョン(아동·영유아양육비전), https://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2/siryou/_icsFiles/afieldfile/2010/03/16/1290947_2_2.pdf (인출일: 2024. 7. 17.).

33) 중점과제1: 청년세대의 아동의 건전한 성장(세부과제:청년층 취업지원충실, 장학금지원내실화 등 4개), 중점과제2: 일-가정양립지원과 근로방식 재검토(세부과제:육아휴업제도 등 6개), 중점과제3: 생명의 소중함과 가정의 역할에 대한 이해(세부과제:영유아와 함께하는 기회확대 등 3개), 중점과제4: 함께하는 아동양육과 연대(세부과제:취학전 보육,교육 충실 등 15개)

아동영유아양육지원플랜은 엔젤플랜 및 신엔젤플랜의 시책을 계승하면서도,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과 지역사회변모로 인한 육아불안 등을 저출산 유발의 요인임을 추가로 적시하고 구체적 시책으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저 출생 유발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명시하였으나, 세부과제로 도출하지 않고, 세제검토로만 남겨두는 등, 소극적 대응에 머물렀다.

한편 저출생 대응정책의 지속적 추진에도 여성근로자의 증가로 대기아동이 발생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을 유발하는 주요요인임이 제기되었다³⁴⁾. 이에 정부는, 아동영유아양육지원플랜의 구체적 시책과 함께 아동수당, 고교교육무상화 등의 경제적 지원과 보육제도 개편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아동영유아양육비전을 시행하였다. 이에 1972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아동수당대상자의 연령 및 지원기준, 금액 등이 일부 개선³⁵⁾되고 가정적 보육사업, 소규모 보육사업, 인정어린이원,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 설치 등으로 대기아동도 점차 감소하였다.

다) 결혼·임신·출산·아동양육 단계별 빈틈없는 지원을 강조한 저출생사회대책 대강(2015년~2019년) 및 1억총 활약플랜(2016년~2025년)

저출생사회대책대강(少子化社会対策大綱)(内閣府³⁶⁾)은 5개의 중점과제별로 시행할 구체적 시책³⁷⁾과 함께 지역, 기업 등을 포함한 사회전체가 결혼·임신·출산·아동양육의 각 단계별로 다음 표와 같은 시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것을 명시하였다.

-
- 34) 総務省(총무성). 少子化対策に関する政策評価書(저출생대책정책평가서), https://www.soumu.go.jp/menu_news/s-news/daijinkanbou/040720_3_h.pdf (인출일: 2024. 7. 14.);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2006) 第13回出生動向基本調査 結婚と出産に関する全国調査夫婦調査について(제13회출생동향기본조사, 결혼과 출산에 관한 전국조사부부조사에 대하여), <https://www.ipss.go.jp/ps-doukou/j/doukou13/point13.asp> (인출일: 2024. 4. 10.).
 - 35) 2010년 4월 아동수당은 소득제한 없이 중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가정에 월 13,000엔을 지급함. 그러나 재원조달문제로 동년 10월부터는, 연령 및 출생순위별로 차등을 두어, 3세 미만아동 15,000엔, 3세 이상~초등학생으로 첫째 또는 둘째아동은 10,000엔, 세 번째 아동 15,000엔, 중학생은 10,000엔 지급함.
 - 36) 内閣府(내각부), 少子化社会対策大綱(저출생사회대책대강), <https://www.mhlw.go.jp/file/05-Shingikai-11901000-Koyoukintoujidoukateikyoku-Soumuka/0000081807.pdf> (인출일: 2024. 4. 16.).
 - 37) 5개의 중점과제로는 1. 영유아양육지원시책 충실화(구체적 시책:보육서비스 양적,질적 확충, 방과 후 보육 문제해결 등), 2. 청년세대의 결혼출산희망실현을 위한 환경정비(구체적 시책: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촉진, 결혼 아동양육자금 교육자금 일괄증여에 따른 비과세 조치 등 경제적 지원 등), 3. 다자녀가정에 대한 배려(구체적 시책: 아동수당, 유아교육보육료 무상화, 보육소 및 공영주택 우선입소 등), 4. 근로방식개선(구체적 시책:장시간노동억제,육아휴직촉진, 남성의 가사육아의식개혁, 유연근무제 등), 5.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 강화(구체적 시책:지역 선진사례지원 발굴, 세대간 교류지원 등)

〈표 1-1〉 결혼·임신·출산·아동양육의 각 단계별 저출생 대책

생애주기별	세부내용
결혼	인생설계를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컨설팅 결혼, 양육에 대한 정보제공
임신·출산	자녀양육포괄지원센터 정비 출산휴가중 경제적 부담경감·출산수당, 사회보험료면제 등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금지: 기업에 대한 지도강화 주산기의료체계확보, 출산:산부인과 의사확보, 불임전문 상담센터정비 및 불임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아동양육기	경제적 부담완화: 아동수당,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단계적 실시 고교생 학습비 지원 3세대 동거, 근거리 거주촉진, 소아의료충실 건강, 안전, 안심할 수 있는 지역환경 조성 장애아동, 빈곤아동 등 다양한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지원
교육	임신, 출산관련 의학적, 과학적 지식교육(학교, 사회교육기관)
직업	정규직화 촉진, 처우개선 아동양육가정, 직업인 등 지역에서 활약하는 다양한 롤모델 제시

그리고 정책이 종료되는 2019년 말에 달성해야 할 수치까지 구체적으로 제시³⁸⁾ 하였다. 특히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이 저출생으로 연결되고 있으므로 2015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년간 양친, 조부모가 자녀, 손자에게 1,000만엔을 한도로 증여하는 경우 비과세하는 “결혼, 자녀양육자금, 교육자금의 일괄증여에 따른 비과세조치”를 명시하고 시행하였다.

2016년에는, 향후 50년 후에도 1억 명 인구규모를 유지하고 모든 국민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 1.8명이 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10년간의 출생율 향상 로드맵 “일본 1억 총 활약플랜”을 발표하였다. “일본 1억 총 활약플랜”은 출생율 향상을 위해 12개의 대응과제별 세부내용과 목표치³⁹⁾도 함께 명시하였다.

38) 예를 들면 아동양육가정포괄지원센터를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설치, 영유아가정방문사업 전체 시정촌 실시, 출생아동 1만명당 신생아집중치료관리실을 전체 도도부현에서 25~30병상 확보, 남성육아휴직취득율 13%, 6세 미만아동 남성의 육아가사참여시간 1일 2시간 30분, 주60시간 이상 근로자 비율 5% 등이다. 뿐만 아니라 결혼·임신·아동양육에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사업으로 도로, 주택, 여객기차 차량 등의 배리어프리 비율도 명시하였다.

39) 12개의 대응과제는 1. 청년층 고용안정, 처우개선, 2.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 3. 결혼지원충실, 4. 임신·출산·육아불안해소, 5. 3세대 동거, 근거리주거환경개선, 6. 다양한 보육서비스 정비, 7. 보육인재확보, 8. 근로방식개혁, 9. 여성활약추진, 10.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원, 11. 교육기회저해요소 극복, 12. 양육이 곤란한 가족·아동에 대한 배려이며, 목표치는 대응과제별(청년층 고용안정, 처우개선) 세부내용별(25세~34세 청년층 비정규직 비율 2020년까지 절반수준으로 경감 등)로 설정되었다.

라) 청년층 임금향상 및 경제적 지원, 근로방식개선을 강조한 아동미래전략방침 및 가속화 플랜(2023년~)

정부는 2030년까지 7년 동안에 저 출생을 해소하지 않으면, 현재의 경제·사회 시스템 유지가 어렵다고 보고, 청년세대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의식개혁, 아동자녀 양육세대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기본이념으로 설정한 아동미래전략(子ども未来戦略) 및 이에 근거하여 향후 3년간 시행할 중점시책을 발표하였다.

“子ども未来戦略(아동미래전략)”은 저 출생은 특정요인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청년세대의 경제적 불안정과 교제기회 감소,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여성에 편중된 가사·육아부담, 자녀양육의 고립감과 부담감, 양육·교육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젊은 세대가 희망대로 결혼하고 출산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실현을 위해서는 청년층의 소득인상, 가사·육아·근로 방식 등과 관련한 사회구성원의 의식개혁,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라이프 단계에 맞는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향후 3년간 실시할 주요시책을 다음 <표 1-2>와 같이 발표하고, 소요예산재원 3조 엔은 국민의 추가부담 없이 세출개혁을 통한 공비절감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표 1-2> 향후 3년간(2024~2026) 집중적으로 시행할 저출생 대책

주요시책	세부시책	내용
양육관련 경제적 지원 강화 및 청년층의 소득향상	아동수당확충	-현행 소득제한 폐지 후, 고등학생까지 지급(0~2세: 15,000엔, 3세~고교생: 10,000엔) -3번째 자녀의 아동수당액: 3만엔
	출산등에 동반되는 경제적 부담경감	-출산·자녀양육 교부금(10만엔) 제도화 -출산비용 정보공개 -정상분만비용의 보험적용검토
	의료비 조성지원	-의료비조성제도 ^{*)} 에 대한 국고부담감액조치 폐지
	고등교육비 부담경감	-석사과정 대학원생 수업료 후지불제도, 장학금 대상자 확충
	혁신기술 훈련비 지원	-개인 직접지원, 생활비 지원 및 용자제도 창설
	연수입 106만, 130만엔 ⁴⁰⁾ 대응책	-연수입 106만 엔 초과자의 실수령액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시간 연장, 임금인상을 추진하는 기업 지원 -일시적으로 실질임금 130만엔 이상자에게 피부양자 자격 유지
	주택지원강화	-공영임대주택 입소우선권 부여 -빈집 개보수 통한 주택확보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금리우대정책

주요시책	세부시책	내용
모든 어린이 및 자녀양육세대에 대한 지원 확충	1대1 상담지원	-임신~ 출산· 자녀양육단계
	산후케어지원 (산후조리원비용지원)	-전국 실시 및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이용자 부담 경감
	보육사 배치기준 개선	-1세 아동 배치기준(1대5), 4,5세아동(1대 25)
	모든 가정에 보육시설 개방	-미 취업자 자녀에게도 보육시설 개방(고립육아방지)
	방과 후 아동클럽증설	-152만 명 이용분 확보
맞벌이, 함께하는 육아 추진	다양한 육구에 대한 대응	-세대방문을 통한 영케어러 발굴 및 지원 -장애아동지원체제 강화: 아동발달지원센터 기능강화, 보육소 순회지원 -한부모가정자립촉진: 한부모가정 고용·임금 개선 노력 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고등직업훈련 촉진 급부금제도 대상자 확대
	남성의 육아휴직 촉진	-2025년(공무원 85%, 민간 50%), 2030년(공무원·민간 85%) -육아휴직 수급율개선(80%) -육아휴직체제정비 중소기업 지원강화(대체인력인건비 지원)
	유연한 근로방식추진	-3세미만아동 보호자에 대한 기업의 재택근무 노력의무 규정검토(현행:단시간 근무 의무, 유연근무제 노력의무) -3세 이상~초등학교 취학전 보호자:재택근무, 단시간근무, 유연근무제 중, 육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검토 -시간외 근무면제를 받을 수 있는 아동연령상한 검토(현재:3세까지) -단축근무취업급부창설: 2세 미만 아동 보호자의 단시간 근무 선택으로 인한 급여액 저하 방지 -간병휴가범위확대(연령상향,입학식 등 참가도 허용) -장시간 노동 개선, 시간외 근로 상한 규제
자녀양육친화적 사회조성을 위한 인식개혁	근로, 육아 양립지원	-주20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적용확대 -자영업, 프리랜스: 육아기간 1년간, 부모 모두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
		-공공·민간시설행사 등에 아동우선 안내, 우선 입장 -철도, 버스 등에 베비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 설치, 교통기관등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배려를 위한 이해, 협력 분위기 조성 -아동·자녀양육 가정을 응원하는 지역 및 기업의 사례발굴, 홍보 등

주: 일본은 1980년대부터 아동 의료비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의료비 조성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비 부담을 막기위해 초등학생 이상 아동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지자체에 대해 정부는 보조금을 감액하고 있음
 자료: 아동가정청. **子ども未来戦略(아동미래전략. 2023. 6. 13., 각의결정)** 재구성

“아동미래전략(子ども未来戦略)”에서 발표된 저 출생 대책은 20여년에 걸쳐 시행해온 시책을 양적, 질적으로 확대,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자녀양육에

40) 연소득 106만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 공제 등 세제혜택이 가능하며, 130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므로 건강보험,연금 등에 가입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이 저출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아동수당제도에 대해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수급연령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였다. 청년층의 소득향상 차원에서 연소득 106만 엔 및 130만엔의 벽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인상 도모 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피부양자 자격유지를 통해 소득역전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정보육이 불가능한 영유아”에 한정하여 보육시설 입소자격을 허용하였던 제도를 개선하여 “고립육아” 해소를 위해 모든 가정에게 “시간제 보육”의 형태로 개방한다. 그리고 2021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산후케어사업의 전국적 실시방침 등은 새롭게 제시된 저출생 대책이다. 무엇보다 근로방식개선을 통해 일-가정 양립환경이 구비되지 않고서는 출생을 반등은 어렵다는 어렵다는 인식하에 남성 육아휴직 취득촉진 및 육아휴직 급여율 인상을 명시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대기업에 비해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체제정비를 하는 경우 지원을 강화하며, 기업이 유연근무제·단시간근무·재택근무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법제화를 명시하였다.

4) 일본 저출생 대책의 주요특징

1990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일본 저 출생 대책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저출생 대책은, 원인분석에 근거한 다양한 시책 보다는 주로 보육서비스 확대정책을 2020년 초반까지도 시행하였다. 즉, 일-가정양립을 저해하는 고용환경, 여성편중의 육아·가사노동 부담, 직장우선 기업풍토, 경제적 부담 등을 저 출생 유발의 주요요인으로 적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정부는 보육서비스의 양적확대를 통해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환경이 확보됨으로서 저 출생도 해소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이에 30년간의 확대정책을 통해 대기아동 수는 크게 감소하였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저 출생으로 도시부에도 일부 정월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아동미래전략(子ども未来戦略)”에서 2024년부터 고립육아 해소를 위해 “누구라도 보육시설 통원” “보육사 배치기준 개선”등을 발표하는 등, 양적확대에서 질적 충실로 전환하고 있다. 반면 초등학생의 방과 후 아동클럽 확보는 신엔젤플랜 시행이후 지속적으로 증설시켜 왔음에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

둘째, 육아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이 저 출생의 주요요인임은 엔젤플랜(1994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재원확보 등의 이유로 경제적 지원은 없이 “세제검토”등의 미온적인 대책을 반복하다, “결혼·아동양육자금·교육자금 일괄증여에 따른 비과세 조치”(2015년)⁴¹⁾,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2019년 10월), 아동수당제도의 소득제한 폐지 및 대상연령 확대(2023년) 등을 통해 최근 일부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 장학금 확대 검토, 출산육아응원교부금의 제도화 검토(こども家庭庁⁴²⁾) 등을 밝히는 등,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셋째, 저출생 대책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고용관행(장시간 노동, 육아 휴직, 경직화된 근로방식)이 저 출생의 주요요인임을 지속적으로 명시하였다. 그리고 2005년 영유아 양육응원플랜 이후에는 구체적 목표치도 제시하는 등 일정부분 진전은 있으나, 성역할 분업의식, 직장우선의 기업풍토 등이 강한 현실적 상황에서, 여성의 높은 가사육아분담율, 남성의 낮은 귀가시간 등, 일-가정 양립여건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취약하다.

1985년 2,093시간이었던 일본의 평균연간 총노동시간은, 저출생 대책의 시행과 함께 2022년 1,607시간까지 감소하였으나, 프랑스(1,511시간), 스웨덴(1,440시간), 독일(1,341시간)에 비해 길다(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2023: 205-206⁴³⁾). 육아휴직 역시 신엔젤플랜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급여액이 상승(1995년 25%, 2000년 40%, 2023년 현재 67%)하였으며, 이에 따라 여성 육아휴직취득율도 85.1%로 상승하였다. 이에 비해 남성 육아휴직취득율은 기업우선 직장풍토, 낮은 급여수준(67%)등의 이유로 13.97%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아동미래전략(子ども未来戦略)”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율을 2030년까지 85%로 획기적으로 높이고, 급여수준도 80%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경직화된 근로

41) 경제적 불안이 청년층의 결혼·출산 저해 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양친, 조부모가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결혼·출산·양육지원을 위해 1,000만엔을 한도로 지원하는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조치이다

42) こども家庭庁(아동가정청), こども未来戦略(아동미래전략),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fb115de8-988b-40d4-8f67-b82321a39daf/b6cc7c9e/20231222_resources_kodomo-mirai_02.pdf (인출일: 2024. 7. 11.).

43)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2023), データブック国際労働比較(데이터북 국제노동비교)2022, <https://www.jil.go.jp/kokunai/statistics/databook/2024/documents/Databook2024.pdf> (인출일: 2024. 5. 1.).

형태가 일-가정 양립에 장애가 된다는 원인분석에 근거하여, 3세 이상 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있는 보호자가 단시간 근무,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중, 최소 2개이상의 제도를 기업이 시행하도록 법률을 2024년 개정하는 등,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넷째, 스웨덴, 핀란드 등 합계출산율이 높은 국가의 공통점은 성 평등 지수가 높은 반면 한국,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교적 가치관이 우세하여, 취업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가사노동 분담율 수준은 높다. 이에 정부도 강한 성역할 분담의식을 출생을 저하의 원인으로 보고,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효과는 여전히 미미하다.

1999년의 신엔젤플랜에서부터 성역할 분업의식, 직장우선의 기업풍토가 저 출생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해소를 위한 대응책은 남녀균등고용기업에 대한 표창 및 세미나 개최, 가족친화적 기업 발굴 등과 같은 미온적 대책 등이며, 2015년의 저출생 사회대책대강에서도 육아휴직취득 촉진, 가사·육아에 대한 의식 개혁 등과 같은 대책에 그치고 있다.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 목표치를 85%로 제시한 “아동미래전략(子ども未来戦略)”(2023)에 따라, 2024년 3월 12일 개최된 각의에서 종업원 수 300명 이상 기업에 대해 육아휴직 취득상황 공표를 의무화 하고,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은 남성육아휴직목표설정을 의무화 하도록 의결(NHK 보도자료⁴⁴⁾)하는 등에 그치는 등, 양성평등가정 및 사회실현을 위한 현실적, 구체적 방안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다섯째, 2005년 이후에는 청년층의 교제기회감소, 고립육아,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저 출생의 한 요인임을 적시하고, 청년층 대상의 다양한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저출생 요인 중 하나인 비혼 사유로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라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5년 아동·영유아양육지원 플랜에서부터 결혼정보 및 교제기회 제공을 위한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고립육아예방을 위해서는 1995년부터 지역아동양육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대응해 왔으며, 2015년의 저출생 사회대책대강에서는 아동양육포괄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44) NHK 보도자료, 仕事との両立支援へ 育児・介護休業法などの改正案 閣議決定(직장과의 양립지원을 위한 육아·간병휴업법 등의 개정안 각의결정), <https://www3.nhk.or.jp/news/html/20240312/k10014387461000.html> (인출일: 2024. 5. 28.).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장학금 지원, 공영주택 입주권 우선 부여 등의 시책도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여섯째, 정부의 저 출생대책에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책을 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강구할 필요성에서 2003년 차세대 육성지원대책추진법 및 저출생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次世代育成支援対策推進法)⁴⁵⁾은 제5조, 12조에서 노동자의 노동조건 정비, 일-가정양립을 위한 노동환경정비계획수립의 기업체 의무화 및 종업원 100명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실시시간, 목표치를 명시한 행동계획을 후생노동대신에게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였다. 저출생사회대책기본법(少子化社会対策基本法)⁴⁶⁾ 제3조~5조에서도 아동양육환경정비는 중앙정부, 지자체와 함께 기업도 의무책임자임을 명시하였다.

일곱 번째 아동양육에 편리한 환경조성을 저출생 대책의 주요사업으로 명시하고 보건, 교통,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엔젤플랜에서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정비”의 필요성이 명시되어, 신엔젤플랜에서는 주산기 의료네트워크정비, 소아구급의료지원 등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시행하였다. 그 후, 아동·영유아양육응원플랜에서 공공교통기관의 배리어프리, 내각부(内閣府)의 저출생사회대책대강(少子化社会対策大綱)⁴⁷⁾에서는 결혼·임신·출산·양육에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분야⁴⁸⁾와 구체적 목표치를 명시하고 달성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2023년 “아동미래전략(子ども未来戦略)”에서는 1대1 상담지원, 산후케어지원, 양육친화적 사회조성을 위한 의식개혁으로 이어지고 있다.

45) 次世代育成支援対策推進法(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15AC0000000120_20240531_506AC0000000042 (인출일: 2024. 7. 14.).

46) 少子化社会対策基本法(저출생사회대책기본법),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15AC1000000133_20230401_504AC10000000077 (인출일: 2024. 7. 14.).

47) 内閣府(내각부), 少子化社会対策大綱(저출생사회대책대강), <https://www.mhlw.go.jp/file/05-Shingikai-11901000-Koyoukintoujidoukateikyoku-Soumuka/0000081807.pdf> (인출일: 2024. 4. 16.).

48) 도로, 여객, 주택의 배리어프리 비율, 배리어프리화된 도시공원 비율, 아동양육지원페스티벌협찬가계수, 저장버스도입비율 등이다.

나. 영유아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정부 및 지자체는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양육부담해소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현금지원과 함께 경제적 부담이 동반되는 교육, 의료등의 서비스 이용비용을 공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1)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

유치원 및 보육소 등의 보육료가 자녀양육에 있어 부담감으로 작용한다는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⁴⁹⁾ 및 내각부(内閣府)⁵⁰⁾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2006년부터 유아교육·보육의 무상화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0여년간의 논의를 통해 2019년 10월부터 0~2세 저소득층과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3〉 영유아 교육,보육 무상화 정책의 내용

<p>1. 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에 해당하는 모든 아동(1호인정, 2호인정) ● 0-2세 아동: 주민세 비과세 세대(연봉 약 250만엔 미만)의 아동으로서 가정에서 보호자가 보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호 인정) <p>2. 대상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소·인정어린이원·유치원 ● 지역형 보육 ● 인가 외 보육시설(베이비호텔, 인증보육소, 베이비시터, 인가외의 사업소내 보육·거택방문, 기업주도형 보육사업 등) ● 아동·영유아 양육지원사업: 일시보육, 병원보육, 패밀리 서포터 센터 ● 장애아동 통원시설 <p>3. 무상화 금액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료 전액 무료: 보육소, 인정어린이원, 공립 유치원 및 아동·영유아 양육지원신제도 적용 사업 유치원, 지역형 보육, 인가 외의 기업주도형 보육사업, 인증보육소, 장애아동 통원시설 ● 아동·영유아 양육지원신제도 적용제외 사업유치원, 인가 외 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3-5세의 1호 인정 아동: 유치원 상한액 25,700엔 ㄴ. 3-5세의 2호 인정아동 : 보육소 상한액 37,000엔 ㄷ. 0-2세의 3호 인정아동으로서 주민세 비과세 세대 아동: 보육소 상한액 42,000엔
--

49)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21世紀出生児童縦断調査結果概要(21세기 출생아동종단조사 결과개요) <https://www.mhlw.go.jp/toukei/saikin/hw/syusseiji/05/kekka3.html> (인출일: 2024. 5. 29.).

50) 内閣府(내각부), 「少子化社会対策に関する子育て女性の意識調査」の概要(저출생사회대책관련 자녀양육여성의 의식조사개요), https://www.gender.go.jp/kaigi/danjo_kaigi/siryo/pdf/ka20-2.pdf (인출일: 2024. 5. 29.).

4. 무상화 제외 항목(실비징수)

- 급식비(주식비, 부식비), 통원차량비, 행사비(견학, 소풍 등)

단, 연간 수입 360만 엔 미만 가구의 아동 및 모든 세대의 3번째 아동의 급식비는 면제

주: こども家庭庁(아동가정청),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저자가 작성하였음.
자료: こども家庭庁(아동가정청), 幼児教育・保育の無償化概要(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8a55e619-4b0a-4ab2-b385-45aeb296b425/d2817ebc/20230929_policies_kokoseido_mushouka_about_01.pdf (인출일: 2024. 5. 28.).

즉, 가정보육이 불가능한 저소득세대의 0~2세 영유아는 월42,000엔의 범위 내에서 보육료 지불 없이 보육소, 인정어린이원 등의 법정보육시설과 인증보육소, 베이비호텔등의 인가 외 보육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다(こども家庭庁⁵¹⁾). 반면 3~5세 유아는 가정보육가능 여부에 따라 월37,000엔, 25,700엔의 범위 내에서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급식비, 통원차량비, 견학, 소풍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호자 부담이다(こども家庭庁⁵²⁾).

2) 아동수당

1971년 아동수당법 제정 후, 197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초기에는 소득제한을 두고, 5세 미만의 셋째 아동부터 월 3,000엔을 지불하는 등(전일주·최영진, 2015: 180), 아동연령, 부모소득, 출생순위 등에 따라 차등 지불되었다(유해미·조숙인·장경희·박은영, 2016: 105). 그러나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이 저출생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2010년 시행된 “아동 영유아 양육비전”에서 아동수당 재검토가 명시되었다. 이에 동년 4월부터 소득제한 없이 중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월 13,000엔을 지불하였으나, 2012년 소득기준이 다시 적용되어 연수입 960만엔 이상 세대 아동에 대해서는 중학생까지 일률적으로 5,000엔을 지불하였다. 현재는 연령, 출생순위, 소득수준 등에 따라 <표 II-3-4>와 같이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51) こども家庭庁(아동가정청), 幼児教育・保育の無償化概要(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개요),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8a55e619-4b0a-4ab2-b385-45aeb296b425/d2817ebc/20230929_policies_kokoseido_mushouka_about_01.pdf (인출일: 2024. 5. 28.).

52) こども家庭庁(아동가정청), 幼児教育・保育の無償化概要(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개요),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8a55e619-4b0a-4ab2-b385-45aeb296b425/d2817ebc/20230929_policies_kokoseido_mushouka_about_01.pdf (인출일: 2024. 5. 28.).

그리고 2023년 “아동미래전략(子ども未来戦略)”에서는 저 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아동수당의 소득제한을 없애고, 연령을 18세 까지로 상향조정하는 개선방안이 아래 <표 1-4>와 같이 발표되었다. 즉, 0~3세 미만의 첫 번째, 두 번째 아동은 월 15,000엔, 3세부터 고등학생까지는 10,000엔, 세 번째 이후 아동은 0세~고등학생까지 월 30,000엔을 지급한다(子ども家庭庁⁵³).

<표 1-4> 아동수당 내용

구분	1인당 월지급액	개선방안	
3세 미만	15,000엔	15,000엔	3번째 자녀부터: 30,000엔
3세부터~초등학생	10,000엔(세번째 자녀일 경우: 15,000엔)	10,000엔	
중학생	10,000엔		
고등학생	없음		
연수입960만엔~1200만엔 세대	특례급부로 5,000엔	소득제한 없이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위와 같이 지급	
1,200만엔 이상세대	아동수당 급부 제외		

자료:子ども家庭庁(아동가정청),子ども未来戦略(아동미래전략),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fb115de8-988b-40d4-8f67-b82321a39daf/b6cc7c9e/20231222_resources_kodomo-mirai_02.pdf (인출일: 2024. 7. 11.).

3) 영유아 의료비 조성제도

일본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 전 영유아의 의료비 본인부담비율은 20%(東洋經濟 보도자료⁵⁴)이다.

영유아 의료비 조성제도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치체가 독자적으로 보조하는 사업으로, 1961년 이와테현 사와우라무라(沢内村)에서 1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大阪医療福祉専門学校⁵⁵)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⁵⁶에 의하면, 전국의 모든 시구정촌은 외래,

53)子ども家庭庁(아동가정청),子ども未来戦略(아동미래전략),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fb115de8-988b-40d4-8f67-b82321a39daf/b6cc7c9e/20231222_resources_kodomo-mirai_02.pdf (인출일: 2024. 7. 11.).

54)東洋經濟(동양경제) 보도자료,子どもの医療費,助成が過熱しすぎの問題点(아동의료비조성가열경쟁이 초래하는 문제점), <https://toyokeizai.net/articles/-/266769> (인출일: 2024. 6. 30.).

55)大阪医療福祉専門学校(오사카의료복지전문학교),各地方自治体における乳幼児医療費助成制度の比較と課題(지방자치체별 영유아의료비 조성제도 비교·과제), <https://www.ocmw.ac.jp/contents/sotuken/archives/sotuken/12932> (인출일: 2024. 6. 30.).

56)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令和3年度「乳幼児等に係る医療費の援助についての調査」について(2021년도 영유아 등에 관한 의료비 원조에 관한 조사에 관하여), https://www.mhlw.go.jp/stf/newpage_28023.htm

입원을 불문하고 영유아 의료비조성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87%의 시구정촌은 가정의 소득수준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연령제한을 중학생 까지 하고 있는 시구정촌수는 외래의 경우 전체 1,741개 중 832개, 고등학생까지가 817곳 이었다. 입원 역시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보조하는 지자체가 각각 810 곳, 892곳이었다. 20%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시구정촌은 외래의 경우, 65%에 해당하는 1,136곳, 입원의 경우에는 70%인 1,222곳으로 조사되었다(厚生労働省⁵⁷⁾).

의료비를 세금으로 지원함으로써 과잉진료가 유발되고, 이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높아진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중앙정부는 현재까지 초등학생 이상 아동에게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삭감해 왔으나, 이를 폐지하겠다고 “아동미래전략(子ども未来戦略)”(2023)에서 발표하였으나, 구체적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4) 출산육아일시금

출산은 질병, 사고로 인한 상처 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분만비용, 입원비 등은 전액 본인부담이므로 부담액이 크다. 이에 출산비용부담경감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가입하고 있는 공적의료보험(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공제조합)의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출산을 하였을 경우,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되며(厚生労働省⁵⁸⁾, 2023년 4월부터 일시금으로 50만 엔이 지불(厚生労働省⁵⁹⁾)되고 있다. “아동미래전략(子ども未来戦略)”(2023)에서는 2026년을 목표로 정상분만에도 건강보험을 도입하고,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ml (인출일: 2024. 6. 20.).

57)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令和3年度「乳幼児等に係る医療費の援助についての調査」について(2021년도 영유아 등에 관한 의료비 원조에 관한 조사에 관하여), https://www.mhlw.go.jp/stf/newpage_28023.html (인출일: 2024. 6. 20.).

58)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出産育児一時金等の医療機関等への直接支払制度「実施要綱」(출산육아일시금등의 의료기관직접지불제도 실시요강) <https://www.mhlw.go.jp/content/12400000/001093053.pdf> (인출일: 2024. 7. 11.).

59)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出産育児一時金の支給額・支払方法について(출산육아일시금지급액, 지급방법에 대하여),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ku/iryohoken/shussan/index.html (인출일: 2024. 7. 16.).

5) 출산수당금

출산 전, 출산 후 일정기간동안 휴업을 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다. 우리나라의 출산휴가수당과 유사하다. 노동기준법에서는 산전산후 휴업기간 중 급여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출산휴가 중 급여지불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다. 출산수당금은 출산 전 42일(쌍둥이는 98일)부터 출산 후 56일까지의 범위 내에서, 휴업으로 인해 급여를 지불받지 못한 여성이 대상이며, 일일 지급액은 과거 12개월간 평균보수월액을 30일로 나눈 금액의 3분의 2이다(全国健康保険協会⁶⁰). 출산수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성이 건강보험의 가입자 본인이어야 한다.

6) 출산·육아응원교부금

핵가족화의 진행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연결망이 희박한 현대사회에서, 출산 및 육아에 고립감, 불안감을 가지는 가정이 적지 않다. 이에 0~2세 저 연령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임신기부터 출산·육아기까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1대 1상담과 함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육아불안을 해소하고자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다(厚生労働省⁶¹).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임신부는 거주지 시정촌에 설치되어 있는 자녀양육포괄 지원센터⁶²에서 임신부터 출산·양육기까지 단계별로 1대1상담을 통해 출산 및 육아관련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한다. 경제적 지원은 임신초기 및 출산기를 전후하여 5만엔씩 10만원 상당의 쿠폰을 교부받아 출산 및 육아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厚生労働省⁶³). 재원은 1대1상담지원은 정부1/2, 도도부현 및 시정촌이 각각 1/4씩 분담하며, 경제적 지원은 정부2/3,도도부현 및 시정촌이 각각 1/6씩 분담한다(厚生労働省⁶⁴).

60) 全国健康保険協会(전국건강보험협회) 홈페이지, <https://www.kyoukaikenpo.or.jp/g3/sb3290/r148/> (인출일: 2024. 7. 14.).

61)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出産・子育て応援交付金の概要について(출산·육아응원교부금에 대하여), <https://www.mhlw.go.jp/content/11908000/001035057.pdf> (인출일: 2024. 7.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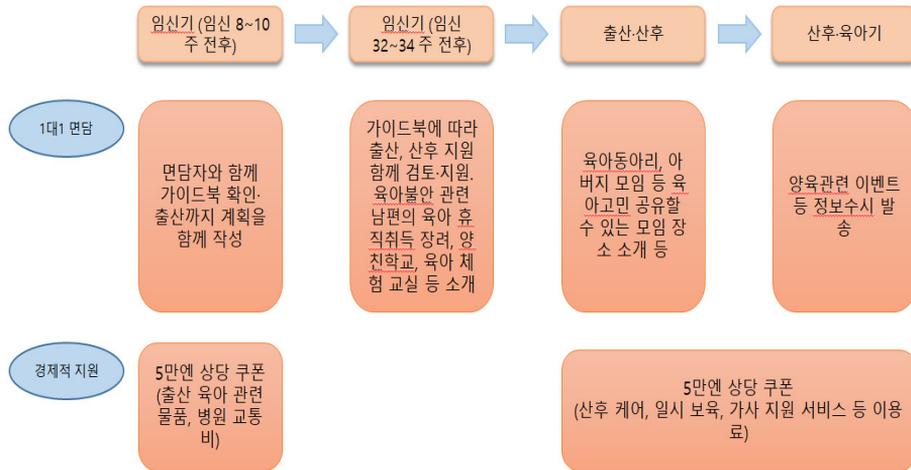
62)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의 육아불안이 저 출생의 요인이라는 지적이 엔젤플랜에서부터 제기되어, 이를 위해 1994년부터 보육소에 지역아동양육지원센터가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2015년 저출생 사회대책대강에서는 아동양육포괄지원센터로 개명하고 전국적 설치계획을 명시함.

63)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出産・子育て応援交付金の概要について(출산·육아응원교부금에 대하여), <https://www.mhlw.go.jp/content/11908000/001035057.pdf> (인출일: 2024. 7. 16.).

64)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出産・子育て応援交付金の概要について(출산·육아응원교부금에 대하여), <https://www.mhlw.go.jp/content/11908000/001035057.pdf> (인출일: 2024. 7. 16.).

정부의 출산·육아응원교부금 사업에 추가 경제적 지원을 하는 지자체도 있다. 일례로 동경도는 임신기에 5만엔, 출산후 10만엔을 지불한다(東京都福祉局⁶⁵⁾).

[그림 1-9] 출산·육아응원교부금 급여진행절차



주: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出産・子育て応援交付金の概要について(출산·육아응원교부금에 대하여)를 토대로 저자 작성.

자료: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出産・子育て応援交付金の概要について(출산·육아응원교부금에 대하여), <https://www.mhlw.go.jp/content/11908000/001035057.pdf> (인출일: 2024. 7. 16.).

7) 육아휴업급부금

육아휴업은 출생아동이 1세가 될 때까지(부모가 함께 육아휴업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2개월 까지) 신청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다. 1991년 육아휴업법 제정이후, 증가하여 2021년 현재 여성취득자는 85.1%이며, 남성취득자는 13.97%이다(보육단체연합회·보육연구소(全国保育団体連絡会·保育研究所), 2023).

육아휴업급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수급기간중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은 면제되며 급부액은 다음과 같다(厚生労働省⁶⁶⁾).

www.mhlw.go.jp/content/11908000/001035057.pdf (인출일: 2024. 7. 16.).

65) 東京都福祉局(도쿄도청), 東京都出産・子育て応援事業(출산·자녀양육응원사업), https://www.fukushi.metro.tokyo.lg.jp/kodomo/shussan/tokyo_shussankosodateouen.html (인출일: 2024. 6. 30.).

66)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育児休業給付の内容と支給申請手続(육아휴업급부내용과 지급신청절차), <https://www.mhlw.go.jp/content/11600000/001276629.pdf>. 인출일: 2024.08.23

육아휴업 시작~180일까지 : 휴업시작시점 임금일액⁶⁷⁾*지급일수*67%
 육아180일 이후~: 휴업시작시점 임금일액*지급일수*50%

그리고 출산 후 180일까지의 월 상한지급액은 2024년 기준 315,369엔이며, 180일 이후 상한액은 235,350엔이다.

저 출생의 심화와 함께 2021년 정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산후 아빠 육아휴직 급여금(출생시육아휴업급여금)”을 창설하였다. 이는 여성의 산후휴업기간 중 남성이 육아휴업과는 별도로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서 자녀 출생후 8주간 이내에 4주간까지 취득가능하며,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취득할 수 있다. 급여금은 육아휴직 급여금 계산식과 동일하나, 휴업기간일수 상한선이 28일이다. 따라서 아빠육아휴직급여금의 상한액은 294,344엔이다($15,690\text{엔} \times 28\text{일} \times 67\% = 294,344\text{엔}$). 한편 정부는 “아동미래전략(子ども未来戦略)”(2023)에서 출생후 일정기간내 양친의 육아휴직취득촉진을 위해 급여율을 8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8) 출산축하금(지방자치체)

1989년의 1.57명 쇼크 이후, 저 출생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출산축하금을 독자적으로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다양하나, 첫째아동부터 둘째 아동에게는 5만엔부터 30만엔 수준이며, 세 번째 이후 출생아동에게는 25만엔에서 50만엔, 4번째 아동에게는 100만엔을 지급하는 곳도 있으며, 현금이 아닌 쿠폰으로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다⁶⁸⁾.

9) 자녀양육지원 패스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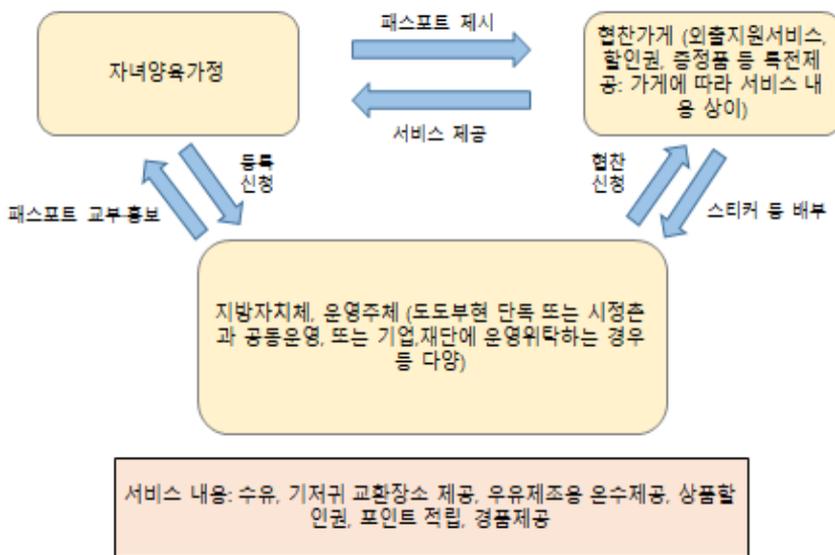
자녀양육에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67) 육아휴업시작 전 6개월간 지급된 총액을 180일로 나누어서 나온 금액으로, 일액 상한액은 15,690엔, 하한액은 2,869엔이다.

68) ともミライ(오кина와현 야에야마군 타케토미정) 홈페이지, <https://www.kodomo-mirai.okinawa/support/detail/28141> (인출일: 2024. 7. 14.); 秩父市(사이타마현 지치부시) 홈페이지, <https://www.city.ychichibu.lg.jp/9829.html> (인출일: 2024. 7. 14.); 豊後高田市(오이타현 분고타카다시) 홈페이지, <https://www.city.bungotakada.oita.jp/site/kosodate-kyoiku/2383.html> (인출일: 2024. 7. 14.); 横手市(아키타현 요코테시) 홈페이지, <https://www.city.yokote.lg.jp/kosodate/1001157/1001320/1001322/1003362.html> (인출일: 2024. 7. 14.).

가게가 연계하여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다양한 종류의 할인, 우대서비스 및 외출원조 등을 하는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 단독 사업으로 각지에서 실시되었으나 2016년 4월 전국적 시행이후, 2016년 10월부터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용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10] 자녀양육지원 패스포트 사업 내용



자료: こども家庭庁(아동가정청), 子育て支援パスポート事業の概要(자녀양육패스포트지원사업 개요), <https://www.cfa.go.jp/policies/kosodateshien/passport/gaiyou> (인출일: 2024. 7. 14.).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패스포트를 발행하면, 개별가정은 이를 가게, 기업등에 제시하고 다양한 서비스(수유, 기저귀 교환장소 제공, 우유제조용 온수제공, 상품할인권, 포인트 적립, 경품제공)에서 혜택을 받는 사업이다(こども家庭庁⁶⁹⁾).

69) こども家庭庁(아동가정청), 子育て支援パスポート事業の概要(자녀양육패스포트지원사업 개요), <https://www.cfa.go.jp/policies/kosodateshien/passport/gaiyou> (인출일: 2024. 7. 14.).

10) 자녀 간호휴가제도

“육아휴업,간병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 간병 노동자 복지에 관한 법률⁷⁰⁾(약칭:육아,간병휴가법)” 제 16조의 2항, 3항에서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는 노동자는 1년에 5일의 범위 내(아동이 2명인 경우 10일)에서, 부상,질병, 예방접종으로 인해 아동을 간호하여야 할 경우 사업주에게 간호휴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녀간병휴가제도는 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취득가능하며, 하루단위, 반일단위, 시간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노동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유급의 연차휴가와와는 달리 휴가 중 급여에 대한 명시가 없어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다.

2021년도 조사(厚生労働省⁷¹⁾)에 의하면, 자녀간호휴가제도 규정이 있는 사업소 비율은 65.7%이며, 이 중, 30명 이상 사업체는 83.9%였다. 규모별로는 500명 이상 기업체가 95.5%, 100명~499명 93.3%, 30명~99명 80.9%, 5명~29명 60.3%로 큰 규모의 사업체 일수록 규정이 있었다. 임금은 유급 27.5%, 일부유급 7.4%, 무급65.2%로 무급으로 휴가제도를 운영하는 비율이 높았다.

2023년 “아동미래전략(子ども未来戦略)”에서는, 간병휴가 대상자 아동의 연령 확대 및 휴가취득사유를 질병 뿐만 아니라 입학식 참가, 전염병 등으로 인한 학교 폐쇄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1)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는 일정기간 정해진 시간범위 내에서 노동자가 매일매일 업무시작 및 종료시각, 노동시간을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생활과 업무와의 조화를 꾀하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이다(厚生労働省⁷²⁾). 일본은 1987년 노동기준법 개정으로 1988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⁷³⁾.

70)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육아휴업,간병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 간병 노동자 복지에 관한 법률),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03AC0000000076_20240531_506AC0000000042 (인출일: 2024. 7. 16.).

71)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雇用均等基本調査(고용균등기본조사), <https://www.mhlw.go.jp/toukei/list/dl/71-r03/03.pdf> (인출일: 2024. 7. 16.).

72)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フレックスタイム制のわかりやすい解説&導入の手引き(이해하기 쉬운 유연근무제 해설 및 도입절차), <https://www.mhlw.go.jp/content/001140964.pdf> (인출일: 2024. 7. 16.).

“아동미래전략(子ども未来戦略)”(2023)에서는 일-가정 양립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보호자의 욕구에 따라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단시간 근무 중 선택할 수 있는 제도검토를 명시한 후, 기업이 시행할 수 있도록 2024년에는 법률을 개정하였다.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2022b)에 의하면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비율은 8.2%⁷⁴⁾, 이용 노동자 수는 10%이며, 종업원수 1,000명 이상의 대기업 시행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73) 일본위키백과. 유연근무제, <https://ja.wikipedia.org/wiki/%E3%83%95%E3%83%AC%E3%83%83%E3%82%AF%E3%82%B9%E3%82%BF%E3%82%A4%E3%83%A0%E5%88%B6> (인출일: 2024. 7. 16.).

74) 8.2%에 해당하는 기업을 규모별로 보면, 종업원 수 1,000명이상 기업 31.2%, 300명~999명 17.0%, 100~299명 기업 8.8%, 30명~99명 기업6.6%로, 대기업일수록 시행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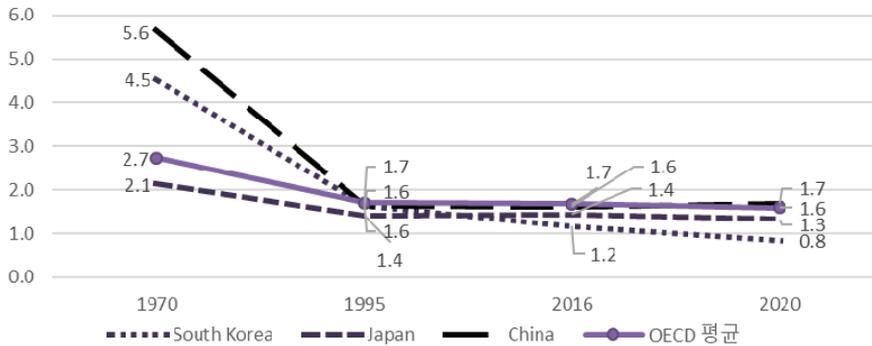
2. 중국의 저출생 현황 및 영유아 가구 대상 육아지원 정책의 특징

가. 중국의 저출생 현황

인구 대국이라고 불리던 중국은 이제 저출산으로 인구 고민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저출산 문제는 낮은 출산율뿐만 아니라 그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은 인구 급증을 막기 위해 산아제한 법으로 일컬어지던 「인구계획생육법」을 1982년 9월에 기본 정책으로 지정하고 '한 자녀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근래 출산율 저하가 가팔라지자 뒤늦게 2013년 부부 가운데 한쪽이라도 독자일 경우는 두 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독 두 자녀 정책'을 거쳐 2016년에는 '전면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고, 5년 만에 '세자녀' 허용으로 제한을 추가 완화했다. 또한 초과 출산시 벌금도 폐지했으며 다자녀 출산시에 혜택을 주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결국 저출산에 따른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에 엄중한 위기감을 느낀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에 중국의 신생아 수는 1949년 건국 후 처음으로 1,0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출생아 수는 2000년 1,200만명이었던 것이 2021년 1,062만명으로, 2022년에는 956만명으로 급감했다(South China Morning Post, 2023). 국내외에서 중국의 합계출산율 추산 방식과 이에 따른 분석을 놓고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먼저 세계은행(World Bank, 2021)의 보고서에서 2020년말 현재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7를 기록했다. 1960년에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5.748를 기록해 당시 가입 연령 여성인구(15~49세)는 대략 6명의 자녀를 출산했지만, 1960년 중반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1999년에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1.494를 기록했고, 1999년 이후 반등세를 보여 17년 동안 계속 증가했으며, 2020년말에 1.7에 달했다(그림 2-1 참조).

[그림 2-1] 한중일 3국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23, 2024.06.11,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자연증가 등,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000F_01&conn_path=I3 (인출일: 2023. 6. 2.).

한편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제시한 중국 합계출산율 추이는 심각한 저출산 양상을 보였다. 2010년에 실시된 중국 제6차 인구센서스 데이터에 따르면 2010년말에 중국 합계출산율은 1.18를 기록했다(Yang, Jiang and Sánchez-Barricarte, 2022). 이는 2000년의 1.22에서 소폭 감소한 수치로, 지난 20여년 동안 중국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0년말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이 2.5임을 감안한다면, 당시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매우 낮은 수치이다. 더군다나 중국 국가통계국이 2020년 5월 발표한 제7차 인구센서스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말에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3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고도로 민감한 경고선(highly sensitive warning line)’인 1.5명보다 낮다(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2021). 이러한 저출산율은 중국의 인구 성장 및 사회 경제적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의 저출산은 인구학적 요인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 등이 결합한 매우 복합적인 문제이다. 중국의 저출산 원인은 구체적으로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가임여성의 감소, 경제적 부담, 출산·육아에 대한 공적 지원의 부족,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가 있다(김병철·황지유, 2019). 특히 육아에 대한 공적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임신·출산을 비롯한 육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담고 있는 현행 중국의 육아지원 정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일반적인 가정에 대한 육아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岳经纶·范晰, 2018).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저출산은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공적 육아 지원체계 부재에 따른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다.

중국에서 저출산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자 각종 규제를 뜯어고치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원금 지급 등 출산 독려에 나섰지만, 코로나19와 맞물리며 인구 감소는 당초 예상보다 오히려 빨라지고 있다. 2000년부터 중국에서는 ‘정책적 저출산’에서 점차 ‘내생적 저출산’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즉 2010년부터 정책적 이유보다는 외부 환경 요인(경제적 부담, 가치관의 변화, 육아지원 제도 부족 등)을 고려하여 중국 가임여성들은 자원적, 자발적, 자각적으로 아이 낳기를 꺼려하고 있다(Mu and Lin, 2021).

출산 기피는 도시 여성에서 농촌 여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농촌 출신 여성 출산율은 도시 여성의 출산율보다 높게 나타났다(安梦成, 2015). 산아제한시기에는 한자녀 정책이 도시주민에게 엄격하게 적용되었을뿐, 대부분 지방의 농촌 부부들은 첫 번째가 여자아이일 경우 둘째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되었는데, 이른바 1·5자녀 정책이었다(Greenhalgh, 2008). 따라서 농촌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어서 도시지역의 낮은 출산율을 상쇄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도시·농촌 간의 출산율 격차를 살펴보면, 중국이 처음으로 ‘단독 두자녀 정책’을 시행했던 2013년에는 도시지역 출산율은 1.033, 농촌지역 출산율은 1.553를 기록하여 도시·농촌 간의 출산율 격차는 0.520를 나타냈지만, 2020년에 들어서면서 도시지역 출산율은 1.255, 농촌지역 출산율은 1.420를 기록하여 도시·농촌 간의 출산율 격차는 0.165로 줄어들었다(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2021). 농촌 여성들의 출산률은 도시 여성의 출생률보다 훨씬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출산 기피는 도시 여성이 아닌 농촌 여성에서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 하다.

농촌 여성의 출산 기피 현상은 출산과 취업이라는 두 가지 난관에서 설명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농촌 여성이 도시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출산과 취업의 균형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급속한 도시화에서 농촌 여성의 여러 사회제도부터 배제되는 측면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천잉(陈瑛)과 장홍쩌(江鸿泽)는 지난 4년 연속 농촌 이주인구의 동향을 조사한 결과, 출산행위는 도시이주 농민공 여성의 취업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부정적인 영향은 도시이주 농민공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사회제도에 의해 억제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천팅팅(陈婷婷)의 조사에 따르면, 도시이주 농민공 여성은 그들의 출산 행위로 인해 취업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시이주 농민공 여성은 도시에 유입되어 더 많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지만 노동참여율은 도시이주 농민공 남성보다 거의 20%가 낮다. 이는 도시이주 농민공 여성의 출산행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나. 중국의 저출생 주요 원인

1) 개인 자발적 출산기피 현상

무엇보다도 개별 가정의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은 출산기피 현상을 심화시킨다. 농업 사회에서는 아이가 많을수록 노동력이 많고 노후가 보장된다. 현재 중국은 점점 더 도시가 늘어나고 있으며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 가족 부양의 경제학 역시 달라졌다. 이제 자녀 교육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어 둘째를 갖고 싶다는 욕구가 꺾이기 때문이다. 가임 연령 여성인구 중 절반 이상은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두 자녀 갖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응답자가 자녀를 갖고 싶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된 이유로 생활비, 교육, 육아, 주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을 꼽았다. 중국 베이징, 상하이 등의 대도시에서는 생활비가 매우 높다. 주택 가격, 교육비, 의료비 등 다양한 생활 비용이 증가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큰 경제적 부담으로 느낀다. 특히 0~3세 아동의 보육서비스, 3~6세 학령전 교육, 6세 이상 데이케어 서비스 등의 아동복지 서비스 공급의 심각한 부족으로 인해 가정의 육아비가 상승하게 되었다(谢琼, 2013). 주거 비용 역시 결혼과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낮은 젊은 세대에는 경제적인 원인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

또한 중국의 젊은 도시 여성들은 자아실현과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은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의 영향으로 한 자녀 가정에서 자란 여성들이고, 형제 자매 없이 자란 경험을 통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성향을 가지며, 결혼과 출산이 필수적인 인생 과정으로 여겨지던 전통적 가치관이 약하여 자신의 삶과 경력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여성들은 높은 교육 수준과 직업적 야망을 가지고 있으며,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수많은 중국 여성들은 출산 후 다시 직장에 복귀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기도 한다.

중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높은 편이어서 일과 출산 및 양육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중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다른 국가들 여성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1990년대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여성들이 대규모로 실직했지만, 1990년대 말까지 중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약 73%를 유지한 후 계속 하락세를 보였으며, 2013년에 61.1%로 감소했다(Dasgupta et al., 2015). 국제노동기구(ILO)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에 61.844%를 기록해 같은 해 전세계 국가들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인 48.687%보다 약 13%가 높았다.

특히 중국에서 80년대에 태어난 세대를 바링허우라 부르는데, 이들 부부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강한 편이다. 이들은 중국이 개혁, 개방에 나선 이후 태어났고,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며 날로 부강해지는 동시에, 사회가 어지러울 만큼 큰 변화를 겪었던 시기에 유, 소년기를 보냈다. 이들은 이전 세대와 분명하게 구별되는 특성을 지녔는데, ‘소황제’라는 칭호와 더불어 부모와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 등 모두 6명으로부터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며 풍요로운 물질과 자유로운 정신을 구가했던 세대로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강하다. 결혼·출산으로 인해 30대와 40대에 이르면서 최소한 네 명의 양가 어르신과 두 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책무를 안게 되었고, 게다가 대다수 바링허우 여성들은 맞벌이를 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두 자녀를 키우기란 쉽지 않다. 바링허우 부부들의 아이 양육 형태는 부모 세대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 “옛날에는 아이 낳고 두 달만 지나면 바로 출근했는데”, 지금은 아이가 귀하고 정성을 다해 키우기 때문에 양육비가 많이 든다. “보통 부부 중 한 사람만 일하며”, 통상 2~3살까지 엄마가 직접 키우거나 조부모들이 와서 아이를 돌봐준다(盛梦露·刘佳英, 2016). 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일과 출산 및 양육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서 주요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Chen et al., 2000).

더욱이 여성 근로자는 구직·승진의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 취업의 ‘비정규화’ 추세도 실증적으로 밝혀졌다(高媛, 2016). 대다수 중국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주요 원인으로 육아 책임을 꼽았다. 2010년 제3차 중국 부녀자 사회지위 조사에 따르면, 6세 이하 자녀를 가진 25~34세 도시 여성의 취업률은 72%로, 같은 해 동일한 연령대의 유년기 자녀가 없는 여성의 취업률에 비해 10.9%가 낮았다.

2) 사회 제약적 출산기피 현상

앞서 살펴본 개인적 출산기피 현상과 사회 제약적 출산기피 현상 외에도, 인구 구조적 원인으로 인해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즉 중국의 가임 연령 여성인구가 감소중이다. 최근 인구 연령 구조의 변화로 인해 가임 연령 여성인구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엔(UN)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중국의 가임 연령 여성 인구는 연평균 약 480만 명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인구 구조와 사회적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출산율 감소와 관련된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다(United Nations, 2022). 더군다나 중국 여성의 초혼과 첫 출산 연령이 갈수록 늦춰지고 있어 자녀 계획도 줄고 있다.

출산·육아에 대한 공적 지원의 부족은 여성의 출산 의지를 억제시켰다. ‘세 자녀 정책’ 실시 이후, 실제 출생 인구는 대다수 학자와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의 예측보다 훨씬 적었으며, 가임 연령 여성들의 출산 의지는 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연구결과에서도 밝혔듯이, 공적 육아지원의 부족은 개별 가정의 출산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도 탁아소·유치원 등의 보육기관의 사영화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 주목받는 사회적 이슈 중 하나이다. 보육기관의 사영화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립 보육기관과는 달리, 민간 또는 기업이 운영하는 보육기관을 의미한다. 중국에서는 인구 구조 변화와 도시화, 그리고 양육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사영 보육기관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민간 또는 기업이 운영하는 보육 기관의 비율이 무려 96.7%에 달한 반면,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보육 시설과 공립 보육 기관의 비율은 2%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姚建平, 2023).

이렇게 질 좋고 신뢰할 만한 공적의 보육서비스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3세 이하 아동은 주로 여성과 조부모가 돌보았다(程福財, 2013). 조부모 돌봄을 예로 들면, 조부모는 효과적으로 가정의 출산·육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했지만 두 번째 자녀 출생, 조부모의 고령화와 퇴직연령 연장정책의 실시 등으로 인해 이런 모델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도시이주 농민공 여성 등을 포함하여 비정규직 여성들의 출산·육아에 대한 공적 지원은 기본적으로 공백 상태이다. 소수의 기업체들만이 비정규직 여성들을 대상으로 출산보험을 적용하고 있을 뿐, 대다수 고용주의 경우에 비정규직 여성이

임신하고 출산할 때에 해고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일부는 해고되지 않더라도 출산 및 육아 기간 동안에 재대로 된 처우를 보장받지 못한다.

특히 도시이주 농민공 여성에 대한 맞춤형 출산보험은 고용주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8.8% 도시이주 농민공 여성만이 출산보험에 가입된 실정이라서 5대 사회보험 중에서 그 가입율이 가장 낮다. 그리고 도시이주 농민공 여성자와 고용주 간의 출산보험 협상에서 매우 불합리한 일부 규정을 볼 수 있다. 일부 사기업들은 도시이주 농민공 여성을 채용할 때 노동계약 기간 내 결혼과 출산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까지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이주 농민공 여성들은 고용주와 동등한 협상 기회를 갖기 어렵고, 도시이주 농민공 여성들은 출산이 업무에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하게 된다. 특히 현재 노동력 수급이 상대적으로 원활한 상황에서 불평등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권리는 보장받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이주 농민공 여성들은 출산과 취업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난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인 출산 및 육아정책은 계획경제 시기에 적용된 후커우에 의한 여성 근로자의 직업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호적을 의미하는 후커우(Household Register)는 출신 지역에 따라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사실상의 '신분제'로 일컬어진다.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도시들은 1958년 제정된 '후커우 등기 조례(Regulations on household registration)'에 따라 외지인들의 후커우를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보호, 출산보험, 노동의료보험 등과 같은 사회제도들은 오직 도시 지역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었다. 도시의 단위(單位, 근로자에게 종신고용을 보장하고, 안정된 임금을 지불하고,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틀이 되는 동시에, 갖가지 신원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을 영위케 하며, 문화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정치적 통제를 관철하는 틀) 체계에 속하지 않은 농촌지역 여성 근로자와 도시지역 비경제활동 여성인구는 출산 및 육아정책의 대상자에서 배제되었다(鄭功成, 2002). 따라서 농촌지역 육아의 책임은 여전히 가족의 몫이었다.

그 중 도시이주 농민공 여성의 공적 탁아서비스 제도의 부재에 대한 우려는 출산 우려를 증폭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도시이주 농민공 여성은 주로 시골에 남아있는 조부모의 헌신과 지원을 통해 자녀를 돌보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들

조부모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손자의 돌봄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래서 도시이주 농민공 여성은 도시에서 자녀를 가질 경우에 반드시 스스로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이것은 그들의 경제 활동에 상당한 심적 부담으로 작용되며, 출산 의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농촌 이주 여성들의 출산율은 도시지역 비이주 여성의 출산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Zhou, 2015; Liang et al., 2014). 특히 대도시로 유입한 농촌 이주 여성들에게 저출산 현상은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록 대규모 농촌 여성들이 도시로 유입해 중국 현대화에 막대한 공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도시 후쿠우를 소지하고 있지 않기에 임금 차별은 물론 자녀를 현지 공립학교에 입학시킬 수 없고, 주택도 자신의 명의로 구매할 수 없으며, 병원 진료, 노후 연금 등 사회복지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 이같은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 거주지역에서의 교육이나 의료,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족이 처할 어려움을 원하지 않는 농촌 이주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할 수 밖에 없다(Jiang, 2023).

다. 중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변화와 주요 특징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중국은 인구 증가를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당시에는 많은 노동력이 국가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출산 장려 정책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197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인구 증가가 경제 발전에 부담을 준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늦게 결혼하고, 적게 낳고, 잘 키우자'는 구호와 함께 출산을 줄이기 위한 초기 정책들이 도입되었다. 초기의 저출산 정책은 단기적인 인구 억제에 효과적이었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했으며, 인구 증가율을 크게 낮추지 못했다.

중국의 출산정책 발전 과정은 크게 3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인구 폭발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미래의 인구 증가를 늦추려는 목적으로 1980년에 '한 자녀' 정책을 시작한 시기이다. 2단계는 인구 연령 구조의 변화에 따라 출산 감소 정책을 조정해야 했으며, '한 자녀'를 부분적으로 완화한 후, 2013에 '단독 두 자녀' 정책을, 2016년에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실시하였다. 3단계는 2021년에 '전면적 세자녀'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40년간 유지해온 '한 자녀 정책'을 폐기했다. 특히, 2021년부터 시행된 세자녀 정책은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한 지 5년 만에 출산 제한을 다시금

완화된 것으로, 지난 제7차 인구조사 결과가 발표된지 한달만이다. 이는 인구조사에서 중국의 출산 감소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위기감이 나날이 커지며 저출산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에 경종을 울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한 자녀 정책에서 두 자녀, 그리고 세 자녀 정책으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변해왔다. 이와 함께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와 공적사회적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계획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표 2-1〉 중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주요 변화와 특징

구분	도입 배경	주요 내용	정책 효과 및 문제점
한 자녀 정책 (1980년대~2015년)	·1979년에 공식적으로 시작된 개혁개방 정책과 함께, 중국 정부는 급속한 인구 증가가 경제발전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로 한 자녀 정책을 도입.	·대다수의 부부가 한 명의 자녀만 가질 수 있도록 제한했음. ·일부 예외가 존재했지만, 대부분의 가정에 강력하게 적용되었음. ·이 정책은 정부가 강력히 관리하고, 위반 시 경제적 벌금 등의 처벌이 따랐음.	·인구 증가를 성공적으로 억제하면서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지만, 성비 불균형, 급격한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음.
두 자녀 정책 (2016년~2021년)	·한 자녀 정책의 부작용이 누적되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전환이 요구됨. ·고령화 문제와 인구 감소의 심각성이 증가하자, 정부는 두 자녀 정책을 도입	·모든 부부가 두 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한 자녀 정책의 제한을 완화한 첫 번째 큰 변화임.	·출산율이 약간 증가했으나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음. ·도시화와 생활비 증가, 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 많은 부부가 여전히 자녀를 적게 낳는 경향이 생겨남.
세 자녀 정책 (2021년 이후)	·두 자녀 정책이 출산율 회복에 충분한 효과를 보이지 않자, 중국 정부는 세 자녀까지 허용하는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출산율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를 해결하고자 함.	·2021년부터 모든 부부가 세 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더 많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도입.	·세 자녀 정책 도입 이후, 출산 장려를 위한 추가적인 경제적, 사회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출산율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

1950년대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중국은 도시 가정을 위한 육아정책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그 주요 목표는 여성의 신체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출산 부담을 줄이며 여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계획경제 시기에 임신, 출산정책 및 육아정책은 여성 근로자의 직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로써, 노동보호, 출산보험, 노동의료보험 등과 같은 제도들을 통해 여성의 전반적인 육아 욕구를 충족하였다. 따라서 도시의 단위(單位, 단위는 근로자에게 종신고용을 보장하고, 안정된 임금을 지불하고,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틀이 되는 동시에, 갖가지 신원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을 영위케 하며, 문화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정치적 통제를 관철하는 틀) 체계에 속하지 않은 농촌지역 여성인구와 도시지역 비경제활동 여성인구는 육아정책의 대상자에서 배제되었다(郑功成, 2002).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국가의 사업 중점을 경제건설에 두었다. 계획경제 시기에 비효율성으로 낙인 받은 “단위 보장제”에 대한 개혁은 급속히 추진되어 경제적으로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경제정책에만 온 정성을 쏟은 나머지 사회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중국은 국가 핵심 정책으로 “경제정책만 논하였고 사회정책은 없는” 시기였다(王紹光, 2008). 중국은 이 과정에서 인구 증가 억제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했다. 1980년에 도입된 '한 자녀 정책'이 대표적인 예이며, 이는 모든 부부에게 단 한 명의 자녀만 가질 것을 요구한 강력한 인구 억제 정책이었다. 한 자녀 정책은 인구 증가율을 급격히 낮추었으며, 중국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문제, 성비 불균형, 노동력 부족 등의 사회적 문제를 초래했다. 특히 2000년대부터 저출산 대응 정책의 정책구상은 일반 여성에게 보편적 육아 혜택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지원책보다는 산아제한에 대한 점진적 완화 정책을 통해 출산 허용 자녀 수를 점차 늘리는 데 방점을 찍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두 자녀 정책'으로 전환했으며, 이후에는 모든 부부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출산율은 회복되지는 않았고,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1) 1945~1965년: 국가는 도시 고아를 위해 집중 육아 정책을 제정했고, 직장은 도시 근로자 가정을 위해 출산 휴가, 탁아소, 유아원 서비스의 비용을 보조했으며, 가정은 도시 가정은 업무시간 외 육아를 책임지며 농촌 가정은 육아의 주요 제공자 역할을 담당했다. 도시지역의 경우에 근로자의 육아를 주로 직장에서 책임졌다.

이 시기에 농촌이나 소도시 지역에서는 육아 서비스와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보육 시설의 수가 적거나, 교육의 질이 떨어졌으며,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육아 지원 프로그램도 한정적이었다.

(2) 1966~1976년: 직장은 해당 기업 근로자의 육아만을 책임졌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에서 가정은 일반적으로 육아의 주요 책임자였다. 기업이 자사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육아 지원을 제공했기에 사회 전체가 육아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데 한계가 있었다.

(3) 1977~1990년대: 정부는 일부 취약아동을 위해 거주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산보험제도 개혁을 통해 출산휴가제도를 실시했고, 일부 직장은 탁아소, 유아원 서비스와 보조금을 제공했으며, 공립 서비스 기구의 시장화와 사립 탁아소, 유아원의 열풍으로 인해 시장은 주요 육아 제공자로 등장했다. 이 시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육아 책임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정부의 제한적인 역할로 인해 육아가 사적 영역으로 밀려났으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은 양질의 사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가정은 충분한 육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육아 서비스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4) 2000년 이후: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의 서비스와 수당 제공을 강화했고, 인구정책과 출산 휴가 정책을 제정했으며, 학령 전 교육에는 투자를 계속 증가했지만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였다. 한편 시장은 보육(탁아소, 유아원) 서비스 공급의 중요한 주체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가정은 0~3세 아동의 전적인 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졌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0~3세 아동의 전적인 육아를 가정에서 책임져야 했기에, 아이를 돌보는 데 필요한 각종 비용(식사, 의료, 놀이용품 등)이 가정에 전적으로 부담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정에는 큰 부담이 되었다. 이 시기 동안 중앙정부는 취약계층 아동 서비스와 수당에 대한 지출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육아서비스의 성장을 저해했다.

1)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예상

2015년 ‘두자녀 정책’과 2021년 ‘세자녀 정책’ 등의 연속적인 출산제한 완화정책을 통해 세 자녀 출산을 허용함으로써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중국 정부는 ‘두 자녀 정책’에 따라 9,000만쌍에 달하는 중국인이 두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됐으며, 매년 평균 500만명 가량의 출생아가 추가로 태어날 것이라는 예측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이 빗나갔다. 2020년 중국의 출생인구는 1,200만명으로 전년도 대비 1,465만명에서 급감했다.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3명으로 감소했고, 가구당 평균 인원도 처음으로 3명 밑으로 떨어졌으며, 호적 가구당 평균 인원은 2.62명으로 10년 전 3.10명보다 0.48명이 줄었다. 1인 가정과 저출산 추세가 심화되면서 인구 증가율이 현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2021년에 중국이 세 자녀 출산을 허용했음에도 저출산 기조를 막지 못했다. 국가위건위에 따르면 2021년 중국 출생아 수는 1,062만 명으로 1961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둘째 출생아 비율은 41.4%, 셋째 출생아 이상 비율은 14.5%로 집계됐다. 2020년과 비교했을 때 모두 하락한 수치다. 2020년 중국의 출생아 수는 1,200만명, 둘째 자녀 비율은 57.1%였다.

두자녀 정책의 시행 효과에 대해 국가위생가족계획위원회(National Health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는 2017년초 두자녀 정책 실시 효과 관련 자료를 발표했는데, 신생아 중에서 둘째 자녀 비중이 45%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 결과를 통해 정책 효과가 매우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National Health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 2017). 그리고 2018년초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생아 중에서 둘째 자녀 비중이 51.2%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정책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2018). 그러나 2019년 유관 부처는 더 이상 신생아 관련 정보를 전하지 않고 둘째 자녀의 출산상황은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중국에서 두자녀 정책이 시행된 이후 둘째 자녀 비율은 증가했지만, 전체 출생 인구와 출산율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Chen, 2021). 이는 출산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는 특히 결혼 연령의 상승과 함께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3년에 1,640만 명이던 출생아 수는 2021년에 1,062년에 불과하고 8년 만에 출산율도 13.03%에서 7.52%로 떨어졌다. 두자녀 정책은 산아제한 정책의 종료를 의미하고 출산장려의 가치지향도 반영하고 있지만, 정책 시행 효과를 보면 2016년부터 출산율과 출생인구가 계속 감소해 현 단계의 출산장려 정책이 출산장려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세자녀 정책 실시로 산아제한을 대폭 풀었지만 국민의 산아제한 의지가 높아지지 않고 있다.

중국의 세 자녀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도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1년에 이 정책이 도입되었지만, 기대했던 출산율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1.09로 떨어졌다. 이는 인구 대체 수준인 2.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The China Project, 2023).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와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2) 출산 대응 정책의 실제 결과

중국의 저출산 대응 대책은 산아제한의 점진적 완화에 방점을 둔 채 농촌 이주 여성들에게 보편적 출산 및 육아 혜택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 그동안 저출산 대응정책은 도시지역 취약계층 아동 돌봄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아쉽게도 대다수 조지들은 아동 돌봄 부족에 대한 보완적인 차원에 그쳤으며, 도시이주 농민공 여성의 육아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대응은 부재하였다.

무엇보다도 도시 중심형 저출산 대응 방안의 제한적인 기능으로 인해 예방 기능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대다수 육아정책들은 사후 구제형과 보상형 정책들이라서 예방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며, 도시지역 여성 근로자에게만 제공되는 육아정책만으로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촌 이주 여성 등 비정규직 여성들의 가정을 지원하거나 사회 공평성을 증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2010년까지 대도시에서 아동복지 기관을 설치해 고아, 장애아동, 유랑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 제공했고, 무료 의무교육을 확대 시행하였으며, 아동 면역서비스 제공과 보건 부문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농촌인구 이동과 도시화의 심화로 인해 농촌지역 가정의 육아 문제에 있어 전대미문의 도전을 겪고 있다.

모든 교육 과정에서 가정은 아동의 조기 돌봄과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농촌지역 아동이나 도시의 낮은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농민공 자녀들은 아주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취약계층 아동은 학령 전 교육 단계부터 “출발선에서 밀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唐俊超, 2015).

비록 2016년에 전면적 두자녀 정책과 2021년에 세자녀 정책의 실시는 산아제한 정책의 종료와 함께 출산 장려의 가치지향도 반영하고 있지만, 관련 출산보장이나 출산지원 조치가 사회발전 상황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茅偉彦·申小菊·张闻雷, 2018). 중국 정부가 내놓은 출산 현금 지원이나 육아 서비스 지원 방안들은 후커우 제도의 제한으로 인해 대다수 농촌 이주 여성 등 비정규직 여성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후커우 제도는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 이동한 이주 노동자들의 삶에 큰 제약을 준다. 이주 노동자들은 도시에서 거주하고 일하면서도 도시의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를 도시에서 양육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 특히 후커우 제도는 이주 노동자의 자녀 교육과 복지 혜택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여 자녀 교육비나 의료비 등에서 더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들 가정은 자녀 수를 줄이거나 출산을 연기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도시에서의 생활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안정해져 출산을 꺼리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여 전체적인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The Independent, 2021). 결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커우 제도의 개혁과 함께 보다 폭넓은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

- 부록 -